연구보고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김영지
공동연구원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_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민희(평택대학교·교수)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_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3차년도 과제이다. 1, 2기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9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쟁점과 최종 유엔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협약 이행 과제를 짚어보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실시하고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약 이행 점검과 인권실태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및 유엔 심의 권고문 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8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유엔 권고문은 협약 당사국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안내한다는 점에서 2024년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까지 적극적인 권고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연구요약

1. 연구개괄

-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진전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3차년도 과제로, 제3기 인권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협약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 노력 점검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1, 2기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CRC/C/58/Rev.3)'에 기반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1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15개)', '폭력 및 학대(8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2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29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14개)', '특별보호조치(30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총 119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에서 행정통계 및 타분야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는 76개, 인권실태 설문조사

로 결과를 생산하는 지표는 43개임.

-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총괄보고서는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및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제언을 담고 있으며, 별책 2권 중 '심화분석보고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 논문으로 인권데이터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기초분석보고서'에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함.
- 마지막으로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및 협약에 따른 이행과제 등을 검토하여 7개 대분류 영역별로 2~3개씩 총 18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함.

2. 연구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국제 동향 파악
-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설문조사 결과 및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 등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파악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상황 분석
- 인권실태 분석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결과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 분석: 심화분석보고서 발간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 수집·분석(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권고문 등)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조사지 확정, 전국의 초4~고3학년 총 9,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초점집단면접(FGI) 실시: 아동권리협약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기관 및 아동·청소년 인권활동가 대상으로 FGI실시
- 전문가 의견조사: ① 인권지표 및 조사항목 개선을 위해 학계, 현장, 법률전문가 의견조사 실시(전문가 21명), ②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위해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방식 조사 실시(전문가 28명)
- 정책과제 개발 전문가 워크숍: 관련 학계, 현장, 법률전문가와 함께 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문 등 검토, 정책과제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해 학계, 현장 등 전문가 대상 자문 실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출 국가보고서 및 민간보고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처 정책 담당자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본 연구 목적인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가승인통계 데이터 생산 및 공표를 위해 활용된 연구방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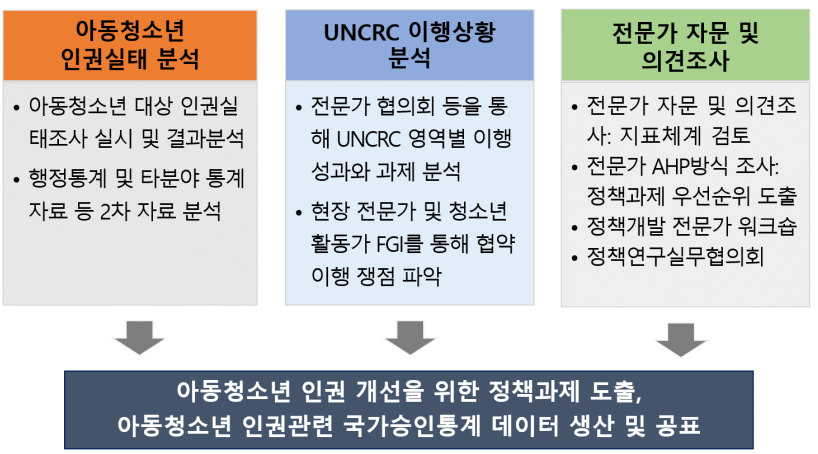

4.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상황 분석]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일반이행조치에서 상소권 제한과 관련한 협약 유보 조항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으며,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는 미비준 상태임.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로 인해 행정부 내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이 내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청소년인권과(부서)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인 아동·청소년 인권(권리)교육은 체계적·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
- 정부가 협약의 일반이행 조치를 완수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보조항의 신속한 철회, 제3선택의정서 비준, 협약의 모든 조항 이행을 위한 분야별 법률 제·개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관련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권교육원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여건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적

출생통보제 등 공적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것은 국가에 의해 그 존재가 인지되고, 권리보호 및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국가인권위원회, 2018a: 51).

- 아동·청소년은 어리고 미성숙하다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는 마땅히 누릴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받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 보장 등은 학교규칙에 의해 통제·제한되고 있음. 일부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인권규범은 네 곳에만 있음. 정부는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규범 제정에 적극 지원하고, 침해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상담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화 노력을 추진하고, 각급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유도해 가야 함. 또한 선거연령 하향화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증진시키도록 함.

● 폭력 및 학대

- 정부는 체벌 및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다양한 입법과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의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하는 성과를 보였음. 그러나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앞으로 아동폭력 관련 전문가 양성, 관련기관 등의 확대 노력과 종사자의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정부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장기대책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아동학대 및 폭력 근절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과 관련한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 왔음. 그 주요 성과로는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전 계층

으로 확대 실시,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 지급,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이혼가정 자녀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해 2015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 설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2014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운영,「입양특례법」제정을 통한 입양숙려제도, 입양동의 철회권 보장,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청취권 보장, 입양정보공개제도 도입 및 수용자 자녀의 보호조치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과 보완점은 시민사회연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개선요구로 제기되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가정환경(para. 31), 가정환경 상실아동(para. 32), 입양(para. 33), 불법이송 및 미귀환(para. 34), 수감자 자녀(para. 35) 부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① 일반가정 위탁 보호제도의 활성화, ②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확대, ③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파양 예방대책 수립, ④ 수감자 자녀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⑤ 아동유기 예방 및 미혼부모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음.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에 관한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 왔음. 그 주요 성과로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의 신·증설,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의 증가, 소아전문응급센터 법제화 및 어린이공공진료센터

운영,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2015년에는 '학생 자살예방대책' 수립, 3년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음주와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담배 제조 및 판매 규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확산을 위해 '로그out 가족in' 캠페인 실시, 체험형 성교육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학교 성 인권 교육' 도입,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급여제도 시행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과 보완점은 시민사회연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개선요구로 제기되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장애아동(para. 36), 건강 및 보건서비스(para. 37), 정신건강(para. 38), 청소년 보건(para. 39), 생활수준(para. 40) 부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① 장애아동 통합교육 개선, ② 취약아동을 위한 건강권 보장, ③ 아동의 삶의 질 제고, ④ 실효성 있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대책 마련, ⑤ 주거빈곤아동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쟁적 교육 상황은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인권존중의 의식을 함양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가꾸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한 우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매번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 시 지적되어 왔음. 1996년의 1차 권고에서는 경쟁적인 특성의 교육제도를 우려하였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1996: para. 16), 2003년 2차 권고에서는 경쟁이 심한 교육제도로 아동의 충분한 잠재력 개발이 저해될 위험성을

우려하였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para. 52), 2011년 권고에서는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62). 그러나 여전히 경쟁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고, 2019년의 4차 권고에서도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친 경쟁적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었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1). 그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완화되지 못하고,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으며, 교육격차는 지역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심화되었으며, 과도한 학습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휴식과 여가 등을 즐길 시간적 여유는 제한되었음.

- 경쟁적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국가행동계획 수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 놀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특별보호조치

- 특별보호조치 중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이주아동,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그 주요 성과로는 2012년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 제정,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 가족 중 미성년자의 보호권 및 교육권 보장,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확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및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설치·운영,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다각적인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제도적 개선점이 제기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특별보호조치 중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para. 43)과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para. 44) 부분에 권고사항이

있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①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보장 방안 마련, ② 이주아동,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지원 확대, ③ 근로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강화를 제안하였음.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은 인권일반(인권인프라, 인권 의식, 인권교육)과 일반원칙(차별경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중분류로 구성됨. 2019년에 아동영향평가의 절차, 아동수당 확대, 청소년 정책과정 참여 제도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됨. 부처별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은 3.4%로 2016년 2.9%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16.1%), 학생인권조례(7.9%), 국가인권위원회(17.6%)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임. 가정(95.6%), 학교(91.5%), 사이버 공간(81.1%), 우리나라 전체(77.1%)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는 높은 편이며 증가하는 추세임.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 존중(70.7%),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88.3%), 학생자치조직의 의의(85.4%), 표현의 자유 보장(96.7%) 등에 긍정적 인식을 보임.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금지(97.3%), 양성평등의식(96.4%),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평등권(94.6%) 보장 등에도 높은 인식을 나타냄. 인권 인식의 연도별 추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률은 46.0%이며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4.6%로 가장 높았음. 인권교육의 효과(인식, 태도, 행동)는 90% 내외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외모·신체조건(28.9%), 성차별(28.2%),

나이(28.1%), 학업성적(27.5%)으로 인한 차별 순이었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도 외모·신체조건(16.2%)에 따른 차별이 가장 높았고, 학업성적(13.0%), 나이(12.8%), 성차별(12.3%), 장애(5.3%) 순으로 나타남. 1주일에 1회 이상 이루어지는 일상적 차별은 피해와 가해 모두 외모·신체조건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높게 나타남. 차별피해 경험은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19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차별가해 경험은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19년에 소폭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인권 존중 정도와 인권의식은 높은 편이며 긍정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동권리협약과 인권기구에 대한 인지도나 인권교육 경험률이 여전히 낮고 10명 중 3명 정도는 외모·신체조건, 성차별, 연령차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 15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의사결정 시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존중도는 진로·직업(93.8%)과 상급학교(93.8%), 집안의 중대사(90.9%)와 공부시간·방법(90.5%)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증가하는 추세임.

-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2017년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내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2018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수용율은 90.9%로 높게 나타남.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0.8%였고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2.8%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68.6%로, 지금까지 최고 수치를 나타냄.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3.6%)’, ‘시간 부족(29.7%)’, ‘참여활동 정보 부족(21.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11.6%)' 등의 응답을 보임.

- 사상의 자유는 87.4%가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함.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는 81.8%로 나타났고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경우는 37.8%로 모두 전년도 대비 개선됨.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12.6%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9.1%로 최근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42.8%), 복장(43.6%), 소지품(15.9%) 검사 경험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10.0%), 징계사항(18.8%), 시험성적(18.4%) 공개도 줄어들고 있음.
-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7.8시간,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2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9.3%로 이들이 주로 이용한 컨텐츠는 게임과 영화·TV·동영상, 메신저 등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이슈 대응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수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아직 여러 인권 침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음.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을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모든 영역에서 참여 수준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폭력 및 학대」 영역 중에서 중분류 지표인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는 2개의 소분류 지표인 '청소년폭력 경험률'과 '체벌 경험률'로 구성됨. 소분류 지표 '청소년폭력 경험률'은 다시 세부지표 '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의 두 지표로 구성되었음. 2019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욕설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청소년은 69.8%에 해당되었고, 학교선생님으로부터는 82.1%로, 선후배나 친구로부터는 84.7%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정서적 폭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신체적 폭력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이 1년 중 한 번도 없었다는 학생은 각각 92.2%와 84.5%로 나타났음. 반면에, 전체 응답학생 중에서 1.9%가 1년 중에 1번 이상의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체벌 경험률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1년 동안 피해경험이 25%로 매우 높았고, 학교선생님으로부터는 9.2%가 해당되었음. 전반적으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체벌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34,169건으로 90.5%(30,923건)가 아동학대 의심사례였으며, 사례접수 경로는 112경찰신고를 통한 접수 건수가 48.8%인 16,6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건수는 32.3%인 11,038건이었음.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76.8%(17,177건)이었고, 그 중 친부모의 비중은 95.4%였음. 학대유형 중 중복학대 48.6%, 정서학대 21.1%, 신체학대 14.7%, 방임 12.5%, 성적학대 3.1% 순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심야시간 부모부재 및 방임 경험률은 56.8%, 비위생적인 의복과 침구 사용 경험은 7.5%, 결식 시 부모 무관심은 5.7%, 질병발생 시 방치는 4.2%, 학교결석 시 무관심은 1.1%였음. 한부모가정과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경우 전반적인 방임경험이 더 많았음.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건수는 2017년 말 기준 22,367건이었으며 그중 원가정보호는 78.6%, 분리보호 15.8%, 가정복귀 5.1%, 사망사례는 0.3%였음. 분리보호의 경우 장기보호 36.1%, 친족(친인척)보호 34.9%, 일시보호 23.4%, 연고자에 의한 보호 3.1%, 병원입원 1.7%, 가정위탁 0.8%로 양육시설에서의 장기보호, 친족보호가 대부분임.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지속관찰 62.9%, 고소·고발·사건처리 32.6%, 아동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 2.3%, 학대피해 아동과의 분리는 2.2%로 나타남.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과 관련하여 먼저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만13~19세까지의 조사대상 청소년 70% 이상이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보육시설은 2018년 현재 39,171개소, 이용 아동 수는 1,415,742명으로 모두 감소 추세임. 방과후돌봄 중 하나인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는 59.3%, 중학교는 32.1%, 고등학교는 52.6%였고, 전체적으로 참여율 감소경향을 보였으며(2013년 60.2%→2018년 51%), 전반적인 만족도는 80%가 넘음. 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4,211개소, 이용 아동 수는 109,610명으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5점으로 긍정적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8년 기준 260개소가 운영 중이며, 만족도는 84.2%로 나타남.

- 국내외 입양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기아·유기 아동 수가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함(2017년 261명→2018년 320명). 보호대상 아동 대부분(62.5%)은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년대비 시설보호 비율(3.8%p)도 증가함. 약 24%만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으로 일반위탁은 7.8%로 매우 낮음. 공동생활가정은 총 533개소로 보호아동 수는 2,811명임.
- 본 조사결과, 지난 1년간 가출 경험은 3.5%였으며, 부모와의 문제(불화, 폭행 등)로 가출한 경우가 61.7%였음. 2018년 기준 청소년쉼터 수는 총 130개소였으나, 본 조사에서 가출 후 관련 서비스 및 기관 이용 경험이 7.6%(청소년쉼터 5.2%)에 불과해 이들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2019년 현재 진행 중이며, 3년 전 평가에 비해 안전관리와 재정투명성, 직원채용의 공정성 등의 지표는 일부 보완되었고, 아동의 권리와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5점씩 배점이 증가하였음.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영역은 중분류 수준에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로 구분하

여 조사하였음. 특수학교는 175개교, 특수학급은 10,676개이며, 특수교육 교원의 수도 매년 증가하였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도 90,780명이며, 이중 29.0%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71.0%는 일반학교에 배치되었음. 영아의 사망률은 1,000명당 2.8명이었음. 연령대별 사망원인으로는 운수사고가 모든 연령대에서 주요원인이었으며, 15세 이후부터는 자살의 비중이 급증함.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총 86,353건이며,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은 77.5%,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은 71.9%로 나타남.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과 관련하여 7기(2016~2017년) 기준 6세~18세의 비만율은 11.2%이며, 6기(2013~2015년) 대비 0.9%p 증가함. 소아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은 12세~18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질환별 유병률에서는 알레르기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전체 학교 중 67.1%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어린이병원은 총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공공 전문진로센터는 7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었음.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선정된 병원은 9개소이며, 이중 3개소가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달빛어린이병원도 2019년 9월 기준 전국에 총 23개소가 선정·운영되고 있음.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11개의 지자체에 설치·운영(설치비율: 91.9%)되고 있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50.7%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2.6%, 치과 미치료율은 7.8%로 나타남.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6.7%, 16.9%로 전년 대비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남. 평생약물경험률은 2018년 기준 0.5%로 전년대비 감소함.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각각 72.5%, 42.0%로 전년대비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6.9%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은 ‘한 달에 1~2회 정도’ 20.5%, ‘일주일에 1~2회’ 정도 23.8%, ‘일주일에 3회 이상’ 31.2%로 응답자 1/4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평균 수면시간은 7.33시간(환산 시 7시간 20분)이었고, 과반수 이상이 수면 부족을 응답했으며, 학업(가정학습+학원·과외)을 주요 이유로 응답함(42.3%). 신체건강과 관련해서 여학생, 고등학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임. 비만률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률이 가장 높았고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임.
-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2018 사망원인통계’기준 10~29세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이었으며, 10~19세까지의 자살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2017년 4.7% → 2018년 5.8%). 본 조사결과, 30.4%의 아동·청소년이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주요 이유는 학업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가 38.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9%, 가족 간의 갈등 17.4%였음. 우울증은 4점 만점에 1.88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자 5명중 4명 이상이 행복하다고 응답함. 삶의 만족도(10점 만점)는 평균 7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04점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음. 정신건강적 측면에서도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정서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고민/걱정거리를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은 38.3%, 친구는 37%였고,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10.3%였음. 폭력피해 잠재집단 유형별 정신건강 특성에 대한 심화분석 결과, 가정, 학교, 또래, 사이버 상에서의 다중 학대 및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포함한

정신건강 측면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폭력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OECD 자료기준) 한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은 1.43%로, OECD 평균인 2.4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나타남. 감소추세였던 상대아동빈곤율은 2016년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7.1%로 OECD 평균인 13.4%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임(2015년 기준). 24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15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24세 청소년 비율은 다소 증가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은 모두 확대되었음.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사업학교 1,720개교, 연계학교 1,853개교였으며, 전년대비 74억원이 증액되었음. 드림스타트는 전년대비 동일한 229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였음. 디딤씨앗통장은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된 적립금이 이후 자립 시 충분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때, 장기적인 대상자 확대 및 적립액 증액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중에서 중분류 지표는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3개로 구성됨. 중분류 지표 '교육에의 권리'는 다시 소분류 지표 '교육기회의 보장 정도'와 '학교 부적응률'의 두 지표들로 구성되고, 중분류 지표 '교육의 목표'는 두 개의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과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로 구성되었음. 다른 중분류 지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은 소분류 지표 '여가·문화·예술 시설 수 및 이용만족도'와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의 2개 지표로 구성되었음. 2019년도 실태조사 결과 진학률은 2018년 중학교로는 100%,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99.7%,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69.7%를 보였음.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을 구매력지수로 나타냈을 때에 29%로 OECD 평균수준인 38%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업중단율은 2016년에 0.8%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0.9%로 오히려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31.1%는 자퇴 충동의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자퇴 충동의 이유로 '공부가 하기 싫어서'와 '귀찮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가 동일하게 26.1%,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1.5%와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1.0%, '괴롭힘을 당해서'가 8.4%', '학교 규율이 엄하고 자유롭지 않아서'가 7.3% 순으로 나타났음.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래 친구나 선생님으로 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약 93%가 응답했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85.1%로 나타났음. 여가문화예술 시설의 만족도는 긍정적 응답이 95.5%로 조사되었고, 청소년들은 평일 하루 여가활동 시간은 2.8시간이며, 이 중 스마트기기 활동시간은 1.9시간으로 여가활동 시간의 약 67.9%에 해당되었음. 2019년 실태조사에서 하루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청소년은 16.2%, 1시간~2시간미만은 27.2%, 2시간~3시간미만은 22.0%, 3시간~4시간미만은 14.2%, 5시간 이상은 11.9%에 해당되었음. 반면에, 하루 평균 공부시간은 1시간미만이 14.9%, 2시간 이상~3시간미만이 21.3%, 3시간~4시간미만은 18.6%, 4시간~5시간미만이 13.5%, 5시간~6시간미만이 9.3%, 6시간 이상이 5.9%로 나타났음.

- 「특별보호조치」영역은 중분류 수준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 사법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2018년 현재 전체 난민 신청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약 3.7%이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되는 추세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외국에서 성장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차별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다수(93.1%)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다문화예비학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2,157명이었으며,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128명이었고, 범죄유형으로는 강간이 가장 많았음. 비행소년 대상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전년 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의 처우불복제도와 관련하여 처우불복 신청 건수도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모두 전년대비 증가함.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2017년에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 청소년의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함.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1.0일,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5시간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은 27.2%로 OECD 평균보다 낮았음.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8.5%였고,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14.6%,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험도 58.9%,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은 10.2%,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성적 피해경험도 3.0%로 나타남. 2018년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44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음. 2018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28.0%였으며,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도 4.4%로 나타남.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와 관련해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부모님 순이었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31개소로 전년대비

1개소 증가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65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 중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73.9%였음.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도 최근 대폭 증가함.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2019년 현재 총 1,220명이며,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함.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78.6%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5. 정책제언

1) AHP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방식의 쌍대비교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학계, 현장, 법률 전문가 총 2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에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등을 검토하였고, 학계·현장·법률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논의하였음.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결과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검토를 거쳐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본 조사에 활용하였음.
- 조사결과 “일반이행조치” 영역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민권과 자유” 영역의 경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폭력과 학대”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공공성 강화’,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영·유아·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인권영역에서는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수립', "특별보호조치" 인권영역에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조사됨.

-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정책과제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함.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과제들은 정책과제 집필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하였음.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분석,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총 18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는 다음 표와 같음.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명
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과제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과제2.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Ⅲ. 폭력 및 학대
과제1.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관련 법령 정비
과제2.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공공성 강화
과제3. 학대 피해(장애·이주) 아동 보호체계 개선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영·유아·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과제2. 입양사후관리 및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절차 개선
Ⅴ.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장애 아동·청소년 종사자·예산 증대 및 통합교육 강화
과제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과제3.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
과제4. 아동·청소년의 신체건강증진방안 마련
Ⅵ.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과제2. 초·중등교육과정 내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과제3.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체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
Ⅶ. 특별보호조치
과제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
과제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대책 강화

인권영역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

○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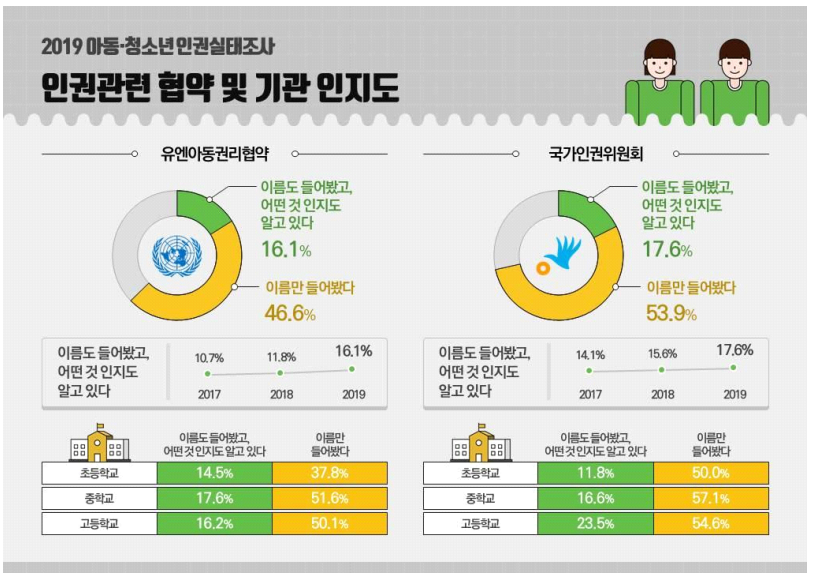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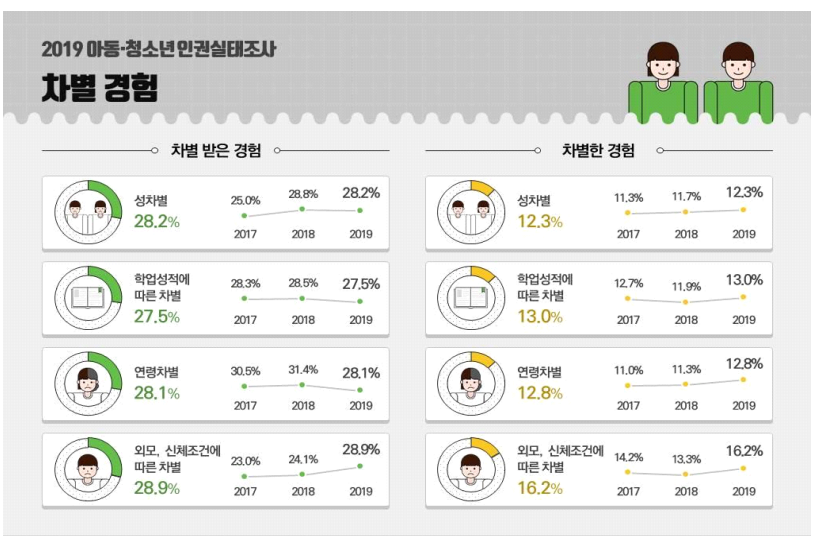

○ 시민적 권리와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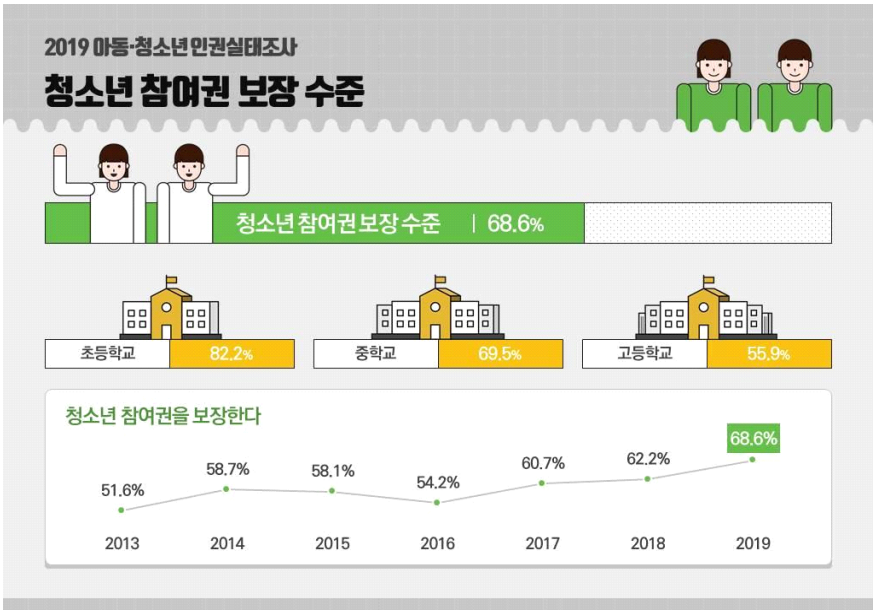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청소년 참여권보장 수준 | 68.6%
초등학교 82.2%
중학교 69.5%
고등학교 55.9%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한다
51.6%
58.7%
58.1%
54.2%
60.7%
62.2%
68.6%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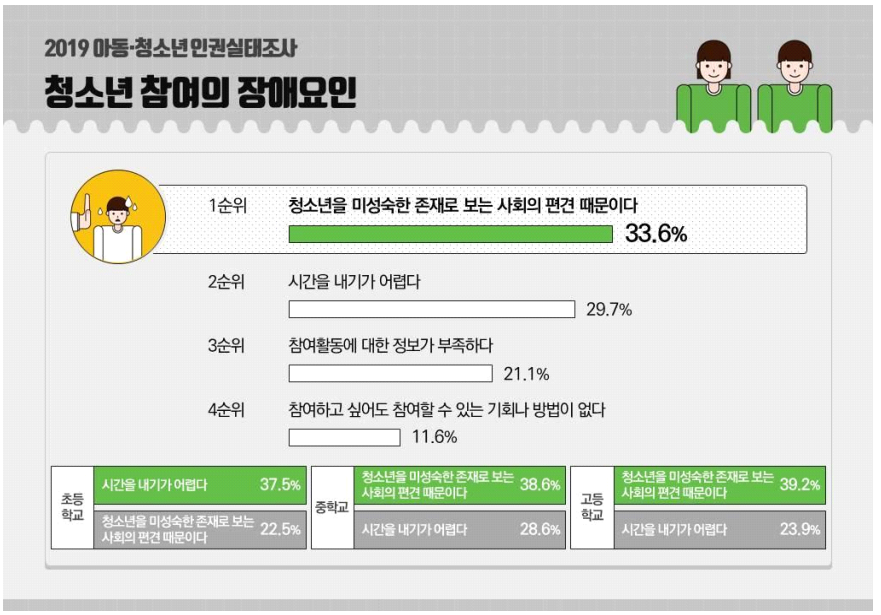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1순위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33.6%
2순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29.7%
3순위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21.1%
4순위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11.6%
초등학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7.5%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22.5%
중학교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38.6%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28.6%
고등학교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39.2%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23.9%

○ 폭력 및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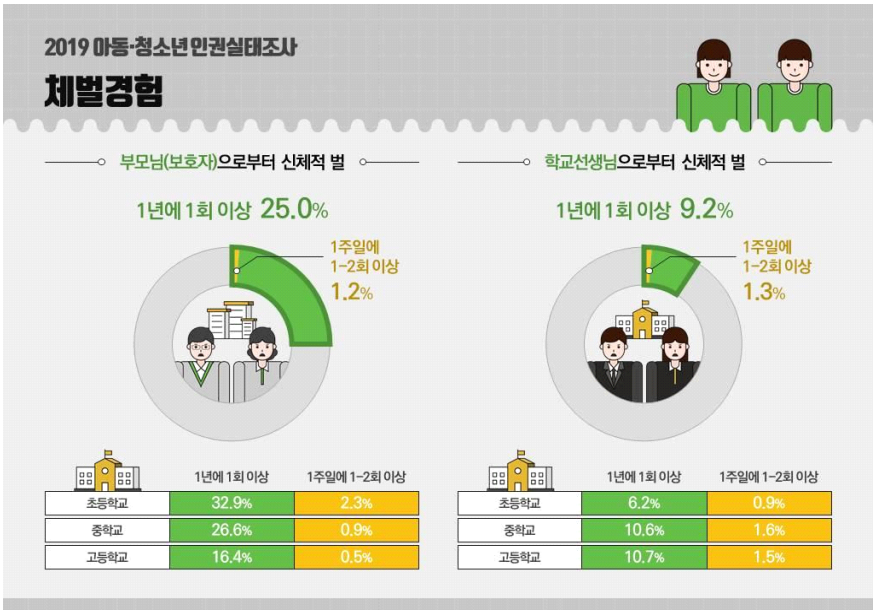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체벌경험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1년에 1회 이상 25.0%
1주일에 1~2회 이상 1.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1년에 1회 이상 9.2%
1주일에 1~2회 이상 1.3%
1년에 1회 이상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교 32.9% 2.3%
중학교 26.6% 0.9%
고등학교 16.4% 0.5%
1년에 1회 이상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교 6.2% 0.9%
중학교 10.6% 1.6%
고등학교 10.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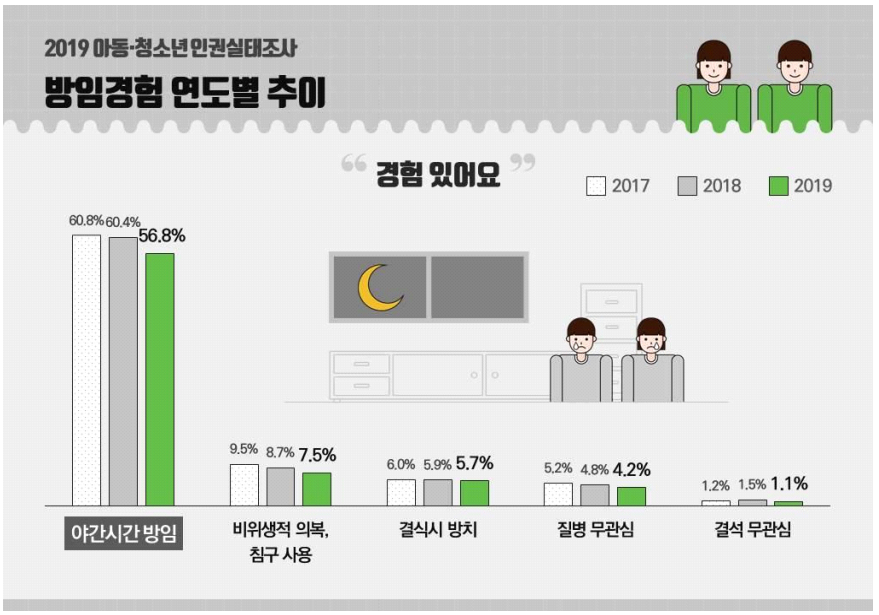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방임경험 연도별 추이
"경험 있어요"
2017
2018
2019
60.8% 60.4% 56.8%
야간시간 방임
9.5% 8.7% 7.5%
비위생적 의복, 침구 사용
6.0% 5.9% 5.7%
결식시 방치
5.2% 4.8% 4.2%
질병 무관심
1.2% 1.5% 1.1%
결석 무관심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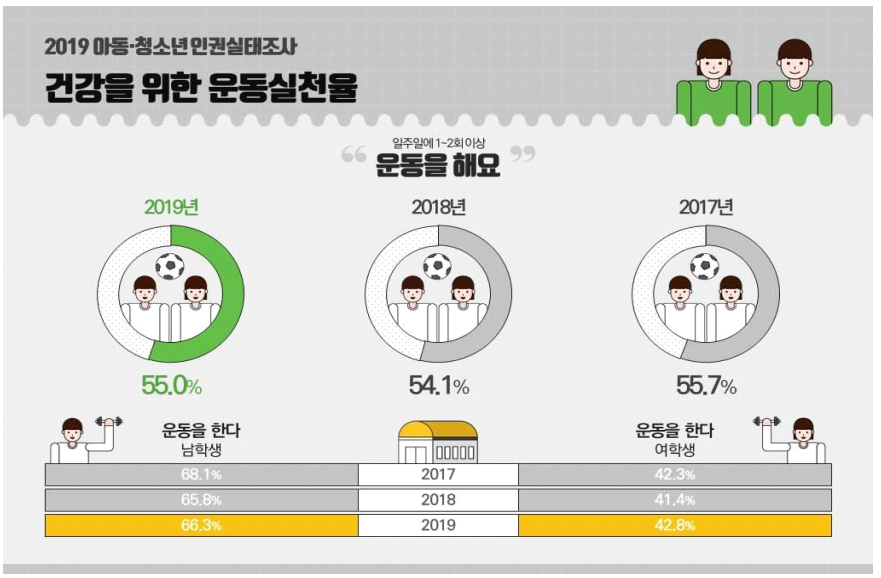

○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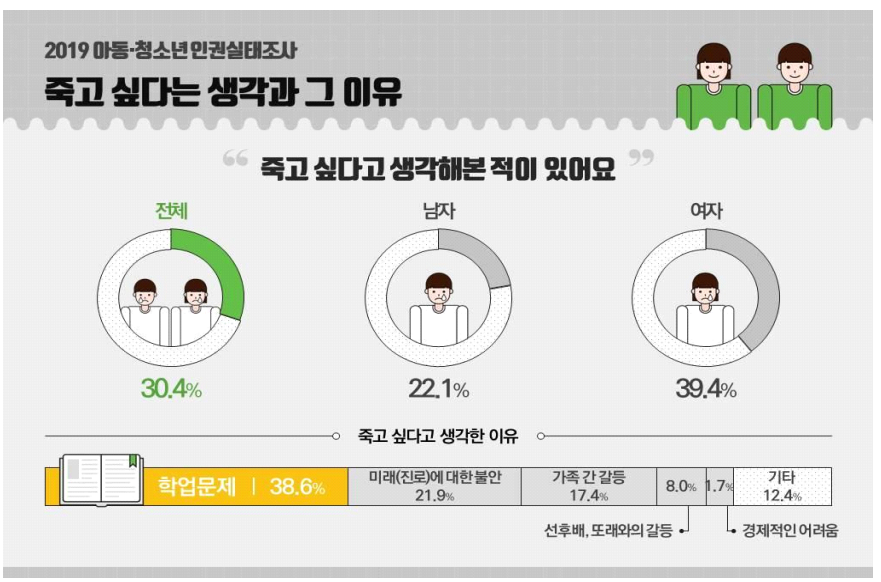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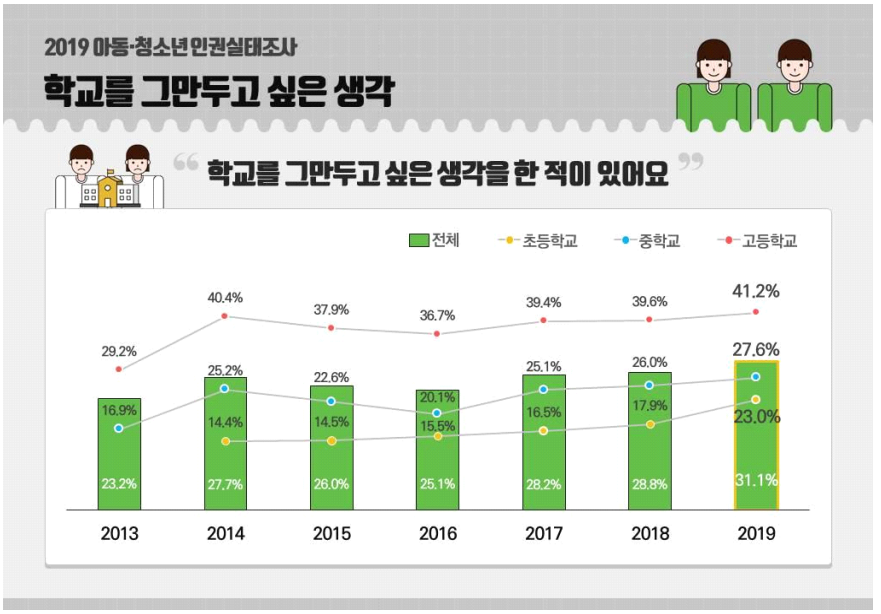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9.2%
40.4%
37.9%
36.7%
39.4%
39.6%
41.2%
16.9%
25.2%
22.6%
20.1%
25.1%
26.0%
27.6%
23.2%
14.4%
14.5%
15.5%
16.5%
17.9%
23.0%
27.7%
26.0%
25.1%
28.2%
28.8%
3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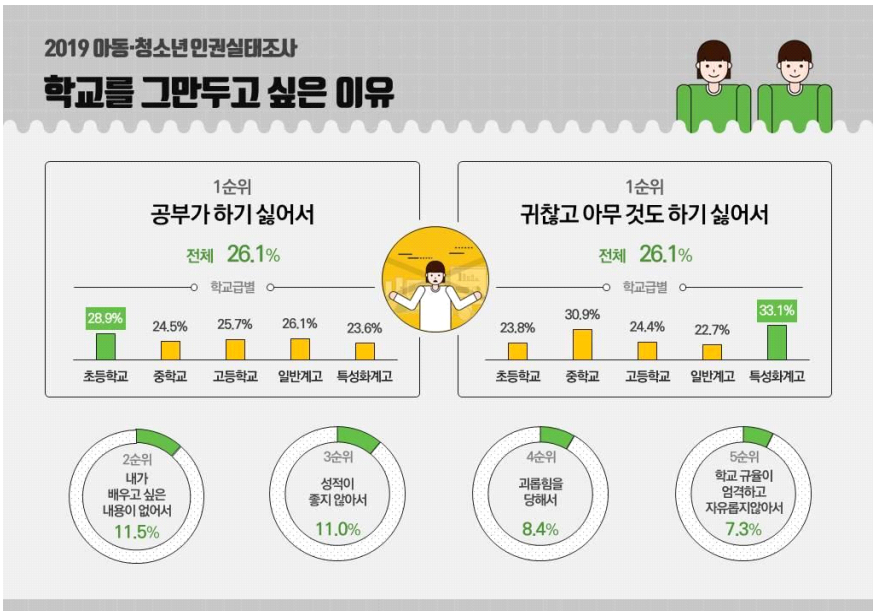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1순위
공부가 하기 싫어서
전체 26.1%
학교급별
28.9%
24.5%
25.7%
26.1%
23.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1순위
귀찮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
전체 26.1%
학교급별
23.8%
30.9%
24.4%
22.7%
33.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순위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11.5%
3순위
성적이 좋지 않아서
11.0%
4순위
괴롭힘을 당해서
8.4%
5순위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않아서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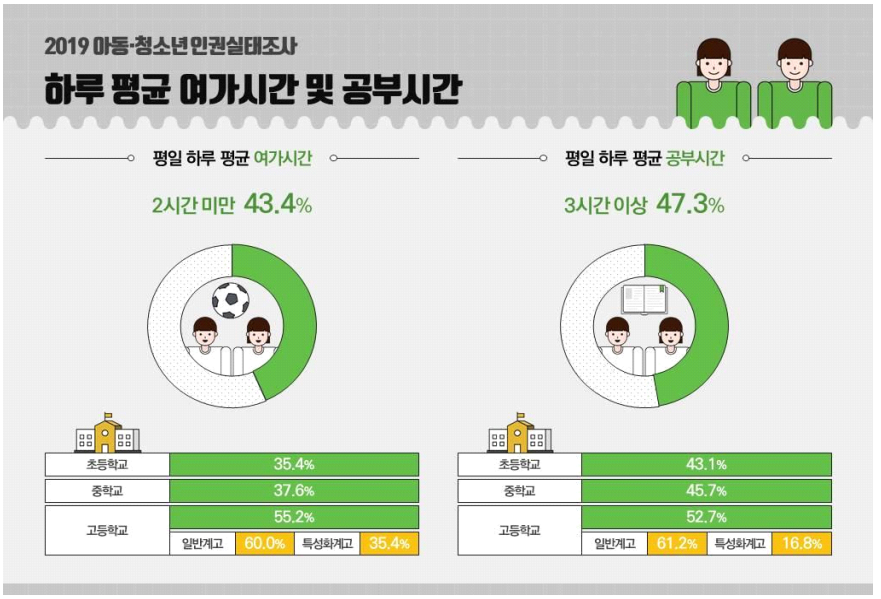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및 공부시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2시간 미만 43.4%
초등학교 35.4%
중학교 37.6%
고등학교 55.2%
일반계고 60.0%
특성화계고 35.4%
평일 하루 평균 공부시간
3시간 이상 47.3%
초등학교 43.1%
중학교 45.7%
고등학교 52.7%
일반계고 61.2%
특성화계고 16.8%

○ 특별 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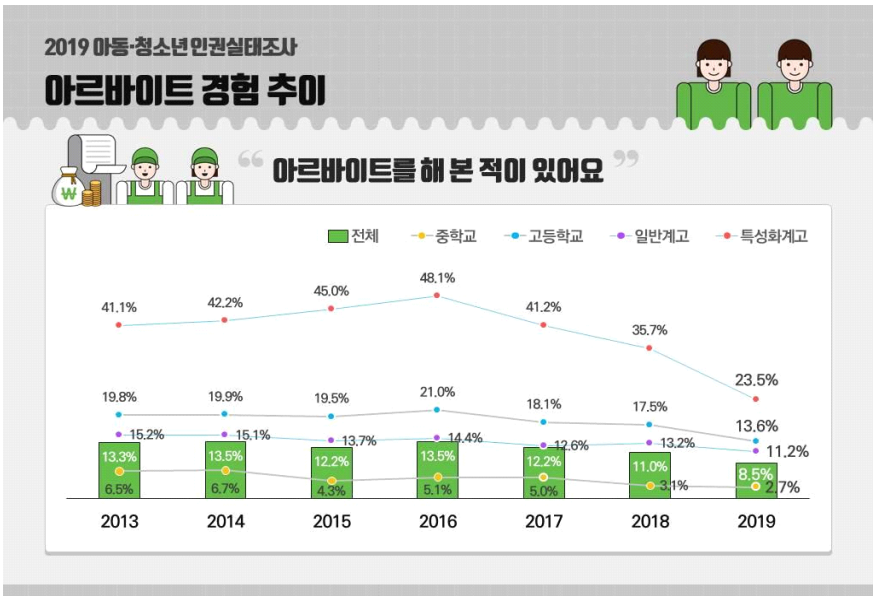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41.1%
42.2%
45.0%
48.1%
41.2%
35.7%
23.5%
19.8%
19.9%
19.5%
21.0%
18.1%
17.5%
13.6%
15.2%
15.1%
13.7%
14.4%
12.6%
13.2%
11.2%
13.3%
13.5%
12.2%
13.5%
12.2%
11.0%
8.5%
6.5%
6.7%
4.3%
5.1%
5.0%
3.1%
2.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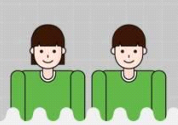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어요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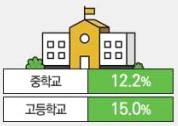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어요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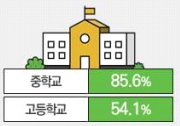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어요

10.2%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성적인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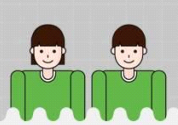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어요”

전체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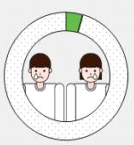

남자 4.2%

여자 4.7%

학교급별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성적인 피해 시 도움을 받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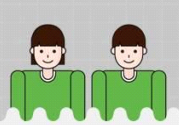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전체 31.9%

학교급별

차 례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9-R1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1) 연구내용 ····· 8
   2) 연구방법 ····· 11
   3. 연구의 체계도 ····· 15

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과 국제인권메커니즘 ····· 19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메커니즘 ····· 19
   2)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 ····· 23
   3) 보편적 정례검토와 아동·청소년 ····· 25
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 29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요 동향 ····· 29

2) 국가별 심의 권고문을 통해 본 인권 이슈 ····· 30
3) 국제인권메커니즘과 한국적 시사점 ····· 35
3.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 36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 36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정비 ····· 41
3)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62

Ⅲ.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쟁점과 과제

0. 분석개요 ····· 71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76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83
3. 폭력 및 학대 ····· 87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92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99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109
7. 특별보호조치 ····· 113

Ⅳ.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0. 조사개요 및 방법 ····· 127
1) 조사목적 ····· 127
2) 조사대상 ····· 128
3) 조사내용 ····· 130
4) 조사방법 ····· 140
5) 모집단 분석 ····· 141
6) 표본설계 ····· 145
7) 가중치와 모수추정 ····· 152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156
1) 인권 일반 ····· 156
2) 일반원칙 ····· 198

3) 소결 ····· 203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207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 207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226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229
4) 사생활의 보호 ····· 231
5) 정보접근권 ····· 236
6) 소결 ····· 244
3. 폭력 및 학대 ····· 247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247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271
3) 소결 ····· 290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293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293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 308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331
4) 소결 ····· 336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339
1) 장애 ····· 339
2) 생존 및 발달 ····· 342
3) 보건서비스 ····· 353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 373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422
6) 소결 ····· 438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444
1) 교육에의 권리 ····· 444
2) 교육의 목표 ····· 455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472
4) 소결 ····· 491

7. 특별보호조치 ····· 494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494
2)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 ····· 510
3) 경제적 착취 ····· 520
4) 성적 착취 ····· 543
5) 소결 ····· 559

Ⅴ.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 567
1) 아동권리협약 이행분석 시사점 ····· 567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 시사점 ····· 572
2.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분석 ····· 586
1) 전문가의견조사(AHP) 조사개요 ····· 586
2) 전문가의견조사(AHP) 조사결과 ····· 591
3.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 599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 599
2) 주요 정책과제 ····· 602

참고문헌 ····· 621

부 록

1.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 655
2. 2019년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 700
3.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 706
4.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737

Abstract ····· 763

표 목차

표 Ⅰ-2-1. 초점집단면접(FGI) ····· 13
표 Ⅰ-2-2. 전문가 의견조사 ····· 14
표 Ⅱ-1-1.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현황 ····· 24
표 Ⅱ-3-1.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37
표 Ⅱ-3-2. 2006년~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대분류) ····· 42
표 Ⅱ-3-3. 2014년, 2017년, 2019년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지표 항목 중요도 조사 ····· 44
표 Ⅱ-3-4.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46
표 Ⅱ-3-5. 시민적 권리와 자유 ····· 47
표 Ⅱ-3-6. 폭력 및 학대 ····· 50
표 Ⅱ-3-7.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52
표 Ⅱ-3-8.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 54
표 Ⅱ-3-9.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57
표 Ⅱ-3-10. 특별 보호조치 ····· 59
표 Ⅱ-3-11.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63
표 Ⅲ-0-1. 협약 이행분석 회의 개최 ····· 73
표 Ⅲ-0-2.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인적 특성 ····· 74
표 Ⅲ-0-3. 청소년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인적 특성 ····· 74
표 Ⅲ-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분석 자료(유엔에 제출된 보고서 중심) ····· 75
표 Ⅳ-0-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 129
표 Ⅳ-0-2.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신규 조사문항 ····· 133
표 Ⅳ-0-3.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수정된 조사문항 ····· 134

표 Ⅳ-0-4.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일부 삭제 조사항목 ····· 135
표 Ⅳ-0-5.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삭제 조사문항 ····· 136
표 Ⅳ-0-6.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 137
표 Ⅳ-0-7. 2019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조사 개요 ····· 140
표 Ⅳ-0-8.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 142
표 Ⅳ-0-9.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 142
표 Ⅳ-0-10.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 143
표 Ⅳ-0-1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 143
표 Ⅳ-0-1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 144
표 Ⅳ-0-1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 144
표 Ⅳ-0-14.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 147
표 Ⅳ-0-1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 148
표 Ⅳ-0-16.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 148
표 Ⅳ-0-17.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 149
표 Ⅳ-0-18.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 149
표 Ⅳ-1-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2013~2019) ····· 164
표 Ⅳ-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 165
표 Ⅳ-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 167
표 Ⅳ-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 169
표 Ⅳ-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 171
표 Ⅳ-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 172
표 Ⅳ-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 174
표 Ⅳ-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 176
표 Ⅳ-1-9.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 178
표 Ⅳ-1-10.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180
표 Ⅳ-1-11.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181
표 Ⅳ-1-12.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83
표 Ⅳ-1-13.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 185
표 Ⅳ-1-14.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87
표 Ⅳ-1-15.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189
표 Ⅳ-1-1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91
표 Ⅳ-1-17. 인권교육 경험 여부 ····· 192
표 Ⅳ-1-18.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 193
표 Ⅳ-1-19. 인권교육 도움 정도_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 195
표 Ⅳ-1-20. 인권교육 도움 정도_2)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 ····· 196
표 Ⅳ-1-21. 인권교육 도움 정도_3) 인권침해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 197
표 Ⅳ-1-22.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 전체 ····· 198
표 Ⅳ-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의견존중 정도 ····· 207
표 Ⅳ-2-2.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210
표 Ⅳ-2-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212
표 Ⅳ-2-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214
표 Ⅳ-2-5.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2013~2018) ····· 216
표 Ⅳ-2-6.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8) ····· 216
표 Ⅳ-2-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217
표 Ⅳ-2-8. 아동총회 개최현황 ····· 219
표 Ⅳ-2-9.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 220
표 Ⅳ-2-10.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 222

표 Ⅳ-2-11.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 224
표 Ⅳ-2-12. 사상의 자유 보장 ····· 226
표 Ⅳ-2-13. 종교의 자유 보장 ····· 227
표 Ⅳ-2-14.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 229
표 Ⅳ-2-15.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 232
표 Ⅳ-2-16. 개인의 정보 보호 ····· 234
표 Ⅳ-2-17.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 236
표 Ⅳ-2-18.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237
표 Ⅳ-2-19. 인터넷 이용 목적 ····· 238
표 Ⅳ-2-20.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239
표 Ⅳ-2-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 239
표 Ⅳ-2-22.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 240
표 Ⅳ-2-23. 학생 1인당 장서 수 ····· 240
표 Ⅳ-2-24.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241
표 Ⅳ-2-25.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 241
표 Ⅳ-2-26.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 242
표 Ⅳ-2-27.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 ····· 243
표 Ⅳ-3-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248
표 Ⅳ-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250
표 Ⅳ-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 252
표 Ⅳ-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 254
표 Ⅳ-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 256
표 Ⅳ-3-6.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 258
표 Ⅳ-3-7. 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 260
표 Ⅳ-3-8. 사이버공간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 262
표 Ⅳ-3-9.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함 ····· 264
표 Ⅳ-3-10.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 267
표 Ⅳ-3-11.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 269
표 Ⅳ-3-12. 2017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272
표 Ⅳ-3-13.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 ····· 273
표 Ⅳ-3-1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74
표 Ⅳ-3-15.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274
표 Ⅳ-3-16.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275

표 Ⅳ-3-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 277
표 Ⅳ-3-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 279
표 Ⅳ-3-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 280
표 Ⅳ-3-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282
표 Ⅳ-3-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283
표 Ⅳ-3-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006년~2017년) ····· 285
표 Ⅳ-3-2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286
표 Ⅳ-3-24.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286
표 Ⅳ-3-25.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287
표 Ⅳ-3-26. 사례종결 중 분리보호 세부 조치사항별 결과 ····· 289
표 Ⅳ-3-27.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 289
표 Ⅳ-4-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세~19세)(2012년-2018년) ····· 294
표 Ⅳ-4-2.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004년-2018년) ····· 296
표 Ⅳ-4-3.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4년-2018년) ····· 298
표 Ⅳ-4-4.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2014년-2018년) ····· 299
표 Ⅳ-4-5.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2010년-2018년) ····· 300
표 Ⅳ-4-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2018년) ····· 301
표 Ⅳ-4-7.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2004년-2018년) ····· 304
표 Ⅳ-4-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5년-2018년) ··· 306
표 Ⅳ-4-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10~2018) ····· 307
표 Ⅳ-4-10.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309
표 Ⅳ-4-11. 국내·외 입양 사후서비스 ····· 310
표 Ⅳ-4-12.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 ····· 312
표 Ⅳ-4-13. 국내 입양 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 313
표 Ⅳ-4-14.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07년-2018년) ···· 315
표 Ⅳ-4-15.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07년-2018년) ····· 316

표 Ⅳ-4-16.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2007년-2018년) ····· 317
표 Ⅳ-4-17.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318
표 Ⅳ-4-18.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2012~2017) ····· 319
표 Ⅳ-4-19. 가출 여부 ····· 320
표 Ⅳ-4-20. 가출한 주된 이유 ····· 322
표 Ⅳ-4-21.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 325
표 Ⅳ-4-22.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08~2018년) ····· 326
표 Ⅳ-4-23. 가출 후 이용한 기관 ····· 327
표 Ⅳ-4-24.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 330
표 Ⅳ-4-25. 2016년 및 2019년 평가지표 비교(공통지표) ····· 332
표 Ⅳ-4-26.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2010~2019) ····· 334
표 Ⅳ-4-27.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 335
표 Ⅳ-5-1.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339
표 Ⅳ-5-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 341
표 Ⅳ-5-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342
표 Ⅳ-5-4. 연도별 영아사망률 ····· 343
표 Ⅳ-5-5.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344
표 Ⅳ-5-6. 사고 사망률 ····· 345
표 Ⅳ-5-7.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346
표 Ⅳ-5-8.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 348
표 Ⅳ-5-9.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349
표 Ⅳ-5-10.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 351
표 Ⅳ-5-11.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 354
표 Ⅳ-5-12.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 355
표 Ⅳ-5-13.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 357
표 Ⅳ-5-14. 2018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 360
표 Ⅳ-5-15.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360
표 Ⅳ-5-16. 어린이 병원 운영 현황 ····· 361
표 Ⅳ-5-17.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 361
표 Ⅳ-5-18.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및 지정 현황(2019년 9월 기준) ····· 362
표 Ⅳ-5-19.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및 운영 현황(2019년 9월 기준) ··· 363
표 Ⅳ-5-20.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 364

표 Ⅳ-5-21.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 365
표 Ⅳ-5-22.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 366
표 Ⅳ-5-23.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 367
표 Ⅳ-5-24. 흡연율 추이 ····· 369
표 Ⅳ-5-25. 음주율 추이 ····· 370
표 Ⅳ-5-26. 평생 약물 경험률 ····· 371
표 Ⅳ-5-27.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372
표 Ⅳ-5-28.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 373
표 Ⅳ-5-29.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374
표 Ⅳ-5-3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 376
표 Ⅳ-5-31. 수면 시간 ····· 379
표 Ⅳ-5-32. 수면 부족 여부 ····· 380
표 Ⅳ-5-33.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 383
표 Ⅳ-5-34.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 2순위) ····· 386
표 Ⅳ-5-35. 2014~2018년도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 ····· 387
표 Ⅳ-5-36.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 391
표 Ⅳ-5-37. 죽고 싶은 이유 ····· 393
표 Ⅳ-5-38.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 396
표 Ⅳ-5-39.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 398
표 Ⅳ-5-40.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 399
표 Ⅳ-5-41.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 401
표 Ⅳ-5-42. 행복한 정도 ····· 402
표 Ⅳ-5-43. 행복하지 않은 이유 ····· 404
표 Ⅳ-5-44. 삶의 만족도 ····· 407
표 Ⅳ-5-45.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410
표 Ⅳ-5-46.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411
표 Ⅳ-5-47.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 413
표 Ⅳ-5-48.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 414
표 Ⅳ-5-49. 고민거리 대화상대 ····· 416
표 Ⅳ-5-50. 폭력피해 잠재유형 수에 따른 모델 적합도 지수 ····· 419
표 Ⅳ-5-51. 잠재유형별 조건항목확률 ····· 420
표 Ⅳ-5-52. 폭력피해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특성 ····· 421
표 Ⅳ-5-53. GDP대비 family benefits 공적 지출: 현금 및 서비스 구분(2015년) ····· 424

표 Ⅳ-5-54. 아동빈곤율(0~18세 미만) ····· 426
표 Ⅳ-5-55. 18~25세 빈곤율(중위 소득 50% 기준) ····· 427
표 Ⅳ-5-5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 430
표 Ⅳ-5-57. 한부모가구 비율 ····· 431
표 Ⅳ-5-58.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 431
표 Ⅳ-5-59.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2019년) ····· 432
표 Ⅳ-5-6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434
표 Ⅳ-5-61.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 435
표 Ⅳ-5-62.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 437
표 Ⅳ-6-1.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2011~2017) ····· 444
표 Ⅳ-6-2.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446
표 Ⅳ-6-3.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18) ····· 447
표 Ⅳ-6-4. 학급당 학생 수(2011~2018) ····· 448
표 Ⅳ-6-5.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18) ····· 450
표 Ⅳ-6-6. 자퇴 충동여부 ····· 450
표 Ⅳ-6-7. 자퇴 충동이유 ····· 452
표 Ⅳ-6-8.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 456
표 Ⅳ-6-9.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 458
표 Ⅳ-6-10.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460
표 Ⅳ-6-11. 학교생활 만족도 ····· 462
표 Ⅳ-6-12. 추진과제별 연간 소요예산 ····· 466
표 Ⅳ-6-13. 제2차 진로계획 5개년계획의 기대효과 ····· 467
표 Ⅳ-6-14. 직업계고 학교, 학급, 학생, 교원 현황('18년) ····· 468
표 Ⅳ-6-1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473
표 Ⅳ-6-16.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473
표 Ⅳ-6-1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 공공도서관 ····· 474
표 Ⅳ-6-18.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여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 476
표 Ⅳ-6-19.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이용 여부 ····· 478
표 Ⅳ-6-20. 문화·예술 공간 이용 여부(공연장, 미술관 등) ····· 480
표 Ⅳ-6-21.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 482
표 Ⅳ-6-22.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 484

표 Ⅳ-6-23.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 485
표 Ⅳ-6-24. 여가활동 동반자: 1순위 ····· 486
표 Ⅳ-6-25. 평일 여가 시간 ····· 487
표 Ⅳ-6-26. 평일 공부 시간 ····· 489
표 Ⅳ-7-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 496
표 Ⅳ-7-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2019년 6월말 기준) ····· 497
표 Ⅳ-7-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497
표 Ⅳ-7-4.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 498
표 Ⅳ-7-5.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 500
표 Ⅳ-7-6.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의 차별정도 ··· 500
표 Ⅳ-7-7.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502
표 Ⅳ-7-8.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 502
표 Ⅳ-7-9. 2018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에서의 재학여부 ····· 503
표 Ⅳ-7-10.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 504
표 Ⅳ-7-11.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 504
표 Ⅳ-7-12.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 505
표 Ⅳ-7-13. 학급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비율 ····· 505
표 Ⅳ-7-14.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 506
표 Ⅳ-7-15.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 508
표 Ⅳ-7-16.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 509
표 Ⅳ-7-17.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 511
표 Ⅳ-7-18.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 512
표 Ⅳ-7-19.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 513
표 Ⅳ-7-20.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 515
표 Ⅳ-7-21.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516
표 Ⅳ-7-22.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517
표 Ⅳ-7-23.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518
표 Ⅳ-7-2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 519
표 Ⅳ-7-2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520
표 Ⅳ-7-26.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521
표 Ⅳ-7-27.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523
표 Ⅳ-7-28.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525
표 Ⅳ-7-2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 527

표 Ⅳ-7-3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였다 ····· 528
표 Ⅳ-7-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530
표 Ⅳ-7-3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 531
표 Ⅳ-7-3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 532
표 Ⅳ-7-3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 534
표 Ⅳ-7-3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 535
표 Ⅳ-7-3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 537
표 Ⅳ-7-37. 청소년 고용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 539
표 Ⅳ-7-3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 541
표 Ⅳ-7-39. 청소년 고용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건수 ····· 542
표 Ⅳ-7-40.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544
표 Ⅳ-7-41.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 546
표 Ⅳ-7-42.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 547
표 Ⅳ-7-43.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 550
표 Ⅳ-7-44.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 551
표 Ⅳ-7-4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553
표 Ⅳ-7-46. 지역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553
표 Ⅳ-7-4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2013-2017) ····· 554
표 Ⅳ-7-48.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555
표 Ⅳ-7-49.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 556
표 Ⅳ-7-50.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 557
표 Ⅳ-7-5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 558
표 Ⅳ-7-52. 연간 성교육 경험률 ····· 559
표 Ⅴ-2-1.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대상 AHP조사 개요 ····· 587
표 Ⅴ-2-2. AHP조사 정책과제 및 상세 설명내용 ····· 588

표 Ⅴ-2-3.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조사 예시 ····· 591
표 Ⅴ-2-4.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조사결과 ····· 592
표 Ⅴ-3-1.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 총괄표 ····· 599

그림 목차

그림 Ⅰ-2-1. 연도별 추진계획(예시) ····· 8
그림 Ⅰ-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지 개발 과정 개요 ····· 9
그림 Ⅰ-3-1. 연구의 체계도 ····· 15
그림 Ⅱ-1-1. 인권조약 보고절차 비교 ····· 22
그림 Ⅲ-0-1. 협약 이행분석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 72
그림 Ⅳ-0-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항목 상세 변경 절차 및 승인 내역 ····· 131
그림 Ⅳ-0-2. 표본추출방법 ····· 140
그림 Ⅳ-1-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 협약(연도별 추이) ····· 166
그림 Ⅳ-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연도별 추이) ····· 167
그림 Ⅳ-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연도별 추이) ····· 169
그림 Ⅳ-1-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 170
그림 Ⅳ-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 172
그림 Ⅳ-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 173
그림 Ⅳ-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 175
그림 Ⅳ-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연도별 추이) ····· 177
그림 Ⅳ-1-9.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부정응답 연도별 추이) ····· 179
그림 Ⅳ-1-10.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 181

그림 Ⅳ-1-11.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연도별 추이) ····· 182
그림 Ⅳ-1-12.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 184
그림 Ⅳ-1-13.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연도별 추이) ····· 186
그림 Ⅳ-1-14.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학교급별) (연도별 추이) ····· 188
그림 Ⅳ-1-15.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성별)(연도별 추이) ····· 188
그림 Ⅳ-1-16.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 190
그림 Ⅳ-1-17. 인권교육 경험(학교급별) ····· 192
그림 Ⅳ-1-18.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연도별 추이) ····· 194
그림 Ⅳ-1-19.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1년에 1회 이상) ····· 199
그림 Ⅳ-1-20. 차별경험(연도별 추이) ····· 200
그림 Ⅳ-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의견존중 정도) (연도별 추이) ····· 209
그림 Ⅳ-2-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 211
그림 Ⅳ-2-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 213
그림 Ⅳ-2-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 215
그림 Ⅳ-2-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연도별 추이) ··· 221
그림 Ⅳ-2-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 223
그림 Ⅳ-2-7.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 225
그림 Ⅳ-2-8.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 228
그림 Ⅳ-2-9.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 230
그림 Ⅳ-2-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연도별 추이) ····· 231

그림 Ⅳ-2-11.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연도별 추이) ····· 233
그림 Ⅳ-2-12. 개인의 정보 보호(연도별 추이) ····· 235
그림 Ⅳ-3-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 249
그림 Ⅳ-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 251
그림 Ⅳ-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연도별 추이) ····· 253
그림 Ⅳ-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연도별 추이) ···· 255
그림 Ⅳ-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연도별 추이) ····· 257
그림 Ⅳ-3-6. 선후배, 친구로부터 성적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연도별 추이) ····· 259
그림 Ⅳ-3-7. 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연도별 추이) ····· 261
그림 Ⅳ-3-8. 사이버공간에서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연도별 추이) ····· 263
그림 Ⅳ-3-9.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함(연도별 추이) ····· 265
그림 Ⅳ-3-10.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 268
그림 Ⅳ-3-11.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 270
그림 Ⅳ-3-12. 2017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271
그림 Ⅳ-3-13. 2017년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 ····· 273
그림 Ⅳ-3-14.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 276
그림 Ⅳ-3-15. 방임_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연도별 추이) ····· 278
그림 Ⅳ-3-16. 방임_깨끗하지 않은 옷, 침구를 사용한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 279
그림 Ⅳ-3-17. 방임_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 281
그림 Ⅳ-3-18. 방임_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282
그림 Ⅳ-3-19. 방임_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284
그림 Ⅳ-3-20.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17년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287

그림 Ⅳ-3-21.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연도별 추이) ····· 288
그림 Ⅳ-3-22. 사례종결 중 분리보호 세부 조치사항별 결과 ····· 289
그림 Ⅳ-4-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세~19세) 연도별 추이 ····· 293
그림 Ⅳ-4-2. 방과후학교 교급별 학생만족도(연도별 추이) ····· 302
그림 Ⅳ-4-3.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현황(2004~2018) ····· 303
그림 Ⅳ-4-4. 지역아동센터 중점 프로그램 ····· 305
그림 Ⅳ-4-5.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 305
그림 Ⅳ-4-6.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308
그림 Ⅳ-4-7.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체계 ····· 311
그림 Ⅳ-4-8.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 (2007년~2018년) ····· 314
그림 Ⅳ-4-9.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 추이(2007~2018) ····· 317
그림 Ⅳ-4-10. 가출 여부: 학교급별(연도별 추이) ····· 321
그림 Ⅳ-4-11.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전체(연도별 추이) ····· 323
그림 Ⅳ-4-12.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초등학교(연도별 추이) ····· 323
그림 Ⅳ-4-13.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중학교(연도별 추이) ····· 324
그림 Ⅳ-4-14. 가출을 한 주된 이유: 고등학교(연도별 추이) ····· 324
그림 Ⅳ-4-15.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연도별 추이) ····· 326
그림 Ⅳ-4-16.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이용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 328
그림 Ⅳ-4-17.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연도별 추이) ····· 329
그림 Ⅳ-4-18.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 330
그림 Ⅳ-5-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연도별 추이) ····· 350
그림 Ⅳ-5-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 352
그림 Ⅳ-5-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 375
그림 Ⅳ-5-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 376
그림 Ⅳ-5-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 378
그림 Ⅳ-5-6.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 379
그림 Ⅳ-5-7.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 381
그림 Ⅳ-5-8. 수면이 부족한 이유(전체, 성별) ····· 382

그림 Ⅳ-5-9.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전체값 초등, 기타 값 제외) ····· 384
그림 Ⅳ-5-10.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중·고, 기타 값 제외) ····· 385
그림 Ⅳ-5-11. 비만도 현황(연도별 추이) ····· 387
그림 Ⅳ-5-12. 인구 십만명당 10~19세 자살률 ····· 389
그림 Ⅳ-5-13.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 390
그림 Ⅳ-5-14.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 392
그림 Ⅳ-5-15. 죽고 싶은 이유(연도별 추이) ····· 394
그림 Ⅳ-5-16. 우울정도 항목별 조사결과 ····· 395
그림 Ⅳ-5-17.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397
그림 Ⅳ-5-18.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398
그림 Ⅳ-5-19.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 400
그림 Ⅳ-5-20. 행복한 정도(연도별 추이) ····· 403
그림 Ⅳ-5-21. 행복하지 않은 이유(연도별 추이: 전체, 학교급) ····· 405
그림 Ⅳ-5-22.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성별) ····· 406
그림 Ⅳ-5-23.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 408
그림 Ⅳ-5-24.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 ····· 409
그림 Ⅳ-5-25.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연도별 추이) ····· 410
그림 Ⅳ-5-26.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 412
그림 Ⅳ-5-27.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연도별 추이) ····· 413
그림 Ⅳ-5-28. 고민거리 대화상대 ····· 415
그림 Ⅳ-5-29. 고민거리 대화상대(연도별 추이: 전체, 초등학생) ···· 417
그림 Ⅳ-5-30. 고민거리 대화상대(연도별 추이: 중학생, 고등학생) ···· 418
그림 Ⅳ-5-31. 잠재유형별 조건항목확률(conditional item probability) ····· 420
그림 Ⅳ-5-32. GDP대비 family benefits 공적 지출 비율 국제 비교 (2015년) ····· 423
그림 Ⅳ-5-33. 상대아동빈곤율(0~18세)(1인 가구 제외 기준) ····· 425
그림 Ⅳ-5-34. 0세~17세 아동빈곤율(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국제 비교(2015년 기준) ····· 428

그림 Ⅳ-5-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 429
그림 Ⅳ-5-36.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및 월평균 적립액 추이 ····· 436
그림 Ⅳ-6-1. 자퇴 충동여부(연도별 추이) ····· 451
그림 Ⅳ-6-2. 자퇴 충동이유(1순위) : 연도별 추이(%) ····· 454
그림 Ⅳ-6-3.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 457
그림 Ⅳ-6-4.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 459
그림 Ⅳ-6-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 461
그림 Ⅳ-6-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2016~2020)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463
그림 Ⅳ-6-7.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 ····· 464
그림 Ⅳ-6-8.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 모습 ····· 471
그림 Ⅳ-6-9. 융합 교육과정 운영 예시 ····· 471
그림 Ⅳ-6-10.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공공도서관(연도별 추이) ····· 475
그림 Ⅳ-6-11.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청소년시설(연도별 추이) ····· 477
그림 Ⅳ-6-12. 체육시설 이용 여부(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 479
그림 Ⅳ-6-13. 문화 예술 공간 이용 여부(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 481
그림 Ⅳ-6-14.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연도별 추이) ····· 483
그림 Ⅳ-6-15. 평일 여가 시간(연도별 추이) ····· 488
그림 Ⅳ-6-16. 평일 공부 시간(연도별 추이) ····· 490
그림 Ⅳ-7-1.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 514
그림 Ⅳ-7-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522
그림 Ⅳ-7-3.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2012/2017) ····· 524
그림 Ⅳ-7-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525
그림 Ⅳ-7-5.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 526
그림 Ⅳ-7-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연도별 추이) ····· 527
그림 Ⅳ-7-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였다(연도별 추이) ····· 529
그림 Ⅳ-7-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연도별 추이) ····· 530
그림 Ⅳ-7-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연도별 추이) ····· 532

그림 Ⅳ-7-1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연도별 추이) ····· 533
그림 Ⅳ-7-1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연도별 추이) ····· 535
그림 Ⅳ-7-1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연도별 추이) ····· 536
그림 Ⅳ-7-1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연도별 추이) ····· 538
그림 Ⅳ-7-1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연도별 추이) ····· 541
그림 Ⅳ-7-15.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546
그림 Ⅳ-7-16.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연도별 추이) ····· 549
그림 Ⅴ-2-1. AHP조사 위한 정책과제 도출 절차 ····· 588
그림 Ⅴ-2-2.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① ····· 593
그림 Ⅴ-2-3.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② ····· 594
그림 Ⅴ-2-4.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③ ····· 596
그림 Ⅴ-2-5.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④ ····· 597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후 협약)[2)]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약으로 1990년 9월 2일부터 발효되어 올해로 30년의 역사를 맞았다.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협약은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다. 역사상 가장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조약이라 할 수 있는 이 협약은 가장 많은 비준국을 가진 국제조약이다(김영지, 2004)[3)]. 한국정부는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하여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이 기본적 생활을 누리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 인간이 누려야할 모든 기본적 권리를 향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제4조를 통해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당사국의 의무 이행과 인권 진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제적 기구로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1)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2) 협약의 국내 공식명칭은 영문명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을 번역한 '아동권리협약'이다(외교통상부 공식번역본)(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603).
3)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은 2019년 2월 현재 196개국이다(http://indicators.ohchr.org/ 에서 2019년 2월 11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운영하여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당사국은 5년마다 국내의 아동·청소년 권리 실태와 진전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협약 제44조제1항), 국가보고서에는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요소 등을 담아야 한다(협약 제44조제2항)(UN, 1989).

대한민국은 2017년 12월 제5·6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2019년 9월 18일과 19일 제8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대표단이 참여하는 심의(constructive dialogue)가 진행되었다[4].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의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휴식 및 여가시간과 시설 보장,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과 의견존중 등과 같이 그 동안 여러차례 지속되어온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 성범죄자 처벌 기준 강화, 보육 및 교육환경의 실내공기 질과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인권이슈들이 제기되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국제인권조약은 비준 당사국들에게 조약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조약 감시기구를 통해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며 조약 이행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해당 인권 상황의 개선에 기여한다. 실제로 아동권리협약은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아동권리협약 비준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전기를 맞을 수 있도

4) 제1차 국가보고서는 1994년 11월(심의는 1996년), 제2차 국가보고서는 2000년 5월(심의 2003년),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는 2009년 5월(심의 2011년)에 제출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2018년에 시민사회 연대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4개의 아동보고서 등이 제출되었고 소년사법, 성착취, 국제개발, 이주배경 아동, 성소수자 등 세부 분야별 민간보고서가 별도로 제출되는 등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 과정에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록 협약의 역할과 영향력을 보다 극대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본적 과제는 먼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약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4).[5]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3)[6].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착수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는 제1기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와 제2기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2011~2016)를 거쳐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2017년부터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협약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 노력 점검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 제3기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2017~)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제3기 연구의 3차년도 연구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 및 진전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와의 연속선 상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기반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에 대한 반복적인 횡단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5) 1991년 협약 비준 이후,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보장, 입양허가제 도입, 남녀 아동의 혼인가능연령 일치, 군입대 연령 상향 조정, 아동인권정책과 협약업무 총괄조정 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아동영향평가 도입 및 아동권리보장원 설치, 정부부처 내 아동인권 전담부서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 주무부서 설치 등 아동인권 분야의 진전사항들은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적 준거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을 증진시키라는 국내·외적 촉구에 따라 개선된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 : 1차 1996년, 2차 2003년, 3·4차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03년) 등

와 변화양상 및 추이에 대한 시계열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7] 또한 법·제도·정책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진전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이행 성과와 과제를 점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를 제안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난 5년 간의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의 성과를 점검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대응 및 이후 협약 이행과제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017년부터 중장기 연구로 수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의 연도별 추진과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올해는 3차년도에 해당하는 연구 내용을 수행한다.

연도	주요 내용
1차년도 (2017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연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연구 추진시스템 구축 - ① 협약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주무부처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 ② 연도별 예상 주요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에 따른 협약부처와의 협업과제 예상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협약부처와의 협업사항(안) : 제5·6차 협약 국가보고서 작업 연계·지원(협약 작업집단 협업)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유엔 제출 (제출기한 2017.6.19. 제출 2017.12.27) - 제4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심의(9월)

7) 2009년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데이터를 생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통계는 통계청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원 데이터(Microdata)를 익익년 후에 관련 연구자들에게 완전 공개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제3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보고서 제출(8월), 심의(11월) : 아동 - 제3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부, 3년 주기)
	⇩
2차년도 (2018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CRC 민간단체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아동보고서 등 제출 -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2018.2) : 여성아동 이슈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추진 : 아동·청소년분야 - 제3차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보건복지부, 5년 주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시행
	⇩
3차년도 (2019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협약부처와의 협업사항(안) : 제5·6차 국가보고서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추가보고서 작업(협약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및 주무부처 협업)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추가 국가보고서(유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 유엔 본심의 및 권고사항 발표(9월) -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 장애아동 이슈 -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제출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종료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포용적 아동정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아동복지법 11조의2)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생산 시작
	⇩
4차년도 (2020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연구조사 개선안 검토 : 학생조사 격년 실시, 취약집단 및 인권이슈별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연구 (통계청 승인통계 협의, 인권위 인권통계 협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생산 시스템 제도화 등 ○ 협약부처와의 협업사항(안) : 협약 이행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권고사항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및 담당부서 설정(주무부처 협업)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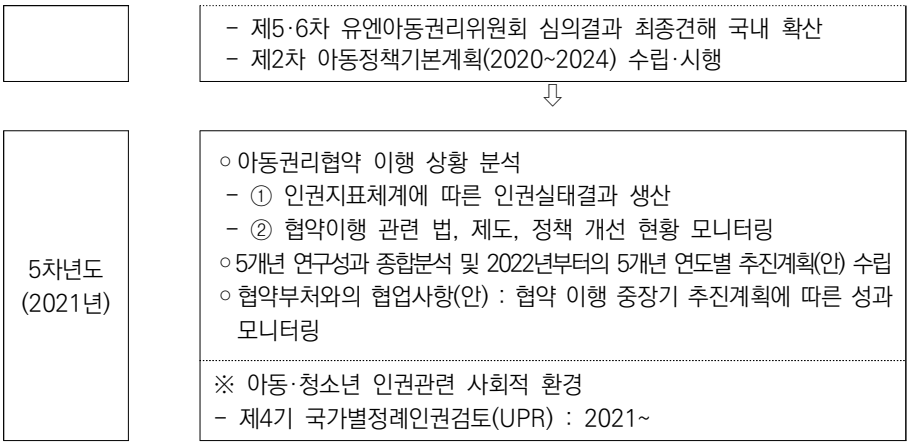

그림 Ⅰ-2-1. 연도별 추진계획(예시)

1) 연구내용

(1)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본 연구는 오랜 기간 수행되어 오면서 지속적으로 지표체계 및 지표항목 검토를 해왔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① 지표체계와 지표항목의 타당성과 중요도 등을 조사하면서 도출된 내용과 ②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학계, 현장(실천), 법과 정책 전문가들 대상의 지표 중요도 의견조사 결과, ③ 또 선행연구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측정을 위한 구조-과정-성과 지표 체계를 통한 검토결과 등을 재검토하여 지표체계 및 지표항목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연속연구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대표 지표로서의 타당성 재고를 통해 일부 지표항목을 정비하였다.

(2) 2019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지표항목별 결과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와 행정통계 및 타 조사결과로 생산된다. 앞서 재검토 및 정비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기초로 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인권영역에서의 실태 및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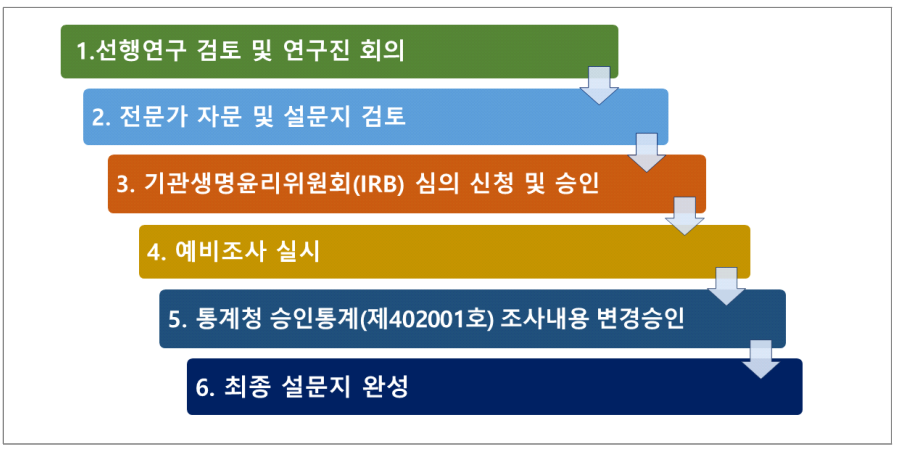

그림 Ⅰ-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지 개발 과정 개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도구 검토 및 보완과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였고(과제번호: NYPI-201904-HR-고유-005-01),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402001)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도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서의 연속성 유지와 연도별 추이비교를 통해 변경은 최소화하되 시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추가, 수정, 삭제하였다. 2019년에는 응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

여 설문지 분량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2019년부터 국가통계로 조사를 시작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비교가 가능한 공통문항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행정통계 및 타 통계자료원을 통해 인권실태 결과를 생산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는 응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문조사 문항을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하는 변화가 있어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데이터 검증 목적을 겸하여 구체적인 인권주제에 대한 데이터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 인권관련 영향요인과 인과관계 등을 탐색하는 데이터 심층분석은 인권연구의 사회적 확산과 관심도 제고 및 데이터의 이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바 있으며, 올해 연구에서 다시 수행되었다.

(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모니터링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조치 성과와 노력정도를 점검하는 작업을 통해 이후 협약 이행 과제 설정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2019년도에 진행할 주요 작업 중 하나는 9월에 있을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협약 이행 성과 점검 및 이행 과제 도출이다. 이를 위해 2017년 12월 유엔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2018년에 제출된 시민사회 연대보고서와 아동보고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list of issues) 등을 검토하여 주요 쟁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는 시민사회 연대보고서 외에 10여개 민간단체에서 별도 주제별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의 협약 모니터링활동에 참여한 아동·청소년과 현장 전문가 대상의 FGI와 협약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4)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국제동향 및 이슈 분석

2019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는 해로 국제적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 동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논의의 현주소와 국내적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일반논평과 협약 선택의정서 관련 국제문서,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국가들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내용 및 유엔 권고사항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쟁점과 이슈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와 이후 이행 과제 도출에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제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점검 및 국제적 인권 이슈와 동향 분석,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등을 통해 협약이행 및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관련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 대상의 의견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를 개발, 제안한다. 특히,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민간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등을 통해 주요 인권쟁점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협약 이행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인권정책과제를 제안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 아동·청소년의 인권 모니터링 및 유엔권리협약에 따른 이행 수준 점검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

터링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발표 국제문서와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국가들에 대한 권고문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적 동향 분석에 참고한다.

(2) 전문가 자문

연구의 진행과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전반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 개선 사항 등과 관련하여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또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이슈 동향과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의 쟁점사항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3) 설문조사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대상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며, 표본수는 2018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인 9,2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조사도구 확정(4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및 승인(4월), 예비조사(4월), 통계청 변경승인(5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5~7월 중에 실시하였다.

(4) 초점집단면접(FGI)

아동권리협약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개발의 기초자료 도출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도록 한다. 2018년에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아동·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민간보

고서와 아동보고서에서 제기한 인권 쟁점들에 대해 핵심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FGI는 6월에 집단별로 각 두 차례씩 총 4차례 진행되었다.

표 Ⅰ-2-1. 초점집단면접(FGI)

주요 요소	청소년 대상 FGI	현장전문가 대상 FGI
참여자 섭외과정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단, 아동보고서 작성 그룹 섭외	아동권리협약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기관 섭외
참여자 수	5명 내외 2개 그룹	5명 내외 2개 그룹
참여자 특성 개요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활동 경험자	아동·청소년 인권 옹호 활동경험자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집단 인터뷰(연구진이 촉진자로 FGI진행)	
시간 및 횟수	1회 1시간 30분 정도 진행	
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취 및 전사	
면담자	연구진	

(5)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 조사문항의 수정여부 검토, 핵심지표 도출, 그리고 정책과제 개발을 위하여 인권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 학계,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20명 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 연구에서는 개발된 정책과제들의 상대적 중요도, 즉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단순 평균값 비교를 통한 중요도 산출이 아닌 보다 체계적으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으로, 국가, 사회 및 관련 의무이행자(duty-bearers)들이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집중 조명하고자 하였다.

표 Ⅰ-2-2. 전문가 의견조사

구분	인권지표/조사항목 의견조사	정책과제 중요도 조사
조사대상 전 문 가	학계, 학교 및 아동인권 현장, 법 전문가 21여명	관련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 28명
선정방법	전문가 pool 활용 및 추천	전문가 pool 활용 및 추천
조사내용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의 세부 지표항목(핵심지표)에 대한 중요도 조사	연구결과 도출된 정책과제들의 중요도 (우선순위 조사)
조사방법	서면 조사	서면 조사 또는 web-based 조사 (AHP 방식)
조사시기	2019년 3월 18일~26일	2019년 10월 4일~11일

(6) 전문가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및 전문가 간담회, 청소년정책포럼 등

2017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발표된 민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아동보고서, 유엔 쟁점목록과 심의결과 권고문 등 전반적인 협약 모니터링 과정에서 쟁점 분석 및 협약 이행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협의회 등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점검 및 협약이행 과제 설정 등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 FGI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도출 과정에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과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과제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발표 이후에는 협약 이행 쟁점사항과 과제에 대한 보완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7월 26일에는 아동·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전년도 연구진과 공동으로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보건복지부의 아동인권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7) 국가 승인통계 품질관리 및 각종 통계서비스 업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제402001호)로 지정되어 통계청의 각종 품질관리와 통계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통계품질진단 외에 매년 자체품질진단을 진행하여 인권실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KOSIS에 통계결과를 탑재하고 있다. 본원 홈페이지의 통계아카이브센터에 원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연구 개발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물들의 리스트를 정리하여 별권 기초분석보고서 부록 3에 제시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복지부)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의 성과지표, 사회보장통계(보건복지부), 청소년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등 국가의 주요정책 지표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3. 연구의 체계도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 그리고 주요 연구 성과 관계를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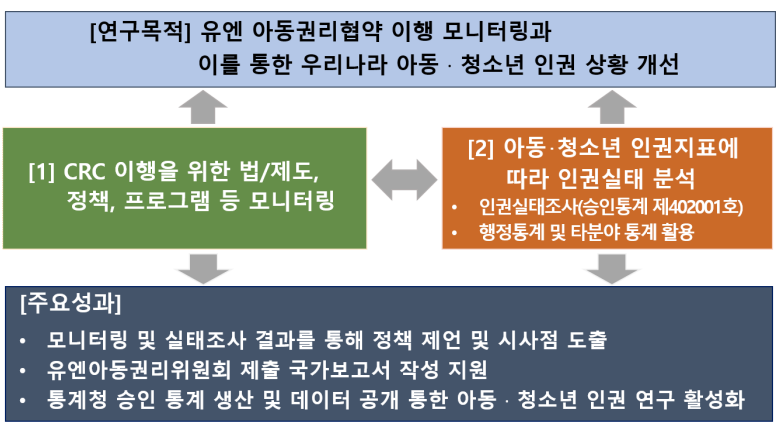

그림 Ⅰ-3-1. 연구의 체계도

이 연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사회적인 노력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5년마다 작성·제출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업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 작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 이행 점검 시스템에 따라 유엔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 제도, 정책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약 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위 그림의 '연구영역 1'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본 보고서의 Ⅲ장이 이의 결과에 해당한다. 특히, 2019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해이므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과 이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문서에 대한 답변서, 심의 결과 최종권고 발표 등 유엔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된 해이므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와 과제 등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작업은 설문조사와 행정통계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는 위 그림의 '연구영역 2'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본 보고서의 Ⅳ장이 이의 결과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119개 지표항목에 따라 지표결과를 산출하는 작업으로 이 중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지표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매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두 영역은 법·제도, 정책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개선 노력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 작동하고 있다.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과 국제인권메커니즘
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3.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의 개선

2 아동 · 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8)]

1. 아동·청소년과 국제인권메커니즘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메커니즘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1990년 9월 2일 발효된 국제인권법이다. 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망라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권조약이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세 개의 선택의정서가 있다.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이하 OPAC)와 아동의 매매·아동의 성매매와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이하 OPSC)는 2000년 채택되었으며, 세 번째 선택의정서인 아동의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이하 OPIC)는 2011년 채택되었다(OHCHR, n.d.-a).

8) 2장의 1절과 2절은 국제아동인권센터 김상원, 정병수, 김희진 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으며, 3절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제43조와 제45조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한다. 18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서, 매년 1월, 5월, 9월 세 차례 제네바에 모여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심의한다.

협약 이행 심의를 위해서 각 당사국은 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최초 보고서는 협약이 발효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이후 매 5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9]. 이러한 국가보고서는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한 당사국은 협약 이행 정기보고서에 비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이행 정보도 포함하여 보고[10]해야 한다(UN, 2000a; UN, 2000b).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는 이전 정기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검토가 있던 때부터 차기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까지 아동권리위원회의 종전 권고를 이행하고자 취한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며,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어려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그와 함께,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참고하여 협약 이행 여부를 제시하며, 법률, 법체계, 판례, 제도적 틀, 정책 및 프로그램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집단과 각 연령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조약 관련 보고서는 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에 따른 권리를 유형별로 범주화한 "클러스터"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표 Ⅱ-3-1의 협약영역 및 협약 조항 참고). 당사국은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를 이행하면서 당

9) 유엔총회 결의안 68/268(16항)에 따라 조약 관련 보고서는 2만1200자를 넘어서는 안 되며 MS Word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10) 아동의 무력충돌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8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2조에 따라,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은 각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협약 제44조에 따라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에 각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사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성과, 한계를 다루어야 한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5).

아동권리협약 제45조는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뿐만 아니라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권한이 있는 기구(other compete bodies)'도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주체로 명시한다. 이때의 권한이 있는 기구란 비정부기구(NGOs)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아동권리협약은 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NGO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인권조약이다(Ensalaco & Majka, 2005). 이에 따라 비정부기구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당사국이 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 보고서도 제출할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양한 NGO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보고서를 제출한 NGO를 초청하는 비공개 사전심의를 통해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한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9). 비정부기구의 보고서도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법률과 정책, 통계, 사례 등을 망라할 수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직접 집필하거나 집필에 참여한 아동보고서를 권장하며, 아동보고서가 제출되면 사전심의 과정에서 아동들과의 별도의 비공개회의를 진행한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4).

다만 위와 같은 심의절차는 현재 변화하고 있다. 각 인권조약 심의는 국가보고서 제출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당사국이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결과 심의가 지연되며, 그에 따른 위원회 심의도 현저히 늦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Pillay, 2012; 내바네섬 필레이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14에서 재인용). 이에 2014년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효율적 기능 강화"를 위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되며,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제안되었다(General Assembly, 2014). 약식보고절차는 기존의 단계를 축소하여, 위원회의

질의를 담은 보고 전 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 채택부터 출발한다. 즉, 쟁점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종전의 '국가보고서(State party report)'로 간주되는 절차이다. 당사국을 기준으로 각 절차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 [그림 Ⅱ-1-1]과 같다(신혜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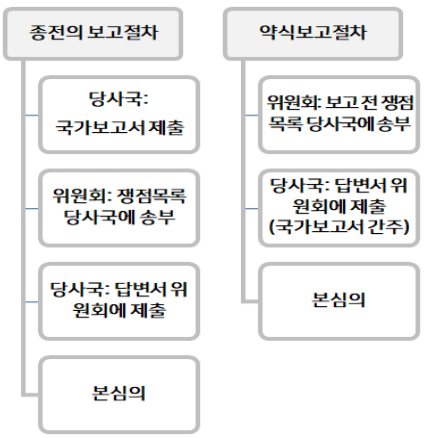

* 출처: 신혜수(2019). 약식보고절차와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의 의미와 참여방안. 유엔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p.42의 내용을 그림으로 작성함.

그림 II-1-1. 인권조약 보고절차 비교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2018년부터 약식보고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정기보고서 제출이 2019년 9월 1일 이후로 예정된 당사국부터 약식보고절차에 따른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약식보고절차를 수락한 당사국에 최대 30개의 질문을 포함한 보고 전 쟁점목록을 송부하며, 보고 전 쟁점목록에 대한 당사국 답변서는 국가보고서를 대체한다. 이 경우, NGO의 참여는 종전보다 확대되는 특징이 있는데, 사전보고서 제출을 통해 위원회의 보고 전 쟁점목록 채택에 기여하며(보고 전 쟁점목록 채택 약 3개월 전), 이후 당사국 답변서에 대한 대안보고서 제출 및 사전심의(본심의 약 3개월 전) 참석을 통해 당사국의 아동인권 이슈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식보고절차에 따를 때,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은 더욱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OHCHR, n.d.-c).

2)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1996년, 2003년, 2011년에 이어 2019년까지 총 4차례 심의가 진행되었다(표 Ⅱ-1-1 참조[11])(OHCHR, n.d.-d). 본 절에서는 가장 최근의 제5·6차 심의를 중심으로 이행절차를 소개하며, 협약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5·6차 심의를 위한 국가보고서가 2017년 12월 27일 제출된 이후, 대한민국 심의 일정도 확정되었다. 즉, 본심의가 2019년 9월 제82차 세션으로 확정됨에 따라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actors) 보고서 제출기한도 2018년 11월 1일로 정해졌다(OHCHR, n.d.-b). 위 기한에 맞춰 제5·6차 심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아동보고서를 포함하여 국내·외 다양한 NGO로부터 총 16개의 대안보고서가 제출되었다. NPO연대가 제출한 포괄적 보고서는 물론, 소년사법, 이주아동, 아동성착취 등 다양한 주제별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특히 4개의 아동보고서는 교육제도와 학교의 인권보장 문제를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OHCHR, n.d.-h). 이후, 2019년 2월에는 위원회와 정부 외 기구의 비공개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전심의와 아동회의가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쟁점목록이 채택되었다. 이때, 제5·6차 쟁점목록은 베이비박스,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가습기살균제 대책 및 스쿨미투 등 국가보고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이슈가 명시되며, 협약이행에 대한 의무이행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쟁점목록에 대한 정부답변은 8월 9일에 제출되었고, NGO도 8월 15일까지 추가의견을 제출

11) 〈표 Ⅱ-1-1〉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의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Reporting status for Republic of Korea)에 게시된 문서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출처: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Lang=EN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하며, 당사국의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문서자료가 준비되었다.

본심의는 2019년 9월 18~19일에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국방부, 법원행정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9. 10). NGO 또한 12개 단체가 본심의 현장에 참석하여 개별위원에 대한 사전로비 및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국제아동인권센터, 2019b)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본심의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며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였다(국제아동인권센터, 2019a). 특히 유튜브는 쌍방향 소통을 위한 창구로서 아동참여를 촉진하며, 아동의 의견을 본심의에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본심의를 모니터링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역사상 최초로서, 당사국 및 시민사회 협력의 의미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 II-1-1.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현황

심의	내용	제출기한	제출/회의일	공표일
CRC 제1차 심의	국가보고서	1993.12.19.	1994.11.17.	1994.11.30.
	쟁점목록		1995.11.27.	
	본심의		1996.01.18.~19.	
	최종견해		1996.02.13.	1996.02.13.
CRC 제2차 심의	국가보고서	1998.12.19.	2000.05.01.	2002.06.26.
	쟁점목록		2002.10.11.	
	본심의		2003.01.15.	
	최종견해		2003.01.31.	2003.03.18.
OPAC 제1차 심의	국가보고서	2006.10.24.	2007.04.01.	2007.07.06.
	쟁점목록			2008.02.13.
	쟁점목록 답변	2008.03.30.	2008.04.23.	2008.04.25.
	본심의		2008.05.23.	
	최종견해		2008.06.06.	2008.06.27.

심의	내용	제출기한	제출/회의일	공표일
OPSC 제1차 심의	국가보고서	2006.10.24.	2007.04.01.	2007.11.01.
	쟁점목록			2008.02.13.
	쟁점목록 답변	2008.03.30.	2008.04.23.	2008.04.25.
	본심의		2008.05.23.	
	최종견해		2008.06.06.	2008.07.02.
CRC 제3·4차 심의	국가보고서	2008.12.19.	2009.05.28.	2011.01.12.
	쟁점목록			2011.03.14.
	쟁점목록 답변	2011.07.03.		2011.08.16.
	본심의		2011.09.21.	
	최종견해		2011.10.07.	2012.02.02.
CRC 제5·6차 심의	국가보고서	2017.06.19.	2017.12.27.	2018.11.19.
	쟁점목록		2019.02.19.	2019.03.06.
	쟁점목록 답변	2019.05.14.	2019.08.09.	
	본심의		2019.09.18.~19.	
	최종견해		2019.09.27.	2019.10.03.

3) 보편적 정례검토와 아동·청소년

(1) 보편적 정례검토 이행 메커니즘

보편적 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이라 함)는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12]가 마련한 인권보장제도로 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동료 회원국들이 4년 반 주기[13]로 상호 검토(peer review)하는 제도이다[14].

12)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결의안(A/RES/60/251)이 통과됨으로써, 1946년 창설된 후 '정치화'되었다고 비난받아온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치하게 되었다.

13) 매년 48개국이 검토대상이 된다(UN, 2007(A/HRC/5/21), para. 14).

14) 이사회 제도 구축(Institution-building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 관한 결의안(A/HRC/5/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UPR을 제안할 당시 어떤 방식으로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그 중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 것이 국제노

UPR 절차 내에서 모든 회원국은 동등하게 취급되며, 특정한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이며 신뢰할만한 근거를 기반으로 회원국의 모든 인권규범 이행상황을 검토한다(Human Rights Council, n.d.-b).

유엔인권이사회는 UPR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Human Rights Council, n.d.-a).

1) 모든 인권의 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상호관련성을 촉진해야 함.
2)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 및 상호 대화에 바탕한 협력적인 메커니즘이 되어야 함.
3) 검토범위의 보편성, 그리고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함.
4) 정부 간 과정(intergovernmental process)이어야 하며 유엔회원국 주도로 행동 지향적이어야 함.
5) 검토 대상 국가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함.
6) 다른 인권메커니즘을 보완하되 중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함.
7) 객관적이고 투명한, 비선별적이고 건설적이며 비대결적인(non-confrontational), 그리고 정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8) 관련국가 또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제에 부담되어서는 안 됨.
9)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시간과 재정적·인적 자원을 고려하여 현실적이어야 함.
10) 긴급한 인권상황에 대처해야 함.
11) 젠더와 관련된 관점이 통합되어야 함.
12) 검토를 위해 제공된 요소에 포함된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각국의 개별성과 특수성 고려해야 함.

동기구(ILO)의 절차였다. 국제노동기구는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가 회원국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위반될 경우 보고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나인균, 2009).

13) 비정부기구, 국가인권기구 포함한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UPR은 회원국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호 대화(interactive dialogue) 형식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은 기존의 인권조약기구 심의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인권조약기구의 경우 비준한 당사국에 한하여 심의를 받는 반면, UPR은 특정 조약의 비준 유무와 관계없이 유엔회원국이라면 모든 인권분야를 망라하여 검토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검토는 47개의 유엔인권이사국[15]으로 구성된 UPR실무반이 검토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State Party Report)에 기반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는 여타 국제인권메커니즘과 달리, NGO가 먼저 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국가의 의무이행을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민관이 상호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UPR의 강점이다(Human Rights Council, n.d.-b).

다만 이러한 절차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약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조약기구의 업무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General Assembly, 2006: para. 5(e)). 2008년 처음 시작된 UPR은 제1차(2008년~2011년), 제2차(2012년~2016년)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제3차(2017년~2021년)심의 사이클이 진행 중이다.

UPR은 특정 조약기구 위원회가 아닌 국가들 상호간에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심의에 앞서 정확하고 다양한 심의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국가는 물론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NGO, NPO, CS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도 각종 조약기구의 보고서, 유엔특별

15)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은 유엔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선출되며 지역적 형평성(아프리카국가그룹;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국가그룹; 아시아국가그룹; 서유럽 및 기타 국가그룹; 동유럽국가그룹)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절차에 따른 보고서, 기타 유엔문서에 바탕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종전 심의에서 권고한 내용의 이행상황과 새로운 인권상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대한민국 아동·청소년과 보편적 정례검토

대한민국의 제3차 UPR은 2017년 11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8차 회기에서 이루어졌고, 2017년 11월 14일 UPR 실무그룹은 대한민국에 대한 검토보고서(UPR Working Group Review & Report)를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은 최종검토를 통해 121개 권고를 수용(accept)하고, 97개 권고는 참조(note)하겠다고 밝혔다(OHCHR, n.d.-h).

이 중 아동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참조'의견은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유사한 한계를 나타내는데, 국제인권조약을 보충하는 한편, 이슈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라"는 다수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는데(권고 8.118-121, 8.123, 8.124),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은 주한 자국대사관 등을 통해 출생등록 할 수 있고, 난민인정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라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이유로 제시한다(Human Rights Council, 2018: para. 118-121, para. 123-124).

"이주아동 구금을 중단하라"는 권고도 참조 대상인데, 취학 중인 미등록 아동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며,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명령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아동이 체류자격 연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형사범죄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금 전면중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Human Rights Council, 2018: para. 130).

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요 동향

201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하며, 아동권리위원회도 다양한 문서채택 및 의견표명을 통해 아동인권 이슈를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현재 2014년 일반토론의 날 주제였던 "디지털미디어와 아동권리"[16]에 대한 논의 및 2019년 5월 15일까지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준비하고 있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n.d.). 정보통신기술 발달, 디지털 전자매체 확산으로 인한 신종범죄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새로운 어려움에 대처하며,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모색되는 시점이다.

2019년 3월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 4(양질의 교육),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표 10(불평등 감소),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6(평화로운 사회,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고, 책임성 있는 제도), 목표 17(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쉽 활성화)과 협약의 관련성을 확인하며, 아동을 포함하여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를 명시하였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a).

나아가, 2019년 위원회의 3번째 회기에는 OPSC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며 아동성착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사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촉구하였고(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b), 소년사법에 대한 일반논평 제10호를 수정한 일반논평 제24호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권리" 채택을 통해 소년범죄에

16) 현재까지 진행된 일반토론의 날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n.d.). Days of General Discussion.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Days.aspx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대한 전 세계의 부정적 여론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표명하였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c). 특히 새롭게 채택된 2개의 문서는 성매매를 한 아동(Child prostitute)을 성매매 상황에서 착취당한 아동(Children exploited in prostitution)으로, 소년사법(Juvenile Justice)을 아동사법(Child Justice)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용어사용에서부터 아동권리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9년 7월 11일에는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보고서 요약자료가 발표되었다(General Assembly, 2019). 2014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는 자유박탈아동(Children deprived of liberty)에 대한 연구 착수를 권고하는 공식서한을 유엔총회에 전달하였고,[17] 그에 따라 2014년 12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되며 광범위한 국제연구가 이루어졌다(General Assembly, 2015: para. 51.d). 본 국제연구는 아동의 범죄, 부모의 수감, 이주상황, 분쟁상황, 대안양육 등 시설 위탁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자유박탈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자료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국가별 심의 권고문을 통해 본 인권 이슈

본 절에서는 최근 2년 이내에 협약이행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최종견해가 채택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로 다른 지역적(regional) 특성을 고려하며 협약이행을 위한 범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아시아, 유럽, 남미 국가 중 영어문서로 접근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

17) 아동권리협약 제45조 제3호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유엔 아동폭력보고서(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는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며, 2001년 유엔총회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UN General Assembly, 57/90 of 2002). 심층연구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아동폭력보고서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코피아난 사무총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유교문화권 국가가 마주하는 공통의 어려움을 살펴보며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노르웨이는 협약의 국내법 수용방안과 독립모니터링 기구의 운용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볼리비아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로서, 권리구제에 대한 아동 권리의 의미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18] 무엇보다 일반이행조치를 중심으로 도출한 각 국가의 인권이슈를 대한민국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에 따른 권고 내용과 비교하며,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일본

일본은 1994년 4월 22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19년 현재까지 총 4차례 협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2017년 6월 30일 제4·5차 국가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19년 1월 16~17일 심의를 통해 2019년 3월 5일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채택되었다(OHCHR, n.d.-f).

일본은 협약 비준 당시 유보한 제37조(c)항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성인과 분리 수용되는 연령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따라서 협약이 정하는 아동 연령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했음을 밝힌다.

2016년 2월에는 「아동·청소년 발달 및 지원 증진에 관한 법」에 근거해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재활 및 고용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아동·청소년 발달 및 지원 증진을 위한 개요"를 승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예산배정 및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였다.

무엇보다 일본 제4·5차 국가보고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아동 성매수범죄,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18) 제3선택의정서 비준 현황(출처: Child Rights Connect (n.d.) Ratification Status by Country. http://opic.childrightsconnect.org/ratification-status/underlying- ratification-data/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관련된 조치를 주요한 입법적 조치로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 및 스마트폰 보급 확산을 통한 그루밍(child grooming), 섹스팅(sexting) 등 새로운 형태의 아동성범죄 증가,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이 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일본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국가 단위의 독립인권기구가 부재하다. 2012년 11월 새로운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인권위원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같은 달 국회가 해산되며 백지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인권교육 및 협약홍보와 관련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에서 협약 및 인권 관련 국제법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을 지도하고, 외무성 웹사이트를 통해 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보급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관, 사회복지사, 공무원 및 언론 등 아동과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아동권리교육이 부재한 점은 대한민국과 동일한 한계로 나타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3).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책무는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급격히 발달하는 중대한 기간으로서, 아동노동 및 폭력, 유해하거나 불완전한 제품, 환경적 위험요소 등이 야기하는 아동권리 침해는 평생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3). 일본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논의 중임을 알 수 있다.

(2) 노르웨이

1991년도 1월 8일에 협약을 비준한 노르웨이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단계에서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적 정비를 시작하였으나, 2003년 「Norwegian Legislation」을 시행하며 협약 자체를 국내법에 도입하였고, 이는 개별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형태로 법제화 조치를 취한 대한민국과 명확히 다른 측면이다. 이러한 노르웨이는

최초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2018년 10월 6일 제5·6차 국가보고서를 5번째로 제출하였으며, 2018년 5월 23~24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4일 최종견해가 채택되었다(OHCHR, n.d.-g).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 노르웨이는 후견인 및 위탁가정 감독에 관한 규정 도입, 아동탈취 관련 법 개정, 재판절차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보고한다. 대안양육체계의 탈시설 조치 및 가정기반 양육 촉진(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2),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인신매매 및 탈취문제(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5), 모든 분야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개발 필요성(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8)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주요 과제의 한 내용이기도 하다. 협약이 당사국 국내법으로 적용되는 과정에 상충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르웨이의 입법적 조치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과제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모니터링과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노르웨이 아동평등부(The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와 이들이 국가전략 수립과정에 아동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은 대한민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유명무실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협약 이행을 위한 일관된 체계 부재, 명목적이고 제한적인 아동참여기구는 대한민국에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아동 옴부즈맨(Ombuds for Children)을 임명한 당사국이면서, 2015년에는 노르웨이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기구도 설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각 독립모니터링기구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하며, 아동이 직접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조사·해결하는 과정 마련을 추가적으로 권고하였다.

(3)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1990년 7월 10일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후 4차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2018년 1월 23일 제출된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18년 9월 18~19일 진행되었으며, 2018년 11월 29일 최종견해가 채택되었다 (OHCHR, n.d.-e).

엘살바도르의 경우, 2011년 「여성에 대한 평등, 공정 및 차별 근절에 관한 법」(Act on Equality, Equity and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11년 「이주민 및 이주 가정 보호 및 발전에 대한 특별법」(Special Act on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Salvadoran Migrants and Their Families), 「여성을 위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특별법」(Special Comprehensive Act on a Violence-Free Life for Women), 2014년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법」(Special Act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등을 입법적 성과로 제시한다. 협약 이행 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점진적인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의 아동·청소년 협의회(National Council Children and Adolescents)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제도의 최고권력기관(the highest-ranking authority)으로 언급되며,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아동보호체계 수립, 조정,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확보, 포괄적 아동·청소년 발달을 위한 살바도르 기구(Salvadoran Institute for Comprehensiv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와의 기능과 권한을 명료화하라는 위원회의 권고(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8: para 8.)를 더불어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의 정책조정 기능은 포괄적 아동권리 보장의 주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아동이 이용 가능한 청원 매커니즘이 구축되었으며, 인권옹호사무소를 위한 예산은 일반재정기금으로 확보되었

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2014년 아동의 개인청원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성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동 당사자의 직접적인 청원절차를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엘살바도르의 제도적 조치는 대한민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유사한 시기에 조직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공무원 대상 훈련과정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자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교육훈련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며, 경찰, 검사, 판사 및 국경지대 직원까지 확장하여 훈련이 제공될 필요를 짚었다.

3) 국제인권메커니즘과 한국적 시사점

국제인권매커니즘은 국제사회가 규정한 보편적 규범을 통해 각 국가의 인권상황을 진전시키는 주요 기반이 된다.

대한민국, 일본, 노르웨이, 엘살바도르의 심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비슷하게 주어진 약 30년의 기간 동안 각 국가가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할 권한을 지닌 독립인권기구가 부재한 국가도 있고, 독립인권기구가 존재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직도 있지만 그 존속여부가 불안정한 국가도 있다. 여러 개의 독립인권기구가 있어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권고를 받은 국가도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아동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지만 실체가 없는 사회적 합의로 발의조차 못하는 국가, 혹은 발의는 하지만 매번 국회가 해산하여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이때, 보편적 정례검토의 원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 국가의 이행 상황은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도는 저마다 다를지라도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통해 각 국가의 아동·청소년 인권이 증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매커니즘을 알고, 기타 유엔 인권 모니터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총체적인 과정을 통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아동인권의 변화를 찾을 수 있으며, 작은 변화는 전환을 위한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3.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본 연구는 제1기 및 제2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인권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면서 진행되는 연구로,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제2기에 해당하는 2013년도에 한 해에 지표결과를 종합생산하는 것으로 전면 개편한 틀을 기본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는 연구진 검토와 전문가 자문, 정부부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국제적 인권지표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유엔 인권지표 연구 시사점 반영, 2015년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변화에 따른 시사점 반영, 2017년 국제적인 SDGs 지표 논의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지표항목과 통계자료원 발굴 및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원리는 1차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인권영역과 하위내용(협약조항)을 각각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로 적용하고, 다음 단계로 지표체계로서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중분류 단위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25-26). 지표체계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 영역 구성의 기반이 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를 제시하면 〈표 Ⅱ-3-1〉과 같다.

표 II-3-1.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협약 4, 42, 44(6)조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제4조) - 유보조항, 입법, 국가행동계획, 담당조직, 예산배분, 국제협력, 독립적 인권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동권리와 기업(재계) 2) 협약 홍보(제42조) - 협약 및 선택의정서 홍보 및 인권교육, 권고사항 홍보 3)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 아동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일반논평 제2호, 2002)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 조치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일반논평 제5호, 2003) •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국가의무(일반논평 제16호, 2013)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일반논평 제19호, 2016) • 청소년기 아동의 권리 이행(일반논평 제20호, 2016)
2. 아동의 정의 : 협약 1조		1)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 만 18세 미만 아동 관련 보호와 권리 관련 연령(남·여아 혼인 최소 연령 포함)
		• 아동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일반논평 제14호, 2013) • 아동 의견표명권(일반논평 제12호, 2009)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3. 일반 원칙 : 협약 2, 3, 6, 12조		1)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성, 장애, 소수인종, 원주민 아동 권리 보장 조치 등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 - 입법, 행정, 사법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사형제도, 아동의 사망과 불법 살해, 자살예방 및 유아살해 퇴치, 기타 생명·생존·발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4) 아동 견해존중(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 입법, 행정, 사법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협약 7, 8, 13-17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이름과 국적(제7조) 2)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3) 표현의 자유와 정보공유(제13조)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6) 사생활의 보호(제16조) 7) 정보접근권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제17조) 8)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5. 아동에 대한 폭력 : 협약 19, 24(3), 28(2), 34,37(a), 39조	3. 폭력 및 학대	1) 아동학대와 유기(제19조) 2)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3)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제34조) 4)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5)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아동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 유무
		•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8호, 2006)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3호, 2011) • 유해한 관습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일반논평 제18호, 2014)
6.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협약 5, 9-11, 18(1,2), 20, 21, 25, 27(4)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제5조) 2) 부모의 공동 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제18조)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4) 가족의 재결합(제10조) 5)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6)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7)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8) 입양(제21조) 9)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10)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아동 대안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
7.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협약 6, 18(3), 23, 24, 26,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장애아동(제23조) 2) 생존 및 발달(제6조) 3)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4)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5)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27(1-3), 33조		6) 약물남용 보호조치(제33조) 7)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제26조, 제18조 3항) 8)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3항) • HIV/AIDS와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3호, 2002) •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 청소년 건강과 발달(일반논평 제4호, 2003)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달성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아동의 권리(제15호, 2013)
8.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협약 28-31조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28조) 2)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3)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4)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5) 휴식, 놀이,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 교육의 목적(일반논평 제1호, 2001) • 유년기 아동권리의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 휴식, 레저, 놀이,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17호, 2013)
9. 특별보호 조치 : 협약 22, 30, 32~36, 37(b-d), 38-40조	7. 특별보호 조치	1) 난민아동(제22조), 망명신청을 한 부모 없는 아동, 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 2)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3)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4) 착취상황하의 아동과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 -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제32조) -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 불법생산 및 거래에서 아동이용(제33조) -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제34조) -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제35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5) 법에 저촉된 아동, 아동 피해자, 범죄 목격 아동과 청소년사법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특수법원의 존재, 형법적 책임에 대한 최소 연령 적용 여부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구금 최소화 및 법적 및 기타 지원 신속 제공 조치(제37조 나~라) -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에 기반한 대안처벌 유무(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전문가 대상 사법처리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청소년 사법 분야 훈련활동 6)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를 비롯한 무력분쟁 하의 아동(제38조)
		•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일반논평 제6호, 2005) •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0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 거리의 아동(일반논평 제21호, 2017) • 이주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22호, 제23호, 201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공동)
10.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 제2조와 제3조의 형법 포함 여부, 치외법권 행사 여부 3) 선택의정서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 수립 4) 선택의정서 위반의 유해 효과 인식 증진 및 예방 5) 선택의정서 위반으로 인한 아동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조치 및 보상 절차 6) 선택의정서 위반 관행 목격아동과 피해아동 보호 조치 7) 선택의정서 위반 예방, 감시, 조사, 기소, 처벌 관련 국제협력 8) 선택의정서 위반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사회복귀, 본국 송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조치
11.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군대 징집 최소연령 3) 자원입대 최소연령 4)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권 행사 여부 5) 아동의 적대행위 가담 여부 6) 적대행위에 모집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조치 7) 아동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중 무력분쟁 영향 아동 식별절차 및 이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회복 지원 8) 적대행위에 모집되어 전쟁 범죄로 기소된 아동 유무

* 출처: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p.61-64 표에 이후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건을 추가 보완함.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정비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영역(대분류) 개발 과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상황 점검을 위한 인권지표체계는[19] 환경변화 반영과 각 지표항목의 자료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년간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정비 과정을 거쳐 왔다. 먼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Ⅱ-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인권지표 개발을 시작한 제1기(2006~2010) 연구(최창욱, 박영균, 2006)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인권 인프라의 5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들을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제2기 연구들(2011~2016)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인권지표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에 2011년~2012년에 수행된 임희진 외 연구(임희진, 김현신, 2011)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로, 그리고 2013년에 수행한 김영지 외(2013) 연구부터는 기존의 5개 영역에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을 추가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최창욱 외, 2018). 2015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분류 영역에 '폭력 및 학대' 영역을 추가하여 전체 7개 영역으로 정리되었으며, 제3기 연구로 이어져 오고 있다(최창욱 외, 2018).

19) 본 인권지표체계는 실제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과 연동된다.

표 II-3-2. 2006년~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대분류)

구분	제1기 (2006~2010)	제2기 (2011~2016)			제3기 (2017~)
	최창욱 외 (2006)	임희진 외(2011)	김영지 외(2013)	김영지 외(2015)	김영지 외(2017)
대분류 내용	1. 생존	-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2. 보호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발달	-	-	3. 폭력 및 학대	3. 폭력 및 학대
	4. 참여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인권인프라	3. 장애, 기초적 보건 및 복지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특별보호조치	6. 특별보호조치	7. 특별보호조치	7. 특별보호조치

* 출처: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p.58 표 수정

또한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지표체계의 영역별 구성에 따라 전체적인 지표들을 재구조화함과 동시에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대분류-중분류-소분류(지표)-지표항목'으로 보다 체계화하여, 지금과 같이 크게 7개 대분류를 기준으로, 24개 중분류, 56개 소분류(지표), 135개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7개 대분류(영역)와 이에 따른 세부 지표항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 틀과 동일하게 체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및 현황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지표(소분류)와 세부지표항목들이 많고 복잡하다는 자체평가가 있어 왔다.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검토 필요성 및 고려사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중 135개 지표(소분류)는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연구에서 오랜 기간 학계, 현장, 법·제도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진의 노력을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하기에는 지표항목이 많고 복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인권 실태를 보다 한눈에 용이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연구에서는 각 인권 영역을 대표하는 핵심 지표 선정을 위한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각 지표와 세부 지표항목들을 위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아동·청소년 인권체계 및 지표항목 검토는 크게 두 가지에 기초하여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학계, 현장(실천), 법률과 정책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pool을 통한 인권지표항목 중요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이다.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의 중요도 검토를 위해 2014년과 2017년에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한 바, 2019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하여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수행된 조사결과를 함께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2년, 또는 3년의 시간차를 두고 수행한 조사결과를 동일선상에서 검토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중요도를 보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확인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도에 차이를 보이는 지표의 경우 시의성을 반영하여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지표항목 중요도를 조사한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 대상과 내용, 방식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Ⅱ-3-3〉과 같다.

표 Ⅱ-3-3. 2014년, 2017년, 2019년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지표 항목 중요도 조사

	2014(1차)	2017(2차)	2019(3차)
조사기간	10월 13일~17일	9월 27일~10월초	3월 18일~26일
조사대상	학계, 현장, 정책 및 법률 전문가 28명	학계, 학교 및 아동인권 현장, 법률 전문가 11명	학계, 학교 및 아동인권 현장, 법률 전문가 21명
조사내용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세부 지표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5점 척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로 조사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서면 조사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인권체계 및 지표항목 검토 시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이행을 위한 인권지표 지침에서 인권 실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측정을 위해 제시한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성과(outcomes)틀(UN OHCHR, 2012)을 활용하였다.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는 2017년의 인권 연구에서 일부 탐색하였으나, 방대한 작업과 시간적 한계로 구체적인 지표항목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9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시 이때 연구내용도 함께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지표체계 및 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검토 결과

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세부 지표항목의 중요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평균값을 기준으로(높은 값일수록 더 중요) 7개 영역(대분류)별로 제시한 결과는 〈표 Ⅱ-3-4〉~〈표 Ⅱ-3-10〉과 같다. 이 조사결과는 2019년의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의 지표항목 검토에 활용되어 최종 지표체계 도출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7개 영역(대분류)별로 세 차례에 걸친

세부 지표항목 조사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한 지표체계 검토과정 및 결과를 기술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유사한 중요도를 보인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중요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①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영역(대분류)과 관련된 지표와 세부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분류 내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지표(소분류)는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였으며, 해당 지표항목 중에서는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지표항목의 평균값이 2014년, 2017년, 2019년 조사결과에서 모두 동일하게 높았다. 이 지표항목의 경우 대분류 내 12개 지표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 조사연도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에서는 우선적으로 인권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지표항목이 5점 척도에서 평균 4점이 넘는 중요도를 보였으나, '1-1-3. 인권교육' 지표(소분류) 중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은 2014년, 2017년, 2019년의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3점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의 경우는 2014년과 2017년의 조사에서는 3점대였던 중요도가 2019년 조사에서는 4점대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연구진 협의결과, 전체적인 지표항목이 많고 또 항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다른 항목들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인권교육 기관과 도움정도에 대한 지표항목을 '인권교육 경험'으로 통합하고 그 안에서 인권교육의 경험여부와 장소(기관), 도움정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표 Ⅱ-3-11〉.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참조).

표 Ⅱ-3-4.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4.61	4.55	4.50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4.36	4.36	4.40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4.71	4.91	4.70
		1-1-2. 인권에 대한 인지도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3.71	4.27	4.30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4.11	4.18	4.55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4.29	4.18	4.60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4.57	4.00	4.30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	3.54	3.09	3.60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3.79	3.73	4.30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3.96	3.91	4.25
			1-2-1-2. 차별해 본 경험*	4.18	4.36	4.70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4.29	4.27	4.25

※ [표 Ⅱ-3-4] ~ [표 Ⅱ-3-10]의 2014년과 2017년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출처는 각각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김경준 외, 2014: 218-226)와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총괄보고서'(김영지 외, 2017: 17-21)임.

②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이 영역에서는 주로 '2-4. 사생활의 보호'에 해당하는 지표항목들의 중요도가 모두 4점이 넘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나 사회에서의 '2-1. 의견표명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 전문가들이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교 및 사회에서의 참여와 학교에서의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세부항목별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2-1-2-4.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로 2014년 조사와 2017년, 2019년 조사에서 모두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다(2014년 M=4.46, 2017년 M=4.73,

2019년 M=4.55). 그 다음의 중요도를 보인 항목들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2014년 조사에서는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였다면, 2017년 조사에서는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이 해당 정책사업 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지표항목으로 부상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2-1-2-4.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가 가장 중요한 지표항목으로 조사되어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3-5.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3.75	4.45	4.40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4.39	4.18	4.45
			2-1-2-2.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		3.86	3.55	4.00
			2-1-2-3.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4.04	4.45	4.25
			2-1-2-4.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4.46	4.73	4.55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4.04	4.55	4.35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3.86	3.91	4.25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4.00	4.18	4.20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4.11	4.18	4.30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정도*		3.79	4.09	4.25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4.25	4.09	4.10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3.68	3.82	4.10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	결사·집회 경험률*	3.64	3.82	3.90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3.57	4.18	4.15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4.07	4.00	4.25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정도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4.11	4.36	4.50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4.36	4.27	4.35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4.11	4.45	4.45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3.75	3.73	3.75
			2-5-1-2. 유해매체 이용률		3.71	4.18	3.90
			2-5-1-3.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		3.36	3.55	3.40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공지정도*		3.96	4.18	4.25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4.11	4.45	4.35

지표항목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2014년과 2017년의 경우 '2-1-2-2.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와 '2-1-3-2.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 평균 4점 미만이었다. 세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4점 미만의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2-3-1-1. 결사·집회 경험률', '2-5-1-1. 매체 이용률', '2-5-1-3.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로 지표항목 포함여부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2-1-2-2.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는 응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또 학급회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치활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운영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20]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지표항목 및 조사문항에서 삭제하였다.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항목은 2014년과 2017년의 조사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으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요 지표항목임을 감안하여 기존대로 유지시켰다. 그리고 별도 지표항목이었던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를 1개의 지표항목으로 통합함으로써 지표체계를 보다 간소화하였고, '2-5-1-3.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아동·청소년 도서발행 비율)' 역시 지표 간소화를 위해 매체 이용률에 포함시키고 자료원(sources of data)을 재정리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지표항목은 설문조사 응답자 부담 경감과 함께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로 국민의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화가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의 지표항목 및 조사문항에서는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았다.

'2-3-1-1. 결사집회 경험률'의 경우 세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4점 미만의 평균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아동권리협약 제15조에 따른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도를 설문응답으로 파악하는 지표항목일 뿐 아니라, 타 자료원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되어 지표항목 및 조사문항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또한 '2-5-1-1. 매체 이용률'과 '2-5-1-2. 유해매체 이용률' 역시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나 '2-5. 정보접근권' 중분류 중 '2-5-1'의 매체 접근율에 해당되는 주요 항목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러나 '2-5-2. 정보제공정도'는 현재 강조되고 있는 '미디어 역량/리터러시'로 지표(소분류)명을 변경함으로써 시의성을 고려하였다. 기존의 해당 지표항목인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는 학교정보 공시를 통해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규칙을 탑재하고 있고, 또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정도'는 인권관련 지식

20)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73.6%의 조사대상자가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급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88.4%가 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하였으며, 학급회의 운영 비율과 참여정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최창욱 외, 2018: 164-167).

및 정보 제공여부의 경우 '1-1-3. 인권교육' 지표항목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삭제하였다. 대신 '2-5-2. 미디어 역량/리터러시' 지표(소분류)에 해당되는 지표항목에 매체이용 교육 경험을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미디어의 긍정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③ 폭력 및 학대

'폭력 및 학대' 대분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폭력 피해, 체벌 경험, 아동학대 및 방임,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등의 지표항목들의 경우 모든 지표항목의 중요도가 5점 척도에 4.5점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폭력 및 학대' 영역이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하여 상당히 심각한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지표항목은 2014년에는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M=4.79), 2017년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M=4.82), 2019년에는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M=4.85)로 '3. 폭력 및 학대'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지표항목이 대체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7년의 경우 점점 심각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더욱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이 영역에 해당되는 모든 지표항목들이 4점대를 훌쩍 넘는 평균값을 보임에 따라 올해 연구에서도 이 지표체계와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II-3-6. 폭력 및 학대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폭력피해 경험*	4.71	4.64	4.70
			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4.54	4.82	4.70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4.57	4.73	4.80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4.50	4.36	4.60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4.79	4.55	4.85
			3-2-1-3. 방임 정도*	4.46	4.73	4.75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사례 보호건수 및 보호기관 수	4.43	4.64	4.50
			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4.36	4.64	4.55
			3-2-2-3.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15	4.36	4.50

④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다른 영역보다도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지표항목들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2014년보다 2017년과 2019년에 더 중요도가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최근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보육시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대안양육, 가출청소년, 복지시설 평가 등과 관련된 지표항목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연도별로 가장 중요하게 조사된 지표항목은 2014년에는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2017년에는 입양 사후조치와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2019년에는 다시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에서 대체로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내용과 양육·보호서비스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7.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3.79	3.91	4.40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3.46	4.18	4.35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3.89	4.18	4.20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3.89	4.27	4.15
			4-2-1-2. 입양 사후관리	3.82	4.64	4.35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보호대상아동 현황	4.04	4.45	4.35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04	4.36	4.50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36	4.45	4.50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4.39	4.36	4.65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3.93	4.36	4.50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18	4.64	4.35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4.29	4.45	4.50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4.11	4.45	4.40

중분류 수준에서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에 해당되는 지표항목이 다른 중분류의 해당 내용보다는 다소 중요도가 낮았는데, 특히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지표항목의 경우 유일하게 2014년과 2017년 조사에서 4점 이하의 평균값을 보였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조사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항목으로, '4-1-1. 부모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그나마 활용 가능한 자료원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표로 보기 어려우며 더 적절한 자료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보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더 적절한 자료원을 탐색하게 되었다. 이에 통계청 승인통계인 사회조사(제101018호)[21]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

도'가 더 적절하며 직접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표항목과 자료원을 변경하였다.

또한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지표항목의 경우 전문가와의 자문회의에서 재분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가정위탁 지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보호·양육관련 시설 및 사업 운영 예산에 대한 내용임에 따라 '5-5-2-2의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지표(소분류)의 지표항목으로 이동, 포함시켰다.

⑤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항목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2014년도 조사에서는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M=4.79), 2017년에는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M=4.73), 2019년에는 2014년과 동일하게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M=4.70)가 가장 중요한 지표항목으로 조사되었다. 5점 만점에 4점에 미치지 못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낸 지표항목들을 보면,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은 2014년과 2019년 조사에서, '5-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1-2.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 관련 시설 비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4-1-1. 주관적 건강평가'는 2014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5-4-2-1. 운동 실천율'과 '5-4-3-7. 고민거리 대화상대'는 2017년 조사에서만 4점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2014년 조사와 2019년 조사에서 모두 4점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보인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지표항목의 경우, 한국

21) 본 사회조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며, 통계청 사이트 KOSIS를 통해 통계공표하고 있다.

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서 사망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결정하였다. '5-3-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의 경우는 기존의 지역사회 보건시설, 병·의원,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개소수를 모두 살펴보는 것에 함의를 찾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지표항목과 자료원을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 현황'으로 변경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기초보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보건서비스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청소년상담지원을 전담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현황'을 새롭게 신설하여 5-3-1-4 지표항목으로 추가하였다.

표 II-3-8.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4.25	4.36	4.50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4.29	4.18	4.30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4.46	4.36	4.45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3.82	4.09	3.85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4.32	4.36	4.35
			5-2-1-3. 사고 사망률	4.46	4.45	4.30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4.14	4.55	4.60
			5-2-2-2. 지역사회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3.89	4.09	4.35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4.14	4.00	4.15
			5-3-1-2. 보건교사 배치 현황	3.82	4.09	4.10
			5-3-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3.86	4.27	4.05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4.50	4.36	4.55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4.11	4.27	4.10
			5-3-3-2. 음주율	4.04	4.27	4.10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3.82	4.09	4.15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4.00	4.09	4.05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3.75	4.00	4.10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4.04	3.73	4.10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4.14	4.27	4.30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4.46	4.27	4.50
			5-4-2-4. 비만율	4.29	4.18	4.00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4.79	4.45	4.70
			5-4-3-2. 우울증*	4.54	4.64	4.50
			5-4-3-3. 스트레스 인지율*	4.54	4.36	4.50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4.57	4.36	4.60
			5-4-3-5. 삶의 만족도*	-	4.45	4.40
			5-4-3-6. 자아존중감*	4.54	4.18	4.45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4.11	3.73	4.25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 간 비교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4.71	4.27	4.55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4.61	4.55	4.45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빈곤율 포함)	4.57	4.55	4.40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4.46	4.73	4.50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지표(소분류)명에서 '국가간 비교'라는 단어는 삭제하여 지표 항목과의 명칭 중복을 피하고자 했으며, 해당 지표항목인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보다 적절한 지표인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지표의 '5-5-2-1. 취약계층 아동현황'에 포함시켰다. 이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약하고 또 다른 지표항목과 유사한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와 '5-4-3-3. 스트레스 인지율' 항목은 삭제함으로써 지표체계를 보다 간소화하였다.

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항목들의 경우 항목들 간 편차가 다른 영역에서보다 더 큰 경향을 보였고 특히 5점 만점에 3점대의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들이 많았다.

먼저 연도별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지표 항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6-1-2-1. 학업중단율'(M=4.61)이었으며, 2017년에는 '6-1-2-1. 학업중단율'(M=4.55), '6-3-2-4. 하루평균 여가활동시간'(M=4.55), 2019년에는 '6-1-1-3.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가 동일한 중요도를 보였다(M=4.40). 전반적으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학업중단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지표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여가시간이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것 역시 학업과 입시준비에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한국 사회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한 조사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영역의 지표와 지표항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들이 많아 집중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여 일부 항목들을 삭제 및 변경하였다. 먼저 '6-1-1-1. 학생취학률'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 연도별 추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연구진 판단에 따라 삭제를 결정하였다. '6-1-2-3. 학교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항목은 '6-1-2. 학교 부적응률'의 지표(소분류)에서는 삭제하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6-2-1. 학교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 지표에 더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하여 포함시켰다.

'6-2-1. 학교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은 '교육목표'에 너무 국한한 지표명으로 인식됨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6-2-1.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지표항목 역시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는 교육의 목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학교 문화-친구 간, 교사의 존중, 학교의 즐거움'과 '학교생활 만족도'로 구분하여 포함시키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2017년과 2019년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모두 4점미만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6-2-2-1. 대안교육 참여 기회'는 국내 대안교육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해당 지표(소분류)인 '6-2-2.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적합하

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진로교육 참여 기회'로 변경하였다.

표 II-3-9.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3.79	4.09	3.90
			6-1-1-2. 학생 진학률	3.79	4.09	3.90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4.50	4.27	4.40
			6-1-1-4.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4.32	4.09	4.15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4.61	4.55	4.40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4.18	4.36	4.40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	4.27	4.15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3.54	4.00	3.90
		6-2-2. 지속가능발전교육	6-2-2-1. 대안교육 참여 기회	-	3.91	3.65
			6-2-2-2. 직업교육 참여 기회	-	3.91	3.70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3.79	3.82	3.75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3.89	4.27	3.90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4.04	4.36	3.95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4.04	4.00	4.20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4.21	4.09	3.95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4.54	4.55	3.95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4.46	4.36	4.20
		6-3-3. 여가·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3.96	4.36	4.30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3.93	4.09	4.05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는 '6-3-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로 지표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수정하였고, 해당 지표항목인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는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시설 수'로 수정하여 청소년활동시설과 이용시설까지 포함하되, 청소년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다

부각시켰다.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는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이용만족도’로 변경하였다.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로 단어 수정하였고, ‘6-3-2-2.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참가율’과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의 경우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이 모두 청소년활동에 포함될 수 있어 응답부담 경감과 지표항목 간소화를 위해 삭제하였다. 동일한 사유로 ‘6-3-3. 여가·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지표와 해당 지표항목들을 삭제하였는데,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의 경우 해당 지표항목은 ‘6-3-1. 여가·문화·활동 시설 수 및 이용만족도’로 이동, 포함시켰다.

⑦ 특별보호조치

‘7. 특별보호조치’ 영역의 대부분의 지표항목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 중 평균값이 4점이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지표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2017년 조사에서부터는 대부분 4점을 훌쩍 넘는 중요도를 나타냈다. 2014년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지표항목은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M=4.61)과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M=4.61)이었으며, 2017년에는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M=4.82), 2019년에는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M=4.75)과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M=4.75)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9년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지표항목의 경우는 다른 자료원으로 대체가 어려워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리고 ‘7-4. 성적 착취’ 중분류 체계의 재정비 및 간소화를 위해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지표는 다른 지표에 해당 지표항목을 포함시키는 대신 이 지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는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지표로 옮기고 지표명에 ‘예방’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서비스 지원 정도’로 지표명을 수정하였다. 또한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 수’ 항목도 세 차례의 모든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임에 따라, 본 인권지표체계에서 삭제하였다.

표 II-3-10. 특별 보호조치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3.64	4.36	4.25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3.71	4.45	4.35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4.39	4.82	4.50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4.36	4.64	4.45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4.43	4.64	4.40
		7-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3.39	4.18	3.90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3.68	4.00	4.35
	7-2. 소년사법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4.18	4.45	4.40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4.18	4.45	4.45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3.89	4.36	4.35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4.11	4.55	4.30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3.86	4.27	4.15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4.14	4.36	4.15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3.96	4.27	4.15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3.93	4.27	4.15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4.43	4.45	4.50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4.50	4.55	4.45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2014	2017	2019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4.14	3.91	4.00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4.61	4.73	4.70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 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4.18	4.00	4.40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4.25	4.27	4.35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	-	3.64	3.95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3.57	3.36	3.95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4.61	4.36	4.75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4.57	4.55	4.75
			7-4-2-3.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	4.04	4.18	4.70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4.36	4.55	4.35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3년주기)	3.93	4.55	4.45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4.25	4.45	4.45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4.04	4.45	4.50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4.14	4.45	4.50

나. SDGs 지표와 구조, 과정, 지표체계에 따른 논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 검토와 관련하여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유엔에서 인권 실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측정을 위해 제시한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성과(outcomes)로 구분된 지표체계(UN OHCHR, 2012) 등을 재검토, 활용하였다. 먼저, SDGs 지표의 목표 중 '1. 빈곤 종식'과 관련하여 빈곤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비율 등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빈곤율의 경우 기존에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중분류 중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지표(소분

류)인 '5-5-1.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에 포함되었었으나 더욱 적절한 지표로 판단된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의 지표항목인 '5-5-2-1. 취약계층 아동현황'으로 재분류하였다.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지표의 구체적인 지표항목으로 취약계층 아동현황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현황 수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SDGs지표의 빈곤종식에 해당하는 지표들과도 그 맥을 같이할 수 있을 것이다.

SDGs지표의 목표 중 교육보장의 목표에서 정규/비정규 교육 참여 청소년 비율과 청소년의 기술 보유 및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바(김영지 외, 2017),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진로 및 직업교육 역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SDGs 지표 중 '4. 교육보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인권지표체계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중 지표항목을 '6-2-2.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수정하였으며, 해당 지표항목으로 그동안 대안교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던 것을 '6-2-2-1. 진로교육 참여 기회'로 대체하였다. '6-2-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표항목인 '진로교육 참여 기회'와 '직업교육 참여 기회'는 SDGs의 교육보장의 내용 중 "~모든 유형의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김영지 외, 2017: 46)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측정을 위해 유엔에서 제시한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성과(outcomes)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법, 규정, 제도와 관련된 구조지표(structural indicators)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이와 관련된 지표가 새로 검토될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김영지 외, 2017). 일례로, '폭력 및 학대' 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대분류)의 중분류 및 지표(소분류)와 지표항목의 유형별 구분을 살펴볼 때 구조지표가 과정지표 및 성과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의 중분류인 '2-5. 정보접근권'의 해당 지표(소분

류)는 그동안 '2-5-1. 매체 접근율'과 '2-5-2. 정보제공 정도'였다. 그러나 과도한 유익/유해 정보접근과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2-5-2. 정보제공 정도'는 '2-5-2. 미디어 역량/리터러시'로 지표명과 내용을 수정하여 과정 및 성과지표로서 더욱 의미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속하는 지표항목인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 정도'는 보다 포괄적인 정보접근 및 활용을 내포하고 있는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으로 변경하여 정보접근과 관련된 적절한 과정과 절차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 중 생존 및 발달과 관련된 세부지표들은 대부분 성과지표의 성격으로 과정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해당 영역의 지표항목을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해 올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소를 포함한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은 삭제하였다. 그 대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전문 의료기관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아동·청소년 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인프라에 초점을 두어 보다 구조적인 지표(structural indicator)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3)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019년도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관련한 제3기 3년차 연구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CRC/C/58/Rev.3) (UNCRC, 2015)에 따른 인권지표체계를 기본틀로 하여 일부 지표체계 및 항목들을 수정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이 너무 많고 분산된 지표항목들은 아동·청소년 인권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표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간결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SDGs지표 등과 함께 지표 및 지표항목들을 재검토,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표 Ⅱ-3-11〉 참조), 최종적으로 7개 대분류에 24개 중분류, 54개 소분류, 119개 지표항목으로 수정되어 일부 간소화되었으며, 일부 지표명과 항목의 경우 더욱 적절히 재분류되었다. 119개 지표항목들을 대분류와 소분류(지표)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영역인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이 11개 지표항목, 제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15개, 제3영역 '폭력 및 학대' 8개, 제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2개, 제5영역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29개, 제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4개, 제7영역 '특별보호조치' 30개에 이른다. 그 중 행정통계 및 2차 자료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항목은 76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설문조사로 결과를 생산하는 지표항목은 43개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 결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통계에 활용되고 있어 지표체계 개선작업은 큰 폭의 항목 축소보다는 지표 간결화 차원에서 소폭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사회적 관심 환기와 확산을 목적으로 한 별도 자료로 30개 내외의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요약 구성한 '(가칭)아동·청소년 인권통계'를 차년도 공표시기에 맞추어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표 Ⅱ-3-11.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전체, 사이버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1-3-2. 인권교육 경험(경험유무, 장소, 도움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1-2-1-2. 차별해 본 경험*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3.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정, 학교)*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정도(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2-5-2. 미디어 역량/리터러시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폭력피해 경험*
			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방임 정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3-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 사후관리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3-1-2.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2. 사고 사망률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5-2-2-2. 지역사회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5-3-1-2.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3.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5-3-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현황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5-4-2-2.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2-3. 비만율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5-4-3-2. 우울증*
			5-4-3-3.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3-4. 삶의 만족도*
			5-4-3-5. 자아존중감*
			5-4-3-6. 고민거리대화상대*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5-5-1-1.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빈곤율 포함)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진학률
			6-1-1-2.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3.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문화*(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학교즐거움)
			6-2-1-2. 학교생활만족도*
		6-2-2. 지속가능발전교육	6-2-2-1. 진로교육 참여 기회
			6-2-2-2. 직업교육 참여 기회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만족도	6-3-1-1.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시설 수*
			6-3-1-2.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만족도*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3. 하루평균학습시간*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7-2. 소년 사법 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3년주기)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7-4. 성적 착취	7-4-1.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1-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7-4-1-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7-4-1-3.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
		7-4-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2-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2-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3년주기)
		7-4-3.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서비스 지원 정도	7-4-3-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7-4-3-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7-4-3-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7-4-3-4.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

* 출처: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p. 65-68의 표 인용, 2019년 인권체계 검토 후 수정, 확정된 체계임.

제3장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쟁점과 과제

0. 분석개요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폭력 및 학대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보호조치

3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쟁점과 과제[22)]

0. 분석개요

2019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 30주년을 맞는 해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해이다. 2011년 제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후 8년만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간단체와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관심이 컸다.

한국은 2017년 12월 유엔에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국가보고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민간단체와 아동당사자,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박보고서가 제출되게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민간단체와 아동·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이들과 비공개 사전미팅을 개최하여 국가보고서의 쟁점을 분석해낸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도출한 쟁점목록에 대해 추가

22) 3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구성·운영한 전문가협의회에서 집필하였다. 김형욱 시민인권보호관(서울특별시청)이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전경숙 교수(평택대학교)는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및 7) 특별보호조치 중 다문화와 노동분야를, 이승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 폭력 및 학대, 7) 특별보호조치 중 성매매와 소년사법 등을, 김미숙 교수(전 서울기독대학교)는 5)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를 집필하였다. 분석개요는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전문가협의회는 제5·6차 유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2011년 유엔의 3·4차 권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권고 이행 상황,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적 견해, 유엔이 제기한 쟁점목록, 그리고 유엔의 최종 권고사항 등을 일관되게 검토·분석하여 향후 과제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쟁점에 대한 답변 중심으로 추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추가보고서에 대해서 또다시 민간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판적 견해를 견지한 민간보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우리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의제가 형성되고 정책화 작업이 시작된다. 이 장에서는 2017년 12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부터 2019년 9월 18일~19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일 최종 권고문이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정부, 민간,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유엔제출 문서들을 검토하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쟁점을 분석하고, 민간단체가 제기한 쟁점에 대한 이해 제고와 협약 이행과제 논의를 위해 협약 민간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1) 협약이행 분석을 위한 작업과정

연구진행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 5인(내부 1인 참여)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 영역별로 쟁점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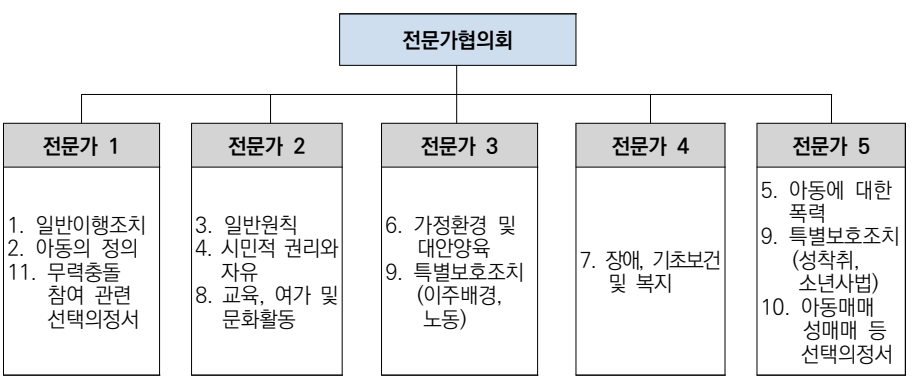

* 주: 그림 안의 숫자는 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 상 순서에 따른 영역별 번호

그림 Ⅲ-0-1. 협약 이행분석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가협의회 회의를 통해 제5·6차 국가보고서, 7건의 민간보고서, 추가 민간보고서, 4건의 아동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추가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표 Ⅲ-0-1) 민간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한 청소년 9명과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민간보고서와 아동보고서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였다.

표 Ⅲ-0-1. 협약 이행분석 회의 개최

회의명	날짜	비고
전문가협의회	3.19	
전문가협의회	4.17	
전문가협의회	6.03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공동개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1그룹	6.10	FGI
전문가협의회	6.13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공동개최
전문가협의회	6.14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공동개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2그룹	6.18	FGI
청소년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1그룹	6.22	FGI
청소년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2그룹	6.22	FGI
전문가협의회	6.27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공동개최
전문가협의회	9.24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이 발표된 이후에는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11.7, 11.12)를 통해 권고사항에 대한 분석과 협약 이행 쟁점과 과제에 대한 보완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동보고서와 민간보고서에 작업에 참여한 FGI 대상자들의 명단은 〈표 Ⅲ-0-2〉와 〈표 Ⅲ-0-3〉과 같다.

표 Ⅲ-0-2.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인적 특성

구 분	사례연번	소속	연령	성별	종사경력
그룹 1	전문가 1	공익변호사단체	만 33세	여	만 5년
	전문가 2	공익변호사단체	만 34세	여	만 7년
	전문가 3	아동단체	만 35세	여	만 7년
	전문가 4	위기아동지원기관	만 32세	여	만 2년
그룹 2	전문가 5	아동단체	만 44세	여	만 8년
	전문가 6	아동인권단체	만 31세	여	만 4년
	전문가 7	전 아동단체	만 38세	여	만 7년
	전문가 8	아동인권단체	만 39세	남	만 10년
	전문가 9	아동단체	만 42세	여	만 14년

표 Ⅲ-0-3. 청소년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인적 특성

구 분	사례연번	소속	연령	성별	학년	지역	비고
그룹 1	청소년 1	아동총회 의장단	만 16세	남	고1	인천	아동보고서
	청소년 2	아동총회 의장단	만 16세	남	고2	대전	옹호활동
	청소년 3	아동총회 의장단	만 17세	여	고3	서울	아동보고서
	청소년 4	아동총회 의장단	만 18세	남	대1	서울	아동보고서
그룹 2	청소년 5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만 15세	여	중3	제주	아동보고서
	청소년 6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만 15세	남	고1	서울	아동보고서
	청소년 7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만 17세	여	고2	부산	아동보고서
	청소년 8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만 17세	남	고3	인천	아동보고서
	청소년 9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만 18세	여	고3	서울	아동보고서

(2) 협약이행 분석 자료

민간단체, 아동·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 민간보고서는 협약의 모든 조항을 다룬 보고서와 이주배경, 소년사법, 성소수자, 성착취 등 세부 주제별 보고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표 Ⅲ-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분석 자료(유엔에 제출된 보고서 중심)

구 분	자료명	비고
국가보고서	대한민국정부 (2017.12.2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세종: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2019.8.9).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추가보고서). 세종: 대한민국정부.	
시민사회보고서 (7건)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연대 보고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아동권리실무그룹 (2018).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의무 : 아동 인권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난민인권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2018).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천주교 인권위원회·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2018).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	
	십대여성인권센터 (2019.1). 성 착취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제보고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8). 한국의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십대여성인권센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19.8).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시민단체 추가보고서. 서울: 국제아동인권센터 외.	추가 보고서
아동보고서 (4건)	Save the Children (2018). 2018 아동의 목소리.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2018).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2018). 아동에 대한성적착취와 성적학대(#스쿨미투)에 관한 NGO보고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8). 대한민국아동총회 출신 아동들이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는 아동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8).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2019.8).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5·6차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추가 의견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10.3).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세종: 보건복지부.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주요 쟁점과 이행성과 평가

(1) 인권일반(일반이행조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2013년에는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대한민국정부, 2017: para. 3), 입양제도를 보완하여 2017년 8월 협약 가입 당시 유보하였던 제21조(a)항의 유보철회 절차를 완료하였다. 또한 정부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상소권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유보철회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4).

또한 정부는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과 관계부처 의견 조정 및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 평가 등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4). 그리고 협약 이행을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4월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 2월에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아동청소년인권과'로 확대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제도화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을 갖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협약을 반영한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희망센터와 함께 인권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21-23).

그러나 협약이행을 위한 정부의 일반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높지 않다. 아동관련 법률은 산발적으로 제정되어 있고, 협약 이행은 여러 행정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협약 이행을 포괄적,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2). 또한 협약이 실제 법원 판결에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고(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기능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4).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아동권리위원회'는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독립 모니터링 기구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나 절차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7). 협약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해서도 법령 상 근거 규정 없이 시행되고 있고, 협약을 알고 있는 아동 비율은 대부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동권리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3-14).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지적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3), 2017년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된 아동청소년인권과가 2년 기한의 한시조직으로 업무 성과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과의 존속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아동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은 불안하다는 의견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11).

(2) 일반원칙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개별 국내법들과의 법체계적 조화 등을 고려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33)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지만 국제인권기준 및 해외입법례와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연구하여 합리적 입법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

그러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을 과제로 명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고, 국적, 인종, 및 성적 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9: para. 1).

정부는 2016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평가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을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시범평가 후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표를 마련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0). 그러나 정부가 2019년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수립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 제도가 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21-22).

현재 아동의 의견진술권 확대를 위해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이 있는 모든 재판과정에서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018년 3월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20).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해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통과 이후의 법 시행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단계 등에 따른 적절한 의견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41).

정부는 2018년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였고, 2019년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6).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 2월 시행)에 따라 아동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5).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피해접수부터 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 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와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9년 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모든 살생물제와 그 함유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9). 그러나 동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화학물질이 아동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위해성 관리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고, 성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제조·판매되는 제품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예방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부재하다(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9: para. 6).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 생활환경에서 접할 수 있고, 아동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아동에게 특화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39).

2) 협약이행 과제

(1) 인권일반(일반이행조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일반이행조치와 관련하여 협약 제21조(a)항의 유보 철회를 환영하지만, 제40조 (2)항 (b)(v)조의 유보철회를 신속히 할 것(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6), 재판절차에 협약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7),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 사무국 설치를 통해 인지도를 증진시키고, 권한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9).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①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법적 지위 확보, ② 진정 접수 및 조사권한 강화, ③ 인지도 제고 노력, ④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⑤ 적정한 자원을 투입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8: para. 12). 협약의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권교육 제공을 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배분,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 대상 훈련 제공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3).

따라서 정부는 협약을 이행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이 통합적,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조치로서, 첫째, 상소권 제한과 관련한 협약 제40조 (2)항 (b), (v)조의 유보철회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둘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지원을 강화하여 정부부처의 협약이행과 관련한 정책이 종합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행정부처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별개로 독립인권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인권과(부서)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협약이 사법판결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 종사자들 대상의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 아동·청소년관련 인권(권리)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칭)인권교육법」 제정 및 국가차원의 인권교육원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차별금지 원칙 이행과 관련하여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6),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근절 및 방지를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보육시설,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국가자원과 관련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학교 내 성적에 근거한 차별 금지,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서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제정 및 관행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7).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행과 관련해서는 아동영향평가 시스템 마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아동참여를 늘려 아동영향평가 시스템의 적용을 확장할 것, 각 분야에 있어 아동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8).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한 건강상 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학교 및 보육시설의 미세먼지 및 석면에 대한 불충분한 모니터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구제와 배상에 대해 우려하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9),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하고, 모든 보육시설 및 교육환경에서 실내 공기 질 및 아동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0).

아동의 의견 존중 이행과 관련해서는 성적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소송법」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모든 쟁점에 대하여 아동이 의견을 표출함에 있어 연령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1).

따라서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일반원칙이 아동·청소년의 모든 권리에 적용되도록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는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이행과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삶과 복지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홍보,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등의 철저를 기해 동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소송법」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함은 물론 모든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기후환경 변화 및 일상생활 속의 위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일반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영역별 아동권리 실현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특히 차별문제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에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29). 그러나 8년이 지난 2019년의 위원회의 권고내용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변화는 없다. 정부의 법률제정에 대한 소극적 대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활동이 있다하더라도 정부는 법률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절차, 성과 등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해서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연령제한 없이 아동이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 하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의 생활공간에서의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공기질 개선, 화학물질 관리,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된 모니터링 강화 및 구제 등을 권고한 배경에 주목하여 안전문제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주요 쟁점과 이행성과 평가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동은 출생 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등록)할 수 있으나, 외국인 아동 등에 대한 출생신고(등록)제도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아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출생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23). 그리고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24). 또한 정부는 2018년부터 인터넷 출생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령이 부재하여 분만병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산모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출생신고율이 높지 않아 2019년 5월에는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정보를 국가기관에서 통보받음으로써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 불가피한 경우 비밀출산을 허용하여 부모와 아동의 출산 및 출생기록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익명) 출산제'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25-26).

그러나 출생등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불가하다(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9: para. 8). 그리고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진전이 없으며, 더욱이 난민아동을 포함한 외국 국적 아동은 고려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나 법무부는 현재 발의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도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계속하여 반대한다면 2020년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

자동 폐기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다(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9: para. 9)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전히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출생통보제도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49).

정부는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고,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서는 학생의 정치 및 사회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학교규칙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63). 특히,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보장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는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64). 그러면서 교육부는 2018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인권 전담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인권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27).

학교에서의 사생활 검사 및 개인정보 공개를 경험한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용모, 복장 검사, 징계사항 및 시험성적이 공개된 경험은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정된 곳은 네 곳에 불과하며, 2018년 9월 발의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제정안도 2019년 7월 도의회 폐회로 자동폐기 되었다. 당시 반대 이유도 학생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는 성관념을 왜곡할 수 있고, 학생인권만 중시하면 교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9: para. 10). 그리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참여권한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9: para. 12).

학생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명시적으로 학생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이 교육목적 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53-54). 최근의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아동인권과 관련된 거짓 정보, 혐오차별에 적극 대응하고, 또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인권규범 제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6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협약이행 심의과정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아동들은 아동에게도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고, 성적에 상관없이 참여권이 보장되며, 성적을 포함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보호되는 세상을 바라며,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인권조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학생인권조례 조항에 학교와 교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이행 여부를 검토(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참여과정을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아동의 사적기록물(성적포함)을 동의 없이 공개하지 말 것, 아동과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향상시킬 것,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생참여를 보장하고,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요구하였다(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2018: 25).

2) 협약이행 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온라인 출생등록 및 신고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출생신고가 보편화되고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미혼부의 친자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 모니터링 기구 설치 등 미등록 출생 파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출생신고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2). 또한 베이비박스가 아동을 익명으로 유기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대안으로 기밀이 유지되는 병원 출산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3).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참여를 장려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투표 가능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학생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법적, 관행적으로 모두 보호하고, 사전 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5).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첫째, 아동의 안전과 삶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교육, 보건, 복지 등 서비스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공적기관에 출생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지역사회 인권규범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인권구제 시스템을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

해 현행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아동·청소년이 정치참여를 통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는 학교규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정부와 교육자치단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폭력 및 학대

1) 주요쟁점과 이행성과 평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와 관련된 협약 조항으로는 아동에 대한 체벌, 고문 등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제19조), 아동학대, 유기 및 어떠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해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를 포함하고 있다(UN, 1989).

체벌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가정·학교·기타 기관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고,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며, 체벌의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 및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훈육 장려방안을 마련하며, 피해아동이 처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41-43). 이에 정부는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범죄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체벌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70-72).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2016년에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73-74). 대안적 훈육을 위해 체벌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체벌사례를 신고하는 제도도 운영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73-76).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체벌을 비롯한 아동학대가 범죄이고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은 학교의 직접체벌만을 제한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간접체벌이나, 기타 형태는 사실상 금지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민법」 제915조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체벌이 여전히 허용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안적 훈육방법 장려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46-47)(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27). 또한 각종 캠페인과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서학대 및 경미한 학대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호자, 교사, 관련 종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49).

학대·폭력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에 필요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44-45).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13호를 고려할 것, 유엔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및 특히 성별에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할 것,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과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 금지법 도입할 것,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유

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46-49). 이에 정부는 2016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24개 직종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확대하였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 보호조치를 확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80-82). 또한 정부는 2015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지원으로 전환하고, 지역아동전문기관 수는 2011년 43개소에서 2017년 60개소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4년 36개소에서 2017년 54개소로 확대하였다. 학대피해아동보호와 행위자 상담을 위해 임상심리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였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도 개소당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83-85). 정부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2014년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2016년부터 전국 모든 검찰청에 '아동학대범죄 대응전담검사 책임수사제'를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87-89).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14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 2016년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였고, 2015년부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유관기관 간 체계적 정보 연계·관리를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83-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규제와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의 국가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아동학대의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양한 입법과 사법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고, 재학대 비율은 줄지 않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는 부족한 실정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58-61; 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22,25). 아동보호기관의 증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적 편차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23). 사이

버폭력이나 학생 간 또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이 부재하다. 학교폭력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심판, 재심청소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26).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정부 대책은 정부부처가 유기적 연계의 한계로 인해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59).

2) 협약 이행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가 등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 온라인 폭력과 학교폭력 등의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가정내 재학대의 비율이 높고,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 아동학대의 신고율이 저조한 점, 아동학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모든 형태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 아동학대에 특화된 보호기관과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6).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폭력에 대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포괄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며, 간접체벌과 기합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참여적인 형태의 양육방법을 마련하며, 아동학대에 특화된 아동보호기관 및 전문가를 확대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7).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체벌뿐만 아니라 간접체벌, 기합 등의 학대 행위 등도 근절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의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재학대나 방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체계가 보다 공고해져야 한다. 아동학

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국가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간접체벌, 기합 등의 체벌까지 모두 금지할 수 있도록 모든 체벌이 금지되기 위해 입법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운영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간접체벌 형태들을 전면 금지하고,「민법」제915조의 징계권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가정 및 학교에서의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입법적으로 선언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학대, 경미한 학대에 대하여도 국민적 민감도를 형성하기 위해 보호자, 교사,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 수사 및 사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폭력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서적 학대, 성학대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체벌의 대안으로 가정 및 학교를 중심으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참여적인 형태의 훈육방식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제재와 분리를 통한 갈등유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체계(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중심의 문제해결, 화해 프로그램 운영)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 보호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인구비례 단위로 전국에 설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에 비례하여 증설해야 하며, 장애아동이나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전문화된 쉼터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상황 속에서 피해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폭력과 아동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아동폭력 관련정책과 부처간 업무연계를 위해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폭력예방을 위한 지속적 정책이 마련되고 이를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며, 폭력과 학대에 관한 국가통계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주요 쟁점과 이행성과 평가

가정환경과 부모의 책임(제5조), 부모지원 및 아동돌봄 서비스(제18조)와 관련한 협약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부모가 최적의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2013년부터 무상보육·교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3). 또한 부모의 가계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만 0~6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9년부터 보편지급(만 6세 이하의 모든 아동)으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다. 이 외,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4년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4).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도 정부 정책의 한계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일반 근로시간에 맞추어져 있어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부모의 경우 아동 돌봄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은 2017년 기준 남성근로자 전체의 12.4%에 불과하여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18: para. 61-62).

부모와 함께 살 권리(제9조, 제10조)를 보장하고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제20조)과 관련한 협약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3년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이혼가정 자녀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해 2015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7). 가정 내에서 아동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설보호아동의 원가족 복귀를 위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016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아동이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8-101).

면접교섭권 보장 및 대안양육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는 있다. 이혼가정 자녀의 부모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한 면접교섭센터가 2019년 현재 전국에 3곳만 설치되어 있어 부족한 상황이고, 대안양육기관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이지만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주거급여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있어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양육비 보장 및 원가정과의 관계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부족한 금액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공동생활가정에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전문요원도 배치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66-70).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소송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비 미확보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03).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원활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가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에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우며 실제 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25.8%에 불과하여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71).

입양(제21조)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원가정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집중된 결과, 2011년에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2012년부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입양 동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 운영을 통해 미혼모아동의 입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과정 중 청소년 미혼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동의 철회권을 보장하였으며, 입양될 아동의 연령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 본인이 합의한 경우에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07-109), 양자가 될 13세 미만 아동의 의견청취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40). 입양아동은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서명한 후, 2016년에는 동 협약 이행법률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이행입법 준비와 함께 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07-111).

입양에 관한 정부차원의 공적 책무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었지만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입양여부 결정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7일간의 숙려기간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13세 미만 아동입양은 법정대리인의 승낙만으로 입양이 결정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입양아동 대다수가 미혼모 자녀이지만 미혼부모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하여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부족한 현실이다. 국외 입양의 경우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가 없고, 특히「입양특례법」개정 전 국외로 입양된 입양인 중 국적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은 2017년 8월 기준 25,996명에 달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 중 친생부모 동의하에 정보가 공개된 건수는 1,417건으로 16.8%에 불과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73-77).

수용자 가족자녀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수용자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자녀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52개 교정기관의 수형자와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캠프 및 가정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부터 모든 교정기관에서 수용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수형자 가족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14-115).

그러나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마련된 곳은 전국 7개소에 불과하고 공휴일 면회가 불가하며, 수형자 가족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경우도 정보부족과 간헐적인 시행으로 실효성이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교도소의 경우 수감자 3,000명 중 연 10가정에 한해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78-81).

2) 협약이행 과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과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가정환경(para. 31), 가정환경 상실아동(para. 32)과 입양(para. 33), 불법이송 및 미귀환(para. 34), 수감자 자녀(para. 35)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가정환경에 대하여는 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시설 이용권 보장, ②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강화, ③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이혼가정 자녀의 면접교섭권 보장, ④ 양육비 이행 확보 및 강제 이행명령 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⑤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 및 차별 금지 등을 권고하고 있다. 가정환경 상실아동에 대하여는 ① 대안양육 서비스의 질제고 및 원가정 복귀지원, ②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가출아동 보호 강화, ③ 아동의 연령과 의견을 고려한 대안양육 환경 결정, 아동학대 예방 및 진정·신고 절차 점검, 원가족 연계 및 퇴소 후 자립지원, ④ 후견 절차의 간소화 및 후견인의 보호능력 강화 등을 권고하였으며, 입양에 대하여는 ① 입양 시 아동 최우선의 원칙 고려 및 미혼모의 자발적 동의, ② 미혼모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③ 입양기관의 투명성 강화 및 규제 완화, ④ 입양 및 파양 후 모니터링 강화, ⑤ 입양아동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권 보장, ⑥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및 해외입양법 제정 고려 등을 권고하였다. 이외, 불법이송 및 미귀환과 관련하여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권고하였으며, 수감자 자녀 보호를 위하여 해당 자녀의 부모 방문권 보장과 부모와 함께 구금시설에 머무는 아동의 교육권 및 건강권 보장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1-35).

이상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가정위탁 보호제도를 활성화한다.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보호대

상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일반가정위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아동 수의 증가와 동일하게 시설보호 아동 수는 늘어나는 반면, 가정위탁보호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탈시설화 추구하는 사회적·정책적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의 92.5%가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아동으로 일반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7.5% 정도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김영지 외, 2017: 558). 시설보호가 증가하고 가정위탁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개선과 아울러 일반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양육보조금의 현실화를 비롯하여 각종 세제혜택 등의 대안을 모색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설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확대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도 존재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70). 시설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의 차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에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고, 가출청소년 쉼터의 경우 보호가 종결된 청소년의 자립정착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자립지원 정착금의 상향 조정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며, 공동생활가정과 가출청소년쉼터에도 보호 종결아동의 자립지원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파양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입양특례법」 시행 후 정부에서는 중앙입양원을 통해 국내외 입양의 사후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성립 후 1년간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행되고 있지만 입양 후 파양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2016년 833명에 달하며 친양자 파양 또한 40명을 기록하여 친생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친양자 아동의 보호 공백 문제가 제기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36). 입양 후 아동의 적응 및 발달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으로 1년이 충분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간연장을 포함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되며 입양 후 적응상태 및 파양관련 정보 수집을 더욱 체계화하고 파양 원인별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파양을 예방하고 파양 후 보호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수감자 자녀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용자 자녀의 접견은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이 가능하고, 수용자가 유아 양육을 허가받은 경우 교도소장은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수감자 자녀의 부모 방문권 보장과 부모와 함께 구금시설에 머무는 아동의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마련된 곳은 전국 53개 교정기관 중 7개소에 불과하며(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80), 일정면적의 육아거실이 상시적으로 마련된 곳은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 뿐이다(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9: para. 14). 수감된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접견실을 확대하고 아동의 부모면접권 보장을 위해 접견절차와 운영방법을 개선하며, 교정시설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다섯째, 아동유기를 예방하고, 미혼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의 음성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건강 위험과 태아 유기 및 입양 강요 등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2). 그러나 인공임신중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입법적 조치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자녀 직접양육을 원하는 미혼부모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출산 후 1주일간 모자보호지, 입양철회 비용, 직접 양육 시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정부정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포함하여 제도 및 서비스의 개선과 지원규모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주요 쟁점과 협약이행 성과 평가

장애아동(제23조) 관련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기반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기간을 유치원(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로 하였고, 0~2세와 고등학교 이후 전공과정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16).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4차: 2013~2017, 5차: 2018~2022)을 수립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을 신·증설하였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증원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17). 특수학교는 2010년 150개교에서 2018년 175개교로 증가하였고(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8),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수는 2016년 10,065학급에서 2018년 10,676학급으로 611학급이 증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6).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2016년 장애학생의 70.5%에서 2018년에는 71%로 2,454명이 증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6).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다운 학교(통합교육 중점학교, 74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7).

장애아동의 통합교육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도 정부 정책의 한계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통합교육의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82).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담당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한데, 일반학교 내 장애아동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통합교육 담당교사 52,773명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6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82).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 장애아동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도 구축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82-85). 그리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발표되었으나 세부실행계획이나 관련 예산 확보계획은 불투명하므로 이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38).

아울러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뿐 아니라 건강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 의료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보장이 필요하고(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38), 님비 현상으로 지역 내 장애아동 지원시설 건립 반대에 대해서 정부가 뚜렷한 갈등해소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39).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와 관련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아과 진료와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64).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센터 설치를 법제화하였고. 어린이병원의 건립을 지원하였다. 2018년 현재 10개의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설치되었고, 2016년에는 5개의 어린이병원만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7개로 늘어났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7).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신생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대사 이상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4).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 모든 아동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는 무료건강검진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5-126).

이처럼 정부는 아동 건강증진 및 보건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과제들이 있다. 영유아를 위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증설하기는 했지만 센터 수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4%에 불과하다(의약뉴스, 2019. 6. 14.). 특히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 공급이 적은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전문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하다. 그리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 2018: para. 87-89).

한편, 학령기 아동의 건강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의 건강관리 주체는 연령대별로 차등화된 상태로 영유아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반면, 학령기 아동의 교육부가, 학교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관리 주체가 분절화되어 있어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기적인 건강관리가 용이하지 않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88). 그리고 의료혜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는 부모가 등록된 체류자인 경우는 부모의 건강보험가입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부모가 기타 비자 소지자인 경우 취업이 제한되어 있어 건강보험가입자도 적은 현실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86). 이러한 가정의 이주자녀의 경우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편, 특별관리대상 및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88). 이를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수를 파악해야 하고,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아동의 생명권 및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40). 정부가 아직까지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중증 및 희귀질환 아동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수요에 부응할 만큼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당뇨병 및 소아암 아동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중증 및 희귀질환 아동을 둔 가족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권(제24조)과 관련해서는 태아 건강 문제와 아동의 건강권 보장도 주요 쟁점이 된다. 특히, 임신 중인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108). 부모가 건강보험 지역가

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이라도 아동은 사회보장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아동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116).

아동의 건강권(제24조), 생존 및 발달권(제6조)의 보장의 일환으로 정부는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였고, 2009년부터는 저소득아동을 위해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범죄피해가정 아동(5~18세)을 대상으로 월 8만원 내외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8).

그럼에도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 등은 사교육의 일환이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시간은 길어서 운동 등의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1주일에 하루 이상(30분) 운동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이처럼 일반계층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모두에 있어서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적인 활동을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기반한 아동정신건강 관리정책 및 자살예방시스템 개발을 권고 받았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65).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19). 그리고 3년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이를 온라인조사로 변경하여 접근용이하도록 하였고,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0).

자살과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였고, 사후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응급실 수를 2018년 52개소에서 2019년 63개소로 확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1). 또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고(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2018~2019년)하여 자살예방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2). 이러한 대책은 아동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및 대응책이다.

그럼에도 취약아동의 자살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자살의 근본 원인을 다룰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29). 아동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 초기검진 및 치료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고, 현재는 부족한 아동정신의료기관을 지역사회에 증설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102).

청소년 보건서비스에 있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66). 이에 대해 정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음주와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2),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담배 제조 및 판매 규제를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3).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확산을 홍보하기 위해 '로그out 가족in' 캠페인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4).

그럼에도 아동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10~19세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 급증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92-93). 도박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중 3만명은 심각한 도박중독 수준에 있고, 12만명은 위험 수준의 도박문제를 가지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94).

보다 실효성 있게 아동에게 음주와 흡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고, 담배, 술 등 유해물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42). 아동의 중독성 요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기 위해서, 학교 안밖의 음주와 흡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간접흡연의 아동에 주는 폐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92-94). 아동의 게임 및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미 중독된 아동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92-94). 이와 동시에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도박성 게임 이용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43).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학교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68). 정부는 2011년부터 체험형 성교육 기관인 '성문화센터'를 수립하였고, '학교 성 인권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9). 2018년에는 '학교 성 교육 표준안'을 수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럼에도 표준안의 내용에는 이분법적 성역할과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내용이 남아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90). 이에 학교 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90). 나아가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90).

사회보장 및 생활수준과 관련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계층간 평등과 형평성 보장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69). 유엔에서는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69). 이에 대해 정부는 2013년부터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

을 시행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5). 그럼에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상태이고(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95-97),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46),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48).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47). 현재 다함께 돌봄사업 등 여러 기관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6-141). 물질적 빈곤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반면, 주거빈곤아동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거빈곤아동을 위해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빈곤층을 위해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42, 45).

그럼에도 아동주거빈곤대책은 다른 빈곤대책에 비해서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동의 10%에 해당하는 94만명 가량의 아동의 최저수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에 있다(최은영 외, 2017).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96-97). 그리고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곤아동의 삶의 현황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4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0a).

이외에도 빈곤아동과 관련해서는 한부모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44), 한부모가족의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49), 한부모시설 중 청소년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 확보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49).

2) 협약이행 과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장애아동(para. 36), 건강 및 보건서비스(para. 37), 정신건강(para. 38), 청소년 보건(para. 39), 생활수준(para. 40) 부분에서 제기되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①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할 것, ②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 등 장애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③ 학교편의시설, 스포츠와 여가 장소, 통학수단, 훈련 및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 배정 등,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제공할 것, ④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권고하였다.

아동의 건강과 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는 ① 취약계층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② 이주아동을 위한 예방접종 개선, ③ 당뇨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 강화를 권고하였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자살 예방 및 아동의 정신적 안녕감 향상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 보건과 관련해서는 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대책 강화, ② 출산 및 산후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 등을 통한 청소년 임신 대응 등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수준과 관련에서는 ①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보장할 것, ② 빈곤아동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곤층아동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③ 아동의 주거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이상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아동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 통합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 비하여 통합교

육의 질적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임해주, 서효정, 2016).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서 벗어나서 심리사회적 통합과 교육과정적 통합이 필요하다(김주영 외, 2001; 임해주, 서효정, 2016에서 재인용).

둘째, 취약한 아동을 위한 건강권 보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아동에는 미등록 이주아동, 희귀질환아동, 중증질환아동, 비만아동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의 건강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건강취약 아동을 위해서 예방적 건강검진강화, 어린이 병원 확충, 소아응급의료센터 확대, 소아 본인의료비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어린이병원은 2019년에는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부족한 장애아동 재활병원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43).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료 부분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한다(관계부처합동, 2019).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만아동 관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삶의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2018년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9: para.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낮은 삶의 질은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파악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9).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확보하고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입시경쟁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낮아지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몰입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16년 현재 유아(3~9세)의 17.9%, 청소년(10~19세)의 30.6%로 파악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9).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체형 건강문제 등 새로운 위해요인 대두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9). 각종 중독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였고,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을 수립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3).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강화(의무예방교육기관 어린이집까지 확대, 교육실시결과 제출 의무화 등), 국제기준에 따른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수칙 개발·보급, 부모 코칭교육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중독이 저연령화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를 오히려 학습적이거나 비폭력적, 비선정적인 게임 등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 게임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조연하, 2012). 또한, 기존의 예방, 상담, 치료위주의 협의적 대응전략 및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인터넷 등의 기기의 교육적 이용, 대안문화활동의 제시 등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조연하, 2012).

마지막으로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을 매우 낮은 편이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은 94만명 이상(전체 아동의 9.7%)이 되고 있다(최은영 외, 2017). 아동의 주거빈곤문제는 그 영향이 장기적이고 중층적이어서 해결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어린이재단, 2013). 현재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이 과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는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의 10%가량이 주거빈곤한 상황이다. 이에 아동주거빈곤 가구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택 개량사업 대상가구 선정 시 아동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최저주거기준을 미충족한 주거에 대한 임대를 제한하거나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집행력과 강제성을 강화한다(어린이재단, 2013).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에 살 경우 벌금 및 임대금지 등 실효성 있는 강제규정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도 병행한다(어린이재단, 2013). 그리고 전국적으로 편재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밀집지역을 조사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어린이재단, 2013).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주요 쟁점과 이행성과 평가

정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17년 3월 '경제 · 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유아기 학습결손 조기 예방,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관련 정책 지원을 본격화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43). 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 진학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위주의 대입전형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전형준비를 위한 부담이 크고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입전형 간소화 등 전반적인 입시제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밝힌 바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50). 이와 함께 2017년 3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켰고,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함께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 교육체제와 장기 교육비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고,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동권리 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교육제도 개선 노력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1-52).

또한 정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2019년 5월 놀이정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하반기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놀이 공간, 시간,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4).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생 및 교원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는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는 벌어지고 있고(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18: para. 99), 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사교육 지출격차로 이어지고 있고, 대학 진학률이나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51), 가정 밖 아동, 학교 밖 아동과 같이 공적 체계 밖에서의 아동의 교육권 보장 관련

정책은 부족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50). 또한 아동은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 일과 중 여가와 놀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18: para. 109).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협약이행 심의과정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아동들은 현행 공교육과 관련하여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가 없고,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관심사를 반영하고, 학업성적을 이유로 교육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고, 진로체험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발전에 도움이 되며, 입시과목이 아닌 다양한 교과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는 공교육을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부분이 특히 잘 이행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특정과목의 수업 시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진로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2018: 26).

아동들은 교육격차와 관련해서는 모든 아동이 지역 및 문화적 배경, 부모의 출신, 장애여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기 바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① 낙후된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배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금을 증진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② 부모의 출신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교육시설을 골고루 증설하고 홍보할 것, ③ 미등록 이주아동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률개정을 통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전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동시에 일반학교에서도 장애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것, 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및 학업중단 학생들의 진로개발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2018: 27).

아동들은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입시제도로 인해 고통 받거나 성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및 법률을 제정하고, 입시제도로 인한 아동의 권리침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2018: 27).

그리고 아동들은 건강 · 휴식 ·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현재 침해되고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및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어른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의 여가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구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법 제도 마련하고,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여가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2018: 25).

2) 협약이행 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에의 권리 및 교육의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 사교육 의존도의 지속적 증가,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학교통합에 대한 제한된 접근 및 높은 중퇴율, 난민아동, 이주아동 및 미등록 아동의 학교입학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고 교육서비스 접근성 제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기회 및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도농간 교육격차,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부재,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한 차별이 있음을 우려하고(유엔아동권리

위원회, 2019: para. 41 (a)~(i)), 구체적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립 및 사립학교의 선행학습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시 제재를 가할 것, 「교육기본법」을 재검토하여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등록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이주 배경과 상관없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할 것, 장애아동에 대해 포용적 교육 및 합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학교중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주류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인프라(교사 수, 훈련, 학교 인프라, 예산)와 관련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연령에 맞는 성교육을 할 것,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진로상담과 아동의 의견이 진로선택의 근간이 되도록 할 것, 학교 내 차별(성적 차별 등)을 근절하고, 차별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것, 사이버 집단괴롭힘 등 집단괴롭힘 근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2(a)~(i)).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여가 및 문화활동 향유와 관련해서는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여가, 놀이 및 운동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안전한 무료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오락(레크레이션)을 위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1(j)), 휴식, 여가, 놀이가 아동 발달의 핵심 요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 프로그램 및 대중캠페인을 진행할 것, 놀이와 오락활동에 안전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시설을 제공할 것, 이와 관련한 시설은 포용적이고, 금연규정으로 보호되며, 연령에 걸맞을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1(j)).

따라서 정부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차별과 소외됨이 없이 기회균등한 교육을 누리고(협약 제28조), 인격, 재능 및 정신적 ·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협약 제29조),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문화활동 등에 참여(협약 제31조)할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첫째, 고교서열화 및 대학입학시험제도,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 소득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아동·청소년의 교육에의 권리보장을 위해 대안교육도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과 지원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놀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7. 특별보호조치

1) 주요 쟁점과 이행성과 평가

(1) 이주배경아동 및 근로청소년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제22조), 이주아동(제30조)과 관련한 협약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법과 제도 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 왔다. 2012년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강제 송환 금지, 가족 재결합,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무, 난민 인정 신청과 심사, 이의신청 제도와 통역 서비스 제공, 난민 인정자의 처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 가족 중 미성년자는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보장받고 있다. 2014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19세 미만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을 특별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2015년 「외국인보호규칙」에 이들에 대한 교육, 전담공무원 지명, 시설 배정 등 특별한 지원조치를 명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65-166). 한편,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대상 특징에 따른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하고 일반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교원이 학교에서 미등록 이주학생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공무원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67).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이 부각되어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난민신청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2016년 기준 1,015명인데 담당 공무원은 전국에 32명에 불과하며 전문적 훈련의 기회도 부족하여 적절한 서비스와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난민신청자는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아 자녀를 위한 적절한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배제된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13-114). 출신국 재외공관 방문이 사실상 불가한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미등록 체류 외국인 자녀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생등록이 어려우며,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보육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125). 부모의 체류자격에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사항이고,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교육에 진입하고도 다양한 교육서비스에서 배제되며, 고등학교 졸업 시 강제출국 대상이 되어 대학진학이 불가한 상황이다.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어 교육 및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등과정의 다문화 예비학교는 양적으로 부족하여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16-117).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제32조)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다수 제시된 조항으로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2012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4회 이상 사업장 지도점검 및 피해구제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통해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상담·신고체계 정비 및 청소년

과 사업주 대상 정보 제공 및 노동교육을 확대하였다. 2015년부터는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일제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근로권익센터'(고용노동부, 2016년 기준 7개 지역거점센터)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여성가족부)를 설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근로조건 해결을 위해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2016. 2)을 제정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계약 체결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습을 위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7: para. 168-169).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근로감독은 미흡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일반계고 12.6%, 특성화고는 41.2%로 높은 수준이고, 이들의 상당수가 부당대우를 경험(최저임금 이하 20.5%, 부당해고 7.9%,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 15.0%, 폭언 등 인격모독 12.3%)했지만(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58), 이에 대한 근로감독과 조치는 매우 부실하여 지난 5년간 적발된 99개 업체 가운데 과태료 부과 10건, 사법처리 2건, 행정처분 1건에 불과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22). 또한 매년 약 10만명의 고등학생이 현장실습에 투입되고 있고 '하루 7시간 이내 근무, 야간 휴일근무 금지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내 괴롭힘이나 폭행, 실적압박 등으로 2011~2017년 사이 6건의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23-124).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정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을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법 개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은 부재한 상황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57).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생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2) 성착취 및 인신매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성착취 등과 관련된 협약 조항으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제34조), 어떠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제35조)에 관한 규정이 있다(UN, 1989).

성착취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협약 제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2조와 제3조에 합치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특히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85). 또한 아동대상 성매매와 성범죄 처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기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86).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성범죄자의 교화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87-88). 성착취 피해여아 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아동의 출신국을 고려한 다국어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89-90). 이에 정부는 2012년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근절대책'과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2017)'을 수립하고 시행하였고, 201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의무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아동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설인 해바라기센터를 확대 운영하였다(2012년 20개소에서 2016년 37개소로 확대)(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70-172). 또한

정부는 2012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2013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하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74).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자감독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전담제를 실시함으로써 처벌과 동시에 치료와 교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78-180). 정부는 2013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 관련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고, 2014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 재정립, 여권발급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2).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는 부족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59). 온라인과 스마트폰 앱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와 그루밍, 스쿨미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부재하며(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쟁점 29-30, 59), 아동발달 단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수사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26, 129).

(3) 소년사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성착취 등과 관련된 협약 조항으로는 모든 아동은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일지라도 인도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규정(제37조)과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과정 등에서 적절

한 법률적 지원을 받으며, 증언이나 유죄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법단계에서 사생활이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는 규정(제40조)이 있다(UN, 1989).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법원을 설립할 것, 형법위반 혐의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구금아동에 대하여 성인과 함께 구금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며,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자유박탈아동이 자신의 배치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97-100).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자유박탈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대안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101). 이에 대하여 정부는 전국에 가정법원 소년부를 확대 설치하고, 소년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와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4-185). 또한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 김천소년원을 지정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생활실 소규모화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의료전담소년원을 신설하고, 가족사랑캠프 등 가족기능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년원 출원자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희망도우미 프로젝트와 YES센터를 운영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6-188). 자유박탈 아동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권을 보장하고,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9-190). 그밖에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확대, 소년보호관찰의 확대 등을 통해 대안처분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9).

그러나 소년사법분야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사건의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아동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이 분리됨으로 인해 양 절차를

오가게 됨으로 인해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31). 수사단계에서 범죄아동이 보호자의 동석 등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형사절차상 피의자에게 제공되는 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37; 국가인권위원회, 2018b: 311-312). 소년수용시설에서 의료처우, 징계권 행사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자의 교육권과 체육활동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39-140). 구치소에서 미결구금 아동과 성인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거나, 소년전담교도소를 두고 있으나 성인과 함께 구금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38; 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9: para. 12). 보호소년의 청원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위탁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41-142;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207).

2) 협약이행 과제

(1) 이주배경 아동 및 근로청소년

특별보호조치 중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para. 43)과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para. 44) 부분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에 대하여 ① 이주아동 구금 금지 및 가족재결합에 있어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②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 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강화, ③ 모든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보육, 교육,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 및 주거지원 등에서 한국아동과 동등한 권리 보장, ④ 특히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이주아동권리법」 채택, ⑤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 ⑥ 미등록 아동 및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 ⑦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에 대한 예산배정 확대 등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3).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에 대하여는 아동근로에 대한 부당행위 및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 강화를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4).

이상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난민신청 아동 및 난민아동의 인도적 체류와 보호를 위해 보호자 유무와 상관없이 구금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설보호와 대안양육 및 법적후견인 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한다(김영지 외, 2017: 580). 또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자녀가 생계, 교육, 의료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특히, 영유아 대상 보육서비스 수혜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며, 공교육 진입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대상을 난민아동으로 확대한다.

둘째, 이주아동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어교육과 조기적응을 돕는 지역사회의 레인보우스쿨 운영을 확대하고, 초등 다문화 예비학교와 비교하여 월등히 부족한 중등과정의 다문화 예비학교를 늘려 청소년기 중도입도국자녀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한다. 진학 후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대학생 장학금 제도와 연계한 다문화 멘토링을 활성화하며, 학교 진학이 어려운 후기청소년 연령대의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이들의 원만한 사회진입과 자립을 지원한다.

셋째, 근로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임금 미지급, 위험한 근로, 폭언과 인격모독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과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며, 청소년고용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근로권익을 침해받는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지원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전문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현행 7개 지역 거점센터에서 전국적으로 확장하여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홍보, 전문상담 및 무료권리구제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체 및 학교에 대한 감독시스템 마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2) 성착취 및 인신매매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8).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온라인 아동성매매, 그루밍, 교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만 13세 이상일 경우 합의능력을 간주하고 있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며, 자발적 성매매 아동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실시하는 것과 아동성학대 성인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음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8).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온라인 성매매, 그루밍 등 모든 형태의 아동 성착취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치를 마련하고, 온라인 그루밍을 불법화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높일 것과 성매매아동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지원과 법률구조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밖에도 학교 등에서 아동 성착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교사를 포함한 성범

죄자가 증거유무에 관계없이 기소되어 적절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수준의 처벌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8).

그러므로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재의 만 13세에서 상향 조정하여 미성년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였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영역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그루밍과 스쿨미투 성학대 유형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루밍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스쿨미투는 현재 피해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피해현황 파악과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피해아동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벌이 부과되고 있는바,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아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단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수사팀을 구축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29).

(3) 소년사법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사건처리에 있어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두 가지 처리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것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 우범소년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조사 및 재판단계에서 혐의아동이 충분한 법적지원과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 성인에 비해 높은 구금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구금아동에 대한 의식주 관련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동과 성인이 한 공간에 구금되어 있는 것, 과도한 징계권 행사 등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6).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전문법원을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유지할 것, 아동의 수사·공판과정에서 후견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받을 것,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할 것, 교화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을 최소한의 기간만 활용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등은 선고형에 포함할 것, 아동에 대한 무력과 보호장비 사용을 자제할 것,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무적 신체검사, 이발, 지속적 촬영 등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년사법체계가 보다 아동의 구금을 최소화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교정교화가 가능한 소년사법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소년사건을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통합하여 전문소년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시스템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소년전담판사와 법원조사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행정 편의상 구치소와 소년교도소에서 성인과 아동이 함께 구금되고 있는 형태를 개선하여 소년교도소는 소년만 전담하는 교도소로, 소년 미결구금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근거 없이 남발되고 있는 소년 구금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우범소년은 지위비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범소년을 소년법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동복지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조치로서 운영되고 있는 분류심사원 위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연장 시 연장사유와 연장기

간을 명확하게 소년법에 명시되어야 하고, 위탁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이후 소년원 송치 또는 선고형 기간에 산입하도록 해야 한다. 근신 등 징계로서 독방처우를 하는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넷째, 구금아동의 구금환경 개선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아동에 대한 체육권 보장, 구금아동에 대한 급식비 상향 조정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아동성착취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해 2012년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근절대책'과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2017)'을 수립 및 시행하였고, 201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바 성매매 아동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조정하며, 그루밍과 온라인 성매매 등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통해 아동성착취와 성매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구금아동에 대한 안전하고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수용시설의 소규모화 사업, 가족사랑 캠프 운영,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움직임, 우범소년 규정, 소년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은 소년사법의 발전에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우범소년에 대한 재검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아동에 대한 권리 보장, 구금아동에 대한 청원권과 체육권 등의 권리 보장 등을 통해 보다 아동의 구금을 최소화하고 대안적 조치를 하는 형태로 정부정책이 발전하여야 한다.

제4장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0. 조사개요 및 방법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폭력 및 학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보호조치

4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23]

0. 조사개요 및 방법[24]

1) 조사목적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조사는 현재의 행정자료나 2차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이를 위해 통계청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 요청하고 있음)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에 관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1호)로서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및 자체통계품질진단 등을 통해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이 조사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의 인권 영역 틀로서,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23) 4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이민희 교수, 김진호 교수가 집필하였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1절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2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을,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은 0절 조사개요 및 방법 중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내용, 4) 조사방법, 3절 폭력 및 학대 영역의 2) 아동학대 분야와 4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그리고 5절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의 4) 건강 분야와 5) 사회보장 분야를, 이민희 교수는 3절의 1) 폭력 분야와 6절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을, 김진호 교수는 5절의 1) 장애, 2) 생존 및 발달, 3) 보건서비스 분야와 7절 특별보호조치 영역을 집필하였다.

24) 0절 조사개요 및 방법 중 5) 모집단분석, 6) 표본설계, 7) 가중치와 모수 추정 부분(pp.141~155)은 2019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한 것으로,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되었으며 본 연구의 기초분석보고서에도 공통으로 수록하였다.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7개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표 내용을 설문조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조사는 매년 조사되는 반복횡단조사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확인, 모니터링하며, 축적된 시계열 데이터를 토대로 추이를 분석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초통계를 공표하며,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에도 업로드하여 통계 공표하고 있다. 수집된 원 데이터(Microdata)는 익익년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학술논문에 활용하는 등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조사대상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 응답자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Ⅳ-0-1〉과 같다. 2019년 조사에는 총 9,27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이 4,816명(52.0%), 여자 청소년이 4,454명(48.0%)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979명(32.1%), 중학생 2,922명(31.5%), 고등학생 3,370명(36.3%)이었으며, 고등학생 중 일반계고 학생이 2,718명(80.7%), 특성화계고 학생 652명(19.3%)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 청소년이 3,780명(40.8%), 중·소도시지역 청

소년 4,416명(47.6%), 읍·면지역 청소년 1,074명(11.6%)이었다.

표 Ⅳ-0-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9,270**	**100.0**
성별	남학생	4,816	52.0
	여학생	4,454	48.0
학교급	초등학교	2,979	32.1
	중학교	2,922	31.5
	고등학교	3,370	36.3
고교유형	일반계고	2,718	80.7
	특성화계고	652	19.3
지역규모	대도시	3,780	40.8
	중소도시	4,416	47.6
	읍면지역	1,074	1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407	90.8
	한부모가정	694	7.5
	조손가정	86	0.9
	기타	76	0.8
학업성적	상	3,275	35.4
	중	3,895	42.1
	하	2,091	22.6
경제적 수준	상	5,330	57.5
	중	3,077	33.2
	하	854	9.2

* 주: 일부 시스템 결측치가 있음. 가족유형(n=7), 학업성적(n=8), 경제적 수준(n=8)

가족 유형별로 보면,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8,407명(9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694명(7.5%), 조손가정 청소년이 86명(0.9%)이었으며,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타 가정의 청소년은 76명(0.8%)이었다. 스스로 학업성적이 '상'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3,275명(35.4%), '중'이라고 인식한 경우는 3,895명(42.1%), '하'라고 인식한 청소년은 2,091명(22.6%)이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5,330명(57.5%), '중'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3,077명(33.2%), '하'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854명(9.2%)으로 나타났다.

3) 조사내용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항목 검토 및 정비

① 조사항목 검토 및 설문지 확정 과정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의 지표 및 지표항목 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의성 및 응답자의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한 조사항목 수정의 필요성에 따라 조사항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와 통계청의 통계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활용하였다([그림 Ⅳ-0-1] 참조).

설문지 조사항목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진 회의를 거쳤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가 의견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조사항목의 타당성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조사항목, 그리고 응답자의 조사 피로도를 고려하여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권실태조사와의 공통문항개발을 논의하였으며, 추후 성인과 아동·청소년 간 인권의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상호 공통문항 개발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초등학생용 설문지의 경우 특히 많은 조사문항으로 조사가 힘들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가능한 중요한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문항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축약, 정리된 조사지는 예비조사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활용되었다. 예비조사는 초등학생 5명,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응답 소요시간은 최소 15분, 최장 25분으로 평균 20.8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시 초등학생 대상 예비조사에서 평균 33.7분이 소요된 것에 비해 많은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지 분량과 함께 조사문항 편집 등에서 더욱 조사 편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①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진 회의

⇩

② 전문가 자문 및 설문지 내용 검토

회차	구분	일시	내용	참석자
1	전문가 의견조사 (서면조사)	2019. 3.15 ~ 22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및 세부지표 항목 중요도와 조사항목 검토 - 불필요 조사항목, 세분화 필요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의 학계, 현장(실천) 전문가 21명
2	전문가 자문회의	2019. 3. 28.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및 반영사항 검토, 인권지표체계 및 설문지 문항 개선방안 논의 - 응답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항목 우선순위 검토	-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 전문가 1인 - 연구진 3인
3	설문지 검토 자문회의 (1차)	2019. 4. 5. 오전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실태조사와의 공통문항 개발 & 검토 - 추후 성인과 아동·청소년간의 인권의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문항 논의	- 국민인권실태조사 연구진 1인 -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 전문가 1인 - 연구진 3인
4	설문지 검토 자문회의 (2차)	2019. 4. 5. 오후	- 초등학생용 설문지 검토 - 초등학생의 성실한 응답이 가능한 조사문항 개수, 문항 적절성 및 용어 수준 검토	- 초등학교 교장 1인 -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 전문가(교대 교수) 1인 - 연구진 3인

⇩

③ 연구진 설문지 최종 검토 및 수정

⇩

④-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 및 승인(2019. 04. 22)
과제번호: NYPI-201904-HR-고유-005-01

④-2. 예비조사 실시

⇩

⑤ 통계청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 요청 및 결과회신(2019. 04. 29)

⇩

⑥ 통계청 승인통계(제402001호) 조사내용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 승인 (2019. 05. 07)

⇨ 최종 설문지 완성

그림 Ⅳ-0-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항목 상세 변경 절차 및 승인 내역

중학생의 응답 소요시간은 평균 19.6분이었으며 초등학생용 조사지에 비해 다소 분량이 많으나 제한된 시간에 응답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예비조사 결과 확인된 문제는 부정확한 수면시간 기록과 단일응답을 복수로 응답하는 등 조사 진행 관련 내용이 대부분으로(조사원 교육에 참고함), 조사내용관련 특이 사항은 없었다.

설문지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요청한 결과, 인권 침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구성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별다른 문제없이 승인을 받았다(과제번호: NYPI-201904-HR-고유-005-01). 그러나 부모의 학대 및 방임, 괴롭힘 및 차별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실사기관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심의의견에서 조사대상이 미성년자임에 따라 자료의 수집·기록·이용·보관 및 폐기·제3자 제공 등의 연구대상자 보호 방안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해 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실사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제402001호)로 통계변경사항 발생 시 통계청을 통해 통계작성 및 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내용 중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본 조사를 통해서만 관련 자료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대로 조사항목의 적절성과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항목의 축소 및 변경 내용에 대해 통계청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쳤고, 이에 대해 승인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설문지가 확정되었다.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통계자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통계청 자체품질진단[25]도 올해 수행 중이다.

25) 통계청 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해 연구진이 자체품질진단을 위한 통계청 교육을 이수하였으며(2019.6.28.), 통계작성 기획, 통계 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단계, 자료 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등 일련의 품질진단을 수행하였다(통계청의 나라통계 운영페이지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

(2) 조사항목 변경 상세 내역

① 신규 조사문항

초등학생이 응답하기에는 조사문항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가능한 조사항목을 간소화했으나 일부 꼭 필요한 조사내용들의 경우 전문가 자문 및 협의를 거쳐 조사에 추가하였다. 먼저 기존의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 간단히 질문했던 문항은 향후 인권교육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 목표를 제시하고 각각의 도움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상세 내용을 추가 하였다.

표 Ⅳ-0-2.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신규 조사문항

조사항목	교급별 조사지 문항번호		사유
	초등용	중·고등용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	문30-2	문38-2	인권교육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세 목표를 제시하여 도움정도를 조사하는 신규문항 추가
학교생활 만족도	문23	문31	인권지표 영역 중 '학교교육의 가치와 의의'와 관련한 기초 문항 신규 추가
인권의식 측정 항목 추가	문29	※ 중등용에는 포함되어 있음	아동의 인권의식 파악을 위한 기존 5개 조사항목에 2개 문항 신규 추가 (①아동의 적극적 의견제시·문제해결, ②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에 대한 의식)

추가된 조사항목은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운영규정 '제2조 인권교육의 정의'[26]에 따라 문항을 구성한 것이다.

2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 제2조 인권교육의 정의: 제2조(정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 태도 ·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제·개정일 2018. 3. 7).

두 번째로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중분류인 '6-2.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학교교육의 가치와 의의'와 관련한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기초 문항으로 포함하였다. 세 번째로 초등학생 대상 조사에서 인권의식을 측정하는 내용인 기존의 5개 조사항목에 중·고등학생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아동의 적극적 의견제시 및 문제해결에 대한 내용과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② 조사문항 수정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응답편의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일부 조사항목들을 조정하였다. 먼저 수면부족에 대한 이유를 기존의 3개에서 2개로 조정하여 응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역시 학업중단 이유에 대해서도 기존의 3개를 선택하는 것 대신 1개를 선택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외에 인권교육 빈도를 질문(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중 선택)했던 것을 인권교육 경험 여부로 수정하였으며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표 Ⅳ-0-3.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수정된 조사문항

조사항목	교급별 조사지 문항번호		사유
	초등용	중·고등용	
수면부족 이유 선택 개수 조정	문15-1	문21-1	응답자 편의를 위하여 수면부족 이유 우선순위 응답을 3개 선택에서 2개 선택으로 수정
학업중단 이유 선택 개수 조정	문21-1	문29-1	응답자 편의를 위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우선순위 응답을 3개 선택에서 1개 선택으로 수정
인권교육 경험 질문 방식 및 '인권' 설명문 내용 추가	문30	문38	인권교육 빈도에서 경험여부로 수정하였으며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권'에 대한 설명 보완 수정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1&boardtypeid=187&boardid=7602583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③ 삭제 조사문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 조사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조사지 간소화 및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사문항과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에 부담이 될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조사항목들을 삭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0-4〉와 같다. 이 표는 조사문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되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해서만 삭제한 내역이다.

표 Ⅳ-0-4.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일부 삭제 조사항목

조사항목	교급별 조사지 문항번호 (2018년 설문지 기준)		사유
	초등용	중·고등용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초등 삭제 '②진학, ④학습')	문1(2, 4)	-	응답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설문 분량 축소를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 낮은 문항 삭제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공개 정도 (초등 ③시험성적 관련 항목 삭제)	문3(3)	-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②가정, ③학교' 중등삭제)	-	문10(2, 3)	
학교생활규정 공지 정도	문3(4)	문5(5)	
체벌 경험률('⑤학원교사' 삭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⑥학원교사' 삭제)	문7(5, 6)	문15(5, 6)	
폭력피해 경험 ('⑤협박' 삭제)	문8(5)	문16(5)	
거주지역의 안전수준('③먹거리' 삭제)	문13(3)	문21(3)	
자아존중감 ('⑦긍정적 태도' 삭제)	문19(7)	문28(7)	
인권 존중정도 ('③지역' 삭제)	문36(3)	문46(3)	
차별 피해 경험 ('④경제적 배경, ⑤지역, ⑦종교, ⑧가족유형, ⑨장애, ⑩인종' 삭제)	문39(4, 5, 7, 8, 9, 10)	문49(4, 5, 7, 8, 9, 10)	
차별 가해 경험 ('④경제적 배경, ⑤지역, ⑦종교' 삭제)	문40 (4, 5, 7)	문50 (4, 5, 7)	

일부 조사 항목뿐 아니라 조사문항 전체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답에 대한 부담과 조사 피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 또 일부 중복가능성이 있는 문항의 경우 삭제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체적인 설문 분량 축소를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문항들은 최종적으로 삭제되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회의를 거쳤다. 이러한 조사내용의 추가, 수정, 삭제 등은 예비조사 및 통계청 변경승인을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지에 반영되었다.

표 Ⅳ-0-5.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삭제 조사문항

조사항목	교급별 조사지 문항번호 (2018년 설문지 기준)		사유
	초등용	중·고등용	
학급회의 운영 여부	문2	문3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응답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사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항 삭제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문2-1	문3-1	
학교급식 안전성	문12	문20	
아침식사 결식률	문16	문24	
아침식사 결식이유	문16-1	문24-1	
스트레스 인지율	문20	문29	
주관적 안녕감	문21	문30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문27	문36	
청소년단체 활동경험	문29	문38	
동아리활동 참여경험	문30	문39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문33	문42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중고등용)	-	문7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중고등용)	-	문14	

(3) 국가인권 실태조사 비교문항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인권 실태조사를 통계청 승인통계로 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이다(한준, 김대훈, 이희길,

2018). 이에 국가인권 실태조사 연구진(한국삶의질학회)과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와 성인 대상 조사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문항 개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여 4개의 동일 문항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는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경험 등이다. 그 외 질문 문구와 선택지의 차이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한 유사문항으로는 차별경험(성별, 학력, 연령, 외모)과 인권활동(사회참여 활동) 참여경험 등이 있다.

(4)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조사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자문, 문항 추가, 수정, 삭제 등의 과정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와 통계청 변경심의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9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내용을 제시하면 〈표 Ⅳ-0-6〉과 같다. 본 연구의 기본 틀인 7개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 즉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과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인권영역별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조사내용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그리고 행정통계 및 관련 2차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표 Ⅳ-0-6.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27(1~3)	35(1~3)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사회, 사이버공간)	28(1~4)	36(1~4)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결정능력, 사회참여, 자치조직, 표현의 자유, 차별(경제적 이유, 성별, 민족/인종)	29(1~7)	37(1~7)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인권교육 경험	30	38
		인권교육 받은 기관	30-1	38-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인식, 태도, 행동)	30-2(1~3)	38-2(1~3)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성별, 학력, 연령, 외모)	31(1~4)	39(1~4)
		차별 가해 경험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가족유형, 장애, 인종)	32(1~7)	40(1~7)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1(1~2)	1(1~4)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자율성, 자격조건, 활동여건, 의견반영)	-	2(1~4)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3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2(1)	4(1)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3	5
		참여권 보장 수준	4	6
		참여 장애 이유	5	7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	8(2)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9, 9-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8(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10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10-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11(1~3)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4(2)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2)	4(3)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4(4)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부모, 교사)	6(2, 4)	12(2, 4)
		폭력피해 경험(욕설, 구타, 따돌림, 금품갈취, 성추행, 강제 심부름)	7(1~6)	13(1~6)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률	8(1~5)	14(1~5)
		체벌 경험률(부모, 교사)	6(1, 3)	12(1, 3)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	9(1~5)	15(1~5)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0	16
		가출 이유	10-1	16-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이용 만족도	-	16-2, 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거주지역의 안전수준 (범죄, 교통사고)	11(1~2)	17(1~2)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2	18
		운동 실천율	13	19
		수면시간	14	20
		수면부족 여부	15	21
		수면부족 이유	15-1	21-1
		자살에 대한 생각	-	22
		자살 생각 이유	-	22-1
		우울감	16(1~3)	23(1~3)
		자아존중감	16(4~6)	23(4~6)
		행복도	17	24
		행복하지 않은 이유	17-1	24-1
		삶의 만족도	18	25
		고민거리 대화상대	19	26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포기 생각 여부	21	29
		학업포기 생각 이유	21-1	29-1
	교육의 목표	학교 문화 (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학교 즐거움)	22(1~3)	30(1~3)
		학교생활 만족도	23	31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여가·문화시설 이용 경험	24	32
		여가·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24-1	32-1
		하루평균 여가활동 시간	25	33
		하루평균 학습시간	26	34
7.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경험, 부당처우 경험)	-	27, 27-1(1~9)
	성적 착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20	28
		성적 피해 시 도움 제공자	20-1	28-1

4) 조사방법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2018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 다단계집락표집(층: 학교구분, 집락: 학교/학급)을 통해 지난 조사와 같은 규모인 9,000명을 목표 표본수로 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였다.

* 출처: 한국리서치(2019). 2019년 한국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최종보고서. p.8.

그림 Ⅳ-0-2. 표본추출방법

이를 위하여 학교표집 후 공문 및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조사거절시 대체표본을 섭외하였다(원표본 비율은 86.8%로 2018년의 83.5%보다 상승)(한국리서치, 2019). 조사원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조사의 성격과 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한 면접원 교육을 연구진과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중 총 362개 학교에서 9,270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표 Ⅳ-0-7. 2019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의 초(4~6학년) · 중(1~3학년) · 고등학교(1~3학년) 학생
표집틀	2018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9,000여명 → 9,270명 최종 조사완료
추출학교수	전국 17개 시·도 362개교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19년 5월~7월
조사방법	학교 접촉 후 방문하여 집단 면접 조사 진행, 학생들의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
실사기관	㈜한국리서치

5)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먼저 17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 수를 〈표 Ⅳ-0-8〉과 〈표 Ⅳ-0-9〉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232,807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360,130명(32.1%), 중학교 1,334,101명(31.5%), 고등학교 1,538,576명(36.3%)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분포는 〈표 Ⅳ-0-9〉~〈표 Ⅳ-0-13〉에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대안, 상업, 수산, 실업, 체육,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 중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중 체육, 예술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 중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표 Ⅳ-0-8.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1,251	75,057	69,857	66,642	73,486	76,202	597	596	596	384	384	383
경기	125,602	131,145	119,309	112,801	121,394	124,243	1,258	1,256	1,258	626	626	626
인천	26,277	27,886	24,975	24,027	25,662	26,876	248	248	248	132	133	133
강원	12,386	13,479	12,233	12,394	13,278	13,719	344	341	343	162	163	160
충북	14,107	14,936	13,480	13,140	14,240	14,489	255	256	256	127	127	126
충남	19,947	20,866	19,049	18,012	19,131	19,410	409	407	408	187	186	185
대전	13,945	14,813	13,606	13,178	14,499	14,998	148	148	148	88	88	88
세종	4,197	4,031	3,733	3,403	3,419	3,248	47	47	47	23	23	23
경북	21,477	22,544	20,491	20,013	21,211	22,254	443	451	441	260	261	260
경남	31,912	33,482	29,837	28,482	30,710	31,640	497	498	498	263	262	261
부산	25,283	26,554	24,110	23,743	25,856	27,422	305	302	305	170	173	173
대구	20,796	22,383	20,319	20,413	22,006	23,746	229	229	229	125	123	121
울산	11,161	11,709	10,490	9,988	10,688	11,230	116	117	117	63	63	63
전북	16,261	17,304	15,778	15,906	17,102	17,851	406	405	411	207	209	209
전남	15,472	16,493	15,086	14,632	15,962	16,612	419	420	416	246	245	246
광주	14,613	15,913	14,491	13,837	15,178	16,422	154	154	154	90	90	90
제주	6,521	7,005	6,478	6,168	6,378	6,760	112	113	112	45	45	45
합계	451,208	475,600	433,322	416,779	450,200	467,122	5,987	5,988	5,987	3,198	3,201	3,192

표 Ⅳ-0-9.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46,854	54,128	64,359	11,760	12,519	13,545	16,661	16,762	17,240	1,945	1,890	1,891
경기	94,682	106,008	120,162	3,456	3,696	3,760	17,287	17,882	18,660	2,453	2,495	2,467
인천	16,774	19,215	21,715	1,724	1,770	2,014	5,943	6,400	7,031	793	797	740
강원	10,878	12,227	13,607	156	151	146	2,842	2,909	3,296	185	175	155
충북	8,428	9,879	11,110	1,311	1,479	1,520	4,429	4,565	4,952	249	235	212
충남	13,239	14,809	16,177	1,758	1,840	1,874	4,457	4,928	5,767	215	239	206
대전	8,948	10,005	11,952	2,397	2,590	2,573	2,909	3,232	3,475	433	424	394
세종	2,460	2,346	2,090	211	207	200	203	141	137	200	190	189
경북	15,278	17,568	19,650	2,303	2,542	2,673	5,346	5,659	6,311	221	216	178
경남	23,117	26,344	29,665	2,247	2,470	2,692	4,520	4,772	5,163	518	510	443
부산	15,845	18,358	21,237	2,689	3,126	3,489	6,897	7,549	8,192	1,136	1,116	1,033
대구	13,214	15,783	18,041	3,904	4,417	5,097	5,239	5,572	6,056	326	312	284
울산	7,430	9,038	10,550	591	706	729	2,422	2,710	2,854	233	221	203
전북	13,618	15,127	16,823	882	973	988	3,896	4,451	4,968	219	213	196
전남	10,266	11,736	13,340	1,705	1,869	2,188	5,069	5,533	5,957	216	196	174
광주	11,780	13,628	15,378	731	797	827	3,140	3,421	3,902	97	97	93
제주	4,346	4,963	5,423	.	.	.	1,853	1,980	2,124	140	135	124
합계	317,157	361,162	411,279	37,825	41,152	44,315	93,113	98,466	106,085	9,579	9,461	8,982

표 Ⅳ-0-10.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8	188	186	41	41	41	81	81	81	10	10	10
경기	366	364	362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80	80	80	8	8	8	31	31	31	6	6	6
강원	86	86	86	1	1	1	28	28	28	2	2	2
충북	47	47	46	6	6	6	29	29	29	2	2	2
충남	68	68	67	9	9	9	38	38	38	2	2	2
대전	38	38	38	7	7	7	14	14	14	3	3	3
세종	12	12	10	1	1	1	2	1	1	2	2	2
경북	115	115	115	12	12	12	56	57	57	3	3	3
경남	137	137	136	10	10	10	39	39	39	4	4	4
부산	81	81	81	14	14	14	40	41	41	7	7	7
대구	52	52	51	16	16	16	22	22	22	3	3	3
울산	39	39	38	3	3	3	13	13	13	2	2	2
전북	94	94	94	3	3	3	34	34	34	2	2	2
전남	77	77	77	8	8	8	55	55	55	2	2	2
광주	47	47	47	3	3	3	16	16	16	1	1	1
제주	18	18	18	.	.	.	10	10	10	2	2	2
합계	1,545	1,543	1,532	155	155	155	590	591	591	66	66	66

표 Ⅳ-0-1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6,732	38,644	36,111	34,519	36,413	33,746	34,807	38,171	39,702	31,835	35,315	36,500
경기	64,542	67,127	61,287	61,060	64,018	58,022	57,970	62,454	64,260	54,831	58,940	59,983
인천	13,318	14,257	12,954	12,959	13,629	12,021	12,393	13,219	13,825	11,634	12,443	13,051
강원	6,366	7,041	6,339	6,020	6,438	5,894	6,465	6,937	7,117	5,929	6,341	6,602
충북	7,316	7,749	6,890	6,791	7,187	6,590	6,827	7,482	7,583	6,313	6,758	6,906
충남	10,207	10,843	9,951	9,740	10,023	9,098	9,284	9,876	10,093	8,728	9,255	9,317
대전	7,161	7,577	7,071	6,784	7,236	6,535	6,875	7,493	7,760	6,303	7,006	7,238
세종	2,089	1,977	1,891	2,108	2,054	1,842	1,689	1,692	1,619	1,714	1,727	1,629
경북	11,221	11,710	10,739	10,256	10,834	9,752	10,471	11,271	11,780	9,542	9,940	10,474
경남	16,424	17,278	15,529	15,488	16,204	14,308	14,841	16,266	16,740	13,641	14,444	14,900
부산	12,966	13,686	12,454	12,317	12,868	11,656	12,329	13,331	14,377	11,414	12,525	13,045
대구	10,767	11,452	10,588	10,029	10,931	9,731	10,733	11,517	12,516	9,680	10,489	11,230
울산	5,813	6,040	5,482	5,348	5,669	5,008	5,265	5,671	5,970	4,723	5,017	5,260
전북	8,427	8,903	8,125	7,834	8,401	7,653	8,373	8,829	9,219	7,533	8,273	8,632
전남	8,031	8,480	7,713	7,441	8,013	7,373	7,530	8,375	8,647	7,102	7,587	7,965
광주	7,476	8,340	7,532	7,137	7,573	6,959	7,152	7,902	8,607	6,685	7,276	7,815
제주	3,328	3,586	3,392	3,193	3,419	3,086	3,266	3,363	3,562	2,902	3,015	3,198
합계	232,184	244,690	224,048	219,024	230,910	209,274	216,270	233,849	243,377	200,509	216,351	223,745

표 Ⅳ-0-1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2,934	26,796	32,280	8,123	8,515	9,267	7,775	7,808	7,949	725	709	665
경기	49,230	55,188	62,482	1,736	1,812	1,824	9,422	9,694	10,223	802	807	785
인천	8,634	9,890	11,165	1,006	1,005	1,182	3,106	3,326	3,627	393	396	335
강원	5,419	6,091	6,834	84	82	82	1,848	1,908	2,222	92	90	65
충북	4,165	4,875	5,562	778	907	888	2,546	2,528	2,812	104	90	74
충남	6,713	7,337	8,120	1,051	1,084	1,074	2,711	2,928	3,400	87	86	57
대전	4,173	4,742	5,630	1,729	1,839	1,829	1,645	1,836	1,967	215	197	152
세종	1,196	1,113	1,036	104	101	86	132	121	114	92	92	108
경북	7,348	8,420	9,630	1,462	1,635	1,679	3,545	3,729	4,126	115	107	69
경남	11,158	12,676	14,511	1,731	1,941	2,132	2,984	3,161	3,390	240	235	173
부산	7,866	9,013	10,630	1,535	1,709	1,945	4,144	4,595	4,989	494	484	388
대구	6,722	7,918	9,161	1,964	2,216	2,575	3,342	3,494	3,796	170	161	154
울산	3,777	4,688	5,387	326	392	413	1,450	1,646	1,745	96	96	68
전북	6,600	7,173	8,057	762	844	859	2,513	2,745	3,064	84	75	59
전남	4,676	5,382	6,204	1,214	1,374	1,638	3,009	3,304	3,481	107	94	64
광주	5,849	6,721	7,726	493	539	558	1,756	1,909	2,179	84	73	80
제주	2,274	2,549	2,710	.	.	.	1,052	1,104	1,188	73	60	43
합계	158,734	180,572	207,125	24,098	25,995	28,031	52,980	55,836	60,272	3,973	3,852	3,339

표 Ⅳ-0-1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3,920	27,332	32,079	3,637	4,004	4,278	8,886	8,954	9,291	1,220	1,181	1,226
경기	45,452	50,820	57,680	1,720	1,884	1,936	7,865	8,188	8,437	1,651	1,688	1,682
인천	8,140	9,325	10,550	718	765	832	2,837	3,074	3,404	400	401	405
강원	5,459	6,136	6,773	72	69	64	994	1,001	1,074	93	85	90
충북	4,263	5,004	5,548	533	572	632	1,883	2,037	2,140	145	145	138
충남	6,526	7,472	8,057	707	756	800	1,746	2,000	2,367	128	153	149
대전	4,775	5,263	6,322	668	751	744	1,264	1,396	1,508	218	227	242
세종	1,264	1,233	1,054	107	106	114	71	20	23	108	98	81
경북	7,930	9,148	10,020	841	907	994	1,801	1,930	2,185	106	109	109
경남	11,959	13,668	15,154	516	529	560	1,536	1,611	1,773	278	275	270
부산	7,979	9,345	10,607	1,154	1,417	1,544	2,753	2,954	3,203	642	632	645
대구	6,492	7,865	8,880	1,940	2,201	2,522	1,897	2,078	2,260	156	151	130
울산	3,653	4,350	5,163	265	314	316	972	1,064	1,109	137	125	135
전북	7,018	7,954	8,766	120	129	129	1,383	1,706	1,904	135	138	137
전남	5,590	6,354	7,136	491	495	550	2,060	2,229	2,476	109	102	110
광주	5,931	6,907	7,652	238	258	269	1,384	1,512	1,723	13	24	13
제주	2,072	2,414	2,713	.	.	.	801	876	936	67	75	81
합계	158,423	180,590	204,154	13,727	15,157	16,284	40,133	42,630	45,813	5,606	5,609	5,643

6)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 d^2 + (z\,s)^2}$$

여기에서 N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 z^2\, p\, q}{N d^2 + z^2\, p\, q}$$

여기에서 p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명(초등학교: 2,892명, 중학교: 2,837명, 고등학교: 3,271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

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1.0%P이다. 층화집락추출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8년 4월 교육통계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7개)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Ⅳ-0-14.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51,208	1,360,130 (32.1%)		2,892 (32.1%)		2,622 (29.1%)	
		5	475,600						
		6	433,322						
중학교	중학교	1	416,779	1,334,101 (31.5%)		2,837 (31.5%)		2,730 (30.3%)	
		2	450,200						
		3	467,122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317,157	1,089,598 (25.7%)	1,538,576 (36.3%)	2,317 (25.7%)	3,271 (36.3%)	2,486 (27.7%)	3,666 (40.7%)
		2	361,162						
		3	411,279						
	유형 2 (자율고)	1	37,825	123,292 (2.9%)		262 (2.9%)		390 (4.3%)	
		2	41,152						
		3	44,315						
	유형 3 (특성화고)	1	93,113	297,664 (7.0%)		633 (7.0%)		624 (6.9%)	
		2	98,466						
		3	106,085						
	유형 4 (특수목적고)	1	9,579	28,022 (0.7%)		60 (0.7%)		156 (1.7%)	
		2	9,461						
		3	8,982						
합계				4,343,464 (100.0%)		9,000 (100.0%)		9,018 (100.0%)	

표 Ⅳ-0-1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60	460	352	45	194	
경기	800	762	682	64	84	
인천	168	163	123			
강원	81	84	78	42	95	
충북	90	89	63			
충남	127	120	94			
대전	90	91	66			
세종	25	21	15			
경북	137	135	112	70	204	60
경남	202	193	168			
부산	161	164	118			
대구	135	141	100			
울산	71	68	57			
전북	105	108	97	41	56	
전남	100	100	75			
광주	96	97	87			
제주	43	41	31			
합계	2,892	2,837	2,317	262	633	60

* 총계: 9,000명

표 Ⅳ-0-16.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0.0	17.7	13.5	1.7	7.5	
경기	34.8	29.3	26.2	2.5	3.2	
인천	7.3	6.3	4.7			
강원	3.5	3.2	3.0	1.6	3.6	
충북	3.9	3.4	2.4			
충남	5.5	4.6	3.6			
대전	3.9	3.5	2.5			
세종	1.1	0.8	0.6			
경북	6.0	5.2	4.3	2.7	7.8	2.3
경남	8.8	7.4	6.5			
부산	7.0	6.3	4.5			
대구	5.9	5.4	3.8			
울산	3.1	2.6	2.2			
전북	4.6	4.2	3.7	1.6	2.2	
전남	4.3	3.9	2.9			
광주	4.2	3.7	3.3			
제주	1.8	1.6	1.2			
합계	125.7	109.1	89.1	10.1	24.3	2.3

* 총계: 360.7개

표 Ⅳ-0-17.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8(6)	15(5)	12(4)	3(1)	6(2)	6(2)
경기	30(10)	24(8)	21(7)	3(1)	3(1)	
인천	6(2)	6(2)	6(2)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6(2)	6(2)			
대전	3(1)	3(1)	3(1)			
세종	3(1)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9(3)	9(3)	9(3)			
부산	6(2)	6(2)	6(2)			
대구	6(2)	6(2)	6(2)			
울산	3(1)	3(1)	3(1)			
전북	3(1)	3(1)	3(1)	3(1)	3(1)	
전남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14(37)	105(35)	96(32)	15(5)	24(8)	6(2)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총계: 360(120)개

표 Ⅳ-0-18.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14	390	312	78	156	156
경기	690	624	546	78	78	
인천	138	156	156			
강원	69	78	78	78	78	
충북	69	78	78			
충남	138	156	156			
대전	69	78	78			
세종	69	78	78			
경북	138	156	78	78	234	
경남	207	234	234			
부산	138	156	156			
대구	138	156	156			
울산	69	78	78			
전북	69	78	78	78	78	
전남	69	78	78			
광주	69	78	78			
제주	69	78	78			
합계	2,622	2,730	2,496	390	624	156

* 총계: 9,018명

(3) 표본배분

학생 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Ⅳ-0-15〉와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표 Ⅳ-0-16〉과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61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41명(학년당 약 14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4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Ⅳ-0-14〉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 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26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 수를 계산하면 〈표 Ⅳ-0-17〉 및 〈표 Ⅳ-0-18〉과 같다.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Ⅳ-0-17〉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 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7)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는 h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는 h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는 h층에서 i번째 학교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n_{hi}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 r_{hi}}$$

여기에서 r_{hi}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 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과 $N_{h(2)}$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1,\ ,2,\ \c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1,\ 2,\ \c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1,\ 2,\ \cdots,\ m_{hi}$)

m_{hi} : h번째 층의 i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번째 층, i번째 집락, j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overline{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text{if } Y_{hij} = c_k \\ 0,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c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overline{Y}) = \sum_{h=1}^{H} \hat{V}_h(\overline{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의 총 집락의 수
  - f_h : h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n_n > 1$일 때,

$$\widehat{V_h}(\overline{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overline{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Y_{hij} - \overline{Y}) \right) / w...$$

$$\overline{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n = 1$일 때,

$$\widehat{V_h}(\overline{Y}) = \begin{cases} \text{missing}, & \text{if } n_{h'} = 1 \text{ for } h' = 1,2,...,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q h' \leq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overline{Y}) = \sqrt{\hat{V}(\overline{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overline{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α=0.05) $z_{\alpha/2}$=1.96임.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27)]

1) 인권 일반

(1)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28)]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은 협약에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2018년(2018년도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례 중심)과 2019년에 개정된 주요 아동·청소년 관련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2019.1.15., 시행 2019.7.16.)을 통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27) Ⅳ장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표Ⅱ-3-11)'에 따라 지표항목별 결과를 제시하는 장이다. 지표체계의 대분류(보고서의 '절' 단위)-중분류('1)')-소분류('(1)')-지표항목(① 체계로 지표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과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추이를 살펴보는 연속과제로, 과거 인용된 행정통계나 타분야 통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게 되므로 출처 표기 시 연도별 누적이 많아질 경우는 일부 자료 성격에 따라 전년도 인권보고서를 포괄적인 출처로 제시하거나 각 연도 자료명을 대표로 제시하고, 2019년에 신규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교차분석표는 주요문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전체 통계결과표는 별권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19-R12-2)」에서 참고할 수 있다. 통계표에서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4장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별로 어떻게 각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지를 기술하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조사결과인데, 객관적 정보 취득이 불가능함에 따른 대안이기도 하나 실제로 주관적 인식이 이들의 발달과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았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세 집단을 기본으로 분석하였으며, 고등학교 유형별 분석을 한 경우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계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일반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상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고, 특수목적고 일부(외고, 과학고 등), 자율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고'보다 더 큰 범위의 용어이고, '특성화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91조)에서 말하는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 중에서 예술·체육계열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포괄하는 용어로, '특성화고' 보다 더 큰 개념의 구분이다(김영지 외, 2016: 79; 김영지 외, 2017: 71에서 보완 인용).

28) 2019년 9월 25~10월 2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main.html)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결과이며, 법령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참고하였다.

성범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개정 2019.1.15., 시행 2019.7.16.)을 통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운영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위탁, 사회보장정보원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체계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 2019.3.19., 시행 2019.3.23.)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을 정하고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동수당법 개정(개정 2019.1.15., 시행 2019.4.1.)을 통해 기존에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다.

영유아보육법(개정 2018.12.24., 시행 2019.6.25.)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 2019.6.4., 시행 2019. 6.25.) 개정을 통해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개정 2018.12.18., 시행 2019.6.19.)을 통해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정책당사자인 청소년이 일정 비율 이상(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청소년의 참여권을 강화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개정 및 시행 2018.1.16.)을 통해 현재 '나이'만을 확인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 등의 경우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같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동법 추가 개정(개정

2018.12.11., 시행 2019.12.12.)을 통해 경매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여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 노출 및 도박 중독의 위험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개정 2018.10.30., 시행 2018.10.30.)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에 보호관찰소를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생활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자립지원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교보건법 개정(개정 2019.4.2., 시행 2019.7.3.)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성장기 학생의 건강보호 대책을 강화하였다.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참관 허용,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공기 질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 및 공기질 측정 장비 정기 점검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한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개정 2018.12.18., 시행 2019.6.19.)을 통해 미혼모·부와 그 자녀에 대해 산전·분만·산후 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자녀에 대해 의료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동해시가 유일하게 포괄적인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였다(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2019.3.15. 제정).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는 강진군(제정 2019.4.12.), 광명시(제정 2019.6.25.), 광주 북구(제정 2019.2.12.), 구리시(제정 2019.7.12.), 동해시(제정 2019.9.27.), 부산(제정 2019.4.10.), 서울 금천구(제정 2019.5.9.),

속초시(제정 2019.7.12.), 인천 미추홀구(제정 2019.7.15.), 인천 서구(제정 2019.7.11.), 청주시(제정 2019.6.14.), 홍성군(제정 2018.11.15.) 등이 제정하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강원도교육청(제정 2019.7.5.), 광주광역시교육청(제정 2019.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제정 2019.9.30.), 충청북도교육청(제정 2019.7.12.) 등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제정 2019.7.16., 시행 2020.1.1.), 경상북도교육청(제정 2019.9.23.), 인천광역시교육청(제정 2019.9.23., 시행 2020.1.1.), 경기도(제정 2019.6.18.), 광주광역시 동구(제정 2019.6.28.) 등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다(2019.7.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는 2019년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9년에는 경주시를 비롯하여 19개 자치단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2019년 10월 기준).

한편,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중장기계획으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등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이 2019년도에 수립 과정에 있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주무부처는 아동권리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이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에서 아동권리협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정책조

정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이지만 인력과 재원의 한계로 절차적인 서면 심의 기능에 멈추어 있다.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인적, 재정적 자원할당과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9).

2019년도 아동인권 관련 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7월 16일에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일 것이다.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계획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분산·운영되어온 보호아동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체계적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 입양, 가정위탁, 실종 등 현재 7개 기관[29]에서 분산·운영 중인 8개 사업의 중앙지원조직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19: 21; 대한민국정부, 2019: para. 78).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포괄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관 명칭(국·영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권리 분야에서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였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제7항).[30] 또한 법적으로 보장원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3호).[31] 아동권리보장원이 명실상부한 아동권리 전담기구

29)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입양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30) 아동복지법 제68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1)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지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위탁사업,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지원, 입양관련 업무,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1~13호).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32]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개소한 청소년 인권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는 2017년부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청소년 권리교육 및 권리교육 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김영지 외, 2017: 74). 2019년부터는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희망센터'는 해소되고 상담역량개발본부의 청소년폭력예방부에서 청소년 권리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제규정 제10조 제5호).

교육부는 2018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인권 전담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학생인권 업무 기반을 마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27).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의 민주시민교육과는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과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 초·중등학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초·중등학생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

법무부는 인권국의 여성아동인권과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서도 소년비행, 소년보호, 이주배경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을 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침해조사국의 아동·청소년인권과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조사, 권고 및 의견표명,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심의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5개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32)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초기 아동권리 업무는 통합돌봄국 돌봄기획·홍보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아동권리' 명칭이 부서명에 포함되는 전담부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ncrc.or.kr/ 조직도 2019년 10월 기준 참고).

데, 그 중에 하나인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진정사건과 직권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8년에 총 13회 회의를 개최하여 233개 안건을 다루었고 그 중에 171건을 의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9.6: 10-1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에 아동 인권분야에 총 7건의 의견표명을 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82건의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각각 23건, 58건, 1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3건의 권고에 대한 수용현황은 수용 9건, 일부수용 9건, 불수용 3건 등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9.7: 26-27).

주요 의견표명 및 권고사항과 수용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도 아동·청소년 관련 의견표명으로는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 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10.22)과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등에 관한 의견표명(11.26)이 있었다.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휴대폰 사용제한 등(2.28. 수용),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5.9. 수용),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10.22. 검토중),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폭언 등(4.3. 수용),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1.31. 수용), 고등학교에서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제한(1.31. 불수용), 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침해(1.31. 수용),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미흡(2.28. 검토중),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3.13. 수용), 교사의 학생에 대한 욕설 등 인권침해(5.9. 불수용),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6.4. 불수용), 과도한 두발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7.3. 검토중), 고교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평등권 침해(9.10. 검토중),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10.22. 수용), 교사의 체벌(12.19. 검토중)에 대한 권고 등이 있었다.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로는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및 괴롭힘(4.10. 검토중)에 대한 권고 등이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6: 318-331).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안정성이 중요하나 아동·청소년인권과는 2년 기한의 한시조직으로 설치되

어 2년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받아 존속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아동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조직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11-12).

③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다양한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정책분야 예산을 산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예산의 범위와 산출기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결과 생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나라살림 예산' 자료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으로 그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유아·초중등교육, 소년사법,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 관련 일반회계 예산 항목 등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중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일부 사업예산만 포함되며 사업항목 구분이 다소 변경되기도 하여 추이를 비교하기에는 일정정도 제한점이 있으나 현재 접근 가능한 공식 국가예산자료로는 최선의 산출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김영지 외, 2017: 75 보완).

2019년에는 '소년사법' 예산 중 2018년까지 별도 항목으로 있었던 여성아동인권 증진 예산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동복지'와 '보육' 예산은 기존에 취약계층지원 부문(082)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이 2019년에는 아동보육 부문(08A)이 신설되고 그 하위에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보육지원 강화 등 3개의 항으로 포함되었다. 그 중 '아동복지' 예산은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항 전체와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항 중에서는 '아동수당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2019년에는 '청소년' 부문이 기존의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분리되어 '여성·가족·청소년(08C)'으로 설정되었다. 2019년도 '청소년' 예산에는 2018년까지 별도 구분했던 '아동폭력예방' 예산의 구분 의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통합하여 산출하였다. '청소년' 예산은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항 전체와 '여성·아

동 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항 중에서 '아동·여성 안전정책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세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중에서 '취약 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2132)' 및 '아이돌봄 지원(2134)' 사업 등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과 관련이 있는 만큼 추후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기획재정부, 2019).

2018년도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은 3.4%로 2017년 3.1% 대비 0.3%로 증가하였다. 2019년 아동·청소년 1인당 국가예산 지출비용은 8,463,000원으로 2013년 4,874,000원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아동수당'제도 도입 등으로 아동예산의 상승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발전 정도와 OECD 수준에 비해 GDP 대비 아동예산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3·4차에 이어 5·6차 심의결과에서도 제시되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0).

표 Ⅳ-1-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3~2019)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국가예산(A)		236,225,287,896	247,203,163,288	258,585,647,374	268,387,199,393	275,010,413,607	301,417,202,896	331,777,014,900
아동·청소년예산	유아·초중등교육	41,523,622,672	41,465,434,441	39,565,607,727	41,511,850,346	47,149,425,794	53,716,467,248	59,383,165,000
	소년사법	13,991,000	16,981,000	20,331,000	20,960,000	22,371,000	23,967,000	23,864,000
	아동복지	239,061,000	213,511,000	222,801,000	229,831,000	245,178,000	899,377,000	2,381,564,000
	보육	4,131,345,000	5,273,819,000	4,943,994,000	5,270,824,000	5,373,451,000	5,505,231,000	5,669,714,000
	(아동폭력예방)	6,811,000	10,397,000	12,482,000	13,650,000	11,773,000	12,251,000	99,909,000
	청소년	57,527,000	67,694,000	67,711,000	68,691,000	87,169,000	77,353,000	
	소계(B)	45,972,357,672	47,047,836,441	44,832,926,727	47,115,806,346	52,889,367,794	60,234,646,248	67,558,216,000
(B)/(A)*100(%)		19.5	19.0	17.3	17.6	19.2	20.0	20.4
아동청소년 인구(명)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480,447	8,176,335	7,983,220
1인당 지출비용(천원)		4,874	5,121	5,003	5,393	6,237	7,367	8,463
GDP		1,429.4조원	1,486.1조원	1,564.1조원	1,641.8조원	1,730.4조원	1,782.3조원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3.2	3.2	2.9	2.9	3.1	3.4	-

*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각 연도). 나라살림예산.
* 아동·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예산」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2539항 아동수당 지원)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강화) + (청소년 예산: 22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 2136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 2137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지원)
* 전체 국가예산(A)은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임.
* 2019년부터 '청소년' 예산에 여성가족부의 '아동폭력예방' 예산을 통합하여 산출함.
*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도부터 포함됨.
* 인구 출처: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

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19년 10월 16일 인출.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9년 10월 기준 수치로, 2019년 최종 아동·청소년 인구수는 2020년에 업데이트됨.)

* GDP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19년 8월 21일 인출. 2019년도 GDP는 2020년에 발표됨.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산출식: 아동·청소년 예산(총계)/GDP×100

(2) 인권에 대한 인식

①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에 대한 인식' 소분류의 첫 번째 지표항목인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모른다' 37.3%, '이름만 들어봤다' 46.6%,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6.1%의 응답률을 보여 협약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표 Ⅳ-1-2).

표 Ⅳ-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37.3	46.6	16.1	100.0(9,269)	
성별	남학생	39.2	43.9	16.9	100.0(4,815)	30.773***
	여학생	35.2	49.6	15.2	100.0(4,453)	
학교급	초등학교	47.7	37.8	14.5	100.0(2,978)	212.957***
	중학교	30.8	51.6	17.6	100.0(2,922)	
	고등학교	33.7	50.1	16.2	100.0(3,369)	
지역규모	대도시	34.3	47.6	18.0	100.0(3,779)	41.185***
	중소도시	38.3	46.6	15.1	100.0(4,415)	
	읍면지역	43.6	43.1	13.4	100.0(1,074)	
학업성적	상	34.1	45.6	20.3	100.0(3,274)	77.557***
	중	37.9	47.7	14.3	100.0(3,895)	
	하	41.0	46.2	12.8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36.6	45.6	17.8	100.0(5,330)	27.744***
	중	38.5	48.1	13.4	100.0(3,076)	
	하	36.7	47.6	15.7	100.0(854)	

***p<.001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16.9%)이 여학생(15.2%)보다, 중학생(17.6%), 고등학생(16.2%), 초등학생(14.5%)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18.0%, 중소도시 15.1%, 읍면지역 13.4%),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20.3%, 중 14.3%, 하 12.8%),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상 17.8%, 하 15.7%, 중 13.4%)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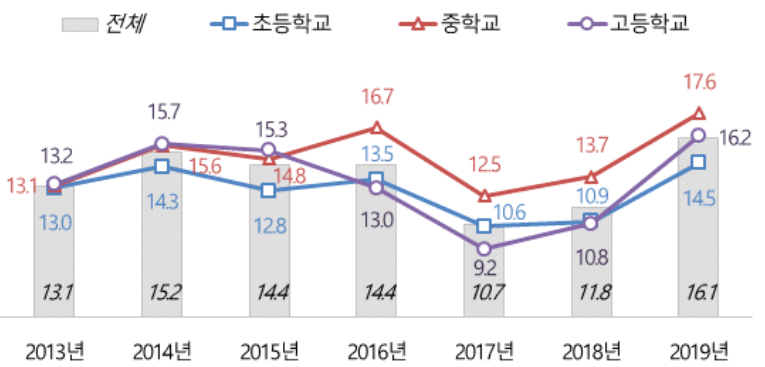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1-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연도별 추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13.1%로 시작하여 2017년도에 최저점(10.7%)을 보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가장 높은 응답률(16.1%)을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중학생의 인지도가 높은 경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나.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모른다' 51.4%, '이름만 들어봤다' 40.8%,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7.9%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알고 있는 응답률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8.0%, 남 7.8%)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11.3%, 중 7.3%, 초 4.5%), 읍면지역일수록(읍면지역 9.7%, 중소

도시 8.0%, 대도시 7.2%),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7%, 중 7.3%, 하 6.0%)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Ⅳ-1-3).

표 Ⅳ-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51.4	40.8	7.9	100.0(9,265)	
성별	남학생	52.9	39.4	7.8	100.0(4,812)	9.360**
	여학생	49.8	42.3	8.0	100.0(4,453)	
학교급	초등학교	63.9	31.6	4.5	100.0(2,978)	352.392***
	중학교	50.2	42.4	7.3	100.0(2,919)	
	고등학교	41.3	47.4	11.3	100.0(3,368)	
지역규모	대도시	53.7	39.0	7.2	100.0(3,779)	18.340**
	중소도시	49.9	42.1	8.0	100.0(4,412)	
	읍면지역	49.1	41.2	9.7	100.0(1,074)	
학업성적	상	50.1	40.2	9.7	100.0(3,274)	33.636***
	중	50.7	42.0	7.3	100.0(3,892)	
	하	54.7	39.3	6.0	100.0(2,091)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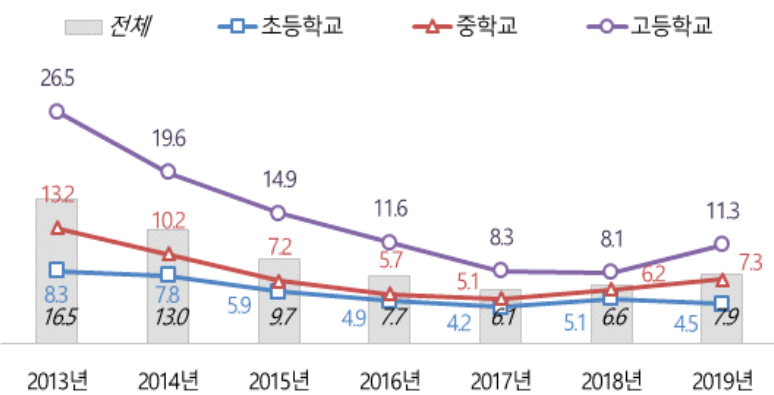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연도별 추이)

학생인권조례 인지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16.5%의 인지도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최근 5년간 4~5% 정도의 인지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활발했던 이후[33]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모른다' 28.5%, '이름만 들어봤다' 53.9%,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17.6% 등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구제 기능을 하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는 과반의 아동·청소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배경변인별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인 경우(여 17.7%, 남 17.4%),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23.5%, 중 16.6%, 초 11.8%), 대도시(20.3%)인 경우가 읍면지역(17.6%)과 중소도시(15.3%)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21.9%, 중 15.9%, 하 13.9%),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20.9%)가 높거나(18.5%)나 중간(15.1%)인 경우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4).

33)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경기도교육청(2010년), 광주광역시교육청(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청(2012년), 전라북도교육청(2013년) 등이다.

표 Ⅳ-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28.5	53.9	17.6	100.0(9,264)	
성별	남학생	30.7	51.8	17.4	100.0(4,812)	25.864***
	여학생	26.1	56.2	17.7	100.0(4,452)	
학교급	초등학교	38.2	50.0	11.8	100.0(2,978)	294.135***
	중학교	26.2	57.1	16.6	100.0(2,918)	
	고등학교	21.9	54.6	23.5	100.0(3,367)	
지역규모	대도시	26.8	53.0	20.3	100.0(3,778)	36.982***
	중소도시	29.8	54.9	15.3	100.0(4,412)	
	읍면지역	29.3	53.1	17.6	100.0(1,074)	
학업성적	상	26.7	51.3	21.9	100.0(3,273)	74.551***
	중	28.4	55.7	15.9	100.0(3,892)	
	하	31.5	54.6	13.9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27.8	53.7	18.5	100.0(5,326)	23.722***
	중	29.6	55.3	15.1	100.0(3,076)	
	하	28.6	50.5	20.9	100.0(85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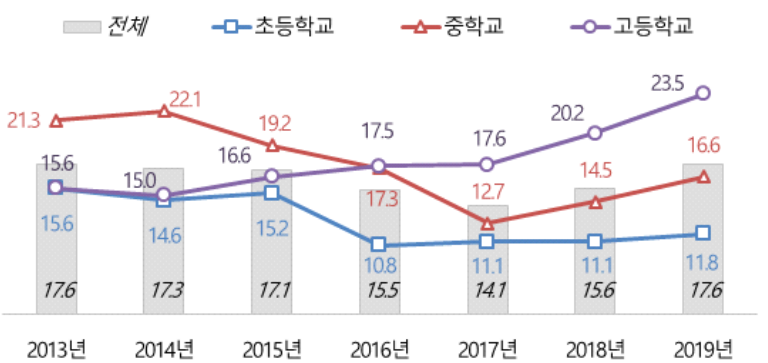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연도별 추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을 기점으로 15% 전후로 떨어진 인지도는 2019년에 2013년도와 같은 17.6%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에 21.3%였던 중학생의 인지도는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2013년 15.6%를 출발로 2019년 23.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6년 이전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지도가 높았으나 2016년부터는 역전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지표항목은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어느 정도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은 가정(95.6%), 학교(91.5%), 사이버 공간(81.1%), 우리나라 전체(77.1%) 순으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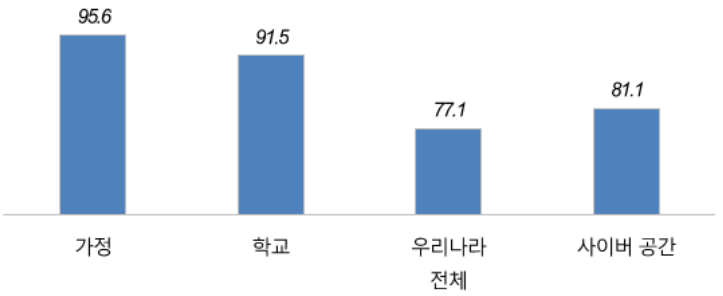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먼저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를 살펴보면, 95.6%의 아동·청소년이 '존중받는다(존중받는 편 38.8%, 매우 존중 56.8%)'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인 경우(남 96.0%, 여 95.2%), 초등학생(96.3%), 고등학생(95.5%), 중학생(95.1%)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96.0%, 중소도시 95.5%, 읍면지역 94.9%),

양부모가정인 경우(양부모가정 95.8%, 조손가정 95.2%, 한부모가정 93.7%), 학업성적(상 97.6%, 중 96.2%, 하 91.5%)과 경제적 수준(상 97.3%, 중 95.2%, 하 86.6%)이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5).

표 Ⅳ-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51(0.61)	0.9	3.5	38.8	56.8	100.0(9,266)	
성별	남학생	3.54(0.61)	1.1	2.9	36.6	59.4	100.0(4,812)	37.149***
	여학생	3.49(0.61)	0.7	4.0	41.2	54.0	100.0(4,453)	
학교급	초등학교	3.61(0.60)	1.1	2.6	30.1	66.2	100.0(2,977)	176.326***
	중학교	3.49(0.62)	0.9	4.1	40.6	54.5	100.0(2,921)	
	고등학교	3.45(0.61)	0.9	3.7	45.0	50.5	100.0(3,368)	
지역 규모	대도시	3.54(0.60)	0.7	3.3	37.2	58.8	100.0(3,777)	16.110*
	중소도시	3.49(0.62)	1.1	3.4	40.5	55.0	100.0(4,416)	
	읍면지역	3.51(0.63)	1.1	4.0	37.3	57.6	100.0(1,07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3(0.61)	0.9	3.3	38.2	57.6	100.0(8,404)	45.377***
	한부모가정	3.40(0.64)	1.2	5.1	46.5	47.2	100.0(694)	
	조손가정	3.47(0.70)	3.5	1.4	39.5	55.7	100.0(86)	
	기타	3.45(0.75)	3.7	4.2	35.8	56.3	100.0(76)	
학업 성적	상	3.66(0.54)	0.4	2.0	28.8	68.8	100.0(3,273)	427.327***
	중	3.50(0.60)	0.8	3.1	41.7	54.5	100.0(3,894)	
	하	3.32(0.69)	2.1	6.4	49.1	42.4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3.62(0.55)	0.4	2.2	31.8	65.5	100.0(5,329)	533.904***
	중	3.41(0.62)	1.2	3.7	47.7	47.5	100.0(3,075)	
	하	3.20(0.74)	3.1	10.3	50.2	36.4	100.0(854)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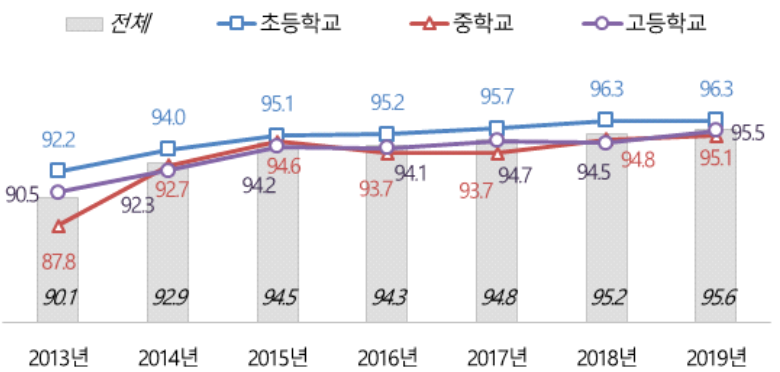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가정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미세하게 더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Ⅳ-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23(0.65)	1.7	6.8	57.9	33.6	100.0(9,265)	
성별	남학생	3.27(0.67)	2.0	6.3	54.5	37.2	100.0(4,811)	67.060***
	여학생	3.20(0.62)	1.3	7.3	61.5	29.8	100.0(4,453)	
학교급	초등학교	3.35(0.63)	1.2	4.8	52.3	41.8	100.0(2,976)	175.179***
	중학교	3.22(0.66)	2.0	6.7	58.2	33.1	100.0(2,921)	
	고등학교	3.15(0.64)	1.8	8.7	62.6	26.9	100.0(3,368)	
지역 규모	대도시	3.28(0.64)	1.4	6.6	55.1	36.9	100.0(3,777)	32.856***
	중소도시	3.21(0.65)	1.9	6.9	59.8	31.4	100.0(4,414)	
	읍면지역	3.21(0.64)	1.7	7.1	59.7	31.5	100.0(1,073)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4(0.64)	1.6	6.5	57.7	34.2	100.0(8,404)	41.363***
	한부모가정	3.13(0.67)	2.3	10.0	60.2	27.5	100.0(694)	
	조손가정	3.28(0.62)	1.1	5.3	57.8	35.8	100.0(85)	
	기타	3.05(0.83)	8.0	8.0	55.4	28.7	100.0(76)	
학업 성적	상	3.39(0.63)	1.3	4.2	49.2	45.3	100.0(3,273)	430.780***
	중	3.21(0.61)	1.3	6.5	61.9	30.3	100.0(3,893)	
	하	3.04(0.67)	3.0	11.5	63.8	21.7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3.32(0.64)	1.5	5.1	53.4	40.1	100.0(5,329)	309.797***
	중	3.15(0.62)	1.5	8.1	63.9	26.6	100.0(3,074)	
	하	2.99(0.68)	3.7	13.0	64.2	19.1	100.0(854)	

***p<.001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를 보면, 91.5%의 아동·청소년이 '존중받는다(존중받는 편 57.9%, 매우 존중 33.6%)'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인 경우(남 91.7%, 여 91.3%),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4.1%, 중 91.3%, 고 89.5%), 대도시일수록(대도시 92.0%, 중소도시와 읍면도시 모두 91.2%), 학업성적(상 94.5%, 중 92.2%, 하 85.5%)과 경제적 수준(상 93.5%, 중 90.5%, 하 83.3%)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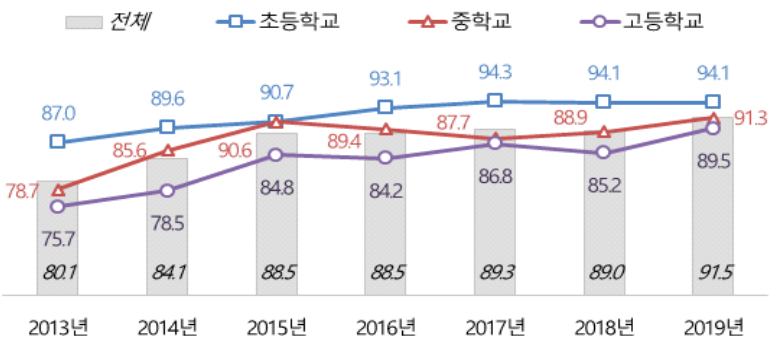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순으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92(0.75)	4.7	18.2	57.3	19.8	100.0(9,259)	
성별	남학생	2.95(0.80)	5.9	16.9	53.4	23.9	100.0(4,809)	151.054***
	여학생	2.89(0.69)	3.3	19.7	61.5	15.5	100.0(4,450)	
학교급	초등학교	2.98(0.82)	6.2	15.9	51.6	26.3	100.0(2,972)	210.172***
	중학교	2.95(0.74)	4.3	16.9	58.3	20.5	100.0(2,919)	
	고등학교	2.85(0.69)	3.7	21.4	61.4	13.6	100.0(3,369)	
지역 규모	대도시	2.95(0.75)	4.5	17.3	56.6	21.7	100.0(3,776)	19.200**
	중소도시	2.89(0.75)	4.9	19.4	57.3	18.4	100.0(4,411)	
	읍면지역	2.93(0.73)	4.6	16.9	59.3	19.2	100.0(1,07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3(0.75)	4.6	17.8	57.6	20.0	100.0(8,398)	18.349*
	한부모가정	2.83(0.77)	5.8	22.5	54.6	17.2	100.0(694)	
	조손가정	2.94(0.85)	6.3	19.6	47.6	26.4	100.0(86)	
	기타	2.85(0.80)	6.2	21.7	53.4	18.7	100.0(76)	
학업 성적	상	3.06(0.76)	3.8	14.4	54.0	27.8	100.0(3,269)	259.541***
	중	2.89(0.72)	4.6	18.4	60.3	16.8	100.0(3,892)	
	하	2.77(0.75)	6.2	23.9	56.7	13.2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3.01(0.75)	4.0	15.8	55.9	24.4	100.0(5,327)	257.066***
	중	2.86(0.71)	4.5	20.2	60.5	14.9	100.0(3,073)	
	하	2.64(0.78)	9.7	26.4	54.4	9.4	100.0(852)	

*p<.05, **p<.01, ***p<.001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는 77.1%(존중받는 편 57.3%, 매우 존중 19.8%)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남 77.3%, 여 77.0%)인 경우, 중학생(78.8%)이 초등학생(77.9%)과 고등학생(75.0%)보다, 읍면지역(78.5%), 대도시(78.3%), 중소도시(75.7%) 순으로, 학업성적(상 81.8%, 중 77.1%, 하 69.9%)과 경제적 수준(상 80.3%, 중 75.4%, 하 63.8%)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Ⅳ-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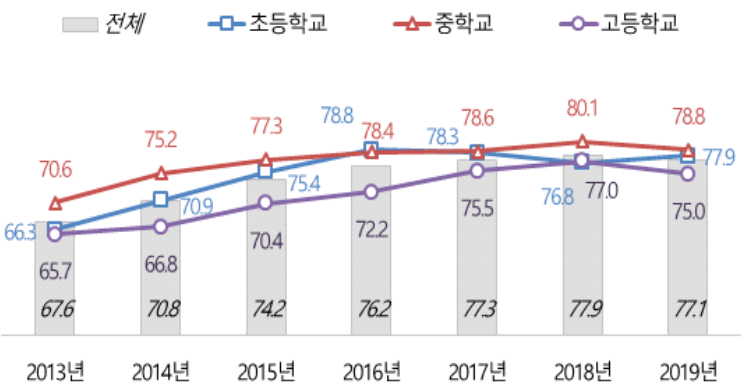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67.6%에서 2018년 77.9%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9년 77.1%로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작년도 대비 2019년에 초등학생의 응답률은 소폭 증가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이 다른 교급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Ⅳ-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98(0.77)	5.7	13.2	58.3	22.8	100.0(9,243)	
성별	남학생	2.98(0.82)	7.2	13.2	54.3	25.3	100.0(4,806)	93.793***
	여학생	2.99(0.71)	4.1	13.2	62.6	20.0	100.0(4,437)	
학교급	초등학교	3.06(0.86)	7.9	10.3	49.1	32.6	100.0(2,959)	
	중학교	3.02(0.71)	4.0	11.9	61.7	22.4	100.0(2,916)	387.623***
	고등학교	2.87(0.71)	5.3	16.9	63.4	14.5	100.0(3,369)	
지역 규모	대도시	3.02(0.76)	5.1	12.6	57.2	25.1	100.0(3,769)	
	중소도시	2.95(0.76)	6.0	13.5	59.6	20.9	100.0(4,401)	26.327***
	읍면지역	2.94(0.80)	6.7	14.4	56.7	22.2	100.0(1,073)	
학업 성적	상	3.08(0.79)	5.4	11.7	52.8	30.1	100.0(3,258)	
	중	2.97(0.74)	5.5	12.7	61.4	20.3	100.0(3,888)	184.961***
	하	2.86(0.76)	6.7	16.5	60.9	15.9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3.06(0.77)	5.3	11.1	55.9	27.8	100.0(5,315)	
	중	2.90(0.73)	5.8	14.9	62.4	16.9	100.0(3,068)	228.684***
	하	2.75(0.78)	8.4	20.5	58.5	12.7	100.0(853)	

***p<.001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81.1%의 아동·청소년이 '존중받는다(존중받는 편 58.3%, 매우 존중 22.8%)'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82.6%, 남 79.6%)인 경우, 중학생(84.1%), 초등학생(81.7%), 고등학생(77.9%)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82.3%, 중소도시 80.5%, 읍면지역 78.9%), 학업성적(상 82.9%, 중 81.7%, 하 76.8%)과 경제적 수준(상 83.7%, 중 79.3%, 하 71.2%)이 높을수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표 Ⅳ-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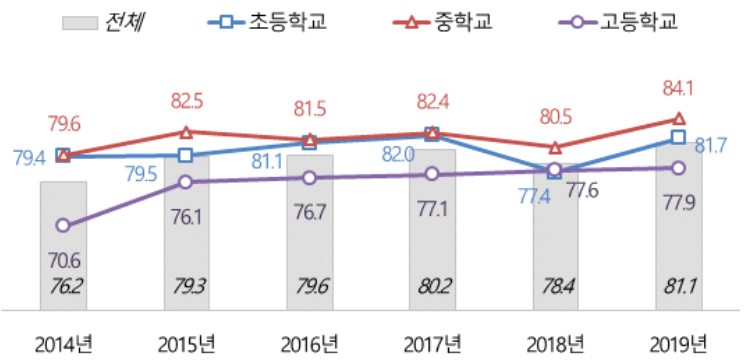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연도별 추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76.2%에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9년 81.1%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중학생의 응답률이 대체적으로 높고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률 추이를 보면, 학교에서의 인권존중도가 2013년 대비 11.4%p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인권존중도는 2013년 대비 9.5%p 상승하였으며, 가정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존중도는 5%p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의 인권존중 정도가 낮게 나타나 인권 수준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③ 인권의식 및 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 사회참여 필요성, 청소년 참여조직의 의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생각(총 4문항), 경제적 배경, 성별, 민족 등에 따른 차별 의식(총 3문항) 등 7개 문항에 대해 인식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Ⅳ-1-9.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4(0.85)	29.5	41.2	25.0	4.3	100.0(9,266)	
성별	남학생	2.10(0.88)	28.4	38.5	27.7	5.4	100.0(4,814)	79.332***
	여학생	1.98(0.81)	30.7	44.0	22.2	3.0	100.0(4,452)	
학교급	초등학교	2.28(0.92)	23.3	34.6	33.2	8.9	100.0(2,976)	458.583***
	중학교	1.97(0.80)	30.6	44.1	22.7	2.6	100.0(2,921)	
	고등학교	1.89(0.77)	34.1	44.4	19.8	1.6	100.0(3,369)	
고교 유형	일반계고	1.87(0.77)	34.8	44.8	18.5	1.8	100.0(2,717)	16.898***
	특성화계고	1.96(0.77)	31.0	42.9	25.1	1.0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5(0.85)	29.3	41.3	25.1	4.4	100.0(8,404)	18.524*
	한부모가정	1.97(0.83)	32.9	40.2	24.2	2.8	100.0(694)	
	조손가정	2.25(0.96)	25.7	34.7	28.7	10.9	100.0(86)	
	기타	2.00(0.80)	30.3	40.2	28.3	1.2	100.0(76)	
학업 성적	상	2.08(0.87)	28.9	39.8	26.0	5.3	100.0(3,274)	34.691***
	중	2.05(0.83)	28.3	42.0	25.7	4.0	100.0(3,894)	
	하	1.96(0.82)	32.7	41.7	22.4	3.2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2.10(0.87)	28.0	39.3	27.6	5.0	100.0(5,330)	89.907***
	중	1.99(0.81)	30.1	43.8	22.8	3.3	100.0(3,075)	
	하	1.86(0.80)	36.7	43.3	17.0	3.0	100.0(854)	

*p<.05, ***p<.00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70.7%가 ‘그렇지 않다(전혀 29.5%, 그렇지 않은 편 41.2%)’, 29.3%는 ‘그렇다’(그런 편이다 25.0%, 매우 그렇다 4.3%)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정도의 아동·청소년은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여 74.7%, 남 66.9%)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78.5%, 중 74.7%, 초 57.9%), 학업성적(하

74.4%, 중 70.3%, 상 68.7%)과 경제적 수준(하 80.0%, 중 73.9%, 상 67.3%)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Ⅳ-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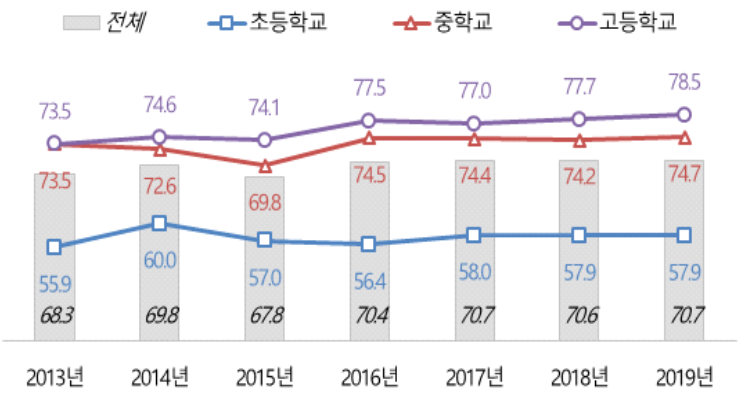

*주) 부정적 질문이었으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합계(단위: %)를 통해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률로 그래프를 제시함.

그림 Ⅳ-1-9.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부정응답 연도별 추이)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68.3%에서 2019년 70.7%까지 다소의 증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식 변화는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Ⅳ-1-10.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0(0.73)	3.4	8.3	53.6	34.7	100.0(9,265)	
성별	남학생	3.13(0.78)	4.9	10.5	51.8	32.8	100.0(4,812)	136.465***
	여학생	3.27(0.65)	1.8	6.0	55.5	36.8	100.0(4,453)	
학교급	초등학교	3.12(0.81)	5.4	11.8	48.6	34.3	100.0(2,976)	162.735***
	중학교	3.19(0.70)	2.7	8.4	56.1	32.9	100.0(2,921)	
	고등학교	3.27(0.66)	2.2	5.2	55.8	36.8	100.0(3,369)	
지역 규모	대도시	3.24(0.72)	3.1	7.5	51.6	37.8	100.0(3,779)	31.431***
	중소도시	3.17(0.73)	3.7	8.6	55.0	32.6	100.0(4,414)	
	읍면지역	3.17(0.72)	3.0	10.0	54.3	32.7	100.0(1,0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0(0.72)	3.3	8.1	53.4	35.2	100.0(8,403)	17.340*
	한부모가정	3.14(0.72)	3.6	9.6	56.6	30.3	100.0(694)	
	조손가정	3.05(0.82)	5.2	14.7	49.8	30.3	100.0(86)	
	기타	3.08(0.77)	4.2	12.9	53.6	29.4	100.0(76)	
학업 성적	상	3.27(0.74)	3.5	7.0	48.1	41.4	100.0(3,274)	109.829***
	중	3.17(0.70)	2.9	8.8	56.8	31.5	100.0(3,894)	
	하	3.13(0.74)	4.1	9.4	56.2	30.2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3.20(0.75)	3.8	8.4	51.7	36.2	100.0(5,329)	40.028***
	중	3.17(0.70)	2.8	8.8	57.2	31.2	100.0(3,074)	
	하	3.26(0.71)	3.0	6.3	52.3	38.4	100.0(854)	

*p<.05, ***p<.001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해서는 88.3%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1.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92.3%, 남 84.6%)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92.6%, 중 89.0%, 초 82.9%), 대도시일수록(대도시 89.4%, 중소도시 87.6%, 읍면지역 87.0%), 양부모가정인 경우(양부모가정 88.6%, 한부모가정 86.9%, 조손가정 80.1%), 학업성적(상 89.5%, 중 88.3%, 하 86.4%)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하 90.7%, 중 88.4%, 상 87.9%)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Ⅳ-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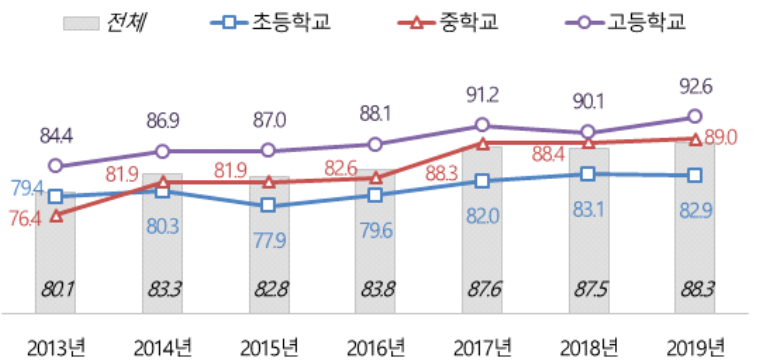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0.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80.1%에서 2019년 88.3%까지 소폭의 증감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이 높았으며 2013년 대비 중학생의 응답률 증가추세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Ⅳ-1-11.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0(0.72)	3.4	11.2	57.4	28.0	100.0(9,263)	
성별	남학생	3.06(0.76)	4.7	11.9	55.9	27.5	100.0(4,810)	56.955***
	여학생	3.14(0.67)	2.1	10.5	58.9	28.6	100.0(4,453)	
학교급	초등학교	3.20(0.74)	3.3	9.8	50.7	36.3	100.0(2,974)	166.203***
	중학교	3.08(0.70)	3.5	10.2	61.0	25.4	100.0(2,920)	
	고등학교	3.03(0.71)	3.5	13.3	60.1	23.0	100.0(3,369)	
고교 유형	일반계고	3.02(0.72)	3.8	13.9	59.1	23.3	100.0(2,717)	8.130*
	특성화계고	3.05(0.66)	2.7	11.0	64.5	21.9	100.0(65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3.12(0.74)	3.7	10.6	55.6	30.1	100.0(3,779)	20.331**
	중소도시	3.08(0.72)	3.4	11.9	58.3	26.5	100.0(4,411)	
	읍면지역	3.11(0.68)	2.7	10.5	59.8	27.0	100.0(1,073)	
학업 성적	상	3.19(0.75)	3.5	9.6	51.2	35.7	100.0(3,272)	194.691***
	중	3.09(0.68)	2.6	11.0	60.9	25.5	100.0(3,892)	
	하	2.97(0.74)	4.9	14.1	60.4	20.6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3.14(0.74)	3.7	10.0	54.9	31.4	100.0(5,327)	93.745***
	중	3.05(0.68)	2.7	12.6	61.5	23.1	100.0(3,074)	
	하	3.02(0.74)	4.1	13.9	57.9	24.2	100.0(854)	

*p<.05, **p<.01, ***p<.001

학생회 등 청소년 자치조직이 학교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응답률은 85.4%,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14.6%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여 87.5%, 남 83.4%)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7.0%, 중 86.4%, 고 83.1%), 읍면지역(86.8%), 중소도시(84.8%), 대도시(85.7%) 순으로, 학업성적(상 86.9%, 중 86.4%, 하 81.0%)과 경제적 수준(상 86.3%, 중 84.6%, 하 82.1%)이 높을수록 자치조직이 학교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Ⅳ-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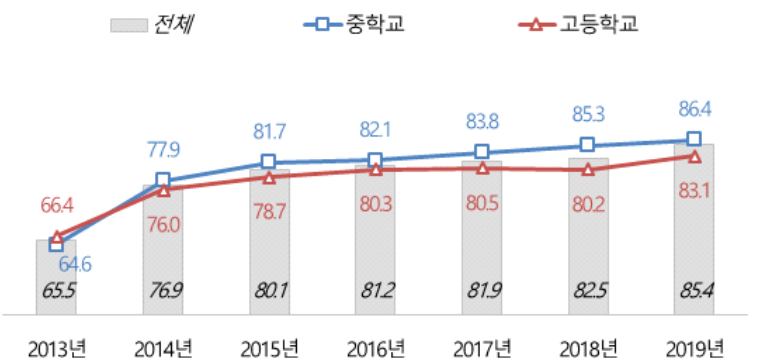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초등학생 대상 조사는 2019년부터 추가됨.

그림 Ⅳ-1-11.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연도별 추이)

학생자치조직의 의의에 대한 응답률은 2013년 65.5%에서 2019년 85.4%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19년도부터 초등학생 대상 설문문항을 추가한 결과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중·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자치조직의 효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12.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7(0.60)	1.2	2.1	35.4	61.3	100.0(9,266)	
성별	남학생	3.51(0.64)	1.9	2.7	38.2	57.2	100.0(4,813)	105.618***
	여학생	3.63(0.54)	0.4	1.5	32.3	65.8	100.0(4,454)	
학교급	초등학교	3.62(0.59)	1.1	2.4	29.8	66.8	100.0(2,976)	74.871***
	중학교	3.53(0.62)	1.7	1.8	38.4	58.1	100.0(2,922)	
	고등학교	3.56(0.58)	0.8	2.1	37.8	59.3	100.0(3,369)	
지역 규모	대도시	3.61(0.57)	0.8	2.1	33.0	64.2	100.0(3,779)	29.399***
	중소도시	3.54(0.62)	1.5	2.1	36.9	59.5	100.0(4,414)	
	읍면지역	3.55(0.60)	1.1	2.1	37.8	59.0	100.0(1,07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8(0.59)	1.1	2.1	34.8	62.0	100.0(8,404)	25.081**
	한부모가정	3.48(0.64)	1.8	2.6	41.8	53.8	100.0(694)	
	조손가정	3.49(0.69)	2.5	3.5	36.3	57.7	100.0(86)	
	기타	3.49(0.64)	2.2	1.2	42.5	54.2	100.0(76)	
학업 성적	상	3.64(0.58)	1.2	1.8	28.6	68.4	100.0(3,274)	126.686***
	중	3.55(0.58)	0.8	2.1	38.4	58.6	100.0(3,894)	
	하	3.49(0.64)	1.8	2.6	40.4	55.2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3.59(0.60)	1.2	2.1	33.1	63.7	100.0(5,329)	45.124***
	중	3.53(0.60)	1.1	2.0	40.1	56.8	100.0(3,076)	
	하	3.59(0.60)	1.2	2.4	33.0	63.4	100.0(854)	

**p<.01, ***p<.001

표현의 자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96.7%의 아동·청소년이 모든 사람은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98.1%, 남 95.4%)인 경우, 고등학생(97.1%), 초등학생(96.6%), 중학생(96.5%) 순으로, 대도시(97.2%), 읍면지역(96.8%), 중소도시(96.4%) 순으로, 양부모가정인 경우(양부모가정 96.8%, 한부모가정 95.6%, 조손가정 94.0%), 학업성적(상 97.0%, 중 97.0%, 하 95.6%)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의 경우 중(96.9%), 상 (96.8%), 하 (96.4%) 순으로 표현의 자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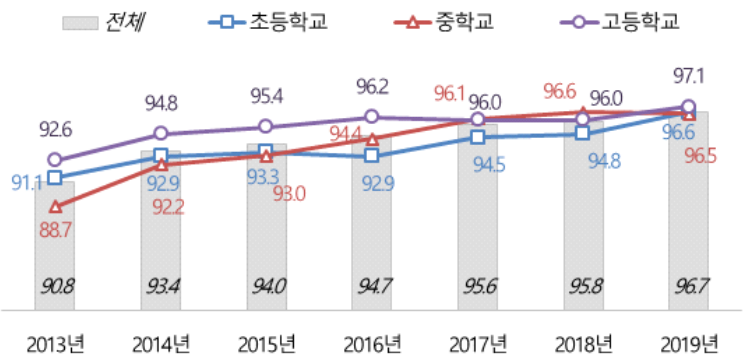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2.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 추이를 보면, 2013년(90.8%)부터 2019년(96.7%)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높은 가운데 중학생은 2015년도까지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차별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별, 이주배경 여부 등으로 인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표 Ⅳ-1-13.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71(0.56)	1.4	1.3	22.0	75.3	100.0(9,267)	
성별	남학생	3.64(0.64)	2.3	1.7	25.7	70.3	100.0(4,814)	163.350***
	여학생	3.79(0.46)	0.5	0.9	18.0	80.7	100.0(4,453)	
학교급	초등학교	3.77(0.57)	2.0	1.2	14.5	82.3	100.0(2,978)	166.811***
	중학교	3.66(0.60)	1.7	1.4	26.7	70.3	100.0(2,921)	
	고등학교	3.71(0.52)	0.7	1.4	24.6	73.4	100.0(3,369)	
지역 규모	대도시	3.73(0.55)	1.2	1.4	20.4	77.0	100.0(3,779)	21.082**
	중소도시	3.69(0.59)	1.8	1.4	23.0	73.9	100.0(4,415)	
	읍면지역	3.73(0.51)	0.7	0.8	23.6	74.9	100.0(1,073)	
학업 성적	상	3.76(0.54)	1.5	0.8	17.6	80.0	100.0(3,274)	80.135***
	중	3.70(0.55)	1.1	1.3	24.1	73.4	100.0(3,895)	
	하	3.66(0.61)	1.7	2.0	25.1	71.1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3.73(0.57)	1.6	1.2	19.9	77.2	100.0(5,330)	58.588***
	중	3.67(0.58)	1.3	1.6	26.1	71.0	100.0(3,076)	
	하	3.77(0.48)	0.6	0.8	19.9	78.7	100.0(854)	

**p<.01, ***p<.001

먼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97.3%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 22.0%, 매우 그렇다 75.3%)'고 응답하였으며 2.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98.7%, 남 96.0%)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98.0%, 중 97.0%, 초 96.8%), 읍면지역(98.5%), 대도시(97.4%), 중소도시(96.9%) 순으로, 학업성적(상 97.6%, 중 97.5%, 하 96.2%)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하 98.6%)이 낮을수록 가정형편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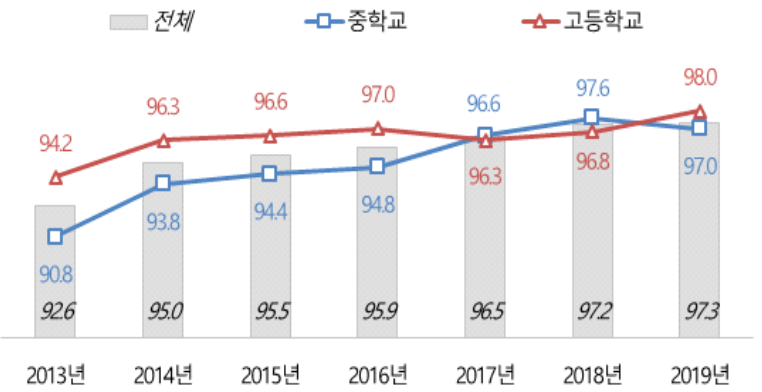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초등학생 대상 조사는 2019년부터 추가됨.

그림 Ⅳ-1-13.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연도별 추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률은 2013년(92.6%)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97.3%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고등학생 응답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응답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중학생 응답률의 상승폭이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도부터 초등학생 대상 설문문항을 추가한 결과, 초등학생의 응답률은 96.8%로 타 교급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증가하였으나 중학생의 경우는 소폭 감소하였다.

표 Ⅳ-1-14.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69(0.58)	1.3	2.3	22.9	73.5	100.0(9,261)	
성별	남학생	3.60(0.66)	2.2	3.2	27.2	67.4	100.0(4,810)	227.823***
	여학생	3.78(0.47)	0.4	1.3	18.3	80.1	100.0(4,451)	
학교급	초등학교	3.77(0.53)	1.0	2.1	16.4	80.6	100.0(2,972)	130.449***
	중학교	3.67(0.59)	1.5	1.7	25.3	71.5	100.0(2,921)	
	고등학교	3.63(0.61)	1.4	3.0	26.6	69.0	100.0(3,369)	
지역 규모	대도시	3.72(0.55)	1.0	2.1	21.2	75.7	100.0(3,779)	24.649***
	중소도시	3.67(0.59)	1.4	2.4	23.5	72.7	100.0(4,410)	
	읍면지역	3.63(0.63)	1.9	2.6	26.5	69.1	100.0(1,0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69(0.58)	1.3	2.2	22.6	73.9	100.0(8,400)	26.351**
	한부모가정	3.62(0.61)	1.2	3.6	26.8	68.4	100.0(694)	
	조손가정	3.61(0.70)	1.8	6.8	19.8	71.6	100.0(85)	
	기타	3.73(0.45)	0.0	0.0	27.4	72.6	100.0(76)	
학업 성적	상	3.73(0.56)	1.3	2.2	18.3	78.2	100.0(3,272)	78.178***
	중	3.68(0.57)	1.1	2.0	24.7	72.2	100.0(3,892)	
	하	3.62(0.63)	1.7	3.0	26.7	68.6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3.71(0.57)	1.3	2.2	20.1	76.4	100.0(5,326)	64.388***
	중	3.64(0.59)	1.3	2.2	27.4	69.1	100.0(3,074)	
	하	3.66(0.59)	1.1	3.1	24.0	71.8	100.0(854)	

**p<.01, ***p<.001

양성평등에 대해 96.4%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 22.9%, 매우 그렇다 73.5%)'고 응답하였으며 3.6%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98.4%, 남 94.5%)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7.0%, 중 96.8%, 고 95.6%), 대도시일수록(대도시 96.9%, 중소도시 96.2%, 읍면지역 95.6%), 양부모가정인 경우(양부모가정 96.5%, 한부모가정 95.2%, 조손가정

91.4%), 학업성적의 경우 중(96.9%), 상(96.5%), 하(95.3%)의 순으로, 경제적 수준(상 96.5%, 중 96.5%, 하 95.8%)이 높을수록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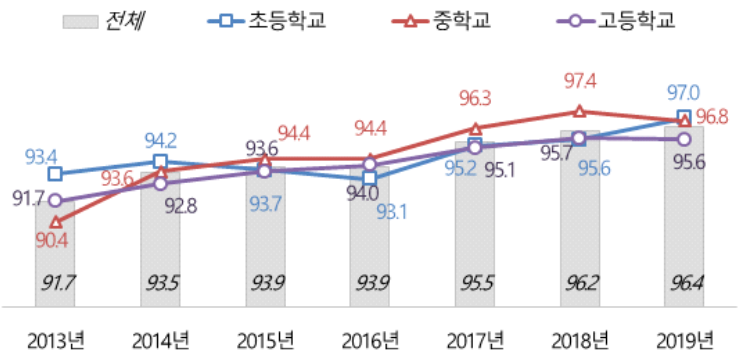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4.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학교급별)(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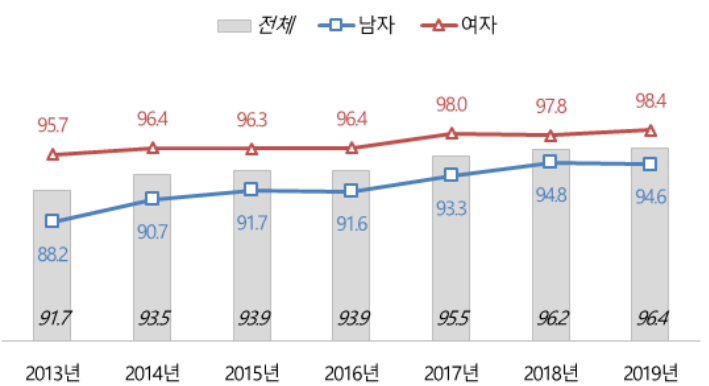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5.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성별)(연도별 추이)

학교급별 양성평등의식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91.7%)부터 2019년(96.4%)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학생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90.4%에서 2019년 96.8%로 증가). 전년도 대비 초등학생의 응답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성별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 2013년 95.7%에서 2019년 98.4%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양성평등의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남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2013년 88.2%였던 응답률이 2019년 94.6%로 6.4%p 증가하였다.

표 Ⅳ-1-15.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5(0.65)	1.7	3.7	32.3	62.3	100.0(9,263)	
성별	남학생	3.50(0.70)	2.6	4.4	33.5	59.5	100.0(4,809)	80.128***
	여학생	3.61(0.58)	0.7	2.9	31.1	65.3	100.0(4,454)	
학교급	초등학교	3.63(0.64)	1.6	3.9	24.8	69.7	100.0(2,975)	137.933***
	중학교	3.53(0.67)	2.3	3.2	34.1	60.4	100.0(2,920)	
	고등학교	3.51(0.64)	1.3	3.8	37.5	57.3	100.0(3,367)	
지역 규모	대도시	3.59(0.62)	1.2	3.6	30.0	65.2	100.0(3,777)	29.812***
	중소도시	3.52(0.67)	2.1	3.7	34.0	60.2	100.0(4,412)	
	읍면지역	3.54(0.65)	1.7	3.6	33.8	60.9	100.0(1,073)	
학업 성적	상	3.62(0.62)	1.6	2.7	27.5	68.2	100.0(3,273)	85.678***
	중	3.53(0.65)	1.6	4.1	34.0	60.2	100.0(3,891)	
	하	3.48(0.68)	2.0	4.3	36.8	56.8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3.58(0.66)	2.0	3.4	29.4	65.3	100.0(5,327)	67.821***
	중	3.51(0.64)	1.3	4.0	37.4	57.3	100.0(3,075)	
	하	3.54(0.65)	1.4	4.4	32.7	61.5	100.0(854)	

***$p<.001$

국내거주 외국인도 우리와 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4.6%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 32.3%, 매우 그렇다 62.3%)'고 응답하였고, 5.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96.4%, 남 93.0%)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94.8%, 초 94.5%, 중 94.5%), 대도시(95.2%), 읍면지역(94.7%), 중소도시(94.2%)의 순으로, 학업성적(상 95.7%, 중 94.2%, 하 93.6%)과 경제적 수준(상 94.7%, 중 94.7%, 하 94.2%)이 높을수록 이주배경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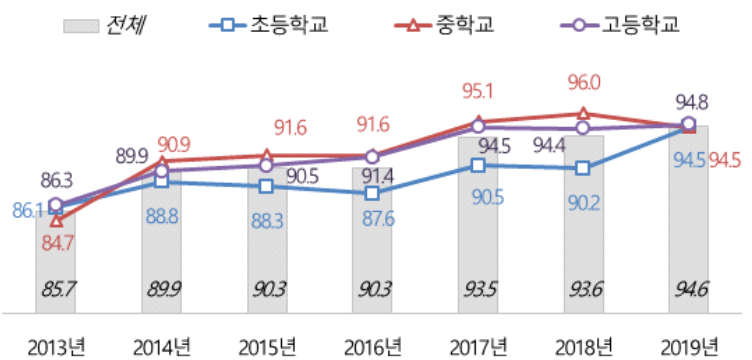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6.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85.7%)부터 2019년(94.6%)까지 응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학생 응답률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년도 대비 2019년도 응답률 변화를 보면, 중학생의 응답률이 2018년 96.0%에서 94.5%로 소폭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2018년 90.2%에서 94.5%로 4.3%p 상승하였다.

(3) 인권교육

① 인권교육 실시 현황

인권교육 관련 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추진 실적으로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현황자료에는 다양한 교육대상이 포함되어 아동·청소년과 직접 관련되는 인권교육 통계를 분리해 내기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가장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인권교육 통계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에 교육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을 통해 총 4,160회에 걸쳐 299,936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 대비 교육 횟수는 6.5%, 교육 참여인원은 35.6% 증가하였다.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인원과 기업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로 사이버 콘텐츠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인권교육이 확대되어 2018년도의 사이버 인권교육이 급증하였다. 영유아 및 초·중등학교 분야 인권교육과정에는 유치원 교사 인권감수성 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아동학대예방 학부모교육,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은 총 826회(32,130명) 실시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6: 212-224).

표 Ⅳ-1-1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4년	2,334	164,075	334	14,325	206	4,926	288	34,744	1,506	110,080
2015년	2,509	145,322	438	18,468	239	9,194	353	34,635	1,479	83,025
2016년	3,702	207,619	734	33,953	380	5,930	828	71,434	1,760	96,302
2017년	3,910	221,171	494	28,916	533	10,974	915	79,799	1,968	101,482
2018년	4,160	299,936	427	19,957	484	8,542	1,133	165,248	2,116	106,189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6). 201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p.213.
* 주 : 2017년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2018년에는 '인권특강'으로 분류됨.

② 인권교육 경험

2019년부터는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을 경험 여부로만 응답하도록 하였다(기존에는 횟수를 질문함). 그 결과 46.0%의 아동·청소년이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4.0%는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Ⅳ-1-17).

표 Ⅳ-1-17. 인권교육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46.0	54.0	100.0(9,260)	
성별	남학생	42.9	57.1	100.0(4,810)	39.086***
	여학생	49.4	50.6	100.0(4,450)	
학교급	초등학교	55.3	44.7	100.0(2,974)	157.119***
	중학교	43.0	57.0	100.0(2,918)	
	고등학교	40.4	59.6	100.0(3,369)	
고교유형	일반계고	42.0	58.0	100.0(2,717)	16.062***
	특성화계고	33.5	66.5	100.0(65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46.4	53.6	100.0(8,399)	8.009*
	한부모가정	41.0	59.0	100.0(694)	
	조손가정	45.9	54.1	100.0(86)	
	기타	43.2	56.8	100.0(76)	
학업성적	상	54.3	45.7	100.0(3,272)	172.993***
	중	44.1	55.9	100.0(3,892)	
	하	36.5	63.5	100.0(2,089)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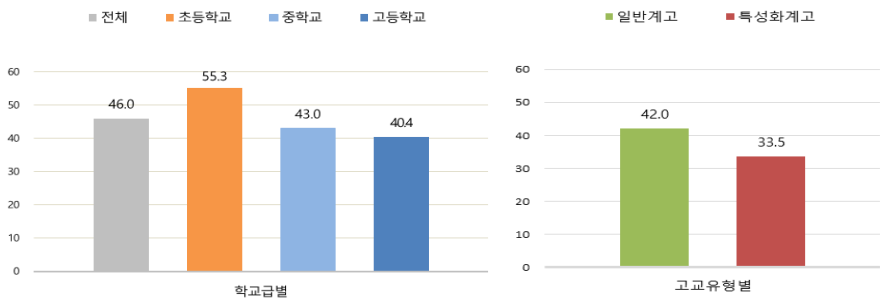

그림 Ⅳ-1-17. 인권교육 경험(학교급별)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49.4%, 남 42.9%)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55.3%, 중 43.0%, 고 40.4%), 양부모가정(46.4%), 조손가정(45.9%), 한부모가정(41.0%)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54.3%, 중 44.1%, 하 36.5%) 인권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42.0%)가 특성화계고(33.5%)보다 인권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18.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학교 교과수업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N)
전체		74.6	27.9	14.9	2.0	100.0(4,244)
성별	남학생	72.3	29.5	15.5	2.2	100.0(2,051)
	여학생	76.8	26.4	14.3	1.8	100.0(2,193)
학교급	초등학교	84.3	19.0	16.1	2.7	100.0(1,641)
	중학교	80.5	22.1	14.0	1.2	100.0(1,253)
	고등학교	57.4	44.2	14.3	1.8	100.0(1,351)
지역 규모	대도시	71.9	31.4	15.4	2.2	100.0(1,710)
	중소도시	77.3	24.8	14.4	1.8	100.0(2,053)
	읍면지역	72.9	28.9	14.9	1.6	100.0(482)
학업 성적	상	74.7	28.6	16.5	2.3	100.0(1,773)
	중	74.9	27.0	13.6	1.6	100.0(1,710)
	하	73.7	28.7	14.1	1.9	100.0(757)
경제적 수준	상	75.7	27.2	15.8	2.0	100.0(2,480)
	중	73.7	28.6	13.1	2.1	100.0(1,384)
	하	70.9	30.3	15.8	1.6	100.0(378)

인권교육을 경험한 곳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74.6%,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27.9%, 학교 밖의 인권교육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14.9% 순으로,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교과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여학생(여 76.8%, 남 72.3%)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초 84.3%, 중 80.5%, 고 57.4%)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44.2%로 다른 교급(초 19.0%, 중 22.1%)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Ⅳ-1-18).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학교 교과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제도화 노력 성과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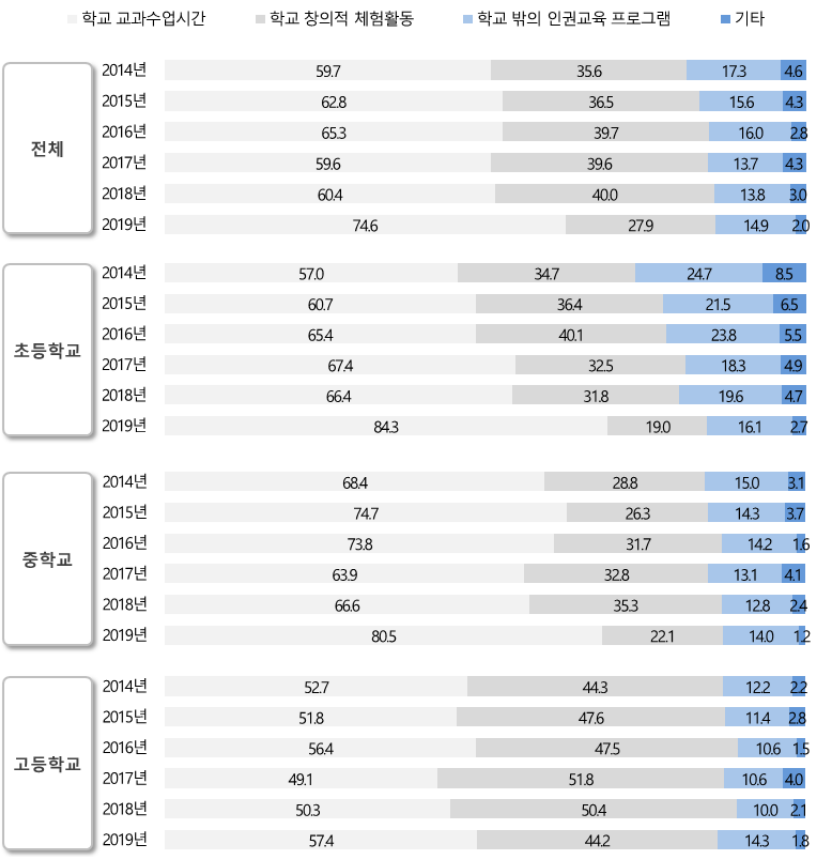

그림 Ⅳ-1-18.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연도별 추이)

인권교육을 받은 곳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 들어 학교 교과수업시간에 인권교육 경험률이 74.6%로 2017년 60.4%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 교과수업시간의 인권교육은 2018년에 각각 66.4%, 66.6%였던 것이 2019년에는 84.3%, 80.5%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인권교육의 효과는 2018년까지는 포괄적인 도움정도를 한 개의 문항으로 물었던 것에서, 2019년에는 인권교육의 3가지 목표별(알고 이해하기, 생각과 태도 변화, 실천행동)로 각각의 도움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표 Ⅳ-1-19. 인권교육 도움 정도_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9(0.62)	2.0	5.4	64.1	28.5	100.0(4,242)	
성별	남학생	3.19(0.65)	2.6	5.7	62.1	29.6	100.0(2,053)	12.106**
	여학생	3.19(0.59)	1.4	5.2	66.0	27.5	100.0(2,188)	
학교급	초등학교	3.26(0.66)	2.1	5.4	56.6	35.8	100.0(1,639)	78.241***
	중학교	3.15(0.61)	2.1	6.0	66.9	25.0	100.0(1,251)	
	고등학교	3.15(0.57)	1.7	4.8	70.6	22.9	100.0(1,351)	
지역 규모	대도시	3.22(0.63)	1.9	5.3	61.6	31.3	100.0(1,712)	18.677**
	중소도시	3.16(0.63)	2.4	5.8	65.3	26.6	100.0(2,048)	
	읍면지역	3.21(0.54)	0.5	4.5	68.1	26.9	100.0(482)	
학업 성적	상	3.28(0.64)	2.1	4.1	57.9	35.9	100.0(1,773)	100.129***
	중	3.16(0.57)	1.4	5.5	69.0	24.1	100.0(1,712)	
	하	3.07(0.64)	2.9	8.3	67.6	21.2	100.0(753)	
경제적 수준	상	3.24(0.63)	2.0	4.9	60.6	32.5	100.0(2,477)	52.022***
	중	3.13(0.59)	2.0	5.6	69.8	22.6	100.0(1,384)	
	하	3.11(0.62)	2.1	8.0	66.3	23.6	100.0(377)	

**p<.01, ***p<.001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는 응답률은 92.6%였으며, 7.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

면, 여학생(여 93.5%, 남 91.7%)인 경우, 고등학생(93.5%), 초등학생(92.4%), 중학생(91.9%) 순으로, 읍면지역(95.0%), 대도시(92.9%), 중소도시(91.9%) 순으로, 양부모가정(양부모가정 92.7%, 한부모가정 91.6%, 조손가정 84.2%)인 경우, 학업성적(상 93.8%, 중 93.1%, 하 88.8%)과 경제적 수준(상 93.1%, 중 92.4%, 하 89.9%)이 높을수록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19).

표 Ⅳ-1-20. 인권교육 도움 정도_2)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9(0.61)	1.5	4.0	58.5	36.1	100.0(4,234)	
성별	남학생	3.26(0.64)	2.1	4.6	58.4	35.0	100.0(2,052)	14.396**
	여학생	3.32(0.58)	0.9	3.4	58.6	37.1	100.0(2,182)	
학교급	초등학교	3.41(0.61)	1.0	3.6	49.2	46.2	100.0(1,634)	120.306***
	중학교	3.23(0.60)	1.7	4.1	63.8	30.4	100.0(1,250)	
	고등학교	3.21(0.60)	1.8	4.3	64.9	29.0	100.0(1,350)	
학업 성적	상	3.36(0.64)	1.9	3.0	52.2	42.8	100.0(1,771)	88.549***
	중	3.28(0.58)	0.8	4.3	61.3	33.6	100.0(1,706)	
	하	3.17(0.60)	2.0	5.4	66.8	25.9	100.0(752)	
경제적 수준	상	3.35(0.61)	1.4	3.2	54.7	40.7	100.0(2,475)	64.501***
	중	3.22(0.60)	1.6	4.5	64.5	29.4	100.0(1,381)	
	하	3.20(0.63)	1.4	7.2	61.0	30.3	100.0(374)	

**p<.01, ***p<.001

인권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응답률은 94.6%였고, 5.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95.7%, 남 93.4%)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5.4%, 중 94.2%, 고 93.9%), 양부모가정(양부모가정 94.7%, 한부모가정 93.6%, 조손가정 83.3%)인 경우, 학업성적(상 95.0%, 중 94.9%, 하 92.7%)과 경제적 수준(상 95.4%, 중 93.9%, 하 91.3%)이 높을수록 인권존중 의식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20).

표 Ⅳ-1-21. 인권교육 도움 정도_3) 인권침해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5(0.67)	2.2	9.6	59.1	29.2	100.0(4,233)	
학교급	초등학교	3.24(0.69)	2.0	9.0	52.1	36.9	100.0(1,633)	79.489***
	중학교	3.11(0.66)	2.2	10.1	62.1	25.6	100.0(1,250)	
	고등학교	3.09(0.65)	2.3	9.9	64.7	23.1	100.0(1,350)	
지역 규모	대도시	3.19(0.68)	2.3	8.7	56.8	32.2	100.0(1,706)	20.069**
	중소도시	3.12(0.68)	2.4	10.5	60.2	26.9	100.0(2,044)	
	읍면지역	3.17(0.61)	0.8	9.0	62.4	27.8	100.0(482)	
학업 성적	상	3.22(0.70)	2.3	8.6	53.5	35.5	100.0(1,770)	71.496***
	중	3.12(0.63)	1.4	10.3	63.1	25.2	100.0(1,706)	
	하	3.06(0.69)	3.5	10.2	63.2	23.1	100.0(752)	
경제적 수준	상	3.21(0.67)	2.0	8.0	57.1	32.9	100.0(2,474)	50.556***
	중	3.08(0.67)	2.5	11.3	62.3	24.0	100.0(1,381)	
	하	3.05(0.68)	2.4	13.5	60.4	23.7	100.0(374)	

**p<.01, ***p<.001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률은 88.3%였으며, 11.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89.0%), 고등학생(87.8%), 중학생(87.7%) 순으로, 읍면지역(90.2%), 대도시(89.0%), 중소도시(87.1%) 순으로, 양부모가정(양부모가정 88.5%, 한부모가정 85.6%, 조손가정 83.4%)인 경우, 학업성적(상 89.0%, 중 88.3%, 하 86.3%)과 경제적 수준(상 90.0%, 중 86.3%, 하 84.1%)이 높을수록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하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Ⅳ-1-21).

2) 일반원칙

(1) 차별 경험률

차별 경험은 성, 학업성적, 나이, 외모 및 신체조건,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7가지 차별유형에 대해 최근 1년간 차별받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을 알아보았다(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차별은 '차별한 경험'만 질문). 2019년도부터는 설문지 간소화의 일환으로 그 동안 응답률이 낮았던 가정형편, 지역, 종교에 따른 차별 문항 3개를 삭제하고, 차별받은 경험 질문에는 가족유형, 장애, 이주배경 관련 차별 문항 3개를 제외하였다.

2017년부터는 척도를 응답 판단에 용이하도록 보다 균등하게 보완하여 '1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등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1년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3개월에(분기별)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 한 달에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누적하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Ⅳ-1-22.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 전체

(단위 : %)

차별사유	차별 피해 경험				차별 가해 경험			
	1년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
성차별	28.2	10.6	5.3	1.8	12.3	3.2	1.2	0.5
학업성적	27.5	11.9	5.6	2.1	13.0	4.4	1.9	0.8
나이	28.1	10.5	4.5	1.5	12.8	3.8	1.4	0.5
외모·신체 조건	28.9	13.0	6.8	3.1	16.2	5.7	2.8	1.2
가족유형	-	-	-		1.6	0.8	0.5	0.3
장애	-	-	-		5.3	1.6	0.8	0.3
다문화가정	-	-	-		1.5	0.6	0.2	0.1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을 보면, 외모·신체조건(28.9%), 성(28.2%), 나이(28.1%), 학업성적(27.5%)으로 인한 차별 순으로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1주일에 1회 이상 이루어지는 일상적 차별은 외모·신체조건(3.1%), 학업성적(2.1%), 성차별(1.8%), 나이(1.5%)로 인한 차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은 '외모와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년에 1회 이상 28.9%, 1주일에 1회 이상 3.1%로 모두 1순위). 2순위로는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률은 '성차별'인 반면 1주일에 1회 이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차별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을 살펴보면, 외모·신체조건(16.2%), 학업성적(13.0%), 나이(12.8%), 성(12.3%), 장애(5.3%), 가족유형(1.6%), 다문화가정(1.5%) 순으로 차별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1주일에 1회 이상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1.2%), 학업성적(0.8%), 성(0.5%), 나이(0.5%), 가족유형(0.3%), 장애(0.3%), 다문화가정(0.1%)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도 '외모와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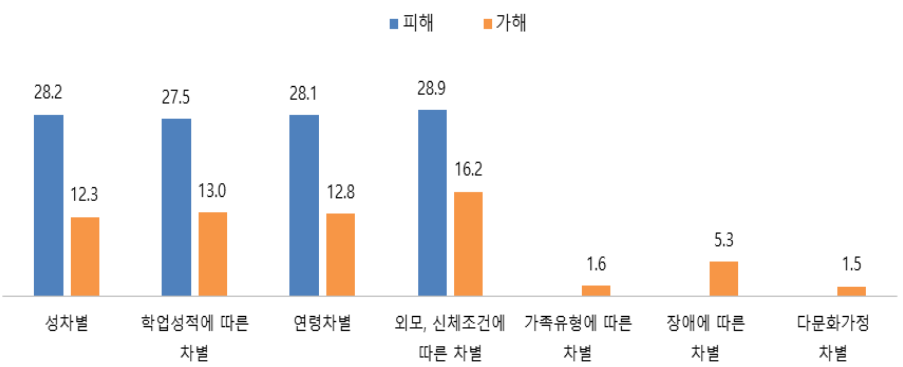

* 주: (단위: %)

그림 Ⅳ-1-19.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1년에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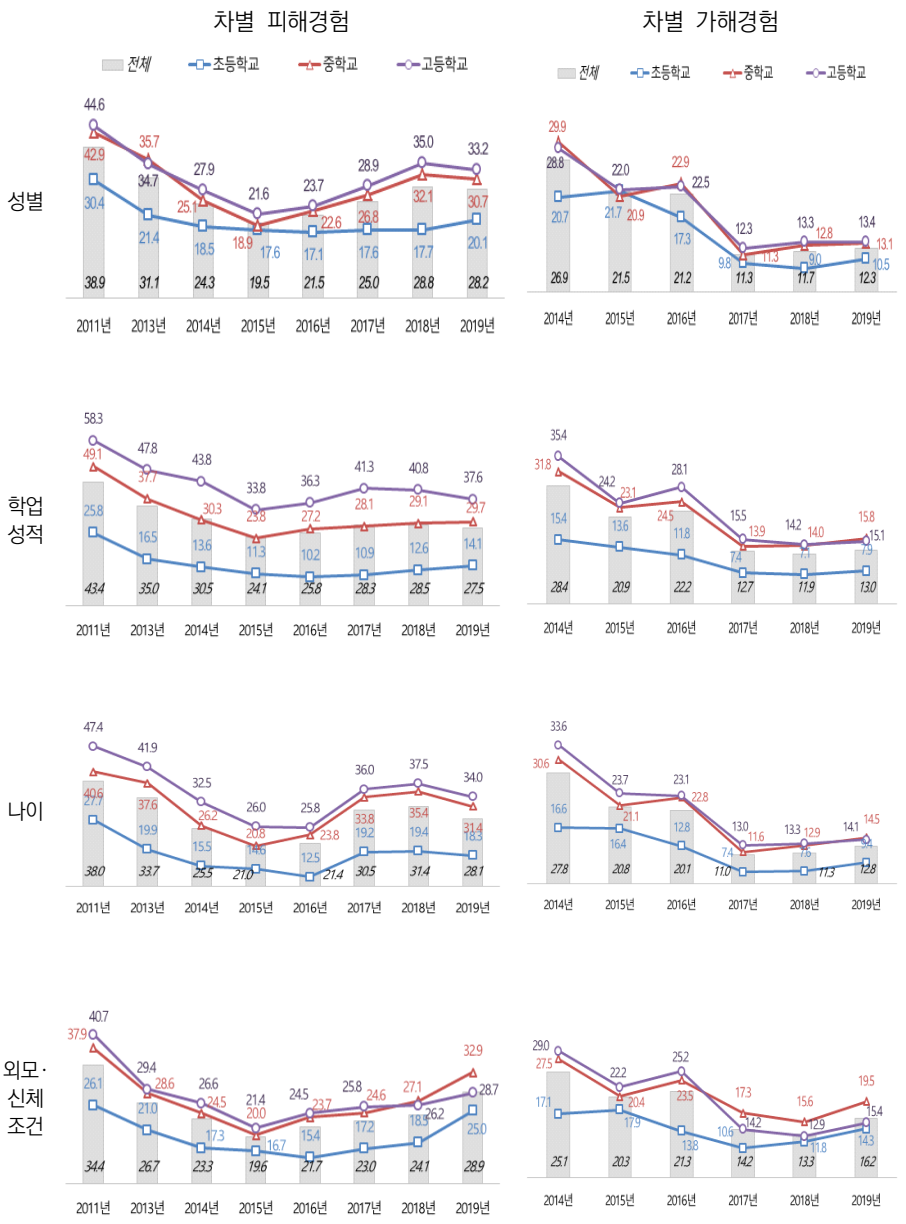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1-20. 차별경험(연도별 추이)

성차별, 학업성적, 연령, 외모·신체조건 등 주요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률'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그림 Ⅳ-1-19), 차별받은 경험에 비해 차별한 경험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차별받은 경험은 아동·청소년 또래 간 외에도 학교 밖과 가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아동·청소년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낮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추이그래프를 통해 네 가지 주요 차별 경험의 연도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Ⅳ-1-20). 차별받은 경험은 2011년 30~40% 수준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27~28% 내외로 모두 줄어들었는데, 2015년에 최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9년도에는 외모차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에 성차별, 학업성적 차별, 연령차별은 소폭 감소한 반면,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만 24.1%에서 28.9%로 4.8%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성차별 경험률이 초등학생만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중·고등학생은 소폭 감소하였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경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만 소폭 증가하였다. 연령차별은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하였고,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은 모든 학교급에서 경험률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외모로 인한 차별경험이 각각 6.5%p, 5.8%p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신체조건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률은 2014년에 20% 중후반 수치였으나 2019년에는 모두 12~16% 내외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2017년 전후에 최저치를 보이다가 최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에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한 경험률이 소폭 상승하였다.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경험률이 증가한 것은 실제 차별행위가 늘어난 점과 더불어 인권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행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차별행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 것은 외모 및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로,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응답률은 13.3%에서 16.2%로 2.9%p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2.5%p, 고등학생은 3.9%p 증가하였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①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의 준수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항목은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으로 살펴보고 있다. 일반원칙은 모든 협약조항을 이행하는 데 기본 철학이 되는 사항으로,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은 2019년 3월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2018년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34] 2019년에는 법적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2019년 1월 15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아동복지법 제11조의2제2항) 향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정책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19일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조항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4) 김은정, 이상정, 박신아, 김주일(2018).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알려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3). 한편 2019년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본격 제도 운영을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들이, 친화도시 인증 기준에 아동영향평가 도입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비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10월 기준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는 39개이며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87개이다.[35)]

아동영향평가제도는 아직 초기 준비단계에 있어 아동정책과 예산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소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인권인프라 구축(법·제도, 인권기구·조직, 예산), 인권에 대한 인식(인권관련 인지도, 인권 존중정도, 인권의식과 태도), 인권교육(현황, 경험), 차별 경험률(차별피해, 차별가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아동영향평가 현황) 등 총 11개의 지표항목에 대해 실태를 알아보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근거를 비롯하여 아동수당 확대, 청소년 정책과정 참여 제도화, 한부모 가정 지원 등 법·제도 개선사항과 자치단체의 노동인권과 놀 권리, 아동친화도시 등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 심의와 포용적 아동정책 수립 전·후 시기에 많은 법·제도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협약의 모든 조항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19년 10월 18일 검색.

인권기구·조직으로는 정부부처의 아동·청소년 인권 업무부서와 최근 아동인권 관련 조직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운영 현황, 그리고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담당부서와 소위원회인 아동권리위원회 현황을 검토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예산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은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0.3% 증가한 3.4%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과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아동·청소년 예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16.1%, 7.9%, 17.6%로 전년도 대비 상승하였는데 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2013년 이래 최고의 응답률이었다.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또한 전년도 대비 4.3%p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에도 협약과 인권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자신의 인권이 어느정도 존중받는지 생활 영역별로 알아본 결과, 가정(95.6%), 학교(91.5%), 사이버 공간(81.1%), 우리나라 전체(77.1%)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2013년 이래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은 모든 영역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9년도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인권 존중도는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학교에서의 인권존중도가 2013년 대비 11.4%p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의 인권 존중 정도가 낮게 나타나 인권 수준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4개의 질문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 존중(70.7%),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88.3%), 학생자치조직의 의의(85.4%), 표현의 자유 보장(96.7%) 등에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꾸준히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차별상황에 대한 인식 또한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금지(97.3%), 양성평등의식(96.4%),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평등권(94.6%) 보장 등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으며 연도별 추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률은 46.0%로 나타났고 54.0%는 인권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인권교육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횟수 질문에서 경험여부로 2019년 문항 변경).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인권교육 경험률이 높았다(초 55.3%, 중 43.0%, 고 40.4%).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4.6%로 가장 높았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27.9%, 학교 밖의 인권교육프로그램 14.9%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효과를 세 가지 목표(알고 이해하기, 생각과 태도 변화, 실천행동)로 물어본 결과, 각각 92.6%, 94.6%, 88.3%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외모·신체조건(28.9%), 성차별(28.2%), 나이(28.1%), 학업성적(27.5%)으로 인한 차별 순이었고, 1주일에 1회 이상 이루어지는 일상적 차별도 외모·신체조건(3.1%)에 따른 차별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학업성적(2.1%)에 따른 차별로 나타났다.

1년에 한 번 이상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도 외모·신체조건(16.2%)에 따른 차별이 가장 높았고, 학업성적(13.0%), 나이(12.8%), 성차별(12.3%), 장애(5.3%), 가족유형(1.6%), 다문화가정(1.5%) 순으로 차별한 경험이 높았다. 1주일에 1회 이상 차별한 경험도 외모·신체조건(1.2%)과 학업성적(0.8%)에 따른 차별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받은 경험은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9년에는 외모 차별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모두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2014년부터 2017년경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 소폭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에 4개 차별행동 모두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아동정책영향평가는 2019년에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세부 운영지침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인권 존중 정도와 인권의식은 높은 편이며 긍정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동권리협약과 인권기구에 대한 인지도나 인권교육 경험률이 여전히 낮고 10명 중 3명 정도는 외모·신체조건, 성차별, 연령차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①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중분류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참여권과 관련되는 항목으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를 알아본다. 먼저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정도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시 부모님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정도로 알아보았다.

표 Ⅳ-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의견존중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전체	3.36(0.68)	1.3	7.9	44.4	46.5	100.0(9,268)	-
	초등학교	3.43(0.67)	1.0	6.8	40.7	51.5	100.0(2,978)	50.029***
	중학교	3.32(0.68)	1.5	7.9	47.4	43.2	100.0(2,921)	
	고등학교	3.34(0.69)	1.2	8.8	45.0	45.0	100.0(3,370)	
2) 상급 학교 결정	전체	3.47(0.64)	1.0	5.2	39.6	54.2	100.0(6,288)	-
	중학교	3.43(0.65)	1.1	5.7	41.9	51.3	100.0(2,918)	19.069***
	고등학교	3.50(0.63)	0.9	4.8	37.6	56.8	100.0(3,370)	
3) 진로 (직업) 결정	전체	3.53(0.65)	1.1	5.2	33.5	60.3	100.0(9,248)	-
	초등학교	3.58(0.63)	0.9	5.3	28.9	64.9	100.0(2,965)	68.765***
	중학교	3.46(0.68)	1.5	5.9	37.2	55.4	100.0(2,915)	
	고등학교	3.54(0.62)	0.9	4.4	34.3	60.5	100.0(3,368)	
4) 공부 시간·방법 결정	전체	3.37(0.70)	1.8	7.6	42.3	48.2	100.0(6,275)	-
	중학교	3.29(0.73)	2.5	9.4	45.2	43.0	100.0(2,913)	75.372***
	고등학교	3.44(0.67)	1.3	6.1	39.9	52.7	100.0(3,362)	

***$p<.001$

2019년도에 초등학생의 설문 응답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설문지 간소화 작업을 수행하여 상급학교 결정과 공부시간·방법 결정 등 2개의 문항은 초등학생 조사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집안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준다는 응답률은 90.9%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2.2%, 중 90.6%, 고 90.0%) 존중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를 결정할 때 자녀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준다는 응답률은 93.8%였고, 고등학생(94.4%)이 중학생(93.2%)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자녀가 원하는 진로(직업)을 존중한다는 응답률은 93.8%로 나타났고 고등학생(94.8%)이 초등학생(93.8%)과 중학생(9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는 90.5%였으며, 고등학생(92.6%)이 중학생(88.2%)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진로·직업(93.8%)과 상급학교 결정(93.8%) 시 의견존중도가 높게 나타났고, 집안의 중대사 결정(90.9%)과 공부시간·방법 결정(90.5%) 시 의견존중도 또한 90%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초등학생은 집안 중대사 결정 시 의견존중도가 높았고, 학업과 진로 등의 결정 시 의견존중도는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영역에서 의견존중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집안 중대사 2012년 77.4% → 2019년 90.9%, 상급학교 진학 2012년 79.1% → 2019년 93.8%, 진로 2012년 83.1% → 2019년 93.8%, 학업 2013년 79.6% → 2019년 90.5%). 2019년 집안 중대사와 진로 결정 시 의견존중도는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감소하였고,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방법 결정 시 의견존중도는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증가하였다(그림 Ⅳ-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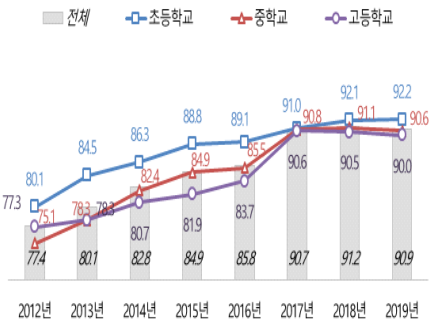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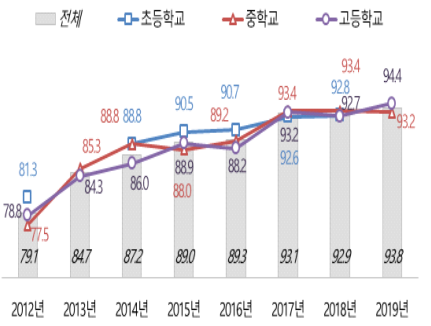

2) 상급학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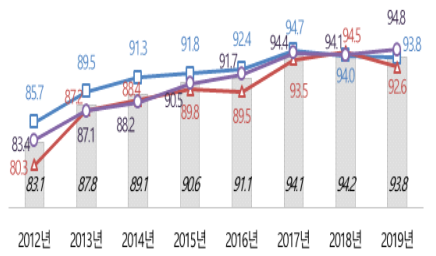

3) 진로(직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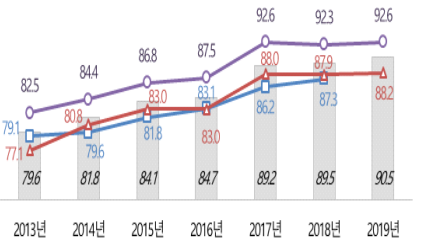

4) 공부시간·방법 결정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주) 2019년 조사부터 상급학교 결정과 공부시간 결정 문항은 초등 설문지에서 제외됨

그림 Ⅳ-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의견존중 정도)(연도별 추이)

(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①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권 보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기 위한 성적 기준이 있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교사는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 등에 대해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등의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Ⅳ-2-2.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1) 교사·교장의 간섭 없이 활동(자치권)	전체	9.5	43.9	46.6	100.0(6,288)	-
	중학교	9.3	42.2	48.5	100.0(2,920)	8.118*
	고등학교	9.6	45.4	44.9	100.0(3,367)	
2) 임원후보 성적기준 있음(*부정적 질문)	전체	38.3	26.8	34.9	100.0(6,288)	-
	중학교	34.9	27.6	37.5	100.0(2,921)	27.481***
	고등학교	41.2	26.0	32.8	100.0(3,367)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전체	5.6	45.9	48.5	100.0(6,289)	-
	중학교	5.3	45.3	49.4	100.0(2,922)	2.235
	고등학교	5.8	46.5	47.7	100.0(3,367)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전체	6.9	52.3	40.8	100.0(6,285)	-
	중학교	5.8	56.3	37.9	100.0(2,920)	37.477***
	고등학교	7.9	48.8	43.3	100.0(3,365)	

*p<.05, ***p<.001

교사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43.9%로 고등학생(45.4%)의 응답률이 중학생(42.2%)보다 높았다. 학생회 임원후보가 되기 위한 성적 제한이 '없다'는 응답률은 38.3%였으며, 고등학생(41.2%)이 중학생(34.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 활동을 위한 예산,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해주는 경우는 45.9%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학생회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52.3%로 나타났고 중학생(56.3%)이 고등학생(48.8%)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학생회의 자치권 보장수준은 고등학교가, 학생회 의견 반영도는 중학교 학생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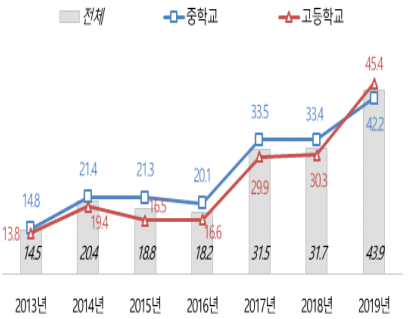

1) 자치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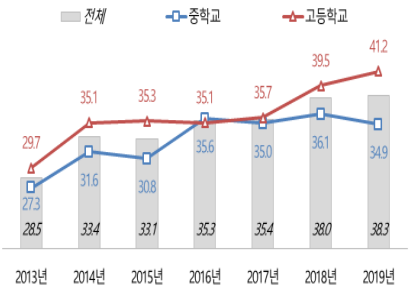

2) 임원후보 성적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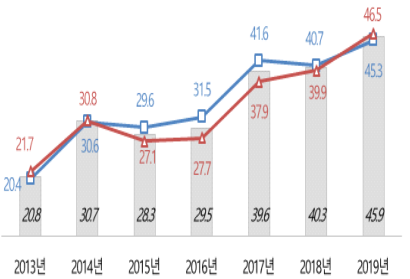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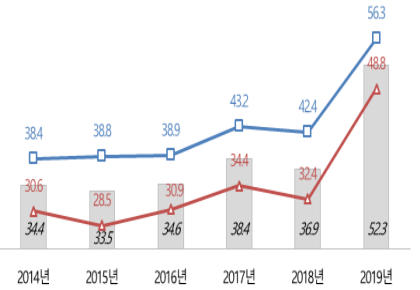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주: 1), 3), 4)는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주: 2)는 '아니다' 응답값. (부정적 질문이므로 '아니다' 값을 반영하여 성적제한 없음값을 나타냄.

그림 Ⅳ-2-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자치권 2013년 14.5% → 2019년 43.9%, 임원 성적제한 없음 2013년 28.5% → 2019년 38.3%, 예산·장소·시간 보장 2013년 20.8% → 2019년 45.9%, 학생회 의견반영도 2014년 34.4% → 2019년 52.3%). 2019년도 학생회 자치권은 전년도 대비 12.2%p 증가하였고, 학생회 의견반영도는 전년도 대비 15.4%p 증가하여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다.

②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참여불가' 6.0%, '참여가능하나 발언권 없음' 5.8%, '참여가능하고 발언권 있음' 27.5%, '잘 모르겠다' 60.7%로 나타났다(표 Ⅳ-2-3).

표 Ⅳ-2-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6.0	5.8	27.5	60.7	100.0(6,185)	
성별	남학생	6.5	6.0	23.8	63.7	100.0(3,214)	46.745***
	여학생	5.3	5.6	31.5	57.6	100.0(2,971)	
학교급	중학교	5.7	6.6	27.4	60.4	100.0(2,871)	6.024
	고등학교	6.2	5.1	27.6	61.1	100.0(3,314)	
학업 성적	상	6.7	5.5	30.9	56.8	100.0(1,747)	23.051***
	중	5.3	5.6	26.7	62.5	100.0(2,583)	
	하	6.3	6.4	25.3	62.0	100.0(1,849)	
경제적 수준	상	6.6	5.4	28.9	59.1	100.0(3,106)	19.674**
	중	5.0	5.7	26.6	62.8	100.0(2,339)	
	하	6.3	7.7	24.8	61.2	100.0(734)	

**p<.01, ***p<.001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경우는 여학생(여 31.5%, 남 23.8%)인 경우, 학업성적(상 30.9%, 중 26.7%, 하 25.3%)과 경제적 수준(상 28.9%, 중 26.6%, 하 24.8%)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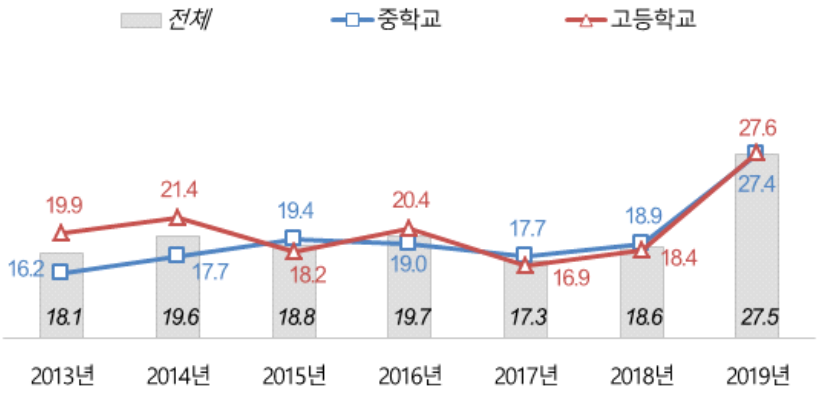

*주)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2-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응답값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에 17.3%로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13년 18.1%에서 2019년 27.5%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8.9%p 응답률이 상승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여 발언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견을 반영하는지 알아본 결과, '반영한다'는 응답률은 77.3%로 나타났고 22.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Ⅳ-2-4).

표 Ⅳ-2-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3(0.77)	5.3	17.4	56.1	21.2	100.0(9,260)	
성별	남학생	2.95(0.78)	5.8	15.6	56.4	22.2	100.0(4,809)	28.138***
	여학생	2.91(0.76)	4.8	19.3	55.8	20.1	100.0(4,451)	
학교급	초등학교	3.26(0.68)	1.9	8.0	52.1	37.9	100.0(2,973)	989.408***
	중학교	2.87(0.75)	5.7	18.7	59.0	16.6	100.0(2,917)	
	고등학교	2.70(0.76)	8.0	24.5	57.1	10.3	100.0(3,370)	
지역 규모	대도시	2.94(0.79)	5.4	18.3	53.6	22.7	100.0(3,776)	24.664***
	중소도시	2.92(0.76)	5.6	16.7	58.0	19.7	100.0(4,411)	
	읍면지역	2.97(0.74)	3.9	17.0	57.2	21.9	100.0(1,073)	
학업 성적	상	3.07(0.78)	4.5	13.8	52.0	29.7	100.0(3,269)	351.586***
	중	2.93(0.72)	4.0	17.6	59.6	18.8	100.0(3,893)	
	하	2.71(0.80)	9.2	22.6	56.0	12.3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3.02(0.77)	4.7	14.5	54.8	25.9	100.0(5,326)	228.868***
	중	2.84(0.75)	5.6	20.3	58.4	15.7	100.0(3,071)	
	하	2.70(0.77)	7.9	25.0	55.9	11.2	100.0(854)	

***p<.001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남 78.6%, 여 75.9%)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0.0%, 중 75.6%, 고 67.4%), 읍면지역(읍면지역 79.1%, 중소도시 77.7%, 대도시 76.3%)인 경우, 학업성적(상 81.7%, 중 78.4%, 하 68.3%)과 경제적 수준(상 80.7%, 중 74.1%, 하 67.1%)이 높을수록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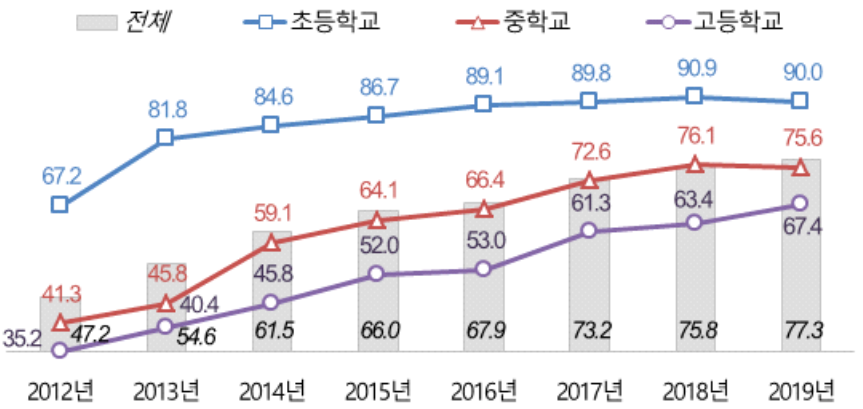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47.2%에서 2019년 77.3%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연도에서 초등학교의 의견 반영도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의 의견 반영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전체 응답률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고등학교 응답률이 4.0%p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고등학생의 의견 반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①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아동·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당사자 참여도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주요 아동·청소년참여기구 현황과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로,

2018년 12월 기준 시·도 및 시·군·구에 총 230개가 구성·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c: 103-104).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제3항)'는 포괄적 성격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다가 2017년 12월 동법 개정으로 공식 법제화되었다(개정 2018.12.18., 시행 2019.6.19.).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동법동조제4항).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동법동조제5항). 법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활성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참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Ⅳ-2-5.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3~2018)

(단위 : 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청소년참여위원회	194	197	204	216	221	230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305	305	305	305	305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p.104-106. 재구성

표 Ⅳ-2-6.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8)

(단위 : 개)

	계	여성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 참여위원회	230	1	22	14	9	10	6	2	6	1	32	19	9	16	15	23	24	20	1
청소년 운영위원회	305	-	44	14	9	12	6	10	7	1	62	32	15	13	16	14	13	15	22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p.104-106. 재구성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시설·단체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동법제4조2항). 2018년 현재 전국 305개소에서 총 5,000여 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c: 105).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참여기구로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에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492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88.6%인 436건의 정책과제가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수용되었다(여성가족부, 2018c: 107).

표 Ⅳ-2-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연도	의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제안)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체험활동의 다양화 등 18개 과제 제안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연도	의제	수용률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 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2018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107.

아동정책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만 10세부터 17세 아동이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의문 형태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아동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 제16회 아동총회를 개최하였다(주관단체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정부는 본대회에서 지난해 정부에 전달된 아동총회 결의문이 정부정책에 반영된 사항을 아동대표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제15회 총회에서는 '아동보호' 분야 정책과제로 교내 학생의 사생활 보호 및 아동운영위원회 신설, 어린이집 전담 경찰관 배치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정기적 관리, 아동 악영향 유해물 제한 등 총 12개 항목의 제안에 대한 부처의 설명과 질의가 진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9.8.6.).

표 Ⅳ-2-8. 아동총회 개최현황

구분	주요내용
제8회	• 일시: 2011. 8. 17 ~ 19(2박 3일) • 주제: 세상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통 • 참여인원: 총 1,741명(아동 1,338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3명)
제9회	• 일시: 2012. 8. 8 ~ 10(2박 3일) • 주제: 꿈, 행복을 향한 도전 • 참여인원: 총 1,831명(아동 1,529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2명)
제10회	• 일시: 2013. 8. 7 ~ 9(2박 3일) • 주제: 건강한 아동, 건강한 대한민국 • 참여인원: 총 1,174명(아동 897명, 지도자 및 실무자 277명)
제11회	• 일시: 2014. 8. 11 ~ 13(2박 3일) • 주제: 대한민국 아동안전은 녹색불입니까? • 참여인원: 총 810명(아동 555명, 지도자 및 실무자 255명)
제12회	• 일시: 2015. 8. 5 ~ 7(2박 3일) • 주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삶" • 참여인원: 총 1,119명(아동 818명, 지도자 및 실무자 301명)
제13회	• 일시: 2016. 8. 9 ~ 11(2박 3일) • 주제: 우리의 꿈, 말해도 되나요? - 내가 바라는 세상 • 참여인원: 총 1,262명(아동 924명, 지도자 및 실무자 338명)
제14회	• 일시: 2017. 8. 8 ~ 10(2박 3일) • 주제: 아동의 목소리,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쉬다. - 아동의 정책 아동이 직접 만들어 나가요 • 참여인원: 총 2,120명(아동 1,713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7명)
제15회	• 일시: 2018. 8. 7 ~ 9(2박 3일) • 주제: 대한민국, 아동은 보호받고 있습니까? • 참여인원: 총 1,138명(아동 844명, 지도자 및 실무자 294명)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9).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5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 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2019년 8월 20일에 인출, 재구성.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9). 내부자료: 아동총회 개최현황.

아동총회 결과 제안된 정책과제는 국무총리 산하의 아동정책 심의·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논의하여 정책반영 결과를 정부가 직접 아동총회에서 설명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19: 24).

②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률('알고 있으나 참여하지는 않음'과 '알고 있고 참여경험 있음'의 합산값)은 10.8%로 나타났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2.8%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구 활동에 참여해본 경험률은 2.2%였다(표 Ⅳ-2-9).

표 Ⅳ-2-9.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알고 있다 합계	전체(N)	χ^2
전체		52.8	36.4	8.6	2.2	10.8	100.0(9,237)	
성별	남학생	56.0	33.6	8.3	2.1	10.4	100.0(4,793)	42.194***
	여학생	49.4	39.3	9.0	2.3	11.3	100.0(4,444)	
학교급	초등학교	51.1	37.0	10.2	1.7	11.9	100.0(2,957)	51.491***
	중학교	54.9	36.3	7.3	1.4	8.7	100.0(2,917)	
	고등학교	52.5	35.8	8.3	3.4	11.7	100.0(3,364)	
지역 규모	대도시	52.0	36.9	8.9	2.2	11.1	100.0(3,772)	55.271***
	중소도시	54.9	35.5	8.1	1.6	9.7	100.0(4,394)	
	읍면지역	47.4	38.0	9.9	4.8	14.7	100.0(1,0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2.6	36.7	8.5	2.2	10.7	100.0(8,381)	19.609*
	한부모가정	57.1	31.0	9.7	2.3	12.0	100.0(690)	
	조손가정	50.2	34.0	12.5	3.4	15.9	100.0(84)	
	기타	41.4	49.7	8.8	0.0	8.8	100.0(76)	
학업 성적	상	50.5	36.2	10.5	2.8	13.3	100.0(3,262)	60.138***
	중	51.6	38.4	8.0	2.0	10.0	100.0(3,884)	
	하	58.6	32.9	6.7	1.8	8.5	100.0(2,083)	
경제적 수준	상	50.4	37.9	9.6	2.2	11.8	100.0(5,311)	37.773***
	중	56.1	34.7	7.0	2.2	9.2	100.0(3,068)	
	하	56.1	32.9	8.5	2.5	11.0	100.0(850)	

*p<.05, ***p<.001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여학생(여 11.3%, 남 10.4%)인 경우, 초등학생(11.9%), 고등학생(11.7%), 중학생(8.7%) 순으로, 읍면지역(14.7%), 대도시(11.1%), 중소도시(9.7%) 순으로, 학업성적(상 13.3%, 중 10.0%, 하 8.5%)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11.8%), 하(11.0%), 중(9.2%) 순으로 높은 응답

률을 보였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는 남학생과 중학생,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응답률이 많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참여경험'은 여학생, 고등학생, 읍면지역인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경험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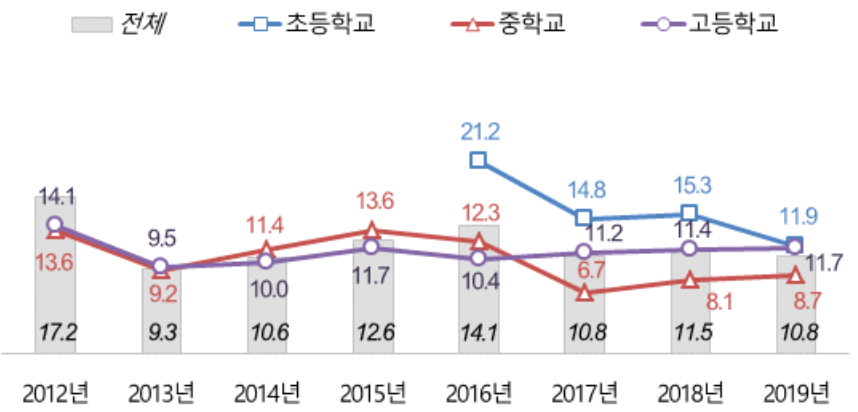

*주: 1)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 않았다'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의 합계(단위: %)
2) 2016년부터 전체값에 초등학생 응답이 포함됨.

그림 Ⅳ-2-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2013년 9.3%에서 2016년에는 14.1%까지 상승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 10.8%로 줄어들었다. 2016년부터 초등학생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초등학생의 인지도는 2016년에 21.2%로 비교적 높았으나 이후 11.9%까지 감소하였으며, 중학생은 2016년 12.3%에서 2017년 6.7%까지 감소하여 2019년까지 8.7% 수준의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은 11% 전후의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다.

③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가.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권 보장 수준은 '우리사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

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68.6%가 '그렇다'(그런 편 48.2%, 매우 그렇다 20.4%)고 응답하였으며 31.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Ⅳ-2-10).

표 Ⅳ-2-10.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3(0.82)	6.1	25.3	48.2	20.4	100.0(9,263)	
성별	남학생	2.82(0.85)	7.8	23.3	48.0	20.9	100.0(4,811)	63.063***
	여학생	2.84(0.79)	4.3	27.4	48.3	20.0	100.0(4,453)	
학교급	초등학교	3.05(0.75)	3.7	14.2	55.1	27.1	100.0(2,976)	530.585***
	중학교	2.84(0.81)	5.8	24.7	49.3	20.2	100.0(2,919)	
	고등학교	2.62(0.84)	8.6	35.6	41.1	14.8	100.0(3,368)	
지역 규모	대도시	2.84(0.83)	5.7	26.0	46.5	21.8	100.0(3,778)	26.323***
	중소도시	2.81(0.83)	7.0	24.4	49.2	19.4	100.0(4,413)	
	읍면지역	2.86(0.78)	4.0	26.2	49.8	20.0	100.0(1,073)	
학업 성적	상	2.89(0.84)	6.0	23.6	46.1	24.3	100.0(3,273)	87.022***
	중	2.83(0.78)	5.3	24.6	51.6	18.5	100.0(3,893)	
	하	2.73(0.85)	7.9	29.2	44.8	18.0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2.90(0.81)	5.4	21.9	49.9	22.7	100.0(5,326)	155.022***
	중	2.77(0.80)	6.1	28.5	48.1	17.4	100.0(3,075)	
	하	2.61(0.89)	10.4	35.0	37.4	17.2	100.0(854)	

***p<.001

배경변인별 응답차이를 보면, 남학생(남 68.9%, 여 68.3%)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2.2%, 중 69.5%, 고 55.9%), 읍면지역(69.8%), 중소도시(68.6%), 대도시(68.3%) 순으로, 학업성적(상 70.4%, 중 70.1%, 하 62.8%)과 경제적 수준(상 72.6%, 중 65.5%, 하 54.6%)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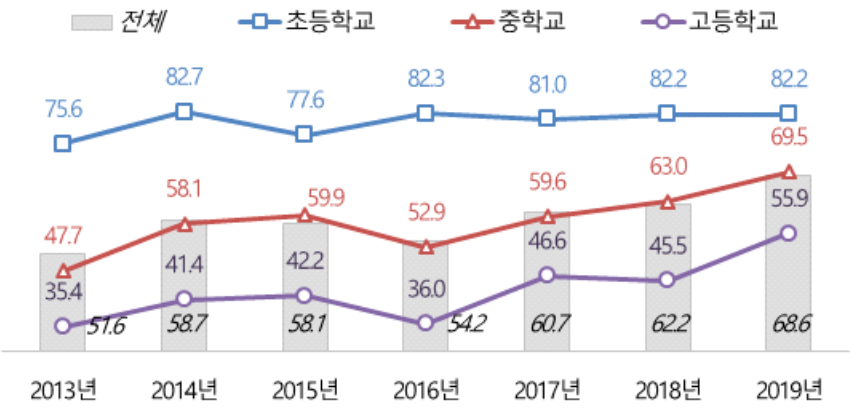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 51.6%에서 58%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일시적으로 54.2%까지 감소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68.6%로 조사 이래 최고의 응답률을 보였다. 모든 기간 동안 초등학생이 80% 전후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나. 참여의 장애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간 부족(29.7%)', '참여활동 정보 부족(21.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6%)', '학교의 규제(2.0%)', '부모님 반대(1.9%)' 순의 응답을 보였다(표 Ⅳ-2-11).

표 Ⅳ-2-11.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단위 : %(명))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 부족	전체(N)	χ^2
전체		29.7	21.1	1.9	2.0	33.6	11.6	100.0(9,230)	
성별	남학생	33.6	20.5	1.9	2.4	30.8	10.8	100.0(4,793)	89.923***
	여학생	25.6	21.8	1.8	1.6	36.7	12.5	100.0(4,436)	
학교급	초등학교	37.5	21.0	3.9	1.1	22.5	14.0	100.0(2,970)	425.579***
	중학교	28.6	18.6	1.3	2.2	38.6	10.7	100.0(2,910)	
	고등학교	23.9	23.4	0.5	2.7	39.2	10.3	100.0(3,349)	
학업성적	상	32.2	20.9	1.7	1.4	31.7	12.1	100.0(3,262)	51.083***
	중	30.1	21.4	2.1	2.1	33.3	11.0	100.0(3,879)	
	하	25.2	21.1	1.6	2.9	37.2	12.0	100.0(2,081)	
경제적 수준	상	32.3	20.4	2.1	1.9	31.2	12.1	100.0(5,308)	75.024***
	중	27.4	22.4	1.6	2.2	35.9	10.4	100.0(3,064)	
	하	21.9	20.8	1.4	2.5	40.2	13.1	100.0(850)	

*p<.05, ***p<.001

청소년참여 장애요인에 대해 배경변인별 응답차이를 보면, 여학생은 '사회의 편견(36.7%)'을, 남학생은 '시간부족(33.6%)'을 1순위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39.2%)과 중학생(38.6%)은 '사회의 편견'을, 초등학생은 '시간부족(37.5%)'을 가장 높게 꼽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2순위인 '시간부족(23.9%)'과 3순위인 '활동정보 부족(23.4%)'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활동정보 부족'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는 '시간부족(32.2%)'을, 하위(37.2%), 또는 중위(33.3%)인 경우는 '사회의 편견'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경제적 수준이 상위(32.3%)인 경우는 '시간부족'을, 하위(40.2%)와 중위(35.9%)인 경우는 '사회의 편견'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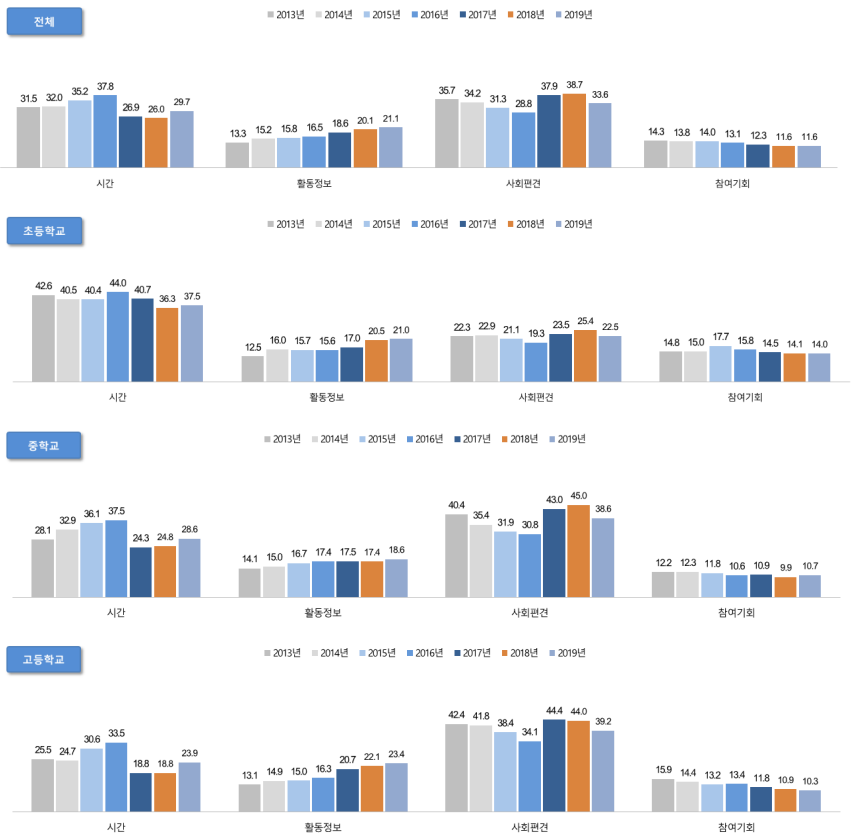

그림 Ⅳ-2-7.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참여의 장애요인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사회의 편견' 응답률이 37.9%로 전년도 대비 9.1%p 증가하여 1순위를 차지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 37.8%로 가장 높았던 '시간부족' 요인은 2017년부터는 26.9%로 감소하여 2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참여활동 정보부족'은 2013년 13.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21.1%로 3순위를 차지하였다.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은 2013년 14.3%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1.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시간부족' 응답은 3.7%p 늘어난 반면 '사회의

편견' 응답은 전년도 대비 5.1%p 줄어들어 아동·청소년의 활동시간 부족 문제를 볼 수 있다. 모든 교급에서 '참여활동 정보부족'은 증가추세이며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사상, 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기존에는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가정, 학교, 사회 등 각각의 영역별로 응답하도록 했으나 2019년부터는 포괄적인 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87.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2.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Ⅳ-2-12).

표 Ⅳ-2-12. 사상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5(0.72)	1.9	10.7	47.4	40.0	100.0(6,277)	
성별	남학생	3.30(0.73)	2.4	8.8	44.7	44.1	100.0(3,273)	72.502***
	여학생	3.20(0.70)	1.3	12.8	50.4	35.5	100.0(3,004)	
학교급	중학교	3.21(0.74)	2.3	12.5	47.3	37.9	100.0(2,919)	28.168***
	고등학교	3.30(0.69)	1.5	9.2	47.5	41.8	100.0(3,358)	
지역 규모	대도시	3.27(0.72)	2.0	10.1	46.5	41.3	100.0(2,583)	19.937**
	중소도시	3.24(0.70)	1.5	10.9	49.4	38.2	100.0(2,891)	
	읍면지역	3.24(0.78)	3.0	11.9	43.1	42.0	100.0(803)	
학업 성적	상	3.38(0.70)	1.4	8.6	40.1	49.9	100.0(1,773)	116.534***
	중	3.23(0.70)	1.7	10.3	51.3	36.6	100.0(2,621)	
	하	3.17(0.75)	2.5	13.3	48.8	35.4	100.0(1,878)	
경제적 수준	상	3.31(0.71)	1.8	8.9	45.4	43.9	100.0(3,167)	64.463***
	중	3.20(0.71)	1.6	12.0	50.8	35.6	100.0(2,365)	
	하	3.17(0.78)	3.2	14.3	45.3	37.3	100.0(740)	

**p<.01, ***p<.001

배경변인별 응답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남 88.8%, 여 85.9%)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89.3%, 중 85.2%), 대도시일수록(대도시 87.8% 중소도시 87.6%, 읍면지역 85.1%), 학업성적(상 90.0%, 중 87.9%, 하 84.2%)과 경제적 수준(상 89.3%, 중 86.4%, 하 82.6%)이 높을수록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종교 자유 보장 정도

먼저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본 결과, 81.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8.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84.8%, 중 78.1%) 종교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2-13).

표 Ⅳ-2-13. 종교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선택	전체	3.22(0.88)	5.8	12.5	36.1	45.7	100.0(6,280)	-
	중학교	3.11(0.91)	7.5	14.4	37.8	40.3	100.0(2,919)	81.725***
	고등학교	3.31(0.83)	4.3	10.9	34.5	50.3	100.0(3,361)	
2)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전체	2.16(1.03)	34.2	28.0	26.0	11.8	100.0(483)	-
	중학교	2.04(1.02)	36.9	35.3	15.1	12.7	100.0(63)	4.323
	고등학교	2.17(1.03)	33.8	26.8	27.7	11.7	100.0(420)	

***$p<.00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학교가 종교재단 학교인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가 종교재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12.5%, 중학생은 2.2%가 종교재단 학교였으며, 일반계고는 11.8%, 특성화계

고는 15.2%가 종교재단 학교로 나타났다.

종교재단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종교행사 참여가 (강제참여가 아닌)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37.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62.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남 45.0%, 여 29.4%)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39.4%, 중 27.8%), 읍면지역일수록(읍면지역 47.9%, 중소도시 41.9%, 대도시 32.0%)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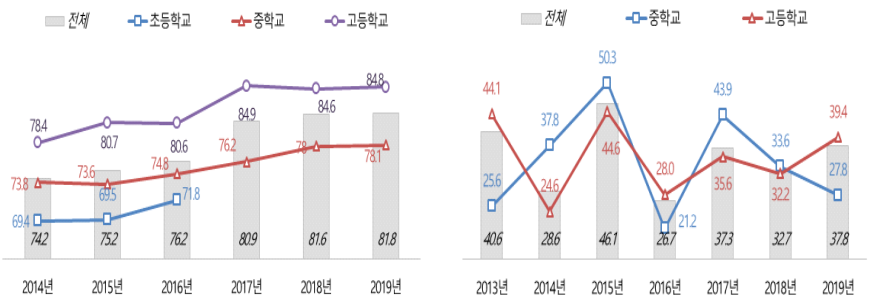

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017년부터 전체 값에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그림 Ⅳ-2-8.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2017년 80.9% → 2018년 81.6% → 2019년 81.8%로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일관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고 증감이 반복되다 최근 3년간(2017년 37.3%, 2018년 32.7%, 2019년 37.8%)은 지속적으로 30%대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결사·집회 경험률

① 결사·집회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등의 활동경험 정도를 알아본 결과, 경험이 있는 경우('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는 12.6%로 나타났다. 여학생인 경우(여 13.9%, 남 11.4%), 학교급이 낮을수록(중 13.6%, 고 11.8%), 대도시일수록(대도시 13.3%, 중소도시 12.2%, 읍면지역 11.9%)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14)(기초분석보고서 표 Ⅲ-2-21).

표 Ⅳ-2-14.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χ^2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전체	1.60(0.79)	55.8	31.6	9.2	3.4	100.0(6,266)	
	중학교	1.65(0.81)	52.7	33.7	9.5	4.1	100.0(2,909)	24.998***
	고등학교	1.56(0.77)	58.5	29.8	8.9	2.9	100.0(3,357)	
2)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전체	1.52(0.69)	58.5	32.4	7.9	1.2	100.0(6,254)	
	중학교	1.54(0.69)	56.2	35.4	7.0	1.3	100.0(2,900)	26.197***
	고등학교	1.51(0.70)	60.4	29.7	8.7	1.2	100.0(3,354)	

***$p<.001$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경험은 9.1%였으며, 90.9%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자인 경우(여 10.7%, 남 7.8%), 학교급(고 9.9%, 중 8.3%)과 학업성적(상 10.8%, 중 8.9%, 하 8.0%)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하 12.3%, 상 9.3%, 중 8.0%)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경험이 많았다(표 Ⅳ-2-14)(기초분석보고서 표 Ⅲ-2-22).

연도별 추이를 보면,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활동은 2012년 19.6%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2.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는 2012년 8.5%에서 몇 년간 소폭의 증감양상을 보이다가 2017년에 17.2%로 크게 늘어난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8년 12.2% → 2019년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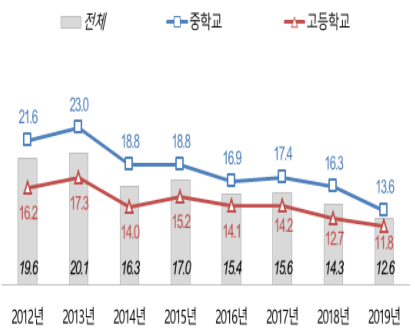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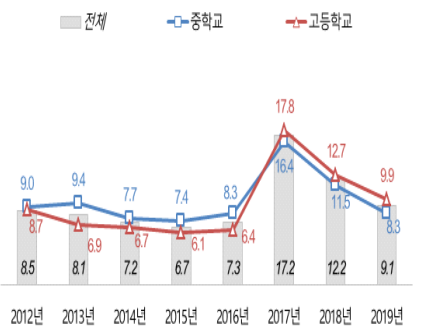

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9.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을 해 본 응답자 대상으로 피해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피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6.0%로 높게 나타났고, '경고 및 훈계' 1.4%,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1.3%,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0.6%, '기타' 0.7% 등으로 전체적으로 4.0%의 아동·청소년이 사회문제 참여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분석보고서 표 Ⅳ-2-2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률의 추이를 보면 2014년 5.0%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18년 5.0%, 2019년 4.0% 등으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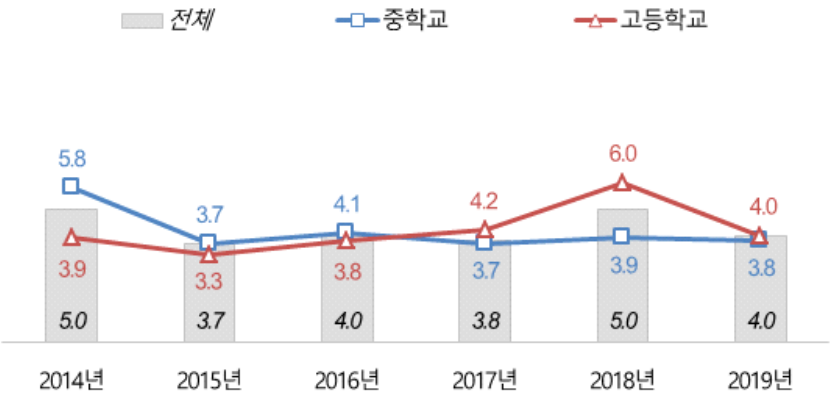

*주)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2-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4) 사생활의 보호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①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머리 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검사를 받은 경험을 알아본 결과, 42.8%가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여 58.6%, 남 28.3%)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47.7%, 중 37.2%), 학업성적(하 45.6%, 중 42.4%, 상 40.4%)과 경제적 수준(하 46.1%, 중 43.7%, 상 41.5%)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Ⅳ-2-15).

표 Ⅳ-2-15.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1) 용모 검사	전체	57.2	15.1	8.3	8.4	11.0	42.8	100.0(6,290)	-
	중학교	62.8	12.6	7.1	8.0	9.5	37.2	100.0(2,920)	76.152***
	고등학교	52.3	17.3	9.4	8.7	12.3	47.7	100.0(3,370)	
2) 복장 검사	전체	56.4	13.9	7.6	8.6	13.5	43.6	100.0(6,290)	-
	중학교	62.5	12.0	6.9	7.9	10.6	37.4	100.0(2,921)	88.770***
	고등학교	51.1	15.6	8.1	9.2	16.0	48.9	100.0(3,370)	
3) 소지품 검사	전체	84.2	10.2	2.9	1.5	1.3	15.9	100.0(6,291)	-
	중학교	85.9	9.1	2.5	1.7	0.7	14.0	100.0(2,922)	28.518***
	고등학교	82.7	11.1	3.2	1.2	1.8	17.3	100.0(3,369)	

***p<.001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검사를 받은 경험은 43.6%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여 57.5%, 남 30.7%)인 경우, 고등학생(48.9%)이 중학생(37.4%)보다, 학업성적(하 45.3%, 중 43.6%, 41.8%)이 낮을수록 복장검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15.9%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남 16.5%, 여 15.0%)인 경우, 고등학생(17.3%)이 중학생(14.0%)보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28.6%)가 일반계고(14.6%)보다 소지품 검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먼저 용모검사는 2011년 69.0%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7년 소폭 상승 후 2019년 42.8%까지 줄어들었다. 복장검사는 2011년 62.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소폭 상승한 후 다시 2019년 43.6%까지 줄어들었다. 소지품 검사는 2011년 28.8%에서 증감세를 반복하다가 2016년 21.2%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2019년에는 15.9%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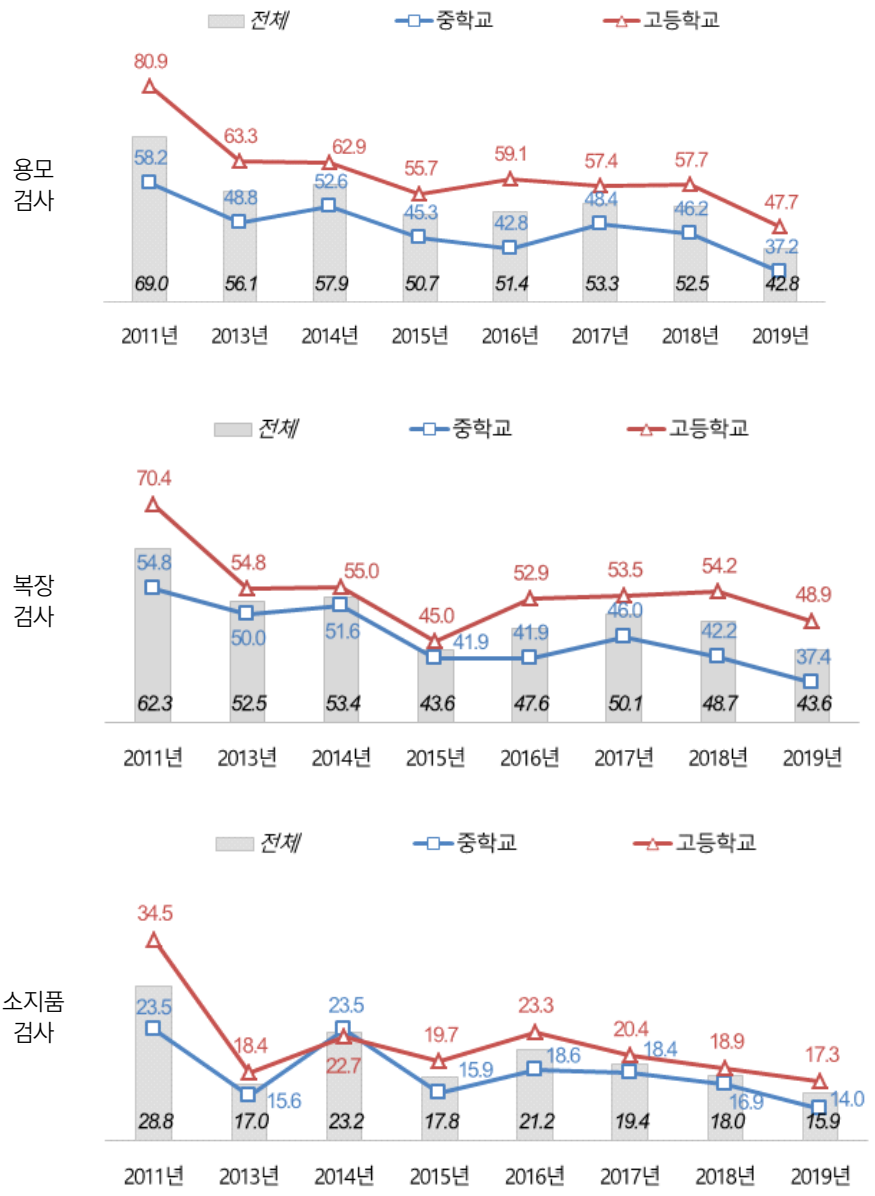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2-11.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연도별 추이)

(2) 학생 정보 보호 정도

'사생활의 보호'의 두 번째 중분류인 학생 정보 보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선생님이 교육비 미납자 이름을 공개하는 경우는 10.0% 정도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12.8%)인 경우, 읍면지역(12.5%)인 경우, 학업성적(하 11.6%, 중 9.9%, 상 8.5%)과 경제적 수준(하 12.1%)이 낮은 경우 교육비 미납자 이름이 공개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2-16).

표 Ⅳ-2-16. 개인의 정보 보호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교육비 미납	전체	1.46(0.72)	66.3	23.7	8.2	1.8	100.0(6,289)	
	중학교	1.46(0.73)	65.8	24.1	7.9	2.1	100.0(2,920)	3.679
	고등학교	1.45(0.72)	66.7	23.3	8.4	1.6	100.0(3,369)	
2) 징계 사항	전체	1.81(0.83)	41.2	40.0	14.9	3.9	100.0(9,239)	
	초등학교	1.79(0.84)	43.2	38.4	14.0	4.3	100.0(2,958)	
	중학교	1.79(0.81)	42.3	40.2	14.1	3.4	100.0(2,917)	24.024***
	고등학교	1.86(0.83)	38.5	41.3	16.3	3.8	100.0(3,365)	
3) 개인 시험 성적	전체	1.78(0.84)	44.0	37.6	14.4	4.0	100.0(6,279)	
	중학교	1.68(0.79)	49.9	35.3	12.1	2.7	100.0(2,916)	94.426***
	고등학교	1.88(0.86)	38.8	39.6	16.4	5.1	100.0(3,364)	

***p<.001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는 18.8%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남 21.9%, 여 15.3%)인 경우, 고등학생(20.1%), 초등학생(18.3%), 중학생(17.5%) 순으로,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21.4%),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19.8%) 징계사항을 공개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경우는 18.4%로 나타났으

며 남학생(남 22.8%, 여 13.7%)인 경우, 고등학생(21.5%)이 중학생(14.8%)보다 공개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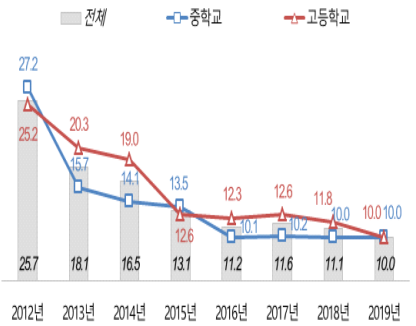

1) 교육비 미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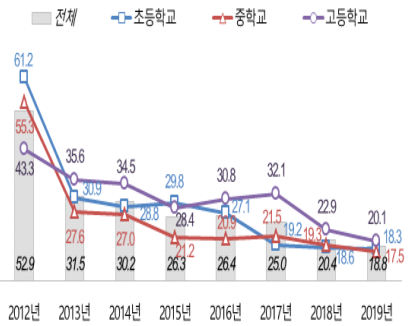

2) 징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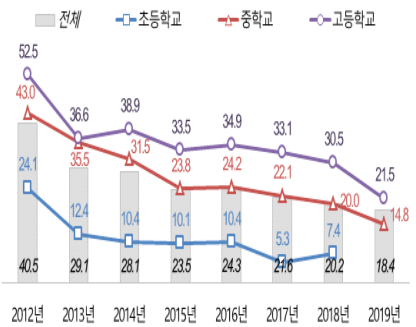

3) 개인 시험성적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시험성적 공개 문항은 2019년부터 초등문항에서 제외됨.

그림 Ⅳ-2-12. 개인의 정보 보호(연도별 추이)

정보공개 추이를 보면 교육비 미납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2012년 25.7%에서 2019년에는 10.0%로 줄어들었으며, 징계사항을 공개하는 경우는 2012년 52.9%에서 2019년 18.8%로 감소하였다. 개인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는 2012년

40.5%에서 2019년 18.4%로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보접근권

(1) 매체 접근율

① 매체 이용률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3.5%), 지상파 TV(92.6%),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4%), 지상파 제외 TV(91.0%), 웹툰(76.3%), SNS(74.3%)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모두 2016년 대비 2018년도에 인터넷 방송과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이용률이 증가하였다(표 Ⅳ-2-17).

표 Ⅳ-2-17.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단위 : %)

구분			지상파 TV	지상파 제외 TV	종이 신문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책	인터넷 신문	웹툰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E-book)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전체		2016	94.9	86.9	26.3	54.4	63.3	55.2	81.5	26.0	92.5	91.7	78.9	34.3
		2018	92.6	91.0	20.3	56.3	63.6	51.7	76.3	19.8	93.5	92.4	74.3	24.6
학교급	초등학교	2016	95.9	81.5	27.0	77.5	69.7	34.1	69.6	22.7	92.2	82.7	56.1	22.9
		2018	92.8	85.6	20.3	78.7	71.3	31.4	59.8	18.9	91.4	83.6	44.5	17.1
	중학교	2016	95.5	88.9	23.1	53.9	61.6	55.4	86.6	26.4	94.4	96.2	88.0	32.1
		2018	93.1	93.0	19.3	54.3	61.3	51.5	81.3	19.3	95.2	96.6	86.2	22.5
	고등학교	2016	93.7	89.2	28.6	37.5	60.1	70.7	86.0	28.2	91.2	94.4	88.0	44.8
		2018	92.0	93.6	21.1	40.1	59.3	67.9	85.5	20.9	93.8	95.9	88.2	32.2

* 출처: 여성가족부(2018b).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44.

* 주: 1) 복수응답 결과.
2) 2016년도 '인터넷 잡지 및 전자서적'을 2018년도는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E-book)'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표 Ⅳ-2-18.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 평균 이용시간(시간)
2011	10대	97.8	2.2	0.1	0.0	13.2
	20대	98.5	1.5	-	0.0	20.4
2012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	10대	95.8	4.1	0.0(0.02)	-	14.1
	20대	99.3	0.7	0.0(0.03)	-	20.3
2014	10대	95.2	4.7	0.1	-	14.4
	20대	99.3	0.7	0.0(0.026)	-	20.5
2015	10대	96.6	3.3	0.1	0.1	14.5
	20대	99.8	0.2	-	-	21.0
2016	3-9세	54.0	42.9	2.9	0.2	5.3
	10대	93.9	5.6	0.3	0.2	15.4
	20대	99.6	0.4	-	-	22.8
2017	3-9세	73.1	15.2	11.0	0.7	7.2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2018	3-9세	75.5	16.2	7.6	0.7	8.9
	10대	98.1	1.2	0.7	-	17.8
	20대	99.9	0.1	0.0	-	24.2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Ⅵ: 총괄보고서. pp.208-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2-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9a).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6-37.

10대의 인터넷 이용 빈도와 시간을 살펴보면, 2018년에 98.1%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 평균 이용시간은 17.8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016년 15.4시간에서 2017년 16.9시간, 2018년 17.8시간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표 Ⅳ-2-18).

표 Ⅳ-2-19.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

구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기타
2015	3-9세	34.0	95.6	17.9	4.9	25.9	0.4	-
	10대	95.7	96.7	85.3	48.5	58.7	6.5	-
	20대	100.0	97.4	99.6	70.3	50.6	33.8	-
2016	3-9세	35.3	95.0	16.9	5.7	33.9	-	-
	10대	95.1	94.5	88.4	51.5	72.4	7.9	-
	20대	99.9	98.5	99.8	74.7	60.4	42.2	-
2017	3-9세	42.2	97.7	31.5	5.6	42.9	-	-
	10대	97.1	98.9	92.6	53.8	73.6	7.8	-
	20대	100.0	99.4	100.0	78.2	64.3	51.3	-
2018	3-9세	46.4	97.0	37.5	12.2	51.6	-	0.4
	10대	98.2	99.5	95.6	70.1	83.8	7.7	30.5
	20대	100.0	99.7	100.0	90.9	65.5	59.8	93.4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9.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9a).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9.

* 주: 1) 복수응답 결과.
2) '기타'항목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추가됨.

2018년도 10대의 인터넷 이용 목적은 여가활동(99.5%), 커뮤니케이션(98.2%), 자료 및 정보 획득(95.6%), 교육·학습(83.8%), 홈페이지 등 운영(70.1%)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2016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1순위, 여가활동이 2순위였으나 2017년부터는 여가활동이 1순위로 나타났다. 교육·학습과 홈페이지 등의 운영 목적이 2015년 58.7%에서 2018년 83.8%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표 Ⅳ-2-19).

표 Ⅳ-2-20.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연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미만	3시간~7시간 미만	7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21시간 미만	21시간~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주평균 (시간)
2016	3-9세	18.7	38.1	23.7	16.1	2.6	0.7	0.2	3.4
	10대	2.0	8.8	18.9	41.8	19.8	7.5	1.1	9.6
	20대	0.2	2.6	10.6	41.4	27.9	14.6	2.8	12.7
2017	3-9세	9.7	19.1	30.5	31.6	6.7	1.8	0.6	5.7
	10대	1.1	5.2	16.3	424.	22.4	11.0	1.6	10.9
	20대	0.0	1.1	7.4	38.1	31.1	18.6	3.7	14.3
2018	3-9세	7.9	17.8	22.3	35.8	12.1	3.7	0.4	7.2
	10대	1.2	4.9	14.4	34.6	29.9	13.3	1.8	12.0
	20대	0.3	1.4	7.4	33.3	32.2	21.6	3.8	14.8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b).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9b).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8.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141.
최창욱 외(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p.200.

2018년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2시간으로, 2017년의 10.9시간, 2016년 9.6시간에 비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주일에 12시간이면 하루 평균 1.7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표 Ⅳ-2-20).

표 Ⅳ-2-21. 스마트폰 과의존[1]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단위 : %)

	과의존 위험군[2]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주이용 콘텐츠(과의존위험군)						
				메신저	게임	학업 업무용 검색	음악	SNS	영화 TV 동영상	뉴스 보기[3]
2017	30.3	3.6	26.7	98.8	97.8	82.6	82.6	81.6	79.8	77.9
2018	29.3	3.6	25.7	94.6	95.8	90.6	94.1	82.4	95.7	77.2
초등학생	22.8	2.0	20.8	85.5	93.3	78.0	86.0	58.1	95.2	45.4
중 학 생	34.0	4.0	30.1	95.1	98.5	90.0	96.2	85.6	96.6	80.0
고등학생	28.3	3.3	25.0	95.5	96.6	93.7	95.2	90.6	95.9	86.0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 통계. p.33
* 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구 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

* 주: 1)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2) 10~19세 청소년 중 과의존 위험군 분율
3) 2017년 뉴스검색, 2018년 뉴스보기
4) 복수응답 결과

2018년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9.3%로 2016년 30.6%, 2017년 30.3%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 속하는 10~19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 컨텐츠는 게임(95.8%), 영화·TV·동영상(95.7%), 메신저(94.6%), 음악(94.1%) 등이다(표 Ⅳ-2-21).

표 Ⅳ-2-22.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단위 : 개)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 공공도서관	745	780	842	889	918	947
어린이도서관	83	85	88	89	92	9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일반 공공도서관은 2012년 745개에서 2017년 947개로 늘어났으며 어린이도서관은 2012년 83개에서 2017년 95개로 늘어났다(표 Ⅳ-2-22).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2012년 초등학교 26.6권, 중학교 18.2권, 고등학교 14.4권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초등학교 38.4권, 중학교 34.4권, 고등학교 24.4권 등으로 증가하였다(표 Ⅳ-2-23).

표 Ⅳ-2-23. 학생 1인당 장서 수

(단위 : 권)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초등학교	26.6	30.2	33.4	34.9	36.6	37.8	38.4
중학교	18.2	19.8	22.6	25.9	29.4	32.1	34.4
고등학교	14.4	16.0	17.2	18.7	19.9	21.7	24.4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8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p.127.

② 유해매체 이용 경험

최근 1년간 2018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표 Ⅳ-2-24), 39.4%로 2016년(41.5%) 대비 감소하였고 남자인 경우(48.7%)와 고등학생인 경우(53.3%)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고등학생은 이용률이 감소하는 반면 초등학생은 늘어나고 있다(2014년 7.5% → 2016년 18.6% → 2018년 19.6%).

표 Ⅳ-2-24.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년	-	-	-	7.5	41.7	65.7
2016년	41.5	51.7	30.5	18.6 (5~6학년 16.1)	42.4	58.0
2018년	39.4	48.7	29.4	19.6 (5~6학년 17.7)	41.6	53.3

* 출처: 여성가족부(2018b).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3.

* 주: 1)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은 5~6학년을, 2016년은 4~6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함.
2) 2016년과 2018년 결과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표 Ⅳ-2-25.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단위 : %)

구분		TV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스마트폰 앱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전체		13.8	12.9	27.6	28.2	19.1	17.7	10.0	10.5	18.1	16.5	10.4	6.6	11.2	11.0
성별	남자	16.3	15.2	37.4	37.5	21.6	20.8	12.4	12.9	19.8	18.7	15.2	9.4	15.1	14.0
	여자	11.1	10.4	17.0	18.2	16.3	14.2	7.3	8.0	16.2	14.1	5.0	3.6	6.9	7.9
학교급	초등학교	10.0	9.5	10.3	10.6	13.1	13.8	9.8	10.3	7.1	6.2	3.2	2.6	10.4	11.2
	중학교	12.7	12.6	30.4	31.0	19.4	20.2	10.5	11.5	19.8	18.7	6.6	5.8	11.0	11.5
	고등학교	17.7	15.7	38.2	39.8	23.2	18.7	9.6	9.8	24.9	22.8	19.0	10.4	11.8	10.5

* 출처: 여성가족부(2018b).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5.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복수응답
2) 2016년도 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이었으나, 2018년도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3) 2016년도 '성인용 영상물'의 용어를, 2018년도는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성인용 영상물의 이용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28.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17.7%, SNS 16.5%, TV방송 12.9%, 스마트폰 앱 11.0% 등의 응답을 보였다. 남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Ⅳ-2-25).

표 Ⅳ-2-26.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년	-	-	-	2.6	21.9	32.5
2016년	22.0	25.8	17.8	11.8 (5-6학년 9.3)	22.5	29.1
2018년	23.3	25.9	20.5	13.2 (5-6학년 10.6)	25.0	29.8

* 출처: 여성가족부(2018b).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61.

* 주: 1)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은 5~6학년을, 2016년은 4~6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함.
2) 2016년 결과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018년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은 23.3%로 2016년 22.0%에서 증가하였다. 남학생(25.9%)과 고등학생(29.8%)의 이용률이 높으며, 연도별 추이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Ⅳ-2-26).

표 Ⅳ-2-27.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신문		잡지		만화책		사진집		소설책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종이 잡지	인터넷 잡지	종이 만화책	인터넷 만화 (웹툰)	종이 사진집	전자 사진집	책	인터넷 소설 (웹소설, 팬픽등)	전자책 (E-Book)
전체		2016	1.4	3.1	1.8	2.3	5.2	17.8	1.8	3.8	2.5	-	3.1
		2018	1.5	3.5	1.7	2.3	5.8	17.3	1.8	3.4	5.6	8.6	1.8
성별	남자	2016	1.5	3.3	1.8	2.5	5.8	20.9	1.9	5.0	2.4	-	2.7
		2018	1.8	3.8	2.1	2.8	6.2	19.7	2.1	4.7	5.4	6.5	2.1
	여자	2016	1.4	2.9	1.8	2.0	4.6	14.5	1.6	2.4	2.7	-	3.6
		2018	1.1	3.0	1.2	1.8	5.5	14.7	1.4	2.1	5.8	10.8	1.5
학교급	초등학교	2016	2.4	2.4	2.4	1.8	7.4	8.1	2.2	1.8	2.6	-	1.8
		2018	2.0	2.5	2.1	1.4	8.1	7.6	2.1	1.6	8.7	3.5	1.7
	중학교	2016	1.1	3.1	1.8	2.6	4.4	18.7	2.0	4.2	2.3	-	3.3
		2018	1.4	4.2	1.5	2.9	5.6	19.1	1.9	3.5	5.0	10.9	1.6
	고등학교	2016	1.0	3.7	1.4	2.4	4.3	24.4	1.3	4.8	2.7	-	4.0
		2018	1.1	3.6	1.5	2.5	4.2	23.6	1.4	4.8	3.7	10.7	2.0

* 출처: 여성가족부(2018b).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63.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복수응답)
2) 2016년도는 소설책의 구성 요인을 '서적과 전자책(eBook)'으로, 2018년도는 '책, 인터넷소설(웹소설, 팬픽 등), 전자책(E-Book)'으로 제시함.

2018년 성인용 간행물 이용경로를 보면 인터넷 만화(웹툰)가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19.7%)인 경우, 고등학생(23.6%)과 중학생(19.1%)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소설(웹소설, 팬픽 등)을 통해 이용했다는 응답도 8.6%로 높은 편이었으며 여학생(10.8%), 중학생(10.9%)과 고등학생(10.7%)의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Ⅳ-2-27).

(2) 미디어 역량/리터러시

① 매체이용 교육 경험

2019년에 '정보접근권'의 하위지표로 '미디어 역량/리터러시' 지표를 신규로 포함시키고 지표항목으로 '매체이용 교육 경험'을 설정함에 따라 지표자료원 발굴

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디지털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듯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된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인권 이슈를 준비해야 한다.

미디어 역량/리터러시와 관련된 정부 공식통계나 현황자료는 아직 축적되지 않고 있고 미디어 역량교육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프로그램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격년 조사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매체이용 교육 경험과 도움 정도 문항의 지표 적절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다 넓은 의미의 미디어교육, 질적인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29일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교육부, 2019. 7. 26. 배포).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역량과 창의·문화 감수성을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미디어 교육 추진과정과 성과를 검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표 자료원 발굴 과제가 있다.

6) 소결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 10개 지표(소분류), 15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는 진로·직업(93.8%)과 상급학교 결정(93.8%) 시 의견존중도가 높게 나타났고, 집안의 중대사 결정(90.9%)과 공부시간·방법 결정(90.5%) 시 의견존중도 또한 9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부모님의 의견존중도는 증가하고 있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정도는 학생회 의견존중·반영도 52.3%, 예산·장소·시간 보장 45.9%, 학생회의 자치권 43.9%, 학생회 임원 후보 성적 제한 없음 38.3% 등으로 전년도 대비 응답률이 상승하였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27.5%,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77.3%로 나타났고 모두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2017년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내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2018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수용율은 90.9%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0.8%였으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2.8%로 높게 나타났고 참여기구 활동 경험은 2.2%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68.6%로, 조사 이래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간 부족(29.7%)', '참여활동 정보 부족(21.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6%)' 등의 응답을 보였다.

사상의 자유는 87.4%가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는 81.8%로 나타났고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경우는 37.8%로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12.6%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9.1%로 최근 줄어들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42.8%), 복장(43.6%), 소지품(15.9%) 검사 경험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10.0%), 징계사항(18.8%), 시험성적(18.4%) 공개도 줄어들고 있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7.8시간,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2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9.3%로 이들이 주로 이용한 컨텐츠는 게임과 영화·TV·동영상, 메신저 등이다. 성인용 영상물의 이용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수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실태조사 결과는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모든 영역에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폭력 및 학대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청소년폭력 경험률

청소년폭력 경험률은 청소년이 가정에서 학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학교에서 교사나 또래 및 선후배로부터, 사이버공간에서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받는 폭력 피해 경험을 말한다.

① 폭력피해 경험

아동·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폭력과 구타 등과 같은 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정서적 폭력 경험률

정서적 폭력 경험률은 청소년이 가정, 학교에서 부모, 학교교사, 또래(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사이버 상에서 또래(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받는 정서적 폭력 경험을 뜻한다. 정서적 폭력의 유형에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 따돌림과 같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폭력이 포함된다. 정서적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불안감이나 두려움, 우울감 등을 유발시켜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

표 Ⅳ-3-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69.8	15.2	6.5	4.7	3.8	100.0(9,264)	
성별	남학생	71.2	14.4	6.2	4.3	3.8	100.0(4,813)	10.047*
	여학생	68.4	16.0	6.7	5.1	3.9	100.0(4,451)	
학교급	초등학교	72.5	14.3	6.2	3.6	3.4	100.0(2,974)	57.911***
	중학교	66.0	15.7	7.8	5.3	5.2	100.0(2,921)	
	고등학교	70.9	15.5	5.6	5.1	3.0	100.0(3,370)	
고교 유형	일반계고	70.0	16.0	5.6	5.1	3.3	100.0(2,718)	6.337
	특성화계고	74.5	13.3	5.4	4.7	2.1	100.0(652)	
지역 규모	대도시	68.5	15.6	6.9	5.0	4.0	100.0(3,780)	10.689
	중소도시	70.4	15.3	6.0	4.4	3.8	100.0(4,412)	
	읍면지역	72.3	13.2	6.5	4.7	3.2	100.0(1,072)	
학업 성적	상	71.1	15.0	6.2	4.1	3.6	100.0(3,274)	45.243***
	중	71.1	14.9	6.6	4.2	3.2	100.0(3,894)	
	하	65.7	16.0	6.5	6.5	5.3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73.0	14.1	5.9	3.8	3.3	100.0(5,326)	156.516***
	중	68.1	16.8	6.8	4.6	3.6	100.0(3,077)	
	하	56.6	16.4	8.9	9.9	8.2	100.0(853)	

*p<.05,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먼저 심한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을 살펴보면 위의 조사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욕설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청소년은 69.8%에 해당되어 10명 중 7명 정도에 해당되었다. 욕설을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한 번이라도 들은 남학생(28.8%)보다 여학생(31.6%)이 상대적으로 욕설 피해 경험이 더 많았고, 중학생(34.0%)이 초등학생(27.5%)이나 고등학생(29.1%)보다 부모

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욕설을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계고 학생(30.0%)이 특성화계고 학생(25.5%)보다 정서적 폭력인 욕설의 경험이 더 많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욕설의 정서적 폭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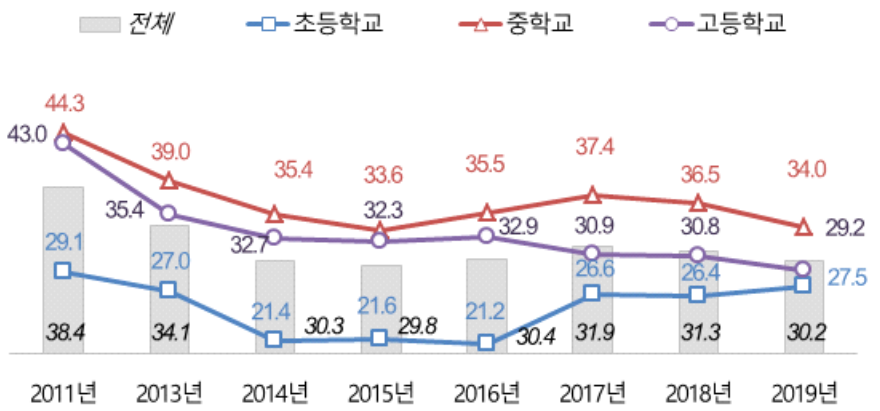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는 청소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 초(27.5%), 중(34.0%), 고(29.2%) 청소년의 정서적 피해가 2011년의 초(29.1%), 중(44.3%), 고(43.0%)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으나, 가장 낮아진 2015년부터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고등학생에게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표 Ⅳ-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2.1	9.6	3.2	2.5	2.5	100.0(9,253)	
성별	남학생	79.9	9.8	4.1	3.0	3.2	100.0(4,805)	59.135***
	여학생	84.6	9.3	2.3	2.0	1.7	100.0(4,448)	
학교급	초등학교	89.2	5.6	1.8	1.6	1.8	100.0(2,967)	151.593***
	중학교	79.1	11.0	3.8	3.0	3.1	100.0(2,919)	
	고등학교	78.6	11.9	4.0	3.0	2.6	100.0(3,366)	
고교 유형	일반계고	79.0	11.9	3.8	2.7	2.5	100.0(2,714)	4.473
	특성화계고	76.8	11.6	4.8	4.0	2.8	100.0(652)	
지역 규모	대도시	82.0	9.7	3.2	2.7	2.4	100.0(3,779)	4.287
	중소도시	82.6	9.2	3.2	2.5	2.5	100.0(4,402)	
	읍면지역	80.8	10.6	3.6	2.2	2.8	100.0(1,072)	
학업 성적	상	83.3	9.1	2.9	1.9	2.7	100.0(3,270)	49.278***
	중	83.7	8.8	3.0	2.4	2.0	100.0(3,887)	
	하	77.5	11.5	4.1	3.8	3.1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83.2	8.8	3.0	2.4	2.6	100.0(5,322)	50.514***
	중	82.6	9.5	3.5	2.4	2.0	100.0(3,071)	
	하	74.2	14.5	3.7	4.1	3.5	100.0(853)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폭력의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7.9%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2명의 학생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위의 가정에서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폭력 경험에서는 10명 중 3명이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폭력 피해는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도 교사로부터 모욕적이나 욕설을 들어보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79.9%)보다 여학생(84.6%)이 더 많았고, 초등학생(89.2%)이 중학생(79.1%)이나 고등학생(78.6%)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

한 비율은 일반계고(79.0%)가 특성화계고(76.8%)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러한 비율을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서 비교해 볼 때에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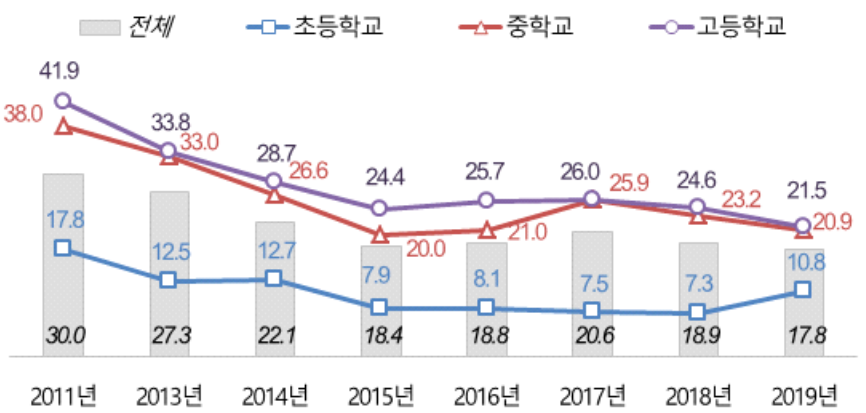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학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욕설과 같은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도별 추이(2011~2019년)를 살펴보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폭력 피해의 추이와 같이 2019년 초(10.8%), 중(20.9%), 고(21.5%) 청소년의 정서적 피해가 2011년의 초(17.8%), 중(38.0%), 고(41.9%)에 비해서 많이 낮아져서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지속적인 피해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폭력 경험이 2018년(7.3%)에 비해 2019년(10.8%)에 비교적 많은 폭으로 상승된 것을 보아 그 원인의 분석과 함께 대처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표 Ⅳ-3-3〉에서는 청소년이 그의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하는 정서적 폭력의 피해 경험에 관하여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정서적 폭력의 피해 경험은 부모나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사로부터 보다는 더 적어 피해를 한 번도 당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4.7%에 달했다. 이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폭력 피해가 가장 크고, 학생들 간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정서적 폭력이 적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학생(87.5%)이 남학생(82.0%)보다 피해경험이 더 적었고, 고등학생(89.9%)이 초등학생(79.4%)이나 중학생(84.0%)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의 피해경험은 초등학생 간 정서적인 갈등이 심한 것을 보여주어 원인과 대책 마련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조사결과이다. 특이한 조사결과는 비록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는 상대적으로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4.7	8.8	2.4	1.9	2.2	100.0(9,269)	
성별	남학생	82.0	9.7	2.8	2.5	3.0	100.0(4,816)	74.371***
	여학생	87.5	8.0	2.0	1.3	1.2	100.0(4,454)	
학교급	초등학교	79.4	12.2	3.5	2.3	2.6	100.0(2,978)	149.516***
	중학교	84.0	8.6	2.3	2.6	2.6	100.0(2,922)	
	고등학교	89.9	6.1	1.6	0.9	1.5	100.0(3,370)	
고교 유형	일반계고	90.4	5.8	1.4	0.9	1.5	100.0(2,718)	4.947
	특성화계고	87.7	7.5	2.2	1.1	1.5	100.0(652)	
지역 규모	대도시	86.0	8.6	2.1	1.4	1.9	100.0(3,780)	18.888*
	중소도시	84.0	9.0	2.7	2.0	2.2	100.0(4,415)	
	읍면지역	82.9	9.1	2.4	3.0	2.7	100.0(1,074)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83.8	9.6	2.5	2.2	1.9	100.0(3,275)	25.279**
	중	84.4	9.3	2.5	1.8	2.0	100.0(3,895)	
	하	86.6	6.8	2.1	1.5	2.9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84.5	9.1	2.4	1.9	2.2	100.0(5,330)	24.323**
	중	86.3	7.8	2.0	1.9	2.0	100.0(3,077)	
	하	80.0	11.0	4.0	2.3	2.7	100.0(854)	

*p<.05, **p<.01,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3-3]에는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1년~2019년)가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은 2016년(14.2%)을 기점으로 이러한 정서적 폭력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 2019년 20.6%에 달했고, 중학생은 변화가 크지 않으며, 고등학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최근 초등학생이 평소 학업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유추될 수 있는데, 가정과 학교가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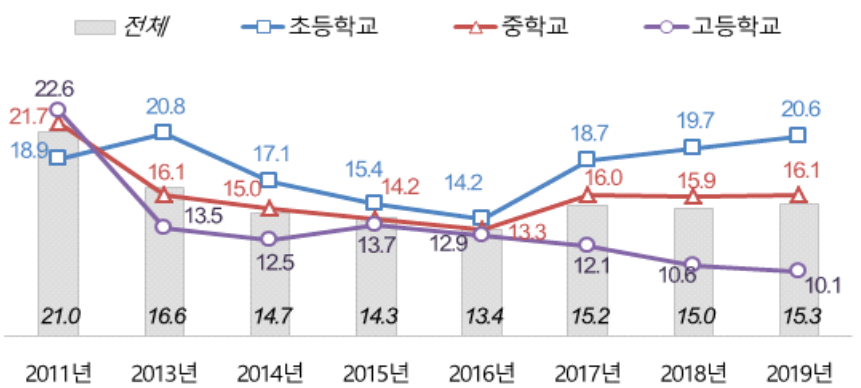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 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연도별 추이)

〈표 Ⅳ-3-4〉에는 또 다른 정서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따돌림에 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9,264명의 응답자 중 94.8%는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1년 동안 한 번도 따돌림을 받은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남학생(94.6%)과 여학생(95.0%)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피해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초등학생(90.6%)이 중학생(95.6%)과 고등학생(97.9%)과는 차이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욕설이나 모욕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따돌림에서도 초등학생의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계고(98.0%)와 특성화계고(97.6%)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가족유형에서 조손가정(86.2%) 학생이 상대적으로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수준별에서는 피해경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따돌림 정서적 폭력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는 경향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4.8	3.2	0.9	0.5	0.6	100.0(9,264)	
성별	남학생	94.6	2.9	1.0	0.7	0.8	100.0(4,812)	16.984**
	여학생	95.0	3.5	0.8	0.3	0.4	100.0(4,452)	
학교급	초등학교	90.6	6.1	1.3	1.0	1.0	100.0(2,976)	186.901***
	중학교	95.6	2.6	0.8	0.3	0.6	100.0(2,921)	
	고등학교	97.9	1.1	0.6	0.2	0.3	100.0(3,367)	
고교 유형	일반계고	98.0	1.0	0.5	0.2	0.3	100.0(2,715)	1.365
	특성화계고	97.6	1.3	0.6	0.2	0.2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0	3.1	0.7	0.5	0.6	100.0(8,402)	63.415***
	한부모가정	93.9	3.3	1.2	0.5	1.1	100.0(694)	
	조손가정	86.2	4.8	8.6	0.4	0.0	100.0(86)	
	기타	92.7	4.6	2.7	0.0	0.0	100.0(75)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94.8	3.5	0.7	0.6	0.5	100.0(3,274)	10.351
	중	94.9	3.0	1.0	0.6	0.6	100.0(3,895)	
	하	94.9	3.0	1.0	0.2	0.9	100.0(2,086)	
경제적 수준	상	94.6	3.2	0.7	0.6	0.8	100.0(5,328)	48.438***
	중	96.0	2.7	0.8	0.1	0.4	100.0(3,075)	
	하	92.1	4.5	2.1	1.0	0.3	100.0(853)	

**p<.01,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3-4]에서는 2011~2019년 사이의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의 연도별 추이를 읽을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는 큰 변화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초등학생은 미세한 증가 추이를, 중학생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경험이 2018년에는 증가했다가 다시 2019년에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따돌림 폭력 현상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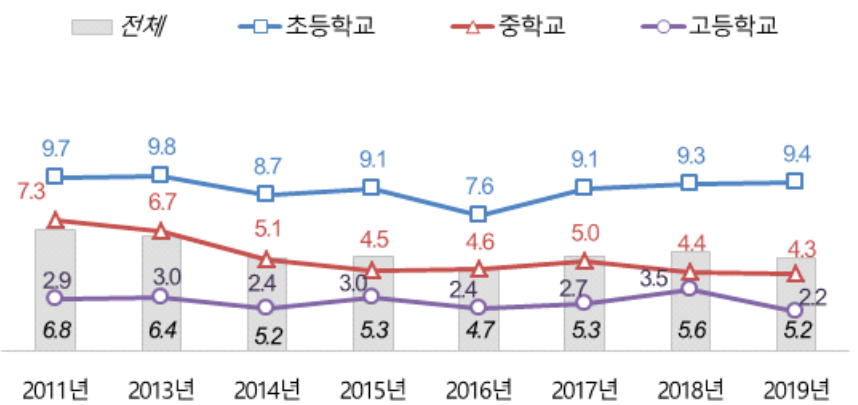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연도별 추이)

나. 신체적 폭력 경험율

청소년이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 성추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들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표 Ⅳ-3-5〉를 통해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년 중 한번 도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92.2%에 해당되었다. 남학생(88.8%)과 여학생(95.9%) 간에는 차이가 있어 남학생 간에 폭행과 구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81.4%)의 경우가 중학생(96.2%)이나 고등학생(98.3%)보다 5명 중 1명의 비율로 폭행과 구타의 피해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심각한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가족유형에 있어서도 조손 가정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신체적 폭력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폭행이나 구타의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응답되고 있다.

표 Ⅳ-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2.2	4.0	1.4	0.9	1.5	100.0(9,269)	
성별	남학생	88.8	5.5	2.1	1.1	2.5	100.0(4,816)	174.538***
	여학생	95.9	2.3	0.7	0.6	0.5	100.0(4,454)	
학교급	초등학교	81.4	9.8	3.2	2.1	3.5	100.0(2,978)	725.181***
	중학교	96.2	1.5	0.9	0.5	0.8	100.0(2,922)	
	고등학교	98.3	0.9	0.3	0.1	0.4	100.0(3,370)	
고교 유형	일반계고	98.4	0.7	0.3	0.2	0.5	100.0(2,718)	7.873
	특성화계고	97.5	1.7	0.4	0.1	0.2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2	4.0	1.3	0.9	1.6	100.0(8,406)	15.330
	한부모가정	93.6	3.5	2.0	0.4	0.6	100.0(694)	
	조손가정	87.5	6.3	2.2	2.7	1.3	100.0(86)	
	기타	88.7	4.6	2.3	1.7	2.7	100.0(76)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91.6	4.4	1.6	0.7	1.7	100.0(3,275)	31.800***
	중	91.3	4.5	1.6	1.1	1.6	100.0(3,895)	
	하	94.9	2.3	0.8	0.8	1.2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91.5	4.6	1.3	0.9	1.6	100.0(5,330)	22.550**
	중	93.4	2.8	1.5	0.8	1.5	100.0(3,077)	
	하	92.7	3.5	1.8	1.1	0.9	100.0(854)	

**p<.01, ***p<.001

[그림 Ⅳ-3-5]에서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폭력 경험에 대한 2011~2019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은 크게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초등학생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견주어 4~6배나 압도적으로 피해 경험이 많은 것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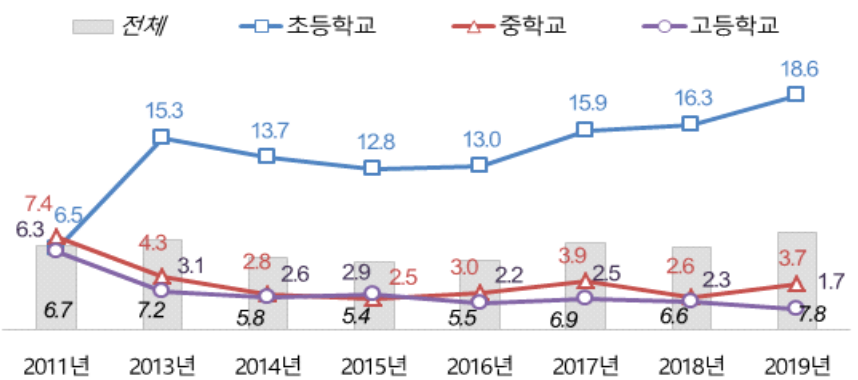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연도별 추이)

또 다른 신체적 폭력이라 할 수 있는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성적 희롱과 추행을 당하는 청소년의 피해 경험은 〈표 Ⅳ-3-6〉에 잘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4.0%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4.5%)과 여학생(3.6%)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학교급 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특성화계고(4.3%) 학생이 일반계고(3.0%) 학생보다 다소 성관련 폭력의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정(3.8%)이나 한부모가정(5.8%)의 자녀보다 조손가정(12.1%)의 자녀들이 훨씬 많이 상대적으로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아 학교에서 담임교사들은 조손가정 자녀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보인다. 학업성적 수준에서는 성관련 폭력의 피해경험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이 피해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6.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6.0	2.1	0.8	0.5	0.6	100.0(9,265)	
성별	남학생	95.5	1.8	1.0	0.7	1.0	100.0(4,813)	32.065***
	여학생	96.4	2.4	0.6	0.4	0.3	100.0(4,452)	
학교급	초등학교	96.0	2.1	0.7	0.5	0.6	100.0(2,975)	13.344
	중학교	95.0	2.6	0.9	0.7	0.8	100.0(2,920)	
	고등학교	96.7	1.6	0.8	0.4	0.5	100.0(3,370)	
고교 유형	일반계고	97.0	1.6	0.7	0.4	0.4	100.0(2,718)	5.078
	특성화계고	95.7	1.8	1.2	0.5	0.9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2	2.0	0.7	0.5	0.5	100.0(8,403)	54.180***
	한부모가정	94.2	2.3	1.7	0.7	1.0	100.0(694)	
	조손가정	87.9	4.4	2.2	1.2	4.3	100.0(86)	
	기타	94.0	1.3	1.1	0.0	3.5	100.0(75)	
학업 성적	상	96.1	2.2	0.5	0.7	0.5	100.0(3,272)	10.146
	중	96.1	1.9	1.0	0.4	0.6	100.0(3,895)	
	하	95.6	2.1	1.0	0.6	0.8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96.5	2.0	0.5	0.4	0.5	100.0(5,327)	30.021***
	중	95.9	2.0	0.9	0.6	0.6	100.0(3,076)	
	하	92.9	3.2	1.8	1.1	1.1	100.0(854)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3-6]은 청소년이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한 연도별 추이(2011년~2019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학교급별로 비교하면 피해는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고, 초등학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초등학생(3.9%)이 고등학생(3.3%)의 피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최근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학생과 초등학생에서는 성 관련 폭력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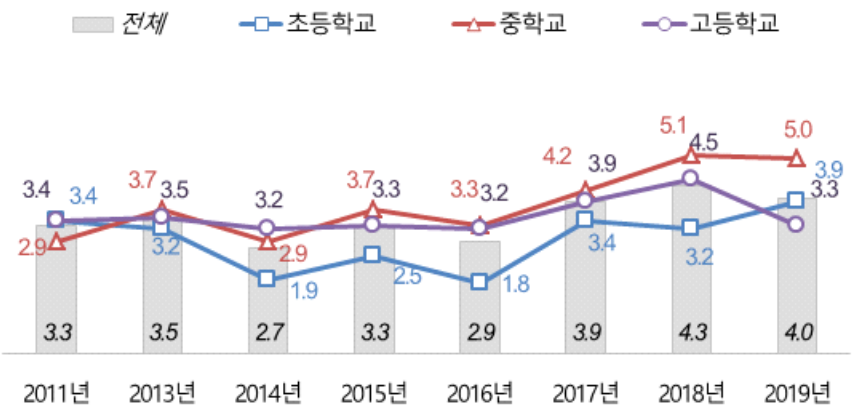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6. 선후배, 친구로부터 성적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연도별 추이)

②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율

정보사회에 와서 뉴미디어가 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에 못지않은 다양한 소통과 행위의 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익명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익명 뒤에 숨어서 가짜뉴스를 전한다든지, 무차별 인신공격 등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청소년들은 욕설이나, 사생활 침해, 따돌림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사이버 폭력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표 Ⅳ-3-7〉은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으로 해서 폭력 피해의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 9,269명 중 15.6%는 1년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남학생(16.4%)과 여학생(14.5%)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중학생(19.9%)은 초등학생(13.1%)과 고등학생(1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욕설과 모욕의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으로 보면 양부모가정 자녀(15.2%)가 한부모가정 자녀(19.2%)나 조손가정 자녀(19.5%)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사이버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사이버공간에서 더 듣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경제적 수준이 하층에 속하는 학생은 24.1%가 이러한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집단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Ⅳ-3-7. 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4.5	8.8	2.6	1.9	2.3	100.0(9,269)	
성별	남학생	83.6	8.2	2.7	2.3	3.3	100.0(4,816)	57.877***
	여학생	85.5	9.4	2.5	1.4	1.2	100.0(4,453)	
학교급	초등학교	87.0	8.1	2.0	1.3	1.7	100.0(2,977)	72.991***
	중학교	80.1	10.5	3.6	2.6	3.2	100.0(2,922)	
	고등학교	86.1	7.8	2.2	1.8	2.1	100.0(3,370)	
고교 유형	일반계고	86.0	8.1	2.0	1.9	2.0	100.0(2,718)	5.673
	특성화계고	86.7	6.5	3.1	1.4	2.3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4.8	8.7	2.4	1.8	2.3	100.0(8,406)	33.677***
	한부모가정	80.8	9.3	4.5	2.4	3.0	100.0(694)	
	조손가정	80.5	8.2	4.2	7.1	0.0	100.0(86)	
	기타	85.0	10.0	1.1	0.5	3.3	100.0(76)	
학업 성적	상	85.6	8.6	2.1	1.6	2.1	100.0(3,275)	37.419***
	중	85.5	8.5	2.5	1.6	1.9	100.0(3,895)	
	하	81.1	9.3	3.5	2.7	3.3	100.0(2,091)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85.7	8.6	2.0	1.5	2.2	100.0(5,330)	85.031***
	중	84.9	8.3	3.0	2.0	1.8	100.0(3,076)	
	하	75.9	10.9	4.7	4.1	4.4	100.0(854)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3-7]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피해를 입은 학교급별 3년 간(2013년~2019년)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2013년에 비해 피해가 낮아졌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학생이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크게 사이버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고무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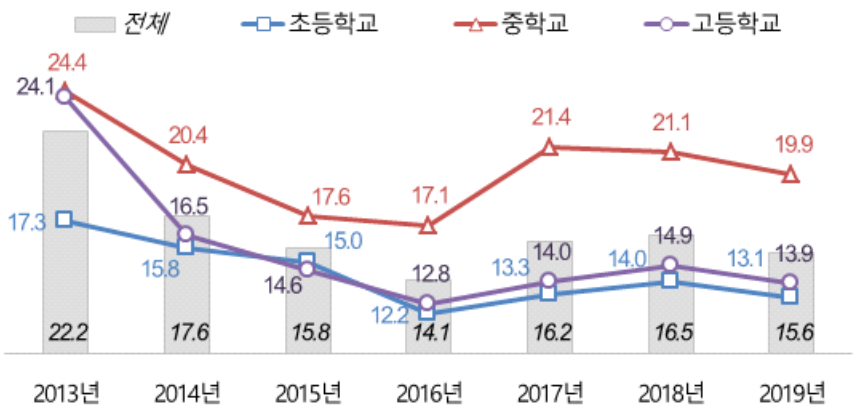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7. 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연도별 추이)

〈표 Ⅳ-3-8〉은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 학생 중 5.1% 정도는 1년 중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서 원치 않게 노출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남학생(5.3%)과 여학생(4.8%) 사이와 초등학생(4.2%), 중학생(6.4%), 고등학생(4.5%)의 학교급별 차이, 일반계고(4.7%)와 특성화계고(3.9%)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조손가정 자녀(9.4%)가 양부모가정 자녀(4.9%)나 한부모가정 자녀(6.1%)에 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생활 노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사생활 노출의 사이버폭력에 더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8. 사이버공간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0	3.5	0.9	0.4	0.3	100.0(9,265)	
성별	남학생	94.8	3.3	1.0	0.5	0.5	100.0(4,814)	14.428**
	여학생	95.2	3.6	0.8	0.3	0.1	100.0(4,451)	
학교급	초등학교	95.8	3.0	0.8	0.3	0.1	100.0(2,976)	21.246**
	중학교	93.6	4.1	1.1	0.7	0.5	100.0(2,920)	
	고등학교	95.5	3.3	0.7	0.3	0.2	100.0(3,370)	
고교 유형	일반계고	95.3	3.4	0.7	0.3	0.3	100.0(2,718)	2.598
	특성화계고	96.2	2.8	0.8	0.3	0.0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1	3.4	0.8	0.4	0.2	100.0(8,404)	36.301***
	한부모가정	93.9	4.6	0.7	0.5	0.4	100.0(693)	
	조손가정	90.6	2.4	5.1	0.0	1.9	100.0(86)	
	기타	97.3	1.1	0.0	0.0	1.5	100.0(75)	
학업 성적	상	95.7	3.2	0.6	0.3	0.1	100.0(3,274)	27.795***
	중	95.5	2.9	0.9	0.5	0.3	100.0(3,895)	
	하	93.1	5.0	1.1	0.4	0.4	100.0(2,089)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95.1	3.6	0.7	0.3	0.3	100.0(5,328)	24.753**
	중	95.6	2.8	0.9	0.5	0.3	100.0(3,075)	
	하	92.3	5.0	1.8	0.5	0.3	100.0(854)	

**p<.01,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3-8]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청소년 개인의 사생활이 유포되고 있는 연도별(2011년~2019년) 추이가 학교급별로 제시되어 있다. 추이만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개인 사생활 유포의 사이버폭력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초등학생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과는 달리 2011년(6.6%)보다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4.2%)에 지난 3년(4.0%)보다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심한 사이버폭력의 실태는 중학생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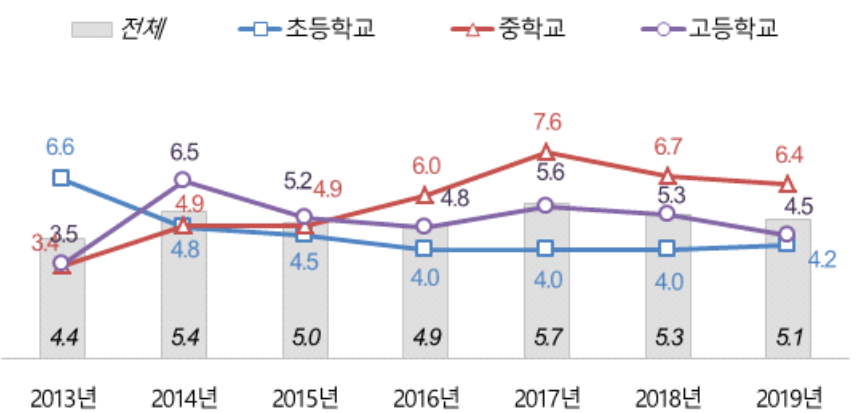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8. 사이버공간에서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연도별 추이)

〈표 Ⅳ-3-9〉에는 사이버공간에서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는 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전체 응답학생 9,266명 중에서 1.9%가 1년 중에 1번 이상의 따돌림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2.4%)과 여학생(1.4%)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학교급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소 따돌림의 사이버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 자녀(9.2%)가 양부모가정 자녀(1.7%)나 한부모가정(2.9%)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돌림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큰 폭으로 더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집단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다소 따돌림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9.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함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1	1.1	0.3	0.2	0.3	100.0(9,266)	
성별	남학생	97.6	1.2	0.4	0.4	0.4	100.0(4,815)	21.622***
	여학생	98.6	1.0	0.2	0.1	0.1	100.0(4,451)	
학교급	초등학교	97.4	1.8	0.3	0.2	0.3	100.0(2,977)	36.380***
	중학교	97.9	1.2	0.4	0.1	0.4	100.0(2,920)	
	고등학교	98.9	0.4	0.3	0.3	0.1	100.0(3,370)	
고교 유형	일반계고	99.1	0.3	0.3	0.3	0.1	100.0(2,718)	11.899*
	특성화계고	98.1	1.1	0.4	0.1	0.2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3	1.1	0.3	0.2	0.2	100.0(8,404)	42.116***
	한부모가정	97.1	1.3	0.8	0.3	0.5	100.0(693)	
	조손가정	90.8	4.0	1.1	2.4	1.7	100.0(86)	
	기타	95.5	1.8	1.1	0.0	1.5	100.0(76)	
학업 성적	상	98.4	1.1	0.1	0.1	0.3	100.0(3,274)	15.437
	중	98.2	1.1	0.3	0.2	0.2	100.0(3,895)	
	하	97.4	1.3	0.6	0.4	0.3	100.0(2,090)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98.2	1.1	0.2	0.3	0.3	100.0(5,328)	30.872***
	중	98.5	0.9	0.4	0.0	0.2	100.0(3,075)	
	하	96.4	2.0	0.8	0.4	0.3	100.0(854)	

*p<.05,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3-9]는 학교급별 학생이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2013년~2019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2018년보다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에서는 이와 반대로 2018년 이후 사이버공간에서의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1.8%에서 2019년 2.6%로 많은 폭으로 증가가 되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서 초등학생의 폭력 증가가 늘어나는 추세와 상통하는 결과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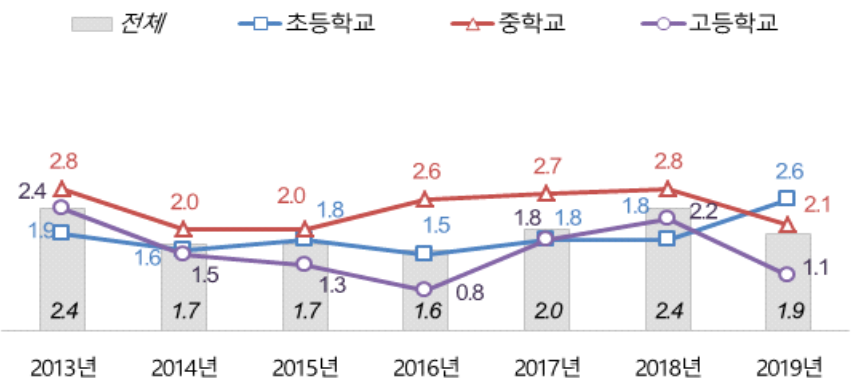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9.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함(연도별 추이)

(2) 체벌 경험률

체벌 경험률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정부에게 권고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로 가정에서 부모나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체벌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도 설문조사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적 체벌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큰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학원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설문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① 체벌 경험률

가. 부모나 보호자로 부터의 체벌 경험

〈표 Ⅳ-3-10〉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2019년 조사 결과이다. 조사 대상 청소년 전체 9,262명 중 25%는 1년 중 1번 이상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남학생(24.3%)과 여학생(25.6%)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초등학생(32.9%)이 중학생(26.7%)이나 고등학생(16.5%)보다 상대적으로 체벌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21.1%) 학생이 대도시(25.7%) 학생보다 체벌 경험이 덜하였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체벌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경제적 수준이 하층 집단에 속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체벌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0.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5.0	17.3	4.2	2.3	1.2	100.0(9,262)	
성별	남학생	75.7	16.6	4.1	2.2	1.4	100.0(4,811)	8.366
	여학생	74.4	18.0	4.3	2.3	0.9	100.0(4,452)	
학교급	초등학교	67.1	21.9	5.7	3.0	2.3	100.0(2,972)	258.090***
	중학교	73.3	18.4	4.7	2.6	0.9	100.0(2,920)	
	고등학교	83.5	12.2	2.4	1.3	0.5	100.0(3,370)	
고교 유형	일반계고	83.3	12.3	2.5	1.3	0.6	100.0(2,718)	5.047
	특성화계고	84.6	12.1	1.9	1.3	0.0	100.0(652)	
지역 규모	대도시	74.3	17.2	4.8	2.5	1.2	100.0(3,778)	16.001*
	중소도시	74.7	17.9	3.9	2.1	1.3	100.0(4,410)	
	읍면지역	78.9	15.0	3.2	2.1	0.8	100.0(1,074)	
학업 성적	상	73.7	18.7	4.2	2.0	1.3	100.0(3,272)	11.526
	중	75.8	16.5	4.4	2.2	1.1	100.0(3,893)	
	하	76.0	16.4	3.9	2.7	1.1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75.1	17.3	4.3	2.0	1.2	100.0(5,326)	24.917**
	중	76.4	16.7	3.7	2.2	1.0	100.0(3,073)	
	하	70.3	19.0	4.9	4.1	1.6	100.0(854)	

*p<.05, **p<.01,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3-10]에는 2011년~2019년의 학교급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체벌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체벌 경험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부모로부터 체벌 경험이 2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 연령 때의 체벌 경험은 설사 체벌이 아무리 교육적 체벌이라 할지라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실태이다. 단지, 2017년에 35.6%였던 초등학생의 체벌 피해 경험이 2018년 32.8%, 2019년 32.9%로 낮아진 것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낮아지는 추세로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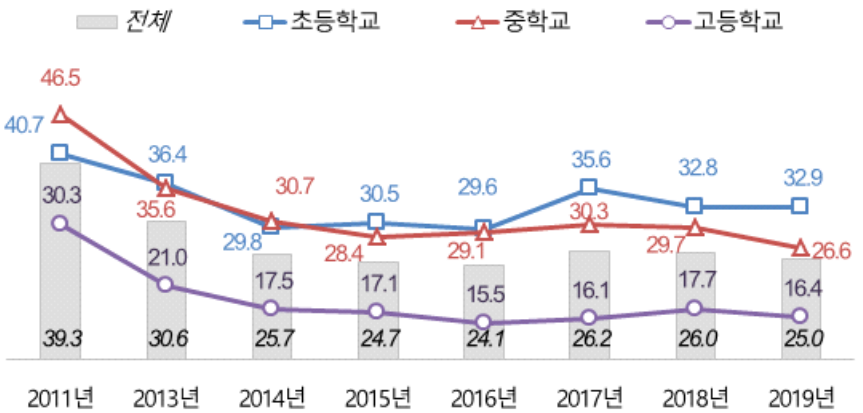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0.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표 Ⅳ-3-11〉에서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조사결과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다는 교사로 부터의 체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9,254명의 청소년 중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9.2%에 해당되었다. 남학생(13.2%)과 여학생(4.9%)을 비교했을 때 남학생의 교사로부터 체벌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다. 학교급별로 비교했을 때에는 초등학생(6.2%)이 중학생(10.6%)이나 고등학생(10.7%)보다 상대적으로 피해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유형을 보았을 때 조손가정 자녀(15.2%)가 양부모가정 자녀(9.1%)나 한부모가정 자녀(9.8%)에 비해 교사로부터의 체벌 피해가 눈에 띄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11.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0.8	5.0	1.6	1.3	1.3	100.0(9,254)	
성별	남학생	86.8	6.7	2.4	2.0	2.1	100.0(4,803)	201.670***
	여학생	95.1	3.2	0.8	0.5	0.4	100.0(4,451)	
학교급	초등학교	93.8	3.5	1.1	0.7	0.9	100.0(2,968)	50.435***
	중학교	89.4	5.4	1.9	1.7	1.6	100.0(2,918)	
	고등학교	89.3	5.9	1.8	1.5	1.5	100.0(3,3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89.7	5.4	1.8	1.5	1.6	100.0(2,716)	6.612
	특성화계고	87.6	8.0	1.6	1.6	1.2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0.9	5.0	1.6	1.2	1.3	100.0(8,395)	11.667
	한부모가정	90.2	4.6	1.8	1.9	1.5	100.0(692)	
	조손가정	84.8	7.0	2.7	3.0	2.5	100.0(85)	
	기타	88.1	9.6	1.2	1.1	0.0	100.0(76)	
학업 성적	상	91.5	4.8	1.4	0.9	1.3	100.0(3,270)	43.757***
	중	91.7	4.7	1.6	1.0	1.0	100.0(3,890)	
	하	87.9	5.9	1.8	2.4	1.9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91.3	4.9	1.4	1.2	1.3	100.0(5,321)	15.851*
	중	90.9	4.6	1.8	1.4	1.3	100.0(3,073)	
	하	87.4	7.1	2.2	1.5	1.8	100.0(853)	

*p<.05,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3-11]은 2011년~2019년 기간의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의 경험에 대한 학교급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교사로부터의 체벌 피해 경험은 2019년 초(6.2%), 중(10.6%), 고(10.7%) 청소년의 정서적 피해가 2011년의 초(21.5%), 중(48.8%), 고(47.1%)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 지속적으로 그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에서의 교사체벌은 2017년 7.6%에서 2018년에 5.2%로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다시 6.2%로 증가하였다.

다만, 초등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피해 경험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그나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2017년에는 중학생의 피해 경험이 19.7%인데 비해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7.6%로 1/3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중학생이 10.6%, 초등학생이 6.2%로 그 간격이 많이 좁혀져 초등학교에서의 교사 체벌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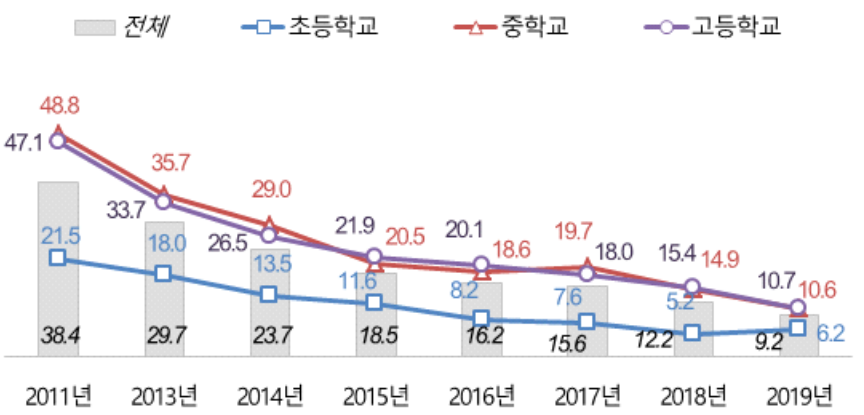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1.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①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사례 등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 심사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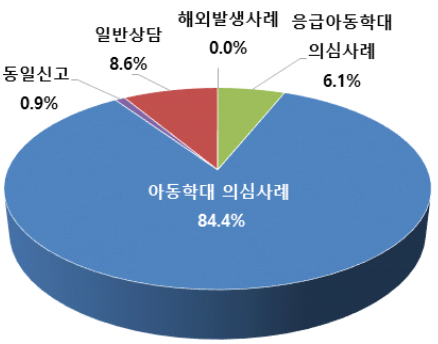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57.

그림 Ⅳ-3-12. 2017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또한, 동일신고(사례)는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 피해의심내용으로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된 사례이며, 일반상담(사례)은 자녀 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

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55). 해외발생사례는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국적의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55).

이렇게 분류된 내용에 따라 신고 접수된 가장 최근 아동학대 건수를 살펴보면(2017년 현황 기준)(표 Ⅳ-3-12),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34,169건으로 그 중 대부분인 90.5%(30,923건)가 아동학대 의심사례였으며, 동일 신고는 0.9%(292건), 일반상담은 8.6%(2,951건)로 나타났고 해외발생사례는 단 3건이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포함되는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94건(6.1%),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8,829(8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Ⅳ-3-12. 2017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094 (6.1)	28,829 (84.4)	30,923 (90.5)	292 (0.9)	2,951 (8.6)	3 (0.0)	34,169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57.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에 따른 건수를 살펴보면(그림 Ⅳ-3-13), 전체 34,169건수 중 112경찰신고를 통한 접수 건수는 48.8%인 16,6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 인터넷, 내방 접수 포함)을 통한 건수는 32.3%인 11,038건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담원 인지신고는 2017년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추가된 내용으로 이는 상담원이 업무 수행 중 아동학대의심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2017년에는 전체 중 18.3%인 6,258건으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생활민원신고 110 등을

통해 접수된 기타 경로 건수는 9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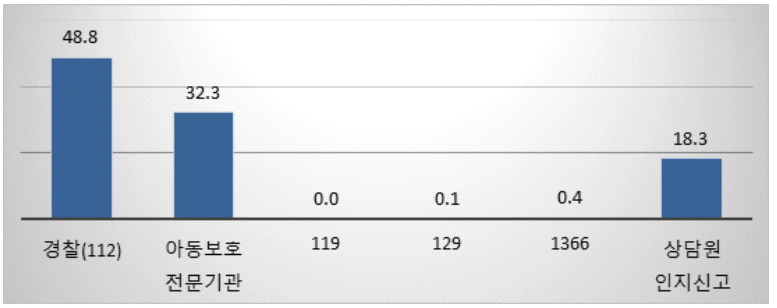

* 주: 본 그림은 표 Ⅳ-3-13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Ⅳ-3-13. 2017년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

표 Ⅳ-3-13.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

(단위 : 건(%))

경찰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119	129	1366	상담원 인지신고[1]	기타[2]	계
	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6,676 (48.8)	10,666 (31.2)	9 (0.0)	363 (1.1)	11,038 (32.3)	11 (0.0)	47 (0.1)	130 (0.4)	6,258 (18.3)	9 (0.0)	34,169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95.

* 주: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업무수행 중 아동학대의심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2) 생활민원신고 110,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의심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

아동학대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학대행위자를 파악하는 것은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전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Ⅳ-3-14),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사례가 76.8%(17,177명)였으며, 그 중 친부모가 73.3%, 계부모 3.3%, 양부모 0.2%로 친부모가 학대행위자인 사례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초중고 교원이 6.0%, 친인척이 4.8%, 유치원/보육 교직원이 2.5%였으며 부모동거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원/교습소 종사자, 이웃/낯선 사람이 1%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Ⅳ-3-1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부모				친인척					총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소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소계	
명	16,386	742	49	17,177	365	188	328	186	1,067	22,367 (100.0)
%	73.3	3.3	0.2	76.8	1.7	0.9	1.5	0.8	4.8	

구분	대리양육자										타인			
	부모 동거인	유치원/ 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 교습소 종사자	아동복 지시설 종사자	기타 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	베이비 시터	소계	이웃, 낯선 사람	기타	파악 안됨	
명	247	1,121	1,345	217	285	60	32	21	15	3,343	294	441	45	
%	1.1	2.5	6.0	1.0	1.3	0.3	0.1	0.1	0.1	14.9	1.3	2.0	0.2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1-122.

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중복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 유형을 가장 최근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표 Ⅳ-3-15), 전체 사례 22,367건수 중 중복학대가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5.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학대유형 단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계
건수	3,285	4,728	692	2,787	10,875	22,367
%	14.7	21.1	3.1	12.5	48.6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8-129.

그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21.1%, 신체학대 14.7%, 방임 12.5%, 성적 학대 3.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Ⅳ-3-16), 전체적인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의 아동학대유형인 중복학대는 2013년 43%이었으나 2017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해당 건수는 2013년 2,922건에서

2017년 10,875건으로 3.5배 이상 건수가 증가하여 중복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학대는 2016년 16.1%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며, 정서학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15.8%→2015년: 17.5%→2016년: 19.2%→2017년: 21.1%). 성학대 역시 2016년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2016년: 2.6%→2017년: 3.1%), 방임은 다소 감소하였다(2016년: 15.6%→2017년: 12.5%)

표 Ⅳ-3-16.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 건(%))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3년	753(11.1)	1,101(16.2)	242(3.6)	1,778(26.2)	2,922(43.0)	6,796(100.0)
2014년	1,453(14.5)	1,582(15.8)	308(3.1)	1,870(18.6)	4,814(48.0)	10,027(100.0)
2015년	1,884(16.1)	2,046(17.5)	428(3.7)	2,010(17.2)	5,347(45.6)	11,715(100.0)
2016년	2,715(14.5)	3,588(19.2)	493(2.6)	2,924(15.6)	8,980(48.0)	18,573(100.0)
2017년	3,285(14.7)	4,728(21.1)	692(3.1)	2,787(12.5)	10,875(48.6)	22,367(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88,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5,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1-12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8-129에서 발췌, 표 재구성.

성적 학대의 경우(표 Ⅳ-3-16), 2017년 기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3.1%이나, 사례 건수는 692건에 이르고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성적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이 비교적 낮다고 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

③ 방임 정도

아동·청소년의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는 야간시간 방임, 비위생적 의복 및 침구 사용, 결식 시 방치, 질병과 결석에 대한 무관심 정도를 통해 조사하였고, 주요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방임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경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그림 Ⅳ-3-14), 밤늦게까지 부모님 없는 집에 혼자 있은 적이 있다는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은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깨끗하지 않은 옷과 이부자리에 대한 경험률이 7.5%, 결식 시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7%, 질병발생시 부모님이 내버려 둔 적이 있다는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학교 결석 시 부모님(보호자)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1.1%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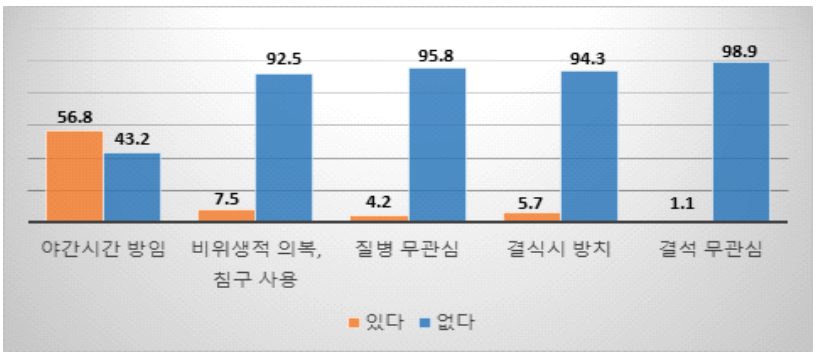

그림 Ⅳ-3-14.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각 방임 항목별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표 Ⅳ-3-17), 먼저 야간시간 방임에 대해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이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전체 43.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은 일 년에 1~2회 정도가 33.7%, 2~3개월에 한번 있다는 응답은 10.9%, 한 달에 1~2회에 정도는 6.8%, 1주일에 1~2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5.5%였다. 이러한 응답에 대해 성별차이는 없었으며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 년에 1~2회 이상 야간방임이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중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훨씬 높았고,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가정에서보다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

한 집단에서 야간방임 경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3-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43.2	33.7	10.9	6.8	5.5	100.0(9,269)	
성별	남학생	42.6	34.0	11.1	6.8	5.5	100.0(4,815)	1.535
	여학생	43.8	33.4	10.6	6.8	5.4	100.0(4,454)	
학교급	초등학교	49.7	30.2	8.7	5.1	6.2	100.0(2,979)	102.055***
	중학교	39.9	35.7	12.0	7.2	5.2	100.0(2,922)	
	고등학교	40.2	35.0	11.7	7.9	5.1	100.0(3,36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4.0	34.2	10.7	6.5	4.6	100.0(8,406)	218.037***
	한부모가정	31.1	28.4	13.0	11.6	15.8	100.0(694)	
	조손가정	47.9	31.5	8.9	4.0	7.7	100.0(86)	
	기타	52.8	23.6	8.9	4.9	9.8	100.0(76)	
학업 성적	상	45.1	33.7	10.4	6.0	4.7	100.0(3,274)	50.430***
	중	44.7	32.7	10.7	6.8	5.2	100.0(3,895)	
	하	37.4	35.5	11.7	8.2	7.2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46.1	32.7	10.4	6.1	4.7	100.0(5,329)	110.697***
	중	40.5	35.6	11.5	6.8	5.6	100.0(3,077)	
	하	34.1	32.7	11.6	11.5	10.1	100.0(854)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척도가 변경됨.

야간시간 방임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Ⅳ-3-15), 2014년 이후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2014년: 73.9%→2018년 64.4%→2019년 59.7%). 이해 비해 중학생은 전년대비 3.7%p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초등학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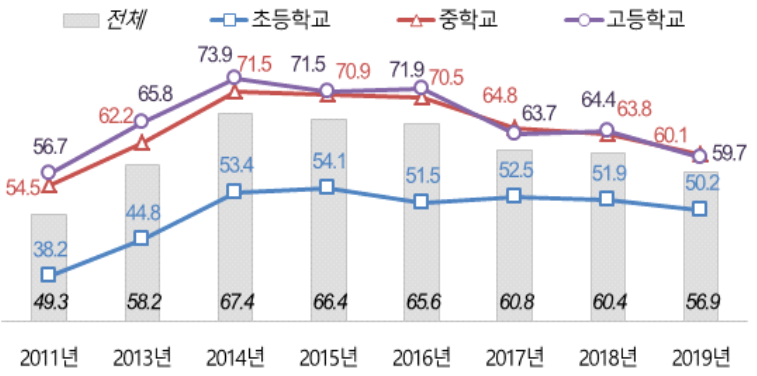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5. 방임_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연도별 추이)

비위생적인 의복이나 침구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2.5%로 응답자 대다수가 가정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의복과 침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18). 그리고 일년에 1~2회 정도는 4.9%, 2~3개월에 1~2회 정도는 1.4%, 한달에 1~2회 정도는 0.6%, 1주일에 1~2회 이상은 0.6% 수준에 그쳤다. '깨끗하지 않은 옷과 침구사용 경험이 일년에 1~2회 있음'을 기준으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의 응답이 양부모 및 기타 가정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역시 더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위생적이지 않은 의류와 침구사용 경험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값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2014년 16.9%→2018년 8.7%→2019년 7.5%), 모든 학교급에서 낮아지는 추세였다.

표 Ⅳ-3-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2.5	4.9	1.4	0.6	0.6	100.0(9,267)	
성별	남학생	92.0	5.0	1.6	0.6	0.8	100.0(4,815)	10.012*
	여학생	93.1	4.8	1.1	0.6	0.4	100.0(4,452)	
학교급	초등학교	94.0	4.0	0.9	0.4	0.7	100.0(2,977)	33.698***
	중학교	91.4	5.8	1.4	0.6	0.9	100.0(2,922)	
	고등학교	92.2	4.9	1.9	0.7	0.3	100.0(3,36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9	4.6	1.4	0.5	0.5	100.0(8,405)	43.121***
	한부모가정	87.7	7.5	1.8	1.6	1.4	100.0(694)	
	조손가정	88.3	8.7	1.1	1.9	0.0	100.0(86)	
	기타	90.3	6.1	2.2	0.0	1.4	100.0(76)	
학업 성적	상	93.9	4.0	1.1	0.5	0.5	100.0(3,275)	29.611***
	중	92.5	5.1	1.2	0.7	0.6	100.0(3,893)	
	하	90.4	5.9	2.3	0.7	0.7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94.2	3.8	0.9	0.6	0.6	100.0(5,329)	99.299***
	중	91.7	5.6	1.8	0.5	0.5	100.0(3,076)	
	하	85.1	9.3	2.9	1.6	1.2	100.0(854)	

*p<.05,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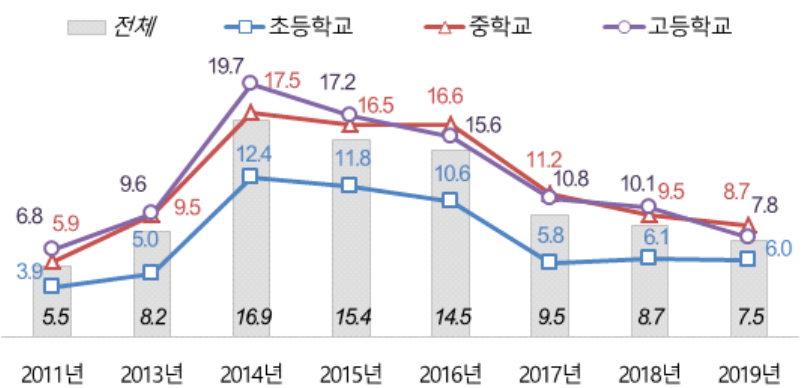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6. 방임_깨끗하지 않은 옷, 침구를 사용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질병 발생 시 방치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표 Ⅳ-3-19), 95.8%가 한번도 없다고 응답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가정에서 질병 발생 시 부모로부터 방치되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회 정도는 2.7%, 2~3개월에 1~2회 정도는 0.9%, 한달에 1~2회 정도는 0.3%, 1주일에 1~2회 이상은 0.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한부모 가정의 응답자가 다른 가족유형에서보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다고 인식할수록 질병 발생 시 방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8	2.7	0.9	0.3	0.3	100.0(9,269)	
성별	남학생	96.4	2.0	1.0	0.2	0.4	100.0(4,816)	26.329***
	여학생	95.2	3.5	0.7	0.3	0.2	100.0(4,452)	
학교급	초등학교	97.0	1.9	0.6	0.1	0.3	100.0(2,979)	38.695***
	중학교	94.4	3.9	1.2	0.2	0.3	100.0(2,921)	
	고등학교	95.9	2.4	0.8	0.5	0.3	100.0(3,37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2	2.4	0.8	0.3	0.3	100.0(8,406)	47.770***
	한부모가정	91.1	6.2	1.7	0.3	0.7	100.0(694)	
	조손가정	93.9	2.9	2.7	0.4	0.0	100.0(86)	
	기타	96.3	3.7	0.0	0.0	0.0	100.0(76)	
학업 성적	상	96.4	2.2	0.9	0.2	0.2	100.0(3,275)	44.249***
	중	96.6	2.1	0.6	0.3	0.4	100.0(3,894)	
	하	93.4	4.5	1.3	0.3	0.5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96.8	2.1	0.6	0.2	0.4	100.0(5,329)	81.195***
	중	95.6	2.9	1.0	0.3	0.2	100.0(3,077)	
	하	90.5	5.8	2.5	0.6	0.6	100.0(854)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Ⅳ-3-17), 질병 발생 시 방치된 경험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1년: 8.9%→2018년: 4.8%→2019년: 4.2%). 모든 교급에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중학생의 경우만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의미 있는 증가로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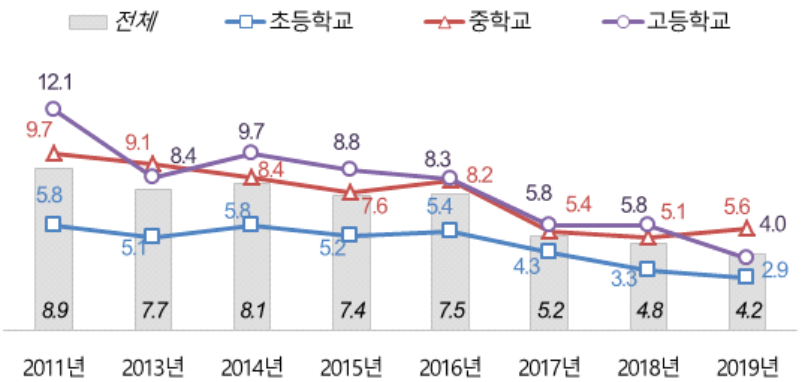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7. 방임_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결식 시 방임 경험은 한번도 없다는 응답이 94.3%로 역시 대부분의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보호자)는 자녀의 식사 여부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Ⅳ-3-20). 결식 시 방임 경험은 일년에 1~2회 정도는 3.4%, 2~3개월에 1~2회 정도는 1.1%, 한달에 1~2회 정도는 0.5%, 1주일에 1~2회 이상은 0.7%로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급 중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다른 가족유형에서보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결식 시 방임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전체값 기준 2011년: 12.1%→2015년: 9.0% → 2019년: 5.7%), 중학생의 경우만 전년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6.0%→2019년 7.0%).

표 Ⅳ-3-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4.3	3.4	1.1	0.5	0.7	100.0(9,267)	
성별	남학생	94.6	3.0	1.0	0.4	0.9	100.0(4,814)	7.750
	여학생	94.1	3.7	1.1	0.5	0.5	100.0(4,452)	
학교급	초등학교	95.5	2.6	0.9	0.3	0.7	100.0(2,978)	23.625**
	중학교	93.1	4.5	1.3	0.5	0.7	100.0(2,920)	
	고등학교	94.4	3.1	1.1	0.6	0.8	100.0(3,36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6	3.3	1.0	0.4	0.7	100.0(8,405)	24.173*
	한부모가정	92.0	4.3	2.1	0.7	0.9	100.0(693)	
	조손가정	90.1	7.0	1.1	1.8	0.0	100.0(86)	
	기타	94.8	4.6	0.6	0.0	0.0	100.0(76)	
학업 성적	상	95.6	2.7	0.8	0.3	0.7	100.0(3,274)	44.058***
	중	94.7	3.3	0.9	0.4	0.8	100.0(3,893)	
	하	91.9	4.7	1.8	1.0	0.7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95.6	2.7	0.7	0.3	0.7	100.0(5,328)	93.315***
	중	93.9	3.9	1.2	0.5	0.6	100.0(3,076)	
	하	88.4	5.4	3.1	1.4	1.7	100.0(854)	

*p<.05, **p<.01,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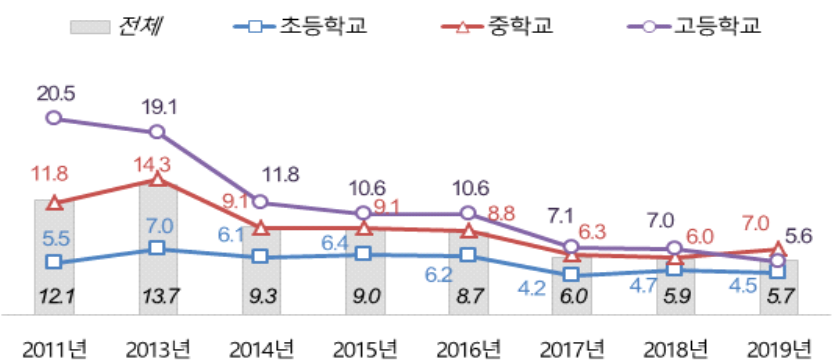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8. 방임_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학교 결석 시 부모님이 신경 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임관련 5개 항목에서 '한번도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98.9%로 나타났다(표 Ⅳ-3-21). 일년에 1~2회 정도는 0.6%, 2~3개월에 1~2회 정도는 0.2%, 한달에 1~2회 정도는 0.1%, 1주일에 1~2회 이상은 0.2%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손가정과 기타가정의 응답자가 다른 가족유형에서보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학교 결석 시 부모의 방임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결석 시 방임 경험률이 매우 낮은 가운데 연도별 추이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 값 기준 미미한 수준이나마 감소 경향을 보였다(2011년: 2.0%→2015년: 1.7%→2016년: 2.1%→2019년: 1.1%).

표 Ⅳ-3-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9	0.6	0.2	0.1	0.2	100.0(9,265)	
성별	남학생	98.7	0.6	0.4	0.1	0.3	100.0(4,815)	16.603**
	여학생	99.2	0.5	0.1	0.1	0.0	100.0(4,450)	
학교급	초등학교	98.8	0.8	0.1	0.1	0.2	100.0(2,976)	10.797
	중학교	99.1	0.4	0.4	0.0	0.2	100.0(2,921)	
	고등학교	98.9	0.6	0.3	0.2	0.1	100.0(3,36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1	0.5	0.2	0.1	0.1	100.0(8,404)	49.024***
	한부모가정	97.2	1.8	0.4	0.0	0.7	100.0(692)	
	조손가정	96.1	1.3	1.5	0.0	1.1	100.0(86)	
	기타	96.9	3.1	0.0	0.0	0.0	100.0(76)	
학업 성적	상	99.2	0.3	0.1	0.2	0.2	100.0(3,273)	17.451*
	중	99.0	0.6	0.3	0.0	0.1	100.0(3,893)	
	하	98.3	0.9	0.4	0.1	0.2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99.1	0.5	0.1	0.1	0.1	100.0(5,327)	13.523
	중	98.9	0.6	0.3	0.0	0.1	100.0(3,076)	
	하	98.1	0.9	0.5	0.2	0.3	100.0(854)	

*p<.05, **p<.01,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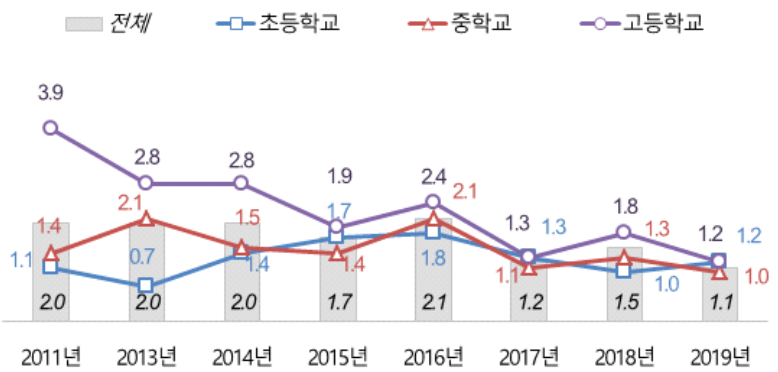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9. 방임_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

①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 건수는 2017년 현황 기준으로 22,367건(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으로, 신고건수의 증가와 함께 크게 증가하였다(표 Ⅳ-3-22). 2006년 5,202건의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는 2011년에 6천 건이 넘었으며, 2014년에는 만 건이, 그리고 2017년에는 2만 건이 넘는 큰 증가폭을 보였다(표 Ⅳ-3-22). 2017년 아동학대사례 22,367건 중 해당연도에 종결된 사례 수는 전체의 48.6%인 10,874건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38).

더불어 아동보호 전문 기관수도 2006년에는 42개소였으나 2013년에는 50개소가 넘었고, 2017년에는 61개소에 달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한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사례 건수를 고려할 때 핵심 인프라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소폭 증가 수준으로 해당 기관과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에 따른 지속적인 시설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표 Ⅳ-3-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6년~2017년)

구분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	아동보호 전문 기관수	
	건수(건)	기관수(개소)	증가수(개소)
2006	5,202	42	4
2007	5,581	43	1
2008	5,578	43	-
2009	5,685	44	1
2010	5,657	44	-
2011	6,058	44	-
2012	6,403	46	2
2013	6,796	50	4
2014	10,027	51	1
2015	11,715	56	5
2016	18,700	59	4
2017	22,367	60*	1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234.

* 주: 2017년 말 기준 60개소로 파악되며, 〈표 Ⅲ-3-23〉의 61개소는 2018년 3월 기준 통계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표 Ⅳ-3-23), 전체 61개소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다음으로 서울이 9개소, 부산, 강원, 경북 지역이 4개소, 대구,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 3개소, 광주, 울산, 제주가 2개소, 대전 1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 대비 서울과 부산, 경기 지역에서 개소수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국의 각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기관수가 부족해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제한된 수의 상담원이 폭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와 아동보호, 사례업무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36]

36) 아동학대 보호에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나 그동안 많은 인력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에 투입되면서 업무과중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는 현장조사 시 경찰이 동행하기도 하나 절반이상인 58.7%가 상담원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경찰 13.5%, 상담원·경찰 22.9%, 상담원·공무원 1.2%, 경찰·공무원 0.2%, 상담원·경찰·공무원 3.4%) 현실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더욱 심각히 고려될 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 정부관계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학대조사 공무원 배치 등 아동보호체계 개선 등에 대해 답변함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를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하는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파이낸셜뉴스, 2019. 09. 21).

표 Ⅳ-3-2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5년	8	3	2	4	1	1	1	11	4	3	3	3	3	4	3	2	56
2016년	8	4	3	3	2	1	1	12	4	3	3	3	3	4	3	2	59
2017년	9	4	3	3	2	1	2	12	4	3	3	3	3	4	3	2	61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265-26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01.01.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03.01.기준).

②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와 부모 및 가족들에게도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및 공적지원 연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표 Ⅳ-3-24.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구분	서비스 건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피해아동	311,599	335,424	492,415	640,378	501,465
학대행위자	63,863	73,817	131,836	193,633	196,458
부모 또는 가족	58,869	79,160	142,535	194,931	186,923
계	434,331	488,401	766,786	1,028,942	884,846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8). 2013~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3년 현황 보고서 p.109, 2014년 현황보고서 p.165, 2015년 현황보고서 p.157, 2016년 현황보고서 p.157, 마지막으로 2017년의 현황보고서에서는 p.161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2017년의 전체 서비스 건수는 884,846건으로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는 501,465건,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는 196,458건, 부모 또는 가족 대상 서비스는 186,923건이었다(표 Ⅳ-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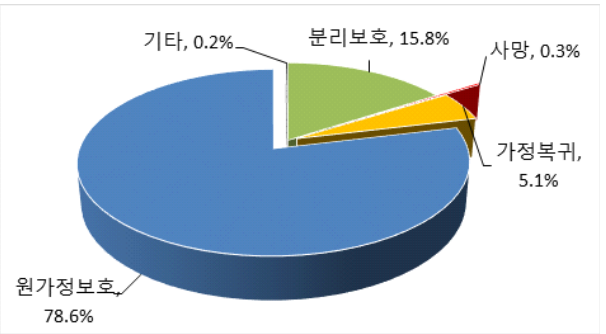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45.

그림 Ⅳ-3-20.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17년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표 Ⅳ-3-25.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연도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기타	가정복귀	계
2011	3,956(65.3)	1,585(26.2)	13(0.2)	91(1.5)	413(6.8)	6,058(100.0)
2012	4,079(63.7)	1,937(30.3)	10(0.2)	0	377(5.9)	6,403(100.0)
2013	4,376(64.4)	1,944(28.6)	22(0.3)	0	454(6.7)	6,796(100.0)
2014	9,969(64.5)	4,256(27.5)	25(0.2)	-	1,208(7.8)	15,458(100.0)
2015	11,305(64.0)	4,485(25.4)	26(0.1)	-	1,846(10.5)	17,662(100.0)
2016	13,573(72.6)	3,730(19.9)	50(0.3)	-	1,347(7.2)	18,700(100.0)
2017	17,589(78.6)	3,527(15.8)	58(0.3)	54(0.2)	1,139(5.1)	22,367(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8). 2011~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1년도 현황 보고서 p.136, 2012년도 현황보고서 p.110. 2013년 현황보고서 p.108, 2014년 현황보고서 p.144, 2015년 현황보고서 p.139, 2016년 현황보고서 p.138, 마지막으로 2017 현황보고서 p.145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는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 기타로 구분되는데 2017년 현황 기준 전체 22,367건 중 원가정 보호는 가장 큰 비중인 78.6%를 나타냈으며, 분리보호는 15.8%,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는 5.1%였다(표 Ⅳ-3-25). 사망 사례는 0.3%에 불과했으나 그 수가 58명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표 Ⅳ-3-25),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대응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학대피해아동의 최종 조치결과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2011년 이후로 좀 더 살펴보면(그림 Ⅳ-3-21), 원가정 보호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16년부터 더욱 뚜렷히 나타났다(2015년 64.0%→2016년 72.6%→2017년 78.6%). 이에 비해 분리보호와 가정복귀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분리 보호의 감소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2012년 30.3%→2013년 28.6%→2014년 27.5%→2015년 25.4%→2016년 19.9%→2017년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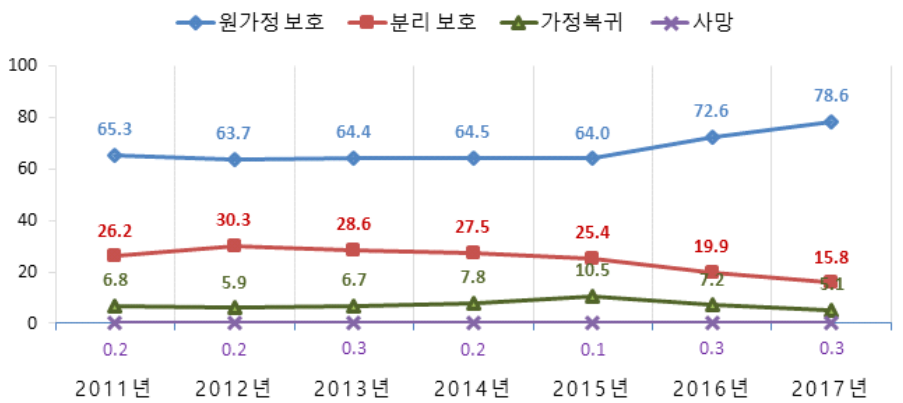

* 주: 본 그림은 표 Ⅳ-3-25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Ⅳ-3-21.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연도별 추이)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학대피해아동보호 현황에서 분리보호된 사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표 Ⅳ-3-26〉과 같다. 분리보호 사례 총 3,527건 중 아동양육시설 입소를 의미하는 장기보호가 36.1%로 가장 많았고, 유사한 비율로 친족(친인척)보호가 34.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을 받게 되는 일시보호 비율이 23.4%였으며, 연고자에 의한 보호 3.1%, 병원입원 1.7%, 가정위탁 0.8%로,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 시 양육시설에서의 장기보호나 친족보호가 대부분이며, 가정위탁의 경우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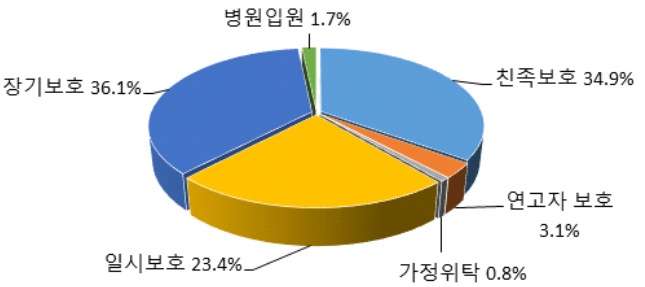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45.

그림 Ⅳ-3-22. 사례종결 중 분리보호 세부 조치사항별 결과

표 Ⅳ-3-26. 사례종결 중 분리보호 세부 조치사항별 결과

구분	친족(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사례 건수	1,230	110	29	824	1,274	60	3,527
비율(%)	34.9	3.1	0.8	23.4	36.1	1.7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45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는 〈표 Ⅳ-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22,367개 사례 중 지속관찰이 62.9%로 가장 많았다. 고소·고발·사건처리도 32.6%로 상당수 학대행위자에 대해 법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행방불명, 수감, 사망 등 학대피해 아동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2.3%, 학대 피해 아동과 분리된 경우는 2.2%로 나타났다.

표 Ⅳ-3-27.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구분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총계
사례 건수	14,075	484	7,297	511	22,367
비율(%)	62.9	2.2	32.6	2.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49.

3) 소결

먼저 '폭력 및 학대' 대분류 중 첫 번째 중분류인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지표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UN의 아동권리위원회가 '폭력'을 아동권리보고서 작성 지침에 대분류로 지정한 이후 대한민국은 아동권리위원회로 부터 늘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의 '4대악'으로 간주될 만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지금까지 정부의 현안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가정, 학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만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10명 중 3명이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4명 중 1명이 체벌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아직도 선생님으로부터 5명 중 1명에 가깝게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을 당하고,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학생 간에는 대체로 초등학생 사이에 욕설이나 따돌림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다. 물리적 폭력인 구타나 폭행에 있어서도 초등학생(81.4%)이 중학생(96.2%)이나 고등학생(98.3%)보다 5명 중 1명의 비율로 폭행과 구타의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 밖에 조사결과를 보면 조손가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대체로 폭력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고 있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체벌이 비록 아동권리위원회에 권고에 따라 금지되었지만 아직 폭력에 가까운 심한 훈육과 같은 간접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한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이 인정되고 있어 보다 현장의 상황에 따른

정밀한 법제도 개선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부모들과 합의를 이유로 체벌을 유지하려는 인권침해는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민관에서의 대처와 가정 내 체벌금지 및 대안적 훈육방법을 찾아내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폭력 및 학대' 대분류 중 두 번째 중분류인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 해당하는 각 지표들에 따른 실태검토 및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에 해당하는 지표들 중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8)를 통해 살펴보았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34,169건으로 90.5%(30,923건)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례접수 경로는 112경찰신고를 통한 접수 건수가 48.8%인 16,6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접수 건수는 32.3%인 11,038건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76.8%(17,17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그 중 친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95.4%였다. 아동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21.1%, 신체학대 14.7%, 방임 12.5%, 성적학대 3.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큰 폭은 아니나 정서학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성 학대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방임과 관련해서는 심야시간 부모부재 및 방임 경험비율은 56.8%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위생적이지 않은 의복과 침구사용 경험률은 7.5%, 결식 시 부모 무관심 경험은 5.7%, 질병발생 시 부모의 방치는 4.2%, 학교 결석 시 부모의 무관심은 1.1%로 나타났다. 모든 방임 유형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결식의 경우는 조손가정 비율 높음)에서 다른 유형 가정에서보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집단에서 전반적인 방임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대체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에 해당하는 지표들 중 보호건수와 인프라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건수는 2017년 말 기준 22,367건이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61개소로 파악되었다. 아동 보호건수는 2006년 5,202건에서 2017년 22,367건으로 증가폭이 상당히 큼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할 인프라 구축 확대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006년 42개소에서 2017년 61개소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2017년 학대피해 아동 보호조치 결과 22,367건 중 원가정 보호는 가장 큰 비중인 78.6%로 나타났으며, 분리보호는 15.8%, (초기 분리보호 후)가정 복귀는 5.1%였다. 사망 사례는 0.3%에 불과했으나 그 수가 58명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대응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분리보호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소를 의미하는 장기보호가 36.1%로 가장 많았고, 친족(친인척)보호가 34.9%, 일시보호 비율 23.4%, 연고자에 의한 보호 3.1%, 병원입원 1.7%, 가정위탁 0.8%로,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 시 양육시설에서의 장기보호나 친족보호가 대부분이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 지속관찰이 62.9%, 고소·고발·사건처리, 32.6%, 행방불명 등으로 아동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2.3%, 학대 피해 아동과 분리된 경우는 2.2%였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부모와의 관계

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대분류 중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의 '4-1-1. 부모와의 관계' 지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자료원으로 하여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부모와의 저녁식사 횟수'등을 지표항목으로 살펴보았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6년도 전문가의견조사에서 이 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더 적절한 자료원의 필요성에 따라 지표항목을 변경하게 되었다. 변경된 지표항목 및 자료원은 통계청 승인통계인 사회조사(제101018호)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로 이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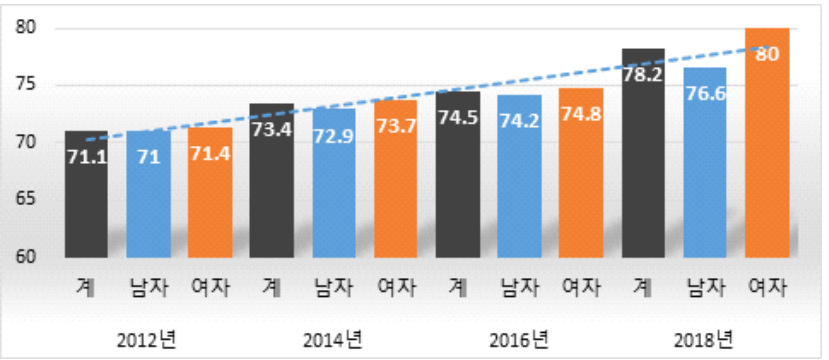

* 긍정응답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 응답률을 합산한 값 기준

* 출처: 통계청(2012, 2014, 2016, 2018).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3R&conn_path=I2 (2019.09.10.)

그림 Ⅳ-4-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세~19세) 연도별 추이

통계청 사회조사는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으며(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조사대상이 전국의 만 13세 이상 인구를 표본으로 하는 가구조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3세부터 19세까지의 조사결과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4-1〉과 같이 긍정 응답 기준(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모두 70%가 넘어 13세~19세 청소년들 중 2/3 정도는 부모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자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남자청소년들보다 다소 높았으며(2018년 기준 매우만족+약간만족 비율 남자: 76.6%, 여자 80.0%),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전체 긍정 응답률이 2012년 71.1%에서 2018년 78.2%로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표 Ⅳ-4-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세~19세)(2012년-2018년)

(단위 : %)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2012년	계	34.6	36.5	23.2	4.5	1.2	100.0
	남자	33.8	37.2	23.4	4.3	1.3	100.0
	여자	35.6	35.8	22.9	4.6	1.1	100.0
2014년	계	36.6	36.8	22.8	2.9	1.0	100.0
	남자	37.1	35.8	23.1	2.5	1.5	100.0
	여자	36.0	37.7	22.6	3.2	0.5	100.0
2016년	계	39.0	35.5	21.8	2.7	1.0	100.0
	남자	39.2	35.0	22.3	2.4	1.1	100.0
	여자	38.7	36.1	21.3	3.1	0.8	100.0
2018년	계	42.3	35.9	18.4	2.9	0.5	100.0
	남자	42.1	34.5	19.9	2.9	0.7	100.0
	여자	42.6	37.4	16.8	3.0	0.2	100.0

* 출처: 통계청(2012, 2014, 2016, 2018).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3R&conn_path=I2(2019.09.10.)

(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①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아동이 신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부모의 지도와 책임을 대신하여 어린 아동의 성장·발달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어린이집 1개소 당 그리고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가. 보육시설 설립주체별 설치 현황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반적인 시설 수를 먼저 연도별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환경적인 변화속에서 아동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가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 26,903개소의 보육시설은 2013년에 43,770개소로 증가하였다(표 Ⅳ-4-2). 2014년에는 43,742개소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18b) 2018년 현재 39,171개소로 최고치였던 2013년도 통계치에서 약 5천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2).

그러나 이러한 전체 보육시설 수의 감소 경향은 속에서 운영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설립주체에 따라 아동보육시설은 국·공립 운영 시설, 각종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운영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보육시설, 보호자들이 결성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모협동 운영시설, 직장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민간 시설로 분류된다(김경준 외, 2014: 363). 보육시설의 설립주체가 국공립인지, 또는 민간인지, 그리고 민간 중에서도 법인/단체인지, 가정인지 등은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특히 국공립의 경우 국가의 체계적 지원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호를 받는다.

표 Ⅳ-4-2.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04년-2018년)

(단위 : 개소, 명)

구분·연도 \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단위: 개소)	2004	1,349	1,537	966	12,225	10,583	미분류	243	26,903
	2005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39,842
	2012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42,527
	2013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43,770
	2014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43,742
	2015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2016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41,084
	2017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40,238
	2018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39,171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단위: 명)	2004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930,252
	2005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989,390
	2006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40,361
	2007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99,933
	2008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135,502
	200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175,049
	20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279,910
	2011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348,729
	2012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487,361
	2013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2014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2015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2016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2017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2018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7b). 2017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8b). 2018 보육통계. pp.2-3.

이는 연도별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Ⅳ-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시설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공립 시설만이 유일하게 개소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10년 전인 2009년 1,917개소에서 2018년 3,602개소로 큰 폭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약 500여개 시설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유일하게 시설 수가 증가한 설립주체는 직장 보육시설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2009년 370개→ 2018년 1,111개), 2017년 대비 약 58개 시설이 증설되었다. 이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설립주체 시설 개소 수는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시설 이용 아동수를 통해 이용현황을 살펴보면(표 Ⅳ-4-2) 전반적인 아동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용 아동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04년 930,252명 → 2014년 1,496,671명). 그러나 계속 증가하던 시설 이용 아동수는 201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약간씩 감소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34,501명이 감소한 1,415,742명으로 나타났다.

나. 어린이집 이용률

일반적인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통해 살펴보면(표 Ⅳ-4-3), 2013년 이후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이용률의 경우 전년대비 약 1%정도만이 감소한 81.7%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가정 어린이집이 87.9%, 국공립 설립 어린이집이 87.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 어린이집 80.2%, 부모협동 80.0%, 직장 어린이집 76.9%,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75.2%였으며,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72.0%로 가장 낮았다. 모든 유형의 설립주체 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대비 1~3%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예외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에서만 0.8%의 근소한 증가를 나타냈다.

표 Ⅳ-4-3.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4년-2018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3년	정원	170,050	139,669	62,820	937,632	423,533	3,972	44,783	1,782,459
	현원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이용률	90.8	77.9	82.3	82.1	86.0	81.2	77.0	83.4
2014년	정원	179,939	137,017	61,483	946,519	419,352	4,682	51,667	1,800,659
	현원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이용률	88.5	76.3	80.0	81.9	87.1	80.6	76.0	83.1
2015년	정원	188,661	135,741	60,509	942,103	399,649	4,913	59,245	1,790,821
	현원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이용률	87.9	73.5	77.4	79.4	86.1	84.0	75.6	81.1
2016년	정원	197,365	134,189	58,511	927,517	374,907	5,052	69,683	1,767,224
	현원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이용률	89.1	73.9	77.5	80.4	87.6	83.9	75.1	82.1
2017년	정원	209,727	131,820	56,514	915,855	360,397	5,506	76,784	1,756,603
	현원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이용률	89.1	73.4	76.8	80.6	89.2	83.2	76.1	82.6
2018년	정원	230,508	128,810	54,900	886,818	344,412	5,451	81,425	1,732,324
	현원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이용률	87.1	72.0	75.2	80.2	87.9	80.0	76.9	81.7

*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p.15,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7b). 2017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8b). 2018 보육통계. p.5.

다.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맞벌이 가정 등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로서의 어린이집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 시설의 서비스 수준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표 Ⅳ-4-4),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는 2013년에는 34명, 2016년 35.3명, 2017년과 2018년에는 36명 정도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13년 4.9명, 2014년 4.8명, 2015년과 2016년에는 4.5명, 2017년 4,4명,

2018년에는 4.2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18년 실태를 중심으로 시설 설립주체별로 좀 더 살펴보면(표 Ⅳ-4-4), 시설 특성 및 규모와 종사자 수에 따라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수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개소 당 어린이 수는 67.4명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16.2명 수준이었다(2018년 기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표 Ⅳ-4-4), 대부분의 설립 주체별로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수가 감소한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에서만 약간 증가하였다(2017년 55.5명, 2018년 56.4명). 그리고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의 경우는 모든 설립주체별로 아동수가 감소하여,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게는 3명(가정 어린이집)에서 5명(법인, 단체 등) 수준으로 5명은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4.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2014년-2018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어린이집 1개당 아동 수[37]	2013년	66.0	76.0	60.0	52.0	15.0	25.0	56.0	34.0
	2014년	64.0	73.6	57.7	52.3	15.7	25.3	56.7	34.2
	2015년	63.0	70.5	56.2	51.1	15.6	26.6	57.0	34.2
	2016년	61.5	70.7	56.4	52.1	16.0	27.0	55.2	35.3
	2017년	59.2	69.5	56.3	52.6	16.4	27.5	55.5	36.0
	2018년	55.7	67.4	55.2	52.6	16.2	26.6	56.4	36.1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2013년	5.8	5.8	5.9	5.7	3.5	4.4	4.4	4.9
	2014년	5.5	5.5	5.6	5.5	3.5	4.4	4.2	4.8
	2015년	5.4	5.3	5.4	5.1	3.3	4.3	4.1	4.5
	2016년	5.3	5.2	5.4	5.1	3.2	4.3	4.0	4.5
	2017년	5.2	5.1	5.3	5.0	3.1	4.2	3.9	4.4
	2018년	4.9	4.8	5.0	4.9	3.0	4.1	3.8	4.2

*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p.4,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7b). 2017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8b). 2018 보육통계. p.5.

37) 2013~2016년 모두 현원기준으로 여기에는 2015년까지는 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가 포함되며, 2016년은 종일, 맞춤, 야간, 24시간, 방과후가 포함된다.

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사회·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필요로 한다. 방과후 시간동안 아동·청소년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할 뿐 아니라 구조화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지자체 공동운영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파악을 위해 각 사업의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가. 방과후학교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59.3%, 중학교 32.1%, 고등학교 52.6%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 전체 60.2%의 참여율을 보인 이후에 점차 감소 경향을 보여 2018년의 전체 참여율은 51%로 나타났다(표 Ⅳ-4-5).

표 Ⅳ-4-5.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2010년-2018년)[1)]

(단위 : %, 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참여율[2)]	비용[3)]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2010	45.0	1.3	50.0	0.7	79.0	2.3	55.6	1.4
2011	50.4	1.6	48.3	0.6	74.7	2.2	56.6	1.5
2012	52.6	1.5	49.4	0.4	73.0	1.8	57.6	1.3
2013	58.2	2.0	50.5	0.4	72.3	2.0	60.2	1.5
2014	60.9	2.3	45.3	0.4	70.1	1.9	59.3	1.7
2015	60.2	2.2	40.8	0.4	67.2	1.7	57.2	1.6
2016	58.9	2.1	35.0	0.3	68.3	1.8	55.8	1.6
2017	60.4	2.2	37.2	0.3	59.8	1.3	54.6	2.2
2018	59.3	2.1	32.1	0.3	52.6	1.1	51.0	1.4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04.18). 보도자료: 2017 청소년 통계. p.23.
통계청(2018.03.15). 보도자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2019.0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 KOSIS (2010~2018)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 주: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3)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이러한 참여율 감소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졌는데(표 Ⅳ-4-5), 201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1.1%, 중학교는 5.1% 감소한데 비해, 고등학교의 참여율은 7.2%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감소 경향에도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감소폭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2018년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표 Ⅳ-4-6), 전체적으로 교과 비율은 46.1%, 특기 비율은 53.9%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적으로 교과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특기 비율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과 프로그램 비율이 증가하고, 특기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 비율이 초등학교는 23.1%인데 비해, 중학교는 49.2%, 고등학교는 85.9%였으나, 특기 비율은 이와는 반대로 초등학교 76.9%, 중학교 50.8%, 고등학교 14.1%를 나타냈다.

표 Ⅳ-4-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2018년)

		교과		특기		계
		수(개)	비율(%)	수(개)	비율(%)	수(개)
2010		338,891	68.5	156,074	31.5	494,965
2011		355,158	66.9	175,492	33.1	530,650
2012		367,025	60.9	235,605	39.1	602,630
2013		323,888	56.8	246,433	43.2	570,321
2014		294,396	54.7	243,712	45.3	538,108
2015		255,079	53.6	220,611	46.4	475,690
2016		238,916	52.7	214,475	47.3	453,391
2017		210,488	50.0	210,487	50.0	420,975
2018	초	46,198	23.1	153,977	76.9	200,175
	중	25,600	49.2	26,393	50.8	51,993
	고	96,109	85.9	15,822	14.1	111,931
	계	167,907	46.1	196,192	53.9	364,099

* 출처: 교육부(2017).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2018a).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2018c).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방과후학교 서비스의 질적 수준 파악을 위하여 이용 학생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림 Ⅳ-4-2]와 같다. 2018년도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82.9%였으며,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87.2%, 중학생은 82.2%, 고등학생은 71.9%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방과후학교의 만족도는 2016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초, 중, 고 모든 학교급별로 대략 2% 내외의 감소율을 보임에 따라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80%가 넘어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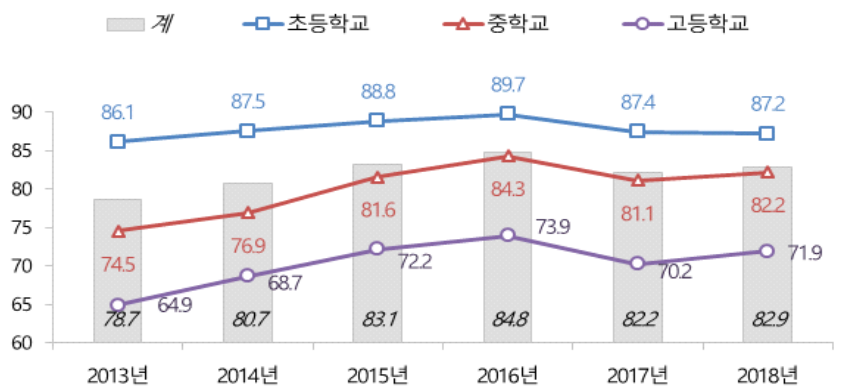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18c).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3.

그림 Ⅳ-4-2. 방과후학교 교급별 학생만족도(연도별 추이)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보건복지부가 운영 주체인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시간 지역사회 내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기관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법제화되어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한 2004년 895개소에서 2018년 현재 4,211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Ⅳ-4-3). 이들 시설은 17개 시·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경기지역이 789개소(18.7%)로 가장 많은 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 454개소(10.8%), 전남 378개소(9.0%), 광주 308개소(7.3%), 전북 285개소(6.8%), 경북 271개소(6.4%), 경남 263개소(6.2%), 부산 212개소(5.0%), 대구 200개소(4.8%), 충북 184개소(4.4%), 인천 178개소(4.2개소), 강원 172개소(4.1%), 대전 144개소(3.4%), 제주 66개소(1.6%). 울산 56개소(1.3%), 세종 13개소(0.3%)순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d: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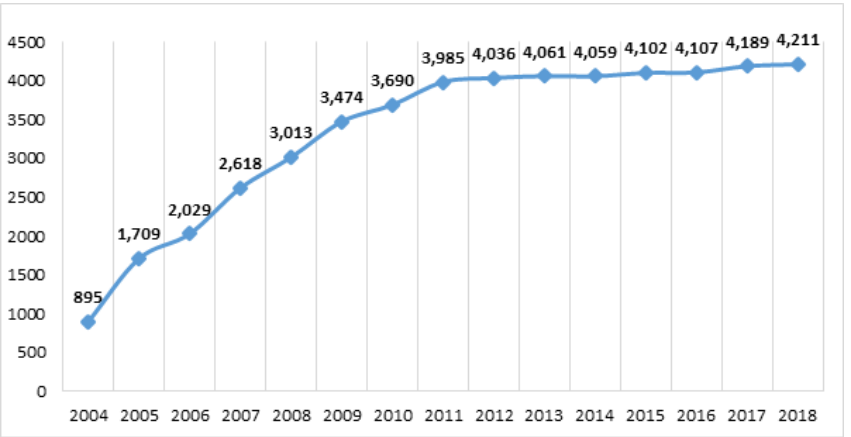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9d).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7.

그림 Ⅳ-4-3.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현황(2004~2018)

이용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표 Ⅳ-4-7), 2004년 기준 23,347명이었던 이용자는 2018년 109,610명으로 4.7배의 이용자 성장 속도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연인원 이용자의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취학아동이 1,798명,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43,438명,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44,063명, 중학생이 16,321명, 고등학생이 3,902명, 탈학교 이용자가 8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Ⅳ-4-7). 대부분 초등학생이 주 이용자이긴 하나 중·고등학생 이용자도 2만명이 넘는 18.4% 정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7.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04년-2018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센터 개소수	연 인원(명)							
		합계	미취학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생	기타[주]
				저학년	고학년				
2004	895	23,347	1,564	18,348		2,880	555	-	-
2005	1,709	43,749	3,023	34,617		5,129	958	-	22
2006	2,029	58,851	4,133	25,149	21,426	6,846	1,095	103	99
2007	2,618	76,229	4,127	32,867	28,177	9,224	1,413	104	317
2008	3,013	87,291	4,585	35,972	33,163	11,380	1,862	133	196
2009	3,474	97,926	4,838	39,053	38,032	13,600	2,072	331	-
2010	3,690	100,233	4,376	37,865	40,233	15,075	2,346	338	-
2011	3,985	104,982	4,578	37,407	42,324	17,374	3,014	285	-
2012	4,036	108,357	4,028	38,030	42,396	20,017	3,663	223	-
2013	4,061	109,066	3,714	39,293	41,025	20,817	4,006	211	-
2014	4,059	108,936	3,533	40,425	40,662	20,121	4,035	160	-
2015	4,102	109,661	3,133	42,267	40,113	19,566	4,418	164	-
2016	4,107	106,668	1,872	41,750	40,390	18,156	4,377	123	-
2017	4,189	108,578	1,111	41,970	42,736	17,563	4,185	117	896
2018	4,211	109,610	1,798	43,438	44,063	16,321	3,902	88	-

* 출처: 보건복지부(2017e).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2016년 12월 기준). p. ⅲ, p.ⅷ.
보건복지부(2019d).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5, pp.44-45

* 주: 2004년 탈학교/기타, 2005년 탈학교, 2009년부터 기타는 별도 조사되지 않음.

지역아동센터의 중점 프로그램은 크게,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Ⅳ-4-4).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등이 해당되는 보호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센터의 98%에서 운영 중이며, 교육프로그램 중 적성교육(82.3%)을 제외하고 전국 센터의 96% 이상이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d: 27). 또한 자치회의/동아리활동, 관람·견학, 캠프·여행 등의 문화 프로그램은 전국 센터의 97% 이상이(공연은

80.3%), 연고자상담, 아동상담 등의 정서지원은 99% 이상의 센터에서(보호자 교육은 88.4%), 또 행사·모임, 기관홍보, 인적/기관 연계 등은 92% 이상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행사·모임은 89.3%)(보건복지부, 2019d: 27).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동아리 활동 관람·견학 캠프·여행 공연 행사(문화, 체육)	연고자상담 아동상담 보호자교육	행사·모임 기관홍보 인적연계 기관연계

* 출처: 보건복지부(2019d).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27.

그림 Ⅳ-4-4. 지역아동센터 중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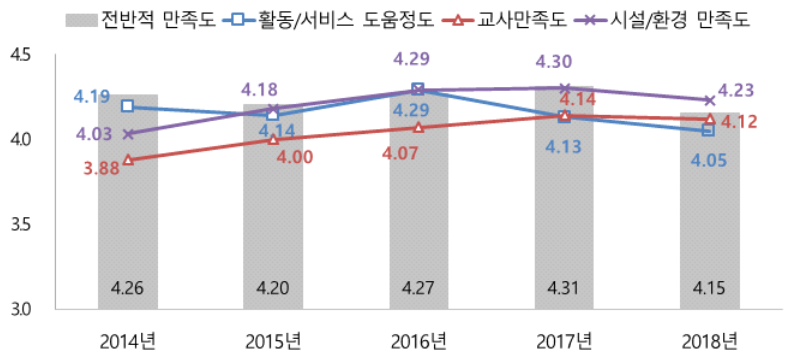

* 출처: 김희진, 황진구, 임희진, 정선욱, 정윤미(201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p.272, pp.278-283.

* 주: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수치

그림 Ⅳ-4-5.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제공 수준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38]의 조사항목

3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주관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대상 종단조사로서 여기에 제시된 이용 만족도는 2기패널(초4~중2)을 대상으로 한 2014년~2018년 조사결과이다.

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전반적 만족도, 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 및 서비스의 도움 정도, 교사 및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그림 Ⅲ-4-5), 2018년 기준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5점, 활동/서비스 도움 정도 4.05점, 교사 만족도 4.12점, 시설/환경 만족도 4.23점으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연도별 추이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돌봄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초4~중3)에게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적인 학습·복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18c: 195).

표 Ⅳ-4-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5년-2018년)

구분	개소	인원(명)	연인원(명)
2005	46	2,350	225,600
2006	100	4,200	1,260,000
2007	151	6,300	1,890,600
2008	185	7,980	2,274,300
2009	178	7,560	2,177,280
2010	161	6,672	1,754,736
2011	200	8,200	2,148,400
2012	200	8,060	2,095,600
2013	200	8,200	2,205,800
2014	200	8,091	1,962,492
2015	244	9,490	2,325,050
2016	250	9,745	2,368,035
2017	250	9,773	2,345,520
2018	260	10,265	-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Ⅵ: 총괄보고서. p.273.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pp.151-153.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167-169.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p.195-196

2005년 기준 46개소에 불과했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8년에 전국 17개 시·도 26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시설 이용 청소년이 연인원 225,600명이었으나,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에는 2,345,520명으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표 Ⅳ-4-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Ⅳ-4-9), 전체 만족도 기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84.2%로 전년대비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영역은 주중체험강사 만족도(85.8%)로 시설환경 만족도(85.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그중 낮은 만족도를 보인 영역은 프로그램 만족도(82.5%)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80%가 넘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영역별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프로그램, 지도자,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큰 폭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시설환경 만족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84.3% → 2018년: 85.4%).

표 Ⅳ-4-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10~2018)

연도 / 만족도 영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만족도	83.4	83.5	83.8	83.9	84.2	84.4	85.1	82.5	84.2
프로그램 만족도	84.2	84.1	84.4	84.3	84.4	84.4	85.3	84.0	82.5
지도자 만족도	84.0	83.9	84.0	85.5	85.2	85.6	86.3	84.0	83.8
교과목강사 만족도	83.2	83.3	82.8	85.0	85.2	85.6	86.8	83.1	83.2
주중체험강사 만족도	86.4	86.7	87.6	88.2	88.0	88.4	89.9	86.9	85.8
시설환경 만족도	82.0	82.3	83.6	85.1	84.2	85.2	87.6	84.3	85.4
급식 만족도	80.4	81.1	80.0	74.9	77.8	76.8	74.4	74.7	-

* 출처: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2010), 양계민, 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 김영지, 김정주, 정은주(2015), 양계민(2016), 서정아, 연보라(2017), 양계민(2018)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사업성과 및 효과·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를 정리하여 표로 재구성.

* 주: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2018년에는 급식 만족도 조사하지 않았음.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1) 입양률

①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 21조에 따르면 아동이 가정에서 일시적, 영구적으로 양육·보호받지 못할 경우 대체조치로서 입양이나 위탁양육 등이 필요하며, 입양될 때에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관계 당국이 허가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다(UNCRC, 1996). 또한 출생국가에서 불가피하게 양육될 수 없는 사안일 때에만 국제입양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UNCRC,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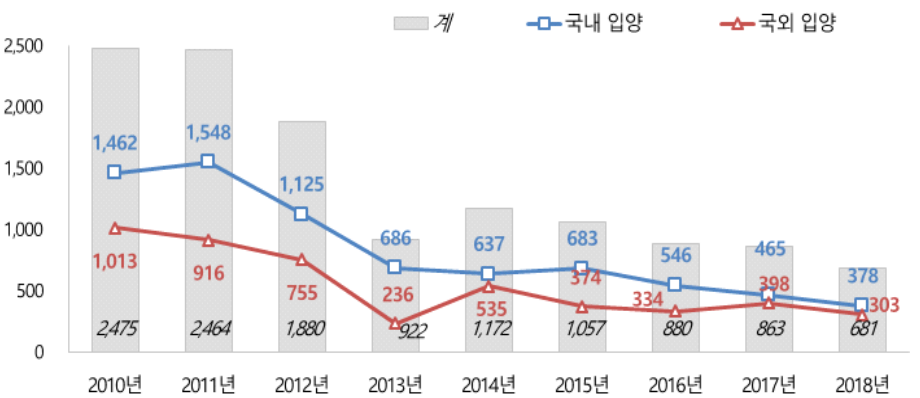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8.5.17). 보도자료: 「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해당표를 그래프로 재구성. 단위/명

그림 Ⅳ-4-6.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그림 Ⅳ-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외입양은 2014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뿐 아니라, 입양특례법 개정과 같은 국가의 역할 강조와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그리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한 민간주도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39] 그러나 국내입양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2018년 기준 국외입양은 303명, 국내입양은 378명으로 국내·외 입양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입양을 위해 정부에서도 입양아동 양육수당(장애입양아동의 경우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19a), 국내입양을 촉진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40], 입양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원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Ⅳ-4-10.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단위 : 명(%))

구분	계	국내	국외
계	246,480	79,634(32.3%)	166,846(67.7%)
2007년 이전	230,635	70,327(30.2%)	160,308(69.8%)
2008	2,556	1,306(51.1)	1,250(48.9)
2009	2,439	1,314(53.9)	1,125(46.1)
2010	2,475	1,462(59.1)	1,013(40.9)
2011	2,464	1,548(62.8)	916(37.2)
2012	1,880	1,125(59.8)	755(40.2)
2013	922	686(74.4)	236(25.6)
2014	1,172	637(54.4)	535(45.6)
2015	1,057	683(64.6)	374(35.4)
2016	880	546(62.0)	334(38.0)
2017	863	465(53.9%)	398(46.1%)
2018	681	378(55.5%)	303(44.4%)

* 출처: 보건복지부(2018.5.17). 보도자료:「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통계청 KOSIS. 국내외 입양 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39) 그러나 국제 입양 시 아동의 인권보호 및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가입 비준안이 아직 국회계류 중인 상태로 있다.

40) 일례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은 여전히 월 15만원 수준으로 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25).

② 입양 사후관리

입양특례법 제25조 1항과 입양특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은 각각 국내입양아동과 국외 입양아동에 대해, 입양 성립 이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9). 입양아동의 입양가족과의 적응과 파양 예방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입양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내입양의 경우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 지원에, 그리고 국외입양의 경우 적응과 함께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9).

표 Ⅳ-4-11. 국내·외 입양 사후서비스

구분	국내·외 입양 사후서비스 내용
국내입양 사후서비스	○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25조 1항 ○ 목적: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 지원 ○ 내용: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1년간은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입양 신청·결연·아동 인도 시, 입양가정에 입양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목적, 방법, 횟수에 대해 충분히 설명 -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 입양가정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양친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 -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확인) 양부모가 입양특례법 상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은 양부모로부터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수령 - (확인 내용) 아동의 적응상태/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성 확인, 양부모 양육 상담 - 사후관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1년 내 4회 이상 사후관리보고서 작성(4회중 최소한 2번의 가정방문 필수)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목적: 국외입양인의 적응과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기 위함(입양기관 및 단체, 입양사후서비스 전문기관, 중앙입양원에서 제공) ○ 내용: 양자와 양친 간 적응상태 조사 및 보고·국적취득 지원.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외입양인 상담 등의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 가족찾기 서비스 제공 등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9). 2019 입양실무매뉴얼. p.34, pp.52-53 내용 발췌 및 요약

입양관련 사후서비스는 그동안 4개 부처(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에서 '국외입양인 사후 서비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왔다가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보다 통합적으로 체계화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9). 2012년에는 사후서비스 사업 대상이 국외입양인에서 국내입양인까지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중앙입양원 위탁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사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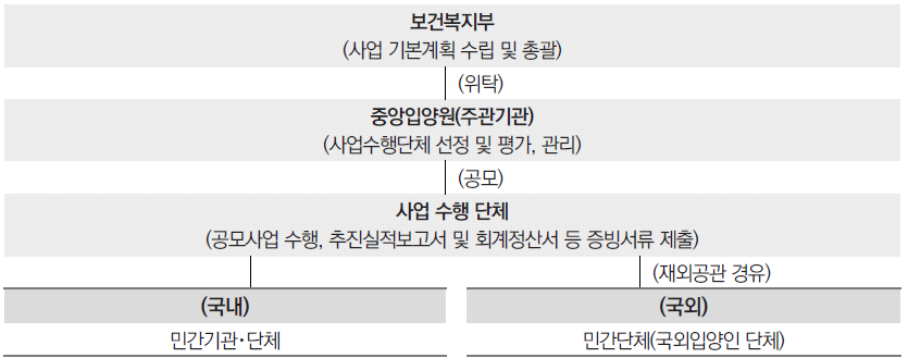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9). 2019 입양실무매뉴얼. p.53

그림 Ⅳ-4-7.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체계

국내·외 입양인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국외 현지 입양인 및 가족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체험, 입양인 및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한국어 교육,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등의 사업을, 국외 입양인을 위해서는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모국생활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문입양인 일시 거주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표 Ⅳ-4-12). 국내 입양인을 위해서는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연장아 등 특수욕구 입양가족 지원,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지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4-12〉와 같다.

표 Ⅳ-4-12.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

대상	구분	내용
국외 현지 입양인 및 가족 (재외공관 경유)	한국 문화 체험	한국음식, 명절, 전통음악, 태권도 등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입양인 및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해외 거주 국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현지 사회 적응력 제고
	한국어 교육	한국어 습득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을 돕기 위한 단체 지원
국내 단체 (국외 입양인)	모국 방문	연고지 방문 및 문화체험 등 입양인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사업
	모국어 연수	한국어 습득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
	모국 생활 지원	한국에 중장기 체류를 원하는 국외입양인의 안정적 적응을 돕는 사업(한국 국적 회복, 취업, 법률 및 재정관련 안내, 사회서비스 등)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관련 테마를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
	방문입양인 일시 거주 지원	모국 체류를 희망하는 입양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
	기타 행사지원 등	국외입양인 관련 국제행사 등 지원 사업
국내 단체 (국내 입양인)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양가족간 유대감 형성 및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입양가정에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연장아 등 특수욕구 입양가족 지원	연장아동(만 1세 이상 아동)등 특수욕구가 있는 입양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국내입양인 및 입양 가족 간 지역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상호지지를 돕기 위한 사업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지원	국내 입양가정 중 상호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 대상 지원 사업(사례관리 등)
	기타 행사지원 등	기타 국내입양인 관련 행사 지원 사업 등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9). 2019 입양실무매뉴얼. p.55.

또한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ACMS)을 통하여 입양아동 및 가족 정보를 체계적으로 DB구축하여 입양정보공개 및 가족 찾기 등 국내·외 사후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9). 입양정보 DB에는

입양인과 친생부모 및 입양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아동고유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와 신체적 특징,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9). 이외에도 입양기관들은 다양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Ⅳ-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 치료 지원, 입양아동 자아성장 지원서비스, 음악을 통한 아동 발달 지원 및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류 지원, 입양가족간 자조모임, 사후상담 및 사후방문, 사례관리, 친생부모 찾기 및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Ⅳ-4-13. 국내 입양 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사업명	입양기관 주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입양부모교육	• 자녀양육에 대한 주제별 강의 • 부모 참여형 교육 • 라이프 및 셀프 코칭 • 집단교육 및 상담
입양아동 치료 지원	• 심리치료 검사 • 집단상담 • 심리·신체발달 치료비 지원
입양아동 자아성장 지원서비스	• 집단 예술치료 • 미술·놀이치료 • 연기, 노래 등을 통한 자기감정 표현 • 공연
유리드믹스	• 음악을 통한 영아의 사물인지와 오감발달 •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류, 애착관계 극대화
자조모임	• 입양가족 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교류 • 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 멘토, 멘티 형성으로 현실적인 지지관계 형성 •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야유회 등
사후상담 및 사후방문	• 입양 삼자간의 내·외적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입양 후 가족과 아동의 애착형성 및 아동의 신체, 심리, 정서적 적응 상태 파악 등을 위한 가정방문 실시
사례관리	• 문제를 가진 국내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위해 사례관리 실시
친생부모 찾기 및 기타 사후서비스	• 친생부모 찾기 및 입양확인서 등의 서류업무 • 입양배경 정보 상담 등 사후상담서비스
친생부모 관리	• 입양 후 친생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 개별상담, 전문상담, 수시전화상담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9). 2019 입양실무매뉴얼. p.36.

(2) 대안양육 비율

① 보호대상아동 현황

아동복지법 제3조 4항에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Ⅳ-4-8]과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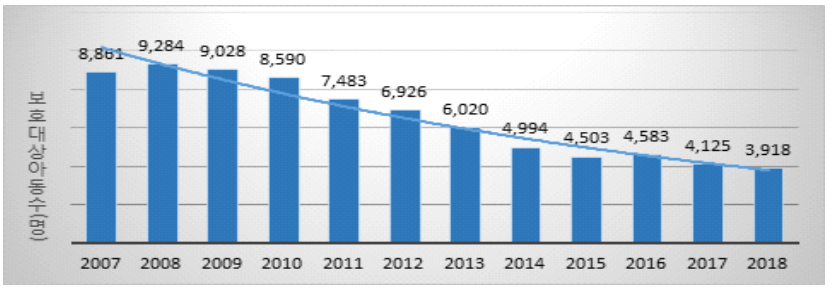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2018g).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9624&page=1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 원출처: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사례는 제외

그림 Ⅳ-4-8.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2007년~2018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와 관련하여 빈곤 및 학대, 비행이나 가출, 미혼부모·혼외자, 기아·유기, 미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Ⅳ-4-14〉와 같다. 먼저 가장 최근 현황인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호대상아동은 3,918명으로 전년대비 207명이 감소하였으며,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은 2,726명, 비행·가출인 경우는 231명, 미혼부모·혼외자인 아동은 623명, 기아·유기로 인한 보호대상인 경우는 320명, 미아는 18명으로 나타났다(표 Ⅳ-4-14). 전체적으로 보호대상아동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아·유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만이

전년대비 59명 증가하였으며(2017년: 261명→2018년 320명), 2018년 기준 기아·유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수는 비슷한 수준이었던 2015년의 321명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14).

표 Ⅳ-4-14.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07년-2018년)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8,861	9,284	9,028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83	4,125	3,918
빈곤·실직·학대[1)]	5,354	5,876	4,994	4,613	3,928	3,944	3,668	2,965	2,866	3,139	2,778	2,726
비행·가출[2)]	748	706	707	772	741	708	512	508	360	314	227	231
미혼부모·혼외자	2,417	2,349	3,070	2,084	2,515	1,989	1,534	1,226	930	855	847	623
기아·유기	305	202	222	191	218	235	285	282	321	264	261	320
미아	37	151	35	210	81	50	21	13	26	11	12	18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2018g).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9624&page=1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 원출처: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학대, 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포함, 2) 비행, 가출, 부랑 포함
3) 표 작성기간 및 대상 : 당해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당해연도의 12.31. 현재 아동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료 작성
4) 2016. 2017 자료는 최근 수정사항을 반영, 업데이트하였으며,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사례는 제외함.

〈표 Ⅳ-4-15〉는 이들 보호대상아동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호유형별로(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장) 보여주고 있다. 2018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3,918명 중 62.5%인 2,449명의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약 24%인 937명의 아동은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비율은 매우 낮았는데, 4.4%인 174명에 그쳤으며, 소년소녀가정 유형은 1명으로 파악되었다. 보호유형별 아동 현황 분포를 전년대비 살펴보면(표 Ⅳ-4-15), 시설보호 비율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던 중 다소 증감을 반복하기도 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년대비 3.8%p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가정위탁과 입양은 적은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5.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07년-2018년)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8,861	10,534	10,153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83	4,125	3,918
시설보호[1)]	3,245	4,964	4,767	4,842	3,752	3,748	3,257	2,900	2,682	2,887	2,421	2,449
	(36.6)	(47.1)	(47.0)	(56.4)	(50.1)	(54.1)	(54.1)	(58.1)	(59.6)	(63.0)	(58.7)	(62.5)
가정위탁	3,378	2,838	2,734	2,124	2,350	2,289	2,265	1,688	1,582	1,022	994	937
	(38.1)	(26.9)	(26.9	(24.7)	(31.4)	(33.0)	(37.6)	(33.8)	(35.1)	(22.3)	(24.1)	(23.9)
입양[2)]	1,191	1,304	1,314	1,393	1,253	772	478	393	239	243	285	174
	(13.4)	(12.4)	(12.9	(16.2)	(16.7)	(11.1)	(7.9)	(7.9)	(5.3)	(5.3)	(6.9)	(4.4)
소년소녀 가정	247	178	213	231	128	117	20	13	0	6	2	1
	(2.8)	(1.7)	(2.1	(2.7)	(1.7)	(1.7)	(0.3)	(0.3)	(0.0)	(0.1)	(0.0)	(0.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보건복지부(2018g).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9624&page=1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3) 2016. 2017 자료의 경우 최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함.

②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국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친가정 복귀나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을 우선 조치하고, 이외에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거나, 아동에게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이러한 대안적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현황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07~2018)

전국의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기준 전국 279개 시설에 총 12,193명의 아동이 입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16).

표 Ⅳ-4-16.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2007년-2018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설 수	282	285	280	280	280	281	281	278	281	281	280	279
현재 입소 아동[2)]	18,426	17,992	17,586	17,119	16,523	15,916	15,239	14,630	14,001	13,689	12,789	12,193

* 출처: 통계청 KOSIS.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원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 주: 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
2) 현재 입소아동: 기아, 사생아,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가정, 전입 등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동으로 퇴소아동을 제외한 연말 현재 수용아동 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2007년 기준 시설 수 282개소에 입소한 아동 수는 18,426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시설 수가 279개소로 3개소가 감소하였으나 아동 수는 6천명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16). 입소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아동인구 수 감소와 가정위탁 등의 가정환경에서의 대안양육을 권고하는 사회정책적 분위기에 따라 향후 시설보호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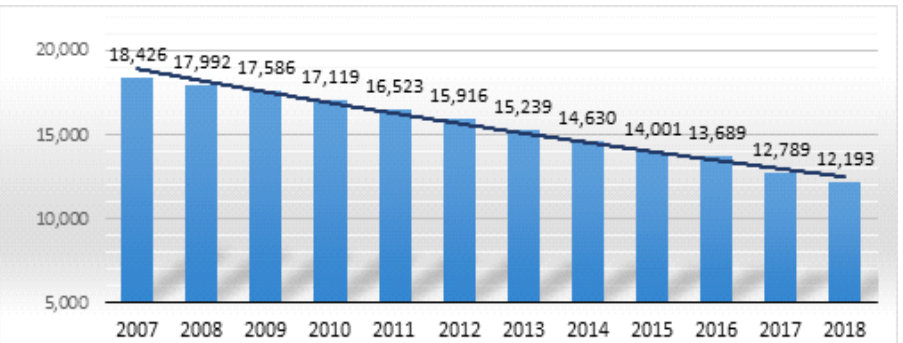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KOSIS.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원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그림 Ⅳ-4-9.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 추이(2007~2018)

나.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가정보호를 우선시하고, 2세 미만 영아는 가정보호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47).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으로 가정위탁보호 위탁아동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탁아동은 11,983명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17).

가정위탁보호 유형별로 보면,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2017년 기준 7,950명으로 과반이 훨씬 넘는 66.3%의 분포를 보였고, 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친·인척에 의한 위탁양육은 3,100명(25.8%)으로 나타났다(표 Ⅳ-4-17).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은 7.8%에 불과한 933명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의 7.5%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는데(표 Ⅳ-4-17), 이는 여전히 비혈연 관계의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엄격한 위탁가정 선정을 전제로 하되, 양육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일반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을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4-17.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6,359	15,486	14,502	14,596	14,385	13,728	12,896	11,983
대리양육 위탁아동	10,865	10,205	9,732	9,776	9,550	9,127	8,578	7,950
친인척 위탁아동	4,371	4,260	3,831	3,843	3,816	3,556	3,348	3,100
일반 위탁아동	1,123	1,021	939	977	1,019	1,045	970	933

* 출처: 보건복지부(2016a).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314.
보건복지부(2017c). 2017년 가정위탁 현황(2017.12.31. 기준).
보건복지부(2018c). 2018년 가정위탁 현황(2018.12.31. 기준).

다.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19a: 113). 기존의 대규모 집단시설에서의 보호를 탈피하여 소규모 가정형태의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2004년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포함되면서(보건복지부, 2019a: 113), 법적 정부 지원 시설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은 5~7인 보호를 원칙으로 남녀분리형 또는 남녀혼합형으로 운영되며, 아동·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자립계획 수립 등),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학교와의 관계 형성(학교교사와의 정기적 상담), 지역 내 자원 활용(드림스타트 및 관공서 통한 자원 연계) 등을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2017년 기준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는 총 533개소이며, 보호아동 수는 2,811명(남: 1,477명, 여: 1,334명)으로 지속적으로 시설 수와 아동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Ⅳ-4-18). 그러나 그 증가폭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정위탁보호가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에 더욱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표 Ⅳ-4-18.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2012~2017)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설 수		489	480	476	480	510	533
수용 인원	계	2,438	2,481	2,588	2,636	2,758	2,811
	남	1,233	1,309	1,351	1,364	1,444	1,477
	여	1,205	1,172	1,237	1,272	1,314	1,334

* 출처: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215.
보건복지부(2018e).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p.1.

(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①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만이 가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었으며, 성별, 고교유형,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교유형,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기초분석 보고서 참조).

표 Ⅳ-4-19. 가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3.5	96.5	100.0(9,243)	
성별	남학생	3.8	96.2	100.0(4,799)	1.745
	여학생	3.3	96.7	100.0(4,444)	
학교급	초등학교	2.4	97.6	100.0(2,960)	16.330***
	중학교	4.0	96.0	100.0(2,917)	
	고등학교	4.1	95.9	100.0(3,36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	96.7	100.0(8,383)	13.939**
	한부모가정	5.6	94.4	100.0(691)	
	조손가정	6.9	93.1	100.0(86)	
	기타	5.6	94.4	100.0(76)	
학업 성적	상	2.5	97.5	100.0(3,266)	74.145***
	중	2.8	97.2	100.0(3,883)	
	하	6.6	93.4	100.0(2,086)	
경제적 수준	상	2.7	97.3	100.0(5,311)	47.482***
	중	3.9	96.1	100.0(3,071)	
	하	7.3	92.7	100.0(852)	

**p<.01, ***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가출 경험률은 2.4%인데 비해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4.1%로 중고생의 가출 경험이 더 많았고, 양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3.3%)보다는 한부모가정(5.6%)과 조손가정(6.9%)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2.5%, 중:2.8%, 하: 6.6%),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상: 2.7%, 중: 3.9%, 하: 7.3%) 가출경험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며, 2013년에 5.1%의 가출 경험률(전체 비율 기준)을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여 3.5%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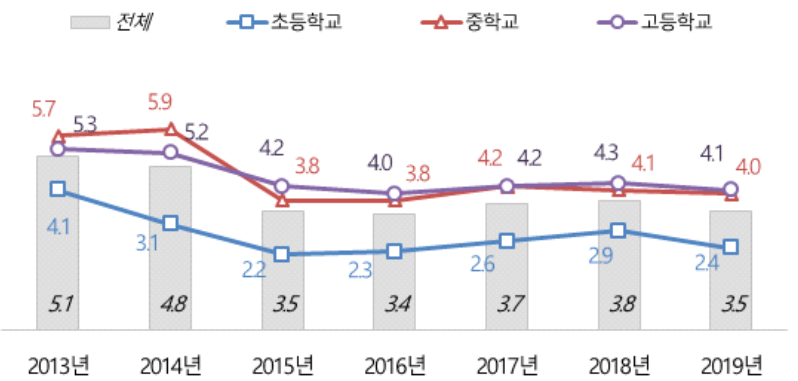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4-10. 가출 여부: 학교급별(연도별 추이)

가출한 경험이 있는 319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Ⅳ-4-20〉과 같다. 전체적으로 부모님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로 가출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출이 개인의 일탈이나 비행으로 인해 시도되기 보다는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에 따른 문제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41]. 그 다음으로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성적 등 학업문제에 따른 가출 경험이 15.9%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9.6%),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2.3%), 학교문제 때문에(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20. 가출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님과의 문제	학교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타	전체(N)	χ^2
전체		15.9	61.7	1.1	2.3	9.6	9.5	100.0(319)	
성별	남학생	20.6	53.3	1.4	4.1	11.3	9.3	100.0(178)	17.522**
	여학생	9.9	72.2	0.7	0.0	7.3	9.8	100.0(14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4	62.1	0.2	1.5	11.2	9.7	100.0(272)	42.235***
	한부모가정	14.7	62.7	5.5	8.7	0.0	8.4	100.0(39)	
	조손가정	34.8	49.6	15.7	0.0	0.0	0.0	100.0(6)	
	기타	38.4	33.5	0.0	0.0	0.0	28.1	100.0(3)	
학업 성적	상	15.1	65.0	0.0	2.9	7.8	9.2	100.0(78)	15.609
	중	22.8	59.7	0.4	0.5	6.5	10.1	100.0(103)	
	하	11.3	61.0	2.2	3.3	12.9	9.3	100.0(137)	
경제적 수준	상	14.4	62.2	0.3	2.0	12.1	8.9	100.0(139)	18.320*
	중	19.6	59.9	0.0	3.2	9.3	8.1	100.0(118)	
	하	12.3	63.5	4.9	1.2	4.3	13.7	100.0(62)	

*p<.05, **p<.01, ***p<.001

배경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가출 사유인 '부모님과의 문제'는 양부모, 한부모 가정에서 조손/기타가정에서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제적 수준을 '상'과 '하'로 인식한 집단에서 더 높아

41) 이렇게 대다수 가출 경험 청소년들이 가출사유가 부모님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예, 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임희진, 백혜정, 김희진, 황여정, 2014).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출'이 가정에서의 학대, 가족 내 갈등, 빈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가출'이란 용어가 반사회적이고 이탈적인 이미지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가출'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청소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7: 15-17), 선행연구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출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백혜정, 방은령, 2009; 김지연, 정소연, 2014;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실제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가정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 연구에서도 이들이 집을 나와 생활하는 이유에 대해 상당수의 청소년(74.2%)이 가족 간 다툼이나 가족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김희진 외, 2018).

특정 경향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문제를 가출 사유로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많았으며(남: 20.6%, 여: 9.9%), 양부모, 한부모 가정보다는 조손가정이나 기타 가정유형에서 약 2배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출한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남: 11.3%, 여: 7.3%), 그리고 양부모가정과 경제적 수준을 '상'으로 인식한 집단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적은 사례수여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가출사유에 대해 연도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기타 값 제외), 전체적으로 부모님과의 문제로 인한 가출의 경우 다른 시기보다 2018년에는 가장 저점이었으나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전년대비 3.7%증가), 학업문제의 경우는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출했다는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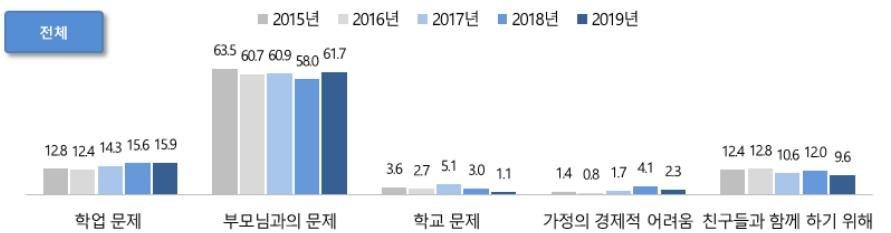

그림 Ⅳ-4-11.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전체(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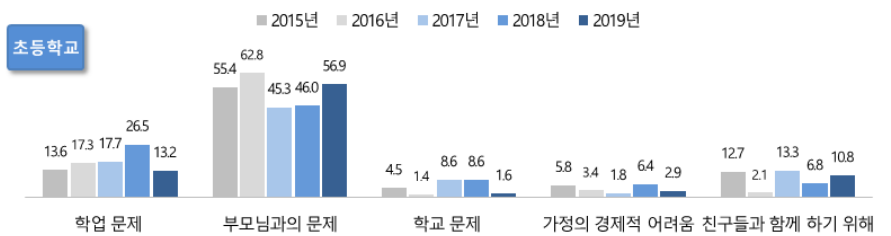

그림 Ⅳ-4-12.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초등학교(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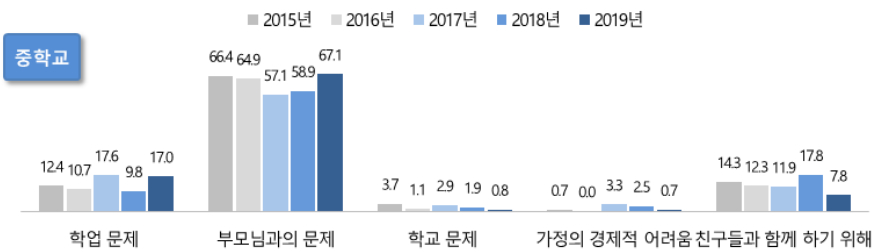

그림 Ⅳ-4-13.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중학교(연도별 추이)

가출 사유에 대해 연도별로 학교급별 차이가 있었는데 가출 사유 중 부모님과의 문제 응답률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서 2018년 기준 전년대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응답률은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가출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에게서 최근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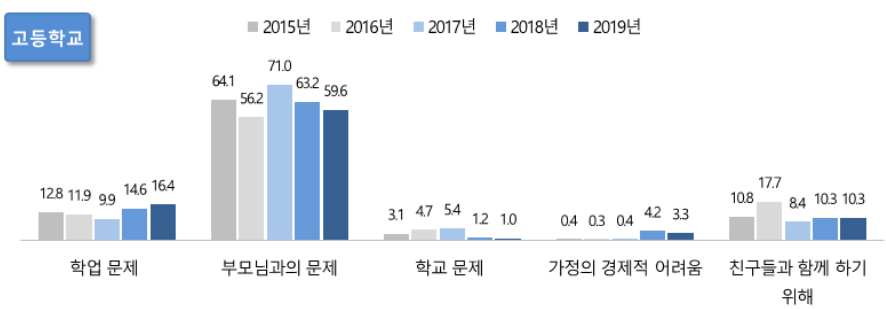

그림 Ⅳ-4-14. 가출을 한 주된 이유: 고등학교(연도별 추이)

②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가출청소년의 대표적인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제1호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상담과 선도, 학업과 자립까지 지원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c: 528). 청소년쉼터는 입소기간에 따라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시쉼터는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으로 구분되며 가출청소년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최장 7일)를 원칙으로 하고 위기개입상담,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초기 개입을 담당하고 있다(표 Ⅳ-4-21).

표 Ⅳ-4-21.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30개소)	단기쉼터(62개소)	중장기쉼터(38개소)
기 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최장 7일까지 연장 가능)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기 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 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 쉼터와 연결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189에서 발췌.

단기쉼터는 가출청소년을 3개월 이내(최장 9개월) 보호·숙식 및 상담·치료와 연계·의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42], 마지막으로 중장기쉼터(38개소)는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 이내(1년 단위 연장)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표 Ⅳ-4-21).

청소년쉼터는 1992년 서울 YMCA를 통해 출발한 이후로, 점차 확대되었다가 2008년 76개소에서 2018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전국에 총 130여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8c).

42) 2018년에는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굴·긴급구조 및 초기개입으로 신속한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거리상담 전문인력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c: 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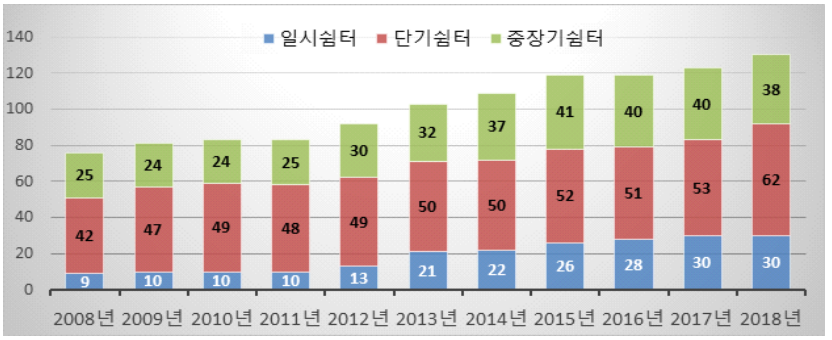

* 주: 본 그림은 표 Ⅳ-4-22의 일부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Ⅳ-4-15.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연도별 추이)

표 Ⅳ-4-22.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08~2018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구분 / 연도	쉼터 수(개소 수)				예산(백만원)	입소 청소년수(명)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총계		
2008	9	42	25	76	4,639	-
2009	10	47	24	81	4,651	-
2010	10	49	24	83	5,874	9,350
2011	10	48	25	83	6,262	11,657
2012	13	49	30	92	7,287	11,764
2013	21	50	32	103	8,137	15,242
2014	22	50	37	109	8,710	24,079
2015	26	52	41	119	10,002	25,012
2016	28	51	40	119	12,666	30,329
2017	30	53	40	123	13,565	31,197
2018	30	62	38	130	15,570	32,109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160-162의 내용과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p.188-189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2018년 기준으로 일시쉼터는 총 30개소, 단기쉼터는 62개소, 중장기쉼터는 38개소이며,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4,639백만원에서 2018년 15,570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표 Ⅳ-4-22).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및 예산 확대

에 따라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여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2010년 약 9천여명에서 2018년 3만2천여명에 달하게 되었다(표 Ⅳ-4-22). 이는 가정에서의 갈등·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기 보다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숙식 및 상담서비스를 받고, 더 나아가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지원까지 받게 된 청소년의 수가 더욱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③ 가출 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만족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집을 나온 후 이용해 본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249명 중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7.6%였고 이용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이 92.4%로 나타났다(표 Ⅳ-4-23).

표 Ⅳ-4-23. 가출 후 이용한 기관

(단위 : %(명))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전체		92.4	5.2	1.2	0.4	0.5	0.4	100.0(249)
성별	남학생	89.0	7.6	2.1	0.7	0.0	0.7	100.0(139)
	여학생	96.7	2.3	0.0	0.0	1.0	0.0	100.0(110)
학교급	중학교	93.8	4.8	0.0	0.0	0.6	0.8	100.0(113)
	고등학교	91.2	5.6	2.1	0.7	0.3	0.0	100.0(13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3.0	5.1	1.3	0.0	0.5	0.0	100.0(214)
	한부모가정	89.8	7.1	0.0	3.1	0.0	0.0	100.0(30)
	조손가정	77.0	0.0	0.0	0.0	0.0	23.0	100.0(4)
	기타	100.0	0.0	0.0	0.0	0.0	0.0	100.0(1)
학업 성적	상	96.5	3.5	0.0	0.0	0.0	0.0	100.0(49)
	중	94.3	3.1	2.7	0.0	0.0	0.0	100.0(77)
	하	89.5	7.3	0.7	0.8	0.9	0.8	100.0(123)
경제적 수준	상	94.2	5.0	0.8	0.0	0.0	0.0	100.0(103)
	중	92.5	3.1	2.2	1.0	1.2	0.0	100.0(95)
	하	88.3	9.8	0.0	0.0	0.0	1.8	100.0(50)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인 가운데 청소년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그 중 높은 5.2%였는데, 청소년쉼터 개소 수가 확대되고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쉼터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 청소년상담기관은 1.2%, 청소년전화 1388은 0.5%, 청소년수련관(센터)은 0.4% 수준의 이용률에 그쳐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수치로 보인다.

이렇게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최저 6.3%(2013, 2014년), 최고 11.9%(2018년)였고, 2019년에는 7.7%로 나타남에 따라 2013년부터 현재까지 6%~12%의 이용률을 보이면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낮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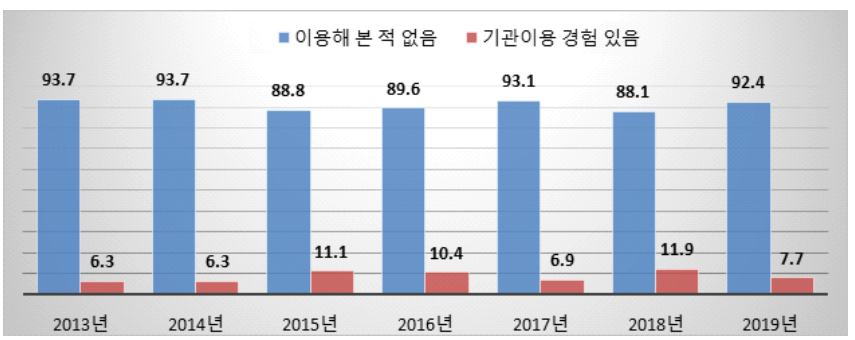

*주: '기관이용 경험 있음'은 청소년관련 기관들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모두 합친 비율(단위:%)

그림 Ⅳ-4-16.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이용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가출청소년이 이용해 본 관련 기관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형별 이용 추이를 살펴보았다[43]. 2015년 이후 청소년쉼터는 이용률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비해(2015년 2.4% → 2019년 5.2%), 청소년상담기관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43) 2019년 기준 전체 응답자 중 1% 미만으로 나타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전화1388 응답 항목의 경우 연도별 추이 그래프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조사항목별 연도별추이(학교급별)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초분석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향을 나타냈다(2015년 5.1% → 2019년 1.2%). 또한 전년대비 중학생의 청소년 쉼터 이용률은 감소하였으나 고등학생의 쉼터 이용률은 약간 증가하였다.

* 주) 전체 응답률이 1% 미만인 청소년수련관(센터), 청소년전화 1388, 기타는 그래프에서 제외함.

그림 Ⅳ-4-17.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연도별 추이)

가출 후 이용한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표 Ⅳ-4-24), 긍정적인 응답이(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78.9%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여학생의 만족도가 남학생보다, 중학생의 만족도가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중소도시 지역 청소년의 만족도가 대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사례수가 매우 적어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표 Ⅳ-4-24.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전체		3.00(0.76)	3.0	18.1	54.3	24.6	100.0(19)
성별	남학생	2.93(0.80)	3.7	22.4	50.9	23.0	100.0(15)
	여학생	3.31(0.54)	0.0	0.0	68.7	31.3	100.0(4)
학교급	중학교	3.37(0.52)	0.0	0.0	63.1	36.9	100.0(7)
	고등학교	2.79(0.81)	4.8	28.7	49.2	17.4	100.0(12)
고교 유형	일반계고	2.87(0.72)	0.0	30.1	52.6	17.3	100.0(9)
	특성화계고	2.58(1.17)	17.5	25.0	40.0	17.5	100.0(3)
지역 규모	대도시	2.82(0.97)	7.0	30.5	35.6	26.9	100.0(8)
	중소도시	3.21(0.43)	0.0	0.0	78.6	21.4	100.0(9)
	읍면지역	2.65(1.72)	0.0	67.6	0.0	32.4	1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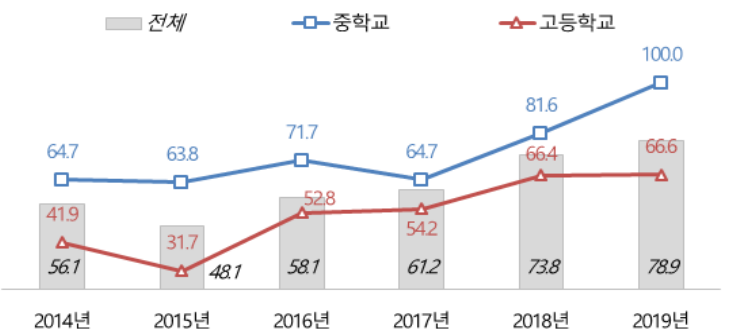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4-18.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44][45]

①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역시 사회복지시설로서 3년마다 평가를 받음으로써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2019년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는 2018년에 이루어졌다. 이에 지난 2016년 평가지표와의 차이를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Ⅳ-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지표(공통지표)는 일부 삭제, 변경, 추가되거나, 또는 인정범위의 수정 및 지표항목의 이동 등 상당수 수정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표영역 중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더욱 보완된 것을 볼 수 있는데(표 Ⅳ-4-25), 특히 가스 및 소방시설 등은 지자체 지도점검으로, 또 자체점검의 경우 사후조치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변경되었고,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그리고 내진설계 여부 등이 새로 추가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더욱 보완되었다. 이외에 '재정 및 조직운영'에서는 회계의 투명성 지표에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연 1회 이상 공개에서 추가경정예산 공개로 수정되었다. '인적자원관리'영역에서는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및 직원 근속률과 관련 내용에 자부담 직원이 추가되었으며, 직원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차별

44) 아동복지시설 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지표 관련 내용 역시 불가피하게 이전년도들의 내용과 다소 중복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내용의 업데이트가 불가능함에 따라 기존의 2016년과 2019년 평가결과 내용을 요약, 재기술하였다.

45) 기존에 이 지표에 포함되었었던 보호·양육시설 예산에 대한 내용은 '5-5-2-2의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지표(소분류)의 지표항목으로 이동, 포함시켰다.

적인 내용이 채용조건에 명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로 수정되었다.

표 Ⅳ-4-25. 2016년 및 2019년 평가지표 비교(공통지표)

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변경 사항	2019년도 평가지표	주요 변경 사항
A. 시설 및 환경 (10점)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평가항목 수정: 시설유지 및 보수 관련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항목 지정
	A2. 안전관리	수정	A2. 안전관리	-평가항목 삭제: 보일러, 가스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자체 지도점검 -평가항목 변경: 월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자체점검 및 사후조치 여부 확인, 시설 자체점검, 종사자 안전을 위한 기본 안전점검표 추가 -평가항목 추가: 안전을 위하여 안잔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여부, 내진설계 여부(가산점)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구축	수정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평가항목 변경: 자체 모의훈련 연1회 연2회로 변경)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수정	A4. 화재예방 및 피난 대책	-항목 이동: 전선과 배선기구 관리여부 시설 자체 점검표에 포함(A2②)
B. 재정 및 조직운영 (15점)	B1. 월평균 아동 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 (전입금)	수정	B1. 법인의 자부담 (전입금)	-인정범위 수정: 개인운영시설 추가 제외
	B2. 월평균 아동 수 대비 운영법인의 사업비	유지	B2. 사업비	-없음
	B3. 월평균 아동 수 대비 운영법인의 후원금	수정	B3. 후원금	-인정범위 수정: 개인운영시설 추가 제외
	B8. 회계의 투명성	수정	B4. 회계의 투명성	-평가항목 삭제: 지자체 행정조치 사항여부, 회계관련 필수 서류비치여부 -평가항목 수정: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공개→예산서, 결산서, 추가경정예산 공개
		예고 지표	B5.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
C. 인적 자원관리 (15점)	C1. 직원충원율	수정	C1. 직원충원율	-평가항목 삭제: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 삭제 -인정범위 수정: 예외적용(위생원, 환경미화원, 사무원, 보안요원(경비원), 조리원(≠조리사)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수정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자부담직원 추가 -민간자격증 추가: 임상심리상담원 -인정범위 수정: 예외적용(위생원, 환경미화원, 사무원, 보안요원(경비원), 조리원(≠조리사)
	C3. 직원 근속률	수정	C3. 직원 근속률	-자부담직원 추가 -평가방법 변경: 평가 현재 근속 직원 수→2016년~2018년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속 직원 수
	C4. 직원 교육 활동비	수정	C4. 직원 교육 활동비	-자부담직원 추가 -인정범위 수정: 내부교육 전체 비용 인정→강사비만 인정 추가, 예외적용(위생원, 환경미화원, 사무원, 보안요원(경비원), 조리원(≠조리사)

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변경 사항	2019년도 평가지표	주요 변경 사항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평가항목 추가: 인사위원회/면접 시 외부위원 참여 -인정범위 수정: 차별적인 내용 채용조건에 명시하지 않음 구체화(사진,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대학교 및 대학원명 미기재)
	C6. 시설장의 전문성	유지	C6. 시설장의 전문성	-없음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유지	C7. 최고 중간 관리자의 전문성	-없음
	C8. 직원교육	수정	C8. 직원교육	-평가항목 변경: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 실시→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 교육계획에 의하여 직원교육 실시→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 -평가항목 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아동권리 영역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이동 -평가항목 삭제: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을 공유(전달교육, 자료게재 등)하고 있음. -인정범위 변경: 신입직원 대상 30시간 이상 교육
	C9. 직원복지	수정	C9. 직원복지	-평가항목 삭제: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되고 있음.
		예고 지표	C10.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직원의 권리와 인권 보호 마련
E. 아동의 권리 (15점)	E1. 비밀보장	유지	E1. 비밀보장	-없음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 보장 노력 (개별지표)	수정	E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기존 개별지표에서 공통지표로 변경 -세부유형 일부 항목 제외 -기존 E3. 아동의 인권보장 노력지표 대체: 지자체 행정조치 여부 삭제, 아동에게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 직원으로부터 학대/인권침해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보관, 아동 간 분쟁 발생 시 직원이 규정에 따라 개입
	E2. 아동의 고충처리	유지	E3. 아동의 고충처리	-없음
		신규	E4.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신규지표이나 의무적 사항으로 평가 대상 기간은(2018년)
		신규	E5. 서비스 정보제공	-영유아(양육, 일시) 시설 제외
	E6. 자치활동 보장(개별지표)	통합 신규	E6. 서비스과정에 아동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기존 개별지표(E6. 자치활동 보장) 내용 통합 -평가항목 추가 신설: ① 서비스 동의서, ④ 간담회 내용 및 결과 공지, ⑥ 종교 활동 및 참정권 보장
F. 지역사회 관계 (10점)	F1. 외부자원개발	유지	F1. 외부자원개발	-없음
	F2. 자원봉사자 관리	수정	F2. 자원봉사자 관리	-평가항목 삭제: 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
	F5. 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	수정	F3. 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	-평가항목 삭제: 후원금 부조리 관련 행정상 조치
지표 수	**22**	**-**	**28**	

*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2017).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p.19~22의 내용 발췌(지면상 한계로 일부 내용 제외).

‘아동의 권리’ 영역은 표 Ⅳ-4-25에서 보듯이, 기존 개별지표에서 공통지표로 변경되었으며, 아동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 간 분쟁 시 직원의 개입과 관련된 세부적인 일부 평가내용이 수정·보완되었다. ‘지역사회 관계’ 영역의 경우 큰 변화는 없었으며, 일부 평가항목이 삭제되었다(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횟수 등).

평가영역의 구체적인 지표내용의 변화뿐 아니라 일부 영역의 경우 평가점수에 대한 배점도 변경되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가지표의 영역별 점수 배점을 살펴본 결과(표 Ⅳ-4-26), 그 동안의 평가에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변화 없이 100점 만점 중 각각 10점과 15점을 유지했다. 인적자원 관리의 경우는 그동안 20점으로 유지되었으나 2019년에 15점으로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2016년에는 40점이었으나 2019년에는 35점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대신 아동의 권리 영역은 기존의 10점에서 15점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는 지난 평가보다 5점이 증가한 10점으로 할당되어 비밀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 과 인권보장, 그리고 지역사회 외부 자원 개발 및 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4-26.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2010~2019)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2010	2013년	2016년	2019년
A. 시설 및 환경	10	10	10	10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15	15	15
C. 인적자원 관리	20	20	20	1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35	40	35
E. 아동의 권리	10	10	10	15
F. 지역사회 관계	10	10	5	10
총계	100	100	100	100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p.17,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2017).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p.15의 내용을 발췌, 정리.

②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3년마다 이루어지는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2019년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는 연말 또는 차년도에 발표된다. 따라서 지난 2010년과 2013년, 2016년의 평가결과를 다시 살펴보았다. 〈표 Ⅳ-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평균점수는 2010년 88.4점, 2013년과 2016년의 경우 90점 내외의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평가영역에서 2013년과 2016년의 평가결과가 2010년보다 높았고, 지역사회 관계 영역에서만 2010년 평가가 88.8점으로 2013년의 85점, 2016년도의 86.2점보다 다소 높았다. 전반적으로 미미한 차이였으나 재정·조직과 프로그램·서비스의 경우는 2010년도에 비해 2013년에 비교적 큰 폭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2016년 평가결과는 지역사회관계와 인적자원관리를 제외하고 2013년보다 미세한 차이로 낮았는데, 아동권리 영역에서는 3.4점 감소하였다.

표 Ⅳ-4-27.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연도	시설 수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아동권리	지역사회 관계
2010	266	88.4	94.8	83.5	85.6	88.6	94.0	88.8
2013	275	90.0	95.0	88.2	85.1	92.0	95.4	85.0
2016	281	89.6	94.8	86.7	85.1	91.5	92.0	86.2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각 시설은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A부터 F까지 등급을 받게 되며, 2016년의 경우 90점 이상의 A등급은 67.6%, 80점~90점미만인 B등급은 23.8%, 70점~80점미만은 3.2%, 60점~70점미만은 1.8%, 60점미만은 3.6%의 분포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17.2.15.). 이러한 평가 등급에 따라 우수시설은 시상 및 인센티브 지원을 그리고 D와 F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은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2017.2.15.).

4) 소결

‘4. 가정 환경 및 대안양육’의 대분류 중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중분류에 해당하는 ‘4-1-1. 부모와의 관계’와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검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자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만13~19세까지의 조사대상 청소년 70% 이상이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와 관련하여 먼저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은 2013년(43,770개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현재 39,171개소로 약 5천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립주체 중 국공립 시설과 직장 설립 시설만이 그중 개소수가 증가하였다. 이용 아동수 역시 2014년 1,496,671명에서 2018년 1,415,742명으로 약 34,000명이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전년대비 약 1%정도만이 감소한 81.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1개소 당 아동 수는 2013년 34명에서 2018년 3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13년 4.9명에서 2018년에는 4.2명으로 감소하였다.

방과후돌봄 중 하나인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는 59.3%, 중학교는 32.1%, 고등학교는 52.6%였다. 2013년 기준 전체 60.2%의 참여율을 보인 이후에 점차 감소 경향을 보여 2018년의 참여율은 51.0%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과 프로그램 비율이 증가하고, 특기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감소하였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연도별 추이는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80%가 넘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운영주체인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각 지역사회 곳곳에서 방과후 돌

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에 895개소에서 2018년 4,211개소로, 또 이용 아동 수는 2004년 23,347명에서 2018년 109,610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18년 기준 전반적 만족도는 4.15점, 활동/서비스 도움 정도는 4.05점, 교사 만족도 4.12점, 시설/환경 만족도 4.23점으로 연도별 추이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모두 5점 만점에 4점이 넘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질적 수준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기준 46개소에 불과했으나 2018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260개소로 확대되어 운영중이다. 서비스 만족도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긍정적 응답률이 매년 80%를 상회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체 84.2%를 나타냈다.

'4. 가정 환경 및 대안양육'의 대분류 중 두 번째 중분류인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중 먼저 입양률 지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외 입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한 입양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입양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외 사후관리 서비스 및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등 많은 민관(民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받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기아·유기로 발생한 아동 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2016년 264명, 2017년 261명→2018년 320명)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보호대상 아동들 대부분은 시설보호(62.5%)를 받고 있으며, 약 24%만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었고, 시설보호 비율의 경우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기도 하였다(3.8%p). 현재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많은 수가 시설보호 중이며 가정위탁보호의 경우도 대부분 조부모를 통한 대리양육(66.3%)이나 친인척 위탁(25.8%)으로 일반위탁보호를(7.8%) 받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또 다른 대안양육 형태인 공동생활가정은 총 533개소로 보호아동 수(2,811명)와 함께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5%가 경험이 있었고, 양부모가정에서보다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그리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가출경험이 2~3배 높았다. 가출 사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가 가장 높은 61.7%로 나타났고(전년대비 3.7%증가), 학업이나 친구 때문에 가출했다는 응답은 각각 15.9%, 9.6%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기준 청소년쉼터 수는 총 130개소로(일시쉼터 30개소, 단기쉼터 62개소, 중장기쉼터 38개소), 2008년도의 76개소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가출청소년 발견 및 조기개입, 그리고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까지 그 기능과 역할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시설인프라 확충과 그에 따른 시설종사자 처우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본 조사에서 가출 후 관련 서비스 및 기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7.6%(청소년쉼터 5.2%)에 불과한 것에서도 이들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중분류인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을 볼 수 있는 해당 서비스의 평가는 2019년에 진행 중에 있다. 3년전 평가에 비해 일부 평가지표가 삭제, 변경되었는데, 특히 안전관리와 재정투명성, 직원채용의 공정성 등이 더욱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지표 배점이 변경되었는데 2016년도 평가에 비해 인적자원 관리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각각 5점씩 줄어든데 비해 아동의 권리와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5점씩 배점이 증가하여 이들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①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전체 특수학교의 수는 2018년 기준 175개교이며, 2017년의 173개교에 비해 2개교 증가하였다(표 Ⅳ-5-1). 특수학급 수는 2018년 기준 10,676개이며, 2017년 대비 351개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90,780명이며, 2017년 대비 1,427명이 증가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학교급별 학생 수는 장애영아 582명, 유치원 5,630명, 초등학교 38,031명, 중학교 18,788명, 고등학교 22,584명, 전공과 5,165명으로, 전년대비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전공과는 증가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감소하였다. 특수교육 교원의 수는 2018년 기준 20,039명이며, 2017년 대비 71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교육 교원의 수는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단위: 교, 학급, 명)

연도	특수 학교수	특수 학급수	학생 수							교원수
			장애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0	150	7,792	290	3,225	35,294	19,375	19,111	2,416	79,711	15,244
2011	155	8,415	356	3,367	35,124	20,508	20,439	2,871	82,665	15,934
2012	156	8,927	403	3,675	34,458	21,535	21,649	3,292	85,012	16,727
2013	162	9,343	578	4,190	33,518	22,241	22,466	3,640	86,633	17,446
2014	166	9,617	680	4,219	33,184	22,159	22,973	4,063	87,278	17,922

연도	특수 학교수	특수 학급수	학생 수							교원수
			장애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5	167	9,868	742	4,744	33,591	21,108	23,422	4,460	88,067	18,339
2016	170	10,065	656	5,186	33,770	19,793	23,943	4,602	87,950	18,772
2017 (A)	173	10,325	549	5,437	35,505	19,218	23,655	4,989	89,353	19,327
2018 (B)	175	10,676	582	5,630	38,031	18,788	22,584	5,165	90,780	20,039
B-A	2	351	33	193	2,526	-430	-1,071	176	1,427	712

* 출처: 교육부(2018b).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②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는 90,780명이며, 전년 대비 1,42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2).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6,337명(29.0%)이며, 나머지 64,443명(71.0%)는 일반학교에 배치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48,848명으로 2017년 대비 1,284명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15,595명으로 2017년 대비 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지만,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7년과 2018년에 약 15,590명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1	24,741(29.9)	43,183	14,741	57,924(70.1)	82,665(100.0)
2012	24,932(29.3)	44,433	15,647	60,080(70.7)	85,012(100.0)
2013	25,522(29.5)	45,181	15,930	61,111(70.5)	86,633(100.0)
2014	25,827(29.6)	45,803	15,648	61,451(70.4)	87,278(100.0)
2015	26,094(29.6)	46,351	15,622	61,973(70.4)	88,067(100.0)
2016	25,961(29.5)	46,645	15,344	61,989(70.5)	87,950(100.0)
2017	26,199(29.3)	47,564	15,590	63,154(70.7)	89,353(100.0)
2018	26,337(29.0)	48,848	15,595	64,443(71.0)	90,780(100.0)

* 출처: 교육부(2018b).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장애 청소년의 졸업 후 상황을 201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Ⅳ-5-3), 2018년의 졸업생 2,454명 중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53.8%(1,321명)이며, 2017년 상급학교 진학률 53.1%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취업한 학생의 비율은 4.0%(97명)로 2017년 취업률 5.7%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42.2%(1,036명)로 2016년의 무직률 41.2%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보면 진학률은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8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취업률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률의 경우 2010년에는 16.6%였지만, 2018년에는 4.0%로 나타나 감소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직률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Ⅳ-5-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단위 : %(명)

연도	졸업자(명)	진학률 (진학자 수) (%, (명))	취업률 (취업자 수) (%, (명))	무직률 (무직자 수) (%, (명))
2010	2,301	47.2(1,087)	16.6(383)	36.1(831)
2011	2,428	29.9(726)	14.7(357)	55.4(1,345)
2012	2,537	29.5(748)	15.8(402)	53.9(1,367)
2013	2,536	43.5(1,104)	13.5(343)	42.9(1,089)
2014	2,615	54.8(1,433)	11.8(308)	33.4(874)
2015	2,385	57.5(1,372)	7.8(185)	34.7(828)
2016	2,460	55.0(1,354)	6.3(155)	38.7(951)
2017	2,546	53.1(1,353)	5.7(145)	41.2(1,048)
2018	2,454	53.8(1,321)	4.0(97)	42.2(1,036)

* 출처: 교육부(2018b).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2) 생존 및 발달

(1) 사망률

①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출생 후 365일 이내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것으로, 국민 보건 수준을 국제적으로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될 만큼 보건 수준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 사망추이). 2018년까지의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을 살펴보면(표 Ⅳ-5-4), 2017년을 기준으로 신생아 사망률은 천 명당 1.5명,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천명당 1.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둘을 합한 영아 사망률은 천 명당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4. 연도별 영아사망률

(단위 : 명/1,000명 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 사망률	2.0	1.5	1.7	1.9	1.5	1.7	1.8	1.6	1.7	1.8	1.6	1.7	1.7	1.4	1.5	1.7	1.4	1.6	1.7	1.3	1.5
신생아 후기사망률	1.6	1.2	1.3	1.1	1.1	1.2	1.3	1.2	1.3	1.4	1.2	1.3	1.2	1.1	1.2	1.3	1.1	1.2	1.4	1.1	1.3
영아 사망률	3.4	2.7	3.0	3.1	2.7	2.9	3.1	2.9	3.0	3.2	2.8	3.0	2.9	2.5	2.7	3.1	2.6	2.8	3.1	2.5	2.8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69&stts_cd=276902&freq=U에서 2019년 8월 7일 인출.
*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054호).

* 주: 1) 영아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통계청으로 통합된 이후 첫 조사(2012년 실시, 2009~2011년 대상) 이후 매년 작성

연령대별 사망률을 201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Ⅳ-5-5),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0세로 인구 10만 명당 270.5명이었다. 그리고 10~14세 연령대의 사망률이 8.4명으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을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출생이후 10~14세까지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15세~19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15세 이후부터는 자연적인 질병 이외의 사고 등 특별한 요인들에 의한 사망이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사망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5세에서 19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5.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단위: 명/10만 명당 사망자 수)

연령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0세	1,435	318.9	1,405	306.8	1,305	294.6	1,305	310.2	1,190	281.9	1,154	282.1	1,000	270.5
1-4세	389	20.9	377	20.2	342	18.3	289	15.4	287	15.4	278	15.2	261	14.7
5-9세	239	10.0	268	11.4	253	10.8	204	8.8	207	8.9	205	8.7	210	8.9
10-14세	402	12.6	325	10.7	272	9.5	239	8.7	220	8.6	193	8.0	197	8.4
15-19세	1,003	28.3	905	25.8	812	23.6	870	25.9	685	20.9	718	22.5	626	20.6
20-24세	1,318	41.7	1,255	38.6	1,217	36.3	1,131	32.9	1,155	32.9	1,131	32.0	1,087	31.1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8월 7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② 사고 사망률

2017년을 기준으로 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표 Ⅳ-5-6), 20~24세가 인구천명당 20.5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세가 14.9명, 15~19세가 13.1%로 나타났다. 반면 1세~14세는 3~4%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1~4세와 5~9세, 10~14세에서는 사고 사망률이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0세와 15~19세, 20~24세는 사고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최근 8년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세-24세의 사고 사망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6. 사고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당)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세	17.9	16.9	16.8	13.8	12.4	14.0	15.2	14.9
1~4세	6.8	5.9	5.9	5.9	4.3	4.6	4.1	4.7
5~9세	4.5	3.9	5.0	4.4	3.7	3.1	2.7	3.3
10~14세	5.8	5.3	4.7	4.0	3.1	3.9	3.0	3.1
15~19세	19.2	19.4	16.5	15.3	17.9	13.2	14.5	13.1
20~24세	32.9	29.6	26.7	25.1	22.7	21.9	21.6	20.5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8월 7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사고 사망의 외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표 Ⅳ-5-7) 운수사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4세와 5~9세의 연령대에서는 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0세의 경우에는 타살이 사고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1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자살이 사고사망의 원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이후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망원인 중 자살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8년간의 추세를 분석해보더라도 자살로 인한 사망은 15세~19세 구간부터 급증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추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세~24세까지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7.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단위 : 명/10만 명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0	0세	2.1	0.9	0.5	0.2	-	-	5.0
	1~4세	3.1	1.3	0.2	0.3	0.2	-	0.8
	5~9세	2.5	0.2	0.5	0.2	-	-	0.5
	10~14세	1.9	0.2	0.7	0.1	-	1.9	0.4
	15~19세	7.6	0.3	1.0	0.1	0.1	8.3	0.6
	20~24세	9.1	0.5	1.0	0.3	0.1	18.3	0.7
	25~29세	8.9	0.8	0.6	0.2	0.1	29.3	0.8
2011	0세	1.3	0.9	-	-	-	-	4.4
	1~4세	2.4	1.1	0.7	0.2	0.1	-	0.8
	5~9세	1.8	0.4	0.6	0.2	-	-	0.7
	10~14세	1.3	0.1	0.7	0.2	-	1.8	0.6
	15~19세	7.8	0.3	0.7	0.3	-	8.9	0.2
	20~24세	7.8	0.7	0.8	0.0	0.0	17.7	0.8
	25~29세	7.9	0.8	0.9	0.2	0.3	30.1	0.6
2012	0세	1.3	1.3	0.4	-	-	-	2.6
	1~4세	2.1	0.8	0.3	0.4	0.1	-	1.4
	5~9세	1.9	0.5	0.9	0.2	-	0.0	0.9
	10~14세	1.4	0.2	0.8	0.1	-	1.5	0.5
	15~19세	6.0	0.4	0.9	0.2	-	8.2	0.3
	20~24세	7.7	0.5	0.9	0.3	0.1	14.9	0.8
	25~29세	7.7	0.7	0.6	0.3	0.2	23.9	0.7
2013	0세	0.5	1.1	0.2	0.2	-	-	3.4
	1~4세	2.1	1.0	0.9	0.3	0.1	-	0.9
	5~9세	2.1	0.2	0.6	0.3	-	-	0.8
	10~14세	1.1	0.3	0.4	0.1	0.0	1.3	0.5
	15~19세	5.1	0.4	0.9	0.1	0.0	7.9	0.3
	20~24세	7.0	0.5	0.7	0.1	0.1	14.5	0.6
	25~29세	7.3	0.7	0.3	0.1	0.2	21.7	0.5
2014	0세	1.7	1.4	1.0	-	-	-	1.4
	1~4세	1.2	0.9	0.3	0.1	0.1	-	1.0
	5~9세	1.3	0.3	0.6	0.1	0.0	0.1	0.9
	10~14세	0.8	0.0	0.5	0.1	-	1.1	0.4
	15~19세	8.0	0.3	0.7	0.3	-	7.2	0.5
	20~24세	5.5	0.5	0.6	0.3	0.1	13.6	0.7
	25~29세	6.7	0.4	0.4	0.2	0.2	22.4	0.4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5	0세	0.5	0.7	-	-	-	-	5.0
	1~4세	1.9	0.6	0.5	0.1	-	-	0.8
	5~9세	1.5	0.2	0.3	0.3	-	-	0.6
	10~14세	1.2	0.3	0.4	0.1	-	1.2	0.4
	15~19세	5.0	0.2	0.4	0.2	0.0	6.5	0.4
	20~24세	5.6	0.6	0.6	0.2	0.1	13.2	0.4
	25~29세	7.4	0.7	0.6	0.3	0.2	19.9	0.4
2016	0세	1.7	0.5	0.2	-	-	-	3.7
	1~4세	1.5	0.4	0.4	0.1	-	-	1.1
	5~9세	1.4	0.2	0.3	-	0.0	-	0.5
	10~14세	0.8	0.2	0.5	0.2	-	0.9	0.2
	15~19세	4.6	0.4	0.7	0.2	0.1	7.9	0.3
	20~24세	5.5	0.5	0.5	0.1	0.1	13.3	0.5
	25~29세	5.8	0.9	0.8	0.2	0.1	19.8	0.4
2017	0세	0.5	0.8	0.3	-	-	-	4.6
	1~4세	1.5	0.8	0.6	-	0.1	-	1.0
	5~9세	1.2	0.3	0.3	0.2	-	0.0	0.9
	10~14세	0.7	0.1	0.2	0.1	0.0	1.5	0.1
	15~19세	4.3	0.4	0.5	0.2	0.1	7.2	0.1
	20~24세	4.6	0.5	0.5	0.0	0.3	13.3	0.3
	25~29세	5.7	0.6	0.4	0.4	0.2	19.6	0.4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8월 7일 인출.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① 범죄 피해율

2017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범죄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표 Ⅳ-5-8), 전체 범죄피해건수는 86,353건이었으며, 2016년 대비 3,73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51,944건으로 2016년(55,689건)에 비해 3,745건이 감소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34,409건으로 2016년(34,398건)에 비해 1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8.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연도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청소년 전체		
	피해 건 수 (건)	추계 인구 수 (명)	피해율	피해 건 수 (건)	추계 인구 수 (명)	피해율	피해 건 수 (건)	추계 인구 수 (명)	피해율
2003	17,892	2,751,257	6.5	10,858	2,520,331	4.3	28,750	5,271,588	5.5
2004	25,000	2,705,387	9.2	17,038	2,463,396	6.9	42,038	5,168,783	8.1
2005	26,733	2,703,107	9.9	17,116	2,447,997	7.0	43,849	5,151,104	8.5
2006	27,526	2,729,734	10.1	17,355	2,450,374	7.1	44,881	5,180,108	8.7
2007	34,487	2,758,794	12.5	20,280	2,461,537	8.2	54,767	5,220,331	10.5
2008	38,680	2,797,367	13.8	22,580	2,480,493	9.1	61,260	5,277,860	11.6
2009	44,797	2,831,004	15.8	24,895	2,501,424	10.0	69,692	5,332,428	13.1
2010	39,695	2,841,982	14.0	24,363	2,518,442	9.7	64,058	5,360,428	12.0
2011	37,034	2,882,185	12.8	22,786	2,565,557	8.9	59,820	5,447,742	11.0
2012	65,614	2,841,888	23.1	36,657	2,539,523	14.4	102,271	5,381,411	19.0
2013	55,518	2,785,807	20.0	35,070	2,496,525	14.0	90,588	5,282,332	17.1
2014	56,796	-	-	33,772	-	-	90,568	-	-
2015	59,760	-	-	34,890	-	-	94,650	-	-
2016	55,689	-	-	34,398	-	-	90,087	-	-
2017	51,944	-	-	34,409	-	-	86,353		

* 출처: 통계청(각 연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1350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9월 28일 인출.
* 원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 주: 1) 피해율: 인구 1천 명당 피해건수 추계인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용
2) 청소년: 2003년부터 2016년까지는 만 13세에서 만 20세가 기준
2017년 자료는 13세 이상부터 20세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함.

②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77.5%로 나타났다. 성별·학교급별로 평균값 차이를 살펴보면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거주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하는 정도가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3.04점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3.03점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이 2.98점, 양부모가정 2.91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7년간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9.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8(0.80)	5.3	17.2	52.1	25.4	100.0(9,268)	
성별	남학생	3.13(0.81)	5.2	11.6	48.6	34.6	100.0(4,816)	534.346***
	여학생	2.82(0.75)	5.3	23.2	55.9	15.5	100.0(4,452)	
학교급	초등학교	3.08(0.83)	5.6	14.0	46.8	33.6	100.0(2,978)	170.124***
	중학교	2.92(0.78)	5.5	18.0	55.4	21.1	100.0(2,921)	
	고등학교	2.93(0.77)	4.8	19.2	54.1	21.9	100.0(3,370)	
지역 규모	대도시	2.93(0.77)	4.8	18.9	55.0	21.3	100.0(2,718)	5.737
	중소도시	2.95(0.80)	4.6	20.8	50.2	24.5	100.0(65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읍면지역	3.04(0.80)	4.6	15.8	50.4	29.1	100.0(3,7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1(0.80)	5.9	18.9	53.4	21.8	100.0(4,415)	71.675***
	한부모가정	3.03(0.79)	5.0	14.4	53.2	27.4	100.0(1,074)	
	조손가정	2.98(0.79)	5.1	16.9	52.4	25.5	100.0(8,405)	
	기타	2.90(0.81)	5.7	21.5	49.8	23.1	100.0(694)	
학업 성적	상	2.91(1.03)	16.2	8.5	43.6	31.7	100.0(86)	37.088***
	중	2.98(0.81)	5.5	17.0	51.5	26.0	100.0(76)	
	하	3.11(0.80)	4.4	13.7	48.2	33.7	100.0(3,273)	
경제적 수준	상	2.94(0.78)	5.4	17.8	54.5	22.4	100.0(3,895)	217.332***
	중	2.84(0.79)	6.5	21.4	53.9	18.2	100.0(2,091)	
	하	3.07(0.80)	4.7	14.4	50.2	30.6	100.0(5,32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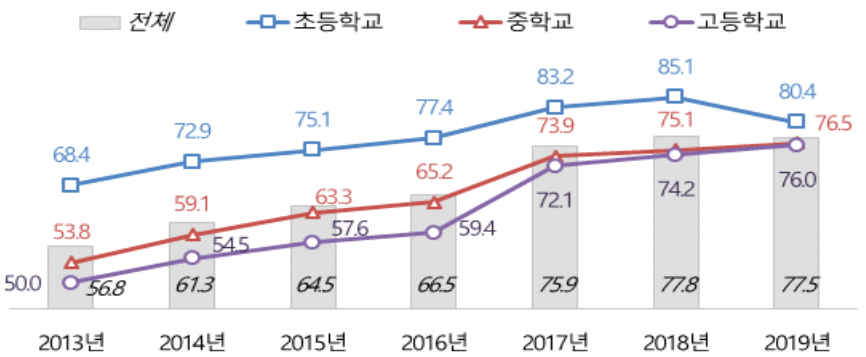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71.9%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지역이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생각할수록 자신의 거주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7년간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0.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4(0.77)	5.5	22.6	54.3	17.6	100.0(9,232)	
성별	남학생	2.93(0.81)	5.8	18.9	51.7	23.6	100.0(4,798)	274.716***
	여학생	2.74(0.72)	5.2	26.6	57.1	11.2	100.0(4,435)	
학교급	초등학교	2.90(0.82)	6.2	20.1	50.8	22.8	100.0(2,958)	105.771***
	중학교	2.78(0.75)	5.5	25.1	55.7	13.7	100.0(2,913)	
	고등학교	2.84(0.75)	4.8	22.6	56.2	16.4	100.0(3,361)	
지역 규모	대도시	2.82(0.75)	5.1	23.5	56.2	15.3	100.0(2,710)	16.255**
	중소도시	2.94(0.74)	3.9	19.0	56.2	20.9	100.0(651)	
	읍면지역	2.89(0.77)	4.9	21.1	54.4	19.5	100.0(3,76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8(0.77)	6.3	24.1	54.5	15.1	100.0(4,391)	50.633***
	한부모가정	2.91(0.77)	4.3	21.6	52.9	21.2	100.0(1,073)	
	조손가정	2.85(0.77)	5.4	22.2	54.7	17.7	100.0(8,377)	
	기타	2.78(0.77)	5.4	27.0	51.8	15.8	100.0(690)	
학업 성적	상	2.79(0.94)	12.5	19.1	45.8	22.6	100.0(83)	18.877*
	중	2.80(0.82)	6.6	25.5	49.2	18.7	100.0(76)	
	하	2.93(0.79)	4.7	20.6	51.7	23.1	100.0(3,259)	
경제적 수준	상	2.81(0.75)	5.7	22.6	56.7	14.9	100.0(3,879)	116.105***
	중	2.76(0.77)	6.3	25.7	53.9	14.0	100.0(2,086)	
	하	2.90(0.79)	5.3	20.6	53.1	21.0	100.0(5,303)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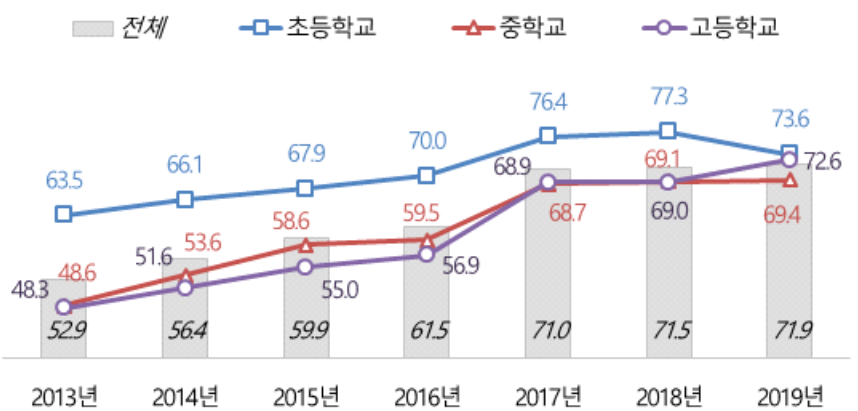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3) 보건서비스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①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의 지표로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을 설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소아 비만 유병률 관련 국가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소아청소년을 2세에서 18세로 설정하고, 2세~5세, 6세~11세, 12세~18세 등의 연령대에 따라 정상, 과체중, 비만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김영지 외, 2017: 245). 하지만 2013년에는 6세에서 18세로 조사대상 연령을 축소하고, 6세~11세, 12세~18세의 연령대에 대해 비만 유병률을 조사하였으며, 정상과 과체중은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동일 연령대에 대하여 정상, 과체중, 비만 등의 비율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였다(김영지 외, 2017: 245). 그리고 2017년도 자료부터는 정상, 과체중, 비만 등 세부목록이 사라지고, 그 대신 전체 소아청소년의 비만유병률 수치만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치도 연도별 수치가 아닌 분기별 수치로 변경하여 제시하고 있다.

7기(2016년~2017년)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면(표 Ⅳ-5-11), 6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유병률이 11.2%이며, 6기(2013~2015년)의 10.3%보다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기(2010~2012년)와 비교해 보더라도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비교해 보면 12~18세의 비만유병률은 12.0%로 6~11세의 1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11.5%로 여자 청소년(10.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11세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이 11.6%로 여자 청소년의 8.5%보다 높지만, 12~18세의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이 12.7%로 남자청소년의 1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1.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단위 : %(명))

구 분		'10-'12(5기)			'13-'15(6기)			'16-'17(7기)		
		N	분율(표준오차)		N	분율(표준오차)		N	분율(표준오차)	
전체	6-18세	3,981	10.2	(0.6)	3,300	10.3	(0.6)	2,232	11.2	(0.9)
	연령(세)									
	6-11	1,966	10.3	(0.8)	1,608	8.5	(0.7)	1,157	10.1	(1.1)
	12-18	2,015	10.1	(0.8)	1,692	11.5	(0.9)	1,075	12.0	(1.2)
남자	6-18세	2,124	11.1	(0.9)	1,747	11.2	(0.9)	1,138	11.5	(1.1)
	연령(세)									
	6-11	1,035	12.4	(1.3)	852	9.2	(1.1)	583	11.6	(1.5)
	12-18	1,089	10.2	(1.2)	895	12.7	(1.2)	555	11.3	(1.6)
여자	6-18세	1,857	9.2	(0.9)	1,553	9.1	(0.9)	1,094	10.9	(1.1)
	연령(세)									
	6-11	931	8.0	(1.0)	756	7.8	(1.0)	574	8.5	(1.3)
	12-18	926	10.0	(1.3)	797	10.1	(1.2)	520	12.7	(1.6)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a). 2017 국민건강통계. p.219.

* 주: 1) 소아청소년 비만유병률: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인 분율, 만 6-18세.

2017년을 기준으로 소아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을 살펴보면 1세~11세의 천식 유병률은 2.7%였으며, 남자의 경우 3.3%, 여자의 경우 2.1%로 여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12세~18세의 경우 전체 천식 유병률은 3.6%로 1세~11세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2.7%, 여자의 경우 4.6%로 여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의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의 변화를 보면(표 Ⅳ-5-12), 1세~11세의 천식 유병률은 2011년 8.3%에서 2016년에는 2.7%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매년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18세의 경우에도 천식 유병률은 2011년 3.3%에서 2017년 3.6%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2.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천식 유병률	1-11세	8.9(1.5)	606	7.6(1.4)	564	8.3(1.0)	1,170
		12-18세	3.9(1.2)	350	2.7(0.9)	306	3.3(0.7)	656
	소득수준	하	6.9(1.9)	219	7.6(2.2)	213	7.2(1.5)	432
		중하	7.2(2.1)	245	5.6(1.9)	216	6.4(1.4)	461
		중상	5.2(1.7)	246	3.1(1.5)	213	4.2(1.2)	459
		상	5.5(1.8)	239	4.1(1.4)	218	4.9(1.1)	457
2012	천식 유병률	1-11세	6.4(1.2)	560	3.5(1.0)	441	5.0(0.8)	1,001
		12-18세	3.3(1.2)	331	3.7(1.3)	278	3.5(0.9)	609
	소득수준	하	7.2(2.1)	218	5.2(1.9)	172	6.2(1.4)	390
		중하	4.6(1.4)	220	3.0(1.4)	178	3.8(1.0)	398
		중상	3.5(1.4)	222	2.7(1.1)	185	3.1(0.9)	407
		상	4.0(1.4)	226	3.1(1.7)	176	3.6(1.1)	402
2013	천식 유병률	1-11세	7.8(1.3)	581	3.8(0.9)	526	5.9(0.9)	1,107
		12-18세	4.4(1.2)	331	5.8(1.7)	315	5.0(1.0)	646
	소득수준	하	6.5(1.9)	228	4.3(1.6)	209	5.4(1.3)	437
		중하	7.9(2.1)	224	5.5(1.5)	206	6.7(1.4)	430
		중상	5.1(1.5)	243	6.5(2.5)	211	5.8(1.5)	454
		상	5.6(1.9)	210	2.3(1.1	210	4.0(1.2)	420
2014	천식 유병률[1)]	1-11세	3.8(1.0)	511	2.4(1.0)	457	3.1(0.7)	968
		12-18세	3.5(1.3)	261	3.0(1.1)	230	3.3(0.8)	491
	소득수준[2)]	하	1.9(0.9)	185	4.1(1.8)	168	2.9(1.0)	353
		중하	5.2(1.6)	196	5.0(2.4)	171	5.1(1.5)	367
		중상	3.5(1.9)	198	1.0(0.7)	173	2.3(1.0)	371
		상	3.3(1.4)	187	0.3(0.3)	173	1.9(0.7)	360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5	천식 유병률[1)]	1-11세	3.5(1.0)	417	3.1(0.9)	367	3.3(0.7)	804
		12-18세	6.8(1.6)	289	3.8(1.3)	240	5.4(1.0)	529
	소득수준[2)]	하	4.3(1.7)	176	2.0(1.3)	150	3.2	326
		중하	2.3(1.1)	181	4.1(1.5)	160	3.2	341
		중상	9.3(2.4)	176	3.0(1.5)	157	6.3	333
		상	4.5(1.9)	169	4.5(1.9)	157	4.5	326
2016	천식 유병률	1-11세	2.2(0.7)	568	2.3(0.8)	547	2.3(0.5)	1,115
		12-18세	5.5(1.5)	282	6.3(1.7)	270	5.9(1.1)	552
	소득수준	하	5.5(2.2)	202	6.4(2.1)	200	6.0(1.5)	402
		중하	2.5(1.2)	212	4.0(2.1)	211	3.2(0.9)	423
		중상	3.8(1.5)	210	3.3(1.8)	206	3.6(1.2)	416
		상	3.0(1.1)	221	2.1(1.2)	199	2.6(0.8)	420
2017	천식 유병률	1-11세	3.3(0.8)	508	2.1(0.8)	480	2.7(0.6)	988
		12-18세	2.7(0.9)	273	4.6(1.4)	246	3.6(0.8)	519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28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31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27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b). 2017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 주: 1) 천식유병률: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본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2017년도부터는 소득수준별 수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25-50%

2017년 통계 자료를 토대로 소아청소년의 각 질환별 유병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표 Ⅳ-5-13), 1세~11세의 경우 알레르기비염(21.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토피피부염(9.8%), 주의력결핍장애(0.4%)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세-18세의 경우에도 알레르기비염이 2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토피피부염(14.2%), 주의력 결핍장애(0.5%)의 순으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각 질환별 유병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5-13).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1세~11세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18세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장애의 경우 1세~11세는 2014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12~18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3.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0.6(0.3)	606	1.0(0.5)	564	0.8(0.3)	1,170
		12-18세	0.0(-)	351	0.7(0.4)	306	0.3(0.2)	657
	아토피피부염	1-11세	12.0(1.6)	606	13.4(1.8)	564	12.7(1.2)	1,170
		12-18세	7.0(1.4)	351	13.1(2.0)	306	9.8(1.3)	657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9(0.5)	606	0.4(0.3)	564	0.7(0.3)	1,170
		12-18세	0.7(0.4)	351	0.4(0.2)	306	0.5(0.2)	657
	요로감염	1-11세	3.3(0.9)	606	2.4(0.7)	564	2.9(0.6)	1,170
		12-18세	1.6(0.8)	351	0.4(0.3)	306	1.0(0.5)	657
	폐렴	1-11세	12.1(1.7)	606	11.8(2.0)	564	12.0(1.4)	1,170
		12-18세	4.2(1.2)	351	4.6(1.6)	306	4.4(1.0)	657
2012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3(0.8)	560	1.0(0.6)	441	1.1(0.5)	1001
		12-18세	0.0(-)	332	1.3(0.8)	278	0.6(0.4)	610
	아토피피부염	1-11세	15.6(2.2)	560	14.1(2.0)	441	14.9(1.6)	1001
		12-18세	8.8(1.9)	332	13.3(2.5)	278	10.9(1.5)	610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6(0.4)	560	0.3(0.2)	441	0.5(0.2)	1001
		12-18세	1.4(0.7)	332	0.6(0.4)	278	1.0(0.4)	610
	요로감염	1-11세	2.4(0.8)	560	1.6(0.6)	441	2.0(0.5)	1001
		12-18세	1.1(0.8)	332	0.7(0.5)	278	0.9(0.5)	610
	폐렴	1-11세	16.2(2.2)	560	15.2(2.4)	441	15.7(1.8)	1001
		12-18세	7.9(2.0)	332	6.8(1.8)	278	7.4(1.4)	610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3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4(0.6)	581	2.1(0.8)	526	1.7(0.5)	1,107
		12-18세	0.7(0.5)	330	1.9(0.8)	315	1.3(0.5)	645
	아토피피부염	1-11세	19.1(1.8)	581	18.8(2.1)	526	19.0(1.5)	1.107
		12-18세	10.0(1.9)	331	19.2(2.5)	315	14.4(1.5)	646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1.2(0.5)	581	0.0(-)	526	0.6(0.3)	1,107
		12-18세	2.7(1.0)	330	2.2(0.9)	315	2.5(0.7)	645
	요로감염	1-11세	5.3(1.1)	581	4.9(1.1)	526	5.1(0.8)	1,107
		12-18세	1.5(0.5)	331	1.5(0.7)	315	1.5(0.4)	646
	폐렴	1-11세	17.7(2.1)	581	17.7(1.8)	526	17.7(1.6)	1,107
		12-18세	7.9(1.8)	330	6.9(1.8)	315	7.4(1.3)	645
2014	선천성심장질환[1)]	1-11세	0.2(0.2)	512	0.9(0.5)	457	0.6(0.2)	969
		12-18세	0.4(0.4)	261	1.8(1.1)	230	1.1(0.6)	491
	아토피피부염[2)]	1-11세	15.7(2.0)	511	11.1(1.7)	457	13.5(1.3)	968
		12-18세	10.8(2.1)	260	15.6(2.7)	230	13.1(1.7)	490
	주의력결핍장애[3)]	1-11세	1.9(0.6)	512	0.0(-)	457	1.0(0.3)	969
		12-18세	2.2(1.0)	261	1.4(1.0)	230	1.8(0.7)	491
	요로감염[4)]	1-11세	2.8(0.7)	511	2.5(0.8)	456	2.7(5.0)	967
		12-18세	1.5(0.8)	261	1.1(0.7)	230	1.3(0.6)	491
	폐렴[5)]	1-11세	14.6(1.7)	512	12.3(1.6)	457	13.5(1.2)	969
		12-18세	4.6(1.2)	261	7.5(1.9)	230	6.0(1.1)	491
2015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0(0.5)	417	1.4(0.6)	387	1.2(0.4)	804
		12-18세	0.8(0.5)	289	0.5(0.4)	240	0.7(0.3)	529
	아토피피부염	1-11세	18.7(2.0)	416	10.6(1.6)	387	14.9(1.3)	804
		12-18세	14.3(2.2)	289	16.8(2.5)	240	15.5(1.7)	529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1.4(0.6)	417	0.3(0.3)	387	0.9(0.4)	804
		12-18세	3.1(1.1)	289	0.4(0.4)	240	1.9(0.6)	529
	요로감염	1-11세	3.3(0.8)	417	3.9(1.1)	387	3.6(0.7)	804
		12-18세	1.6(1.0)	289	0.9(0.5)	240	1.3(0.6)	529
	폐렴	1-11세	15.2(2.1)	417	12.5(1.9)	387	13.9(1.5)	804
		12-18세	6.7(17)	289	6.3(2.0)	240	6.5(1.3)	529
2016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1(0.4)	547	1.7(0.6)	547	1.4(0.4)	1,115
		12-18세	0.0(-)	270	0.7(0.4)	270	0.3(0.2)	552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아토피피부염	1-11세	14.4(1.6)	568	12.9(1.7)	547	13.7(1.2)	1,115
		12-18세	16.2(2.5)	282	15.2(2.5)	270	15.7(1.7)	552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7(0.4)	547	0.6(0.4)	547	0.7(0.3)	1,115
		12-18세	0.8(0.5)	270	0.0(-)	270	0.4(0.2)	552
	요로감염	1-11세	5.3(1.1)	568	2.5(0.8)	547	3.9(0.7)	1,115
		12-18세	1.6(0.7)	282	1.7(0.8)	270	1.7(0.5)	552
	폐렴	1-11세	15.5(2.1)	568	17.6(1.8)	547	16.5(1.3)	1,115
		12-18세	6.5(1.6)	282	6.4(1.5)	270	6.5(1.1)	552
2017	알레르기비염	1-11세	26.0(2.6)	508	17.1(1.9)	480	21.7(1.7)	988
		12-18세	32.1(3.4)	273	20.2(2.7)	246	26.4(2.2)	519
	아토피피부염	1-11세	9.1(1.7)	508	10.6(1.5)	480	9.8(1.1)	988
		12-18세	13.6(2.4)	273	14.9(2.4)	246	14.2(1.7)	519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7(0.4)	507	0.1(0.1)	480	0.4(0.3)	987
		12-18세	1.3(0.8)	273	1.0(0.6)	246	1.1(0.5)	519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28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3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27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b). 2017 국민건강통계. (엑셀버전_ 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 주: 1) 선천성심장질환 유병률: 의사로부터 선천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율
2)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
3) 주의력결핍장애 유병률: 의사로부터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분율
4) 요로감염 유병률: 의사로부터 요로감염 진단을 받은 분율
5) 폐렴 유병률: 의사로부터 폐렴 진단을 받은 분율
6) 분율 0.1%미만으로 표준오차 비제시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25-50%, **변동계수 50% 이상
7) 국민건강통계는 2017년도 부터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주의력결핍장애만 제공되고 있음.

② 보건교사 배치 현황

2018년 현재 전체 학교 수는 11,811개교이고, 총 7,936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보건교사 배치율은 67.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14). 학교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71.6%), 고등학교(71.3%), 중학교(5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14. 2018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 수	6,064	3,214	2,358	175	11,811
보건교사배치	4,343(71.6)	1,770(55.0)	1,683(71.3)	140(80.0)	7,936(67.1)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c). 2018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최근 7년간 보건교사 배치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소폭이긴 하지만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5.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건교사 배치율	65.4	65.5	64.9	65.4	63.9	64.3	64.5	67.1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c). 2018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③ 소아·청소년과 설치 현황

소아·청소년과 설치현황은 소아·청소년대상 전문의료기관 설치현황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 어린이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달빛어린이병원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어린이병원은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병원으로서 어린이 환자에 대한 복합적인 진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수가로 민간병원의 투자가 저조하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일반적 수요 감소, 소아의료 전문의료인력 확보 곤란, 상대적인 수익성 저하로 민간의 소아병상 공급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보도자료, 2007. 8. 13). 2019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병원을 살펴보면 총 5개의 어린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표 Ⅳ-5-16).

표 Ⅳ-5-16. 어린이 병원 운영 현황

(단위 : 년도)

구 분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선정연도	2005	2007	2007	2007	2010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40.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보도자료(2010.7.1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38541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보도자료(2007.8.1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41882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치 않거나 지역별 공급차이가 커서 국가지원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에 대해서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전문진료 분야별로 병원을 매 3년주기로 지정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보도자료, 2019. 9. 15).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사업으로 인해 어린이 공공 전문진로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전국에 총 7개소이며,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 3개소(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부산에 1개소(부산대병원), 경북에 1개소(경북대 병원), 강원에 1개소(강원대 병원), 전북에 1개소(전북대병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Ⅳ-5-17).

표 Ⅳ-5-17.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경북	강원	전북
개소 수(총7개소)	3	1	1	1	1
선정연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보도자료(2019.9.1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0865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 주: 제1기 공공전문진로센터 지정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며,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음.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소아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성인 응급실과는 별도로 소아전담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여 진료하는 병원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도자료, 2016. 7. 25). 2019년 현재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선정된 병원은 총 9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2개소, 대구와 울산, 인천, 경기서남, 경기동남, 충남, 경남에 각각 1개소씩 선정되어 있다(표 Ⅳ-5-18). 그리고 소아전문응급센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은 총 3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동남, 충남에 각각 1개소씩 선정되어 있다.

표 Ⅳ-5-18.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및 지정 현황(2019년 9월 기준)

(단위 : 개소)

시 도	계	시군구	의료기관명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지정
서울	2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	○
대구	1	중구	계명대동산병원	○	
울산	1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	
인천	1	남동구	인천길병원	○	
경기서남	1	안산시	고대안산병원	○	
경기동남	1	성남시	분당차병원	○	○
충남	1	천안시	순천향대천안병원	○	○
경남	1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	

* 출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019.9.26). 내부자료: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및 지정 현황(2019년 9월 기준).

또한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를 위해서 달빛어린이 병원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9월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 총 23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에 각각 4개소씩 선정·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과 경남에 3개소씩, 전북과 제주에 2개소씩, 그리고 인천, 대구, 강원, 충북, 경북에는 각각 1개소씩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Ⅳ-5-19).

표 Ⅳ-5-19.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및 운영 현황(2019년 9월 기준)

(단위 : 개소)

시도	계	시군구	의료기관명	시도	계	시군구	의료기관명
서울	4	용산구	소화아동병원	대구	1	남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서초구	연세곰돌이 소아청소년과의원	강원	1	원주시	연세메디컬의원
		강남구	세곡달빛의원	충북	1	청주시	손범수달빛의원
		노원구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의원	전북	2	전주시	대자인병원
경기	4	시흥시	센트럴병원			부안군	엔젤연합 소아청소년과의원
		용인시	강남병원	경북	1	김천시	김천제일병원
		고양시	일산우리들 소아청소년과의원	경남	3	김해시	경희의료원 교육협력중앙병원
		평택시	성세아이들병원			양산시	웅상중앙병원
인천	1	미추홀구	연세소아과의원			통영시	SCH서울아동병원
부산	3	동래구	대동병원	제주	2	제주시	탑동365일의원
		동구	일신기독병원			제주시	연동365일의원
		기장군	정관우리아동병원				

*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2019).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현황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2일 전부 개정·시행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c: 225). 그리고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전화1388, CYS-Net,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c: 225).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 대구와 광주에 최초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c: 225). 시·군·구 청소년상담복

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2018년 기준 전국에 21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c: 225~226). 2018년 현재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비율은 91.9%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Ⅳ-5-20).

표 Ⅳ-5-20.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개),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11	24	12	8	8	5	2	4	-	31	11	12	15	14	22	21	20	2
계	228	25	13	9	9	6	3	5	1	32	12	13	16	15	23	22	21	3
설치율	91.9	96.2	76.5	100	81.8	100	50.0	83.3	100	100	63.2	100	100	100	100	91.7	100	100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226.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조사하였다. 2017년 기준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살펴보면 50.7%가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21). 그리고 2010년 이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45.2%에서 2012년 49.7%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였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1.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0	2,115	509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73.9 (2.2)	57.4 (2.6)	31.7 (3.1)	16.3 (2.5)	45.2 (1.9)	39.3 (3.3)	46.9 (3.2)	49.7 (3.5)	46.1 (3.4)
2011	N	537	631	307	349	1,824	431	461	459	456
	분율 (표준오차)	74.0 (2.7)	56.6 (2.9)	36.0 (3.8)	24.2 (2.7)	47.3 (2.0)	42.4 (3.9)	49.6 (3.6)	49.6 (3.8)	50.1 (3.9)
2012	N	446	550	315	294	1,605	289	298	403	402
	분율 (표준오차)	78.6 (2.9)	59.7 (2.7)	38.3 (4.0)	23.5 (3.0)	49.7 (1.9)	48.0 (3.5)	50.5 (3.8)	51.1 (3.6)	48.4 (3.7)
2013	N	-	-	-	-	-	-	-	-	-
	분율 (표준오차)	-	-	-	-	-	-	-	-	-
2014	N	457	501	221	262	1,441	347	364	366	356
	분율 (표준오차)	79.2 (2.0)	55.2 (3.2)	31.4 (3.7)	20.1 (2.7)	47.8 (2.0)	51.4 (4.1)	49.8 (3.4)	45.2 (3.4)	44.9 (3.3)
2015	N	346	452	239	288	1,325	321	341	332	324
	분율 (표준오차)	76.7 (2.6)	56.2 (3.2)	42.1 (3.5)	19.8 (2.9)	49.3 (2.1)	53.1 (4.1)	48.0 (4.2)	47.4 (3.9)	49.3 (3.6)
2016	N	519	590	253	298	1,660	400	420	414	420
	분율 (표준오차)	73.3 (2.6)	55.6 (3.0)	33.6 (3.8)	17.1 (2.5)	45.7 (1.9)	45.4 (3.2)	50.0 (3.8)	43.6 (3.3)	43.9 (3.1)
2017	N	429	558	232	286	1,505	-	-	-	-
	분율 (표준오차)	77.3 (2.3)	60.4 (2.8)	44.9 (3.8)	18.9 (2.4)	50.7 (2.2)	-	-	-	-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12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13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12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b). 2017 국민건강통계. (엑셀버전_ 표번호 6-4.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주: 1)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2017년 국민건강통계에서는 소득수준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이 산출되지 않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본인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김영지 외, 2016: 320), 2017년에는 2.6%로 나타났으며, 2016년 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22).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18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는 '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의 자료를 통해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년도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2.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1	2,116	510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2.7 (0.6)	5.8 (1.0)	10.1 (1.8)	11.1 (2.1)	7.4 (0.8)	9.1 (1.9)	7.0 (1.4)	5.7 (1.1)	7.2 (1.7)
2011	N	538	632	307	349	1,826	432	461	459	457
	분율 (표준오차)	6.1 (1.5)	4.8 (1.2)	7.3 (1.7)	10.6 (2.0)	7.2 (0.9)	9.4 (2.4)	6.6 (1.6)	4.8 (1.3)	7.9 (1.9)
2012	N	447	554	315	294	1,610	390	398	407	402
	분율 (표준오차)	5.2 (2.0)*	4.8 (1.1)	8.7 (2.0)	12.5 (2.0)	7.8 (0.9)	7.6 (1.6)	9.9 (2.3)	8.1 (1.8)	5.6 (1.6)*
2013	N	485	622	292	353	1,752	437	429	454	420
	분율 (표준오차)	0.8 (0.4)	3.4 (0.9)	3.6 (1.1)	11.2 (1.9)	5.0 (0.7)	7.7 (1.7)	4.7 (1.2)*	4.9 (1.4)	2.3 (0.7)
2014	N	462	507	222	267	1,458	354	367	369	360
	분율 (표준오차)	1.0 (0.6)	2.8 (0.9)	7.9 (1.8)	8.3 (1.9)	4.7 (0.7)	5.2 (1.7)	4.7 (1.3)	5.9 (1.5)	2.4 (0.9)
2015	N	348	456	240	289	1,333	326	341	333	326
	분율 (표준오차)	1.7 (0.8)	3.4 (1.0)	4.3 (1.8)	6.5 (1.6)	3.9 (0.7)	5.0 (1.5)	4.0 (1.2)	3.2 (1.2)	3.7 (1.2)
2016	N	522	593	254	298	1667	402	423	416	420
	분율 (표준오차)	1.5 (0.6)	2.8 (0.8)	6.4 (1.7)	6.3 (1.6)	4.0 (0.6)	5.4 (1.5)	3.9 (1.0)	2.6 (0.9)	4.2 (1.4)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7	N	429	559	232	287	1,507	295	308	305	297
	분율 (표준오차)	2.7 (1.0)	0.3 (0.1)	3.1 (1.1)	5.0 (1.5)	2.6 (0.5)	3.5 (1.3)	2.5 (1.2)	2.6 (1.0)	1.1 (0.8)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32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14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1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b). 2017 국민건강통계. (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은 최근 1년간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김영지 외, 2016: 321),2017년의 경우 7.8%로 나타났으며, 2016년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Ⅳ-5-23). 연령대별로는 15세-18세가 11.1%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는 하(13.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25.3%에서 2017년 7.8%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Ⅳ-5-23.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69	359	2,112	510	514	531	523
	분율 (표준오차)	14.5 (1.7)	21.0 (2.4)	26.2 (2.8)	38.6 (3.5)	25.3 (1.5)	33.2 (2.9)	25.3 (3.2)	20.6 (2.2)	19.4 (2.2)
2011	N	538	632	308	347	1,825	433	459	459	457
	분율 (표준오차)	15.2 (2.0)	12.4 (1.8)	16.1 (2.4)	31.9 (2.6)	19.3 (1.1)	22.7 (2.1)	19.1 (2.6)	17.5 (2.3)	16.2 (2.3)
2012	N	447	554	314	294	1,609	389	399	406	402
	분율 (표준오차)	10.6 (1.8)	12.6 (1.8)	18.2 (2.6)	30.4 (2.9)	18.2 (1.3)	21.9 (2.5)	18.2 (2.4)	13.7 (2.7)	18.4 (3.2)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3	N	485	622	289	349	1,745	436	430	451	416
	분율	8.6	8.3	13.9	23.1	13.4	19.4	13.7	10.9	9.2
	(표준오차)	(1.8)	(1.5)	(2.2)	(2.8)	(1.1)	(26)	(2.0)	(1.8)	(1.8)
2014	N	462	507	224	265	1,458	353	367	371	359
	분율	7.3	9.2	8.5	21.3	11.8	15.2	12.3	5.7	13.2
	(표준오차)	(1.4)	(1.8)	(2.1)	(2.9)	(1.1)	(2.3)	(1.9)	(1.5)	(2.5)
2015	N	347	456	240	289	1,332	325	341	333	326
	분율	6.1	11.0	6.2	18.3	10.9	15.3	12.0	6.3	10.0
	(표준오차)	(1.5)	(1.9)	(1.7)	(2.4)	(1.0)	(2.6)	(1.9)	(1.4)	(2.0)
2016	N	522	592	254	298	1666	401	424	415	420
	분율	8.3	5.8	6.9	9.7	7.7	11.0	6.8	6.9	5.8
	(표준오차)	(1.3)	(1.2)	(1.9)	(1.9)	(0.8)	(2.1)	(1.6)	(1.5)	1.2)
2017	N	430	560	232	287	1,509	295	308	305	297
	분율	7.8	6.0	5.3	11.1	7.8	13.2	6.8	7.3	6.2
	(표준오차)	(1.6)	(1.2)	(1.8)	(2.2)	(0.9)	(2.6)	(1.5)	(1.6)	(2.2)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1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14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1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b). 2017 국민건강통계. (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① 흡연율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7: 255). 2018년 기준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흡연율은 6.7%로 나타났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24).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3.0%,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9.8%로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흡연율을 비교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흡연율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9년(12.8%)부터 2016년(6.3%)까지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는 증가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4. 흡연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2010	12.1	8.0	16.2	4.9	8.7	10.4	14.8	15.6	18.1
2011	12.1	8.1	16.1	4.4	8.7	10.9	15.5	16.1	16.9
2012	11.4	7.2	15.4	3.6	6.9	10.9	14.0	15.9	16.3
2013	9.7	5.5	13.8	2.3	5.5	8.6	12.1	14.3	15.0
2014	9.2	4.7	13.5	1.7	4.1	7.9	11.3	13.5	15.7
2015	7.8	3.3	11.7	0.9	3.2	5.3	9.1	11.9	14.0
2016	6.3	2.5	9.5	0.8	2.3	4.2	7.1	9.4	12.0
2017	6.4	3.0	9.2	0.7	3.2	4.9	7.0	9.7	10.9
2018	6.7	3.0	9.8	0.8	3.2	4.9	7.7	9.4	12.0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6-37.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7.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7.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② 음주율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7: 256). 2018년 기준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음주율은 16.9%로 나타났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25).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음주율은 8.5%,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4.2%로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율을 학년별로 비교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음주율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009년(21.1%)부터 2016년(15.0%)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였지만, 2017년부터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5. 음주율 추이

(단위: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2010	21.1	13.3	28.9	9.6	12.8	17.3	24.4	30.2	32.1
2011	20.6	12.0	29.0	8.3	11.8	15.6	24.3	30.6	32.3
2012	19.4	10.3	28.2	6.6	9.8	14.3	22.4	30.0	32.2
2013	16.3	8.3	23.8	5.4	7.8	11.7	17.6	26.5	27.3
2014	16.4	8.3	24.6	4.9	7.5	12.2	18.2	25.6	29.8
2015	16.7	7.4	24.9	4.6	7.1	10.0	17.6	27.5	29.5
2016	15.0	6.5	21.9	3.7	5.9	9.6	16.6	22.4	26.9
2017	16.1	7.6	23.0	4.2	7.7	11.0	16.5	25.1	26.9
2018	16.9	8.5	24.2	4.1	8.1	12.8	18.1	24.7	28.6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92-9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0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99.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③ 기타 약물 사용률

평생 약물 경험률은 11차 온라인 조사통계의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기에 2015년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지표이다(김영지 외, 2017: 257). 따라서 2015년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심으로 평생 약물 경험률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전체 청소년들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0.5%였으며, 2017년(0.6%)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26).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0.6%로 여학생 0.4%보다 높았다. 평생 약물 경험률의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6. 평생 약물 경험률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남학생	0.9	0.8	0.6	0.5	0.6	-	0.5	0.8	0.6
여학생	0.5	0.5	0.6	0.4	0.4	-	0.3	0.4	0.4
전 체	0.7	0.7	0.6	0.5	0.5	-	0.5	0.6	0.5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18-319.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59.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15.

* 주: 평생 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 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④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은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과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7: 257).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전체의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72.5%로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1.8%p 증가하였다(표 Ⅳ-5-27).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생이 79.1%로 고등학생(66.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8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7.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56.2	64.8	47.6	67.7	64.4	62.3	56.5	51.0	35.2
2011	54.1	62.6	45.7	64.0	63.2	60.6	54.0	48.4	34.3
2012	61.4	68.3	54.8	67.5	68.9	68.5	59.8	59.2	45.3
2013	61.9	68.7	55.4	67.4	70.0	68.8	60.1	59.2	47.1
2014	57.5	63.5	51.9	63.3	64.0	63.3	55.5	55.1	45.2
2015	59.6	65.7	54.2	64.0	67.5	65.5	57.6	59.8	45.5
2016	65.3	71.4	60.2	72.5	71.4	70.5	64.6	64.5	51.5
2017	70.7	77.2	65.4	77.8	78.0	75.7	67.5	70.0	58.8
2018	72.5	79.1	66.7	80.5	79.6	77.3	70.6	70.3	60.4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7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75.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71.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7: 258).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전체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42.0%로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0.8%p 증가하였다(표 Ⅳ-5-28).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생이 48.8%로 고등학생(36.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5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8.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36.3	46.6	26.1	53.5	45.8	40.7	33.2	28.5	16.5
2011	35.2	46.0	24.5	50.2	47.3	40.7	30.7	25.7	17.0
2012	34.3	44.3	24.6	47.1	44.6	41.6	29.9	25.9	18.1
2013	38.0	49.2	27.2	51.0	51.3	45.5	33.4	28.9	19.4
2014	33.1	42.0	24.8	45.5	41.5	39.5	30.6	25.3	18.8
2015	34.6	42.8	27.3	45.5	44.4	39.4	32.9	29.7	19.7
2016	38.8	46.8	32.2	49.3	47.4	44.1	36.5	35.3	24.7
2017	41.2	49.3	34.5	50.5	50.1	47.2	37.8	37.7	28.3
2018	42.0	48.8	36.1	51.4	48.3	46.9	41.0	39.4	29.2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24.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35.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125.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1) 건강에 대한 인식

① 주관적 건강평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건강하다는 긍정적인 응답(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이 86.9%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긍정적 응답 기준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표 Ⅳ-5-29.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3.17(0.67)	1.0	12.1	55.4	31.5	100.0(9,268)	
성별	남학생	3.21(0.69)	1.4	11.2	52.0	35.4	100.0(4,814)	86.871***
	여학생	3.13(0.64)	0.6	13.1	59.0	27.3	100.0(4,454)	
학교급	초등학교	3.34(0.65)	0.5	8.2	48.3	43.0	100.0(2,978)	327.344***
	중학교	3.15(0.66)	1.1	11.9	57.9	29.1	100.0(2,922)	
	고등학교	3.05(0.67)	1.4	15.7	59.4	23.4	100.0(3,36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9(0.66)	0.8	11.7	55.6	31.9	100.0(8,406)	81.243***
	한부모가정	3.05(0.73)	2.4	17.3	53.5	26.9	100.0(692)	
	조손가정	3.06(0.87)	7.9	11.3	48.2	32.6	100.0(86)	
	기타	3.18(0.60)	0.0	10.1	61.5	28.4	100.0(76)	
학업 성적	상	3.29(0.66)	0.7	9.3	50.8	39.2	100.0(3,275)	287.461***
	중	3.18(0.63)	0.7	10.6	58.8	29.9	100.0(3,895)	
	하	2.99(0.71)	2.0	19.4	56.1	22.5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3.27(0.65)	0.7	9.0	52.8	37.4	100.0(5,330)	351.614***
	중	3.08(0.65)	0.9	14.5	59.7	24.8	100.0(3,075)	
	하	2.89(0.73)	3.2	22.8	55.5	18.5	100.0(854)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족유형이 양부모인 가정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또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는 반대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83.6%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19년의 조사결과는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87.1%, 2019년: 86.9%).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대체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2018년: 87.3%, 2019년 87.0%), 고등학생은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2016년: 74.7%→2017년: 83.0%→2018년: 82.3%→2019년 82.8%).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근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2017년: 93.0%→2018년: 92.8%→2019년: 91.3%), 2019년 조사결과는 2013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 이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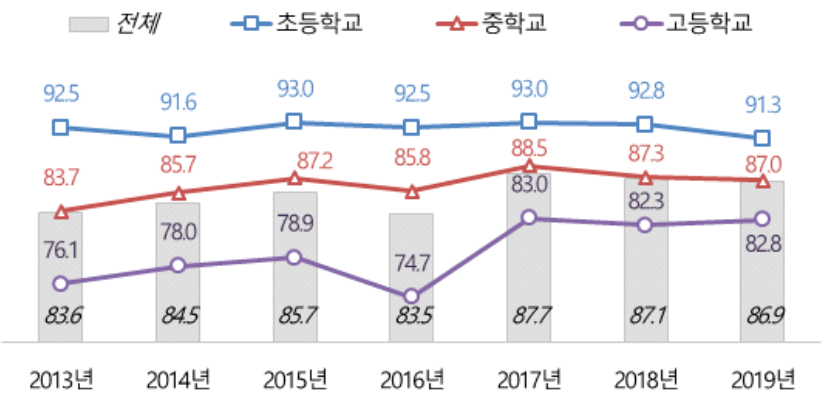

*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2) 신체적 건강

① 운동 실천율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운동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한 달에 1~2회 정도'는 20.5%,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23.8%, '일주일에 3회 이상'은 31.2%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4.5%여서 전체 조사대상 중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4명 중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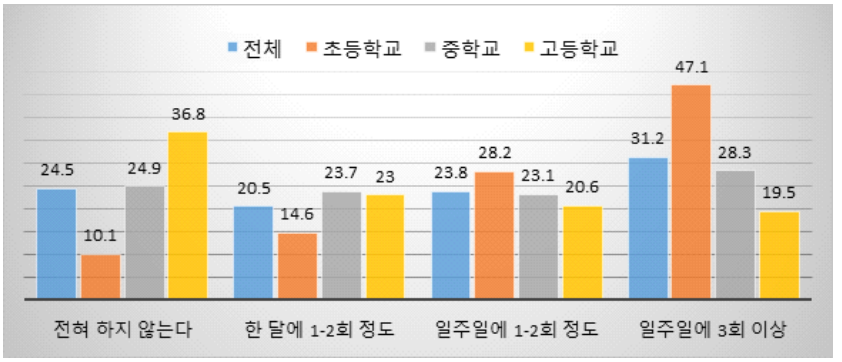

그림 Ⅳ-5-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아동·청소년 시기의 신체발달 및 건강에 운동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일반계고 학생이 특성화계고 학생보다, 한부모가정 응답자(양부모가정도 유사한 수준인 24.5%)가 다른 유형의 가정유형에서보다 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아 이러한 집단들의 운동 실천 및 신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3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4.5	20.5	23.8	31.2	100.0(9,264)	
성별	남학생	17.8	15.9	25.3	41.0	100.0(4,811)	606.738***
	여학생	31.7	25.5	22.3	20.5	100.0(4,453)	
학교급	초등학교	10.1	14.6	28.2	47.1	100.0(2,974)	971.685***
	중학교	24.9	23.7	23.1	28.3	100.0(2,922)	
	고등학교	36.8	23.0	20.6	19.5	100.0(3,369)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고교 유형	일반계고	38.9	23.2	19.4	18.6	100.0(2,718)	31.761***
	특성화계고	28.4	22.5	25.7	23.4	100.0(6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4.5	20.7	23.7	31.2	100.0(8,401)	20.656*
	한부모가정	26.9	19.9	24.8	28.5	100.0(694)	
	조손가정	18.3	12.7	21.6	47.4	100.0(86)	
	기타	13.8	19.8	30.7	35.6	100.0(76)	
학업 성적	상	19.5	17.9	26.5	36.1	100.0(3,275)	158.070***
	중	25.1	21.9	24.1	28.9	100.0(3,890)	
	하	31.1	22.1	19.1	27.7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19.2	19.4	26.5	35.0	100.0(5,326)	253.666***
	중	30.8	22.3	20.7	26.2	100.0(3,075)	
	하	34.8	21.4	18.5	25.3	100.0(854)	

*p<.05, ***p<.001

한 달에 1~2회 이상 운동을 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큰 폭은 아니나 감소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전년대비 1.3% 정도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90% 내외를 유지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학생은 가장 높은 운동 비율을 보인 2014년에 81.7%를 기록한 이후 2019년 75.1%까지 6.6%p정도 감소하였고, 고등학생 역시 동일 연도 71.1%에서, 2019년 63.1%로 8.0%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생 청소년들의 운동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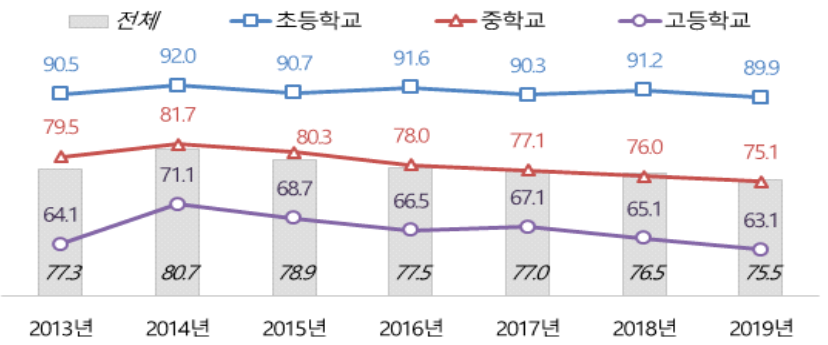

*주) '전혀 하지 않는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②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수면시간과 취침시간을 조사하여 수면시간을 산출한 결과, 전체 평균 수면시간은 7.33시간(시간 및 분으로 환산 시 약 7시간 2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면시간을 기준으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7.46시간, 여학생은 7.19시간으로 여학생의 수면시간이 더 적었다. 학교급별로는 시간차가 컸는데 초등학생은 8.73시간인데 비해, 중학생은 7.37시간, 그리고 고등학생은 6.04시간이었다. 특히 일반계고 학생의 경우 5.94시간으로 특성화계고 학생의 6.44시간보다 훨씬 적은 수면시간을 나타냈다(기초분석보고서 표 Ⅲ-5-5). 조손가정과 기타가정 응답자의 수면시간이 양부모 및 한부모가정에서보다 더 적었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평균 수면시간이 훨씬 더 적었다.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20%에 달했으며, 남학생은 16.7%인데 비해 여학생은 24.3%, 그리고 초등학생은 1.3%, 중학생은 10.7%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45.9%(일반계고 49.5%, 특성화계고 31.6%)로 나타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집단에서 6시간 미만 수면시간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5-31. 수면 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N)
전체		6.4	14.0	18.2	20.9	22.3	18.2	7.33(1.58)	100.0(9,147)
성별	남학생	5.0	11.7	17.6	21.8	24.6	19.2	7.46(1.53)	100.0(4,765)
	여학생	7.8	16.5	18.9	20.0	19.8	17.1	7.19(1.62)	100.0(4,382)
학교급	초등학교	0.3	1.0	3.5	13.0	34.8	47.4	8.73(1.04)	100.0(2,954)
	중학교	2.6	8.1	19.4	33.2	28.8	7.9	7.37(1.17)	100.0(2,889)
	고등학교	15.1	30.8	30.4	17.3	5.3	1.1	6.04(1.14)	100.0(3,30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4	14.2	18.1	20.7	22.3	18.3	7.33(1.59)	100.0(8,308)
	한부모가정	6.4	13.6	20.2	25.1	21.8	13.0	7.20(1.46)	100.0(675)
	조손가정	2.6	8.9	19.4	15.3	20.5	33.3	7.80(1.60)	100.0(85)
	기타	6.7	4.7	12.0	14.8	31.4	30.4	7.91(1.52)	100.0(73)
학업 성적	상	4.3	11.0	15.6	18.5	25.4	25.3	7.67(1.56)	100.0(3,254)
	중	6.5	14.1	16.8	21.6	22.7	18.2	7.35(1.58)	100.0(3,844)
	하	9.2	18.7	25.2	23.7	16.4	6.8	6.75(1.43)	100.0(2,041)
경제적 수준	상	5.5	11.6	15.9	20.2	24.2	22.7	7.55(1.59)	100.0(5,273)
	중	7.0	15.9	21.7	21.5	20.4	13.6	7.11(1.52)	100.0(3,031)
	하	9.6	22.7	20.7	23.7	17.1	6.2	6.70(1.45)	100.0(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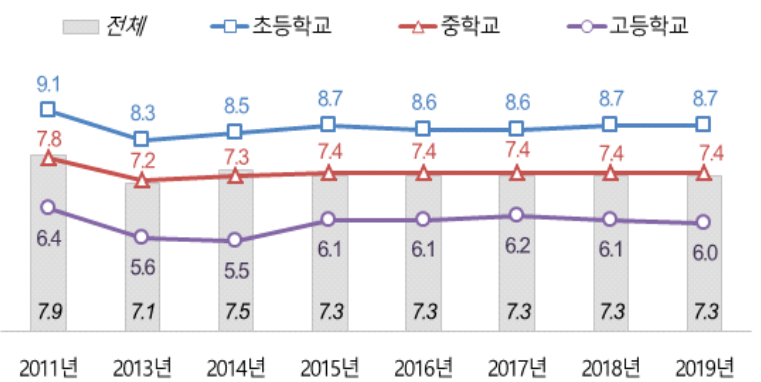

그림 Ⅳ-5-6.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평균값 기준)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 이후 큰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특히 2015년부터는 전체 평균 수면시간이 7.3시간으로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각 학교급별로도 큰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수면 부족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학생(57.8%)이 남학생(47.0%)보다, 그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36.1%, 중: 50.0%, 고: 68.2%), 일반계고 학생이 특성화계고 학생보다 더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게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집단 특성에 따른 수면부족 차이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배경변인별 집단 간 수면부족 응답률 차이는 앞서 조사한 평균 수면시간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Ⅳ-5-32. 수면 부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52.2	47.8	100.0(9,263)	
성별	남학생	47.0	53.0	100.0(4,812)	106.770***
	여학생	57.8	42.2	100.0(4,451)	
학교급	초등학교	36.1	63.9	100.0(2,975)	660.158***
	중학교	50.0	50.0	100.0(2,921)	
	고등학교	68.2	31.8	100.0(3,3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70.0	30.0	100.0(2,718)	20.078***
	특성화계고	60.8	39.2	100.0(650)	
학업 성적	상	47.8	52.2	100.0(3,275)	116.699***
	중	50.4	49.6	100.0(3,891)	
	하	62.4	37.6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47.1	52.9	100.0(5,327)	173.117***
	중	56.4	43.6	100.0(3,073)	
	하	68.9	31.1	100.0(854)	

***$p<.001$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값 기준으로 과반수가 약간 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중학생의 경우 다소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전년대비 3%p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2018년: 33.1%, 2019년: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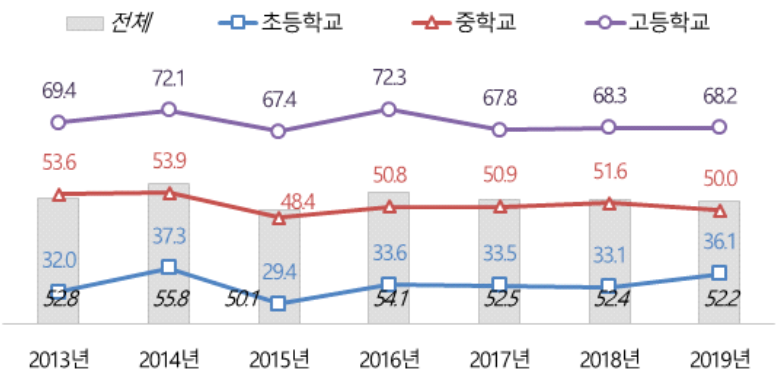

*주) 수면부족에 '예'라고 응답한 값(단위: %)

그림 Ⅳ-5-7.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면부족의 원인으로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이 2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학원/과외가 19.4%로 나타나 학업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사이트 이용과 채팅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각각 12.3%, 12.7%였고,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9.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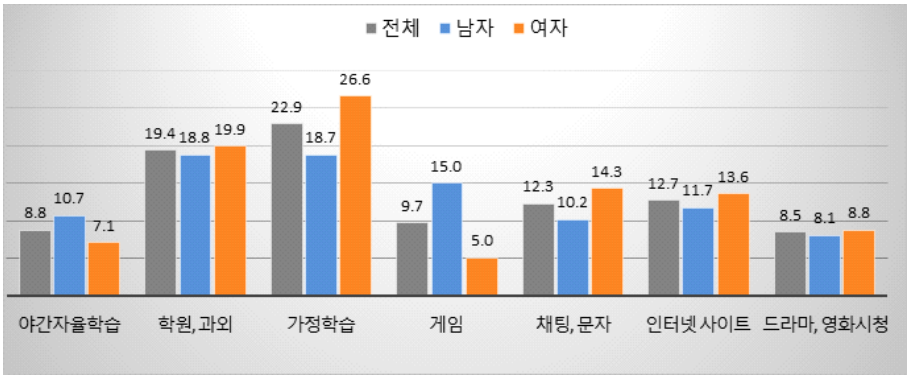

그림 Ⅳ-5-8. 수면이 부족한 이유(전체, 성별)

배경변인별 수면부족 이유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학업(가정학습+학원·과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특정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여학생이(46.5%) 남학생보다(37.5%)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초등학생이 다른 교급에 비해(초: 54.6%, 중: 36.0%, 고: 41.1%)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학업으로 인해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초등학생의 절반이 넘었다. 일반계고 학생이(45.4%) 특성화계고 학생(19.6%)보다 학업에 따른 수면부족 응답이 많았는데, 특성화계고 학생의 경우는 게임과 채팅/문자 메시지 등으로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일반계고에 비해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지역의 응답자가 다른 지역에서보다(대도시: 46.7%, 중소도시: 40.5%, 읍면지역: 33.2%),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학업(가정학습+학원·과외)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생에게서 학원과 과외, 또 가정학습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면부족이 게임인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다른 교급의 학생들보다, 또 조손가정과 기타가정이 다른 가정유형의 응답자들보다, 그리고 학업성적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게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Ⅳ-5-33.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휴대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8.8	19.4	22.9	9.7	12.3	12.7	8.5	5.7	100.0(4,722)
성별	남학생	10.7	18.8	18.7	15.0	10.2	11.7	8.1	6.7	100.0(2,208)
	여학생	7.1	19.9	26.6	5.0	14.3	13.6	8.8	4.7	100.0(2,514)
학교급	초등학교	0.0	29.0	25.6	15.3	4.6	10.0	11.7	3.9	100.0(977)
	중학교	2.5	17.5	18.5	12.4	17.3	16.5	9.3	5.9	100.0(1,457)
	고등학교	16.5	16.5	24.6	5.6	12.5	11.5	6.6	6.3	100.0(2,288)
고교 유형	일반계고	17.3	18.0	27.4	4.6	10.3	11.7	5.8	4.9	100.0(1,897)
	특성화계고	12.5	8.9	10.7	10.3	23.5	10.8	10.2	13.2	100.0(391)
지역 규모	대도시	8.0	21.1	25.6	8.7	11.3	11.3	8.2	5.7	100.0(1,974)
	중소도시	7.4	18.9	21.6	10.3	13.5	13.5	8.9	5.6	100.0(2,181)
	읍면지역	16.5	15.0	18.2	10.7	11.4	14.6	7.7	5.9	100.0(56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	19.9	23.3	9.1	11.9	12.6	8.6	5.7	100.0(4,281)
	한부모가정	6.2	13.6	20.7	14.0	17.5	14.2	7.7	6.1	100.0(366)
	조손가정	16.5	24.3	2.3	19.3	13.9	10.0	10.6	3.1	100.0(40)
	기타	15.0	16.4	13.2	25.4	6.3	12.6	6.1	4.9	100.0(32)
학업 성적	상	9.8	22.4	29.3	7.8	7.5	11.4	7.5	4.4	100.0(1,524)
	중	7.6	21.0	23.3	9.3	11.5	13.3	8.8	5.1	100.0(1,913)
	하	9.3	13.4	14.7	12.6	19.4	13.5	9.3	7.9	100.0(1,280)
경제적 수준	상	8.3	21.4	25.7	9.0	11.2	11.4	8.3	4.8	100.0(2,451)
	중	8.3	18.3	19.2	10.8	14.0	14.7	8.6	6.2	100.0(1,691)
	하	12.3	14.3	22.2	9.4	12.8	12.3	8.9	7.8	100.0(576)

전체 값을 기준으로 수면부족 이유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학업(학원·과외, 가정학습)의 경우 수면부족 이유에 대한 응답률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수면부족의 이유에 대한 응답률이 전년도 수준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학원과 과외를 수면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년대비 약 5.6%p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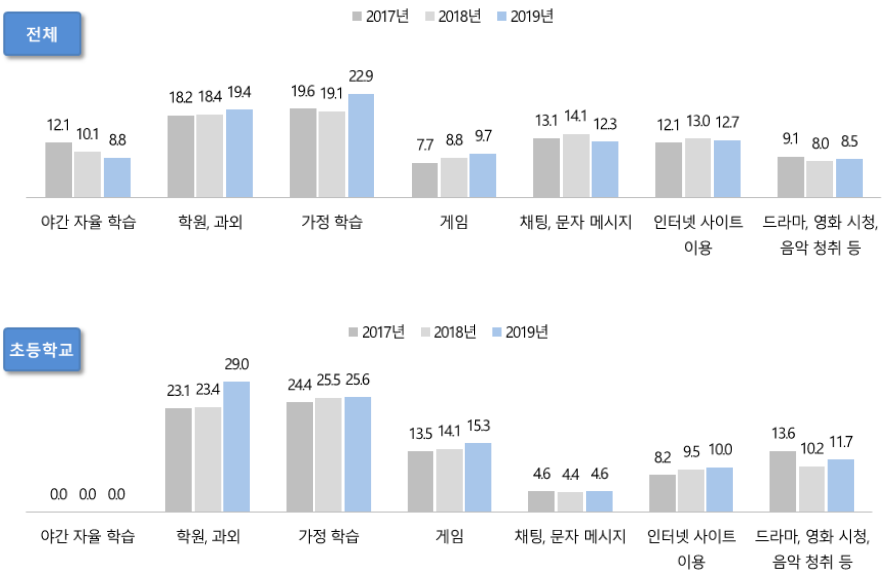

그림 Ⅳ-5-9.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전체값 초등, 기타 값 제외)

중학생의 경우는 가정학습을 수면부족으로 꼽은 비율이 전년대비 2.6%p 증가하였으나, 학원/과외를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2.4%p가 감소하였으며 다른 이유들에 대한 응답률의 연도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게임에 따른 수면부족 응답률이 다소 증가 추세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2017년: 8.9%, 2018년: 11.6%, 2019년: 12.4%).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을 수면부족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였으나(2017년: 23.1%, 2018년: 19.2%, 2019년: 16.5%), 학원과외, 특히 가정학습을 수면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5.9%p 증가하였다. 수면부족 사유 중 게임이 미세한 수준에서 증가하였고, 채팅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의 경우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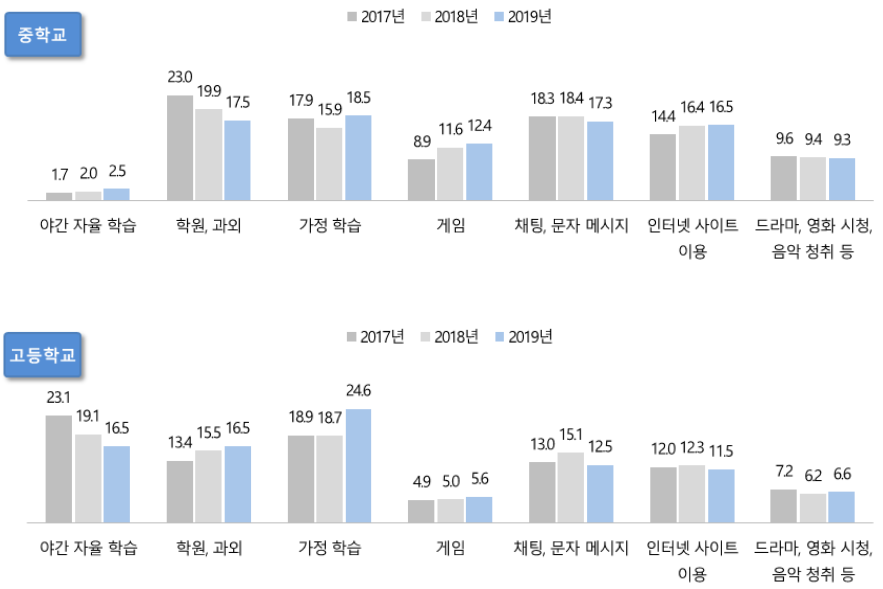

그림 Ⅳ-5-10.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중·고, 기타 값 제외)

수면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1순위와 2순위까지 조사하여 이를 합쳐 산출한 통계표는 〈표 Ⅳ-5-34〉와 같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은 수면부족의 이유로 학원/과외 34.8%, 가정학습 38.9%, 인터넷 사이트 이용 31.3%로 응답했으며, 채팅/문자메시지 24.9%, 게임과 드라마 및 영화 시청 등은 약 21% 내외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중복응답).

학교급별로 보면 역시 초등학생이 학원/과외, 가정학습을 수면부족의 1순위, 2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학교급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이유에 대해 일반계고 학생들의 응답이 특성화계고 학생보다 높았다. 대도시, 양부모가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게서 역시 학업을 수면부족 1, 2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수면부족 이유 중 게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다른 학교급 학생들보다, 특성화계고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보다, 그리고 중소도시 지역의 응답

자가 대도시나 읍면지역에서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조손가정과 기타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했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게임이 수면부족인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조사 결과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Ⅳ-5-34.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 2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휴대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11.8	34.8	38.9	20.8	24.9	31.3	20.9	8.7	100.0(4,793)
성별	남학생	13.9	32.6	33.8	31.0	20.9	29.3	19.6	9.8	100.0(2,242)
	여학생	9.9	36.7	43.3	11.9	28.4	33.0	22.0	7.7	100.0(2,551)
학교급	초등학교	0.0	39.7	47.9	26.8	12.3	22.4	27.2	5.2	100.0(1,048)
	중학교	4.0	35.8	30.3	28.0	30.9	35.7	22.0	9.3	100.0(1,457)
	고등학교	22.2	32.0	40.2	13.4	26.8	32.5	17.3	9.9	100.0(2,288)
고교 유형	일반계고	23.7	35.2	44.5	11.8	24.5	31.7	15.3	7.7	100.0(1,897)
	특성화계고	14.8	16.0	19.1	21.3	37.9	36.9	26.9	20.5	100.0(391)
지역 규모	대도시	11.4	37.7	42.9	18.5	22.9	30.9	19.0	8.6	100.0(1,995)
	중소도시	9.4	33.4	36.6	22.8	26.9	32.1	22.9	8.3	100.0(2,227)
	읍면지역	23.0	30.1	33.5	21.4	23.9	29.5	19.6	10.2	100.0(57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9	35.6	39.8	20.1	24.7	30.7	20.7	8.5	100.0(4,345)
	한부모가정	10.2	25.3	30.9	26.5	27.1	39.2	22.2	10.7	100.0(373)
	조손가정	16.5	33.2	17.1	31.4	34.6	25.8	19.9	6.5	100.0(40)
	기타	14.6	37.5	26.5	41.7	17.2	26.8	24.8	4.8	100.0(33)
학업 성적	상	12.8	41.3	48.6	18.4	16.0	28.3	18.9	6.8	100.0(1,550)
	중	10.8	36.1	39.7	20.7	24.7	31.0	21.1	7.9	100.0(1,947)
	하	12.1	25.0	26.0	23.8	35.7	35.4	22.9	12.0	100.0(1,292)
경제적 수준	상	10.8	38.7	43.2	20.4	22.2	28.3	20.3	7.1	100.0(2,491)
	중	11.8	31.7	33.6	21.9	28.3	34.9	21.4	9.6	100.0(1,716)
	하	16.2	27.4	36.0	19.3	26.3	33.6	21.7	12.4	100.0(583)

③ 비만율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자아상(self-image)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교육부 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체질량지수 BMI 기준)을 살펴보면(표 Ⅳ-5-35), 2018년 전체 기준으로 저체중은 5.5%, 정상 비율은 69.5%, 과체중 10.6%, 비만 14.4%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추이에서 보듯이(그림 Ⅳ-5-11)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11.5%→ 2015년 11.9%→ 2016년 12.9%→ 2017년 13.6%→ 2018년 14.4%). 또한 과체중 비율도 역시 증가하였고, 정상 비율이 감소하면서(2014년 72.9%→ 2015년 72.3%→ 2016년 71.2%→, 2017년 70.3% → 2018년 69.5%), 70% 아래로 떨어졌다(표 Ⅳ-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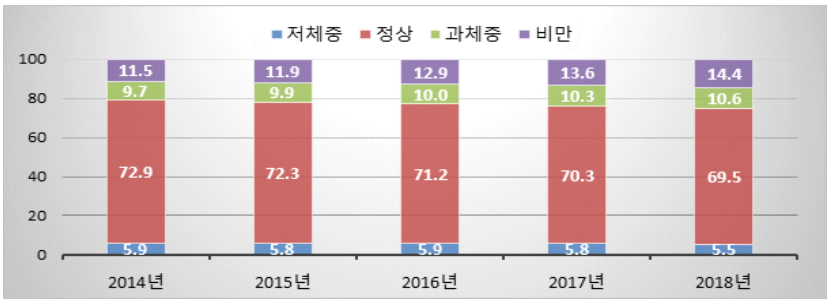

* 주: 본 그림은 표 Ⅳ-5-35의 일부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Ⅳ-5-11. 비만도 현황(연도별 추이)

표 Ⅳ-5-35. 2014~2018년도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

(단위 : %)

연도/구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2014년	전체		5.9	72.9	9.7	11.5
	초등학생	남학생	5.6	71.8	10.1	12.4
		여학생	6.4	75.7	9.2	8.7
	중학생	남학생	6.6	71.6	9.3	12.5
		여학생	4.8	74.8	10.2	10.2
	고등학생	남학생	7.2	69.3	9.7	13.8
		여학생	4.7	73.6	9.7	12.0

연도/구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2015년	전체		5.8	72.3	9.9	11.9
	초등학생	남학생	5.7	71.6	10.4	12.3
		여학생	6.5	74.8	9.5	9.2
	중학생	남학생	6.6	70.4	10.1	12.9
		여학생	5.2	74.8	10.1	9.9
	고등학생	남학생	6.4	69.0	9.2	15.4
		여학생	4.4	72.4	10.3	12.8
2016년	전체		5.9	71.2	10.0	12.9
	초등학생	남학생	5.9	69.5	10.9	13.8
		여학생	6.6	75.5	9.0	8.8
	중학생	남학생	6.2	68.3	10.3	15.2
		여학생	5.0	74.3	10.1	10.6
	고등학생	남학생	6.8	67.0	9.9	16.3
		여학생	4.2	71.9	10.0	13.9
2017년	전체		5.8	70.3	10.3	13.6
	초등학생	남학생	5.4	69.9	10.8	14.0
		여학생	6.8	73.1	10.2	9.9
	중학생	남학생	5.9	68.7	10.6	14.8
		여학생	5.1	74.5	9.4	11.0
	고등학생	남학생	6.6	64.8	10.4	18.1
		여학생	4.8	70.3	9.9	15.1
2018년	전체		5.5	69.5	10.6	14.4
	초등학생	남학생	4.9	68.3	11.3	15.5
		여학생	6.0	72.9	10.2	10.9
	중학생	남학생	5.7	67.6	10.6	16.0
		여학생	4.8	72.9	9.9	12.4
	고등학생	남학생	6.3	64.6	10.7	18.4
		여학생	5.2	69.7	10.4	14.7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교육부(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5.

* 주: 1) 체질량지수(BMI, kg/m2) 기준 비만율 : 저체중군, 5백분위수 미만 / 정상, 5백분위수 이상 85백분위수 이하 / 과체중군, 85백분위수초과 95백분위수 미만 / 비만군, 95백분위수 이상
2) 2017년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적용하여 분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Ⅳ-5-35) 남학생의 비만율이 여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학교급별로도 차이를 보여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2014년 13.8%→ 2015년 15.4%→ 2016년 16.3%→ 2017년 18.1%→ 2018년 18.4%),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신적 건강

①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최근 통계청(2019. 9. 24)에서는 '2018 사망원인통계'에서 10~29세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10~19세까지의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다(그림 Ⅳ-5-12 참조). 또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보고 역시 우리사회에서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야 함을 보여준다(통계청, 2019. 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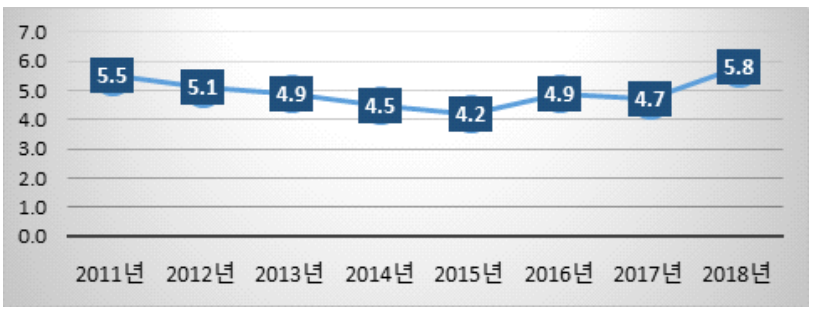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2013. 09. 25). 보도자료: 2012년 사망원인통계 p.17,
통계청(2014. 09. 23). 보도자료: 2013년 사망원인통계 p.17.
통계청(2015. 09. 23). 보도자료: 2014년 사망원인통계 p.16.
통계청(2016. 09. 27). 보도자료: 2015년 사망원인통계 p.20.
통계청(2017. 09. 22). 보도자료: 2016년 사망원인통계 p.19.
통계청(2018. 09. 19). 보도자료: 2017년 사망원인통계 p.19.
통계청(2019. 09. 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p.18.

그림 Ⅳ-5-12. 인구 십만명당 10~19세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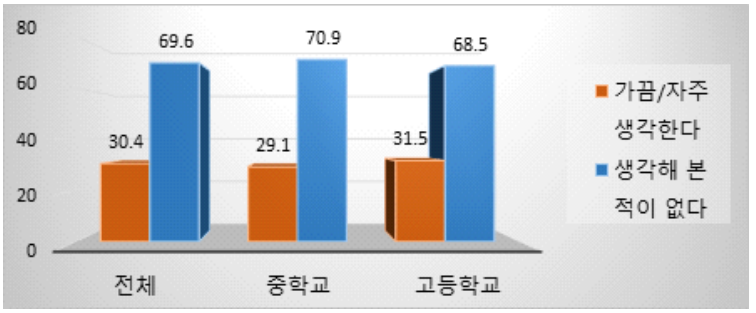

그림 Ⅳ-5-13.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단위: 비율)

본 조사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끔 생각한다'는 25.9%, '자주 생각한다'는 4.5%,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69.6%의 응답률을 보여, 전체 30% 정도인 1,9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청소년에게서 죽고 싶다(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39.4%로 남자청소년의 22.2%보다 훨씬 높을 뿐 만 아니라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고등학생이 죽고 싶다고 가끔 또는 자주 생각한 비율은 31.5%였으며 중학생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29.1%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계고 학생(32.8%)이 특성화고 학생(26.0%)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다.

한부모가정(36.2%)과 조손가정(34.2%)의 응답자가 양부모가정(29.8%)과 기타 가정(25.1%)에서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더 많았다. 또한 학업성적(상: 25.1%, 중: 27.7%, 하: 39.0%)과 경제적 수준(상: 25.0%, 중: 31.7%, 하: 49.0%)을 낮게 인식할수록 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집단의 경우 절반가까이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개입과 자살 예방 대책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Ⅳ-5-36.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전체		69.6	25.9	4.5	100.0(6,275)	
성별	남학생	77.9	19.6	2.6	100.0(3,273)	229.584***
	여학생	60.6	32.8	6.6	100.0(3,002)	
고교 유형	일반계고	67.2	27.8	5.0	100.0(2,713)	11.257**
	특성화계고	74.0	22.0	4.0	100.0(64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0.2	25.5	4.3	100.0(5,641)	15.186*
	한부모가정	63.8	30.2	6.0	100.0(545)	
	조손가정	65.8	28.0	6.2	100.0(43)	
	기타	74.9	15.8	9.3	100.0(43)	
학업 성적	상	74.9	22.1	3.0	100.0(1,771)	11107.336***
	중	72.3	23.8	3.9	100.0(2,623)	
	하	60.9	32.2	6.8	100.0(1,876)	
경제적 수준	상	75.0	22.2	2.8	100.0(3,165)	206.953***
	중	68.3	27.1	4.6	100.0(2,368)	
	하	51.0	37.5	11.5	100.0(738)	

*p<.05, **p<.01, ***p<.001

동일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률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Ⅲ-5-14), 전체 응답값 기준 2015년과 2016년에 다소 감소했던 응답률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28.6%→ 2017년 33.4%→ 2018년 33.8%). 2018년에 33.8%에 달했던 응답률은 2019년 조사결과(30.4%)에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30%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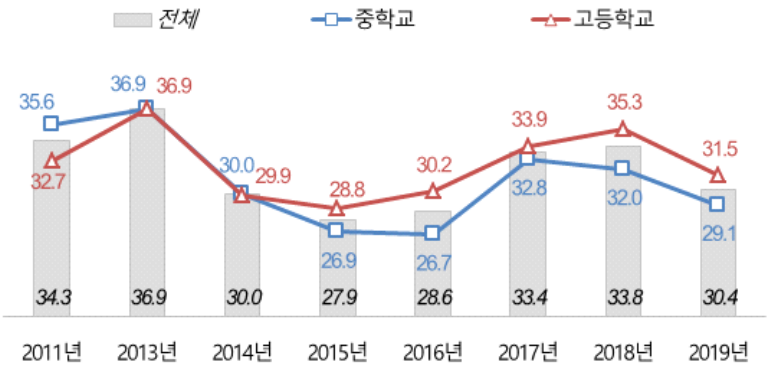

*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합계(단위: %) ** 2011년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으로 질문함.

그림 Ⅳ-5-14.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 Ⅳ-5-37) 전체의 38.6%가 학업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를 꼽았다.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9%, 가족 간의 갈등 17.4%,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8.0%, 경제적인 어려움 1.7%, 기타 사유 12.4%로 학업문제와 미래(진로) 불안감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는 우울증을 포함한 건강상의 이유, 학교 교사와의 문제, 게임에 따른 질타 등이 있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학교급별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문제(중: 34.5%, 고: 41.9%)와 미래에 대한 불안(중: 16.6%, 고: 26.1%)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학생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중: 23.2%, 고: 12.8%)에 따른 이유가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 중에서 학업문제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응답률은 양부모가정(40.3%)의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았고, 가족 간의 갈등과 선후배/또래와의 갈등의 경우는 한부모가정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업성적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학업문제로 죽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상: 43.7%, 중: 41.7%, 하: 32.3%),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학업성적이 낮다고 인식한 집단에게서 더 높았다(상: 19.1%, 중: 21.5%, 하: 24.0%).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집단의 경우 학업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죽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Ⅳ-5-37. 죽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또래와의 갈등(학교 폭력 등)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χ^2
전체		38.6	17.4	8.0	1.7	21.9	12.4	100.0(1,870)	
성별	남학생	38.4	18.4	5.1	1.5	23.7	12.8	100.0(706)	15.135*
	여학생	38.8	16.8	9.7	1.8	20.7	12.2	100.0(1,164)	
학교급	중학교	34.5	23.2	11.6	2.2	16.6	11.8	100.0(830)	82.760***
	고등학교	41.9	12.8	5.0	1.3	26.1	13.0	100.0(1,039)	
고교 유형	일반계고	45.0	11.9	4.5	1.2	26.0	11.4	100.0(878)	32.036***
	특성화계고	24.8	17.5	8.2	1.7	26.2	21.6	100.0(1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3	16.7	7.6	1.5	21.4	12.5	100.0(1,649)	40.981**
	한부모가정	24.9	25.8	11.2	2.3	25.4	10.4	100.0(194)	
	조손가정	33.7	0.0	8.3	6.6	31.0	20.4	100.0(14)	
	기타	36.9	5.8	7.8	10.8	14.2	24.5	100.0(11)	
학업 성적	상	43.7	18.4	5.0	0.8	19.1	13.1	100.0(440)	31.328**
	중	41.7	17.0	7.6	1.8	21.5	10.4	100.0(709)	
	하	32.5	17.1	10.2	2.1	24.0	14.1	100.0(719)	
경제적 수준	상	40.8	16.4	9.4	0.5	20.6	12.3	100.0(776)	69.999***
	중	40.5	16.1	5.9	0.9	23.6	13.0	100.0(736)	
	하	30.1	22.1	9.1	5.8	21.2	11.6	100.0(355)	

*p<.05, **p<.01, ***p<.001

주)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문항 중 '학교 성적'이 '학업문제'로 수정되었으며,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보기문항이 새로 추가됨.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 이유들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그림 Ⅳ-5-15), 전체 값 기준으로 학업문제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응답률은 2017년 40.1%, 2018년 37.2%, 2019년 38.6%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문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약간 더 증가하였다(2018년 39.7%→ 2019년 41.9). 중학생의 경우는 학업 문제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응답은 감소추세였으나,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죽고 싶은 이유로 꼽은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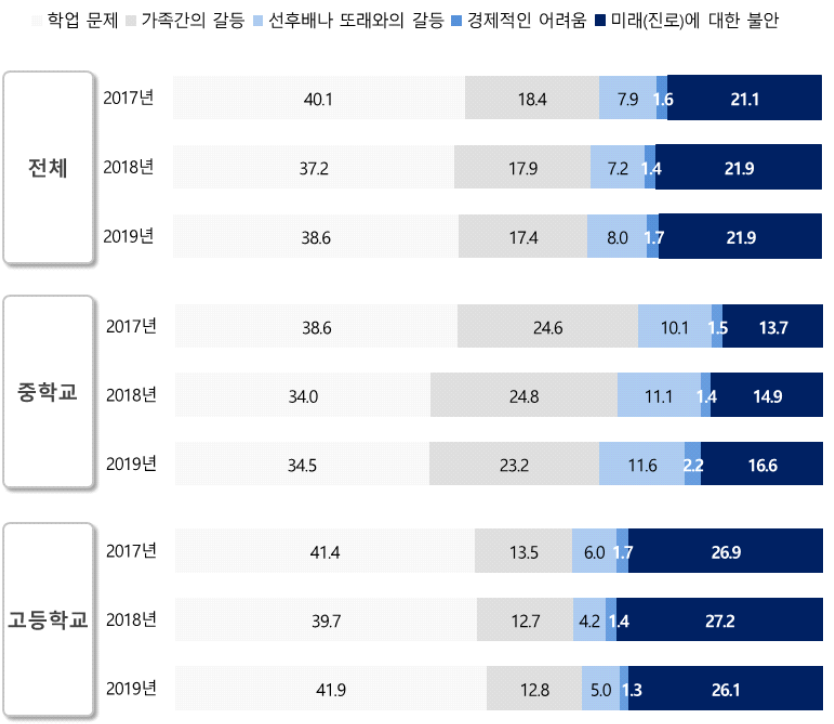

* 주: 1. 2017년도 조사부터 전년도 보기문항 중 '학교 성적'이 '학업문제'로 수정되었으며,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보기문항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2017년부터 새 연도별 추이표를 제시함(단위: %).
2. 기타 값은 제외하였음.

그림 Ⅳ-5-15. 죽고 싶은 이유(연도별 추이)

② 우울증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우울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측정하는 세가지 항목에 대해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그림 Ⅳ-5-16),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 기준으로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31.4%였으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27.4%,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31.0%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 중 30% 내외의 아동·청소년은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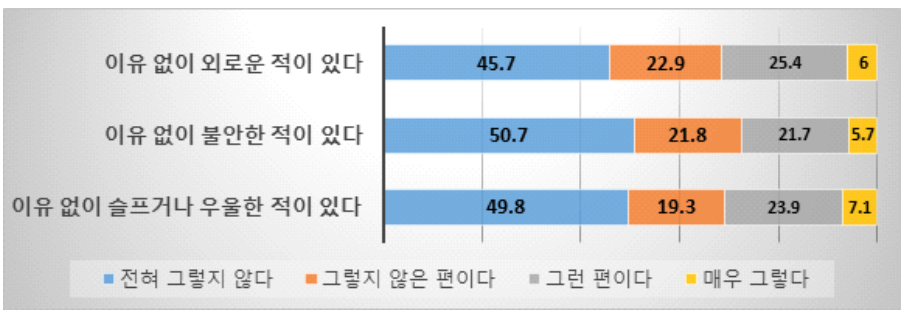

그림 Ⅳ-5-16. 우울정도 항목별 조사결과

먼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항목의 경우 4점 만점 평균 기준으로 1.92점이었으며, 남학생은 1.74점이었으나, 여학생은 2.11점으로 여학생의 평균값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2.15점으로 초등학생(M=1.60점), 중학생(M=1.98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일반계고 학생의 경우(M=2.17점) 특성화계고 학생(M=2.05점)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 가정(M=2.08점)에서 다른 가정유형에서보다(양부모: 1.91점, 조손: 1.59점, 기타: 1.95점), 그리고 학업성적(상: 1.77점, 중: 1.88점, 하: 2.21점)과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상: 1.78점, 중: 2.03점, 하: 2.38점)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Ⅳ-5-38.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2(0.97)	45.7	22.9	25.4	6.0	100.0(9,265)	
성별	남학생	1.74(0.92)	54.8	21.2	19.6	4.5	100.0(4,813)	371.506***
	여학생	2.11(0.99)	35.8	24.7	31.8	7.7	100.0(4,451)	
학교급	초등학교	1.60(0.88)	62.9	18.1	15.0	4.0	100.0(2,979)	621.273***
	중학교	1.98(0.98)	42.3	24.7	25.9	7.1	100.0(2,919)	
	고등학교	2.15(0.96)	33.3	25.6	34.3	6.8	100.0(3,366)	
고교 유형	일반계고	2.17(0.96)	31.6	26.9	34.3	7.1	100.0(2,715)	23.241***
	특성화계고	2.05(0.98)	40.3	20.1	33.9	5.7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1(0.97)	46.0	23.0	25.2	5.8	100.0(8,402)	33.666***
	한부모가정	2.08(1.01)	38.9	22.5	30.3	8.3	100.0(694)	
	조손가정	1.59(0.91)	64.5	17.4	12.8	5.3	100.0(86)	
	기타	1.95(1.00)	45.1	21.5	26.5	6.9	100.0(76)	
학업 성적	상	1.77(0.94)	53.7	20.9	20.3	5.1	100.0(3,272)	300.070***
	중	1.88(0.94)	46.0	24.6	24.5	5.0	100.0(3,894)	
	하	2.21(1.00)	32.5	23.0	35.1	9.4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1.78(0.94)	52.6	21.5	21.1	4.8	100.0(5,328)	361.754***
	중	2.03(0.97)	39.0	25.3	29.4	6.4	100.0(3,076)	
	하	2.38(1.00)	25.9	23.2	38.4	12.6	100.0(852)	

***p<.001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Ⅳ-5-17), 전체 값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의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2017년: 33.4%, 2018년: 32.8%, 2019년: 31.4%), 초등학생의 응답만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018년: 17.8%→ 2019년: 19.0%). 중학생은 2017년 36.2%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은 2015년 조사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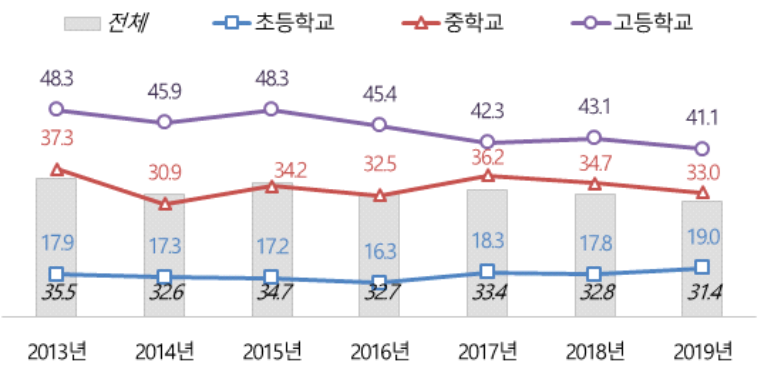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7.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우울의 두 번째 항목인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항목은 4점 만점 기준에 평균 1.82점이었으며, 남학생은 1.65점, 여학생이 2.0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중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응답자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특히 일반계고 응답자의 불안감 평균값이 더 높았다. 또한 앞서 외로운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안감 역시 한부모 가정에서 다른 가정유형보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적이 있다는(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률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체 값 기준으로 특별한 증감 없이 대체로 27%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은 1%p(2018년 28.4%→ 2019년 29.4%), 초등학생은 2%p(2018년 14.9%→ 2019년 16.9%) 정도의 미미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응답률은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값으로 이러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Ⅳ-5-39.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2(0.96)	50.7	21.8	21.7	5.7	100.0(9,262)	
성별	남학생	1.65(0.89)	59.4	20.0	16.8	3.9	100.0(4,812)	337.162***
	여학생	2.01(1.00)	41.3	23.9	27.1	7.7	100.0(4,451)	
학교급	초등학교	1.54(0.85)	66.7	16.4	13.4	3.5	100.0(2,976)	492.505***
	중학교	1.88(0.97)	47.0	23.7	23.3	6.1	100.0(2,920)	
	고등학교	2.03(0.99)	39.8	25.1	27.7	7.4	100.0(3,366)	
고교 유형	일반계고	2.07(0.99)	37.5	26.0	28.3	8.1	100.0(2,715)	35.972***
	특성화계고	1.85(0.95)	49.3	21.1	25.3	4.3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2(0.96)	51.0	21.8	21.6	5.7	100.0(8,399)	19.880*
	한부모가정	1.93(0.98)	44.8	23.7	24.7	6.8	100.0(694)	
	조손가정	1.53(0.85)	67.4	15.4	14.1	3.1	100.0(86)	
	기타	1.77(0.94)	53.3	21.1	20.8	4.8	100.0(76)	
학업 성적	상	1.68(0.93)	58.6	19.2	17.2	4.9	100.0(3,271)	252.787***
	중	1.80(0.93)	50.8	23.1	21.4	4.8	100.0(3,892)	
	하	2.09(1.01)	38.3	23.6	29.3	8.8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1.69(0.91)	57.4	20.5	17.6	4.5	100.0(5,325)	328.031***
	중	1.94(0.97)	44.4	23.5	26.0	6.1	100.0(3,077)	
	하	2.25(1.03)	31.5	24.6	31.7	12.2	100.0(852)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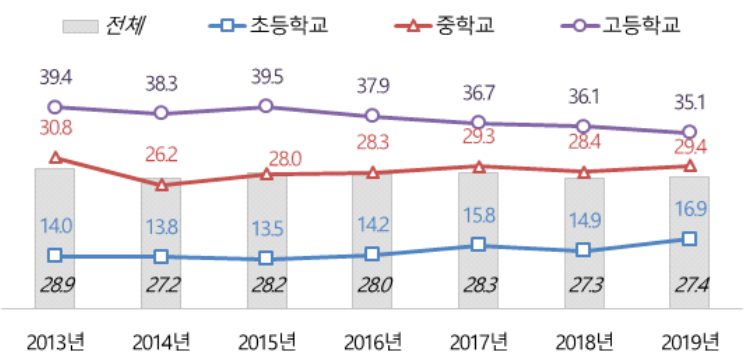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8.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우울의 마지막 항목인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표 Ⅳ-5-40) 4점 만점 평균값 기준 1.88점으로, 역시 여학생(M=2.16점)이 남학생(M=1.62점)보다 훨씬 더 우울한 적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의 평균값(M=2.14점)이 초등학생(M=1.52점)과 중학생(M=1.96점)보다 높았으며, 일반계고의 평균값(M=2.18점)이 특성화계고(M=1.96점) 학생보다 높았다. 우울의 다른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정에서 다른 가정 유형에서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우울 평균값이 더 높았다.

표 Ⅳ-5-40.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8(1.00)	49.8	19.3	23.9	7.1	100.0(9,261)	
성별	남학생	1.62(0.89)	61.6	18.6	15.7	4.1	100.0(4,810)	681.820***
	여학생	2.16(1.04)	37.1	20.1	32.6	10.3	100.0(4,451)	
학교급	초등학교	1.52(0.86)	68.3	15.0	12.8	3.9	100.0(2,976)	699.984***
	중학교	1.96(1.02)	45.7	21.3	24.8	8.2	100.0(2,918)	
	고등학교	2.14(1.02)	36.9	21.4	32.8	8.8	100.0(3,366)	
고교 유형	일반계고	2.18(1.01)	34.5	22.4	33.8	9.3	100.0(2,715)	36.701***
	특성화계고	1.96(1.02)	47.0	17.2	28.8	6.9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7(1.00)	50.1	19.2	23.8	6.9	100.0(8,398)	20.383*
	한부모가정	2.01(1.04)	43.7	20.7	26.2	9.4	100.0(694)	
	조손가정	1.65(0.95)	62.1	17.6	13.8	6.6	100.0(86)	
	기타	1.80(0.97)	52.2	21.5	20.0	6.3	100.0(76)	
학업 성적	상	1.70(0.95)	58.8	17.8	17.9	5.5	100.0(3,269)	364.748***
	중	1.86(0.97)	49.6	20.6	24.3	5.5	100.0(3,893)	
	하	2.21(1.07)	35.9	19.3	32.3	12.4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1.73(0.95)	57.3	18.0	19.5	5.2	100.0(5,324)	436.592***
	중	2.01(1.00)	42.5	21.4	28.8	7.4	100.0(3,076)	
	하	2.38(1.08)	29.3	20.4	32.9	17.4	100.0(852)	

*p<.05, ***p<.001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을 합친 값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그림 Ⅳ-5-19), 2016년 이후 보였던 증가추세가 2019년에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2017년 32.3%→ 2018년 31.4%→ 2019년 31.0%), 고등학생과 중학생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만 전년대비 미미한 비율이나마 증가했고,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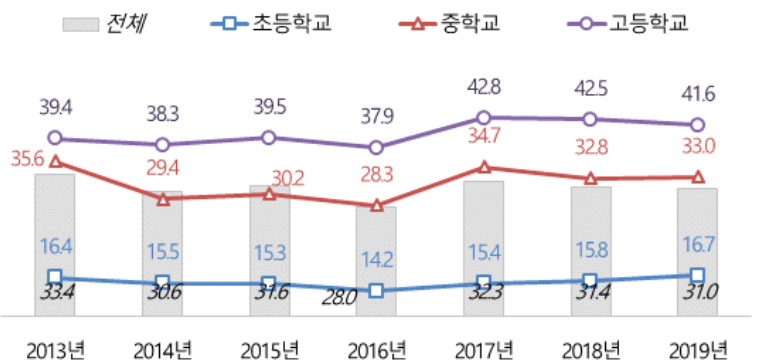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9.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의 세 항목이 측정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먼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Cronbach alpha값이 .8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1.88점, 표준편차는 .91로 분석되었다.

우울증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배경변인별 차이를 t-검증 또는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Scheffé)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Ⅳ-5-41).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의 우울정도(M=2.10점)가 남학생(M=1.68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우울증 정도 역시 증가하여, 초등학생

1.56점, 중학생 1.95점, 고등학생 2.11점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보면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우울증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M=2.01점),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M=1.87점), 기타가정(M=1.84점), 조손가정(M=1.5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소도시(M=1.90점)와 읍면지역(M=1.91점)의 우울정도가 대도시(M=1.85점)보다 높았다. 학업성적(상: 1.73점, 중: 1.85점, 하: 2.17점)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상: 1.74점, 중: 1.99점, 하: 2.35점) 우울증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5-41.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전체(N)	우울증		
			Mean	SD	t/F(Scheffé)
전체		9,270	1.88	.91	-
성별	남학생	4,816	1.68	.83	-22.933***
	여학생	4,454	2.10	.93	
학교급	초등학교[a]	2,979	1.56	.78	324.878*** c>b>a
	중학교[b]	2,922	1.95	.92	
	고등학교[c]	3,370	2.11	.92	
지역 규모	대도시[a]	3,780	1.85	.90	3.731* b>c
	중소도시[b]	4,416	1.90	.91	
	읍면지역[c]	9,270	1.91	.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a]	8,407	1.87	.90	7.955*** b>a>c
	한부모가정[b]	694	2.01	.92	
	조손가정[c]	86	1.59	.86	
	기타[d]	76	1.84	.87	
학업 성적	상[a]	3,275	1.73	.88	164.267*** c>b>a
	중[b]	3,895	1.85	.87	
	하[c]	2,091	2.17	.94	
경제적 수준	상[a]	5,330	1.74	.86	214.608*** c>b>a
	중[b]	3,077	1.99	.89	
	하[c]	854	2.35	.99	

*p<.05, ***p<.001

③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현재 행복한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Ⅳ-5-42),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1.7%,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는 14.9%, '행복한 편이다'는 52.9%, '매우 행복하다'는 30.5%로 나타나 응답 아동·청소년 5명 중 4명 이상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평균값 기준으로 살펴보면,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3.12점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3.20점이었으나 여학생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3.04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은 행복도를 보였으며(초: 3.32점, 중: 3.11점, 고: 2.96점), 한부모가정의 행복도 평균이 다른 가정유형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행복도 역시 낮았다.

표 Ⅳ-5-42. 행복한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3.12(0.71)	1.7	14.9	52.9	30.5	100.0(9,235)	
성별	남학생	3.20(0.72)	2.0	12.2	49.9	36.0	100.0(4,796)	169.668***
	여학생	3.04(0.69)	1.5	17.8	56.2	24.5	100.0(4,439)	
학교급	초등학교	3.32(0.73)	1.4	11.6	40.4	46.6	100.0(2,953)	612.094***
	중학교	3.11(0.69)	1.8	13.8	56.5	27.9	100.0(2,916)	
	고등학교	2.96(0.67)	2.0	18.7	60.8	18.5	100.0(3,36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4(0.71)	1.6	14.3	53.0	31.1	100.0(8,376)	63.705***
	한부모가정	2.95(0.74)	2.8	21.8	53.2	22.1	100.0(692)	
	조손가정	3.11(0.83)	6.5	9.4	50.8	33.3	100.0(85)	
	기타	3.09(0.74)	1.5	18.8	49.3	30.4	100.0(76)	
학업 성적	상	3.28(0.70)	1.1	11.1	46.8	41.0	100.0(3,265)	449.114***
	중	3.12(0.68)	1.2	13.9	56.6	28.3	100.0(3,878)	
	하	2.88(0.73)	3.7	22.8	55.7	17.9	100.0(2,084)	
경제적 수준	상	3.26(0.69)	1.4	10.1	49.7	38.9	100.0(5,311)	698.343***
	중	3.00(0.67)	1.4	18.4	58.9	21.3	100.0(3,063)	
	하	2.68(0.73)	5.2	32.5	51.7	10.6	100.0(852)	

***p<.001

행복도의 연도별 추이를 긍정적 응답(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그림 Ⅳ-5-20),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83%정도를 유지하였으나, 학교급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행복정도가 전년대비 3%p정도 증가하였으나(2018년 76.4%→ 2019년 79.3%), 초등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3.4%p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90.4%→ 2019년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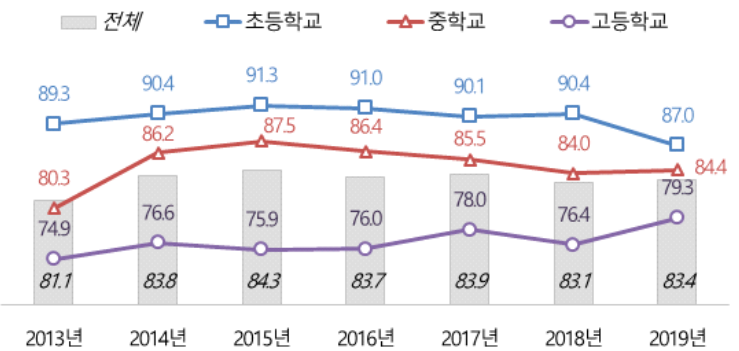

* 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20. 행복한 정도(연도별 추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업문제'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18.4%로 그 뒤를 이었다.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11.4%,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9.4%,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는 3.1%로 나타났다.

학업문제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학생(44.6%)에게서 여학생보다(39.4%), 그리고 고등학생(45.2%)에게서 다른 학교급 학생들보다(초: 38.3%, 중: 39.2%), 양부모가정의 응답자(43.2%)에게서 다른 가정유형에서보다(한부모: 30.3%, 조손: 37.2%, 기타: 38.4%),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중간, 또는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행복

하지 않다는 응답은 고등학생에게서(25.6%) 다른 학교급에서보다(초: 9.7%, 중: 14.8%), 그리고 학업성적을 낮게 응답한 집단과 경제적 수준을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에게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상: 17.7%, 중: 14.6%, 하: 23.1%).

표 Ⅳ-5-43.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신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χ^2
전체		41.7	9.4	11.4	3.1	7.3	18.4	8.7	100.0(1,507)	
성별	남학생	44.6	9.0	8.9	3.3	5.5	19.5	9.2	100.0(659)	18.706**
	여학생	39.4	9.7	13.4	2.9	8.6	17.6	8.4	100.0(848)	
학교급	초등학교	38.3	12.7	17.8	2.9	10.3	9.7	8.3	100.0(376)	100.803***
	중학교	39.2	11.1	13.6	3.3	8.1	14.8	9.9	100.0(444)	
	고등학교	45.2	6.4	6.5	3.0	5.1	25.6	8.3	100.0(68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3.2	8.6	11.0	2.5	7.2	18.6	8.9	100.0(1,314)	43.061**
	한부모가정	30.3	15.7	11.8	7.6	8.9	18.6	7.0	100.0(164)	
	조손가정	37.2	14.2	32.7	3.6	0.0	12.2	0.0	100.0(14)	
	기타	38.4	0.0	22.4	4.1	5.6	7.6	21.7	100.0(15)	
학업 성적	상	44.7	6.2	12.5	3.0	8.5	17.7	7.5	100.0(392)	33.709**
	중	44.7	10.4	11.9	3.3	7.6	14.6	7.5	100.0(576)	
	하	36.3	10.6	10.1	2.9	6.0	23.1	11.0	100.0(539)	
경제적 수준	상	48.0	7.3	12.0	0.5	8.2	15.2	8.9	100.0(594)	134.866***
	중	40.7	9.7	10.8	1.1	7.2	22.4	8.2	100.0(597)	
	하	31.7	12.8	11.5	11.8	5.7	16.9	9.6	100.0(315)	

**p<.01, ***p<.001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도별 추이[46]를 살펴보면(기타 값 제외)(그림 Ⅳ-5-21), 전체값 기준으로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항목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 나쁨, 외모/신체적 불만족

46)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문항 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가 삭제됨에 따라, 2017년부터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항목들은 미미한 수준이나마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연도별 추이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3%p, '외모나 신체적 불만족'은 2.5%p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항목들에서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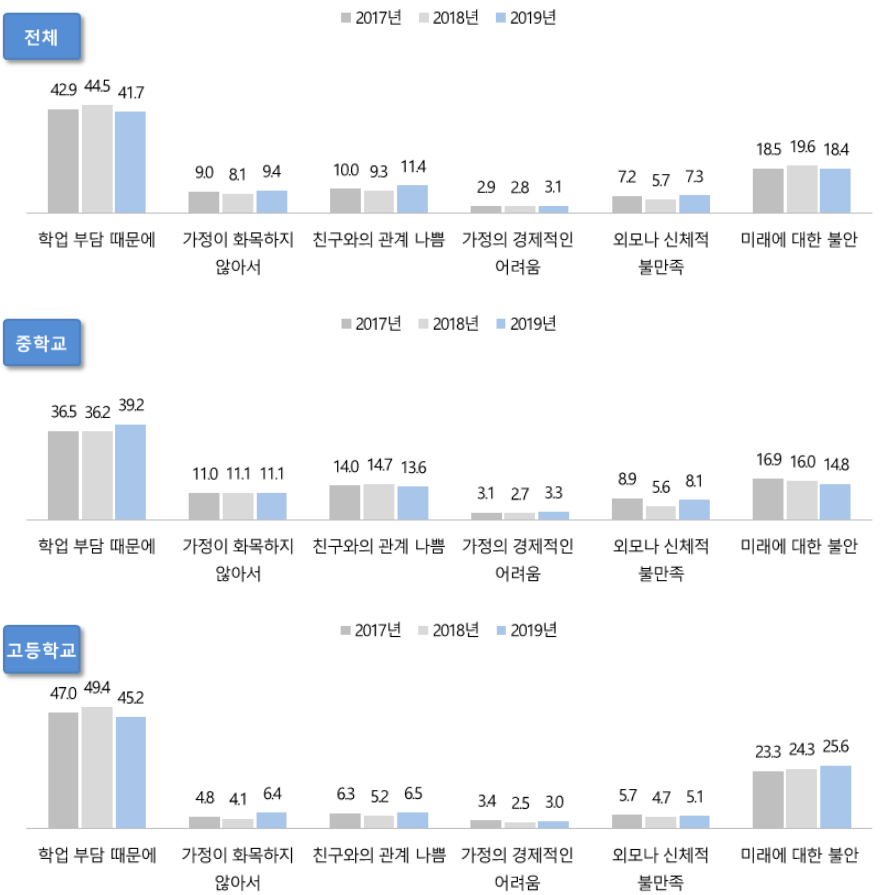

그림 Ⅳ-5-21. 행복하지 않은 이유(연도별 추이: 전체, 학교급)

④ 삶의 만족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삶의 복지수준(subjective well-being)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삶의 만족도 수준이 본 조사에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 수준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김영지 외, 2017: 301).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척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of life satisfaction) 척도'로 응답자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되며,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게 된다(김영지 외, 2017: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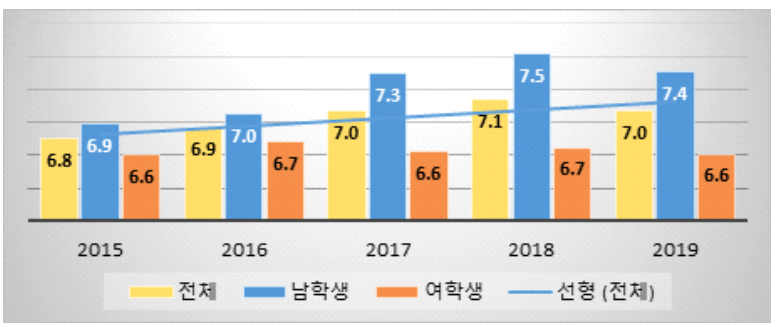

* 주: 본 그림은 최창욱 외(2018)의 [그림 Ⅳ-109]에 2019년도 자료를 추가하여 재작성 하였음.

그림 Ⅳ-5-22.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성별)

2019년 조사결과(표 Ⅳ-5-44), 1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7.0점으로 이전 연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남학생의 평균은 7.4점, 여학생은 6.6점으로 여자청소년이 다소 낮았는데, 이러한 경향 역시 2015년 이후 일관되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도별 차이를 보면, 전체 평균치 기준 2015년 6.8점, 2016년 6.9점, 2017년 7.0점, 2018년 7.1점, 2019년 7.0점으로 일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2015년 6.9점에서 2018년 7.5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여학생의 경우는 큰 폭의 증감 없이 6.6점, 6.7점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5-44. 삶의 만족도

구분		전체(N)	Mean	SD	t/F(Scheffé)
전체		9,261	7.00	2.33	-
성별	남학생	4,812	7.36	2.24	15.623***
	여학생	4,449	6.61	2.35	
학교급	초등학교a	2,978	7.85	2.22	332.698*** a>b>c
	중학교b	2,917	6.79	2.31	
	고등학교c	3,366	6.43	2.2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a	8,401	7.04	2.32	13.065*** a>b
	한부모가정b	693	6.47	2.39	
	조손가정c	85	7.15	2.22	
	기타d	75	6.91	2.43	
학업 성적	상a	3,274	7.71	2.13	394.951*** a>b>c
	중b	3,892	6.96	2.22	
	하c	2,087	5.95	2.40	
경제적 수준	상a	5,327	7.61	2.10	562.077*** a>b>c
	중b	3,071	6.38	2.28	
	하c	854	5.38	2.43	

***p<.001

삶의 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Ⅳ-5-44), 성, 교급, 가족 유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자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7.36점으로 여자청소년의 6.61점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7.85점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가족 유형 중에서는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한부모가정에서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으로 여자청소년과 한부모가정 청소년, 그리고 학교급이 높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음을 의미하고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교급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도 수준이 '매우 높음'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56.1%, 2019년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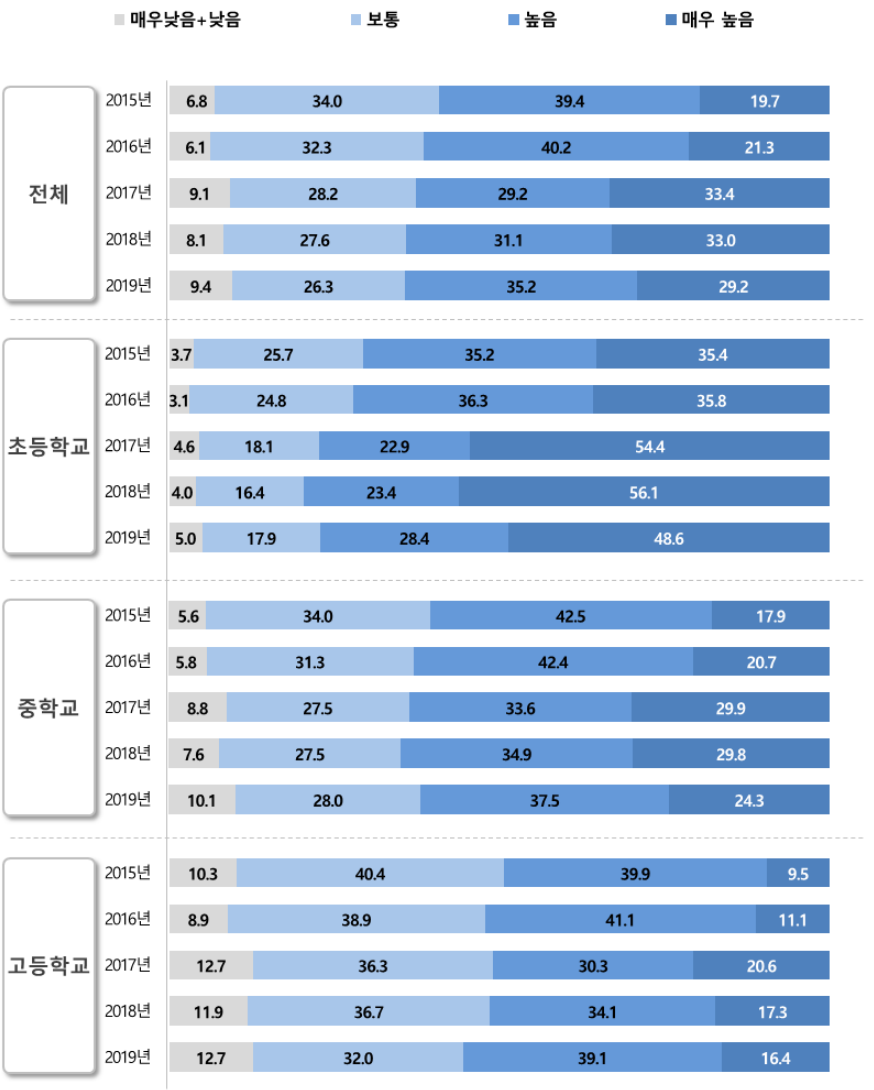

주: 1) 매우 낮은 삶의 수준: ⓪, ①　낮은 삶의 수준: ②, ③　보통: ④, ⑤, ⑥
높은 삶의 수준 ⑦, ⑧　매우 높은 삶의 수준 ⑨, ⑩
2) 본 그림은 최창욱 외(2018)의 [그림 Ⅳ-110]에 2019년도 자료를 추가하여 재작성 하였음.
※ 위의 그래프에는 지면상 삶의 만족도 수준의 '매우 낮음'과 '낮음' 수치를 합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Ⅳ-5-23.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중학생의 경우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 '매우 높음' 응답률이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29.8%, 2019년 24.3%). 고등학생의 경우 '매우 높음' 응답률은 2017년 20.6%를 최고치로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다(2018년: 17.3%, 2019년: 16.4%).

⑤ 자아존중감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3개 관련 항목을 조사하였다.[47] 그 결과, 긍정적인 응답 기준(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77.6%,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74%,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의 경우 26.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그림 Ⅳ-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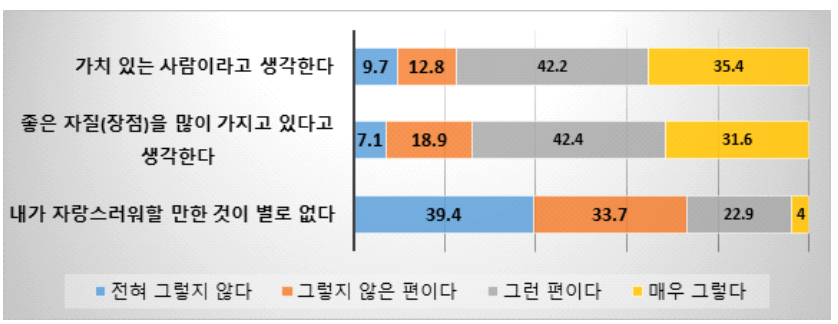

그림 Ⅳ-5-24.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 및 조손가정에서보다 더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응답 역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47)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2018년까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항목까지 총 4개였으나, 조사내용 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항목을 삭제하였다.

표 Ⅳ-5-45.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3(0.93)	9.7	12.8	42.2	35.4	100.0(9,252)	
성별	남학생	3.06(0.98)	11.9	9.6	38.9	39.6	100.0(4,810)	209.663***
	여학생	3.00(0.87)	7.2	16.2	45.7	30.8	100.0(4,442)	
학교급	초등학교	2.96(1.08)	17.0	9.7	33.2	40.0	100.0(2,969)	413.065***
	중학교	3.09(0.87)	7.0	12.9	44.3	35.9	100.0(2,917)	
	고등학교	3.04(0.82)	5.5	15.3	48.3	30.8	100.0(3,36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4(0.93)	9.6	12.4	42.0	35.9	100.0(8,393)	33.901***
	한부모가정	2.93(0.90)	9.0	17.2	45.3	28.6	100.0(691)	
	조손가정	2.80(1.09)	19.5	12.7	36.6	31.2	100.0(85)	
	기타	3.07(0.92)	9.5	9.8	44.5	36.2	100.0(76)	
학업 성적	상	3.22(0.94)	9.6	7.1	34.9	48.4	100.0(3,270)	544.090***
	중	2.99(0.91)	9.6	12.8	46.5	31.1	100.0(3,888)	
	하	2.81(0.90)	9.9	21.7	45.6	22.8	100.0(2,086)	
경제적 수준	상	3.13(0.95)	10.2	8.6	39.6	41.7	100.0(5,321)	389.992***
	중	2.95(0.89)	8.6	16.6	46.3	28.5	100.0(3,070)	
	하	2.76(0.90)	10.1	25.3	43.7	21.0	100.0(85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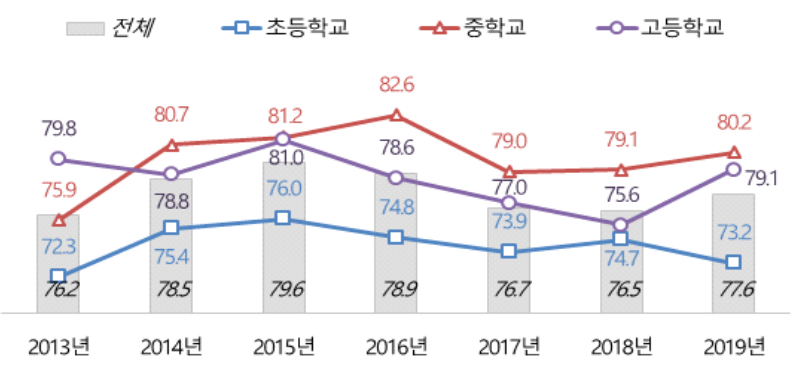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25.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긍정 응답률은 전년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을 나타냈다. 중학생은 2016년 이후 그리고 고등학생은 2015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증가경향을 보였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더 스스로의 장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다소 증가하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46.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8(0.89)	7.1	18.9	42.4	31.6	100.0(9,247)	
성별	남학생	3.04(0.92)	8.5	14.7	41.1	35.7	100.0(4,807)	183.248***
	여학생	2.92(0.85)	5.6	23.6	43.8	27.0	100.0(4,439)	
학교급	초등학교	3.10(0.91)	7.8	13.7	39.1	39.3	100.0(2,968)	171.758***
	중학교	2.94(0.89)	7.4	20.1	43.5	28.9	100.0(2,916)	
	고등학교	2.92(0.86)	6.2	22.6	44.3	27.0	100.0(3,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0(0.88)	7.0	18.3	42.7	32.0	100.0(8,389)	49.766***
	한부모가정	2.81(0.91)	8.3	27.8	38.9	25.0	100.0(690)	
	조손가정	2.90(0.98)	11.9	17.6	38.9	31.6	100.0(85)	
	기타	3.09(0.90)	8.3	11.5	43.5	36.7	100.0(75)	
학업 성적	상	3.25(0.85)	5.5	10.2	38.5	45.8	100.0(3,267)	723.791***
	중	2.93(0.85)	6.7	19.9	47.4	26.0	100.0(3,888)	
	하	2.68(0.91)	10.5	30.9	39.0	19.6	100.0(2,084)	
경제적 수준	상	3.12(0.87)	6.3	13.3	42.5	37.9	100.0(5,320)	415.789***
	중	2.84(0.87)	7.3	25.3	43.5	23.9	100.0(3,067)	
	하	2.66(0.92)	11.3	31.4	37.8	19.6	100.0(85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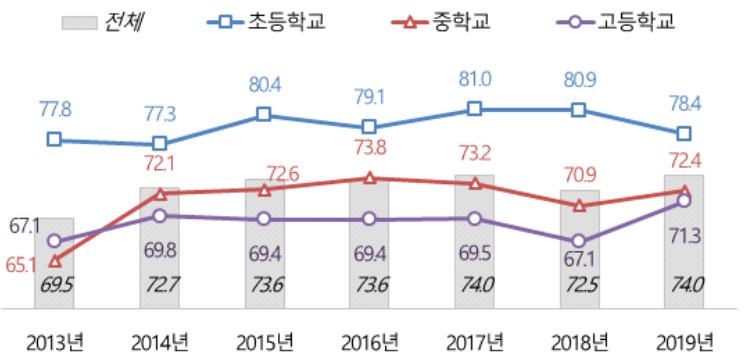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26.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자아존중감 측정 항목 중 유일하게 부정적인 내용인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에 대해서는 평균값 기준 여학생(M=2.03점)이 남학생보다(M=1.81점),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초: 1.67점, 중: 1.98점, 고: 2.07점), 한부모가정의 청소년(M=2.12점)에게서 다른 가족유형보다(양부모: 1.90점, 조손: 1.87점, 기타: 1.84점), 그리고 학업성적(상: 1.63점, 중: 1.95점, 하: 2.31점)과 경제적 수준(상: 1.74점, 중: 2.09점, 하: 2.39점)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게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청소년들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부정적 내용의 경우(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응답 기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2018년: 17.3%, 2019년: 17.9%), 이는 중학생에게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약 2.2%p 감소경향을 보였다(2018년: 35.0%, 2019년: 32.8%).

표 Ⅳ-5-47.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2(0.88)	39.4	33.7	22.9	4.0	100.0(9,259)	
성별	남학생	1.81(0.87)	45.2	32.2	18.9	3.7	100.0(4,810)	169.085***
	여학생	2.03(0.88)	33.0	35.3	27.3	4.4	100.0(4,449)	
학교급	초등학교	1.67(0.84)	54.0	28.1	14.5	3.4	100.0(2,974)	445.833***
	중학교	1.98(0.89)	35.6	35.1	24.7	4.6	100.0(2,920)	
	고등학교	2.07(0.86)	29.7	37.4	28.8	4.0	100.0(3,36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0(0.87)	40.0	33.7	22.6	3.7	100.0(8,396)	55.050***
	한부모가정	2.12(0.93)	30.5	33.7	28.6	7.2	100.0(694)	
	조손가정	1.87(0.93)	45.6	26.8	22.7	4.9	100.0(86)	
	기타	1.84(0.86)	39.7	43.0	10.9	6.4	100.0(76)	
학업 성적	상	1.63(0.80)	55.0	29.8	12.5	2.7	100.0(3,271)	859.778***
	중	1.95(0.84)	35.5	37.3	24.3	2.9	100.0(3,891)	
	하	2.31(0.90)	22.0	33.1	36.7	8.2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1.74(0.82)	47.6	33.4	16.3	2.7	100.0(5,324)	618.562***
	중	2.09(0.88)	30.5	34.4	30.8	4.3	100.0(3,074)	
	하	2.39(0.92)	19.6	33.2	36.0	11.2	100.0(85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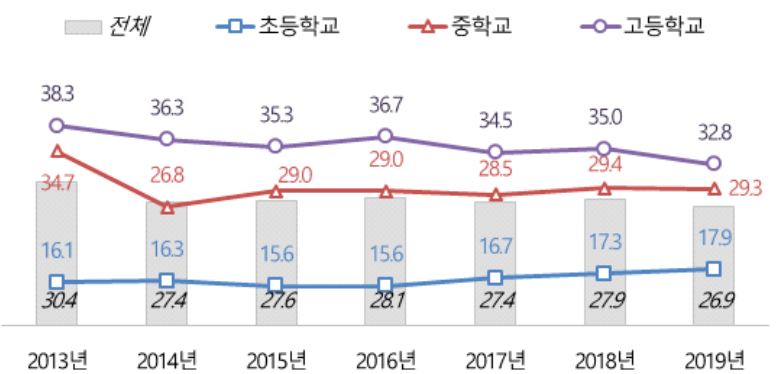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27.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연도별 추이)

자아존중감 항목들을 모두 합쳐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다시 살펴보았다.[48] 먼저 척도로서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 alpha값이 .727로 적절한 수준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중>고) 더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 역시 더 높게 나타났다(표 Ⅳ-5-48).

표 Ⅳ-5-48.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전체(N)	자아존중감		
			Mean	SD	t/F(Scheffé)
전체		9,259	3.04	.74	
성별	남학생	4,810	3.10	.73	8.233***
	여학생	4,449	2.97	.74	
학교급	초등학교[a]	2,974	3.14	.75	46.680*** a>b>c
	중학교[b]	2,920	3.02	.74	
	고등학교[c]	3,365	2.97	.7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a]	8,396	3.05	.73	10.248*** a>b
	한부모가정[b]	694	2.89	.79	
	조손가정[c]	86	2.99	.87	
	기타[d]	76	3.12	.70	
학업성적	상[a]	3,271	3.28	.70	390.966*** a>b>c
	중[b]	3,891	3.00	.70	
	하[c]	2,089	2.74	.76	
경제적 수준	상[a]	5,324	3.17	.70	284.400*** a>b>c
	중[b]	3,074	2.91	.74	
	하[c]	852	2.68	.78	

***p<.001

48)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항목은 리코딩하였다.

⑥ 고민거리 대화상대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조사한 결과(그림 Ⅳ-5-28), 어머니가 38.3%, 친구 3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10.3%, 형제/자매 5.9%, 아버지 5.6%, 이웃과 친척 0.9%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학교 담임교사가 0.6%였으며, 이들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체계적인 개입이 가능한 전문직인 학교상담교사가 0.5%,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가 0.2%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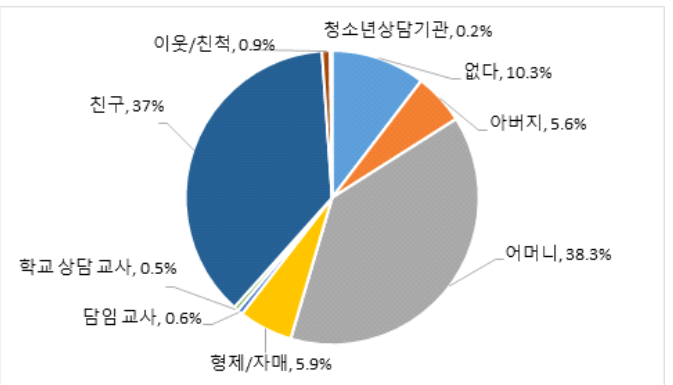

그림 Ⅳ-5-28. 고민거리 대화상대

배경변인별로 고민거리 대화상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님을 고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대화상대로 친구를 더 많이 응답했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부모를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친구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족 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고민 대화상대로 친구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고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게서 부모를 고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청소년들은 친구를 고민 대화상대로 더 많이 응답했다

(경제적 수준을 '중'으로 인식한 청소년 역시 '하'로 인식한 청소년과 유사한 비율을 보임).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은 특히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5-49. 고민거리 대화상대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교사	학교상담교사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상담기관종사자	기타	전체(N)	χ^2
전체		10.3	5.6	38.3	5.9	0.6	0.5	37.0	0.9	0.2	0.8	100.0(9,162)	
성별	남학생	10.7	8.6	39.1	4.9	0.8	0.5	33.6	0.8	0.1	1.0	100.0(4,746)	218.404***
	여학생	9.8	2.5	37.4	6.9	0.3	0.6	40.6	1.1	0.2	0.6	100.0(4,415)	
학교급	초등학교	9.4	6.9	53.8	5.2	0.4	0.8	21.5	1.4	0.1	0.5	100.0(2,944)	642.299***
	중학교	11.7	5.8	33.0	4.9	0.5	0.5	41.8	0.7	0.2	1.0	100.0(2,893)	
	고등학교	9.7	4.4	29.1	7.4	0.8	0.3	46.4	0.8	0.1	1.0	100.0(3,32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10.1	5.5	39.2	5.8	0.5	0.5	36.7	0.8	0.2	0.8	100.0(8,310)	95.785***
	한부모가정	12.2	7.2	26.5	7.1	0.8	1.3	41.3	2.5	0.2	0.9	100.0(683)	
	조손가정	10.8	8.4	34.2	4.7	2.3	0.7	33.3	4.0	0.0	1.6	100.0(86)	
	기타	14.0	6.1	40.3	8.7	2.8	1.3	26.2	0.0	0.0	0.6	100.0(76)	
학업성적	상	8.8	6.3	46.6	6.1	0.4	0.4	29.7	0.7	0.1	0.8	100.0(3,238)	285.466***
	중	9.9	5.5	37.7	5.9	0.6	0.5	37.9	1.2	0.1	0.7	100.0(3,844)	
	하	13.2	4.9	26.3	5.4	0.9	0.8	46.6	0.7	0.3	0.9	100.0(2,072)	
경제적수준	상	7.7	6.3	43.9	5.9	0.6	0.5	33.4	0.8	0.1	0.8	100.0(5,256)	300.601***
	중	12.2	5.1	32.5	5.8	0.5	0.6	41.7	1.0	0.2	0.6	100.0(3,054)	
	하	19.4	3.3	23.9	6.5	1.0	0.7	41.9	1.5	0.3	1.5	100.0(843)	

***p<.001

담임교사와 학교상담교사, 그리고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를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담임교사의 경우 조손 및 기타가정에서 2.0%가 넘는 수준으로 그중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상담교사의 경우는 한부모가정과 기타 가정에서 1%가 약간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청소년상담기관 종사자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은 0.1~0.3% 수준으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도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대화상대가 '없다', '기타', '이웃·친척' 값 제외)(그림 Ⅳ-5-29), 고민거리 대화상대 각 항목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특히 '어머니'와 '친구'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경우 2016년 이후 증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2016년: 34.6%→ 2017년: 37.8%→ 2018년: 38.5%→ 2019년 38.3%), '친구'의 경우 2016년 이후 다소 감소 상태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2016년: 41.4%→ 2017년: 38.0%→ 2018년: 37.1%→ 2019년 37.0%). 고민거리 상대로서의 담임/교사와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고민거리 대화상대를 '어머니'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친구'의 경우 다소 감소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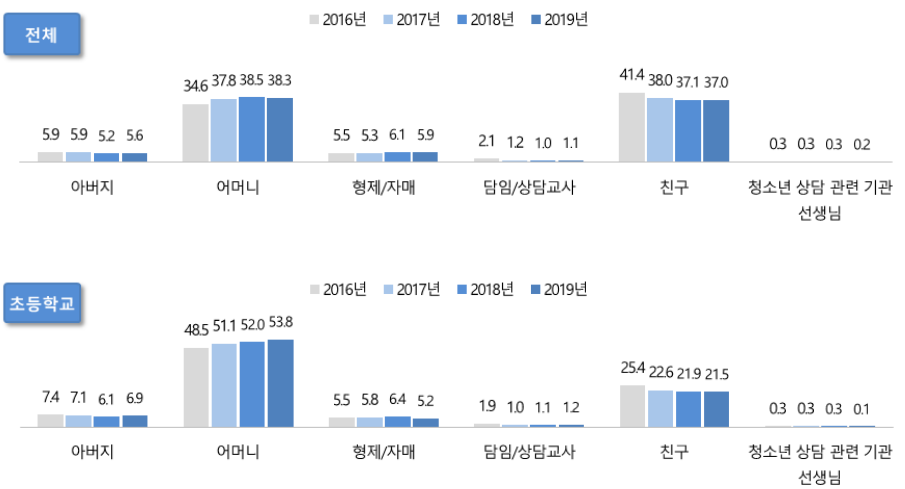

주) 대화상대가 '없다', '기타', '이웃·친척' 값 제외

그림 Ⅳ-5-29. 고민거리 대화상대(연도별 추이: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의 연도별 추이는 미미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를 고민 대화상대로 응답비율이 미미한 수준에서 감소하였고, 형제/자매의 경우 미세하게 증가하였다(그림 Ⅳ-5-30).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담임/상담교사와 청소년상담기관 종사자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사, 학교 상담교사, 특히 청소년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필요로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상담기관의 경우 중학생(2016년: 0.4%, 2017년: 0.2%, 2018년: 0.3%, 2019년: 0.2%)과 고등학생에게서(2016년: 0.2%, 2017년: 0.3%, 2018년: 0.2%, 2019년: 0.1%) 미미한 수준의 감소 경향을 보였다(그림 Ⅳ-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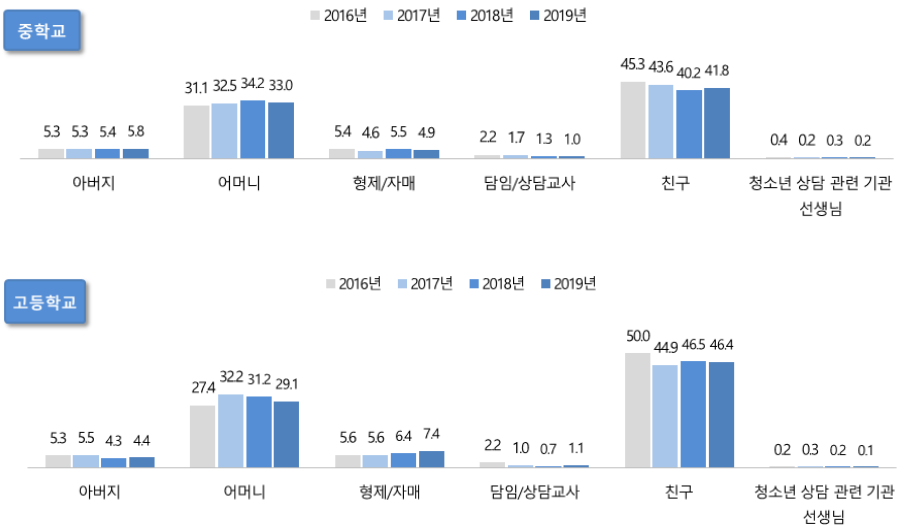

주) '없다', '기타', '이웃·친척' 값 제외

그림 Ⅳ-5-30. 고민거리 대화상대(연도별 추이: 중학생, 고등학생)

⑦ 폭력피해 경험과 정신건강[49)]

'5-4-3' 정신적 건강 지표와 관련하여 정신건강과 폭력피해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심화분석보고서의 일부내용을 발췌,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특히 폭력피해의 경우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폭력피해 잠재유형 분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학대 피해 및 폭력경험[50)]에 대한 11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4집단 모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50. 폭력피해 잠재유형 수에 따른 모델 적합도 지수[51)]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MR LRT	BLRT
2 집단	44977.82	45133.43	45060.34	.733	.000	.000
3 집단	43889.22	44126.01	44014.79	.794	.000	.000
4 집단	43398.10	43716.07	43566.72	.846	.000	.000
5 집단	43131.37	43530.53	43343.04	.831	.008	.009

* 주: LMR LRT: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분류된 4집단의 특성은 [그림 Ⅳ-5-31]에 제시되었다. 그림의 y축은, 각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11개의 종류별 폭력피해를 경험할 확률(item conditional probability)을 의미한다. 각 집단은 그 특성에 따라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다중피해 집단, 무피해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수치는 〈표-Ⅲ-5-51〉에 제시하였다.

49) 이 내용은 본 총괄보고서와 함께 발간된 심화분석보고서(숙명여자대학교 강지영 교수 집필)의 일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심화분석보고서 해당 내용 참조

50) 양육자 방임, 양육자 체벌, 양육자 폭언, 교사 체벌, 교사 폭언, 또래 및 선배 폭력, 또래 및 선배 폭언, 또래 및 선배 따돌림, 사이버 상 사생활 폭로, 사이버 상 폭언, 성희롱/성폭행

51) AIC, BIC, adjusted BIC 등의 모델 적합도는 그 값이 적을수록,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되며, LRT test는 k-1집단에서 p<.05이고, k집단에서는 p>.05인 경우, k-1집단이 적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hony & Robbins, 2013; Yampolskaya, Sharrock, Armstrong, Stronzier, & Swank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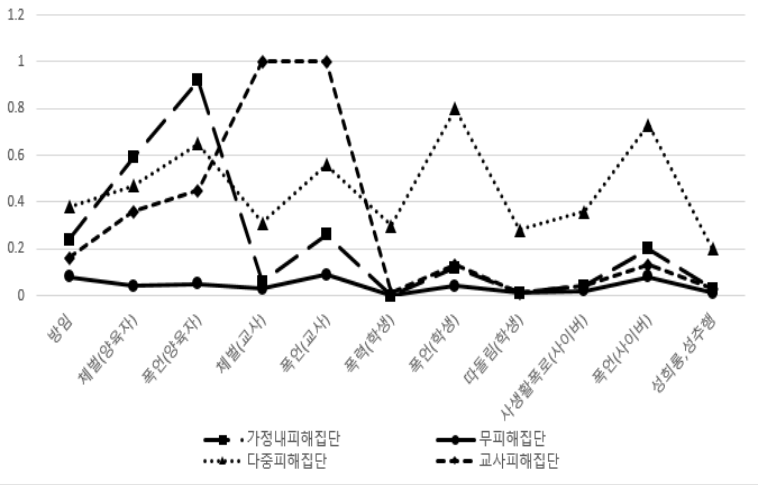

그림 Ⅳ-5-31. 잠재유형별 조건항목확률(conditional item probability)

표 Ⅳ-5-51. 잠재유형별 조건항목확률

	방임	체벌 (양육자)	폭언 (양육자)	체벌 (교사)	폭언 (교사)	폭력 (학생)	폭언 (학생)	따돌림 (학생)	사생활 폭로 (사이버)	폭언 (사이버)	성희롱, 성추행
가정내피해집단	0.24	0.59	0.92	0.06	0.26	0	0.12	0.01	0.04	0.2	0.03
무피해집단	0.08	0.04	0.05	0.03	0.09	0	0.04	0.01	0.02	0.08	0.01
교사피해집단	0.16	0.36	0.45	1	1	0.01	0.13	0.01	0.04	0.13	0.03
다중피해집단	0.38	0.47	0.65	0.31	0.56	0.3	0.8	0.28	0.36	0.73	0.2

나. 폭력피해 경험의 잠재유형과 정신건강

4개의 집단에 소속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우울, 자존감, 자살생각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표 Ⅳ-5-52), 우울의 경우, 다중피해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이 가정 내 피해 집단, 교사피해 집단, 그리고 무피해 집단의 순서였다. 자존감은 다중피해 집단과 가정 내 피해 집단이 유의한 수준에서 교사피해 집단과 무피해 집단보다 낮았다. 자살생각에 있어서, 다중피해 집단이 자살을 가끔 혹은

자주 생각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 내 피해 집단, 그리고 교사피해 집단과 무피해 집단의 순서였다.

표 Ⅳ-5-52. 폭력피해 잠재유형별 정신건강 특성

		교사피해집단 (1)	다중피해집단 (2)	무피해집단 (3)	가정내피해집단 (4)	
우울		6.31(2.78)	7.94(2.58)	5.50(2.65)	7.00(2.60)	모두 유의함
자존감		9.19(2.19)	8.17(2.19)	9.25(2.14)	8.48(2.18)	1, 3 〉 2, 4
죽고 싶다는 생각(%)	생각한적 없음	66.9	42.5	79.6	53.0	.000
	가끔 생각	28.6	44.2	18.1	39.4	
	자주 생각	4.7	13.3	2.3	7.5	

다. 정신건강과 다중 폭력 피해경험의 함의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와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 이슈와 관련하여 폭력피해에 대한 심화분석 내용을 일부 제시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상기 분석결과, 가정, 학교, 또래관계,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은 우울과 자존감,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다체계에서의 폭력 피해를 받은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회복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폭력피해 영향에 주목하고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더욱 깊이 개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일례로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청소년 사건들은[52] 폭력피해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측면의 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아동의 자살 예방과 근본 원인 파악을 포함한 정신적 안녕감(well-being) 향상 노력을 반복 권고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8),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그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입의 필요성을 더욱 시사하고 있다.

52) 동아일보 (2019. 07. 02). 열여섯 여고생 벼랑끝 내몬 '온라인 집단 따돌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2/96277707/1에서 2019일 10월 24일 인출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①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

우리나라의 아동을 포함한 가족복지지출 예산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 OECD의 SCOX(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의 GDP 대비 아동가족부문(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의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일반정책(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에서 OECD국가들의 공적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 데이터를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여기에서의 공적지출은 아동과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등의 현금 지원, 육아휴가 중 재정지원, 공공보육 지원 및 세재 혜택 등이 해당된다(OECD, 2019. 3. 25).[53]

[그림 Ⅳ-5-32]에서 보듯이 2015년 OECD데이터 상 한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은 1.43%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1년의 0.9%, 2013년의 1.3%보다 다소 상승한 수치이다(김영지 외, 2017, p. 319 참조). 그러나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프랑스 3.68%, 영국 3.6%, 스웨덴 3.54%, 헝가리 3.53%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 1.61%, 포르투갈 1.5% 정도였으며, 우리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 국가는 스페인 1.36%를 포함하여, 미국 1.12%, 멕시코 1.03%, 그리스 1.03%, 터기 0.38%로 나타났다.

공적지출 내역을 현금 지원과 서비스, 세재 혜택으로 구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표 Ⅳ-5-50),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현금지출은 0.18%, 서비스는 1.01%, 세금우대 0.23%였다. OECD 평균이 현금 1.23%, 서비스 0.94%,

53) 보건 및 주택 등 가족을 지원하는 다른 사회정책을 위한 지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OECD, 2019. 3. 25).

세금우대가 0.22%인 것을 볼 때 현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심지어 미국에 이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 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54]과 같은 맥락으로 전반적인 아동관련 복지예산, 특히 현금지원 확대[55]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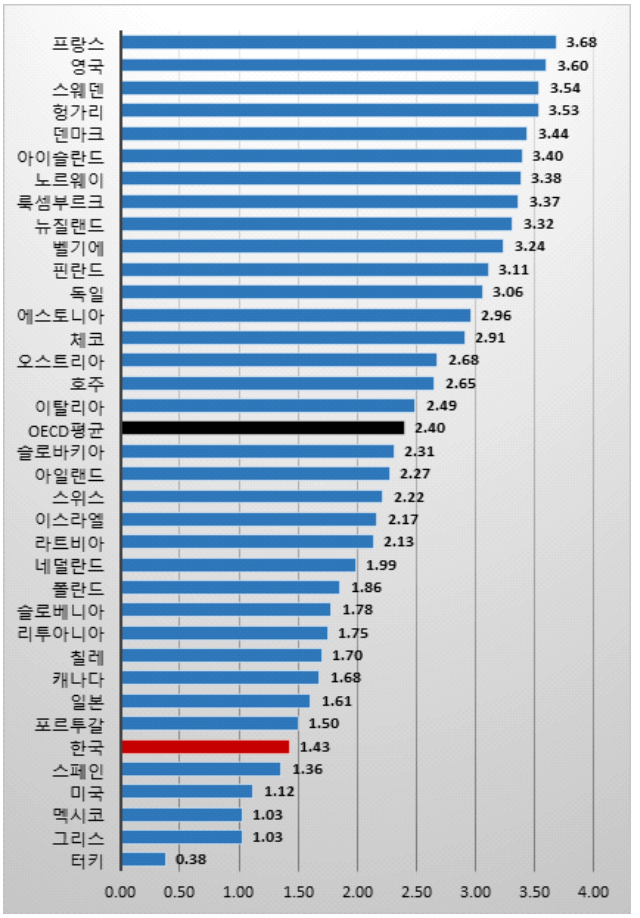

*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amily Database.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9년 9월 17일 인출.

* 주: 2015년 기준 최근 데이터가 아닌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의 수치는 OECD에서 평균 산출 시 제외하였음.

그림 Ⅳ-5-32. GDP 대비 family benefits 공적 지출 비율 국제 비교(2015년)

54) 연합뉴스(2019. 09. 19). 유엔 "한국 아동 복지예산 OECD 평균 미달...확충해야"
55) 2018년부터 지원된 아동수당이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라 현금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5-53. GDP대비 family benefits 공적 지출: 현금 및 서비스 구분(2015년)

구분	합계	현금(Cash)	서비스(Services)	세제혜택 (Tax-breaks for families)
프랑스	3.68	1.51	1.43	0.74
영국	3.60	2.25	1.22	0.13
스웨덴	3.54	1.36	2.18	0.00
헝가리	3.53	1.73	1.24	0.57
덴마크	3.44	1.36	2.08	0.00
아이슬란드	3.40	1.02	2.38	0.00
노르웨이	3.38	1.36	1.90	0.12
룩셈부르크	3.37	2.51	0.86	0.00
뉴질랜드	3.32	2.16	1.14	0.01
벨기에	3.24	1.79	1.04	0.42
핀란드	3.11	1.41	1.70	0.00
독일	3.06	1.09	1.13	0.84
에스토니아	2.96	2.01	0.81	0.14
체코	2.91	1.50	0.54	0.87
오스트리아	2.68	1.95	0.69	0.03
호주	2.65	1.74	0.91	0.00
이탈리아	2.49	1.29	0.66	0.54
OECD평균	2.40	1.23	0.94	0.22
슬로바키아	2.31	1.45	0.53	0.33
아일랜드	2.27	1.64	0.57	0.06
스위스	2.22	1.22	0.50	0.50
이스라엘	2.17	0.82	1.07	0.27
라트비아	2.13	1.28	0.85	0.00
네덜란드	1.99	0.70	0.82	0.47
폴란드	1.86	0.78	0.75	0.33
슬로베니아	1.78	1.27	0.51	0.00
리투아니아	1.75	0.80	0.95	..
칠레	1.70	0.76	0.95	0.00
캐나다	1.68	1.32	0.23	0.13
일본	1.61	0.74	0.57	0.30
포르투갈	1.50	0.74	0.46	0.31
한국	**1.43**	**0.18**	**1.01**	**0.23**
스페인	1.36	0.51	0.72	0.12
미국	1.12	0.07	0.57	0.48
멕시코	1.03	0.44	0.59	0.00
그리스	1.03	0.93	0.10	0.00
터키	0.38	0.20	0.18	0.00

*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amily Database.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9년 9월 17일 인출.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① 취약계층 아동현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취약 아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빈곤율을 확인하였다. 아동빈곤율의 주 자료원인 2018 빈곤통계연보부터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2017년부터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아동빈곤율을 중심으로 보았다.

1인 가구 제외 기준 상대아동빈곤율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던 시장소득의 경우 빈곤율이 2017년부터 다소 증가하였으며, 경상소득 및 가처분 소득에서의 빈곤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5-33). 1인 가구 포함 기준으로 보면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이후 1~2%p 수준에서 다소 증가 경향을 보였다(표 Ⅳ-5-54). 2017년부터 제시되고 있는 분기별 수치를 보면, 2017년과 2018년 모두 1/4분기의 상대아동빈곤율이 나머지 분기에서보다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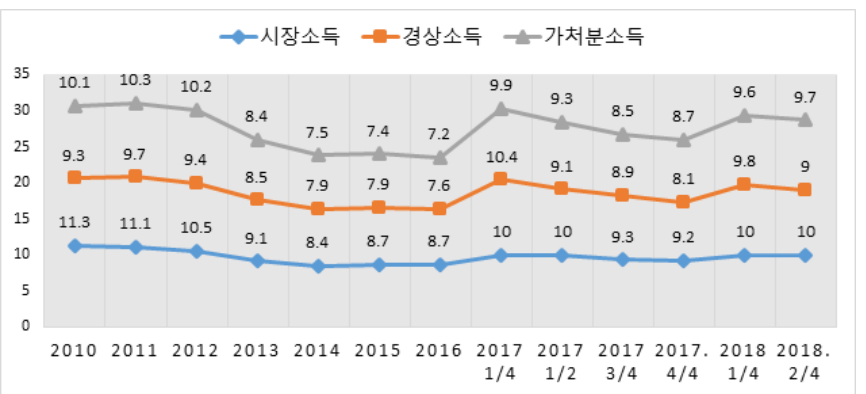

* 주: 본 그림은 표 Ⅳ-5-54의 일부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Ⅳ-5-33. 상대아동빈곤율(0~18세)(1인 가구 제외 기준)

표 Ⅳ-5-54. 아동빈곤율(0~18세 미만)

(단위 : %)

구분		절대아동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			상대아동빈곤율(중위 50%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가구 제외	2006	8.1	5.9	7.1	12.4	11.1	11.1
	2007	8.2	5.9	7.1	12.9	11.5	11.5
	2008	8.2	5.6	7.1	12.1	10.8	10.8
	2009	8.3	4.9	7.3	12.4	10.2	10.9
	2010	7.5	4.8	6.6	11.3	9.3	10.1
	2011	7.1	4.3	6.5	11.1	9.7	10.3
	2012	6.1	4.4	5.9	10.5	9.4	10.2
	2013	5.3	3.6	4.7	9.1	8.5	8.4
	2014	4.7	3.3	4.0	8.4	7.9	7.5
	2015	5.0	3.6	4.5	8.7	7.9	7.4
	2016	5.4	3.7	4.5	8.7	7.6	7.2
	2017 1/4	-	-	-	10.0	10.4	9.9
	2017 2/4	-	-	-	10.0	9.1	9.3
	2017 3/4	-	-	-	9.3	8.9	8.5
	2017 4/4	-	-	-	9.2	8.1	8.7
	2018 1/4	-	-	-	10.0	9.8	9.6
	2018 2/4	-	-	-	10.0	9.0	9.7
1인가구 포함	2006	8.1	5.9	7.1	12.1	10.5	10.7
	2007	8.2	5.9	7.1	12.3	11.1	11.2
	2008	8.2	5.6	7.0	11.6	10.3	10.3
	2009	8.3	4.9	7.3	11.7	9.2	10.2
	2010	7.5	4.8	6.6	10.8	8.9	9.5
	2011	7.1	4.3	6.5	10.6	9.2	9.9
	2012	6.1	4.4	5.9	9.5	9.0	9.4
	2013	5.3	3.6	4.7	8.4	7.8	7.9
	2014	4.7	3.3	4.0	7.7	7.0	7.0
	2015	5.0	3.6	4.5	8.1	7.2	6.9
	2016	5.4	3.7	4.5	7.6	6.9	6.7
	2017 1/4	-	-	-	9.1	9.2	9.0
	2017 2/4	-	-	-	9.1	8.6	8.7
	2017 3/4	-	-	-	8.8	8.1	8.2
	2017 4/4	-	-	-	8.7	7.7	8.1
	2018 1/4	-	-	-	9.2	9.0	8.6
	2018 2/4	-	-	-	8.6	8.0	8.2

* 출처: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총괄보고서. p.317.
  이현주, 이주미(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87-88.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주: 1) 전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농어가가구 제외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
  3) 2016년까지는 연간 수치가 제시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분기별로 제시됨.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까지의 아동빈곤율만 살펴보았으나 2019년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 시기의 빈곤 여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8~25세까지의 빈곤율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표 Ⅳ-5-55), 18세 미만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2016년까지 감소추세였던 중위 50% 기준 상대빈곤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55. 18~25세 빈곤율(중위 소득 50% 기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4	2017 2/4	2017 3/4	2017 4/4	2018 1/4	2018 2/4
시장소득	10.7	11.5	10.0	10.9	10.4	10.4	12.1	11.1	13.7	12.9	11.8	12.1	13.2
경상소득	9.6	9.8	9.8	9.2	9.0	8.5	11.0	9.3	12.5	10.0	11.0	11.8	13.1
가처분소득	9.5	9.8	9.5	8.7	8.2	7.7	10.2	8.8	11.7	9.4	10.2	12.0	13.1

* 출처: 이현주, 이주미(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3.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주: 1) 전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농어가가구 제외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
3) 2016년까지는 연간 수치가 제시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분기별로 제시됨.

가.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빈곤정도를 OECD 가족 데이터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OECD 국가와의 비교에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에 해당하는 0세~17세의 빈곤율이 사용되는데, 한국은 덴마크 2.9%, 핀란드 3.7%, 슬로베니아 7.0%에 이어 4번째로 낮은 7.1%의 빈곤율을 나타났다(그림 Ⅳ-5-34).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인 13.4%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로 북유럽인 아이슬란드 7.2%, 노르웨이 7.3%, 스웨덴 9.1%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5년 즈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부터 상대빈곤율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이후 국제비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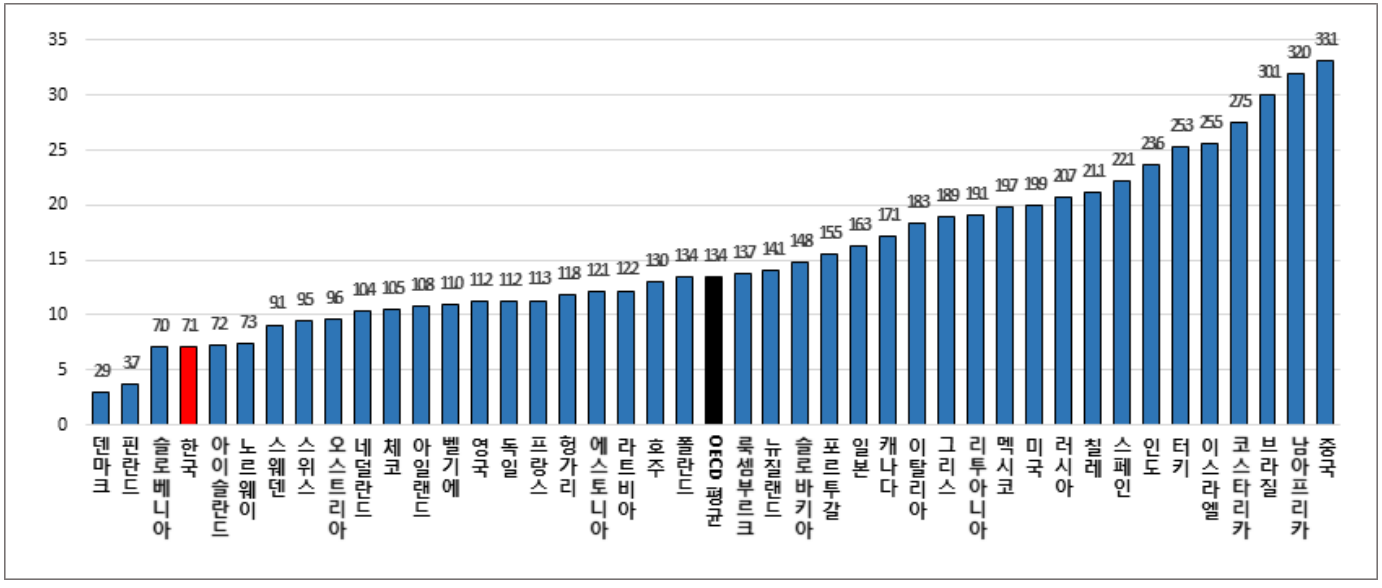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Child outcomes: Child poverty.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9년 08월 12일 인출

* 주: 빈곤선은 각 국가의 중위소득 50%에 맞춘 것으로 중국, 인도, 러시아는 2011, 일본은 2012, 브라질 2013년, 호주,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는 2014년 자료임(이외는 2015년 기준).

그림 Ⅳ-5-34. 0세~17세 아동빈곤율(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국제 비교(2015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4세 미만)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의 아동·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이다. 아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그림 Ⅳ-5-35]는 24세 미만 전체 아동·청소년의 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4년 315,603명→ 2015년 524,209명, 표 Ⅳ-5-56 참조).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 기준 441,012명으로 여전히 그 수가 매우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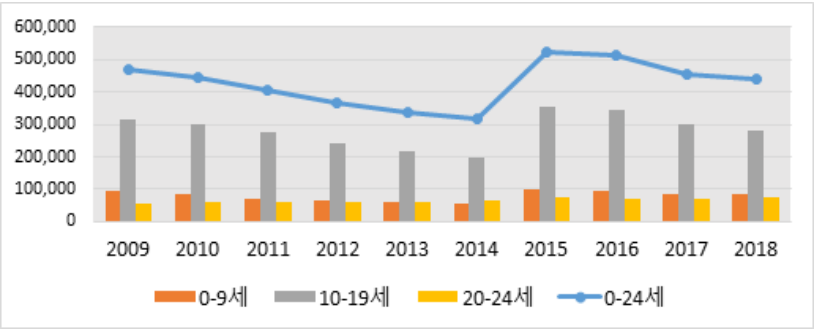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7a).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40.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38.
보건복지부(2019c).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38.

그림 Ⅳ-5-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표 Ⅳ-5-56), 2015년 이후 추이를 보면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전년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5~19세 청소년의 경우 수급자 분포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2015년 41.2%→ 2016년 41.0%→ 2017년 39.7%→ 2018년 37.6%), 20~24세 청소년의 경우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2015년 14.0%→ 2016년 14.1%→ 2017년 15.2%→ 2018년 16.6%). 이는 20세 미만 아동 뿐 아니라 20~24세 후기 청소년 및 초기 청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Ⅳ-5-5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단위 : 명)

연도		0-24세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수급자 전체
2004		432,666	30,641	82,724	127,251	141,729	50,321	1,337,714
2005		464,888	32,015	87,408	143,017	150,698	51,750	1,425,684
2006		471,503	30,757	85,431	147,672	158,400	49,243	1,449,832
2007		468,795	29,405	79,163	144,829	165,833	49,565	1,463,140
2008		457,122	27,073	70,251	138,023	169,986	51,789	1,444,010
2009		466,872	28,338	65,428	135,623	179,584	57,899	1,482,719
2010		445,080	27,106	56,051	124,724	176,277	60,922	1,458,198
2011		407,415	25,104	47,787	109,979	163,648	60,897	1,379,865
2012		364,650	22,412	41,804	93,517	146,939	59,978	1,300,499
2013		337,810	20,871	37,804	81,506	136,087	61,542	1,258,582
2014		315,603	20,428	34,928	71,185	125,294	63,768	1,237,386
2015	명	524,209	24,242	73,176	137,462	216,066	73,263	1,554,484
	%	100.0	4.6	14.0	26.2	41.2	14.0	-
2016	명	510,749	21,988	73,282	133,922	209,498	72,059	1,539,539
	%	100.0	4.3	14.3	26.2	41.0	14.1	-
2017	명	455,997	19,886	65,139	120,662	181,195	69,115	1,491,650
	%	100.0	4.4	14.3	26.5	39.7	15.2	-
2018	명	441,012	21,744	64,948	115,363	165,861	73,096	1,653,781
	%	100.0	4.9	14.7	26.2	37.6	16.6	-

* 출처: 보건복지부(2017a).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40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38
보건복지부(2019c).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38

* 주: 수급자 전체는 시설수급자(2016년도 91,075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또 다른 취약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한부모가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기준 2,158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57). 전년도의 2,127천 가구에 비해 큰 폭의 증가라고 할 수 없으나 2008년부터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도 큰 차이를 아니지만 계속 증가경향을 보였으며, 2018년 기준 전년대비 동일한 10.9%로 나타났다.

표 Ⅳ-5-57.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가구(A)	16,791	17,052	17,339	17,687	18,119	18,388	18,705	19,013	19,285	19,524	19,752
한부모 가구	1,509	1,551	1,594	1,639	1,796	1,880	1,970	2,052	2,090	2,127	2,158
한부모 가구비율	9.0	9.1	9.2	9.3	9.9	10.2	10.5	10.8	10.8	10.9	10.9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장래가구추계 2015-2045」

* 주: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을 살펴본 결과(표 Ⅳ-5-58), 2017년에는 181,023세대, 449,469세대원으로 2014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모두 세대수와 세대원수가 감소하였는데, 2017년 기준 모자가족 세대는 141,207세대, 부자가족은 38,880세대, 조손가족은 936세대였다. 가구형태별 구성비에서는 전년대비 약간의 차이를 보여, 모자가족의 비율이 전년대비 2.7%p 증가한 78.0%로 나타났다.

표 Ⅳ-5-58.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14		192,244	484,232	147,592	371,367	43,617	110,297	1,035	2,568
2015		192,387	482,710	147,926	370,872	43,460	109,386	1,001	2,452
2016	수	187,841	468,414	145,258	362,674	41,627	103,966	956	2,311
	비율	100.0%	-	77.3%	-	22.2%	-	0.5%	-
2017	수	181,023	449,469	141,207	350,674	38,880	96,575	936	2,220
	비율	100.0%	-	78.0%	-	21.5%	-	0.5%	-

* 출처: 여성가족부(2018d). 201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5.
*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 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②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수준

가.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보호대상 아동과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서비스 지원 수준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취약계층 보호 및 양육시설 예산의 경우 이전에는 4번 인권 영역인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 포함되었으나 내용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어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의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지표의 상세 내용으로 이동하였다.

표 Ⅳ-5-59.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2019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 연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12	7,600	6,913	960	1,521	78,700 (3,500개소, 월 395만원)
2013	15,261	7,259	1,014	1,369	90,500 (3,742개소, 월 420만원)
2014	7,630	7,407	1,024	1,232	97,900 (3,989개소, 월 433만원)
2015	7,630	8,623	1,021	1,232	103,500 (4,113개소, 월 443만원)
2016	7,630	13,714	1,000	1,232	108,500 (4,113개소, 월 458만원)
2017	6,867	16,476	1,012	1,241	112,100 (4,113개소, 월 473만원)
2018	6,524	19,132	1,021	1,285	122,600 (4,124개소, 월 516만원)
2019	6,198	21,163	3,218	1,500	126,000 (4,135개소, 월 529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2~2019).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6c, 2017d, 2018f).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4~2015). 각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7). 기금사업활동.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8). 기금사업활동.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에서 2019년 10월 4일 인출.

〈표 Ⅳ-5-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제외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19년에는 전년대비 326백만원이 감소한 6,198백만원이었고, 역시 복권기금을 통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2,031백만원이 증가한 21,163백만원이었다(표 Ⅳ-5-59).

다음으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의 경우 전년대비 3배가 증가한 3,218백만원으로, 특히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에 13억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에 9억원이 새로 추가 지원되었다(보건복지부, 2019e). 가정위탁지원 역시 증가하였는데, 전년도 1,285백만원에서 1,500백만원으로 215백만원이 증가하였다(표 Ⅳ-5-59).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19년에는 126,0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인 3,4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4,135개 센터에 월 529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표 Ⅳ-5-59).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본 사업은 여러 상황의 취약계층 학생[56]에게 필요에 맞는 학습 교육, 복지, 문화체험,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 개별 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치과 지원 등)로 구분하여 지원된다(여성가족부, 2018c: 372). 지원사업 대상 학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Ⅳ-5-60), 2006년 163개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학교 수는 2011년에 1,356개가 넘어섰고, 2018년에는 사업학교 1,720개교에 연계학

5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대상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중 사업 학교의 장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8c: 372).

교 1,853개교까지 더해 총 3,573개교가 지원대상이 되었다. 2018년 사업 지원액은 1,426억원으로 전년대비 74억원이 증가하였다. 이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태도, 기초학력,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비지원학교 저소득층 학생보다 더 높은 학습역량을 나타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여성가족부, 2018c).

표 Ⅳ-5-6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구분	대상지역	대상지역	학교수[1] (초·중·고)	학생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지원액 (교부금/대응투자)
2006년	30지역 (기존15, 신규15)	인구25만 이상	163교 (초99, 중61, 고3)	153,175명 (16,719명)	359억 원 (209억 원, 150억 원)
2007년	60지역 (기존30, 신규30)	인구25만 이상	322교 (초187, 중132, 고3)	326,826명[2] (35,110명)	642억 원 (374억 원,268억 원)
2008년	60지역 (기존60)	인구25만 이상	322교 (초187, 중132, 고3)	304,464명 (27,904명)	514억 원 (248억 원, 266억 원)
2009년	100지역 (기존60, 신규40)	모든 市	538교 (초304, 중230, 고4)	490,081명 (40,275명)	866억 원 (504억 원, 282억 원)
2010년	100지역 (기존60, 신규40)	모든 市	534교 (초296, 중234, 고3)	452,467명 (35,725명)	810억 원 (310억 원, 417억 원)
2011년	114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356교 (초670, 중681, 고5)	1,086,434명 (71,853명)	1,566억 원 (1,188억 원, 367억 원)
2012년	143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01교 (초906, 중831, 고64)	1,302,250명 (72,881명)	1,663억 원 (1,440억 원, 223억 원)
2013년	148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33교 (초894, 중831, 고63)	1,247,836명 (65,291명)	1,493억 원 (1,172억 원, 321억 원)
2014년	144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28교 (초903, 중880, 고65)	1,256,387명 (60,056명)	1,404억 원 (1,297억 원, 107억 원)
2015년	142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23교 (초890, 중861, 고70)	1,186,303명 (54,357명)	1,286억 원 (1,232억 원, 54억 원)
2016년	-	단위학교	1,795교	-	1,286억
2017년	-	단위학교	1,806교	-	1,352억
2018년	-	단위학교	3,573교 (사업학교 1,720교, 연계학교 1,853교)	-	1,426억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p.323.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p.306.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332.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371.

* 주: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 학생 수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수 포함.

다.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f: 75)[57]. 2007년 16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3,769명의 아동과 2,465가구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 사업은 2017년 기준 전국 229개 센터에 144,289명의 아동과 93,298가구를 지원할 정도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표 Ⅳ-5-61).

표 Ⅳ-5-61.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구분	시·군·구 (사업실시 단위)	사업예산(억원)	아동 수(명)	가구 수(가구)
2007	16	50	3,769	2,465
2008	32	98	9,901	6,516
2009	75	225	26,208	17,141
2010	101	301	32,641	21,699
2011	131	372	44,651	29,332
2012	181	462	65,724	42,387
2013	211	576	95,133	61,630
2014	220	632	107,127	66,551
2015	229	658	125,562	80,102
2016	229	668	134,853	86,681
2017	229	668	144,289	93,298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205.

그러나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초기에 비해서는 큰 폭의 증액이 있었으나(2007년: 50억원→2014년: 632억원), 2015년도부터는 658억원, 2016년과 2017년에는

57)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도 포함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9f: 75).

668억원으로 유지, 정체된 상태이다. 본 사업이 영유아 발달적인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조용남, 2019)과 저소득층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학교 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송미령, 김정화, 2014)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향후 정책 방향성과 예산증액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라.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인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이거나 저소득 및 취약계층인 아동들이 이후 사회 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9a). 아동이 후원자/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일정 금액 적립 시 지자체가 월 4만원 한도 내에서 1:1 매칭으로 지원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9a)[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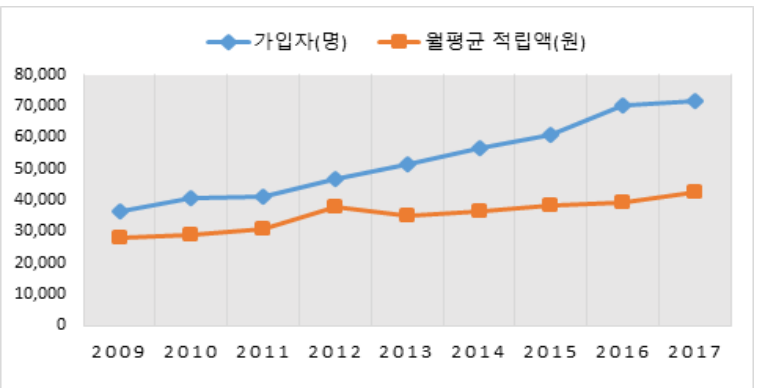

* 주: 본 그림은 표 Ⅳ-5-62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Ⅳ-5-36.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및 월평균 적립액 추이

적립금은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만 24세까지 자립

58) 기본 정부지원인 최고 한도 4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6만원(연간 552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다(보건복지부, 2019a: 233).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a: 233). 따라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보호 종료 또는 저소득층 10후반~20대 초기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매우 필수적인 지원이다.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 사업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2009년 기준 36,469명이었던 가입자는 2017년 71,45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월평균 적립액 역시 2009년 28,184원에서 2017년 42,416원으로 증액되었다(표-Ⅲ-5-62). 또한 적립금 누계 역시 2009년의 481억원(아동: 258억원, 정부 223억원)에서 2017년 3,230억원(아동: 1,861억원, 정부: 1,36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수에 비해 지원대상자 수가 매우 한정적이며 누적된 적립액 역시 이후 자립 시 충분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때 장기적인 대상자 확대 및 적립액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할 때 이들 역시 이러한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Ⅳ-5-62.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연도	가입자(명)	월평균 적립액 (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36,469	28,184	258	223	481
2010	40,829	29,129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510	409	919
2012	46,703	37,792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854	660	1,514
2014	56,479	36,601	1,061	807	1,868
2015	61,000	38,247	1,296	969	2,265
2016	70,417	39,196	1,562	1,150	2,712
2017	71,457	42,416	1,861	1,369	3,230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p.164.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182.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210.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6) 소결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에서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중분류 단계에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로 지표를 구분하였다. 먼저 장애의 경우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를 조사하였으며, 생존 및 발달 분류에서는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을, 보건서비스에서는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을 조사하였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서는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지표항목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서는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국가 간 비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먼저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장애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과 특수교사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각각 175개교, 10,676개 학급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교원의 수도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도 2018년 기준 90,780명이며, 이중 29.0%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71.0%는 일반학교에 배치되었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7년과 2018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특수학교 졸업 후 진로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이후의 진학률은 증가하는 반면, 취업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직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해서는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을 조사하였다. 사망률에서는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사고사망률 등 2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영아의 사망률은 2017년 기준 1,000명당 2.8명이었으

며, 전년대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살펴보면 0세부터 14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15세-19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추이를 보면 15세-19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14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고사망률이 감소하는 반면 15세부터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사고사망의 외인으로는 운수사고가 주요 사망원인이었으며, 1~14세까지의 연령에서는 운수사고가 사망의 핵심적 원인이었고, 15세 이후부터 연령대 증가에 따라 자살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특히 20세~24세까지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약 2배정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인식률과 관련하여 우선 범죄 피해율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총 86,353건이며, 전년 대비 3,73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거주지역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77.5%,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은 7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과 보건교사 배치 현황, 소아청소년과 설치현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현황 등 4개의 지표를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과 관련하여 7기(2016-2017년) 기준 6세-18세의 비만율은 11.2%이며, 6기(2013-2015년) 대비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은 12세-18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아청소년에게서 알레르기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기준 전체 학교 가운데 67.1%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어린이병원은 2019년 현

재 총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공공 전문진로센터는 전국에 7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9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이중 3개소가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2019년 9월 기준 전국에 총 23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9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11개의 지자체에 설치·운영되고 있고 설치비율은 9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률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50.7%였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2017년 기준 2.6%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치과 미치료율은 7.8%로 전년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예방 프로그램 제공률과 관련하여 흡연율, 음주율, 기타 약물 사용률,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등 4개의 지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6.7%, 16.9%로 전년 대비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약물경험률은 2018년 기준 0.5%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그리고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과 관련하여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각각 72.5%, 42.0%로 전년대비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률과 음주율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되는데 비해 예방교육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흡연예방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대분류 영역 중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중분류에 해당하는 '5-4-1. 건강에 대한 인식' 지표의 경우,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6.9%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5-4-2. 신체적 건강'

지표인 건강을 위한 운동실천율은 '한 달에 1~2회 정도'는 20.5%,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23.8%, '일주일에 3회 이상'은 31.2%였으며, 조사대상자 4명 중 1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 달에 1~2회 이상 운동을 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중·고생 청소년들이 운동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수면시간은 7.33시간(환산 시 7시간 20분)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p정도 높았다. 수면부족의 주요 이유(42.3%)는 학업(가정학습+학원·과외)때문이었고, 특히 초등학생의 과반이상이(54.5%) 학업을 수면부족의 이유로 응답했는데, 이 수치는 전년대비 5.6%p 증가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만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가장 높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입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을 제외하면 여학생의 운동실천율과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모든 신체적 건강관련 지표에서 고등학생(특히 일반계고),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5-4-3. 정신적 건강' 지표와 관련하여, '2018 사망원인통계'기준으로 10~29세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이었으며, 10-19세까지의 자살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2017년 4.7%→ 2018년 5.8%). 또한 본 조사에서 30.4%의 아동·청소년이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그 이유로 38.6%가 학업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9%, 가족 간의 갈등 17.4%,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 폭력 등)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4점 만점에 평균 1.88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응답자의 30% 내외가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5명중 4명 이상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도별 추이에서 초등학생의 행복도가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

였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문제가 41.7%로 가장 높았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18.4%,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10점 만점)는 평균 7.0점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04점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 우울증, 행복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정신적 측면의 경우 여학생, 높은 학교급, 한부모가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의 경우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임에 따라 여학생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측면과 관련하여 폭력피해 잠재집단 유형별 정신건강 특성에 대한 심화분석 결과, 가정, 학교, 또래, 사이버 상에서의 다중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포함한 정신건강 측면이 더욱 취약하게 나타나 다중 폭력피해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 필요성을 보였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비율이 38.3%로 가장 많았고, 친구 37.0%, 형제/자매 5.9%, 아버지 5.6% 등의 순이었다.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10.3%이었고, 보다 체계적인 개입이 가능한 전문직인 학교상담교사가 0.5%,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가 0.2%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 학교 상담교사, 특히 청소년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에 대한 비율은 특히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더 높았다.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중분류 중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지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 OECD자료인 2015년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은 1.43%(현금지출 0.18%, 서비스 1.01%, 세금우대 0.23%)였으며, OECD국가 평균인 2.40%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현금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취약계층 아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추이를 보였던 상대아동빈곤율이 2016년 이후 다소 증가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자료에 따른(2015년)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7.1%로 OECD국가 평균인 13.4%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24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15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24세 청소년의 수급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어 후기 청소년 및 초기 청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부모가구는 2018년 기준 2,158천 가구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2014년 이후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2017년 기준 여전히 181,023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양육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제외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학교 1,720개교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연계학교가 1,853개교로 나타났으며, 지원액은 전년대비 74억원이 증액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 사업실시 단위로 전년대비 동일한 229개였으며, 사업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지원 대상 아동수가 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사업예산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되었고, 2017년 이후 월 3만원에서 월 4만으로 적립액이 증액되긴 했으나 누적된 적립금이 이후 자립 시 충분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때, 장기적인 대상자 확대 및 적립액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2019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조사들과는 달리 교육기회 보장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들 중에서 학생취학율 지표를 제외하였다. 대한민국의 학생취학율은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표 간소화 차원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항목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분류 지표인 '교육기회 보장 정도'에는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학생진학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3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① 학생진학률

표 Ⅳ-6-1.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2011~2017)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초등학교→중학교과정		99.9	99.9	99.9	99.9	100.0	100.0	100.0	100.0
중학교→고등학교과정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전체	72.5	71.3	70.7	70.9	70.8	69.8	68.9	69.7
	일반고	(75.8)	(76.6)	(77.7)	78.7	78.9	78.0	77.3	77.7
	특수목적고	(67.4)	(64.2)	(60.0)	59.6	58.4	55.9	56.9	57.7
	특성화고	(61.0)	(50.0)	(41.7)	37.9	36.1	35.0	32.8	36.0
	자율고	(69.3)	(72.6)	(74.7)	75.7	75.8	74.9	73.5	72.6
	일반계고	75.2	76.2	77.5	-	-	-	-	-
	전문계고	63.7	54.4	46.8	-	-	-	-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간추린 교육통계. p.1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간추린 교육통계. p.1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8 간추린 교육통계. p.12.

* 주: 1) ( )는 참고 수치로 2015년 4월 현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률임.
2) 일반계·특성화계 고교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등록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등록자 기준).

학생진학률은 학교급별로 낮은 학교급에서 바로 위의 학교급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연도별 진학률을 보여주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학생진학률은 2018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는 100% 진학률을 보이고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99.7%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69.7%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의 추이는 2011년의 72.5%에서 점차 감소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거의 70%에 머무르는 수준이라 가히 세계에서 최고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고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77.7%로 가장 높은 반면, 특성화고의 진학률은 가장 낮아 36.0%로 나타났다. 이외에 특수목적고의 2018년도 진학률은 57.7%, 자율고는 72.6%로 조사되었다.

②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는 GDP(Gross Domestic Product)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쉽게 말하자면 한 국가가 가진 총 재화 중에서 학생들에게 공적으로 투자하는 교육의 비용 수준을 의미한다. 세계 각 나라의 이러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는 각 나라의 화폐 단위가 다르므로 구매력지수 기준 국민소득을 의미하는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두 나라의 구매력을 평가하여 비교할 때에는 환율과 두 나라의 물가수준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구매력평가에 의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각 국의 교육당국이 직접 투입한 경상비와 자본 비용을 합한 것을 학생 수로 나눈 수치를 다시 구매력평가 지수로 나누어 산출된다.

표 Ⅳ-6-2.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단위 : ppp)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00	한국	3,155	21	4,069	27	6,118	40
(2003)	OECD 평균	4,381	19	5,957	25	9,571	42
2005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2008)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2010	한국	7,453	26	8,911	31	9,998	35
(2013)	OECD 평균	7,974	23	9,014	26	13,528	41
2012	한국	8,811	28	9,728	30	9,896	31
(2015)	OECD 평균	8,247	22	9,518	25	15,028	41
2013	한국	9,341	29	9,913	30	9,353	29
(2016)	OECD 평균	8,477	22	9,811	25	15,772	41
2014	한국	9,656	29	10,316	31	9,570	28
(2017)	OECD 평균	8,733	22	10,106	25	16,143	40
2015	한국	11,047	31	12,202	35	10,109	29
(2018)	OECD 평균	8,631	22	10,010	25	15,656	38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간추린 교육통계. p.5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8 간추린 교육통계. p.54.
* 원자료: OECD(해당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주: 1) 「OECD 교육지표 2017」부터 교육단계 구분 없는 프로그램의 지출액을 각 교육단계에 포함하여 공교육비 산출
2) 2010(2013), 2012(2015), 2013(2016) 한국 자료는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KEDI에서 산출한 것으로 「OECD교육지표」 미수록 자료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학생 수/PPP
4) 한국 1인당 GDP는 '00년 US$ 15,186, '05년 US$ 21,342, '10년 US$ 28,829, 2012년 US$ 32,022, 2013년 US$ 32,664, 2014년 US$ 33,632
5) 한국 PPP환율은 2000년 $1당 731.19원, 2005년 $1당 788.92원, 2010년 $1당 823.67원, 2012년 $1당 860.25원, 2013년 $1당 871.41원, 2014년 $1당 870.74원

위의 표에 따르면 한국은 초중등교육과정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도 PPP 지수는 11,047로 공교육비 비율이 31%인데 비해, OECD 국가의 평균 PPP 지수는 8,631로 공교육비 비율이 22%에 해당되어 한국이 월등 공교육비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중등교

육과정에서도 OECD 국가들의 평균 25%와 비교하여 한국의 공교육비 비율이 35%로 매우 높은 수준의 공교육비가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이 29%, OECD 평균이 38%로 한국의 공교육비 투입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표가 목표하는 교육의 기회 보장의 권리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는 충분한 공교육비의 투입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③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표 Ⅳ-6-3.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18)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치원		14.6	14.5	14.3	13.4	13.4	13.3	12.9	12.3
초등학교		17.3	16.3	15.3	14.9	14.9	14.6	14.5	14.5
중학교		17.3	16.7	16.0	15.2	14.3	13.3	12.7	12.1
고등학교	전체	14.8	14.4	14.2	13.7	13.2	12.9	12.4	11.5
	일반고	15.8	15.4	15.2	14.6	14.1	13.7	13.1	12.1
	특목고	11.0	10.3	10.0	9.7	9.3	9.1	8.9	8.6
	특성화고	12.5	12.1	12.0	11.6	11.4	11.0	10.6	9.8
	자율고	15.2	14.6	14.3	13.9	13.7	13.5	13.2	12.4

* 출처: 교육부(2017.8.31). 보도자료: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8.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8 간추린 교육통계. p.16.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336.

* 주: 교원에는 정규 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위의 표에서 보여주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모두 교육적 환경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즉,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기회 보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 교육의 기회 보장은 더욱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과 가장 최근인 2018년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유치원에서는 각각 14.6명과 12.3명, 초등학

교에서는 17.3명과 14.5명, 중학교에서는 17.3명과 12.1명, 고등학교에서는 14.8명과 11.5명으로 교육적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급격한 한국의 출산율 저하와도 무관하지 않으나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육의 환경이 좋아지는 추세라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표 Ⅳ-6-4. 학급당 학생 수(2011~2018)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치원		20.9	21.6	21.5	19.7	20.0	19.7	19.0	17.9
초등학교		25.2	24.3	23.2	22.8	22.6	22.4	22.3	22.3
중학교		33.0	32.4	31.7	30.5	28.9	27.4	26.4	25.7
고등학교	전체	33.1	32.5	31.9	30.9	30.3	29.3	28.2	26.2
	일반고	34.7	34.2	33.6	32.4	31.3	30.6	29.3	27.1
	특목고	28.4	26.7	25.8	25.0	24.4	24.0	24.7	23.1
	특성화고	28.5	28.0	27.6	26.9	26.4	25.7	23.7	23.0
	자율고	33.5	32.3	31.5	30.7	30.3	30.2	29.6	28.1

* 출처: 교육부(2017.8.31). 보도자료: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7.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8 간추린 교육통계. p.15.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337.

위의 표는 학급당 학생 수의 2011년~2018년까지 연도별 추이와 실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통계표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역시 교육의 기회 보장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1년 이래로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 학교급별에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태를 살펴보면 2011년 20.9명이었던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8년 17.9명으로 낮아졌다.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 25.2명에서 2018년 22.3명으로, 중학교에서는 33.0명에서 2018년 25.7명으로, 고등학교에서는 33.1명에서 26.2명으로 각각 학급당 학생 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교육기회 보장 정도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학교 부적응률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교육의 환경이 좋아지는 긍정적 현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그동안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심한 경쟁적 엘리트교육은 대한민국 사회를 학벌사회로 만들고 학생들의 학교부적응과 같은 병폐를 낳아 부정적 현상을 만들어 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학교부적응 현상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권적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율은 학생의 학교 부적응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지표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학업중단율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2012년에는 68,188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18년에는 52,539명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감소 측면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학업중단율 비율이 전체 학생의 1.0% 해당되었던 2012년에 비해 2018년 현재 0.1%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에 학업중단율이 0.8%였던 것에 비해 2017년과 2018년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부적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실태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2012년 이후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총 377,991명으로 거의 4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더 많은 학업중단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현재 대한민국에는 2000년 이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가 10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국가적으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도 되고, 각종 사회 범죄의 증가를 유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혁신이 요청되는 바이다.

표 Ⅳ-6-5.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18)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초등학교	0.6	0.6	0.5	0.5	0.6	0.6	0.7
중학교	0.9	0.8	0.7	0.6	0.6	0.7	0.7
고등학교	1.8	1.6	1.4	1.3	1.4	1.5	1.6
계 (학업중단자)	1.0 (68,188)	0.9 (60.568)	0.8 (51,906)	0.8 (47,070)	0.8 (47,663)	0.9 (50,057)	0.9 (52,539)

* 출처: 교육부(2019.8.29). 2019 교육기본통계. p.14.

* 주: 1)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는 학업중단자에 포함
2)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3) 사망자는 학업중단자에 미포함
4) 구분연도는 학년도임.
5)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수/학생 수

②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표 Ⅳ-6-6. 자퇴 충동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31.1	68.9	100.0(9,257)	
성별	남학생	26.0	74.0	100.0(4,811)	120.679***
	여학생	36.6	63.4	100.0(4,445)	
학교급	초등학교	23.0	77.0	100.0(2,973)	268.252***
	중학교	27.6	72.4	100.0(2,917)	
	고등학교	41.2	58.8	100.0(3,367)	
고교 유형	일반계고	42.7	57.3	100.0(2,715)	12.617***
	특성화계고	35.0	65.0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5	69.5	100.0(8,394)	15.739**
	한부모가정	37.8	62.2	100.0(694)	
	조손가정	30.4	69.6	100.0(86)	
	기타	31.2	68.8	100.0(76)	
학업 성적	상	22.4	77.6	100.0(3,271)	479.654***
	중	28.2	71.8	100.0(3,889)	
	하	50.0	50.0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25.5	74.5	100.0(5,323)	249.593***
	중	35.3	64.7	100.0(3,071)	
	하	50.3	49.7	100.0(853)	

**$p<.01$, ***$p<.001$

2019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는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 관하여 관련된 설문을 하였다. 먼저 위의 표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충동의 경험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전체 총 응답자 9,257명 중 31.1%는 자퇴 충동의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남학생(26.0%)가 여학생(36.6%) 간에는 자퇴 충동 경험의 차이가 있어 여학생의 자퇴 충동이 10.6%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는 고등학생(41.2%)이 초등학생(23.0%)과 중학생(27.6%)에 비해 자퇴 충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학입학 준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업성적이 하층에 속하는 학생(50.0%)의 반은 상층 집단의 학생(22.4%)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자퇴 충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의 유사한 비율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퇴 충동의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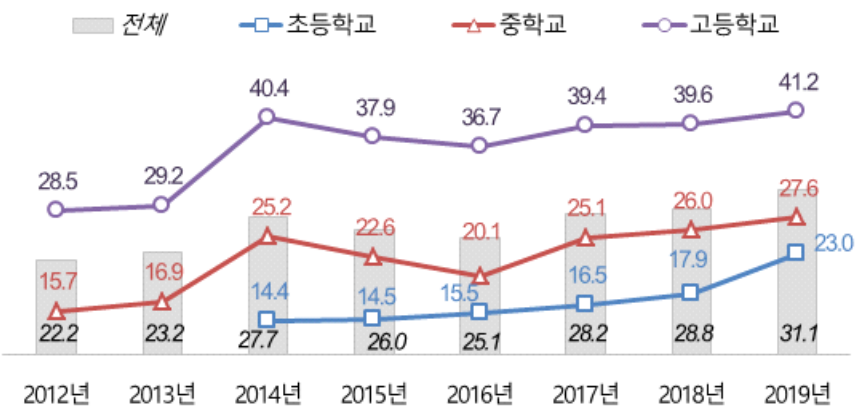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6-1. 자퇴 충동여부(연도별 추이)

위의 그림은 학교급별 학생들의 자퇴 충동에 대한 2012년~2019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학생들의 자퇴 충동 경험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추세라 심히 우려가 되는 조사 결과이다. 2012년과 현재인 2019년의 자퇴 충동 경험을 비교해보면 초등학생에서는 각각 14.4%(2014년 조사결과)에서 23.0%, 중학생에서는 15.7%에서 27.6%, 고등학생에서는 28.5%에서 41.2%로 상승의 폭이 커서 놀라운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표 Ⅳ-6-7. 자퇴 충동이유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N)
전체		8.4	11.0	6.6	0.3	26.1	7.3	11.5	26.1	2.7	100.0(2,859)
성별	남학생	7.6	8.5	9.0	0.0	29.4	6.0	12.3	24.8	2.6	100.0(1,241)
	여학생	9.0	12.9	4.8	0.5	23.6	8.3	11.0	27.1	2.8	100.0(1,618)
학교급	초등학교	18.1	7.9	9.9	0.7	28.9	4.0	3.9	23.8	2.9	100.0(683)
	중학교	9.3	7.2	6.7	0.0	24.5	9.6	9.2	30.9	2.6	100.0(801)
	고등학교	3.1	14.8	4.9	0.2	25.7	7.6	16.7	24.4	2.7	100.0(1,374)
고교유형	일반계고	3.3	17.0	4.3	0.1	26.1	6.4	17.7	22.7	2.4	100.0(1,148)
	특성화계고	2.1	3.3	7.5	1.0	23.6	13.7	11.8	33.1	3.9	100.0(226)
지역규모	대도시	8.8	11.5	6.6	0.3	24.8	6.9	13.6	24.2	3.3	100.0(1,153)
	중소도시	8.2	10.0	6.7	0.3	27.3	8.1	9.3	27.3	2.7	100.0(1,387)
	읍면지역	8.2	13.4	6.2	0.0	25.3	4.9	13.9	27.5	0.5	100.0(319)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2	11.4	6.7	0.2	25.2	7.2	11.5	26.6	2.9	100.0(2,546)
	한부모가정	10.5	6.9	6.2	0.5	33.6	7.1	11.7	22.5	1.1	100.0(261)
	조손가정	19.2	0.0	1.6	4.2	41.1	9.5	13.8	10.5	0.0	100.0(26)
	기타	0.0	19.4	4.9	0.0	17.1	16.8	13.9	27.9	0.0	100.0(23)
학업성적	상	10.0	5.1	9.3	0.4	23.6	6.9	11.6	29.3	3.8	100.0(727)
	중	9.5	11.6	6.5	0.2	27.3	6.5	10.1	25.8	2.6	100.0(1,092)
	하	6.2	14.5	4.7	0.3	26.6	8.4	13.0	24.2	2.2	100.0(1,037)
경제적수준	상	10.0	10.2	8.2	0.1	24.2	7.4	12.0	25.2	2.7	100.0(1,352)
	중	6.6	10.4	5.4	0.2	30.1	6.7	10.3	27.5	2.7	100.0(1,081)
	하	7.9	14.9	4.2	1.0	21.9	8.7	13.4	25.3	2.7	100.0(425)

위의 표는 이러한 학생들의 자퇴 충동 이유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설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자퇴 충동의 이유로 응답한 내용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와 '귀찮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가 동일하게 26.1%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는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1.5%와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1.0%에 자퇴 충동의 이유를 들었다. 다음은 '괴롭힘을 당해서(8.4%)',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7.3%)',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6.6%)', '기타(2.7%)',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0.3%)' 순으로 응답되었다. 조사결과를 볼 때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비율이 '공부하기 싫어서'와 '성적이 좋지 않아서'를 합하여 37.1%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와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의 자퇴 충동 이유는 모두 학교 요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를 자퇴 충동의 이유로 들은 학생들만 따로 비교 분석해보면 먼저 남학생(8.5%)과 여학생(12.9%) 간에는 차이가 있어 학업성적으로 여학생들이 더 자퇴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서 보면 고등학생(14.8%)이 초등학생(7.9%)이나 중학생(7.2%)에 비해 월등히 성적으로 인해 자퇴 충동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교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뚜렷하여 일반계고(17.0%) 학생이 특성화계고(3.3%) 학생보다 학업성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5배가 넘는 자퇴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가족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양부모가정(11.4%) 자녀보다 한부모가정(6.9%)과 조손가정(0.0%)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성적에 의한 자퇴 충동이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손가정 자녀들은 성적보다는 '공부하기 싫어서(41.1%)'와 '괴롭힘을 당해서(19.2%)'가 자퇴 충동의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퇴 충동은 낮아지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퇴 충동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자퇴 충동 이유(1 순위)에 대한 2016년~2019년 간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퇴 충동에 대한 1 순위 이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는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조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는 유사한데 특이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의 2019년도 자퇴 충동 1순위 비율은 그 이전의 년도들에 비해 상승의 폭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상승의 추세는 다른 학교급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무기력하고 모든 것을 다 귀찮게 여기는 심리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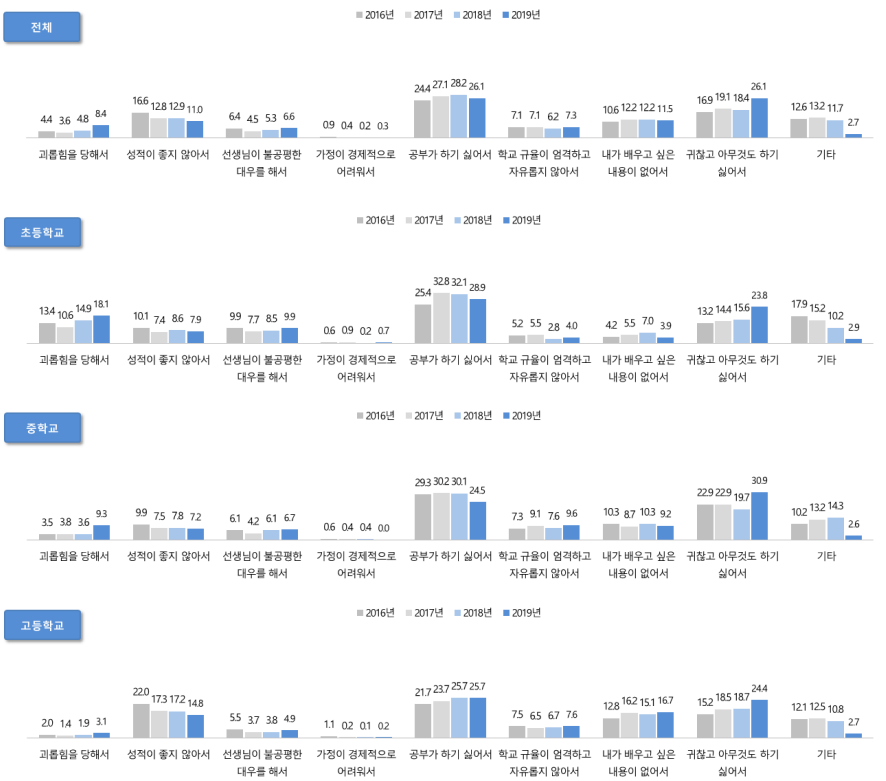

그림 Ⅳ-6-2. 자퇴 충동이유(1순위) : 연도별 추이(%)

2) 교육의 목표

(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의 권리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 지표는 중분류 지표 '교육에의 목표' 에서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지표로서 소분류 지표로 '학교문화'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세부지표로 하고 있다.

① 학교 문화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의 세부지표로 선정된 '학교문화'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함께 묶여 2018년에는 소분류 지표 '학교 부적응률'의 세부지표였는데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 지표는 친구 간의 존중,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 학교의 즐거움 등을 묻고 있다.

아래의 표는 학교 친구들이 응답학생에 대하여 존중하고 배려해 주고 있는 가를 물어본 조사 결과이다. 설문의 내용에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이 합하여 전체 청소년의 93.3%에 해당되어 친구 간에 학생들의 상호 존중과 배려는 비교적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남학생(92.1%)보다는 여학생(94.6%)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95.1%), 중학생(93.7%), 초등학생(9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학생 간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해준다는 응답률이 낮았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생 간 상호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8.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7(0.61)	1.1	5.6	58.4	34.9	100.0(9,260)	
성별	남학생	3.25(0.64)	1.6	6.3	57.5	34.6	100.0(4,810)	32.746***
	여학생	3.29(0.58)	0.6	4.8	59.4	35.2	100.0(4,450)	
학교급	초등학교	3.27(0.66)	1.3	7.8	53.6	37.4	100.0(2,976)	70.003***
	중학교	3.26(0.60)	1.0	5.2	60.8	32.9	100.0(2,918)	
	고등학교	3.29(0.58)	0.9	4.0	60.6	34.5	100.0(3,366)	
고교유형	일반계고	3.30(0.58)	0.9	3.6	60.0	35.4	100.0(2,714)	8.369*
	특성화계고	3.23(0.58)	0.9	5.4	63.1	30.6	100.0(65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3.28(0.61)	1.1	5.3	58.2	35.4	100.0(8,399)	36.642***
	한부모가정	3.21(0.60)	0.4	8.4	60.5	30.6	100.0(693)	
	조손가정	3.20(0.73)	4.6	4.4	57.6	33.3	100.0(86)	
	기타	3.13(0.54)	0.0	8.8	69.5	21.7	100.0(76)	
학업성적	상	3.39(0.60)	0.6	4.3	50.6	44.5	100.0(3,270)	246.063***
	중	3.24(0.59)	0.9	5.8	62.0	31.2	100.0(3,892)	
	하	3.15(0.63)	2.1	7.2	64.0	26.7	100.0(2,090)	
경제적수준	상	3.33(0.62)	1.0	4.9	53.9	40.2	100.0(5,325)	190.643***
	중	3.21(0.58)	0.9	5.6	64.8	28.7	100.0(3,073)	
	하	3.10(0.65)	2.2	9.8	63.7	24.3	100.0(853)	

*p<.05, ***p<.001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학생 간 존중과 배려에 대한 2013년~2019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학교급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긍정적 응답의 추이가 2013년 84.6%에서 2019년 91.0%로 높아졌지만, 2017년 91.7%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는 추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조사한 학생들 간의 폭력에서도 초등학생의 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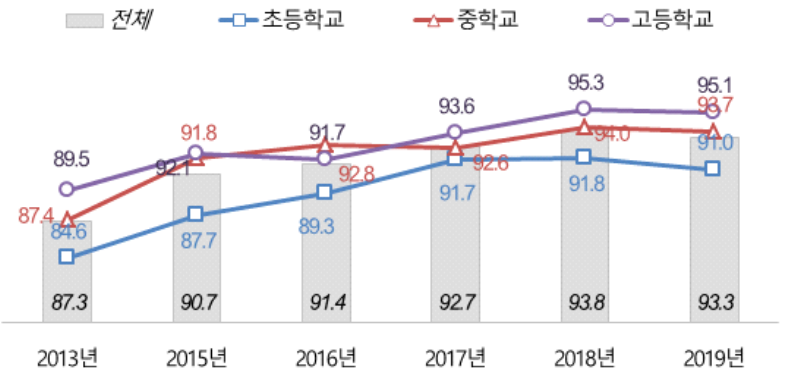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3.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아래의 표에는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하고 있는 가에 대한 설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을 합한 긍정적 응답 결과가 전체 응답 학생 9,256명 중 9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의 비율은 남학생(93.1%)과 여학생(92.3%)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95.9%)이 중학생(91.7%)과 고등학생(90.9%)보다 높게 나왔다. 일반계고(90.8%)와 특성화계고(91.2%)의 차이도 크지 않았으나, 양부모가정 자녀(93.0%)보다는 한부모가정 자녀(89.8%)와 조손가정 자녀(88.3%)는 상대적으로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존중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9.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5(0.66)	1.7	5.5	48.9	43.8	100.0(9,256)	
성별	남학생	3.38(0.67)	1.9	5.0	46.5	46.6	100.0(4,808)	34.046***
	여학생	3.32(0.66)	1.6	6.1	51.4	40.9	100.0(4,447)	
학교급	초등학교	3.57(0.61)	1.1	3.1	33.2	62.7	100.0(2,972)	665.552***
	중학교	3.29(0.66)	1.7	6.6	53.1	38.6	100.0(2,918)	
	고등학교	3.20(0.66)	2.3	6.8	59.1	31.8	100.0(3,366)	
고교 유형	일반계고	3.21(0.66)	2.2	7.0	58.6	32.2	100.0(2,714)	3.656
	특성화계고	3.18(0.67)	2.9	5.9	61.2	30.0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6(0.66)	1.7	5.3	48.8	44.2	100.0(8,393)	28.376***
	한부모가정	3.27(0.69)	1.7	8.5	50.8	39.0	100.0(694)	
	조손가정	3.32(0.82)	5.4	6.3	39.5	48.8	100.0(86)	
	기타	3.35(0.61)	0.4	5.7	52.2	41.7	100.0(76)	
학업 성적	상	3.50(0.63)	1.2	3.8	39.1	55.9	100.0(3,271)	440.438***
	중	3.34(0.63)	1.3	4.9	52.5	41.3	100.0(3,890)	
	하	3.13(0.71)	3.4	9.5	57.4	29.7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3.43(0.65)	1.4	4.7	43.2	50.6	100.0(5,322)	278.453***
	중	3.27(0.64)	1.6	5.7	56.6	36.0	100.0(3,072)	
	하	3.12(0.74)	4.0	9.7	56.5	29.8	100.0(853)	

***$p<.001$

아래의 그림은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존중에 대한 학교급별 학생들의 긍정적 응답 결과에 대한 2013년~2019년 사이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전체 학교급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2013년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89.4%였다가 2018년 97.0%로 최고였는데 2019년에 다시 95.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로 보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정도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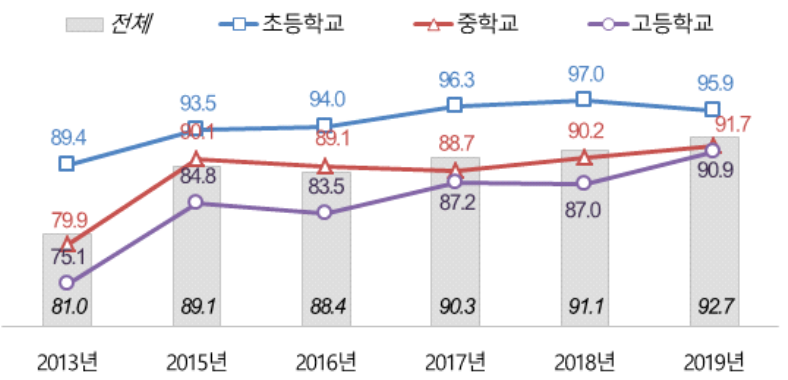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4.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아래의 표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가를 학생들에게 설문한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 9,242명 중 76.5%는 '즐거운 편이다', '매우 즐겁다'의 긍정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달리 말하면 4명 중 1명 가깝게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한 것과 같다. 남학생(77.4%)과 여학생(75.6%)을 비교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82.7%)이 중학생(76.3%)과 고등학생(71.1%) 보다 학교에 가는 것을 더 즐겁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일반계고(70.9%) 학생과 특성화계고(71.9%) 학생 간에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족 유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았는데, 양부모가정 자녀(77.2%)가 한부모가정 자녀(70.1%)나 조손가정 자녀(66.9%) 보다 상대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 집단의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6-10.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7(0.81)	5.2	18.3	50.7	25.8	100.0(9,249)	
성별	남학생	3.00(0.82)	5.5	17.1	49.7	27.7	100.0(4,804)	23.401***
	여학생	2.94(0.79)	4.9	19.5	51.7	23.9	100.0(4,445)	
학교급	초등학교	3.15(0.81)	4.5	12.7	46.3	36.4	100.0(2,967)	315.735***
	중학교	2.95(0.79)	5.1	18.6	52.9	23.4	100.0(2,918)	
	고등학교	2.84(0.79)	6.0	22.9	52.5	18.6	100.0(3,364)	
고교 유형	일반계고	2.84(0.80)	6.1	23.0	51.9	19.0	100.0(2,712)	2.324
	특성화계고	2.83(0.77)	5.5	22.6	54.9	17.0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9(0.80)	5.0	17.9	50.6	26.6	100.0(8,387)	55.333***
	한부모가정	2.79(0.81)	7.5	22.5	53.2	16.9	100.0(693)	
	조손가정	2.76(0.96)	13.7	19.4	44.2	22.7	100.0(86)	
	기타	2.94(0.85)	5.2	23.4	43.9	27.5	100.0(76)	
학업 성적	상	3.17(0.78)	3.6	12.6	47.1	36.7	100.0(3,268)	614.682***
	중	2.98(0.75)	3.9	17.7	55.0	23.4	100.0(3,889)	
	하	2.64(0.84)	10.3	28.2	48.2	13.3	100.0(2,084)	
경제적 수준	상	3.09(0.79)	4.2	14.3	49.6	31.9	100.0(5,318)	384.132***
	중	2.86(0.78)	5.3	22.7	53.0	19.1	100.0(3,069)	
	하	2.62(0.85)	11.6	27.2	48.6	12.6	100.0(853)	

***p<.001

아래의 그림에는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을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는 가에 대한 2013년~2019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즐거운 편이다'와 '매우 즐겁다'의 긍정적 의미에 응답한 학생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약간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긍정적 응답의 경우가 가장 낮은 고등학생의 경우는 긍정적 응답이 다소 상승하는 연도별 추이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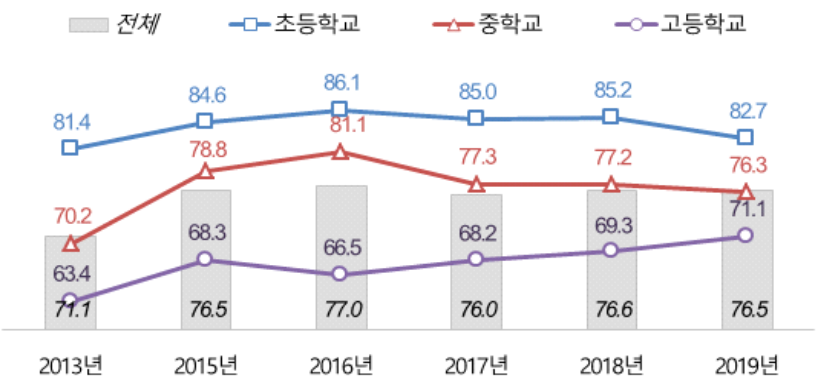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② 학교생활 만족도

아래의 표에는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의 또 다른 세부지표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학교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긍정적 응답의 합이 전체 9,262명의 학생 중 85.1%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응답 결과는 남학생(86.2%)이 여학생(83.9%) 보다 많았으며,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90.9%)이 중학생(84.9%)과 고등학생(80.2%)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계고(80.7%) 학생과 특성화계고(78.3%) 학생의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양부모가정 자녀(85.5%)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한부모가정 자녀(80.4%)와 조손가정 자녀(84.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 성적이 상층인 집단의 학생(89.4%)과 하층 집단의 학생(73.8%) 간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의 경우에서도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경제수준이 상층인 집단(88.4%)의 학생과 하층 집단(72.7%) 학생 간 차이가 큰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표 Ⅳ-6-11.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05(0.67)	2.6	12.3	62.6	22.5	100.0(9,262)	
성별	남학생	3.08(0.69)	3.0	10.8	60.9	25.3	100.0(4,814)	63.927***
	여학생	3.01(0.65)	2.2	13.9	64.4	19.5	100.0(4,448)	
학교급	초등학교	3.25(0.66)	1.6	7.5	55.3	35.6	100.0(2,976)	515.917***
	중학교	3.01(0.66)	2.8	12.3	65.5	19.4	100.0(2,917)	
	고등학교	2.91(0.65)	3.2	16.6	66.6	13.6	100.0(3,369)	
고교 유형	일반계고	2.91(0.65)	3.2	16.2	67.0	13.7	100.0(2,717)	2.019
	특성화계고	2.88(0.67)	3.5	18.2	64.8	13.5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6(0.66)	2.4	12.2	62.5	23.0	100.0(8,399)	45.232***
	한부모가정	2.91(0.70)	4.9	14.6	65.0	15.4	100.0(694)	
	조손가정	3.08(0.79)	5.9	9.8	55.0	29.3	100.0(86)	
	기타	3.11(0.73)	4.1	8.7	58.8	28.3	100.0(76)	
학업 성적	상	3.20(0.67)	1.8	8.8	56.8	32.6	100.0(3,273)	568.426***
	중	3.06(0.61)	1.6	10.9	67.2	20.4	100.0(3,891)	
	하	2.79(0.70)	5.7	20.4	63.1	10.7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3.14(0.66)	2.1	9.5	60.4	28.0	100.0(5,324)	358.372***
	중	2.97(0.64)	2.4	14.8	66.2	16.5	100.0(3,075)	
	하	2.75(0.71)	6.8	20.6	63.2	9.5	100.0(854)	

***p<.001

(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① 진로교육 참여 기회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는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항에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와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제29조에서 교육의 목표를 정하면서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UN, 1989).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내용들은 모든 아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격, 재능, 잠재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균등의 토대 위에서 여러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아동의 고유의 특성에 따라 아동은 자신의 진로를 택할 수 있고, 이러한 진로에 따라 국가는 이들의 진로에 따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가드너(H. Gardner)도 자신의 다중지능이론을 통해서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지능과 잠재력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편향된 지능만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였다(Gardner, 1993; 이옥분, 2013: 512). 아동권리협약도 아동들의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의 진로 및 교육의 설계를 하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교육이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 중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이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은 타고난 아동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교육부는 2015년 06월 22일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2016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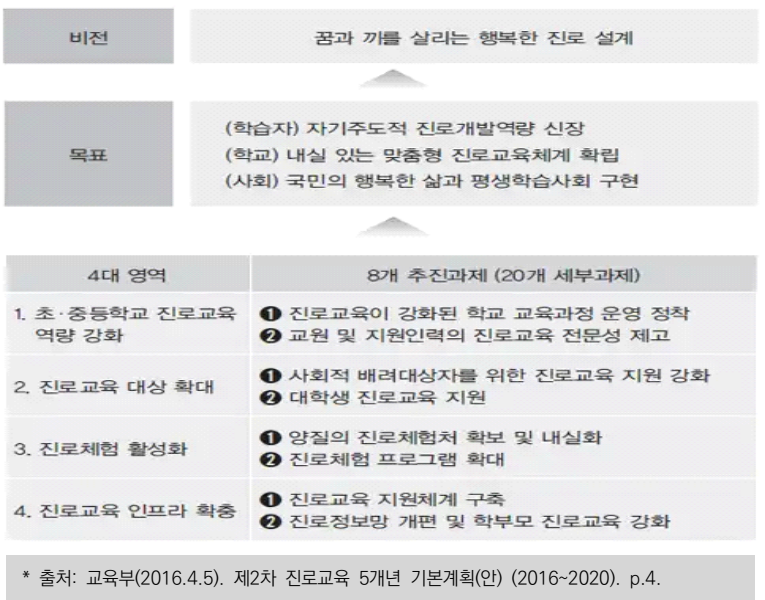

그림 Ⅳ-6-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2016~2020)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은 진로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수립되었던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을 발전시킨 계획이다. 당시 진로교육 종합계획은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고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획되었다. 이는 그동안 학교가 교과교육 등 진학을 위한 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해 진로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성찰을 바탕으로 진로교육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의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 체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4대 영역으로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진로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 진로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설계를 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 2과제씩 8개의 추진과제와 총 20개의 세부과제가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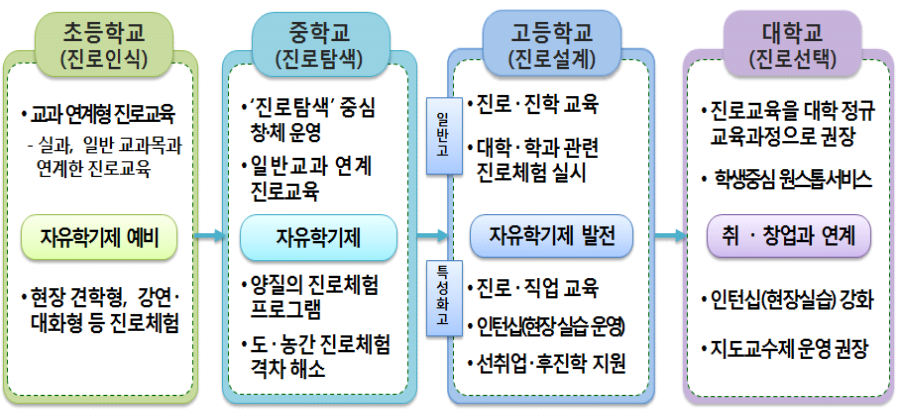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 (2016~2020). p.4.

그림 Ⅳ-6-7.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과 연계한 진로교육과 현장견학, 강연, 대화 등의 진로체험을 실시하여 진로를 인식하는 단계로 마련하였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로서 무엇보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유럽 선진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1974년 아일랜드의 '전환학년(transition year)'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 전환학년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1년간 입학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 수업과 외부의 진로체험활동의 병행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2013년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의 운영은 중학교 과정 중 1학기를 오전에는 교과수업으로, 오후에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자유학기를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로 나누어 일반계고는 대학으로의 진로에 맞추어 진학 학과와 관련된 진로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직업계고에서는 인턴십과 같은 현장실습을 운영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5년 6월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 법 제15조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제2항에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진로심리검사 개발, 진로상담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진로전담교사 교육,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등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5개년 계획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2,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의 재원 확보 방안은

국비와 지방비,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투자로 소요 재정을 분담하고, 교육기부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재정 투자를 유도하고 교육예산 중 진로교육 관련 예산의 연차별 지속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표 Ⅳ-6-12. 추진과제별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추진과제	'16	'17	'18	'19	'20	계
1.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50	69	56	61	70	306 (12.7%)
1-1.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34	50	35	36	42	197
1-2.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16	19	21	25	28	109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146	175	191	196	204	912 (38.0%)
2-1.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62	62	73	74	76	347
2-2.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84	113	118	122	128	565
3. 진로체험 활성화	125	140	153	168	191	777 (32.4%)
3-1.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55	59	62	67	73	316
3-2.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70	81	91	101	118	461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25	119	178	40	43	405 (16.9%)
4-1.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4	13	13	14	16	60
4-2.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21	106	165	26	27	345
합 계	346	503	578	465	508	2,400

* 출처: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 (2016~2020). p.35.
※ 사업 예산은 잠정으로 향후 과제 이행과정에서 변동 가능

정부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 4대 정책영역에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표 Ⅳ-6-13. 제2차 진로계획 5개년계획의 기대효과

정책영역	추진과제	핵심 성과지표	2020년
1. 초·중등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단위학교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등) 편성 확대(%)	중 95이상 고 95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시범학교 1,000교 협력학교 2,000교
		커리어넷을 활용한 1:1 온라인 진로 상담서비스 운영 확대(건)	40,000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진로전담교사 비율(%)	초등 100 중등 100 (시도 자율)
		진로교육 지원 전문인력(명)	3천명 이상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참여 학생 수(명)	8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수혜인원수 (만명)	10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성과지표 개발·활용	지표 개발
		대학생용 진로교육 프로그램(개)	10
3. 진로 체험 활성화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진로체험처 확보 수(개) ('꿈길' 등록기준)	100,000
		진로체험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개)	20,000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원격영상 멘토링 수혜 확대(교)	3,500
		진로멘토 인원 확보(명)	700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확대(교)	3,000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국가진로교육지원센터 지정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 지정	1개 지정 시·도별 1개 이상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진로정보망 대상(범위)	대학생·일반인 까지 확대

* 출처: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 (2016~2020). p.39.

② 직업교육 참여 기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동의 교육권을 인정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제28조 1항의 나호에서는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동시에, 청년실업율도 매우 높은 나라이다.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이므로 졸업 후 이들의 취업도 쉽지 않다. 또한, 한국 사회는

학벌사회로 공고히 굳어져 있어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취업, 결혼, 사회생활에서도 계층의 위화감 속에서 사회의 낙오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계층의 이동이 점점 사라지고, 학벌사회 속에서 교육의 재생산 기능으로 계층은 계속 대물림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굳이 아동권리협약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학생 개개인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매우 중차대하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비록 늦었지만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진로 및 직업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래의 표에는 2018년도 대한민국 직업계고 현황이 잘 나타나있다. 직업계고 학교는 마이스터고 47개교, 특성화고 464개교, 종합고 75개교이고 총 학생 수는 305,268명으로 3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이다.

표 Ⅳ-6-14. 직업계고 학교, 학급, 학생, 교원 현황('18년)

학 교 급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초등학교		6,285	121,817	2,711,385	186,684
중 학 교		3,236	51,832	1,334,288	109,906
고등학교		**2,359**	**58,661**	**1,539,017**	**134,289**
직업계	마이스터고	47	971	18,546	2,783
	특성화고	464	10,780	249,430	25,128
	종 합 고	75	1,603	37,292	3,612
	소 계	**586**	**13,354**	**305,268**	**31,523 (14,800*)**
일반계	일반고 (종합고 제외)	1,481	38,812	1,059,039	87,243
	자 율 고	155	4,382	123,292	9,966
	특성화고 (대안교육)	26	169	2,830	491
	특목고 (마고제외)	111	1,934	48,588	5,062
	소 계	**1,773**	**45,297**	**1,233,749**	**102,762**
기타학교**		310	5,817	49,476	10,554
계		**12,190**	**238,127**	**5,634,166**	**441,433**

* 출처: 교육부(2019.8.21). 보도자료: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p.9.
* 주: 1) 전문교과 교원 수
2)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교육부는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한 이후 발 빠르게 2016년 유럽의 독일, 스위스 등에서 전통적인 직업교육 형태인 산학일체형 직업계고 모델을 도입하여 기존의 도제학교[59] 운영에 특성화고등학교도 140개 선정하여 확대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매력적인 직업계고등학교 150개교에 3년간 총 9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MAGIC[60]' 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비록 뒤늦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한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기업의 수는 2014년~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때 참여 기업은 300%, 학생 수는 670%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받았다(최창욱 외, 2018: 434). 하지만 사회적 구조와 문화가 다른 유럽과 한국의 상항과 여건은 많이 달라서 즉, 한국의 사회적, 교육적 조건과 문화가 유럽과 달라서 기대했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고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학일체형 도제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임금문제 등 충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산업체의 문화도 아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현장실습에 성숙하지 않아서 유럽에서와 같은 기대효과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이 오히려 불거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제주도 음료공장에서 안전문제로 현장실습생이 죽는 사고가 나자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의 요지는 안전하고 학습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훈련촉진법 제2조7호에 현장실습의 정의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현장실습 안전문제를 보장하고 보완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학교는 운영여건을 빠르게 갖출 수 없는 상황이고, 산업체는 안전사고의 부담 및 책무성 강화로 인해 위축되

59) 특성화고 수에 포함됨.
60) "Make an Attractive, Good & Innovative sChool"의 약칭

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2016년에 31,060개에서 2017년에는 19,709개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12,266개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취업준비 통로인 현장실습이 위축되는 것은 곧바로 취업률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2018년 8,000개의 현장실습 선도 기업을 발굴하고 2022년까지 이를 30,000개까지 늘리고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와 금리우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현장실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의 2항 "수업은 주간·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에서 "(...) 방송·통신수업 **또는 현장수업** 등을 할 수 있다."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교육부, 2019.1).

한편 정부는 직업계고 중에서 우수한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도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진로 및 직무 경로를 개설해 주며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학점제의 도입은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확장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이러한 마이스터고의 학점제 도입에 따른 향후 변화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한편 이러한 중등교육과정에서의 학점제 도입은 단순히 마이스터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점제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점제의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 법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 적용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일반고는 정책연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교육부(2019.8.21). 보도자료: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p.3.

그림 Ⅳ-6-8.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 모습

아래의 그림에서는 이러한 마이스터고 학점제도의 일환으로 계획된 융합교육과정의 한 예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에서 기계를 전공하는 학생이 '기계 조작 과정' 과목을 수강하고, 다시 소프트웨어(SW)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계 조작원'으로 산업계에서 보다 환영받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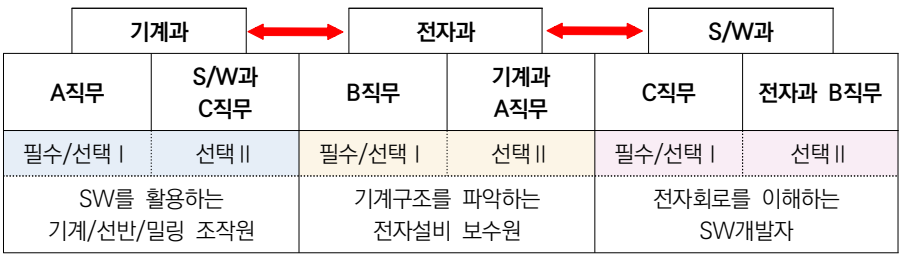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19.8.21). 보도자료: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p.3.

그림 Ⅳ-6-9. 융합 교육과정 운영 예시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문화·예술 시설 수 및 이용 만족도

2018년에는 중분류 지표인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소분류 지표를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와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를 소분류 지표로 하여 다시 소분류 지표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에 세부지표로 '전국 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수'로 분류하였다. 2019년도 지표는 변화가 있어 소분류 지표를 '여가·문화·예술 시설 수 및 이용 만족도'와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로 나누고, 다시 '여가·문화·예술 시설 수 및 이용 만족도'를 세부지표 '여가·문화·예술 시설 수'와 '여가·문화·예술 시설 이용 만족도'로 나누었다.

① 여가·문화·예술 시설 수

〈표 Ⅳ-6-15〉는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정부가 관장하는 시설로서 전국에 총 80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숙박시설이 없고 주로 생활권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각각 185개소와 270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을 가지고 주로 자연권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전국에 181개, 야영장은 39개, 유스호스텔은 11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특화시설은 직업체험이나 정보문화 등의 특성화시설로 전국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Ⅳ-6-1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01	185	270	181	39	115	11
공 공	568	184	265	66	19	23	11
민 간	233	1	5	115	20	92	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5에서 2019년 8월 13일 인출.
여성가족부(2018e).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8.12.31기준)

〈표 Ⅳ-6-16〉은 위에서 서술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세부적인 전국 광역시도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154개소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청소년수련관이 34개소, 청소년문화의집이 59개소, 청소년수련원이 38개소, 야영장이 9개소로 전국에서 제일 많고, 유스호스텔은 14개소로, 제주도의 19개소와 경상북도의 15개소 다음으로 많다. 특화시설은 서울이 7개소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다음에는 강원도가 총 80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76개소, 경상북도 65개소, 서울 63개소, 전남 58개소, 전북 54개소, 제주 51개소 등의 순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표 Ⅳ-6-16.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01	185	270	181	39	115	11
서울	63	32	17	3	0	4	7
부산	24	8	11	3	1	1	0
대구	14	5	4	2	0	2	1
인천	28	8	6	5	4	5	0
광주	13	5	6	1	0	0	1
대전	16	4	8	3	0	1	0
울산	9	1	7	1	0	0	0
세종	3	1	2	0	0	0	0
경기	154	34	59	38	9	14	0
강원	80	15	31	17	4	12	1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충북	44	6	13	19	1	5	0
충남	49	11	12	15	2	9	0
전북	54	11	18	13	3	8	1
전남	58	8	23	13	6	8	0
경북	65	15	16	16	3	15	0
경남	76	18	15	27	4	12	0
제주	51	3	22	5	2	19	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5에서 2019년 8월 13일 인출.
여성가족부(2018e).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8.12.31기준)

〈표 Ⅳ-6-17〉은 청소년이 공공도서관의 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년 중 한 번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청소년 9,253명 중 24.6%에 해당하였다. 다시 말하면 4명 중 1명의 청소년은 공공도서관을 1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69.6%)이 여학생(81.7%)보다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낮았으며, 초등학생(83.1%)이 중학생(74.0%)이나 고등학생(69.9%)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정 자녀(76.2%)보다는 한부모가정 자녀(67.1%)나 조손가정 자녀(70.1%)가 공공도서관을 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떨어졌으나 경제적 수준과는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1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 공공도서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4.6	26.2	21.0	16.9	11.3	100.0(9,253)	
성별	남학생	30.4	24.8	18.4	15.9	10.5	100.0(4,807)	190.912***
	여학생	18.3	27.7	23.8	18.0	12.3	100.0(4,446)	
학교급	초등학교	16.9	23.8	18.7	20.7	19.8	100.0(2,970)	453.023***
	중학교	26.0	28.7	22.6	15.1	7.6	100.0(2,915)	
	고등학교	30.1	26.1	21.6	15.1	7.1	100.0(3,3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27.5	26.1	22.7	16.0	7.7	100.0(2,717)	52.467***
	특성화계고	40.8	25.9	16.9	11.4	4.9	100.0(651)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3.8	26.0	21.5	17.3	11.3	100.0(8,392)	55.910***
	한부모가정	32.9	29.7	14.6	12.4	10.5	100.0(692)	
	조손가정	30.0	24.4	23.1	11.1	11.4	100.0(86)	
	기타	29.5	19.6	17.6	15.6	17.7	100.0(76)	
학업 성적	상	18.9	22.9	21.1	21.0	16.1	100.0(3,269)	355.626***
	중	23.8	27.7	21.8	16.5	10.2	100.0(3,886)	
	하	34.9	28.7	19.2	11.2	6.1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22.8	25.7	20.5	18.2	12.8	100.0(5,320)	60.111***
	중	26.9	26.8	22.2	14.8	9.2	100.0(3,071)	
	하	27.1	27.6	19.3	16.2	9.9	100.0(854)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6-10]은 청소년의 이러한 공공도서관 이용률에 대한 2013년~2019년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모든 학교급 청소년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도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추이도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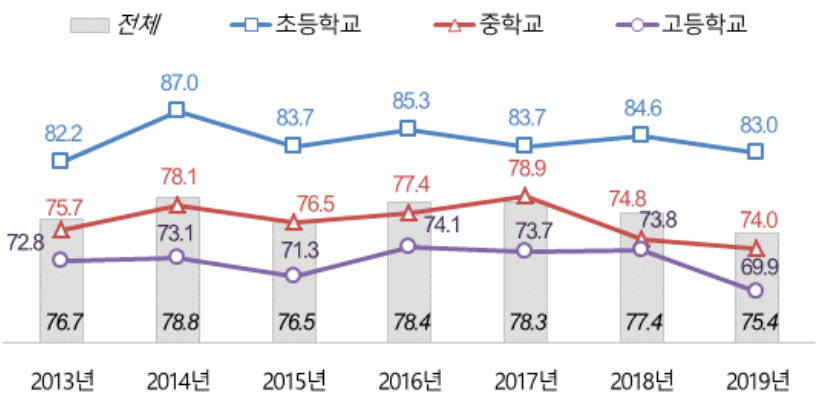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 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0.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공공도서관(연도별 추이)

〈표 Ⅳ-6-18〉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정도가 나타나있다. 1년에 한 번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61.4%에 해당하여 5명 중 3명 정도에 해당하고 있다. 남학생(62.9%)과 여학생(59.8%)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정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42.0%)이 초등학생(38.5%)과 고등학생(35.7%)에 비해 이용 정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37.2%)나 중소도시(38.0%)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읍면지역(45.9%) 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6-18.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여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61.4	27.3	4.8	3.5	3.0	100.0(9,197)	
성별	남학생	62.9	25.5	4.7	3.7	3.2	100.0(4,776)	17.757**
	여학생	59.8	29.3	4.8	3.3	2.8	100.0(4,421)	
학교급	초등학교	61.5	23.1	6.2	4.4	4.8	100.0(2,926)	131.532***
	중학교	58.0	32.1	4.3	3.0	2.5	100.0(2,912)	
	고등학교	64.3	26.9	3.8	3.2	1.8	100.0(3,359)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7.9	3.8	2.9	2.6	100.0(3,751)	48.439***
	중소도시	62.0	25.8	5.3	3.7	3.2	100.0(4,378)	
	읍면지역	54.1	31.5	5.9	5.1	3.5	100.0(1,06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1.1	27.6	4.8	3.6	3.0	100.0(8,346)	18.309
	한부모가정	66.2	24.0	4.6	2.8	2.5	100.0(684)	
	조손가정	57.1	26.6	8.0	1.8	6.6	100.0(85)	
	기타	62.1	29.4	2.2	1.3	4.9	100.0(75)	
학업 성적	상	56.8	30.0	5.4	3.9	3.8	100.0(3,246)	67.933***
	중	62.2	26.7	4.7	3.8	2.6	100.0(3,862)	
	하	67.3	24.1	3.7	2.5	2.4	100.0(2,081)	
경제적 수준	상	59.7	28.3	5.2	3.9	3.0	100.0(5,282)	38.363***
	중	64.7	25.3	4.4	3.2	2.5	100.0(3,055)	
	하	60.3	28.5	3.5	2.8	4.9	100.0(851)	

**p<.01,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6-11]은 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도의 연도별 추이(2013년~2019년)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용도가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2017년에 37.5%의 이용도에서 2018년 최고인 42.5%의 상승을 보이다가 2019년에 다시 35.7%로 크게 낮아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017년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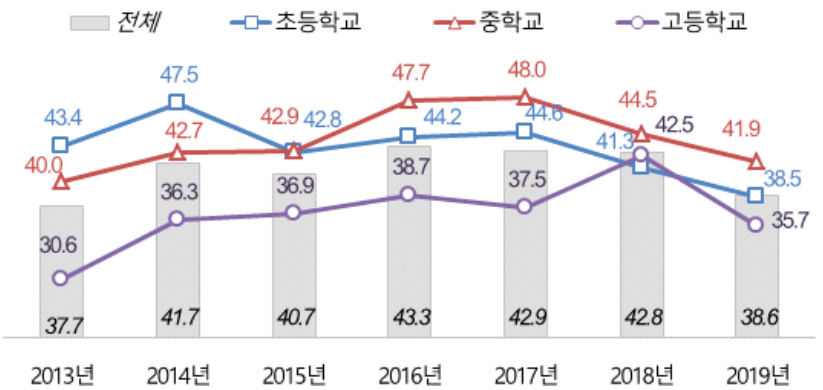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1.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청소년시설(연도별 추이)

〈표 Ⅳ-6-19〉는 청소년의 수영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1년 중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9,208명 중 33.8%라 하여 3명 중 1명은 체육시설을 1년에 한 번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68.7%)이 여학생(63.5%)보다 더 많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학생(84.6%)이 중학생(67.3%)과 고등학생(49.3%)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학시험에 부담이 클수록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교 유형에서는 차이

가 없었고, 양부모가정 자녀(66.7%)가 한부모가정 자녀(60.1%)보다는 높았으나, 조손가정 자녀(74.3%)보다는 체육시설이용도가 더 낮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체육시설의 이용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표 Ⅳ-6-19.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3.8	25.9	14.6	10.6	15.1	100.0(9,208)	
성별	남학생	31.3	20.7	14.4	12.8	20.8	100.0(4,775)	376.600***
	여학생	36.5	31.5	14.8	8.3	9.0	100.0(4,433)	
학교급	초등학교	15.4	25.8	18.3	12.9	27.5	100.0(2,933)	1168.682***
	중학교	32.7	27.9	14.7	11.8	12.8	100.0(2,913)	
	고등학교	50.7	24.2	11.2	7.6	6.3	100.0(3,362)	
고교 유형	일반계고	50.6	23.8	11.3	8.0	6.3	100.0(2,710)	5.467
	특성화계고	51.1	26.0	11.2	5.5	6.3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3	26.0	14.7	10.8	15.2	100.0(8,354)	27.393**
	한부모가정	39.9	25.7	12.5	8.6	13.3	100.0(687)	
	조손가정	25.7	27.4	18.4	4.6	24.0	100.0(85)	
	기타	39.3	18.9	14.2	14.7	13.0	100.0(75)	
학업 성적	상	25.5	24.2	16.2	13.2	20.9	100.0(3,248)	338.030***
	중	34.5	27.9	14.8	9.9	13.0	100.0(3,868)	
	하	45.5	25.0	11.6	7.8	10.0	100.0(2,084)	
경제적 수준	상	28.6	25.2	15.4	12.4	18.4	100.0(5,286)	253.222***
	중	39.2	27.2	14.1	8.4	11.1	100.0(3,060)	
	하	46.5	25.8	11.0	7.6	9.1	100.0(853)	

**p<.01,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6-12]는 2013년~2018년 간 각급 학교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한 연도별 추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3년에 비해 체육시설 이용수준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고점을 찍은 2014년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2018년에 체육시설 이용도가 다시 상승하였는데 2019년에는 또 떨어져 2017년보다 이용도가 낮게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7년에는 85.3%에서 2019년에는 84.5%로 조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체육시설 이용수준은 초등학생이 약 20%나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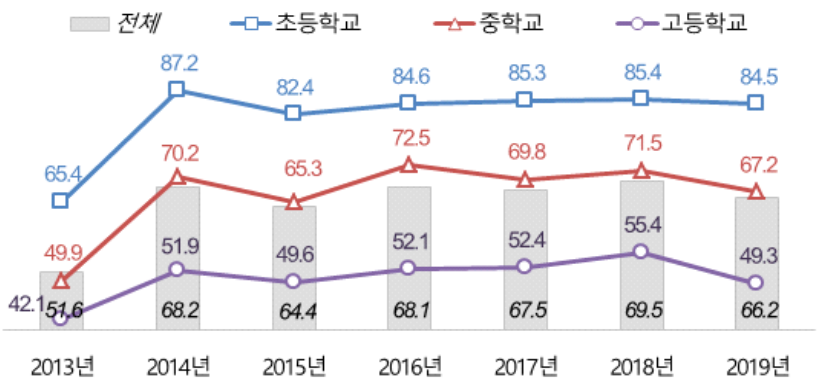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2. 체육시설 이용 여부(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표 Ⅳ-6-20〉은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문화·예술 공간 이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보다 문화·예술 공간을 더 선호하고 있어서 1년 중 한 번 이상 문화·예술 공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의 80.6%에 해당되어 5명 중 4명이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75.1%)보다 여학생(86.5%)이 더 많이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계고(79.3%) 학생이 특성화계고(69.0%) 학생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별 조사결과로는 대도시(83.2%) 학생이 중소도시(78.8%)나 읍면지역(78.8%) 학생에 비해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 빈도가 더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6-20. 문화·예술 공간 이용 여부(공연장, 미술관 등)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19.4	26.8	29.1	21.4	3.3	100.0(9,235)	
성별	남학생	24.9	25.0	26.5	19.8	3.8	100.0(4,793)	207.953***
	여학생	13.5	28.8	31.8	23.1	2.8	100.0(4,442)	
학교급	초등학교	14.0	33.0	29.3	19.9	3.8	100.0(2,952)	156.926***
	중학교	21.1	26.7	28.2	21.1	2.9	100.0(2,916)	
	고등학교	22.7	21.5	29.6	23.0	3.2	100.0(3,367)	
고교 유형	일반계고	20.7	22.3	31.1	23.0	3.0	100.0(2,716)	41.736***
	특성화계고	31.0	18.2	23.4	23.3	4.2	100.0(651)	
지역 규모	대도시	16.8	25.3	31.4	23.0	3.5	100.0(3,767)	53.490***
	중소도시	21.2	27.5	27.3	20.6	3.4	100.0(4,397)	
	읍면지역	21.2	29.2	28.5	18.7	2.3	100.0(1,070)	
학업 성적	상	14.6	25.4	31.6	24.4	3.9	100.0(3,260)	187.591***
	중	18.6	29.4	28.8	20.4	2.7	100.0(3,876)	
	하	28.2	24.3	25.6	18.5	3.4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17.7	26.6	28.8	23.0	4.0	100.0(5,306)	61.873***
	중	21.3	27.8	28.8	19.7	2.4	100.0(3,067)	
	하	23.2	25.1	32.2	17.5	2.0	100.0(853)	

***$p<.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6-13]은 학교급별 학생의 문화·예술 공간 이용 수준을 2013년~2019년 연도별 추이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2013년에 비해 현재는 많이 상승한 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급에서 2017년 크게 이용 수준이 상승한 이후 학생들의 문화·예술 공간 이용 빈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8년보다 2019년에 급격하게 4% 정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에 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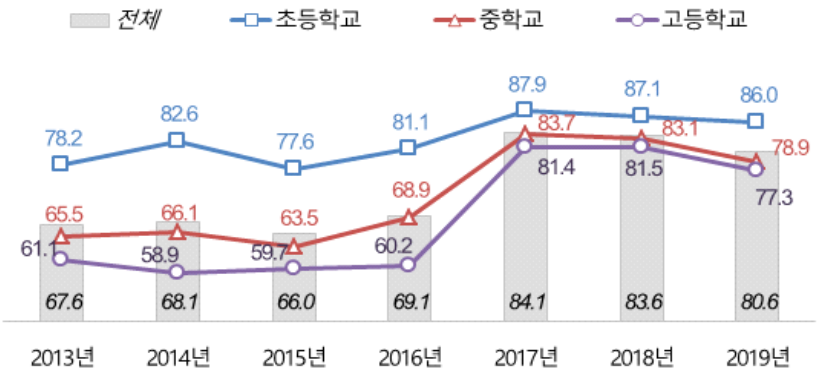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3. 문화 예술 공간 이용 여부(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② 여가문화예술 시설 이용 만족도

〈표 Ⅳ-6-21〉은 2019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 대상 학생들이 이용해본 여가문화예술 시설에 대하여 만족하는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긍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 청소년 8,372명 중 95.5%로 조사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편차와 학교급별, 고교 유형별, 지역규모별 차이는 아주 작았으며, 역시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여가문화예술 시설 이용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청소년의 여가문화예술 시설 이용 만족도는 모든 집단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이용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굳이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은 집단은 학업성적이 하층(6.6%) 집단 학생과 경제적 수준이 하층(7.5%) 집단인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표 Ⅳ-6-21.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전체(N)	χ^2
전체		3.24(0.54)	0.7	3.8	66.8	28.7	100.0(8,372)	
성별	남학생	3.26(0.57)	0.9	4.0	63.3	31.9	100.0(4,172)	50.360***
	여학생	3.21(0.52)	0.5	3.6	70.3	25.6	100.0(4,200)	
학교급	초등학교	3.38(0.59)	0.8	3.2	53.4	42.6	100.0(2,829)	428.122***
	중학교	3.18(0.53)	0.6	4.7	70.6	24.1	100.0(2,590)	
	고등학교	3.15(0.48)	0.6	3.5	76.4	19.5	100.0(2,952)	
고교 유형	일반계고	3.14(0.49)	0.7	3.5	76.6	19.1	100.0(2,439)	2.865
	특성화계고	3.17(0.48)	0.2	3.6	75.2	21.0	100.0(514)	
지역 규모	대도시	3.26(0.53)	0.6	3.1	66.7	29.7	100.0(3,415)	14.321*
	중소도시	3.22(0.55)	0.7	4.5	67.1	27.7	100.0(3,985)	
	읍면지역	3.24(0.55)	0.8	3.5	66.3	29.4	100.0(972)	
학업 성적	상	3.32(0.56)	0.5	3.2	60.1	36.2	100.0(3,053)	154.354***
	중	3.21(0.52)	0.5	3.8	70.2	25.5	100.0(3,547)	
	하	3.15(0.55)	1.4	4.8	71.5	22.3	100.0(1,764)	
경제적 수준	상	3.29(0.55)	0.6	3.2	63.3	33.0	100.0(4,880)	132.358***
	중	3.18(0.52)	0.5	4.5	71.9	23.1	100.0(2,721)	
	하	3.12(0.58)	1.9	5.6	71.2	21.3	100.0(765)	

*p<.05, ***p<.001

[그림 Ⅳ-6-14]는 학교급별 학생들의 여가·문화·예술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2013년~2019년 사이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3년 이후 각급 학생들의 여가·문화·예술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초등학생의 여가·문화·예술 시설 이용 만족도는 89.5%, 중학생은 84.7%, 고등학생은 82.5%였던 것이 2019년에는 각각 초등학생 96.0%, 중학생 94.7%, 고등학생 95.9%로 학교급별 편차도 없이 거의 95% 즈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과거보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가·문화·예술 시설 이용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어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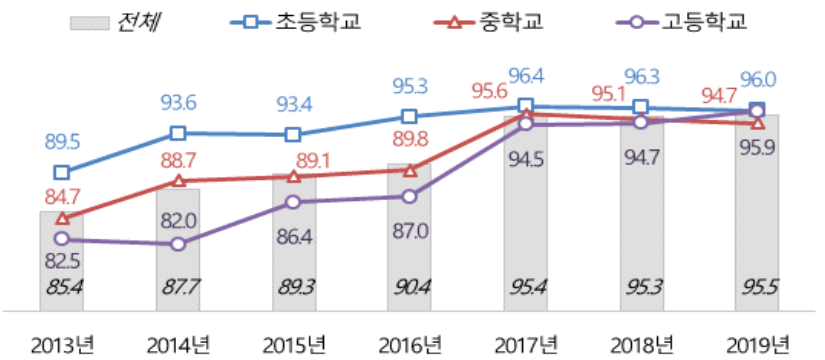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4.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연도별 추이)

(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

2019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중분류 지표인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또 하나의 소분류 지표는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이다. 이 소분류 지표는 다시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하루 평균 학습시간'의 세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표 Ⅳ-6-22〉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서 15세~19세 청소년을 따로 분류해 그들의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통계 수치이다. 이 표를 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중에서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는 취미와 오락으로 38.5%, 다음으로 30.2%가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람에 13.7%, 문화·예술 참여에 9.0%, 사회 및 기타 참여가 5.1%, 스포츠 관람이 3.3%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은 스포츠참여에 44.0%, 27.6%는 취미와 오락의 여가에, 사회 및 기타에 13.1%, 5.9%는 문화·예술 참여, 5.8%는 문화·예술 관람에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전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은 스포츠참여(46.3%), 취미와 오락(32.1%), 사회 및 기타(8.0%), 문화·예술 관람(4.7%), 문화·예술 참여(3.9%), 스포츠관람(3.2%), 관광(1.6%) 순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스포츠참여(41.6%), 취미와 오락(22.9%), 사회 및 기타(18.4%), 문화·예술 참여(7.9%), 문화·예술 관람(7.0%), 관광(1.5%), 스포츠관람(0.7%) 순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6-22.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단위 : %)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사회 및 기타
전체		5.8	5.9	2.0	44.0	1.6	27.6	13.1
성별	남성	4.7	3.9	3.2	46.3	1.7	32.1	8.0
	여성	7.0	7.9	0.7	41.6	1.5	22.9	18.4
연령대	15-19세	13.7	9.0	3.3	30.2	0.2	38.5	5.1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 주: 1) 응답자는 만 15세 이상 남녀 10,49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총 696명으로 연령은 15~19세였으며, 조사 결과는 복수 응답 결과임.
2)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 전체 연령층의 응답자 성별을 의미함.
3) 사회 및 기타 활동은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표 Ⅳ-6-23〉에는 15세~19세 청소년 696명에 대한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동 시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응답 청소년들은 평일 하루 여가활동 시간은 2.8시간이며, 이 중 스마트기기 활동 시간은 1.9시간으로 응답하여 여가활동 시간의 약 67.9%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평일 여가활동 시간의 2/3정도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데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휴일에는 청소년의 여가활동 시간이 5.1시간이었고, 이 중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은 2.8시간이라고 응답하여 여가활동 시간의 54.9%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데 소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평일보다는 사용 비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6-23.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단위 : 시간)

		평일		휴일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전체		3.3	1.3	5.3	1.8
성별	남성	3.1	1.4	5.3	1.9
	여성	3.4	1.2	5.2	1.7
연령대	15-19세	2.8	1.9	5.1	2.8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69-71, 104.

* 주: 1) 응답자는 만 15세 이상 남녀 10,49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총 696명으로 연령은 15~19세였음.
2)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 전체 연령층의 응답자 성별을 의미함.
3)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뜻함.

〈표 Ⅳ-6-24〉에는 15세~19세 청소년 696명에게 여가활동 시 동반자는 누가 1순위인가를 물은 결과가 나타나있다.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자가 70.0%에 달하고 있고,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 청소년이 20.2%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동반하는 대상은 가족으로 9.2%였는데 빈도의 순위는 세 번째에 해당되었다. 일반 성인에 비해 여가활동을 혼자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일반인들의 여가활동은 30%정도가 가족과 함께 하는데 비해 청소년들은 9.2%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성인들의 여가활동에서 친구의 동반은 한 자리 수치의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청소년은 20.2%에 달해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6-24. 여가활동 동반자: 1순위

(단위 : %)

구분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회원과 함께	직장동료
전체		59.5	29.7	8.7	1.0	1.0
성별	남성	60.1	29.0	8.5	1.1	1.4
	여성	59.0	30.5	8.9	1.0	0.5
연령대	15-19세	70.0	9.2	20.2	0.3	0.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57.

* 주: 1) 응답자는 만 15세 이상 남녀 10,49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총 696명으로 연령은 15~19세였음.
2)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 전체 연령층의 응답자 성별을 의미함.

②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표 Ⅳ-6-25〉에는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서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 가에 대한 물음의 결과가 나타나있다. 전체 응답청소년 9,258명 중 하루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도 안된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16.2%에 해당되었다. 1시간~2시간미만의 여가활동 시간을 가진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제일 많아 전체의 27.2%에 해당되었고, 다음으로는 2시간~3시간 미만에 응답한 청소년이 22.0%, 3시간~4시간미만은 14.2%, 5시간 이상은 11.9%에 해당되고 있다.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하루의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특성화계고보다 일반계고 학생이 하루 여가활동 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하루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차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Ⅳ-6-25. 평일 여가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6.2	27.2	22.0	14.2	8.6	11.9	100.0(9,258)	
성별	남학생	15.2	27.7	21.9	13.5	8.4	13.3	100.0(4,809)	25.050***
	여학생	17.2	26.6	22.1	14.8	8.8	10.5	100.0(4,450)	
학교급	초등학교	15.4	20.0	20.9	15.7	10.8	17.1	100.0(2,974)	452.153***
	중학교	11.7	25.9	23.7	16.7	9.9	12.2	100.0(2,916)	
	고등학교	20.6	34.6	21.5	10.6	5.5	7.1	100.0(3,369)	
고교 유형	일반계고	22.8	37.2	21.5	8.9	3.9	5.7	100.0(2,717)	207.210***
	특성화계고	11.4	24.0	21.5	17.5	12.2	13.3	100.0(6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6.4	27.6	22.2	14.1	8.5	11.3	100.0(8,397)	56.279***
	한부모가정	13.2	22.3	20.8	14.5	9.9	19.3	100.0(693)	
	조손가정	18.0	25.7	23.0	14.7	5.0	13.7	100.0(86)	
	기타	15.1	24.8	15.2	19.8	14.3	10.9	100.0(76)	
학업 성적	상	18.0	29.4	21.3	13.3	7.9	10.2	100.0(3,271)	51.116***
	중	15.4	26.7	22.2	15.1	8.7	11.9	100.0(3,889)	
	하	14.8	24.5	22.8	13.9	9.4	14.6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16.1	26.5	22.8	14.3	8.5	11.9	100.0(5,323)	26.815**
	중	15.9	27.6	21.5	14.6	9.2	11.2	100.0(3,073)	
	하	17.7	29.9	18.5	12.1	6.8	15.0	100.0(854)	

**p<.01, ***p<.001

[그림 Ⅳ-6-15]는 학교급별 평일 하루 여가시간의 2013년~2019년 기간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3시간 이상 평일 하루 여가시간을 가지는 응답학생들의 비율을 합한 것으로, 각급 학교 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평일 하루 여가시간이 3시간 이상을 가지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학교급은 초등학생으로, 2013년에 31.0%였는데 2019년에는 43.6%로 증가하였다. 중학생은 같은 기간에 24.1%에서 38.8%로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은 21.8%에서 23.2%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이 증가 일로에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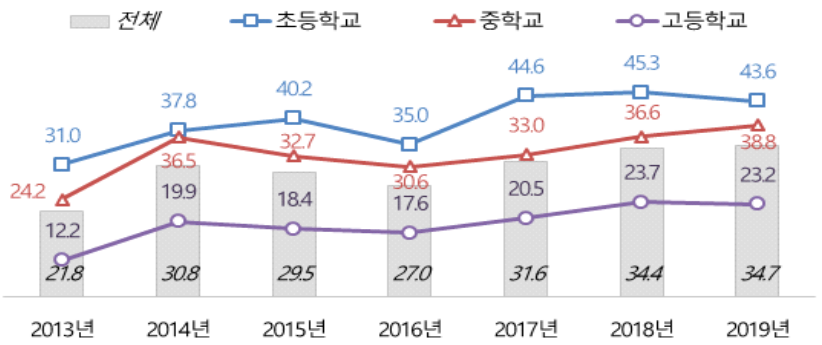

*주)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5. 평일 여가 시간(연도별 추이)

③ 하루 평균 학습시간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평일 공부시간은 〈표 Ⅳ-6-26〉에서 자세하게 나타나있다. 평일 공부 시간이 1시간미만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중 14.9%에 해당되었다. 가장 높게 나타난 공부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상~3시간미만으로 전체의 21.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시간~4시간미만이 18.6%, 4시간~5시간미만이 13.5%, 5시간~6시간미만이 9.3%, 6시간 이상이 5.9%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일 공부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공부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평일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하는 초등학생(5.0%)이 중학생(4.1%)보다 많게 나타난 사실이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고 한국의 초등학생이 공부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평일 공부 시간의 차이는 매우 커서 단적으로 하루 1시간미만의 공부 시간에 응답한 특성화계고 학생은 35.6%인 반면, 일반계고 학생은 11.5%에 불과하였고 5시간 이상 공부하는 특성화계고 학생은 3.9%인 반면, 일반계고 학생은 24.2%에 해당되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한부모가정 자녀나 조손가정 자녀일수록 평일 공부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역시 평일 공부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6-26. 평일 공부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4.9	16.5	21.3	18.6	13.5	9.3	5.9	100.0(9,265)	
성별	남학생	17.2	17.7	21.3	17.2	11.8	8.9	5.9	100.0(4,813)	79.591***
	여학생	12.4	15.2	21.2	20.2	15.4	9.7	5.9	100.0(4,452)	
학교급	초등학교	13.5	19.3	24.2	18.6	11.8	7.7	5.0	100.0(2,977)	200.610***
	중학교	14.8	16.3	23.2	20.5	13.2	7.9	4.1	100.0(2,919)	
	고등학교	16.2	14.3	16.9	17.0	15.4	11.9	8.4	100.0(3,369)	
고교 유형	일반계고	11.5	11.4	15.9	19.1	17.9	14.4	9.8	100.0(2,717)	481.812***
	특성화계고	35.6	26.2	21.4	8.1	4.8	1.5	2.4	100.0(652)	
지역 규모	대도시	12.0	13.7	19.8	19.6	16.2	11.1	7.7	100.0(3,778)	176.990***
	중소도시	16.3	18.3	22.4	18.4	11.6	8.2	4.8	100.0(4,412)	
	읍면지역	19.2	19.2	21.8	16.1	11.8	7.6	4.4	100.0(1,07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6	16.5	21.3	18.9	14.0	9.6	6.1	100.0(8,402)	155.122***
	한부모가정	28.2	16.4	20.4	15.9	8.0	6.7	4.5	100.0(694)	
	조손가정	29.1	11.8	23.9	14.5	16.2	4.4	0.0	100.0(86)	
	기타	16.4	22.4	25.1	16.2	5.7	4.3	10.0	100.0(76)	
학업 성적	상	7.1	13.6	20.7	20.3	16.8	12.9	8.6	100.0(3,273)	768.540***
	중	12.9	18.1	23.3	19.7	13.0	8.1	4.8	100.0(3,893)	
	하	30.8	18.1	18.4	13.9	9.3	5.8	3.7	100.0(2,091)	
경제적 수준	상	11.5	15.7	21.8	19.1	14.7	10.4	6.8	100.0(5,327)	161.533***
	중	18.7	17.8	20.7	18.6	11.8	7.7	4.7	100.0(3,075)	
	하	22.2	16.7	20.3	15.7	12.2	8.0	4.9	100.0(854)	

***p<.001

[그림 Ⅳ-6-16]은 평일 3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합한 수치를 2013년~2019년 동안 연도별 추이로 나타내 비교한 결과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평일 공부 시간은 2013년(35.1%) 이후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 52.7%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48.2%로 하강하다가 2019년에 다시 52.7%로 상승하였다.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평일 3시간 이상 공부 시간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적다. 하지만, 이들의 하루 공부 시간이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후 다소 감소 추이를 보이는데, 최근 초등학생에게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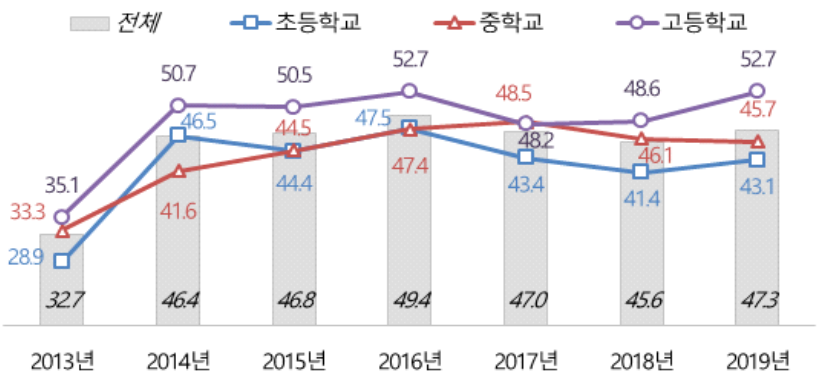

*주)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6. 평일 공부 시간(연도별 추이)

4) 소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초중등교육의 무상 제공, 중등교육 발전의 장려와 혜택, 필요 시 재정적 지원, 능력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개방, 교육 및 직업 관련 정보와 지침 이용,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 촉진, 학교 규율의 아동 인격 존중, 무지와 문맹 퇴치, 교육부문의 국제협력 증진과 장려들이 속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과 관련하여 2019년도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진학률에 있어서는 2018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는 100%,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99.7%,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69.7%를 보이고 있다. 진학률로 보면 대한민국은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했을 때에 한국학생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을 구매력지수로 나타냈을 때에 29%로 OECD 평균수준인 38%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중퇴율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표는 학업중단율로서 2016년에 학업중단율이 0.8%였던 것에 비해 2017년과 2018년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매년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2019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청소년의 31.1%는 자퇴 충동의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자퇴 충동의 이유로 응답한 내용은 ‘공부하기 싫어서’와 ‘귀찮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가 동일하게 26.1%,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11.5%)’, ‘성적이 좋지 않아서(11.0%)’, ‘괴롭힘을 당해서(8.4%)’, ‘학교 규율이 엄

하고 자유롭지 않아서(7.3%)' 순으로 나타나 학교 자체가 학생들의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교육의 목표를 명시하면서 특히,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을 명시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래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약 93%가 응답해서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동 실태조사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85.1%로 나타나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교육과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심각한 학업중단의 학교붕괴 상황에 직면해서 현장실습을 통한 산학연계 직업훈련 체제를 마련하고, 일반고계와 직업계고에도 향후 학점제를 도입하여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융합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에의 입학을 위하여 극심한 학력수준의 경쟁이 있기에 아동과 청소년이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 보장하라는 아동의 놀 권리, 여가와 문화를 향수할 권리들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이용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급별 전반적으로 이용도가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점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 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가·문화·예술 시설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청소년의 95.5%로 조사되었다. 2018년 청소년의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에서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는 취미와 오락 38.5%, 30.2%가 스포츠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람 13.7%, 문화·예술 참여 9.0%, 사회 및 기타 참여 5.1%, 스포츠 관람 3.3%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

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동 시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 청소년들은 평일 하루 여가활동 시간은 2.8시간이었다. 이 중 스마트기기 활동시간은 1.9시간으로 응답하여 여가활동 시간의 약 67.9%에 해당되었고, 휴일 청소년의 여가활동 시간이 5.1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은 2.8시간으로 여가활동 시간의 54.9%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데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실태조사에서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전체 응답청소년 9,258명 중 하루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도 안된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16.2%, 1시간~2시간미만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제일 많아 전체의 27.2%에 해당되었고, 2시간~3시간 미만에 응답한 청소년이 22.0%, 3시간~4시간미만은 14.2%, 5시간 이상은 11.9%에 해당되었다. 반면에 하루 평균 공부시간에 대한 응답은 1시간미만이 14.9%, 2시간 이상~3시간미만으로 전체의 최고인 21.3%, 3시간~4시간미만이 18.6%, 4시간~5시간미만이 13.5%, 5시간~6시간미만이 9.3%, 6시간 이상이 5.9%로 나타났다.

7. 특별보호조치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①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법무부(2019)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8년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48,906명(2018년에는 16,173명이 신청)이며, 심사 종료된 23,208명 중 인정은 936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1,988명, 불인정은 20,284명, 철회는 5,767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동안 3,879명에 대해 심사를 종료하였고, 그 중 인정 144명, 인도적 체류허가 514명, 불인정 3,221명, 철회는 2,029명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말까지의 누적 난민보호율은 12.6%이고, 2018년 한해의 난민보호율은 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난민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신청자는 2013년에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2018년 16,17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6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9: 94-95).

법무부(2019)의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 48,906명을 대상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11,962명(24.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 의견이 9,520명(19.5%),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5,217명(10.7%), 인종 3,190명(6.5%)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2018년 신청자 16,173명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종교가 3,764명(23.3%), 정치적 의견이 2,426명(15%),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1,588명(9.8%) 등의 순이었다(법무부, 2019: 98).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난민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말까지의 전체 난

민신청자 48,906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822명(3.7%)이며, 2018년의 신청자 16,173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556명(3.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처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수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69명에서 2018년 55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자의 숫자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6명이 난민인정을 받았으며, 2018년 한해 동안은 144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난민인정자는 561명으로 전체 난민인정자의 60%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의 난민인정자는 연평균 1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9: 100).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전체 인정자 144명 중 18세 미만은 61명으로 4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1). 이 비율은 2018년까지의 전체 난민인정자(936명)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268명)이 차지하는 비중인 28.6%와 비교할 때 13.8%p 높은 수치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말까지 총 1,988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514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법무부, 2019: 103).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말까지 총 1,988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18세 미만은 361명(1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8년의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14명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는 38명(7.4%)으로 나타났다(표 Ⅳ-7-1).

18세 미만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인정 숫자와 비율 그리고 철회 숫자와 비율은 2014년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 중 불인정과 철회를 받은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김영지 외, 2017: 389). 하지만 2018년의 경우 전체 18세 미만 신청자 대비 난민인정 비율이 11.0%이고, 인도적 체류비율이 6.8%인 점을 고려할 때(법무부, 2019),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불인정과 철회를 받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Ⅳ-7-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구분 / 연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연 령 (세)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4	0	0.0	148	2	11.1	18	0	0.0	1	0	0.0	12	0	0.0	10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06	7	2.5	278	0	0.0	11	0	0.0	13	2	1.9	108	0	0.0	46
2007	11	1.5	717	5	38.5	13	2	22.2	9	2	2.4	84	1	1.5	67
2008	20	5.5	364	8	22.2	36	0	0.0	14	1	1.3	75	0	0.0	117
2009	20	6.2	324	6	8.6	70	4	18.2	22	15	1.9	804	3	1.5	206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1	29	2.9	1,011	7	16.7	42	4	20.0	20	8	4.0	202	3	3.2	95
2012	38	3.3	1,143	14	23.3	60	7	22.6	31	9	2.0	454	3	1.4	211
2013	69	4.4	1,574	23	40.4	57	2	33.3	6	12	2.3	523	1	0.3	331
2014	129	4.5	2,896	13	13.8	94	44	8.2	539	-	-	1,745	-	-	363
2015	315	5.5	5,711	40	38.1	105	52	26.8	194	-	-	3,976	-	-	280
2016	342	4.5	7,541	47	48	98	114	46.3	246	-	-	4,978	-	-	731
2017	357	3.6	9,942	48	39.7	121	102	32.1	318	-	-	5,582	-	-	1,200
2018	556	3.4	16,173	61	42.4	144	38	7.4	514	-	-	3,221	-	-	2,029

* 출처: 김경준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529.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3.
법무부(201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88-99.
법무부(2017).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90-101.
법무부(2018).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90-101.
법무부(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94-105.

② 탈북 난민 아동 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을 보면 1948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누적집계로 1천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창욱 외, 2018: 466). 통일부(2019)의 북한이탈주민통계에 기초할 때,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0세~19세 사이의 탈북 아동·청소년은 총 4,988명이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2,301명(46.1%)이고, 여자 청소년은 2,687명(5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2019년 6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46	1,655	2,554	2,114	1,352	542	333	9,196
여	635	2,052	6,784	7,310	4,405	1,353	976	23,515
합계	1,281	3,707	9,338	9,424	5,757	1,895	1,309	32,711

* 출처: 통일부(2019).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2019년 6월말 기준.

표 Ⅳ-7-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

연도 / 대상	~'98	~'01	'02	'03	'1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19 (6월)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75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471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546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1	73	76	78	80	79	83	85	86

* 출처: 통일부(2019).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2019년 6월말 기준.

③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최창욱 외, 2018: 467). 그 결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한번이라도 차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61].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경험에 관한 정보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따라서 3년마다 조사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최창욱 외, 2018: 467). 2018년에 실시한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표 Ⅳ-7-4),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로 나타났으며, 2015년의 실태조사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4세가 1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9~11세(9.7%), 12~14세(8.8%), 15~17세(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여부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13.9%로 학교에 다니는 경우(8.9%)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장배경별로 보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가 1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거주 경험'(9.0%), '국내에서만 성장'(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차별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4.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전체(2015년)		6.9	93.1	100.0
전체(2018년)		9.2 (8,699)	90.8 (85,825)	100.0 (94,524)
성별	여성	9.2	90.8	100.0
	남성	9.2	90.8	100.0

61) 기초분석보고서 〈표 Ⅲ-1-30〉 참조.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연령	9-11세	9.7	90.3	100.0
	12-14세	8.8	91.2	100.0
	15-17세	7.7	92.3	100.0
	18-24세	10.1	89.9	100.0
재학여부	학교에 다님	8.9	91.1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13.9	86.1	100.0
성장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8.5	91.5	100.0
	외국 거주 경험	9.0	91.0	100.0
	외국에서 주로 성장	17.6	82.4	100.0
외국계 부모의 성별	외국계 부+한국계 모	10.2	89.8	100.0
	한국계 부+외국계 모	8.6	91.4	100.0
	외국계 부모	10.9	89.1	100.0
다문화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9.6	90.4	100.0
	기타귀하자	5.3	94.7	100.0
거주지역	동부	9.0	91.0	100.0
	읍면부	9.6	90.4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6	88.4	100.0
	100-200만원 미만	10.0	90.0	100.0
	200-300만원 미만	11.2	88.8	100.0
	300-400만원 미만	7.8	92.2	100.0
	400-500만원 미만	9.7	90.3	100.0
	500만원 이상	6.3	93.7	100.0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1.

사람들로부터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녀를 대상으로 누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Ⅳ-7-5), 친구가 64.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일터의 고용주/직장동료(28.1%), 이웃(12.8%), 모르는 사람(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는데, 신규항목인 '일터의 고용주 또는 직장동료'를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모르는 사람(21.0%p)과 친구(13.9%p)로부터 차별경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5.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단위 : %)

구분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고용주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2015년	77.9	16.0	8.8	22.8	*	32.3
2018년	64.0	9.1	6.8	12.8	28.1	11.3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3.

* 주: *는 2015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들의 차별정도를 확인한 결과(표 Ⅳ-7-6), 친구가 4점 만점에 2.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주/직장동료(1.79점), 이웃(1.54점), 모르는 사람(1.41점), 선생님(1.40점), 친척(1.3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7-6.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의 차별정도

(단위 : 점)

구 분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고용주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전 체		2.51	1.40	1.34	1.54	1.79	1.41
성별	여성	2.50	1.44	1.34	1.63	1.79	1.41
	남성	2.52	1.37	1.35	1.46	1.79	1.40
연령	9-11세	2.66	1.35	1.28	1.43	-	1.27
	12-14세	2.50	1.31	1.29	1.73	-	1.40
	15-17세	2.41	1.47	1.49	1.49	1.11	1.56
	18-24세	2.02	1.70	1.50	1.67	2.06	1.69
재학 여부	학교에 다님	2.54	1.39	1.33	1.51	1.47	1.36
	학교에 다니지 않음	2.05	1.53	1.46	2.21	2.21	1.75
성장 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2.55	1.34	1.32	1.53	1.39	1.32
	외국 거주 경험	2.21	1.67	1.51	1.58	1.96	1.62
	외국에서 주로 성장	2.42	1.63	1.37	1.58	2.20	1.75
외국계 부모의 성별	외국계 부+한국계 모	2.39	1.51	1.14	1.50	1.75	1.72
	한국계 부+외국계 모	2.47	1.48	1.44	1.45	1.48	1.44
	외국계 부모	2.40	1.34	1.20	1.37	2.38	1.41

구 분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고용주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2.52	1.39	1.35	1.55	1.78	1.41
	기타귀하자	2.30	1.55	1.30	1.34	1.87	1.37
거주 지역	동부	2.46	1.35	1.30	1.54	1.95	1.42
	읍면부	2.61	1.52	1.44	1.54	1.26	1.37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4.

* 주: 전혀 차별받지 않는다=1점, 별로 차별받지 않았다=2점, 약간 차별받았다=3점, 심한 차별을 받았다=4점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교육부(2019.2)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122,212명이며, 초등학생이 93,116명(76.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18,127명(14.8%), 고등학생이 10,969명(8.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7-7).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은 한국출생(98,263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 자녀(15,629명), 중도입국(8,3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4년에는 67,806명에서 2018년에는 122,21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8년 현재 2.17%이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10년의 0.44%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7.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 출생	59,988	11,489	7,657	79,134	68,624	12,273	8,417	89,314	76,201	13,617	8,445	98,263
중도 입국	4,583	1,627	1,208	7,418	4,865	1,740	1,187	7,792	5,046	1,933	1,341	8,320
외국인 자녀	9,453	1,989	1,192	12,634	9,317	1,970	994	12,281	11,869	2,577	1,183	15,629
계	74,024	15,105	10,057	99,186	82,806	15,983	10,598	109,387	93,116	18,127	10,969	122,212
비율	74.6	15.2	10.1	100	75.7	14.6	9.7	100	76.1	14.8	8.9	100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0.

표 Ⅳ-7-8.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단위 : 명)

연도 / 인원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5,733,132	5,633,725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1.35%	1.68%	1.91%	2.17%

* 출처: 교육부(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6.
교육부(2017.1.13). 보도자료: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6.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상태는 매년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6: 458). 2018년의 조사결과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93.1%이며, 2015년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9).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자녀는 6.9%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9. 2018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에서의 재학여부

(단위: %(명))

구분		학교에 다니고 있음 (재학, 휴학)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다 그만둠(중퇴)	한국에서 학교 졸업 (수료)함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적 없음	합계
전체(2015년)		84.5		15.5		100.0
전체(2018년)		93.1 (88,015)	1.1 (1,045)	3.9 (3,725)	1.8 (1,739)	100.0 (94,524)
성별	여성	94.7	1.0	3.1	1.1	100.0
	남성	91.6	1.2	4.7	2.5	100.0
연령	9-11세	99.5	0.2	0.0	0.3	100.0
	12-14세	99.5	0.1	0.0	0.4	100.0
	15-17세	97.5	1.5	0.2	0.8	100.0
	18-24세	55.4	5.6	28.3	10.7	100.0
성장 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95.5	0.9	3.6	0.0	100.0
	외국 거주 경험	90.9	2.0	6.3	0.7	100.0
	외국에서 주로 성장	66.8	2.0	5.3	25.9	100.0
외국계 부모의 성별	외국계 부+한국계 모	90.2	0.8	6.8	2.2	100.0
	한국계 부+외국계 모	94.0	1.1	3.8	1.1	100.0
	외국계 부모	87.4	2.4	3.3	7.0	100.0
다문화 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93.1	0.9	4.0	1.9	100.0
	기타귀하자	93.1	2.7	3.3	0.9	100.0
거주 지역	동부	92.8	1.2	3.8	2.2	100.0
	읍면부	94.0	0.8	4.2	1.0	100.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7.6	0.4	1.0	1.0	100.0
	100-200만원 미만	94.5	0.7	3.6	1.2	100.0
	200-300만원 미만	93.3	1.3	3.3	2.1	100.0
	300-400만원 미만	95.0	1.0	2.4	1.6	100.0
	400-500만원 미만	90.9	1.4	5.6	2.0	100.0
	500만원 이상	88.8	1.3	7.1	2.8	100.0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534-535.

2018년 기준, 탈북학생의 학교 유형별 재학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10), 총 2,805명 중 2,538명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전일제 대안교육 시설에는 267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에는 932명이 재학중이며, 중학교에는 682명이, 고등학교에는 751명이, 기타학교에는 173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10.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학생 수	487	445	342	340	368	383	78	95	267	2,805
	932		682		751		173			
	2,538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8). 2018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18. 6월 기준)
* 주: 기타학교*) –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Ⅳ-7-11), 전체 수는 2010년 1,143명에서 2018년에는 2,53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학교생활 지원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Ⅳ-7-11.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	중	고	기타학교*	
2010.4	562(49.2)	305(26.7)	276(24.1)	–	1,143
2011.4	773(54.5)	297(21.0)	347(24.5)	–	1,417
2012.4	1,020(60.7)	288(17.1)	373(22.2)	–	1,681
2013.4	1,204(60.4)	351(17.6)	437(21.9)	–	1,992
2014.4	1,159(57.3)	478(23.6)	385(19.0)	–	2,022
2015.4	1,224(49.5)	824(33.3)	427(17.3)	–	2,475
2016.4	1,143(45.4)	773(30.7)	601(23.9)	–	2,517
2017.4	1,027(40.5)	726(28.6)	785(30.9)	–	2,538
2018.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8). 2018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18. 6월 기준)
* 주: 기타학교*) –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2017년의 경우 1.17%로 전체학생(0.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대비 0.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12).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분석해 보면 2015년 이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 1.47%, 초등학생 0.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다문화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다문화 중고생 비율이 증가될 경우 학업중단율의 편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12.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0.93	0.83	0.77	0.81	0.87
다문화	1.03	1.01	0.85	0.88	1.17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

* 주: 학업중단자 비율=학업중단 자녀/(현재 재학자녀+현재 학업중단 자녀)×100

표 Ⅳ-7-13. 학급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비율

(단위 : %)

구분	전체	초	중	고
전체 학생	0.87	0.61	0.66	1.47
다문화학생	1.17	0.99	1.47	2.11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

* 주: 학업중단자 비율=학업중단 자녀/(현재 재학자녀+현재 학업중단 자녀)×100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훨씬 더 높은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Ⅳ-7-14). 2018년 현재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은 2.5%이며, 이는 2017년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탈락률인 1.17%(표 Ⅳ-7-12)보다 1.33%p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로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10.8%에서 2017년에 2.0%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8년에 2.5%로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본 결과,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는데 더욱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14.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08년도	'07. 4. 재학생 수(명)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명)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11년도	'10. 4. 재학생 수(명)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명)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12년도	'11. 4. 재학생 수(명)	1,021	286	374	1,681
	중도탈락생 수(명)	27	11	18	56
	중도탈락률(%)	2.6	3.8	4.7	3.3
'13년도	'12. 4. 재학생 수(명)	1,204	351	437	1,992
	중도탈락생 수(명)	37	26	7	70
	중도탈락률(%)	3.1	7.4	1.6	3.5
'14년도	'13. 4. 재학생 수(명)	1,159	478	385	2,022
	중도탈락생 수(명)	7	15	29	51
	중도탈락률(%)	0.6	3.1	7.5	2.5

구 분		초	중	고	계
'15년도	'14. 4. 재학생 수(명)	1,128	684	371	2,183
	중도탈락생 수(명)	2	20	27	49
	중도탈락률(%)	0.2	2.9	7.3	2.2
'16년도	'15. 4. 재학생 수(명)	1,224	824	427	2,475
	중도탈락생 수(명)	7	19	26	52
	중도탈락률(%)	0.6	2.3	6.1	2.1
'17년도	'16. 4. 재학생 수(명)	1,143	773	601	2,517
	중도탈락생 수(명)	11	14	26	51
	중도탈락률(%)	1.0	1.8	4.3	2.0
'18년도	'17. 4. 재학생 수(명)	1,026	697	661	2,384
	중도탈락생 수(명)	7	20	32	59
	중도탈락률(%)	0.7	2.9	4.8	2.5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8). 2018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18. 6월 기준)

* 주: 중도탈락률 = (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 /연도별 재학생 총수)×100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으로는 교육부의 다문화예비학교를 들 수 있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의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학교 편입 전·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교육의 집중적 실시를 통해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최창욱 외, 2018: 475).

교육부의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과 2018년까지의 다문화예비학교 운영결과 자료에 의하면 일반학교 안에 특별학급 형태의 한국어학급을 설치하고, 입국초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다문화 예비학교는 2012년에 26개, 2013년에 50개, 2014년에 80개, 2015년에 100개, 2016년에 124개, 2017년에 179개, 2018년에 190개가 운영되었다(최창욱 외, 2018:

475-476). 그리고 2019년에는 예비학교를 총 222개의 학급으로 확대하고,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개정(2017. 9. 29.)되어 201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학교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9. 2: 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 정도는 무지개청소년센터(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최창욱 외, 2018: 476). 레인보우스쿨에서는 한국어 교육, 사회문화 체험, 특기적성 활동, 생활정보(편·입학) 등을 제공하며, 2018년 기준 전국 15개 시·도에서 2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c: 194). 무지개청소년센터의 2018년도 사업활동 보고서에 의하면(표 Ⅳ-7-15), 전일제와 여름·겨울학교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레인보우스쿨의 참가인원수는 2018년 기준 2,140명에 이른다.

표 Ⅳ-7-15.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일제	521	512	600	721	924	1,119	1,096
주말·야간 학교	18	65	50	65			
방과후학교	14	-	-	-	-	-	-
여름학교	286	190	246	278	406	432	308
겨울학교	-	70	17	114	208	326	736
계	839	837	913	1,178	1,538	1,877	2,140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p.86-88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16-24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16-38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24-47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7). 2017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20-35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8). 2018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18-29에서 재구성.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일제가 1,096명으로 가장 많고, 겨울학교가 736명, 여름학교 308명 순으로 나타났다.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839명에서 2018년에는 2,14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는 2018년에 5,842건으로 2017년 대비 1,012건이 증가하였다(표 Ⅳ-7-16). 상담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방상담이 2,086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상담 1,429건, 온라인 상담 1,386건, 집단상담 94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실적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내방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집단상담은 2017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상담은 2017년 대비 504건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증감현상은 직접적인 대면상담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과 문제해결 과정에 증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온라인 상담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16.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단위 :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온라인 상담	2,195	2,311	1,930	2,696	3,408	1,890	1,386
내방상담	340	500	1,473	1,665	2,044	1,899	2,086
찾아가는 상담	97	218	340	578	1,258	502	1,429
집단상담	-	248	37 (심리검사 포함)	523 (심리검사 포함)	700 (심리검사 포함)	539	941 (심리검사, 교육, 포함)
계	2,632	3,277	3,780	5,462	7,410	4,830	5,842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99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44.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55.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73.
무지개청소년센터(2017). 2017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62.
무지개청소년센터(2018). 2018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63.

2)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

(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①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 저촉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법법령 저촉행위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여성가족부, 2018c: 498). 현행 소년법상 소년원 처우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2018c: 499). 7호 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무연수원, 2018: 640). 8호 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 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여성가족부, 2018c: 499). 2017년의 경우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2,157명이며, 이중 8호 처분에 수용된 소년은 876명(40.6%), 9호 처분(단기과정)을 받은 소년은 751명(34.8%), 10호 처분(장기과정)을 받은 소년은 431명(20.0%)이었다(표 Ⅳ-7-17).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8호 처분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9호 처분은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10호 처분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17.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단위 : 명(%))

기간 / 연도	7호(의료)	8호(1개월)	9호(단기)	10호(장기)	계	평균 수용기간(개월)
2008(08.6.22~)	66(2.6)	895(35.6)	783(30.9)	782(30.9)	2,526(100)	6.9
2009	52(2.0)	1,218(45.6)	684(25.6)	718(26.8)	2,672(100)	4.93
2010	56(2.0)	1,339(48.6)	771(28.0)	589(21.4)	2,755(100)	5.1
2011	69(2.7)	1,329(51.9)	644(25.2)	517(20.2)	2,559(100)	5.1
2012	103(3.2)	1,660(51.7)	792(24.7)	656(20.4)	3,211(100)	4.6
2013	105(3.7)	1,317(45.9)	938(32.7)	507(17.7)	2,867(100)	5.17
2014	93(3.7)	930(36.7)	842(33.2)	666(26.3)	2,531(100)	7.30
2015	106(5.3)	846(42.3)	612(30.6)	437(21.8)	2,001(100)	-
2016	87(4.3)	740(36.7)	682(33.8)	509(25.2)	2,018(100)	-
2017	99(4.6)	876(40.6)	751(34.8)	431(20.0)	2,157(100)	-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p.429.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p.412.
법무연수원(2017). 2017 범죄백서. p.672. 법무연수원(2018). 2018 범죄백서. p.641.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 주: 1) 2008.6.22.「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 과정을 10호 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 처분(1개월 미만)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②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2017년을 기준으로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18), 소년교도소 수용자는 2017년에 128명이며, 2016년 대비 22명 감소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170명)부터 2014년(114명)까지는 감소하다가 2015년과 2016년에는 증가하는 패턴으로 변하였으며, 2017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을 기준으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소년범죄자 중 가장 많은 범죄원인은 기타 원인을 제외하고, 강간 등(34.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절도(18.7%), 사기횡령(9.4%), 강도 등(6.3%), 폭력·상해(3.1%), 살인(3.1%)의 순이었다.

표 Ⅳ-7-18.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69(100)	146(100)	114(100)	170(100)	152(100)	114(100)	130(100)	150(100)	128(100)
절도	62(36.7)	45(30.8)	26(22.8)	42(24.7)	43(28.3)	32(28.1)	26(20.0)	23(15.3)	24(18.7)
사기·횡령	3(1.8)	3(2.1)	0(0.0)	2(1.2)	1(0.7)	1(0.9)	10(7.7)	2(1.3)	12(9.4)
폭력·상해	8(4.7)	1(0.7)	5(4.4)	17(10.0)	17(11.2)	10(8.8)	10(7.7)	27(18.0)	4(3.1)
강간 등	44(26.0)	32(21.9)	33(28.9)	54(31.7)	46(30.2)	29(25.4)	27(20.8)	35(23.3)	44(34.4)
강도 등	32(18.9)	33(22.6)	18(15.8)	24(14.1)	16(10.5)	11(9.6)	14(10.8)	19(12.6)	8(6.3)
살인	6(3.6)	11(7.5)	10(8.8)	11(6.5)	7(4.6)	5(4.4)	5(3.8)	5(3.3)	4(3.1)
과실범	2(1.2)	3(2.1)	1(0.9)	2(1.2)	-	2(1.8)	2(1.5)	2(0.1)	-
기타	12(7.1)	18(12.3)	21(18.4)	18(10.6)	22(14.5)	24(21.0)	36(27.7)	37(24.7)	32(25.0)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p.435.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p.417.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453-454.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505.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①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에 관한 규정과 2013년 4월 5일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변호사 제도 및 그 권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도입된 국선변호사제도를 말한다(최창욱외, 2018: 480).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학대피해 아동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형사절차상 독자적인 권리실현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법무연수원, 2018: 212).

2017년을 기준으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19), 접수된 건수는 총 20,048건이며, 그 중 국선보호사가 지정된 건수는 19,903건(지정

률: 99.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국선변호사 접수 건수와 지정 건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사 지정률도 2013년에는 91.7%에서 2017년에는 99.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경찰신청이 12,22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원스톱센터 신청(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이 6,872건, 검사지정 894건, 상담소 신청 62건의 순으로 많았다. 기관별 접수건수를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검사지정과 경찰신청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상담소 신청과 원스톱센터 신청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및 지정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2013년 6월 19일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그리고 2014년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로 확대된 것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 홍보 및 인권의식 증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정착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법무연수원, 2018: 212-213).

표 Ⅳ-7-19.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경찰신청			원스톱센터신청 (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			상담소신청			검사지정		누적 합계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접수	지정
2012	2,556	2,401	155	-	-	-	238	233	5	280	274	3,074	2,908
2013	3,455	3,127	328	4,813	4,418	395	91	91	-	453	448	8,812	8,084
2014	6,334	5,959	375	7,149	6,578	571	223	222	1	604	604	14,310	13,363
2015	8,807	8.778	29	6,487	6,479	2	64	63	1	786	786	16,138	16,106
2016	12,170	12,116	54	6,298	6,295	3	37	37	-	889	888	19,394	19,336
2017	12,220	12,077	143	6,872	6,871	1	62	61	1	894	894	20,048	19,903

* 출처: 법무연수원(2018). 2018 범죄백서. p.213.

* 주 : 1) 법무부 인권국 아동여성인권과 자료
2) 2012년 원스톱센터 신청 관련 건수는 경찰신청 건수에 포함됨
3) '12.3.1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
4) '13.6.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5) '14.9.2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 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②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제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교정교육을 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소년원은 사법적 기능 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며, 비행에 대한 책임추궁 보다는 국가가 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특성화교육, 교과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처우 등을 실시함으로써 왜곡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서의 인격도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교도소와는 법적·이념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년원 제도는 1942년 경성소년원(현 서울소년원)이 최초로 개원된 이후 2017년 현재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에서의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절차는 전년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법무연수원, 2018: 633-634).

* 출처: 법무연수원(2018). 2018 범죄백서. p.634.

그림 Ⅳ-7-1.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

처우불복제도는 소년교도소 수용 청소년이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무연수원, 2018: 391).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은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로 구분되는데, 2017년의 경우 청원이 1,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소·고발이 783건, 행정심판이 437건, 행정소송이 70건의 순이었다(표 Ⅳ-7-20). 전년 대비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는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0.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단위 : 건)

내용 / 연도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2008년	2,330	309	110	1,205
2009년	2,205	360	91	1,185
2010년	1,573	245	75	801
2011년	1,313	235	75	646
2012년	1,094	253	49	681
2013년	1,071	458	74	647
2014년	903	458	79	614
2015년	957	552	74	733
2016년	797	347	56	698
2017년	1,290	437	70	783

* 출처: 법무연수원(2018). 2018 범죄백서. p.391.

(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 비율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소년법의 개정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다(여성가족부, 2018c: 509). 2017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인원은 240,073명이며, 이중 소년보호관찰인원은 47,493명으로 20.0%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비율은 2012년 이후부터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Ⅳ-7-21).

표 Ⅳ-7-21.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2008	184,813	54,824	30.0
2009	218,049	66,789	31.0
2010	196,233	71,015	37.0
2011	179,767	70,549	40.0
2012	178,199	71,760	41.0
2013	175,318	65,815	38.0
2014	184,362	57,064	31.0
2015	199,713	51,978	26.0
2016	227,141	49,687	22.0
2017	240,073	47,493	20.0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510.
* 원자료: 법무부(2009-2018). 법무연감.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법원이 무보수로 일정 시간동안 사회에 유익한 근로제공을 명령하는 제도로서,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 유도 등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연령은 14세로 낮아졌고,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여성가족부, 2018c: 512-513). 2017년의 경우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6,656명이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122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534명이었다(표 Ⅳ-7-22).

표 Ⅳ-7-22.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67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2013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88
2014	7,742	1,816	5,926	2	5,291	152	386	95
2015	7,222	1,553	5,659	3	5,208	133	301	24
2016	6,026	1,282	4,744	1	4,373	130	215	25
2017	6,656	1,122	5,534	4	5,246	159	99	26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514.
* 원자료: 법무부(2017).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 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적합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강명령 부과 연령도 12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8c: 514). 2017년의 경우 수강명령을 집행 받은 청소년은 총 9,779명으로 전년대비 5,86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증가현상이 관찰되었다.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2017년의 경우 9,212명이었으며, 협력기관(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 집행한 인원은 567명이었다(표 Ⅳ-7-23).

표 Ⅳ-7-23.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96
2009	10,397	9,954	443	3	-	2	-	46	382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2013	7,864	7,374	490	2	9	240	-	48	191
2014	5,526	5,340	186	-	2	103	2	23	56
2015	4,410	4,375	35	-	2	26	1	4	2
2016	3,915	3,882	33	-	-	21	2	6	4
2017	9,779	9,212	567	-	-	78	2	43	444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515.
* 원자료: 법무부(2017).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8c: 470). 2017년의 경우 3,495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소년범죄 72,759명 대비 4.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2016년까지는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24).

표 Ⅳ-7-2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소년범죄(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원(명)	비율(%)
2008	134,992	5,886	4.4
2009	113,022	7,104	6.3
2010	89,776	2,967	3.3
2011	89,068	1,363	1.5
2012	107,490	5,812	5.4
2013	91,633	4,548	5.0
2014	77,594	3,473	4.5
2015	71,035	3,413	4.8
2016	76,000	3,409	4.5
2017	72,759	3,495	4.8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471.
* 원자료: 대검찰청(2009-2018), 검찰연감.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직접 선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의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시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도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비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여성가족부, 2018c: 473~474). 2017년의 경우 전체 기소유예자는 325,215명이었으며, 이중 4,371명(1.3%)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

된 인원은 205명이었다. 전년 대비 추이를 보면 기소유예자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42,786명이 감소하였으며, 선도대상자도 4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7	262,823	5,258(2.0)	12,134	4,218	66
2008	361,907	3,421(0.9)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0.8)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1.2)	3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1.4)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1.4)	7,423	2,912	408
2013	330,407	4,495(1.4)	7,900	2,439	269
2014	324,748	5,112(1.6)	4,360	2,638	255
2015	354,370	5,184(1.5)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1.2)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1.3)	2,549	1,679	205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474.
* 원자료: 대검찰청(2008-2018). 검찰연감.

3) 경제적 착취

(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①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2017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1.0일이었으며, 2016년 대비 0.2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26). 그리고 2017년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5시간이었고, 2016년 대비 2.5시간 감소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세-24세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모두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았다.

표 Ⅳ-7-26.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수 (시간)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수 (시간)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수 (시간)
2008	전 체	21.9	191.6	21.8	182.6	21.8	188.7
	19세이하	21.0	176.8	22.2	192.0	21.7	185.6
	20-24세	22.3	204.6	21.7	181.3	21.9	188.9
2009	전 체	22.7	197.2	22.8	189.6	22.8	194.8
	19세이하	21.2	186.9	21.2	179.9	21.2	182.1
	20-24세	22.7	205.9	22.6	188.5	22.6	193.9
2010	전 체	22.5	195.7	22.5	186.9	22.5	192.8
	19세이하	19.7	165.4	19.9	162.2	19.8	163.5
	20-24세	22.6	200.3	22.4	184.9	22.5	189.9
2011	전 체	22.2	192.7	22.2	182.4	22.2	189.3
	19세이하	20.3	172.6	20.9	172.6	20.7	172.6
	20-24세	22.4	200.0	22.0	181.5	22.1	187.9
2012	전 체	21.4	185.8	21.3	175.7	21.4	182.3
	19세이하	19.7	166.9	20.4	172.7	20.1	170.5
	20-24세	21.7	194.3	21.1	174.9	21.3	181.6
2013	전 체	20.9	186.2	20.5	169.2	20.7	175.3
	19세이하	19.9	174.4	19.6	159.5	19.7	165.6
	20-24세	21.0	187.6	20.6	170.1	20.8	176.3
2014	전 체	20.5	173.8	20.7	182.8	20.4	168.5
	19세이하	19.1	161.5	19.5	168.9	18.9	155.0
	20-24세	20.7	175.1	20.9	184.7	20.5	169.7
2015	전 체	22.4	184.2	22.5	188.5	22.2	176.7
	19세이하	20.2	158.8	20.8	164.9	19.6	151.9
	20-24세	22.0	180.3	22.2	187.3	21.9	176.3
2016	전 체	21.4	184.3	21.1	172.4	21.2	177.0
	19세이하	20.0	165.4	18.4	144.4	19.2	155.5
	20-24세	21.7	187.2	21.3	174.8	21.4	179.4
2017	전 체	21.4	182.7	20.8	169.1	21.0	174.5
	19세이하	20.6	175.5	19.4	155.6	20.0	165.0
	20-24세	21.4	183.6	20.9	170.3	21.1	175.5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420.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②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7년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월평균 1,612,000원, 20세-24세 청소년은 월평균 1,968,000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9세 이하 근로자와 20세-24세 청소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그림 Ⅳ-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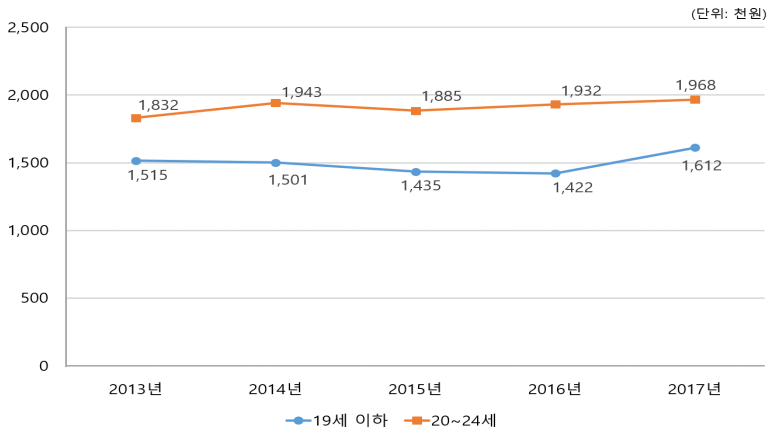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ⅩⅣ.

* 주: 임금 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

그림 Ⅳ-7-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반적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Ⅳ-7-27). 하지만 전체 평균과 2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다른 연령대와 동일하게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시간당 임금총액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27.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5,684	17,480	18,212	18,835	18,835	11,253 (71.7)	11,452 (65.5)	12,076 (66.3)	13,053 (69.3)	13,053	14,587	15,978	16,709	17,381	17,381
19세 이하	11,068	12,452	12,975	9,896	13,412	8,609 (74.2)	8,660 (77.3)	9,161 (70.6)	7,828 (79.1)	9,861 (73.5)	10,583	11,134	11,674	8,336	12,179
20~29세				13,495					10,175 (75.4)					12,431	
30~39세	15,759	17,457	18,382	18,920	18,920	13,183 (83.7)	13,521 (77.5)	13,860 (75.4)	14,694 (77.7)	14,694 (77.7)	15,392	16,892	17,749	18,280	18,280
40~49세	17,703	20,059	20,682	21,430	21,430	13,058 (73.8)	13,519 (67.4)	14,217 (68.7)	15,237 (71.1)	15,237 (71.1)	16,803	18,860	19,575	20,279	20,279
50~59세	16,964	18,910	19,565	20,609	20,609	12,308 (73.8)	12,464 (65.9)	13,362 (68.3)	14,406 (69.9)	14,406 (69.9)	15,624	17,094	17,860	18,923	18,923
60세 이상	13,360	14,038	14,831	15,083	15,083	9,777 (74.7)	10,190 (72.6)	10,922 (73.6)	12,193 (80.8)	12,193 (80.8)	11,685	12,099	12,874	13,722	13,722

* 출처: 고용노동부(201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8. 고용노동부(201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8. 고용노동부(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5. 고용노동부(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8. 고용노동부(2018.4.25.). 보도자료: 20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8.

* 주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①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고용된 청소년 중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에 27.2%로 OECD 평균인 30.9%보다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7-3). 그리고 2012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012년의 24.4%보다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고용된 청소년 중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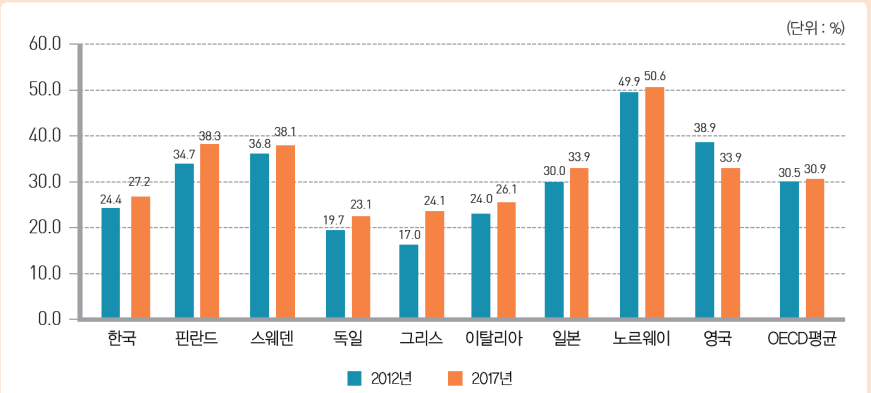

자료 : OECD(2018). Labour Force Statistics.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VII.

그림 Ⅳ-7-3.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2/2017)

②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9.5%)이 여학생(7.5%)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13.6%)가 중학교(2.7%)보다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다.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순이었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8.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8.5	91.5	100.0(6,284)	
성별	남학생	9.5	90.5	100.0(3,278)	8.315**
	여학생	7.5	92.5	100.0(3,006)	
학교급	중학교	2.7	97.3	100.0(2,919)	234.139***
	고등학교	13.6	86.4	100.0(3,365)	
고교 유형	일반계고	11.2	88.8	100.0(2,716)	67.152***
	특성화계고	23.5	76.5	100.0(649)	
지역 규모	대도시	7.7	92.3	100.0(2,588)	10.945**
	중소도시	8.5	91.5	100.0(2,893)	
	읍면지역	11.4	88.6	100.0(80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	92.1	100.0(5,648)	33.180***
	한부모가정	13.5	86.5	100.0(547)	
	조손가정	22.5	77.5	100.0(43)	
	기타	13.9	86.1	100.0(43)	
학업 성적	상	4.7	95.3	100.0(1,775)	134.504***
	중	6.8	93.2	100.0(2,623)	
	하	14.7	85.3	100.0(1,882)	
경제적 수준	상	7.2	92.8	100.0(3,169)	50.412***
	중	8.3	91.7	100.0(2,370)	
	하	15.2	84.8	100.0(740)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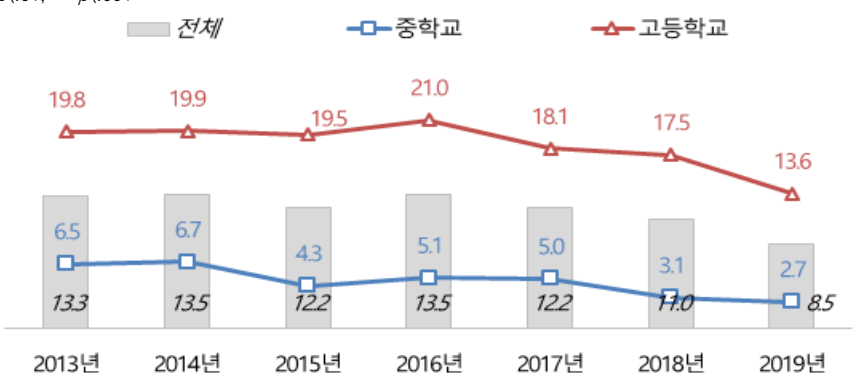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7-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떠한 부당처우를 경험했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중 먼저 주요 항목에 대한 경험률을 살펴보면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4.6%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58.9%로 나타났으며, 중학생(85.6%)이 고등학생(54.1%)보다 높았다. 그리고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0.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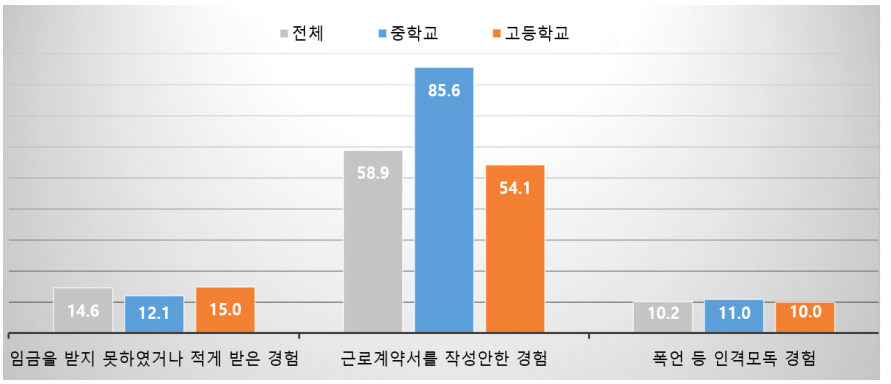

그림 Ⅳ-7-5.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빈도를 질문한 결과, 이 중 1~2회 정도가 11.8%, 3회 이상이 2.7%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고등학생(15.0%)이 중학생(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피해경험의 비율에 있어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5.4	11.8	2.7	100.0(537)	
성별	남학생	87.0	10.5	2.6	100.0(312)	1.479
	여학생	83.3	13.8	3.0	100.0(225)	
학교급	중학교	87.9	4.8	7.4	100.0(80)	11.284**
	고등학교	85.0	13.1	1.9	100.0(456)	
고교 유형	일반계고	85.9	12.0	2.1	100.0(304)	1.158
	특성화계고	83.2	15.3	1.5	100.0(152)	
지역 규모	대도시	87.2	9.9	2.9	100.0(200)	1.177
	중소도시	84.6	12.8	2.5	100.0(245)	
	읍면지역	83.5	13.5	3.0	100.0(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5.3	12.6	2.1	100.0(447)	35.854***
	한부모가정	91.0	5.8	3.2	100.0(74)	
	조손가정	58.3	11.1	30.6	100.0(10)	
	기타	66.6	33.4	0.0	100.0(6)	
학업 성적	상	79.9	16.4	3.7	100.0(83)	3.279
	중	85.4	12.5	2.2	100.0(178)	
	하	87.1	10.1	2.8	100.0(276)	
경제적 수준	상	85.0	12.0	3.0	100.0(228)	11.182*
	중	89.8	9.8	0.4	100.0(196)	
	하	78.7	15.0	6.4	100.0(113)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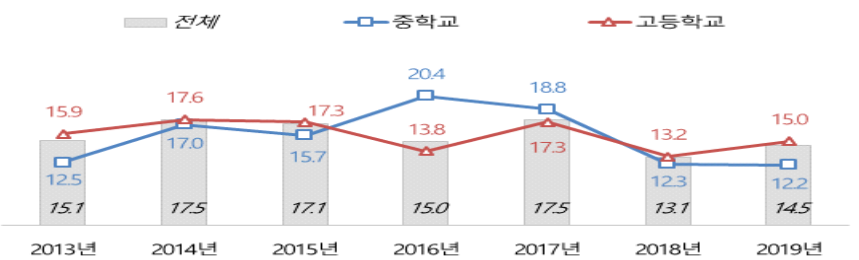

그림 Ⅳ-7-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피해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2.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1-2번은 9.5%, 3번 이상이 2.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12.4%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12.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13.1%로 중학교(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가 16.3%로 일반계고 11.4%보다 4.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하'가 11.0%, '중'이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피해경험은 전년 대비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3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7.7	9.5	2.9	100.0(537)	
성별	남학생	87.6	8.7	3.7	100.0(312)	2.435
	여학생	87.8	10.5	1.7	100.0(225)	
학교급	중학교	91.8	2.7	5.5	100.0(80)	6.731*
	고등학교	86.9	10.7	2.4	100.0(456)	
고교유형	일반계고	88.6	10.3	1.1	100.0(304)	8.050*
	특성화계고	83.7	11.3	5.0	100.0(152)	
지역규모	대도시	88.9	6.6	4.4	100.0(200)	7.859
	중소도시	87.8	11.0	1.2	100.0(245)	
	읍면지역	84.6	11.5	3.9	100.0(9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6.8	10.2	3.0	100.0(447)	7.838
	한부모가정	94.2	4.2	1.6	100.0(74)	
	조손가정	69.4	21.1	9.5	100.0(10)	
	기타	100.0	0.0	0.0	100.0(6)	
학업성적	상	78.8	11.2	10.1	100.0(83)	18.018**
	중	89.7	9.0	1.3	100.0(178)	
	하	89.0	9.3	1.7	100.0(276)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87.8	8.5	3.7	100.0(228)	4.729
	중	89.5	9.6	0.9	100.0(196)	
	하	84.2	11.2	4.6	100.0(113)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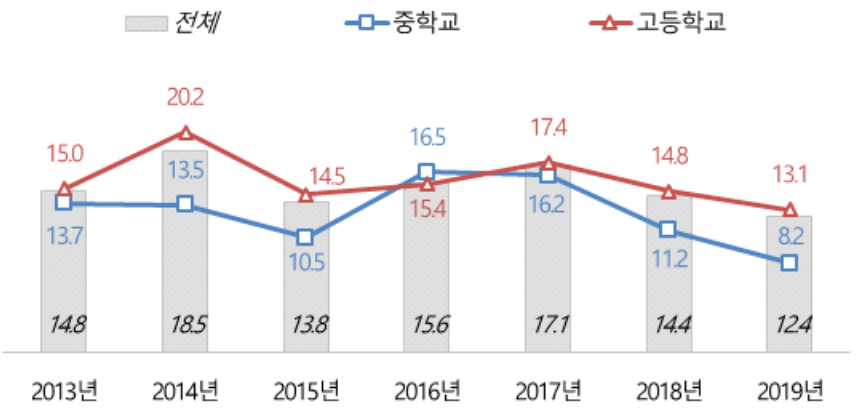

그림 Ⅳ-7-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였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58.9%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남학생(61.3%)이 여학생(55.5%)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85.6%로 고등학교(54.1%)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비율은 2018년까지 증가하였지만, 2018년의 경우에는 2017년에 비해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58.9	30.5	10.7	100.0(537)	
성별	남학생	61.3	29.7	9.0	100.0(312)	2.730
	여학생	55.5	31.5	13.0	100.0(225)	
학교급	중학교	85.6	11.2	3.2	100.0(80)	27.331***
	고등학교	54.1	33.8	12.0	100.0(456)	
고교 유형	일반계고	56.6	29.5	13.9	100.0(304)	8.446*
	특성화계고	49.3	42.4	8.3	100.0(152)	
지역 규모	대도시	48.7	40.0	11.3	100.0(200)	18.875***
	중소도시	62.0	27.3	10.7	100.0(245)	
	읍면지역	72.7	18.0	9.3	100.0(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7.6	31.3	11.1	100.0(447)	7.949
	한부모가정	62.9	28.6	8.5	100.0(74)	
	조손가정	78.5	21.5	0.0	100.0(10)	
	기타	74.2	0.0	25.8	100.0(6)	
학업 성적	상	58.0	30.8	11.3	100.0(83)	2.245
	중	55.3	34.2	10.5	100.0(178)	
	하	61.4	27.9	10.6	100.0(276)	
경제적 수준	상	61.9	28.6	9.5	100.0(228)	3.773
	중	55.7	34.2	10.1	100.0(196)	
	하	58.0	27.7	14.2	100.0(113)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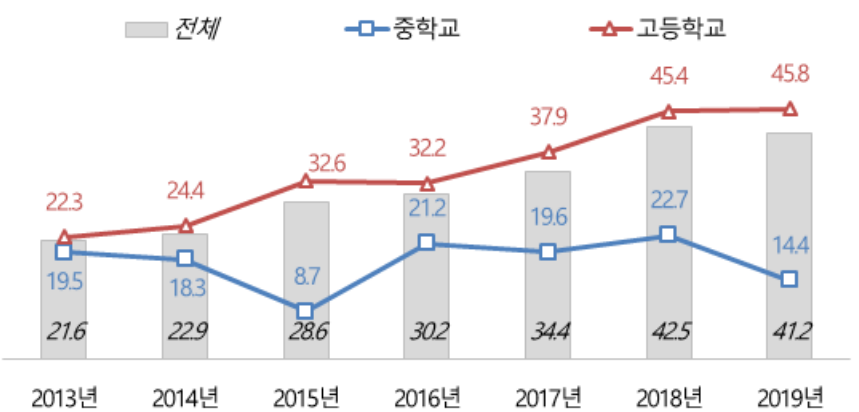

그림 Ⅳ-7-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6.5%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6.9%로 고등학교 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8.4%로 대도시(5.9%)나 읍면지역(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30.6%로 양부모가정(6.3%)이나 한부모가정(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9.8%로 중(6.8%)이나 하(5.2%)보다 높았으며, 경제수준별로는 하(10.5%)가 중(6.7%)이나 상(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3.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3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3.5	5.7	0.8	100.0(537)	
성별	남학생	93.2	5.5	1.3	100.0(312)	3.024
	여학생	93.9	6.1	0.0	100.0(225)	
학교급	중학교	93.1	2.6	4.3	100.0(80)	13.142**
	고등학교	93.6	6.3	0.1	100.0(456)	
고교 유형	일반계고	94.0	6.0	0.0	100.0(304)	2.067
	특성화계고	92.9	6.7	0.4	100.0(152)	
지역 규모	대도시	94.1	3.9	2.0	100.0(200)	13.433**
	중소도시	91.6	8.4	0.0	100.0(245)	
	읍면지역	97.6	2.4	0.0	100.0(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3.7	5.7	0.6	100.0(447)	14.349*
	한부모가정	95.0	4.2	0.8	100.0(74)	
	조손가정	69.4	21.1	9.5	100.0(10)	
	기타	100.0	0.0	0.0	100.0(6)	
학업 성적	상	90.2	6.7	3.1	100.0(83)	12.223*
	중	93.2	6.8	0.0	100.0(178)	
	하	94.8	4.7	0.5	100.0(276)	
경제적 수준	상	95.8	3.1	1.1	100.0(228)	7.923
	중	93.3	6.7	0.0	100.0(196)	
	하	89.4	9.2	1.3	100.0(113)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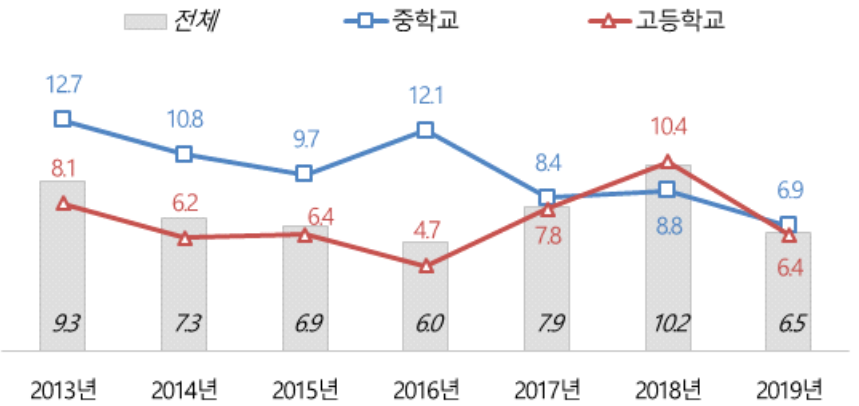

그림 Ⅳ-7-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작업환경의 불결함과 위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10.4%였으며, 2018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11.7%)이 여학생(8.7%)보다, 고등학교(11.0%)가 중학교(7.3%)보다, 고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12.0%)가 특성화계고(8.8%)보다, 중소도시(13.4%)가 읍면지역(9.4%)이나 대도시(7.3%)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인 경우가 2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 인식별로는 '하'가 14.5%로 상(12.1%)이나 중(6.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7-3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9.6	8.4	2.0	100.0(537)	
성별	남학생	88.3	8.7	2.9	100.0(312)	2.735
	여학생	91.3	8.0	0.7	100.0(225)	
학교급	중학교	92.7	2.9	4.3	100.0(80)	5.814
	고등학교	89.0	9.4	1.6	100.0(456)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고교 유형	일반계고	88.0	10.9	1.1	100.0(304)	3.861
	특성화계고	91.1	6.4	2.4	100.0(152)	
지역 규모	대도시	92.7	4.8	2.4	100.0(200)	7.053
	중소도시	86.6	11.8	1.6	100.0(245)	
	읍면지역	90.6	7.3	2.1	100.0(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5	8.4	2.1	100.0(447)	4.801
	한부모가정	89.8	9.4	0.8	100.0(74)	
	조손가정	90.5	0.0	9.5	100.0(10)	
	기타	89.3	10.7	0.0	100.0(6)	
학업 성적	상	80.0	9.9	10.1	100.0(83)	34.144***
	중	92.9	6.6	0.5	100.0(178)	
	하	90.3	9.1	0.5	100.0(276)	
경제적 수준	상	87.9	8.4	3.6	100.0(228)	11.054*
	중	93.8	6.2	0.0	100.0(196)	
	하	85.5	12.4	2.1	100.0(113)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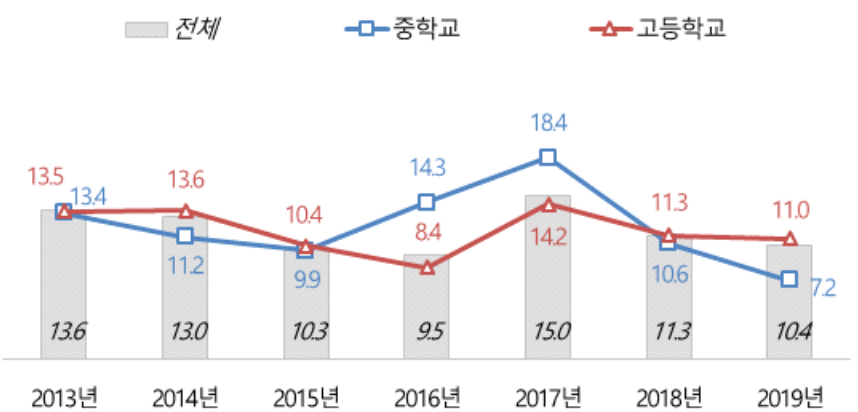

그림 Ⅳ-7-1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의 인격모독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10.2%였으며, 2018년 대비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1.0%로 여학생(9.0%) 보다 인격모독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1.0%로 고등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16.5%로 중소도시(10.3%)나 대도시(7.1%)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16.2%로 '하'(10.8%)나 '중'(6.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가 18.2%로 '중'(8.5%)이나 '상'(7.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7-3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9.8	8.2	2.0	100.0(537)	
성별	남학생	89.0	8.1	2.9	100.0(312)	2.618
	여학생	91.0	8.2	0.8	100.0(225)	
학교급	중학교	89.0	6.7	4.3	100.0(80)	2.181
	고등학교	90.0	8.4	1.6	100.0(456)	
고교 유형	일반계고	89.0	9.0	1.9	100.0(304)	1.570
	특성화계고	91.8	7.2	1.0	100.0(152)	
지역 규모	대도시	92.9	4.6	2.5	100.0(200)	10.440*
	중소도시	89.7	9.6	0.8	100.0(245)	
	읍면지역	83.5	12.1	4.4	100.0(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9	8.2	1.9	100.0(447)	5.072
	한부모가정	88.5	9.5	2.1	100.0(74)	
	조손가정	90.5	0.0	9.5	100.0(10)	
	기타	100.0	0.0	0.0	100.0(6)	
학업 성적	상	83.8	9.8	6.4	100.0(83)	12.052*
	중	93.6	6.4	0.0	100.0(178)	
	하	89.2	8.8	2.0	100.0(276)	
경제적 수준	상	92.4	5.3	2.3	100.0(228)	15.164**
	중	91.5	6.4	2.0	100.0(196)	
	하	81.8	16.9	1.3	100.0(113)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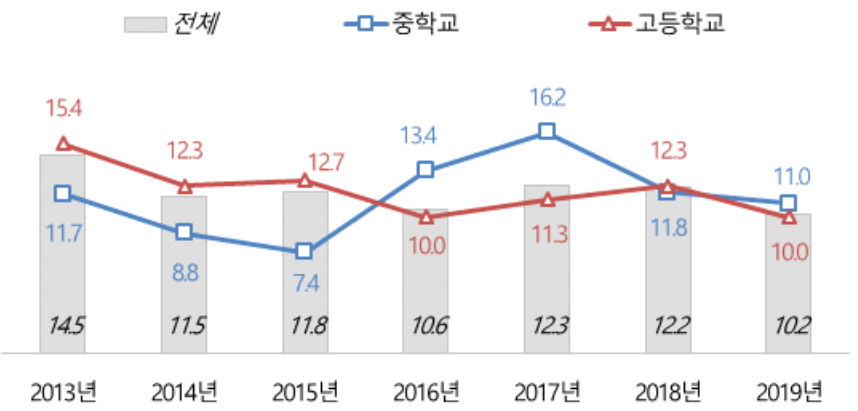

그림 Ⅳ-7-1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2.2%였으며, 2018년 대비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8%로 여학생(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3%로 고등학교(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2.1%로 특성화계고(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2.7%로 중소도시(2.2%)나 읍면지역(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30.6%로 한부모가정(2.1%)이나 양부모가정(1.6%)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손가정의 아르바이트 중 폭행이나 구타 경험 비중은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월등히 높아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3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x^2
전체		97.8	1.2	1.0	100.0(537)	
성별	남학생	96.3	2.1	1.7	100.0(312)	8.125*
	여학생	100.0	0.0	0.0	100.0(225)	
학교급	중학교	95.7	0.0	4.3	100.0(80)	9.081*
	고등학교	98.2	1.4	0.4	100.0(456)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x^2
고교 유형	일반계고	97.9	1.7	0.4	100.0(304)	1.004
	특성화계고	98.7	0.9	0.4	100.0(152)	
지역 규모	대도시	97.3	0.7	2.0	100.0(200)	5.304
	중소도시	97.8	1.7	0.5	100.0(245)	
	읍면지역	99.0	1.0	0.0	100.0(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4	0.8	0.8	100.0(447)	40.988***
	한부모가정	97.9	1.3	0.8	100.0(74)	
	조손가정	69.4	21.1	9.5	100.0(10)	
	기타	100.0	0.0	0.0	100.0(6)	
학업 성적	상	95.5	0.0	4.5	100.0(83)	17.486**
	중	98.5	1.5	0.0	100.0(178)	
	하	98.1	1.4	0.5	100.0(276)	
경제적 수준	상	98.0	0.4	1.6	100.0(228)	5.803
	중	98.2	1.8	0.0	100.0(196)	
	하	96.8	1.8	1.3	100.0(113)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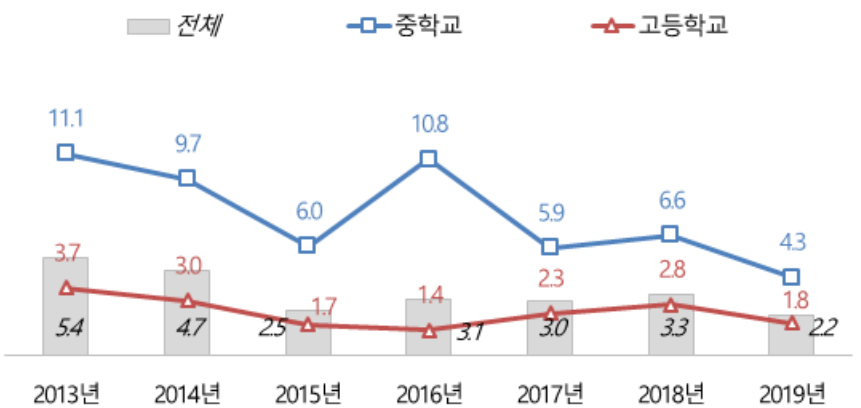

그림 Ⅳ-7-1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6.7%로, 2018년 대비 1.9%p 감소하였다. 여학생(17.5%)이 남학생(16.1%)보다, 고등학교(16.7%)가 중학교(16.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20.3%로 중소도시(16.2%)나 대도시(15.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20.8%로 양부모가정(16.8%)이나 한부모가정(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 '상'이 23.7%로 '하'(15.9%)나 '중'(1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 '하'가 20.0%로 '상'(16.7%)이나 '중'(14.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 변인을 제외한 모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경험의 연도별 추이는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Ⅳ-7-3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3.3	11.3	5.4	100.0(537)	
성별	남학생	83.9	10.8	5.4	100.0(312)	0.169
	여학생	82.5	12.1	5.4	100.0(225)	
학교급	중학교	83.5	6.7	9.8	100.0(80)	5.716
	고등학교	83.3	12.1	4.6	100.0(456)	
고교 유형	일반계고	83.1	12.2	4.8	100.0(304)	0.121
	특성화계고	83.7	12.0	4.3	100.0(152)	
지역 규모	대도시	84.4	11.3	4.4	100.0(200)	2.504
	중소도시	83.8	11.4	4.8	100.0(245)	
	읍면지역	79.7	11.2	9.1	100.0(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3.2	11.3	5.6	100.0(447)	15.677*
	한부모가정	87.6	9.8	2.6	100.0(74)	
	조손가정	79.2	0.0	20.8	100.0(10)	
	기타	47.3	52.7	0.0	100.0(6)	
학업 성적	상	76.3	17.4	6.2	100.0(83)	4.790
	중	85.4	8.7	5.9	100.0(178)	
	하	84.1	11.2	4.7	100.0(276)	
경제적 수준	상	83.3	10.2	6.5	100.0(228)	3.868
	중	85.2	11.9	2.9	100.0(196)	
	하	80.0	12.6	7.4	100.0(113)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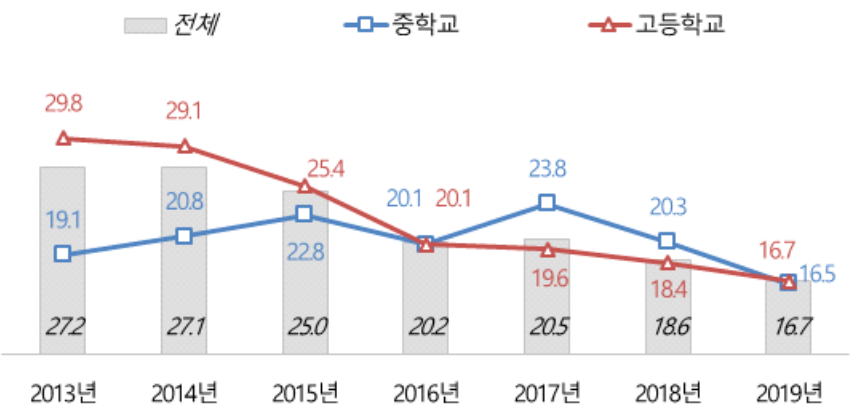

그림 Ⅳ-7-1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연도별 추이)

(3) 청소년근로시 폭력예방 노력정도

①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대상 업소 수

경제활동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 5)”을 마련하여 사업장 감독, 신고체계 정비,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242-243). 하지만 고용백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던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결과는 2015년 이후부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김영지 외, 2017: 431-432). 하지만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점검은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이루어지며,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지역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3.8).

2018년 겨울방학에 실시된 점검결과를 보면 전국의 25개 지역(248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는

23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d). 235건의 위반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94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51건(21.7%), 최저임금 미고지 25건(10.6%),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3건(1.3%), 임금미지급 1건(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d).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근로계약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고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검업소 대비 적발업소의 비율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표 Ⅳ-7-37), 2016년에는 577개소 중 247개소(42.8%), 2017년에는 576개소 중 281개소(48.8%), 2018년에는 669개소 중 191개소(28.6%)로 2017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8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의 노동법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 미작성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및 최저임금 미고지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Ⅳ-7-37. 청소년 고용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단위 : 건)

연도	점검업소	적발업소	위반 내역 및 건수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 미지급	연소자 증명 미비치	기타	계
2016년 여름	299	110 (36.8)	74 (41.6)	23 (12.9)	13 (7.3)	4 (2.2)	50 (28.1)	14 (7.9)	178 (100.0)
2016년 겨울	278	137 (49.3)	137 (58.1)	68 (28.8)	2 (0.8)	11 (4.7)	1 (4.2)	17 (7.2)	236 (100.0)
2017년 여름	344	177 (51.5)	217 (53.4)	93 (22.9)	14 (3.4)	14 (3.4)	7 (1.7)	61 (15.0)	406 (100.0)
2017년 겨울	232	104 (44.8)	110 (52.1)	38 (18.0)	22 (10.4)	6 (2.8)	11 (5.2)	24 (5.2)	211 (100.0)

연도	점검업소	적발업소	위반 내역 및 건수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 미지급	연소자 증명 미비치	기타	계
2018년 여름	421	98 (23.3)	95 (44.8)	40 (18.9)	56 (26.4)	11 (5.2)	2 (0.9)	8 (3.8)	212 (100.0)
2018년 겨울	248	93 (37.5)	94 (40.0)	25 (10.6)	51 (21.7)	1 (0.4)	3 (1.3)	61 (26.0)	235 (100.0)

* 주: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역을 주요 항목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함.
*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3532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2.20). "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8.30).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357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8.3.08).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2019. 1). 내부자료: 2018년도 자체평가 주요정책분야 추진실적. p.281.
여성가족부(2019d). 내부자료: 2018년도 겨울 청소년아르바이트 합동점검 결과.

②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률

본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피해경험 중 심각한 피해경험이라 할 수 있는 성적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0%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18년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4.4%로 여학생(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3%로 고등학교(2.7%)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2.9%로 특성화계고(2.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4.9%로 대도시(4.0%)나 중소도시(1.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9.5%로 양부모가정(3.0%)이나 한부모가정(2.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6.9%로 중(2.6%)이나 하(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이 4.1%로 중(2.5%)이나 하(1.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7-3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7.1	2.2	0.8	100.0(537)	
성별	남학생	95.6	3.3	1.1	100.0(312)	5.503
	여학생	99.1	0.6	0.3	100.0(225)	
학교급	중학교	95.7	0.0	4.3	100.0(80)	13.503**
	고등학교	97.3	2.5	0.1	100.0(456)	
고교 유형	일반계고	97.1	2.9	0.0	100.0(304)	2.376
	특성화계고	97.7	1.9	0.4	100.0(152)	
지역 규모	대도시	96.0	1.9	2.1	100.0(200)	10.052*
	중소도시	98.7	1.3	0.0	100.0(245)	
	읍면지역	95.1	4.9	0.0	100.0(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0	2.3	0.7	100.0(447)	12.590
	한부모가정	97.9	2.1	0.0	100.0(74)	
	조손가정	90.5	0.0	9.5	100.0(10)	
	기타	100.0	0.0	0.0	100.0(6)	
학업 성적	상	93.1	3.8	3.1	100.0(83)	10.142*
	중	97.4	2.6	0.0	100.0(178)	
	하	98.1	1.4	0.6	100.0(276)	
경제적 수준	상	95.9	2.7	1.4	100.0(228)	3.700
	중	97.5	2.5	0.0	100.0(196)	
	하	98.7	0.5	0.8	100.0(113)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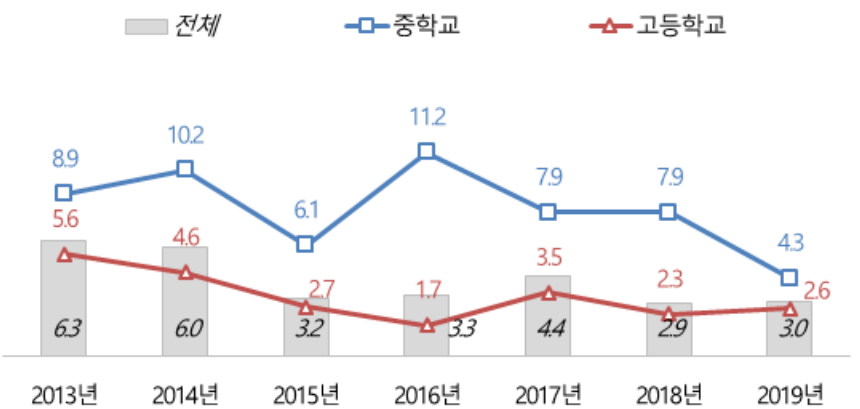

그림 Ⅳ-7-1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연도별 추이)

청소년고용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여성가족부의 합동점검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에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합동점검결과를 보면 여름방학의 경우 총 56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위반건수 대비 26.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총 5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위반건수 대비 21.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에 기초할 때 청소년고용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39. 청소년 고용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건수

(단위 : 건)

연도	점검 업소	적발 업소	위반 내역 및 건수		
			전체위반건수 (A)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B)	비율 (B/A)*100
2016년 여름방학	299	110	178	13	7.30
2016년 겨울방학	278	137	236	2	0.85
2017년 여름방학	344	177	406	14	3.45
2017년 겨울방학	232	104	211	22	10.42
2018년 여름방학	421	98	212	56	26.42
2018년 겨울방학	248	93	235	51	21.70

* 주: 합동점검 결과를 주요 항목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함.
*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3532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2.20). "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8.30).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357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8.3.8).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2019. 1). 내부자료: 2018년도 자체평가 주요정책분야 추진실적. p.281.
여성가족부(2019d). 내부자료: 2018년도 겨울 청소년아르바이트 합동점검 결과.

4) 성적 착취

(1)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률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은 다음 〈표 Ⅲ-7-40〉과 같다.

2018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수는 31,545명이었다. 이 중 19세미만 청소년은 총 8,837명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2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17년 대비 956명 감소한 수치이다. 연령별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자 수를 살펴보면, 7세 미만이 298명(0.9%), 7-13세 미만이 2,142명(6.8%), 13-19세 미만이 6,397명(20.3%)로 나타났다. 그리고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등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수는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수도 2018년의 경우 총 874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이며,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 7세 미만이 2명, 7-13세 미만이 131명, 13-19세 미만 741명으로 나타나서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7-40.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단위 : 명, %)

연도	계(명)		피해자연령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상
2009년	전체	33,659	944	4,375	10,287	15,115	546	2,392
		100%	2.8	13.0	30.6	44.9	1.6	7.1
	장애인	4,603	6	228	1,312	2,828	122	107
		100%	0.1	5.0	28.5	61.4	2.7	2.3
2010년	전체	39,299	1,042	5,581	11,761	18,225	381	2,309
		100%	2.7	14.2	29.9	46.4	1.0	5.9
	장애인	1,722	36	189	574	879	9	35
		100%	2.1	11	33.3	51	0.5	2.0
2011년	전체	33,749	786	3,813	9,914	15,927	401	2,908
		100%	2.3	11.3	29.4	47.2	1.2	8.6
	장애인	2,431	7	234	983	1,137	25	45
		100%	0.3	9.6	40.4	46.8	1.0	1.9
2012년	전체	30,642	565	3,088	9,371	15,325	405	1,888
		100%	1.9	10.1	30.6	50.0	1.3	6.2
	장애인	3,449	10	166	1,251	1,681	109	232
		100%	0.3	4.8	36.3	48.7	3.2	6.7
2013년	전체	31,323	600	2,722	7,329	16,664	350	3,660
		100%	1.9	8.7	23.4	53.2	1.1	11.7
	장애인	3,225	57	247	743	1,894	49	233
		100%	1.8	7.7	23.0	58.7	1.5	7.3
2014년	전체	31,764	591	2,405	7,866	16,244	483	4,175
		100%	1.9	7.6	24.8	51.1	1.5	13.1
	장애인	4,965	16	208	1,196	2,680	31	834
		100%	0.3	4.2	24	54	0.6	16.8
2015년	전체	34,489	552	2,317	8,839	19,949	470	2,362
		100%	1.6	6.7	25.6	57.8	1.4	6.8
	장애인	3,986	18	179	1,158	2,430	49	152
		100%	0.5	4.5	29.1	61.0	1.2	3.8
2016년	전체	33,005	303	2,100	7,068	19,901	687	2,946
		100%	0.9	6.4	21.4	60.3	2.1	8.9
	장애인	3,038	16	133	764	1,972	34	119
		100%	0.5	4.4	25.2	64.9	1.1	3.9

연도	계(명)		피 해 자 연 령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상
2017년	전체	29,695	381	2,239	7,173	15,810	593	3,499
		100%	1.3	7.5	24.2	53.2	2.0	11.8
	장애인	3,270	21	169	695	2,100	46	239
		100%	0.6	5.2	21.3	64.2	1.4	7.3
2018년	전체	31,545	298	2,142	6,397	17,952	480	4,276
		100%	0.9	6.8	20.3	56.9	1.5	13.6
	장애인	2,592	2	131	741	1,542	43	133
		100%	0.1	5.1	28.6	59.5	1.7	5.1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3.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성적인 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중 4.4%의 청소년이 성적인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4.7%로 남학생(4.2%)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7%로 중학교(4.2%), 고등학교(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6.2%로 중소도시(4.3%), 대도시(4.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13.1%로 한부모가정(5.6%)이나 양부모가정(4.2%)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가 6.8%로 중(3.9%)이나 상(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성적 피해 경험 비율은 해마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의 경우에는 2018년에 비해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41.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4.4	95.6	100.0(9,258)	
성별	남학생	4.2	95.8	100.0(4,811)	1.146
	여학생	4.7	95.3	100.0(4,447)	
학교급	초등학교	6.7	93.3	100.0(2,972)	64.578***
	중학교	4.2	95.8	100.0(2,918)	
	고등학교	2.6	97.4	100.0(3,3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2.6	97.4	100.0(2,716)	0.256
	특성화계고	2.3	97.7	100.0(652)	
지역 규모	대도시	4.1	95.9	100.0(3,777)	8.722*
	중소도시	4.3	95.7	100.0(4,407)	
	읍면지역	6.2	93.8	100.0(1,07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	95.8	100.0(8,396)	21.624***
	한부모가정	5.6	94.4	100.0(694)	
	조손가정	13.1	86.9	100.0(86)	
	기타	9.5	90.5	100.0(76)	
학업 성적	상	4.2	95.8	100.0(3,273)	1.404
	중	4.4	95.6	100.0(3,888)	
	하	4.9	95.1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4.4	95.6	100.0(5,324)	13.468**
	중	3.9	96.1	100.0(3,072)	
	하	6.8	93.2	100.0(854)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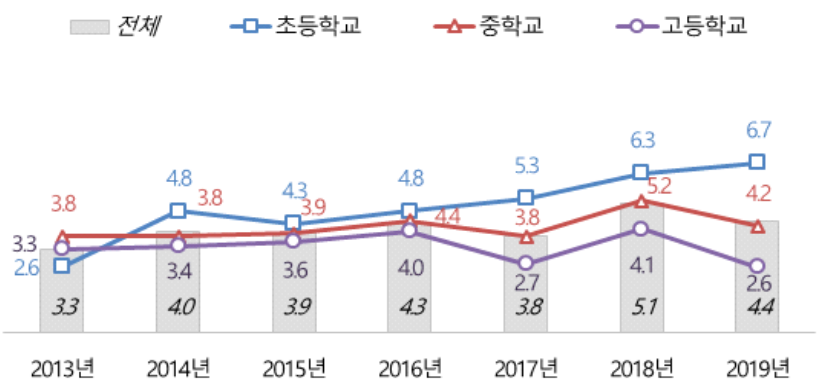

그림 Ⅳ-7-15.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③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

성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과 관련된 질문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친구가 27.9%, 부모님 21.8%, 교사 6.2%, 형제자매 3.1%, 선후배 2.3%, 경찰 2.3%, 전문상담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로부터의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대책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순위가 부모님(35.4%), 2순위가 친구(26.7%)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1순위가 친구(34.1%), 2순위가 선생님(7.6%)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순위가 친구(21.8%), 2순위가 부모님(14.1%)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에서 친구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42.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상담가(상담 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31.9	27.9	2.3	21.8	3.1	6.2	1.0	2.3	3.6	100.0(420)
성별	남학생	31.8	27.1	0.9	24.5	4.2	5.2	0.5	2.3	3.5	100.0(205)
	여학생	31.9	28.7	3.6	19.2	2.2	7.1	1.4	2.3	3.7	100.0(215)
학교급	초등학교	16.7	26.7	0.6	35.4	5.4	6.9	1.2	2.5	4.6	100.0(204)
	중학교	47.2	34.1	0.7	5.3	0.9	7.6	0.4	0.7	3.0	100.0(127)
	고등학교	44.8	21.8	8.4	14.1	1.3	2.5	1.3	3.8	2.0	100.0(89)
고교 유형	일반계고	44.4	22.3	9.0	15.1	0.0	1.8	1.6	3.4	2.4	100.0(73)
	특성화계고	46.5	19.8	5.4	9.1	7.6	5.7	0.0	6.0	0.0	100.0(15)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지역 규모	대도시	35.8	27.7	0.5	18.6	3.0	6.4	2.3	2.8	2.8	100.0(156)
	중소도시	28.1	26.0	4.4	25.6	2.8	5.8	0.2	1.7	5.3	100.0(197)
	읍면지역	33.8	33.9	0.0	17.9	4.6	6.9	0.0	2.9	0.0	100.0(6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9	27.1	2.4	21.6	3.1	6.6	0.8	1.7	3.8	100.0(362)
	한부모가정	25.1	29.7	2.2	23.4	4.6	5.7	2.8	3.5	3.1	100.0(39)
	조손가정	24.1	45.4	0.0	12.7	0.0	0.0	0.0	17.8	0.0	100.0(11)
	기타	27.8	32.2	0.0	40.0	0.0	0.0	0.0	0.0	0.0	100.0(7)
학업 성적	상	26.5	28.6	0.7	28.0	2.2	7.2	1.0	1.7	4.0	100.0(139)
	중	34.4	24.9	2.6	18.3	4.6	7.6	0.6	3.0	4.0	100.0(176)
	하	34.6	32.2	3.7	19.5	2.0	2.4	1.6	1.8	2.3	100.0(105)
경제적 수준	상	28.5	26.5	1.1	27.4	4.2	5.6	1.2	1.8	3.7	100.0(240)
	중	29.6	27.5	4.9	18.1	2.6	9.1	0.9	2.3	5.0	100.0(123)
	하	50.8	34.6	1.5	6.5	0.0	2.6	0.0	4.2	0.0	100.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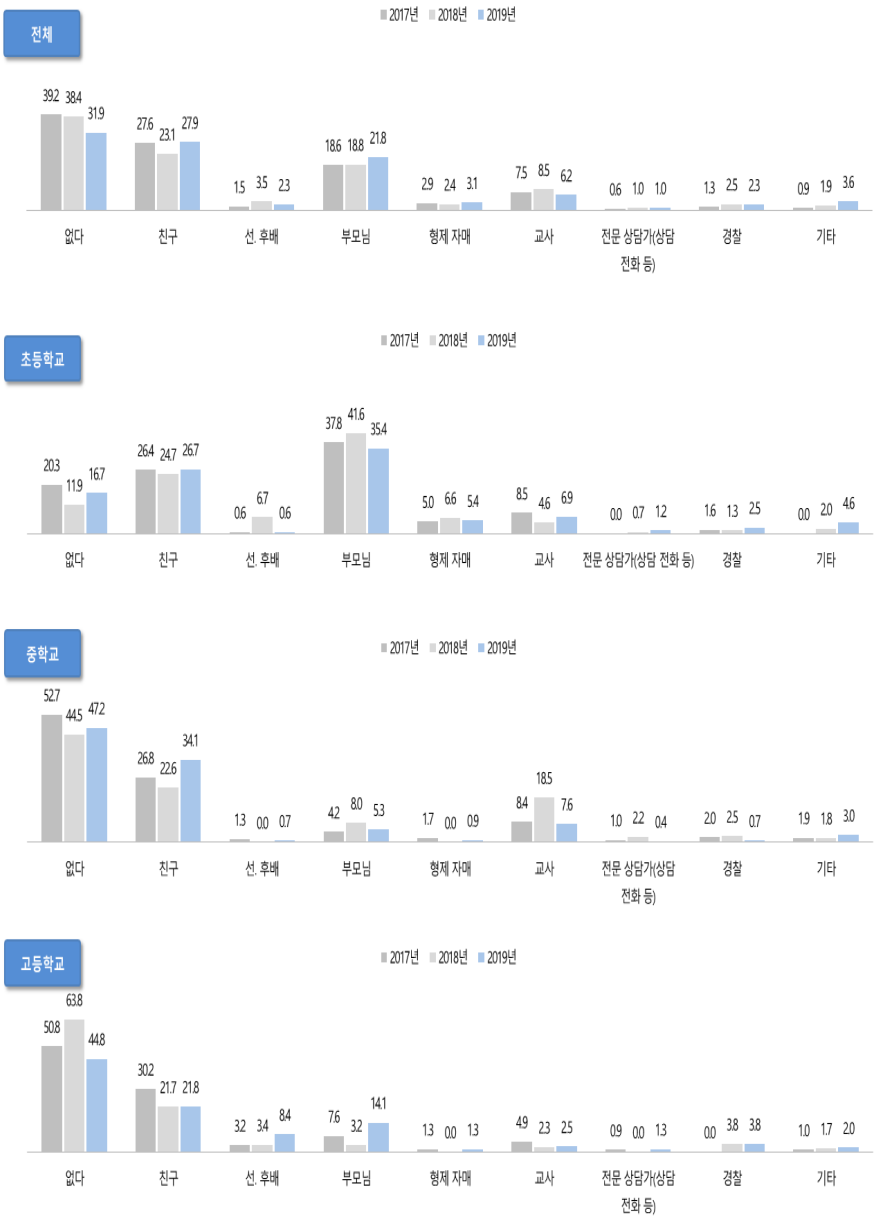

그림 Ⅳ-7-16.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연도별 추이)

(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43), 2017년의 경우 4,767명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대비 15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과 기소현황도 2017년에는 4,659명이 처분 받았으며, 이 중 1,744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자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43),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에는 감소한 후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43.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2	4,261	4,186	1,501	390	1,228	1,067
2013	4,526	4,525	1,851	153	1,301	1,220
2014	4,626	4,688	1,882	14	1,430	1,362
2015	4,516	4,505	1,744	0	1,419	1,342
2016	4,615	4,585	1,702	2	1,461	1,420
2017	4,767	4,659	1,720	24	1,460	1,455

※ 산출죄명 :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출처: 대검찰청(2018). 검찰연감. p.410.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 형량은 2013년 이후 변화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형량은 〈표 Ⅳ-7-44〉와 같다.

표 Ⅳ-7-44.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2019년 현재)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대상 위계·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	5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간음 혹은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목적판매·배포·전시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행위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음란물 제작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혹은 국외이송, 국외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 이송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 혹은 성을 팔도록 권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 량(2019년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폭행·협박·선불금·업무고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의 강요행위를 범한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알선 및 알선정보제공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범죄사용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제공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장소제공, 알선정보 제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강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출처: 법제처(20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에서 2019년 10월 4일 인출.

(3)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서비스 지원 정도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18년을 기준으로 총 31개소이며, 전년 대비 1개소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9c). 연도별 개소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에 20개소에서 2018년에 31개소로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추이는 성폭력 피해율의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6: 468). 2018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은 367명이며, 성폭력 피해자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총 165명으로 전년 대비 7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19d).

표 Ⅳ-7-4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도	개소수	입소정원	종 사 자 수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
2009년	20	214	116	69	47
2010년	19	209	100	72	28
2011년	19	209	90	64	26
2012년	22	249	104	96	8
2013년	23	264	124	104	20
2014년	29	310	153	193	14
2015년	30	353	179	150	29
2016년	30	363	166	150	16
2017년	30	360	172	146	26
2018년	31	367	165	161	4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6.

표 Ⅳ-7-46. 지역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8년(1월 기준)					2019년(1월 기준)				
	전체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전체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합계	30	16	8	4	2	31	16	8	4	3
서울	2	2	·	·	·	2	2	·	·	·
부산	2	1	1	·	·	2	1	1	·	·
대구	1	1	·	·	·	1	1	·	·	·
인천	1	1	·	·	·	1	1	·	·	·
광주	2	1	1	·	·	2	1	3	·	·
대전	2	·	1	1	·	2	·	3	1	·
울산	1	1	·	·	·	1	1	·	·	·
세종	·	·	·	·	·	·	·	·	·	·
경기	5	3	1	1	·	5	3	1	1	·
강원	1	1	·	·	·	1	1	·	·	·
충북	2	1	1	·	·	2	1	1	·	1
충남	1	·	1	·	·	1	·	1	·	·
전북	2	2	·	·	·	2	2	·	·	·
전남	2	1	1	·	·	2	1	1	·	·
경북	2	·	·	1	1	2	·	·	1	1
경남	2	·	·	1	1	2	·	·	1	1
제주	2	1	1	·	·	2	1	1	·	·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90.
여성가족부(2019c).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83.

2018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의 연령별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47), 총 284명이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으며, 이중 24세 이하는 210명으로 총 73.9%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미만은 2명(0.7%), 5세-12세 이하는 14명(4.9%), 13세-18세 이하는 123명(43.3%), 19세-24세 이하는 71명(25.0%)이었다.

표 Ⅳ-7-4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2013-2017)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3년	전체	238	5	15	113	44	60	1
		100%	2.1	6.3	47.5	18.5	25.2	0.4
	장애인	103	-	3	36	26	37	1
		100%	-	2.9	35.0	25.2	35.9	1.0
2014년	전체	285	2	19	141	59	63	1
		100%	0.7	6.7	49.5	20.7	22.1	0.4
	장애인	167	0	4	66	42	54	1
		100%	-	2.4	39.5	25.1	32.3	0.6
2015년	전체	286	4	20	132	77	53	0
		100%	1.4	7.0	46.2	26.9	18.5	0
	장애인	165	0	4	62	54	45	0
		100%	0	2.4	37.6	32.7	27.3	0
2016년	전체	295	1	13	117	95	68	1
		100%	0.3	4.4	39.7	32.2	23.1	0.3
	장애인	180	0	2	54	69	55	0
		100%	0	1.1	30.0	38.3	30.6	0
2017년	전체	285	1	15	123	77	69	0
		100%	0.4	5.3	43.2	27.0	24.2	0
	장애인	173	0	3	54	60	56	0
		100%	0	1.7	31.2	34.7	32.4	0
2018년	전체	284	2	14	123	71	73	1
		100%	0.7	4.9	43.3	25.0	25.7	0.4
	장애인	164	0	4	48	51	60	1
		100%	0.0	2.4	29.3	31.1	36.6	0.6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7.

②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2018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48), 전체 상담자 1,189명 중 여성이 1,110건으로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77건으로 6.5%를 차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7세 이하가 21건(1.8%)이었으며, 8세-13세가 83건(7.0%), 14세-19세가 134건(11.3%)으로 나타났다.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은 910건으로 전체 상담인원의 76.6%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체 상담건수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의 비중은 23.4%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Ⅳ-7-48.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

연령대 / 성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4세-19세)	어린이 (8세-13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8 (0.7)	848 (71.3)	123 (10.3)	73 (6.1)	21 (1.8)	37 (3.1)	1,110 (93.4)
남	0 (0.0)	54 (4.5)	11 (0.9)	10 (0.8)	0 (0.0)	2 (0.2)	77 (6.5)
미상	0 (0.0)	0 (0.0)	0 (0.0)	0 (0.0)	0 (0.0)	2 (0.2)	2 (0.2)
총계	8 (0.7)	902 (75.9)	134 (11.3)	83 (7.0)	21 (1.8)	41 (3.4)	1,189 (10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19.2.26).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p.3.

현재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2018년의 경우 9월까지 233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c). 2018년은 9월까지만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교육실시 인원이기 때문에 2018년도를 제외한 2017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06년 94명에서 2017년 397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Ⅳ-7-49).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49.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단위 : 명)

연도별	중앙센터	40시간 교육									지적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06	24	-	20	10	26	-	-	-	-	-	14	94
2007	108	5	58	62	47	-	-	-	-	-	25	305
2008	-	45	47	45	43	-	-	-	-	-	25	205
2009	-	44	43	36	39	34	42	-	-	-	17	255
2010	-	52	60	40	48	29	46	50	18	-	29	372
2011	-	38	46	31	31	31	43	50	18	24	21	333
2012	-	31	44	43	41	31	39	48	24	29	25	355
2013	12	22	30	31	29	27	32	26	16	30	23	278
2014	-	39	42	43	36	40	18	41	17	42	37	355
2015	-	34	40	39	43	42	24	38	34	40	35	369
2016	-	35	40	39	49	34	36	39	30	39	36	377
2017	-	39	39	44	52	37	40	40	38	34	34	397
2018 (9월)	-	23	19	25	29	22	29	31	9	24	22	233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청소년백서. p.329.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8). 내부통계자료.

③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은 2018년에 총 120,675건으로 전년 대비 21,72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50). 그리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62,831건(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립지원이 17,005건(14.1%), 학교문제(전학) 지원 10,813건(9.0%), 의료지원 8,911건(7.4%), 수사·법적지원 1,314건(1.1%)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Ⅳ-7-50.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단위 : 건, %)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 지원	기타
2009년	14,570	8,165	417	2,626	789	401	2,172
	100%	56.0	2.9	18.0	5.4	2.8	14.9
2010년	18,218	12,666	311	2,276	688	868	1,409
	100%	69.5	1.7	12.5	3.8	4.8	7.7
2011년	21,274	15,843	268	2,824	528	453	1,358
	100%	74.5	1.3	13.3	2.5	2.1	6.4
2012년	28,581	15,395	453	3,894	2,096	791	5,952
	100%	53.9	1.6	13.6	7.3	2.8	20.8
2013년	42,678	23,246	1,126	6,021	2,749	2,595	6,941
	100%	54.5	2.6	14.1	6.4	6.1	16.3
2014년	56,960	26,015	2,448	7,369	3,425	5,144	12,559
	100%	45.7	4.3	12.9	6	9	22
2015년	93,012	50,046	2,260	11,560	6,444	9,163	13,539
	100%	53.8	2.4	12.4	6.9	9.9	14.6
2016년	97,566	49,942	1,018	8,807	7,204	10,661	19,934
	100%	51.2	1.0	9.0	7.4	10.9	20.4
2017년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100%	48.7	1.2	8.9	8.3	11.0	21.7
2018년	120,675	62,831	1,314	8,911	10,813	17,005	19,801
	100%	52.1	1.1	7.4	9.0	14.1	16.4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8.

④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총 1,2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의 55명에서 2019년 1,220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5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문강사	55	198	334	412	457	737	879	1,194	1,259	1,224	1,200

*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9.30). 내부자료: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2018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연간 성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표 Ⅳ-7-52), 중학생은 84.6%로, 고등학생 73.5%보다 11.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성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이 8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2010년의 68.9%에서 2018년의 78.6%까지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52. 연간 성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68.9	76.4	61.3	81.3	75.5	72.7	74.8	65.2	43.8
2011	66.1	74.2	58.1	77.1	74.8	70.9	69.0	61.7	43.1
2012	68.0	73.7	62.5	75.1	74.6	71.5	67.6	67.8	52.0
2013	71.6	78.1	65.5	80.8	78.8	74.8	70.1	70.1	56.3
2014	71.8	77.6	66.3	82.3	76.9	74.1	71.0	69.5	58.5
2015	73.3	79.8	67.6	84.5	79.7	76.2	71.6	73.5	58.0
2016	71.9	78.7	66.2	82.8	78.1	75.5	70.8	70.8	57.1
2017	76.2	82.6	70.9	87.3	82.7	77.7	74.4	75.1	63.3
2018	78.6	84.6	73.5	88.2	84.1	81.9	76.7	77.5	67.3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04.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39.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 p.299.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5) 소결

특별보호조치의 지표체계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중분류 수준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구분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을 조사하였다.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수용률,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성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서비스 지원 정도를 조사하였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우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을 살펴보았으며,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탈북 난민 아동 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 난민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현재 전체 난민신청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약 3.7%이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난민인정과 인도적 체류의 비율이 각각 11.0%, 6.8%인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규모는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입국자수도 누적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일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차별경험이 높으며, 주로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과 관련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다수(93.1%)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자녀(6.9%)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탈북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학교생활 지원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훨씬 높은 수준(2.5%)이며,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다문화예비

학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예비학교 지원강화 정책을 통한 적응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직접적인 대면상담이 강화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의 수용률,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을 조사하였다.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과 관련하여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는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2017년에 총 2,157명이었다.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2017년에 128명이었으며, 주요 범죄유형은 강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절도와 사기횡령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인 배치인원수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와 학대의 피해를 받은 아동피해자의 법률적 부조를 주목적인 국선변호사 접수 건수와 지정 건수, 지정률은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비행소년 대상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전년 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의 처우불복제도와 관련하여 처우불복 신청 건수도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는 2012년 이후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2017년에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 청소년의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들은 소년 사법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징계방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적인 청소년의 근로조건 수준, 근로 시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인권침해적인 청소년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과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2017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1.0일,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5시간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시간당 임금총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과 관련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7년 27.2%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8.5%였으며, 남학생, 고등학교, 읍면지역, 조손가정일수록,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4.6%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도 58.9%,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도 10.2%,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성적 피해경험도 3.0%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2%였으며,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도 6.5%,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한 경험도 16.7%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8년에 실시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2018년 여름과 겨울의 합동점검 결과 44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최저임금 미고지,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임금미지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계속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서

비스 지원 정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률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8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2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도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중 4.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와 관련해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부모님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형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전년 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서비스 지원 정도와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31개소로 전년대비 1개소 증가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65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 중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73.9%(210명)를 차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서비스를 받은 사람 중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3.4%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 수는 2019년 9월 기준 총 1,220명이며,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78.6%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2.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분석
3.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5 정책 제언[62]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제안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분석,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최종 정책과제를 선정·제안하고자 하였다. 각 단계별 분석 결과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권리협약 이행분석 시사점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일반이행조치와 관련한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부분적인 정책 및 제도적 성과를 엿볼 수 있지만, 협약 이행을 위해 일반이행조치들이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소권 제한과 관련한 협약 유보 조항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으며,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는 미비준 상태이다. 협약의 이행

62) 5장 1절의 1)은 3장에 대한 요약문 성격으로 3장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의 집필진인 김형욱 시민인권보호관, 전경숙 교수, 이승현 연구위원, 김미숙 교수가 3장과 동일 영역을 집필하였다. 4장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 있는 5장 1절의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 시사점과 5장 3절 정책과제는 4장 집필진인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이민희 교수, 김진호 교수가 4장과 동일 영역을 집필하였다. 5장 2절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분석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행정부 내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은 단발적으로 안건을 논의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청소년인권과(부서) 및 아동권리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인 아동·청소년 인권(권리)교육은 인권교육지원법(안) 제정 무산으로 체계적·안정적으로 진행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협약의 일반이행 조치를 완수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보조항의 신속한 철회, 제3선택의정서 비준, 협약의 모든 조항 이행을 위한 분야별 법률 제·개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관련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권교육원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여건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적 출생통보제 등 공적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에 의해 아동의 존재가 인지되어 기본적 권리를 보호받고 및 교육 · 복지 등 공적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a: 51).

아동·청소년은 어리다, 미성숙하다 등을 이유로 특히 학교에서는 마땅히 누릴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권리 행사에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 보장 등은 학교규칙에 의해 통제·제

한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사회 인권규범은 일부 네 곳에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규범 제정에 적극 지원하고, 침해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상담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화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각급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유도해 가야 한다. 선거연령 18세 하향화와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폭력 및 학대

정부는 체벌 및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다양한 입법과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의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아동폭력 관련 전문가 양성, 관련기관 등의 확대 노력과 종사자의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정부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장기대책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아동학대 및 폭력 근절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과 대안양육과 관련한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 왔다. 그 주요 성과로는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 실시,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 지급,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이혼가정 자녀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해 2015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 설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

원,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운영, 「입양특례법」 제정을 통한 입양숙려제도, 입양동의 철회권 보장,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청취권 보장, 입양정보공개제도 도입 및 수용자 자녀의 보호조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과 보완점은 시민사회연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개선요구로 제기되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가정환경(para. 31), 가정환경 상실아동(para. 32), 입양(para. 33), 불법이송 및 미귀환(para. 34), 수감자 자녀(para. 35) 부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① 일반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활성화, ②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확대, ③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파양 예방대책 수립, ④ 수감자 자녀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⑤ 아동유기 예방 및 미혼부모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에 관한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 왔다. 그 주요 성과로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의 신·증설,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의 증가, 소아전문응급센터 법제화 및 어린이공공진료센터 운영,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2015년에는 '학생 자살예방대책' 수립, 3년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음주와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담배 제조 및 판매 규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확산을 위해 '로그out 가족in' 캠페인 실시, 체험형 성교육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학교 성 인권교육' 도입,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및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급여제도를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과 보완점은 시민사회연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개선요구로 제기되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장애아동(para. 36), 건강 및 보건서비스(para. 37), 정신건강(para. 38), 청소년 보건(para. 39), 생활수준(para. 40) 부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① 장애아동 통합교육 개선, ② 취약아동을 위한 건강권 보장, ③ 아동의 삶의 질 제고, ④ 실효성 있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대책 마련, ⑤ 주거빈곤아동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쟁적 교육 상황은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인권존중의 의식을 함양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가꾸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매번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 시 지적되어 왔다. 1996년의 1차 권고에서는 극도로 경쟁적인 특성의 교육제도를 우려하였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1996: para. 16), 2003년 2차 권고에서는 경쟁이 심한 교육제도가 아동의 충분한 잠재력 개발이 저해될 위험성을 우려하였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para. 52), 2011년 권고에서는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62). 그러나 여전히 경쟁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고, 2019년의 4차 권고에서도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친 경쟁적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1). 그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완화되지 못하고,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으며, 교육격차는 지역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심화되었으며, 과도한 학습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휴식과 여가 등을 즐길 시간적 여유는 제한되었다. 따라서 경쟁적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국가행동계획 수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 놀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7)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 중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이주아동,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 주요 성과로는 2012년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 제정,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 가족 중 미성년자의 보호권 및 교육권 보장,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확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및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설치·운영,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제도적 개선점이 제기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특별보호조치 중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para. 43)과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para. 44) 부분에 권고사항이 있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①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보장 방안 마련, ② 이주아동,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지원 확대, ③ 근로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강화를 제안하였다.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 시사점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019년에 아동영향평가의 절차, 아동수당 확대, 청소년 정책과정 참여 제도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도 다양한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국내법 적용 강화,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 정비, 사법판결에 협약조항 인용 등 다각적인 법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등의 도입으로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이 3.4%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적 수준과 OECD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16.1%), 학생인권조례(7.9%), 국가인권위원회(17.6%)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이며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률이 46.0%로 낮은 편임을 볼 때, 인권관련 교육과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권 주제의 교육과정 반영 등 인권교육 제도화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시점이라 판단된다. 특히 여러 가지 인권상황과 차별상황에 대한 인권 의식은 80~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권교육의 목표가 인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인권 관련 실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의 제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정(95.6%), 학교(91.5%), 사이버 공간(81.1%), 우리나라 전체(77.1%)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는 높은 편이며 증가하는 추세이나 나라 전체에서 인권 존중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낮은 인식수준을 반영한다. 정책과 예산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을 주류화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안착이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는 진로·직업(93.8%)과 상급학교(93.8%), 집안의 중대사(90.9%)와 공부시간·방법(90.5%)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정도는 학생회 의견존중·반영도 52.3%, 예산·장소·시간 보장 45.9%, 자치권 43.9%, 임원 후보 성적 제한 없음 38.3% 등으로 전년도 대비 응답률이 상승하였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경우는 27.5%,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77.3%였고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2017년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내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수용율은 90.9%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0.8%였고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2.8%로 높게 나타나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68.6%로, 조사 이래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간 부족(29.7%)', '참여활동 정보 부족(21.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6%)' 등의 응답을 보였다.

사상의 자유는 87.4%가 보장받고 있었고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는 81.8%로 나타났으며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경우는 37.8%로 모두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다.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12.6%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9.1%로 최근 줄어들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42.8%), 복장(43.6%), 소지품(15.9%) 검사 경험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

(10.0%), 징계사항(18.8%), 시험성적(18.4%) 공개도 줄어들고 있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7.8시간,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2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9.3%로 이들이 주로 이용한 컨텐츠는 게임과 영화·TV·동영상, 메신저 등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이슈 대응이 필요하다.

실태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수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모든 영역에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학교운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의 학생 참여 제도화, 용모검사 등 사생활 침해 문제의 개선,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등 학생인권 개선 노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과 학생자치권 확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권 장애요인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듯이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보고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폭력 및 학대

2019년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나 또래 친구 사이보다 가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폭력과 체벌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폭력은 학습되어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폭력예방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폭력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게 권고하고 있는 체벌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4명 중 1명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10명 중 1명에 가깝게 체벌을 당하고 있어 체벌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아직 폭력에 가까운 간접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한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이 인정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조사결과로는 조손가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대체로 폭력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더 많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정부는 이에 대한 예방적, 회복적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34,169건으로 90.5%(30,923건)가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76.8%(17,17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그 중 친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95.4%였다.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친부모임에 따라 가정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모의 친권을 내세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더 나아가 안전상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63] 상담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엄격한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정에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경찰의 동행 역시 제한적이어서,[64]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65]

---

63) 전민일보 (2019. 05. 28). (가정의 달 특집) 아동보호체계 안전한가.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12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64) 메디컬투데이 (2019. 10. 04). 아동학대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요청해도 61%만 동행.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457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65)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이 되어왔으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참조: 국민일보. 2018. 07. 28. 사각지대 놓인 아동학대 상담원 "아동학대 대응은 국가의 책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57846&code=61121111&cp=nv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방임과 관련해서는 심야시간 부모부재 및 방임 경험비율은 56.8로 가장 높았고, 위생적이지 않은 의복과 침구 사용 경험률은 7.5%, 결식 시 부모 무관심 경험은 5.7%, 질병발생시 부모의 방치는 4.2%, 학교 결석 시 부모의 무관심은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경변인별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한부모가정(결식의 경우는 조손가정 비율 높음)에서, 그리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집단에서 전반적인 방임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상황의 아동·청소년의 방임 경험 및 그 정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건수는 2006년 5,202건에서 2017년 22,36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년 42개소에서 2017년 61개소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학대 조사부터 이후 최종 조치까지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증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가시적인 상담원의 대폭 증가가 당장 어렵다면 그 역할 범위를 분명히 하여 효율적으로 아동학대사례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아동학대 보호건수와 학대피해 아동 사망사례가 증가(2011년 13명→ 2014년 25명→ 2017년 58명)하고 있어 이러한 심각한 사안에 대한 여론 환기 뿐 아니라 대응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결과, 분리보호 시 양육시설 입소를 의미하는 장기보호가 36.1%로 가장 많았고, 친족(친인척)보호 34.9%, 일시보호 23.4%, 연고자에 의한 보호 3.1%, 병원입원 1.7%, 가정위탁 0.8%였다.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 및 이주아동일 경우 이들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66] 그동안 아동학대관련 예산이 중앙정부 일반회계 편성(예,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이 아닌 복권기금 등으로 충당되고 운용된 것에 대한

66) 학대피해 장애아동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며(SBS NEWS 2018.07.27. 갈 곳 없는 '학대 피해' 장애 아동…관련 법안은 '쿨쿨'), 학대 피해 장애 및 이주 아동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문에도 명시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6).

문제 제기가 있어온 바(이은주, 2016), 무엇보다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편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보육시설 및 이용 아동 수가 2013년과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아동 인구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이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이용 아동수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모두 전반적인 만족도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질적 수준을 보여준다.

입양율의 경우 국내외 입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한 입양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뿐 아니라, 입양 아동 양육을 위한 지원이 더욱 현실화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보호대상 아동이 감소한 가운데 기아·유기로 발생한 아동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2017년 261명→2018년 320명)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베이비박스 영·유아 유기 문제를 고려할 때[67] 더욱 심각히 간주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기아 및 유기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들 대부분은 시설보호(62.5%)를 받고 있고 약 24.0%가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보호 비율의 경우 전년대비 다소 증가함에 따라(3.8%p) 가정위탁보호, 특히 일반위탁보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경우 3.5%만이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었는

67) 문화일보 (2019. 09. 10). 유엔아동협약 쟁점 떠오른 '베이비박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1001071303311001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데, 특히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청소년에게서 가출경험이 2~3배 높았다. 가출 사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가 가장 높은 61.7%로 나타났고(전년대비 3.7%p증가), 학업이나 친구 때문에 가출했다는 응답은 각각 15.9%, 9.6%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기준 청소년쉼터 수는 총 130개소로 2008년도의 76개소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가출청소년의 발견 및 조기개입부터 원가족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자립지원까지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할 때 시설인프라 확충과 그에 따른 시설종사자 처우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 변경 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9년 평가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지역사회 관계 영역이 5점씩 배점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을 시사하였다.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연도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도 2018년 기준 90,780명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9.0%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71.0%는 일반학교에 배치되는데, 일반학교에 배치된 인원중 대다수는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령대별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살펴보면 0세부터 14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15세-19세를 기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의 외인으로는 운수사고가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났지만, 15세 이후부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망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15세 이후의 청소년에 대해

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6.7%, 16.9%로 전년 대비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각각 72.5%, 42.0%로 전년대비 모두 소폭 증가하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률과 음주율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되는데 비해 예방교육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흡연예방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운동실천율은 '한 달에 1~2회 정도'는 20.5%,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23.8%, '일주일에 3회 이상'은 31.2%였으며, 조사대상자 4명 중 1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한 달에 1~2회 이상 운동을 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중·고생 청소년들이 운동하는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비만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률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운동실천율의 감소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운동실천율과 수면시간, 비만율 등 모든 신체적 건강관련 지표에서 고등학생이(특히 일반계고),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는데, 아동·청소년 시기 신체적 건강이 평생의 웰빙을 좌우한다고 할 때 특히 취약한 배경인 청소년의 신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8 사망원인통계'기준으로 10~29세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10-19세까지의 자살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4.7% → 2018년 5.8%). 또한 본 조사에서 30.4%의 아동·청소년이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로서 학업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가 38.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9%, 가족 간의 갈등 17.4%,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 폭력 등)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30% 내외가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표, 즉 죽고 싶다는 생각, 우울증, 행복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정신적 측면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다른 가정유형에서보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10.3%이었고, 또 고민거리 대화상대로서 학교상담교사가 0.5%,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가 0.2%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여 학교 상담교사, 특히 청소년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측면과 관련하여 폭력피해 잠재집단 유형별 정신건강 특성에 대한 심화분석 결과, 가정, 학교, 또래, 사이버 상에서의 다중 학대 및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포함한 정신건강 측면이 더욱 취약함에 따라 폭력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OECD자료인 2015년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1.43%(현금지출 0.18%, 서비스 1.01%, 세금우대 0.23%)로, OECD국가 평균인 2.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금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OECD자료에 따른(2015년)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7.1%로 OECD국가 평균인 13.4%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추이를 보이던 상대아동빈곤율이 2016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20~24세 청소년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20~24세 후기 청소년 및 초기 청년기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립지원을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진학률은 대체로 세계적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69.7%를 보이고 있어 10명의 학생 중 7명이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여 이는 진학의 편중성을 보여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회가 학벌사회임을 보여주는 수치이지만 이는 청년실업 등 부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등학교에서 직업계고의 선호도를 높이는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대학교 등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수준에 있어서는 OECD 평균이 수준보다 10% 가깝게 뒤져 있으므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학업 부적응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한민국에 21세기에 들어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가 10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청년실업과 무관하지 않고, 각종 사회 범죄의 증가 원인이기도 하므로 정부의 보다 획기적인 교육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의 목표 차원에서 아동의 교육권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인한 비율이 37.1%에 달해 3명 중 1명이 넘는 수치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학생들의 자퇴 충동 이유는 모두 학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 혁신학교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 친화적인 학교를 대폭 확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대한민국 교육은 엘리트 지향주의적 교육으로 대학교가 서열화 되어있어 교육이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폐단은 타고난 아동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자퇴충동이나 학업중단 수준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학벌사회 속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의 재생산은 학벌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각종 교육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대학으로 만의 진로보다는 초중

등교육과정에서 일찍부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 및 취업으로 진로를 개발하도록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해야만 한다.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후 직업계고 영역에서 활발한 교육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행착오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운영도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임금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산업체도 부담을 가지고 산학 연계를 꺼리는 상황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산업체의 현장실습 연계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영역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학입학을 준비하느라 이 영역에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시간의 부족으로 오프라인에서 또래와의 소통과 놀이의 기회가 없어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평일 하루 여가활동 시간은 2.8시간이며, 이 중 스마트기기 활동시간은 1.9시간으로 나타나 여가활동 시간의 약 70%에 가까운 과몰입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가뜩이나 신체적 활동시간이 적은 청소년들이 주어진 적은 여가시간에도 움직이지 않고 스마트기기와 시간을 보내는 일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활동의 시간을 늘리는 여가 및 문화 향수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7) 특별보호조치

2018년 현재 전체 난민신청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약 3.4%이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난민신청 아동·청소년에 대한 난민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의 입국자수도 누적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들은 난민청소년에 대한 발달권과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탈북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권리보장 방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과 관련하여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는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2017년에 총 2,157명이며,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2017년에 128명이었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인 배치인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는 감소추세를 보였고,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는 소폭 증가, 수강명령은 2017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 청소년의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들은 소년 사법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징계방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적인 청소년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증가추세이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시간당 임금총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은 2017년 27.2%였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8.5%였다.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4.6%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도 58.9%,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도 10.2%,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성적 피해 경험도 3.0%로 나타났다.

2018년에 실시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43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최저임금 미고지,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임금미지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근로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계속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근로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와 관련하여 전체 성폭력 피해자중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수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적피해시 도움제공자와 관련하여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부모님 순이었다. 이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 및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분석

1) 전문가의견조사(AHP) 조사개요

그동안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연구가 매년 수행되면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파악 및 데이터 생산 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인권영역별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들 중 대부분이 아동·청소년 인권개선과 관련된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들이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UNCRC 권고사항 이행과제 내용 역시 우리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아동·청소년 인권 현안이다. 더불어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아동·청소년 인권개선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 역시 필요한 바, 현재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영역에서 수많은 정책과제들과 UN 권고사항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거나 간과할 수 있는 인권영역이나, 주제, 정책과제는 없으며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선정, 제시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개선사항으로 더욱 강조한다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정책과제들은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이다.

개발된 정책과제들의 상대적 중요도, 즉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단순 평균값 비교를 통한 중요도 산출이 아닌 보다 체계적으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68]으로, 국내의 환경, 공학, 사회과

68) Th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된 AHP는 의사결정에 있어 여러 대안들 중 최선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Rabinowitz, 1992: 87), 전문가들의 논리적 일관성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옥선, 권정언, 2015: 6).

학 분야 등에서도 두루 활용되고 있으며, 진로체험, 평생교육, 보육시설,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정책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본 연구에서도 국가, 사회 및 관련 의무 이행자(duty-bearers)들이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수 있도록 AHP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학계, 현장, 법률 전문가들이 중요도와 시의성을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Satty의 9점 척도[69]를 활용하였다.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web-based 조사지를 구현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본 AHP조사 개요는 아래 〈표 V-2-1〉과 같다.

표 V-2-1.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대상 AHP조사 개요

구분	정책과제 중요도 조사
조사대상	관련 학계, 현장, 법률/정책 전문가 28명
선정방법	전문가 pool 활용 및 추천
조사내용	연구결과 도출된 정책과제들의 중요도(우선순위 조사)
조사방법	서면 조사 또는 web-based 조사(AHP 방식)
조사시기	2019년 10월 4일~11일

AHP 조사지 구성을 위해 먼저 그동안 인권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출한 정책과제들[70]을 정리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들을 검토하였다. 이 내용들을 기초로 이후 연구진, 학계, 법률,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인권영역별로 1차 정책과제들이 정리되었다. 도출된 정책과제들에 최종적으로 유엔의 UNCRC 권고사항(최종견해) 내용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여기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

69) Satty의 9점 척도: 1=equal importance(동등하게 중요), 3=moderate importance(약간 중요), 5=essential/strong importance(중요), 7=demonstrated/very strong importance(매우 중요), 9=extreme importance(절대 중요)(Saaty, 1986; 김옥선, 권정언, 2015).

70) 2013~2018년간 본원에서 수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연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김영지, 김희진, 2015) 등에서 제안한 7개 인권영역에서 326개 정책과제들을 정리, 검토하였다.

과와 청소년 및 전문가 대상 FGI 결과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였다. AHP조사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V-2-1. AHP조사 위한 정책과제 도출 절차

완성된 각 영역별 정책과제와 이에 대한 상세 설명내용은 아래 〈표 V-2-2〉와 같다. 전문가들이 본 조사를 위한 웹 링크에 접속하게 되면 본 조사의 목적과 응답방법이 제시되며, 이를 숙지한 후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조사는 각 영역별로 이루어지는데, 웹 화면 상단에 각 정책과제에 대한 상세설명들이 제시되며, 전문가들은 이를 참고하여 각 영역 안에서의 정책과제 우선순위를 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예시는 〈표 V-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V-2-2. AHP조사 정책과제 및 상세 설명내용

영역	정책과제	정책과제 상세 설명내용
A. 일반이행 조치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상소권 관련 협약 제40조제2항(b)(v)유보 철회, 개인청원권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 협약 등 제조약 비준, 사법판결에 협약조항 인용, 협약 반영한 관련법 제·개정 등 협약의 국내법 적용 강화
	2.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모니터링 강화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조직(2년 기한의 한시조직) 안정성과 협약 모니터링 역할 및 전문성 확보,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의 아동인권 기능과 전문성 강화 등
	3. 아동예산 산출기준 마련 및 OECD 평균 수준으로 아동분야 공공지출 확대	아동예산의 정의 및 산출식을 정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아동예산 규모 파악 및 부처별 아동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 GDP대비 OECD 평균 수준으로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 확대
	4.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확대 및 제도화	아동·청소년 및 관련분야 성인 종사자 대상 아동 인권교육 제도화(학교교육과정, 교사 및 사법관계자 양성과정, 종사자 연수과정 등의 아동인권교육 포함, 인권교육지원법 마련 및 국가인권교육원 설치 등)
	5.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유엔심의 주기에 따라 협약이행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연도별 이행상황 정기적 점검 시스템 구축, 부처별 이

영역	정책과제	정책과제 상세 설명내용
	제도화	행실적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거 법규 마련
B. 일반원칙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협약 제2조에 합치되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
	2.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안착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아동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안착(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 확보)
	3.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청취 및 반영 제도 마련 및 입법 조치, 가정과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 견해 존중 및 반영
	4. 아동·청소년 안전 종합계획 수립	미세먼지, 석면, 어린이집 통학 차량, 가습기 살균제, 아동·청소년 시설 및 학교 안전,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기후변화와 아동건강 등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C. 시민권과 자유	**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국내외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2.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시스템 제도화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시스템 구축(학생인권옹호관 등)
	3.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직선거권 및 피선거권, 교육감선거 투표권, 조례주민발의, 주민자치위원등 정치적 참여권 연령 하향,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4.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및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확산	표현의 자유, 사생활보호, 자치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규칙 제·개정,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사례 확산
	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보호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사이버 공간의 인권침해 및 스마트폰 과의존 대책,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D. 폭력 및 학대	**1.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관련 법 정비**	민법 제915조를 비롯하여 가정, 학교, 기타 기관에서의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 폭력 전면 금지를 위한 관련 법 정비
	2. 폭력 가·피해자 대상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 강화, 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조치 정비
	3.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적 책무성 강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자 보호를 포함한 실효적인 현장조사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4. 학대 피해 (장애·이주) 아동 보호체계 개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 관련 쉼터·그룹홈, 전문기관 확대, 학대피해 장애 및 이주아동 위한 특화시설 마련
E.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영·유아·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베이비박스 영아를 포함한 아동 유기 예방과 미혼부모 지원 제도 개선
	2. 입양사후관리 및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절차 개선	입양 사후관리 및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입양절차 개선을 통한 아동파양 예방, 파양에 따른 아동보호의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파양절차 시 아동 의견 청취권 보장 등

영역	정책과제	정책과제 상세 설명내용
	3. 일반가정 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탈 시설화를 위한 (조부모, 친인척 위탁 외)일반가정 위탁보호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작업과 지원금 및 세제혜택 지원 등 확대
	4.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양육시설 및 쉼터에서의 보호 종결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5. 대안양육체계 기능 다각화	소규모 대안양육체계 지원 및 기능 강화, 보호·양육·교육·치료 등 다양한 대안양육기관의 기능 다각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유병률 실태 파악, 정신의료기관 확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심리상담 접근성 제고 및 자살예방대책 시행 등
	2.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	아동·청소년의 주거 빈곤을 포함한 빈곤실태 파악 및 대응책 (주거지원정책 등) 마련
	3. 장애아동·청소년 종사자 예산 증대 및 통합교육 강화	장애인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종사자·예산 확대,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청소년 교육, 훈련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4.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증진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의 비만율 증가 및 신체활동 부족에 대응한 신체 건강증진 방안 마련, 약물남용과 흡연·음주 예방 및 광고 규제 등도 포함
G.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1. 발달단계별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	영·유아, 아동·청소년 등 모든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에 따른 놀이 및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
	2.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아동·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체계 혁신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협약 제29조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 설정)
	3.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초·중등교육 단계 아동·청소년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4.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 체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체계에 대한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 등)
H. 특별보호 조치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방안	이주아동(난민, 무국적 아동 포함)의 출생등록, 교육권 및 사회보장권, 이주아동 비구금원칙,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대책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폭력피해 등 노동권 보장,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권리보호 대책 등
	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법 개정 및 지원 강화,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분류되는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청소년성보호법), 모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제도 개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 처우 개선	판결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의 자유박탈과 인권침해 개선(구금기간 최소화 및 위탁 규정 개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과 소년원 보호처분 아동 분리 수용 보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실질적 기능 모색 및 과밀수용문제 해소와 시설 개선

표 V-2-3.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조사 예시

정책과제	≪ 왼쪽 과제가 더 중요								동등	오른쪽 과제가 더 중요 ≫								정책과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A-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A-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A-3. 아동예산의 정의와 범위 설정 및 아동예산 확대
A-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A-3. 아동예산의 정의와 범위 설정 및 아동예산 확대

2) 전문가의견조사(AHP) 조사결과

본 조사에는 아동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학과, 청소년관련 학과 등 아동·청소년 관련 학계 전문가 13명, 아동복지 및 아동인권 분야의 다양한 NGO 등에서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 14명, 법률 전문가 1명 등 총 28명이 참여하였다. 수집된 조사결과는 모두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코딩 결과는 Exc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AHP 조사방식에서는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가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며, 0.1(10%) 이하일 경우 쌍대비교가 일관성있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한다(Saaty, 2008; 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82에서 재인용). 본 조사에서 28명의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결과의 일관성 지수는 0.1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조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역시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어 중요도와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인권영역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표 V-2-4〉와 같다.

표 V-2-4.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조사결과

인권영역	정책과제	중요도	순위
A. 일반이행조치	A-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0.222	1
	A-2.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모니터링 강화	0.185	4
	A-3. 아동예산 산출기준 마련 및 OECD 평균 수준으로 아동분야 공공지출 확대	0.220	2
	A-4.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확대 및 제도화	0.178	5
	A-5.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제도화	0.195	3
B. 일반원칙	B-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0.278	1
	B-2.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안착	0.230	4
	B-3.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0.260	2
	B-4. 아동·청소년 안전 종합계획 수립	0.232	3
C. 시민권과 자유	C-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0.254	1
	C-2.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시스템 제도화	0.188	2
	C-3.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0.188	3
	C-4.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및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확산	0.186	4
	C-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보호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0.183	5
D. 폭력 및 학대	D-1.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관련 법 정비	0.258	2
	D-2. 폭력 가·피해자 대상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강화	0.234	4
	D-3.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공공성 강화	0.273	1
	D-4. 학대 피해 (장애·이주) 아동 보호체계 개선	0.235	3
E.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E-1. 영·유아·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0.247	1
	E-2. 입양사후관리 및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절차 개선	0.205	2
	E-3. 일반가정 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0.178	4
	E-4.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0.199	3
	E-5. 대안양육체계 기능 다각화	0.170	5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F-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0.312	1
	F-2.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	0.260	2
	F-3. 장애아동·청소년 종사자·예산 증대 및 통합교육 강화	0.233	3
	F-4.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증진 방안 마련	0.196	4
G.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G-1. 발달단계별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	0.219	4
	G-2.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0.301	1
	G-3.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0.253	2
	G-4.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체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	0.228	3
H. 특별보호조치	H-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방안	0.259	2
	H-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대책	0.230	3
	H-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	0.291	1
	H-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 처우 개선	0.221	4

분석결과를 아동·청소년 인권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이행조치” 영역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가 중요도 0.222로 1순위로 나타

났다. 해당 정책과제의 상세 내용은 '상소권 관련 협약 제40조제2항(b)(v)유보 철회, 개인청원권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 협약 등 제 조약 비준, 사법판결에 협약조항 인용, 협약을 반영한 관련법 제·개정 등 협약의 국내법 적용 강화' 등으로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UN CRC 이행과 관련하여 상기 내용들과 관련한 법제도 강화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의 중요도를 보인 정책과제는 '아동예산 산출기준 마련 및 OECD 평균 수준으로 아동분야 공공지출 확대'(중요도 0.220)로 1순위 과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본 조사 참여 전문가들은 UN CRC 이행을 위해 법체계와 함께 아동분야 예산 지출 확대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에서도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 수준은 OECD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러한 현실이 조사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순위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제도화'였으며, 4순위와 5순위는 각각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모니터링 강화',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확대 및 제도화'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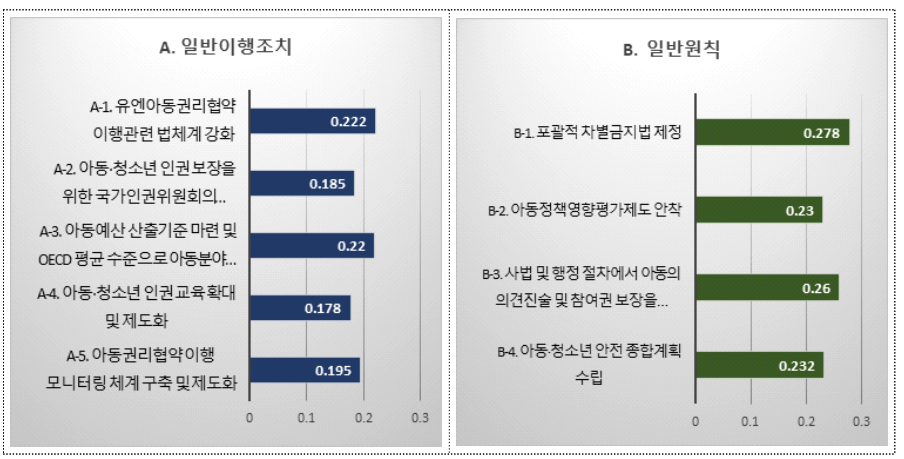

그림 Ⅴ-2-2.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①

"일반원칙" 영역에서 1순위의 중요도를 보인 정책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0.278)으로 전문가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부합하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로 나타난 정책과제는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었으며(중요도 0.260), 3순위는 미세먼지, 석면, 기후변화, 재난 예방 및 대응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안전 종합계획 수립', 4순위는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안착'이었으나, 이 두 과제의 중요도는 각각 0.232, 0.230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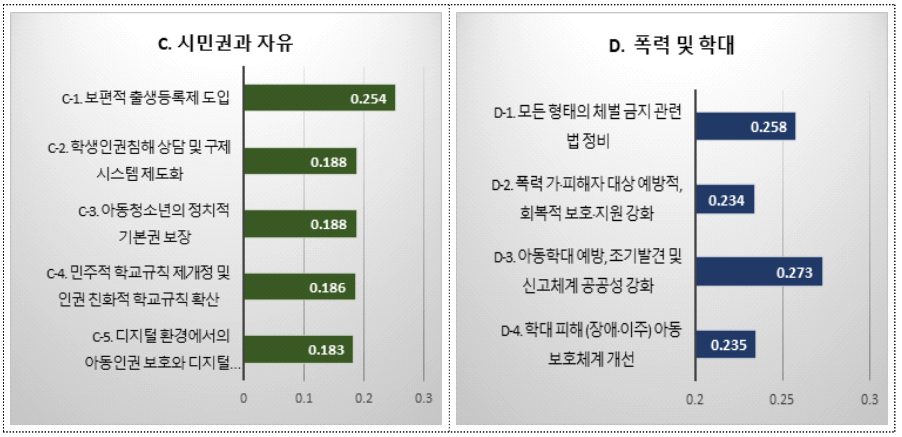

그림 Ⅴ-2-3.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②

"시민권과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들 중에서는 국내외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0.254)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시스템 제도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동일하게(0.188)로 두 번째 중요도를 나타냈다. 4순위는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및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확산'. '디지털 환경에서

의 아동인권 보호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였는데 각각 0.186, 0.183의 중요도를 보여, "시민권과 자유"영역의 경우 2순위~5순위의 중요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폭력과 학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난 과제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공공성 강화'(중요도 0.273)였다. 해당 세부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과 현장 조사 등 대응을 위한 공적 책무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예방 및 발견, 신고 체계에서의 공공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아동학대 조사 시 경찰과 동행한다고 해도 아동 및 가족 조사, 아동분리, 친권 제한 등에 있어 강제력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71]. 그 다음으로는 민법 제915조를 비롯하여 가정, 학교, 기타 기관에서의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 및 폭력 전면 금지를 위한 관련 법 정비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관련 법 정비' 정책과제가 2순위의 중요도를 나타냈고(중요도 0.258), 다음으로 '학대 피해 (장애·이주) 아동 보호체계 개선'(중요도 0.235)과 '폭력 가·피해자 대상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강화'(중요도 0.234) 정책과제가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영·유아·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정책과제가 1순위 중요도를 보여(중요도 0.247),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영아를 포함한 유아 및 아동의 유기 예방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미혼부모 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문에도 중요하게 지적되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3). 그 다음으로 입양사후관리 뿐 아니라 파양에 따른 아동보호 공백의 최소화 방안

71)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TV서울, 2019. 09. 19:."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법제화 추진" http://www.tvseoul.kr/news/article.html?no=26539에서 2019년 10월 20일 인출.

마련과 파양 시 아동 의견 청취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입양사후관리 및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절차 개선' 정책 과제가 2순위로(중요도 0.205)로 나타났다. 3순위의 중요도(0.199)를 보인 정책과제는 시설보호 및 청소년 쉼터 등에서의 보호 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였다. 4순위인 '일반가정 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5순위인 '대안양육체계 기능 다각화' 정책과제는 각각 0.178과 0.170의 중요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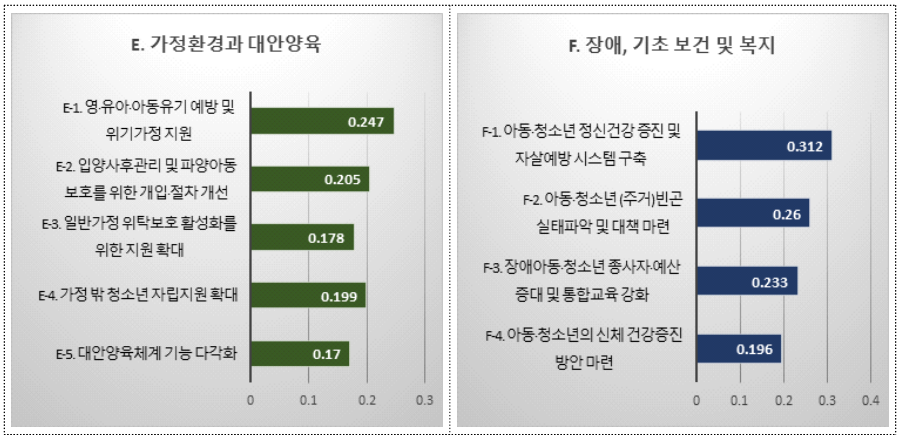

그림 Ⅴ-2-4.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③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중요도 0.312)이 1순위로 나타남에 따라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유병률 실태 파악과 관련 인프라 확충, 그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문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8), 그동안 정부의 관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을 볼 때 향후 더욱 강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중요도 0.260) 정책과제의 경우 특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거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으로 전문가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 중요하게 나타난 정책과제는 '장애아동·청소년 종사자·예산 증대 및 통합교육 강화'(중요도 0.233)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뿐 아니라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증진 방안 마련'은 4순위의 중요도를 보였다(0.196).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인권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삶의 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조사되었다(중요도 0.301). 그 다음으로 초·중·고 교육격차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이 2순위 중요도(0.253)를 보였다. 3순위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체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중요도 0.228), 4순위는 '발달단계별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중요도 0.21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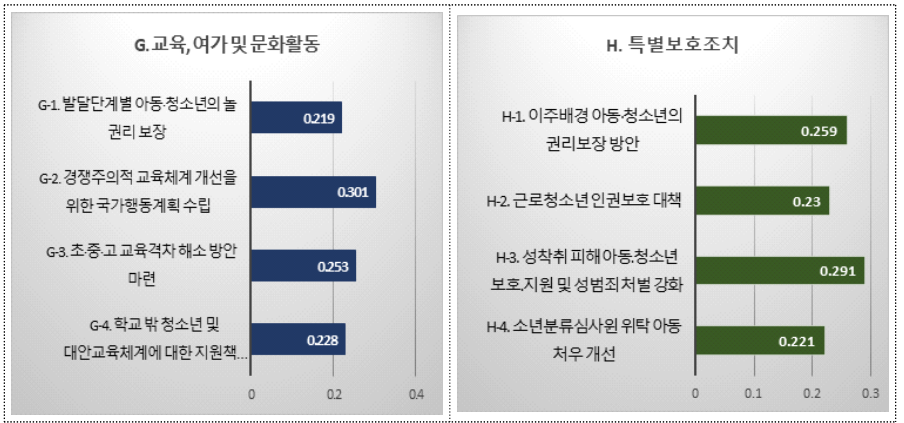

그림 Ⅴ-2-5.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순위 ④

마지막으로 “특별보호조치” 인권영역에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정책과제가 1순위 중요도(0.291)를 보였다. 여기에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뿐 아니라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인프라 설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보호·지원 대책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내용도 해당된다. 2순위의 중요도를 보인 정책과제는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이주 아동·청소년의 출생등록, 교육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방안’(중요도 0.259)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대책’(중요도 0.230) 과제가, 4순위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 처우 개선’(중요도 0.221)으로 조사되었다.

각 인권영역별 1순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일반이행조치” 영역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민권과 자유” 영역의 경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폭력과 학대”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영·유아·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인권영역에서는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특별보호조치” 인권영역에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 · 청소년 보호 · 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인권영역의 다른 개별 정책과제들 역시 모두 중요하며, 본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즉,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은 더욱 집중적으로 강조하되, 다른 정책과제들 역시 간과됨 없이 지속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정책과제 집필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하였다.

3. 주요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과제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분석,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분석 등을 통해 1차 정책과제안 35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AHP) 결과를 반영하여(그림 Ⅴ-2-1, 표 Ⅴ-2-2) 최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18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개 과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의 주요 대상으로 2024년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 시기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Ⅴ-3-1.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 총괄표

과제명[72]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중요도 조사
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신규)	협약이행 법제·개정, 유보조항, 비준조약 등 종합검토	여론수렴 및 의제화를 통해 단계별 작업계획 수립	법제·개정	보건복지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	●	●
과제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보완)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교육활동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작업, 입법부 여론형성	차별금지법 제정	법무부	●	●	●
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보완)	여론조성 및 의제화 및 시범사업	시범사업 및 법 제·개정	시행	법무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	●	●
과제2.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신규)	청소년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역량 제고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역량 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	●	●
Ⅲ. 폭력 및 학대							
과제1.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관련 법령 정비(보완)	'초·중등교육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법·제도 개선	교육부 교육청 법무부	●	●	●

과제명[72]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중요도 조사
	제31조 8항 내용 개정	제31조 9항 신설					
과제2.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공공성 강화(신규)	아동학대 관련 사례처리에서의 공공성 강화위한 법 개정 추진	아동학대 현장 조사위한 해당 공무원 및 경찰 역할 확대와 신속 대응체계 마련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	-	●
과제3. 학대 피해(장애·이주) 아동 보호체계 개선 (신규)	학대피해 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대	학대피해아동 위한 쉼터 및 그룹홈, 치료시설 확대	학대피해 장애 및 이주 아동 위한 특화시설 마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영·유아·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신규)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예방 대책 마련	유아 및 아동 유기 대응 체계 마련	미혼부모 지원 및 빈곤가정 지원	보건복지부 지자체	●	●	●
과제2. 입양사후관리 및 파양 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절차 개선(보완)	입양절차 개선을 통한 아동파양 예방	헤이그 협약 비준 및 입양 사후관리와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파양에 따른 아동보호의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법무부	●	●	●
Ⅴ.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장애 아동·청소년 종사자·예산 증대 및 통합교육 강화 (보완)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위한 단계적 예산 확충계획 수립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통합교육 강화 및 종사자·예산의 단계적 확충 시행	교육부	●	●	●
과제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보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정신질환 유병률 등) 파악	정신건강 증진·자살예방 대책 및 관련 인프라 확충과 홍보 강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	●	●
과제3. 아동·청소년 (주거) 빈곤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신규)	아동·청소년 빈곤 실태 파악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실태 및 지원 현황	주거지원을 포함한 빈곤아동 생활수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	●

과제명[72]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중요도 조사
		파악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과제4.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증진 방안 마련 (보완)	아동·청소년의 비만율 및 운동부족 실태 파악	건강한 식생활 및 신체활동 증진 방안 마련	스마트폰 및 약물남용, 흡연·음주 예방 및 광고 규제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	●
Ⅵ.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보완)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및 고교서열화 해소대책 시행	대학 서열화의 점진화 완화를 통한 대학평준화 제도 도입	관련 법·제도 개선	교육뷰 법무부	●	●	●
과제2. 초·중등교육과정 내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보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학교의 확산	교육균형 발전 예산 확충	관련 법·제도 개선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	●	●
과제3.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체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 (보완)	학업중단 결정 학생의 지원	대안교육 체계의 구체적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	●
Ⅶ. 특별보호조치							
과제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신규)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성착취 피해 아동·아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센터 실치 및 지원 제도 개선	시행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
과제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대책 강화 (보완)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관련 현행 제도 및 관련법에 대한 총체적 점검 및 문제점 도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청소년근로 보호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추진	국가적 차원의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및 관리·감독·지원 체계 정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	●

72) 인권정책 과제 중 제3·4차와 제5·6차 유엔 권고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과제는 이전 연도에 제시한 정책과제 제안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2) 주요 정책과제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Ⅰ-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의 전반적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하고 법제정 등을 비롯하여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함(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제5·6차 권고에서는 사법부, 검사, 변호사들이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재판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라고 권고함(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 유보조항의 철회, 제3선택의정서 가입, 협약을 반영하도록 국내 관련법들의 제·개정 등 협약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강화 노력이 필요함.
세부과제	1 유엔 권고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 상소권 관련 협약 제40조제2항(b)(v) 유보 철회 :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변화상황과 군입대 연령 조정에 따라 유보 철회 추진 시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여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대한민국정부, 2017). - 개인청원권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 실현 강화를 위해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하고 있음. 비준 시 준비해야 할 법·제도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함. - 헤이그국제아동입양 협약 등 협약 이행을 위한 영역별 제 조약 비준 검토 - 사법판결에 협약 조항 인용 등 국내법 적용 강화 및 이를 위해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등 사법관계자(변호사, 판·검사 등) 양성과정에 아동인권교육과정 제도화(김영지, 김희진, 2015: 19) 2 아동·청소년인권법 등 인권기본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에 협약이행 모니터링 제도화 조항 등 인권관련 법체계 강화 - 아동복지법에 주무부처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관련부처별 이행노력과 제출사항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강화함. 장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할 인권목록과 인권모니터링 및 구제 시스템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함. - 협약 이행을 포괄적으로 촉진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제정안 등 효과적인 법체계 방안 논의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등 협약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법체계안 마련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Ⅰ-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장애 등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UN, 1989) 이의 국내적 적용을 위한 법적 규범이 필요함. ○ 2019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권고사항의 이행 :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에 대해 전문가 중요도조사 결과 일반원칙 영역에서 1순위로 높은 중요도를 보임. ※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은 과제로, 개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18년 과제를 보완하여 재제안함.
세부과제	1 차별금지법 관련 공론화의 장 마련 및 법제화 노력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여러차례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성정체성 이슈 중심의 제한적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국제인권기준 및 해외입법례와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연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 입법 방안을 검토할 것을 밝힘에 따라(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 법제정을 위한 후속 작업이 필요함. 2 차별의식 개선 및 인권교육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 개선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2~3명은 외모·신체조건, 성, 나이, 학업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1~2명은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 학업성적, 나이, 성차별 등의 순이었음. 차별한 경험이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며, 차별한 경험보다 차별받은 경험이 많게 나타나 인권감수성 증진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과 인권교육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을 통해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이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우리사회가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한민국정부, 2019: para. 22).
법개정 등 특이사항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관련 법령 조항 개정 방안 검토
관련부처	○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II-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UN, 1989).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은 공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기본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함(정책과제 중요도 조사 결과 시민권 영역의 1순위 과제로 우선순위가 높았음).
세부과제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개선안 마련 -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현황과 제한점 검토)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병원의 자발적 참여와 산모의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필요하여 출생신고율이 낮은 문제 검토. (2019년 5월에 발표된 정부의 출생통보제 및 익명출산제 도입 시 필요장치 마련 필요) 모든 아동의 공적 등록,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아동출생 정보를 국가기관에서 통보받음으로써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비밀출산을 허용하여 부모와 아동의 출산 및 출생기록 모두 보호를 가능하게하기 위한 세부방안 검토 필요(대한민국정부, 2019: para. 25-26). 2 미혼부 등 현행 출생등록제도의 한계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 생모의 인적사항 일부만 특정되어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미혼부의 '친생자 출생신고확인' 신청 절차의 어려움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필요(국가인권위원회, 2019.8: para. 47) 3 미등록 부모의 자녀 출생등록 보장대책 - 출생통보제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미등록 부모의 자녀는 태어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각종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함. 국적부와 별도로 출생등록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함(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9: para. 9)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신분등록제를 보완해야 하므로 관련 부처간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임.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출생통보제에 대한 관련부처간 인식 차이가 있어 두 부처의 협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
관련부처	○ 법무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Ⅱ-2.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은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본 연구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8.3%의 아동·청소년(고 92.6%, 중 89.0%, 초 82.9%)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90년대 후반부터 선거연령 18세 하향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선거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 하향화를 권고함(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세부과제	1 청소년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선거권 제한 연령기준을 19세로 둔 국가이며, 만19세 미만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장애가 되고 있음. 선거연령을 만18세 이하로 하향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도 하향할 필요가 있음(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연령과 주민투표권 및 조례 제·개정 청구권, 교육감 선거권 연령 등을 19세보다 하향화하도록 하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가입 제한 연령을 하향화할 필요가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3.2.15). 2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역량 제고 -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의 결정과정에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은 청소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음.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성인대상의 청소년참여 교육과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함.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참여역량을 키우도록 함. 학교에서는 학급과 학교단위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참여활동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의회민주주의와 선거제도, 투표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제도화하도록 함.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당법 등의 투표권과 선거운동 가능연령, 정당가입 연령 등을 하향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논의
관련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3) 폭력 및 학대

Ⅲ-1.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관련 법령 정비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2011.03.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31조 8항에서 학칙으로 정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금지 조항을 신설 하였지만, 간접체벌에 해당하는 훈육과 훈계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아동인권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목록(para. 7)에서도 간접체벌 및 징계를 포함한 체벌 근절을 위한 당사국의 계획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체벌금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 내용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 "(...)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구를 삭제하고, 2018. 0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의 제31조 7항 "(...)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의 내용을 되살려 현행 제31조 8항은 "학교의 장은 (...) 지도를 할 때에는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거나,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해야 함.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9항 신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한 후 시행령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9항을 신설하여 8항을 지키지 않은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 조항이 따르도록 해야 함. -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1항 별표의 징계기준 7호 파 목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에 따라 제31조 9항을 신설하여 "위의 8항을 지키지 아니한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 8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법개정 등 특이사항	○ 2011.03.18에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의 간접체벌이 허용될 수 있는 독소적 내용을 바로 잡는 개정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9항의 신설은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중복될 수 있으나 실효성 차원에서 신설
관련부처	○ 교육부, 법무부

Ⅲ-2.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공공성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학대사례 신고 및 보호건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신고사례 처리 및 학대판정에 있어 전문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아동학대 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고 있으나, 민간인 신분으로 아동 및 가족 조사, 아동분리, 친권 제한 등 강제력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고 신변 안전상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아동학대 업무에 있어 공공성 강화가 더욱 필요함(본 조사의 전문가 AHP조사에서도 해당 영역 1순위 중요도를 보임). ※ 제 3·4차와 제 5·6차 유엔 권고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정책과제로 이전년도(2017, 2018년)의 정책제안을 일부 참고, 보완하여 제시함.
세부과제	1 아동학대 관련 사례처리에서의 공공성 강화위한 법 개정 추진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체계, 사례판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신속 추진 - 관련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한 학계, 현장, 정부부처에서의 지속적인 법 개정 신속 추진 요구 - 지자체 해당 업무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찰의 역할 확대에 대해 관련 법 및 시행령 명시(사례조사 뿐 아니라 사례판정 및 사후조치 등에서의 역할 확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의 업무 협조 등) 2 아동학대 현장 조사위한 해당 업무 공무원 및 경찰 역할 확대와 신속 대응체계 마련 -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신고체계에서의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 대상 신속 대응 체계 마련 - 아동학대 현장 조사위한 공무원 및 경찰 대상 심화 교육 실시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 그동안 대부분 민간위탁형태로 운영 중이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추진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현재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법제화 추진을 위해 남인순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상태(2019년 9월 18일 발의) ○ 지자체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찰 역할관련 내용 등이 관련 시행령 등에 포함될 필요 ○ 추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기관 전환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관련부처	○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Ⅲ-3. 학대 피해(장애·이주) 아동 보호체계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건수가 2006년 이후 4배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 및 이후 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전문 인력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며, 학대피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이를 위한 특별한 전문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의견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 전문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세부과제	1 학대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대 - 지자체 및 중앙정부 매칭펀드를 통한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 전문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현재 주 예산인 복권기금이 아닌) 편성 2 학대피해아동 위한 쉼터 및 그룹홈, 치료시설 확대 -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들의 경우 일반적인 시설보호가 대부분으로 심리·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 및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가정위탁, 쉼터,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보호 및 치료시설 설치 3 학대피해 장애 및 이주아동 위한 특화시설 마련 -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해 일반시설보다는 장애 고려한 특화시설 설치 필요 - 학대피해 이주 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를 치료할 뿐 아니라 체류신분상의 문제 발생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체류가 보장된 시설에서 충분한 보호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현재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주로 복권기금 등으로 편성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회계편성이 요구됨 -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및 다양한 보호시설 설치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칭 펀드 고려 ○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이주아동을 위한 특화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의 경우 관련 법 개정 필요 - 2019년 초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음. 아동복지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1. 영·유아·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문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었으며(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3), 영·유아·아동 유기 예방은 본 연구의 전문가 AHP조사에서도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인권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조사됨. ○ 보건복지부의 최근 자료 기준 기아·유기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 수가 최근 10여년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남(2017년 261명→2018년 329명)에 따라 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의 전문가 AHP조사에서도 해당 영역 1순위로 중요하게 나타남.
세부과제	1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예방 대책 마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금 번 심의 시 최종견해에서 익명의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 금지를 촉구한 바 있음. - 베이비박스를 포함한 아동유기행위의 불법성 강조 및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광고 및 홍보 등을 통해 인식 개선 필요 2 유아 및 아동 유기 대응 체계 마련 - 중앙정부차원의 지침 하에 지자체 수준에서 개별 유기된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개입 필요(예, 유기된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보호시설 연계 등에 있어서의 전문적 표준화된 서비스 필요) 3 미혼부모 지원 및 빈곤가정 지원 - 영유아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양육이 가능한 수준의 실효성 있는 경제적, 사회적 지원책 마련 - 영유아 및 아동 유기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확대(아동수당 확대 등)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중앙정부의 유기 영유아 발견 시 대응 지침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수준의 표준화된 지원 방안 또는 조례 제정 필요 ○ 미혼부모 및 취약계층의 영·유아·아동 유기 예방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지자체

Ⅳ-2. 입양사후관리 및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절차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파양 등 심각한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사후서비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입양특례법 제25조,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5조), 이에 따라 국내외 입양 시 사후관리서비스가 더욱 엄격해졌음. 특히 이를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입양업무 전산화 및 아동 및 입양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틀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입양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나 파양을 예방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입양과 관련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의 경우 2013년 서명 후 아직 비준되지 못해, 해당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의견에서도 문제 제기되었음. ※ 제 3·4차와 제 5·6차 유엔 권고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정책과제로 이전년도(2017, 2018년)의 정책제안을 일부 참고, 보완하여 제시함.
세부과제	1 입양절차 개선을 통한 아동파양 예방 및 파양 시 아동보호 공백 최소화 - 파양 예방 및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입양절차 개선을 위해 학계 및 실천 현장의 연계를 통한 연구 및 세미나 등 개최, 이에 대한 결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 파양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양 시 아동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특히 아동학대 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마련 2 헤이그 협약 비준 및 입양 사후관리와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아동 의견 청취권 보장 등)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및 비준절차 진행 촉구 -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시 입양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개입 실시(이를 위한 부모협조 사전 의무화) - 파양과 관련한 입양아동보호를 위한 아동 의견 청취권 보장 ※ 현재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아동 파양 시 아동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문가 개입을 통해 아동 의견이 더욱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준수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입양특례법의 파양관련 조문에 아동의견 청취를 위한 연령범위 조정을 위한 개정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법무부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V-1. 장애 아동·청소년 종사자·예산 증대 및 통합교육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8년 현재 90,78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 수는 64,443명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의 약 70%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 비율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수는 2018년 현재 각각 175개교 10,676 학급이며, 교원수는 20,039명으로, 특수학급 대상 학생수와 전년대비 1,427명의 증가추세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5·6차 권고사항에서도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6). ○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에도 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확충을 이미 제안하였지만, 문제점 개선실적이 부족하여 모든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와 예산을 증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세부과제	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종사자 및 예산 증대 -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예산의 단계적 확충계획 수립 -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 -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현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합리적 편의 제공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개별화 맞춤교육 전담교원 증대 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 국가수준에서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의 추진방향과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에 대한 청사진 마련 - 공교육제도 하에서 통합교육의 의미와 법적·제도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 추진
관련부처	○ 교육부

V-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18 사망원인통계' 기준 10~29세까지의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10-19세까지의 자살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2018년 조사결과 중·고등학생의 30.4%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으며, 응답자의 30%정도가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조사되었음. 특히 한부모가정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응답이 더 높아 이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심화분석결과, 가정, 학교, 또래, 사이버 상에서의 다중 학대 및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포함한 정신건강 측면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폭력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 필요 ○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아동의 자살예방과 근본 원인 파악을 포함한 정신적 안녕감(well-being) 향상 노력 강화를 반복 권고하였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8). ※ 제 3·4차와 제 5·6차 유엔 권고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정책과제로 이전년도(2016, 2018년)의 정책제안을 일부 참고, 보완하여 제시함.
세부과제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정신질환 유병률 등) 파악 -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대한 본 조사와 같은 자기보고식 조사뿐 아니라 관련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과 병원 등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연구용역과 자료수집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체계 협조 필요 2 정신건강 증진·자살예방 대책 및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강화(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 정부는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net)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교원 전문성 강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상담자 보수 교육을 실시 중에 있음.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별도의 종합적인 "자살예방 대책"마련 - 일반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상담)교사와 관련 전문가들 대상 심화 교육 실시 - 가정, 학교, 또래, 사이버 상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특히 다중 폭력에 노출된 경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정신건강 측면을 더욱 보호, 개선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개입방안 마련 - 학교(상담)교사,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관련 인프라 확충 - 학교 및 지역사회 상담체계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접근성 제고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폭력피해, 가정의 경제적 형편 등)에 맞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별도의 종합적인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수립 필요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V-3.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행정통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추이를 보이던 상대아동빈곤율이 2016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과 주거 빈곤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0). ○ 빈곤아동가족의 도심형 인구과밀 주거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음("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빈곤 아동이며 100명 중 1명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이 94만명에 달하는데도 아동들은 청년이나 노인·신혼부부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다", 연합뉴스, 2019.08.26.)[73].
세부과제	1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실태 및 지원현황 파악과 인식 개선 - 아동·청소년의 빈곤 실태 및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특히 현행 주거지원정책 현황 파악 조사 실시 -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현물 및 서비스 지원 뿐 아니라 이들의 주 생활환경인 주거환경 수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2 주거지원을 포함한 빈곤아동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월세 보증금 지원, 전세임대주택 지원, 아동주거급여제도 마련 및 확대 - 주거환경을 포함한 아동 생활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최근에서야 주거기본법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 관련 지침에 빈곤아동이 포함된 바,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수준에서 빈곤가구 아동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 필요 - 2019년 4월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의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원대상아동"[74]이 포함됨. - 2019년 7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지원대상에 아동빈곤가구 포함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73) 연합뉴스(2019. 08. 26). "돌아눕지도 못해" 여섯식구 9평 원룸에…주거빈곤 아동 94만명.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35700004?input=1195m에서 2019년 10월 23일 인출.

74) "지원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 경제적 ·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칭함.

V-4.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증진 방안 마련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교육부 행정통계 및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에서 아동·청소년의 운동실천율은 매우 낮았으며,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의 일반논평(2003, 2016)과 최근 심의에서도 청소년 건강(음주광고 규제, 비만, 음주, 흡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문제 대응 등)을 위한 권고가 계속되었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9). ※ 제 3·4차와 제 5·6차 유엔 권고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정책과제로 이전년도(2017)의 정책제안을 일부 참고, 보완하여 제시함.
세부과제	1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운동부족 실태 파악 및 심각성 홍보 - 아동·청소년의 비만율 및 운동부족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 실태파악 결과 보고 및 소아 비만율 증가와 운동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연구결과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비만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이 아닌 "건강"차원의 접근 필요) 2 건강한 식생활 및 신체 활동 증진에 대한 국가적 계획 수립 -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및 신체활동 증진과 관련한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 -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건강한 식생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캠페인 및 홍보 강화 - 학교에서의 신체활동(체육) 시수 증가 및 지역사회 내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3 스마트폰 및 약물남용, 흡연·음주 예방 교육 및 관련 광고 규제 방안 마련 - 학교 및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서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부작용에 대한 중독예방교육 실시, 대중매체 활용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스마트폰 사용과 흡연·음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 모니터링 실시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학교 일과 시간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체육활동 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지침 등 개정 ○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해당 시설·기관 이용 편의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Ⅵ-1.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서의 결과와 수년 간의 추이를 보면 학업 중단이나 포기의 이유가 학업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들 중에서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업 부담으로 인해 각종 지표에서 부정적 수치가 많이 드러나 인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아동인권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 목록(para. 10)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놀이·여가 부족에 대한 당사국의 대응 계획을 주문하고 있음.
세부과제	1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및 고교서열화 해소대책 시행 - 4차산업혁명에 직면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진정한 특수목적 취지의 과학고 외에 자립형사립고,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함으로써 중·고등학교의 서열화와 극심한 입학경쟁을 완화시킴. - 대학 진학으로만 몰려 청년실업을 야기하는 고교 졸업생들을 직업 및 진로 교육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나 산학형 도제학교와 같은 직업계고로의 진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을 우대하는 산업계 문화 조성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2 대학 서열의 점진적 완화를 통한 대학평준화 제도 도입 - 초·중등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카이스트(KAIST)와 같은 특수 과학대학을 지역 거점별로 두면서 나머지 대학들은 서열을 없애고, 과거 프랑스가 도입한 대학평준화 방향으로 대학입학제도를 혁신 - 먼저 서울대법을 폐지하고 전국의 국공립대학 평준화 네트워크를 만들어 동등한 입학, 수학 및 졸업 조건으로 법제도를 마련하고, 폴리텍 등 취업위주의 산학형 전문대학은 지속적으로 확대함.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서울대학교 등 일부 국공립대학과 보수적인 기득권층의 반발을 예상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급작스러운 시행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 ○ 사립대학은 자율에 맡기되, 국공립대학 평준화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에 의해 국공립대학과 동등하게 지원받는 형태로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관련부처	○ 교육부, 법무부

VI-2. 초·중등교육과정 내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실태조사에서 지역,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교육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에의 권리(제28조)와 교육의 목표(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아동인권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목록(para.10의 a)에서는 학업성취 관련 차별에 대한 당사국의 대응 계획을 주문하고 있음.
세부과제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학교의 확산 - 최근의 연구(백병부, 박미희, 2015; 박경호, 2018)에 따르면 경쟁적 학교보다는 협력적 학교 모델인 혁신학교에서 교육격차가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 실증되었으므로 정부는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산, 특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중소도시, 대도시로의 점차적인 혁신학교 확산을 위하여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2 2017년 교육복지정책 발표에 부응한 교육균형발전 예산 확충 - 정부는 2017년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확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기반 구축의 4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음. - 당시 발표 내용에서 2013년~2015년간 지방교육복지정책 지출 추이를 3년 동안 총 지방교육복지재정이 각각 7.28조, 7.78조, 8.21조원으로 상승 추이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취약계측 지원비 지출은 2.40조, 2.28조, 2.20조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발표된 정책에도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예산 방안이 누락되어 있으며, 당시 발표된 많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법개정 등 특이사항	○ 2017년 교육복지대책 발표에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발표되었는데 계획만으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정 검토가 요구됨. ○ 혁신학교의 확고한 법제도적 진입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 혁신학교의 교과과정 운영을 법조문에 넣어야 할 것인지, 혁신학교를 하나의 학교종류로 인정하여 법조항에 넣을 것인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관련부처	○ 교육부, 교육청, 법무부

VI-3.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체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19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52,539명으로 가장 낮았던 지난 2015년의 47,070명보다 5천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5만명 이상이 학교 밖으로 나오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교육체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아동인권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 목록(para.10, c)에서는 학교 밖 아동이 학업 복귀 추진에 대한 당사국의 대응 계획을 주문하고 있음.
세부과제	1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한 학업중단 결정 학생의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54조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조항인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예방하기 위한 법조항이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을 위한 법적 조항도 신설될 필요가 있음. -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학교에도 책임이 있고, 재취학이나 재입학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54조 2(학업중단 결정 학생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의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이들의 재취학 및 재입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을 통한 대안교육체계의 구체적 지원 -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제9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만 주로 재입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학력인정시험 준비로의 지원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이 부족함. - 제9조 2항에서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은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질적 지원의 조항으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함.
법개정 등 특이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은 여성가족부만의 업무가 아니고, 이들을 위한 재취학, 재입학 등 교육부도 책임이 있으므로 양 부처의 정책 및 법·제도 연계가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법 개정이 있어야 함. ○ 개정된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조항이 만들어져야 하며, 관련 예산의 확보도 법조항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부처	○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7) 특별보호조치

Ⅷ-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18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28.0%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그리고 성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 중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았고,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임. ○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5·6차 권고사항에서도 성범죄의 범위 확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는 환영하지만, 아동대상 성폭력과 성적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8). ○ 이러한 맥락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법개정 및 지원 강화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 방안 도출 및 법개정 추진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 추진 2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제도 개선 - 모든 형태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전문적인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개선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하는 등의 처벌규정 강화 -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제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제도 개선
법개정 등 특이사항	
관련부처	○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Ⅷ-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대책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19년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7.2%로 증가추세이고, 2019년 조사결과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8.5%로 높은 수준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41.1%) 등 근로청소년의 부당피해 경험은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5·6차 권고사항에서도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근로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조치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4). ○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2017, 2018년에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단속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이미 다루었지만, 관련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여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제도개선, 노동현장에서 근로권익 침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세부과제	1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관련 현행 제도와 관련법에 대한 총체적 점검 및 문제점 보완 - 근로청소년 인권보호와 관련된 현행 제도와 관련법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청소년근로관련 법령 위반 감시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2 국가적 차원의 근로청소년 인권보호시스템 구축 및 관리·감독·지원체계 강화 - 근로청소년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체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개편 - 근로권익 침해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시군구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관리·감독·지원체계 정비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제시되어 있는 청소년의 근로조건과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을 근로청소년 인권보호의 관점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관련법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참고문헌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8.4.25). **보도자료 : 20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세종: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a).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b).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a).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b).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부처합동 (2019). **포용국가 아동복지**. 세종: 관계부처합동.

교육부 (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교육부 (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 (2016~2020)**.

교육부 (2017).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

Cnts/view.do?boardID=316&boardSeq=70367&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교육부 (2017.1.13). **보도자료: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04&opType=N&boardSeq=70224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교육부 (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70517에서 2019년 7월 2일 인출.

교육부 (2017.8.31). **보도자료: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8a).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4098&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교육부 (2018b).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8c).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30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교육부 (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3503&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7월 2일 인출.

교육부 (2019.1).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

&opType=N&boardSeq=76953에서 8월 12일 인출.

교육부 (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71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교육부 (2019.7.26). **보도자료: 학교의 미디어 교육,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118&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19년 9월 15일 인출.

교육부 (2019.8.21). **보도자료: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9.8.29). **2019 교육기본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a). **2018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b). **2018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세종: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c). **2018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제·개정일 2018. 3. 7).**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

=001003001001&boardtypeid=187&boardid=7602583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3.2.15.). **선거권 연령 기준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84%A0%EA%B1%B0%EA%B6%8C&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07342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7). **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정책 개선 권고-상임위원회 결정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B2%AD%EC%86%8C%EB%85%84&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16529에서 2018년 2월 6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8.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a).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b).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6). **201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7). **2018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8).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5·6차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일보 (2018. 07. 28). **사각지대 놓인 아동학대 상담원 "아동학대 대응은 국가의 책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57846&code=61121111&cp=nv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a). **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안내. http://incrc.org/press/?uid=86&mod=document&pageid=1에서 2019년 9월 10일 인출.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b). **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마쳐**. http://incrc.org/press/?uid=89&mod=document&pageid=1에서 2019년 9월 20일 인출.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십대여성인권센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19).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시민단체 추가보고서**. 서울: 국제아동인권센터 외.

기획재정부 (2019). **나라살림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복권기금운용계획**.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ageNum=6&seq=66에서 2019년 8월 8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5). **연도복권기금운용계획.**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ageNum=5&seq=75에서 2019년 8월 8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7). **기금사업활동**. http://www.bokgwon.go.kr/fund/02_01_17.jsp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8). **기금사업활동.** http://www.bokgwon.go.kr/fund/02_01_18.jsp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학 용어집(pp.163-164). 서울: 교육과학사.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Ⅲ(연구보고 13-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정주, 정은주 (20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효과·만족도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영지, 김희진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연구보고 17-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5-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Ⅵ: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6-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옥선, 권정언 (2015). AHP를 이용한 교육기부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학생의 직업체험 성과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 **진로교육연구, 28**(3), 1-19.

김은정, 이상정, 박신아, 김주일 (2018).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주영, 이미선, 이유훈, 최세민 (2001). **중등 특수학급 운영 개선 방안**.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18-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황진구, 임희진, 정선욱, 정윤미 (201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서울: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나인균 (2009).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성균관법학, 21**(1), 741-765.

내바네섬 필레이(Pillay, N.) (2012).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국가인권위원회 역 (2014).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2018).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세종: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2019).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 세종: 대한민국정부.

동아일보 (2019. 07. 02). **열여섯 여고생 벼랑끝 내몬 '온라인 집단 따돌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2/96277707/1에서 2019일 10월 24일 인출.

메디컬투데이 (2019. 10. 04). **아동학대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요청해도 61%만 동행**.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457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서울: 무지개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무지개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무지개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무지개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2017). **2017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무지개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2018). **2018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무지개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일보 (2019. 09. 10). **유엔아동협약 쟁점 떠오른 '베이비박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 =2019091001071303311001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박경호 (2018). 교육격차의 이해를 통한 개선방안 탐색. **교육비평,** (41), 145-174.

백병부, 박미희 (2015). 혁신학교가 교육격차 감소에 미치는 효과 - 경기도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비평,** (35), 204-226.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법무부 (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1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17).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18).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연수원 (2017). **2017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8). **2018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제처 (20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19년 10월 4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2~2019).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4). **2014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

03&page=1&CONT_SEQ=298285&SEARCHKEY=TITLE&SEARCHVALUE=%BB%E7%C8%B8%BA%B9%C1%F6%BD%C3%BC%B3%20%C6%F2%B0%A1에서 2017년 10월 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5). **2015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6a).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b). **2016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6c).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계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a).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601&page=4&CONT_SEQ=293130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b). **2017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 가정위탁 현황(2017.12.31.기준)**.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1&CONT_SEQ=293108에서 2019년 9월 11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7d).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계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e).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웹사이트 https://www.icareinfo.go.kr/NEW_USR_main.asp??=CENTERINFO/DATA/STAT_GUIDE/view&bbs_no=225&page=1&bbs_option_cd=&search_option=&search_value=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8434&SEARCHKEY=TI

TLE&SEARCHVALUE=에서 2017년 8월 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5.30). **보도자료: '어려운 아이들의 친구, 드림스타트 2017보고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2018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601&page=4&CONT_SEQ=293130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8b). **2018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8c). **2018년 가정위탁 현황(2018.12.31. 기준)**.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1&CONT_SEQ=293108에서 2019년 9월 11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8d).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4220&page=1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8e).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5304&page=1에서 2019년 9월 1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8f).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계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8g).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9624&page=1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8.5.17). **보도자료 : 「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791에서 2019

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9. 8.6). **보도자료: 아동정책의 주인공은 나, 바로 아동!**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436&SEARCHKEY=TITLE&SEARCHVALUE=%EC%A3%BC%EC%9D%B8%EA%B3%B5 에서 2019년 9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9.9.10). **보도자료: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9월 18일~19일 심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824&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에서 2019년 10월16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8849에서 2019년 9월 11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ls.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5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9c).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117_1171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보건복지부 (2019d).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https://www.icareinfo.go.kr/info/research/researchList.do?menuNo=2001400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9e).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www.

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3&CONT_SEQ=347243&page=1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9f).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8849에서 2019년 9월 11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보도자료 (2019.9.1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0865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보도자료 (2007.8.1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41882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보도자료 (2010.7.1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38541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2019.9.26.). **내부자료: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및 지정 현황(2019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도자료 (2016.7.2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574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서울: 국제아동인권센터.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

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9). **2019 입양실무매뉴얼**.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53&listSize=10&pageNo=1&bcode=06_3&category=%EC%97%B0%EA%B5%AC%EC%9E%90%EB%A3%8C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2014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2016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a). **2017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b). **2017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199336에서 2019년 10월 6일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

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에서 2019년 10월 4일 인출.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 (2017). **201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http://www.w4c.go.kr/favl/note/noteView_new.do?SEQ=241&currentPageNo=1&SEARCH_WORD=&SEARCH_DVSN=&cntnKindCd=03&fcltKindCd=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서정아, 연보라 (2017). **20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결과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송미령, 김정화 (2014).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드림스타트 사업 참여 대상자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8**(2), 197-221.

신혜수 (2019). **약식보고절차와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의 의미와 참여방안.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37-54.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2018).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서울: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조직도**. http://www.ncrc.or.kr/intropage/organization.do에서 2019년 10월 23일 인출.

양계민 (2012).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12-R42).**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3).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KYWA-2013-03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4). **20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돌봄연계모형 개발연구(KYWA-2014-03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6). **2016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도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8).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김승경 (2011).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11-R3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 (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연구(연구보고 10-R2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어린이재단 (2013).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서울: 어린이재단.
여성가족부 (2015).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 **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a).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b).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c).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d). **201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e).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8.12.31.기준)**.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b).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c).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d). **내부자료: 2018년도 겨울 청소년아르바이트 합동점검 결과**.
여성가족부 (2019.1). **내부자료: 2018년도 자체평가 주요정책분야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3532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17.2.20). **“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17.8.30).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357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18.3.8).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19년 10월 30일 인출.

연합뉴스 (2019. 08. 26). **“돌아눕지도 못해” 여섯식구 9평 원룸에…주거빈곤 아동 94만명**.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35700004?input=1195m에서 2019년 10월 23일 인출.

연합뉴스 (2019. 09. 19). **유엔 “한국 아동 복지예산 OECD 평균 미달…확충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88880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19년 10월 18일 검색.

유엔아동권리위원회 (199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번역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아동권리협약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외교부 비공식 우리말 번역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비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 http://indicators.ohchr.org/에서 2019년 2월 11일 인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의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Reporting status for Republic of Korea).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Lang=EN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의약뉴스 (2019. 6. 14). **의료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법제화 추진**.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310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이옥분 (201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이은주 (2016).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서비스 개선방안.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9**, 73-94.

이현주, 이주미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newbooks_pdsissue/view.do?menuId=46&tid=71&bid=200&ano=1504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해주, 서효정 (2016). 학습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경험. **통합교육연구. 11**(2), 105-137.

임희진, 김현신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희진, 백혜정, 김희진, 황여정 (2014). **2014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

사. 서울: 여성가족부.

전민일보 (2019. 05. 28). **(가정의 달 특집) 아동보호체계 안전한가.**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12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조연하 (2012).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 개선방안 연구: 인터넷 '디톡스'의 관점에서.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3**(4), 62-85.

조용남 (2019).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2년간의 변화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17**, 1-2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 1. 1기준).**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0에서 2017년 10월 15일 인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03.01.기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6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2019).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최은영, 김기태, 문규성, 김두겸, 최영은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최창욱, 박영균 (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보고 06-R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8-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18). **2018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 (18. 6월 기준).

통계청 (2013. 09. 25). **보도자료: 2012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085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4. 09. 23). **보도자료: 2013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3018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5. 09. 23). **보도자료: 2014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3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6. 09. 27). **보도자료: 2015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5634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7. 09. 22). **보도자료: 2016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6326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8. 03. 15). **보도자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7/1/index.board?bmode=read&aSeq=366658&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9년 8월 9일 검색.

통계청 (2018. 09. 19). **보도자료: 2017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

=37071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2019. 03. 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7/1/index.board?bmode=read&aSeq=373552에서 2019년 8월 9일 검색.

통계청 (2019. 9. 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aSeq=377606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통계청 (각 연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1350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9월 28일 인출.

통계청, 교육부 (2017).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8월 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69&stts_cd=276902&freq=U에서 2019년 8월 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5에서 2019년 8월 13일 인출.

통계청 KOSIS. **국내외 입양 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통계청 KOSIS.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vw_cd=MT_ZTITLE&list_id=101_1174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25EB%25B3%25B4%25EA%25B1%25B4%25C2%25B7%25EB%25B3%25B5%25EC%25A7%2580%2520%253E%2520%25EB%25B3%25B5%25EC%25A7%2580%2520%253E%2520%25EC%2595%2584%25EB%258F%2599%25EB%25B3%25B5%25EC%25A7%2580%25EC%258B%259C%25EC%2584%25A4%25EB%25B3%25B4%25ED%2598%25B8%25EC%2595%2584%25EB%258F%2599%25EB%25B0%258F%25EC%25A2%2585%25EC%2582%25AC%25EC%259E%2590%25ED%2598%2584%25ED%2599%25A9%25EB%25B3%25B4%25EA%25B3%25A0%25EC%2595%2584%25EB%258F%2599%25EB%25B3%25B5%25EC%25A7%2580%25EC%258B%259C%25EC%2584%25A4%25EC%2588%2598%2520%25EB%25B0%258F%2520%25EB%25B3%25B4%25ED%2598%25B8%25EC%2595%2584%25EB%258F%2599%25ED%2598%2584%25ED%2599%25A9%2520-%2520%25EC%258B%259C%25EB%258F%2584%25EB%25B3%2584에서 2019년 9월 17일 인출.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19년 10월 16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0~2018).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50

1&vw_cd=MT_ZTITLE&list_id=O15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8월 9일 검색 및 인출.

통계청 (2012, 2014, 2016, 2018).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3R&conn_path=I2에서 2019년 9월 10일 검색 및 인출.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04.18.). **보도자료: 2017 청소년 통계**. http://daitda.or.kr/data/files/2017/04/21/d5b7058accbb8f41008e097a46bdf4e6.pdf에서 2019년 8월 9일 검색.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2019 청소년 통계**.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2019년 6월말 기준.

파이낸셜뉴스 (2019. 09. 21). **아동학대,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하는 방안 추진된다**. http://www.fnnews.com/news/201909212154387966에서 2019년 10월 6일 인출.

한국리서치 (2019). **2019년 한국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리서치.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2.26).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9). **내부자료: 아동총회 개최현황.**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9).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5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 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2019년 8월 20일에 인출, 재구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9.30). **내부자료: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19년 8월 21일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제규정.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

ww.alio.go.kr/home.do에서 2019년 10월 2일 인출.

한준, 김대훈, 이희길 (2018).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및 통계 구축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SBS NEWS (2018.07.27). **갈 곳 없는 '학대 피해' 장애 아동…관련 법안은 '쿨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6691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TV서울 (2019. 09. 19).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법제화 추진"** http://www.tvseoul.kr/news/article.html?no=26539에서 2019년 10월 20일 인출.

Anthony, E. K., & Robbins, D. E. (2013). A latent class analysis of resilient development among early adolescents living in public hous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1), 82-90.

Child Rights Connect (n.d.) Ratification Status by Country. http://opic.childrightsconnect.org/ratification-status/underlying-ratification-data/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9). Guidelines for the participation of partners (NGOs and individual experts) in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90, Annex VIII).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GuidelinesFor Partners_en.pdf)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3). General comment No. 16 (2013)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business sector on children's rights (CRC/C/GC/16). https://undocs.org/ CRC/C/GC/16에서 2019년 9월 22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4). Working methods for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the reporting proces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66/2). https://digitallibrary. un.org /record/785298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5).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58/Rev.3). https://undocs.org/ CRC/C/58/Rev.3에서 2019년 9월 4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8).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El Salvador (CRC/C/SLV/CO/5-6). https://undocs.org/CRC/C/SLV/CO/5-6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a). Contribution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sponse to a call for inputs by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HLPolitical ForumSustainableDevelopment.pdf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b). Guidelin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CRC/C/156). https://undocs.org/CRC/C/156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c). General comment No. 24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CRC/C/GC/24).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GC24/GeneralComment 24.docx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n.d.). Days of General Discussion.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Days.aspx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n.d.).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https://www. ohchr.org/EN/HRBodies/CRC/Pages/GCChildrensRightsRelationDigitalEnvironment.aspx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Ensalaco, M., & Majka, L. C. (Eds.). (2005). Children's human rights: Progress and challenges for children worldwide.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Gardner, H (199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General Assembly (GA) (2002).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rights of the child (A/RES/56/138). https://undocs.org/en/A/RES/56/138/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General Assembly (GA) (2006).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for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A/61/299). https://undocs.org/A/61/299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General Assembly (GA) (2006).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5 March 2006. https://undocs.org/en/A/RES/60/251에서 2019년 9월 15일 인출.

General Assembly (GA) (2014). Strengthening and enhancing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RES/68/268). https://undocs.org/A/RES/68/268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General Assembly (GA) (2015). Rights of the Child (A/RES/69/157, paragraph 51.d). https://undocs.org/ en/A/RES/69/157에서 2019년 9월 27

일 인출.

General Assembly (GA) (2019).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A/74/136). https://docs.google.com/viewerng/viewer?url=https://childrendeprivedofliberty.info/wp-content/uploads/2019/08/GA-report_GSDCL.pdf&hl=en에서 2019년 9월 27일 인출.

Human Rights Council (HRC) (2018).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https://documents - dds-ny.un.org/doc/UNDOC/GEN/G18/052/75/PDF/G1805275.pdf?OpenElement에서 2019년 9월 15일 인출.

Human Rights Council (HRC) (n.d.-a). Institutional-building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HRC/RES/5/1 Annex para.3). http://ap.ohchr.org/documents/E/HRC/resolutions/A_HRC_ RES_5_1.doc에서 2019년 9월 15일 인출.

Human Rights Council (HRC) (n.d.-b). Universal periodic review. https://www.ohchr.org/en/hrbodies/upr/pages/uprmain.aspx에서 2019년 9월 7일 인출.

OECD (2019. 3. 25). Chart PF1.1.A.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http://www.oecd.org/els/soc/PF1_1_Public_spending_on_family_benefits.pdf.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OECD Family Database. Child outcomes: Child poverty. http://www.oecd.org/ 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amily Database.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9년 9월 17일 인출.

OHCHR (n.d.-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CRCIndex.aspx에서 2019년 9월

2일 인출.

OHCHR (n.d.-b). Information for partners: Committee's guidelines for the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al actors in the reporting process.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InfoPartners.aspx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OHCHR (n.d.-c).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https://www.ohchr.org/ EN/HRBodies/CRC/Pages/ReportingProcedure.aspx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OHCHR (n.d.-d).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https://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index.aspx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OHCHR (n.d.-e). UN Treaty body database: Reporting status of El Salvador.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 /Countries.aspx?CountryCode=SLV&Lang=EN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OHCHR (n.d.-f). UN Treaty body database: Reporting status of Japa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JPN&Lang=EN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OHCHR (n.d.-g). UN Treaty body database: Reporting status of Norway.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NOR&Lang=EN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OHCHR (n.d.-h). UN Treaty body database: Reporting status of Republic of Korea.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 Countries.aspx?CountryCode=KOR&Lang=EN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Rabinowitz, J. (1992). Collective Decision-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26*(1), 87-97.

Saaty, T. L. (1986). Axiomatic found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 ess. *Management Science, 32*(7), 841-855.

Saaty, T. L. (2008). Relative measurement and its generalization in decis ion making why pairwise comparisons are central in mathematics for the measurement of intangible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net work process. *RACSAM-Revista de la Real Academia de Ciencias Exac tas, Fisicas y Naturales. Serie A. Matematicas, 102*(2), 251-318.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1996).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 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ES /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United Nations(UN) (2000a).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 ct (A/RES/54/263).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 ages/OPACCRC.aspx에서 2019년 9월 2일 인출.

United Nations(UN) (2000b).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RES/54/263). https://www.ohchr.org/EN/ Prof

essionalInterest/Pages/OPSCCRC.aspx에서 2019년 9월 2일 인출.

United Nations(UN) (2007).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n the Fifth Session oh the Council (A/HRC/5/21). http://undocs.org/A/HRC/5/21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UN Office of the Higher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UN OHCHR)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New York: United Nations.(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Human_rights_indicators_en.pdf) 2017년 2월 13일 인출.

Yampolskaya, S. Sharrock, P., Armstrong, M. I., Strozier A., & Swanke, J. (2014). Profile of children placed in out-of-home care: Association with permanency outcom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6*, 195-200.

부 록

1.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2. 2019년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3.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4.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부록 1.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td><td rowspan="4">1-1.
인권일반
(제4조,
42조)</td><td rowspan="3">1-1-1.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td><td>1-1-1-1.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법제도</td><td>▪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 제·개정 현황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main.html),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td></tr>
<tr><td>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td><td>▪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기구 및 조직 현황
- 출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등</td></tr>
<tr><td>1-1-1-3.
GDP 대비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td><td>▪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3~2019)
- 출처: 1) 기획재정부(각 연도). 나라살림예산.
2)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td></tr>
<tr><td>1-1-2.
인권에
대한 인식</td><td>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td><td>▪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문35.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모른다</th><th>이름만 들어봤다</th><th>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th></tr>
<tr><td>(1) 유엔(UN) 아동권리협약</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학생인권조례</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국가인권위원회</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td><td>▪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문36.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존중받지 못한다</th><th>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th><th>존중받는 편이다</th><th>매우 존중 받는다</th></tr>
<tr><td>(1) 가정</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학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우리나라 전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td><td></td><td></td><td>1-1-2-3.
인권의식 및 태도*</td><td>▪ 다양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문37.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td><td></td><td rowspan="2">1-1-3.
인권교육</td><td>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td><td>▪ 인권교육 실시 현황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6). 2018 국가위원회 연간보고서.</td></tr>
<tr><td></td><td></td><td>1-1-3-2.
인권교육 경험
(경험유무, 장소, 도움정도)*</td><td>▪ 인권교육 경험여부
문38.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인권교육 실시 기관/장소
문38-1. (문38의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인권교육 도움 정도
문38-2. (문38의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인권교육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인권침해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td><td>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td><td>1-2-1.
차별
경험률</td><td>1-2-1-1.
차별받은 경험*</td><td>▪ 차별 받은 이유 및 경험 정도
문39.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1-2-1-2.
차별해 본 경험*</td><td>▪ 차별의 이유 및 경험 정도
문40.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 주위사람들을…</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6)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7)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r><td></td><td></td><td>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td><td>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td><td>▪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 출처: 1)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td></tr>
</table>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7, 8, 13-17, 39(a)조)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2">2.
시민적
권리와
자유</td><td rowspan="2">2-1.
의견
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td><td>2-1-1.
가정
에서의
참여 정도</td><td>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td><td>▪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문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 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2-1-2.
학교
에서의
참여 정도</td><td>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td><td>▪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문2. 다음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무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아니다</th><th>그렇다</th><th>잘 모르겠다</th></tr>
<tr><td>(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2">2-1-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td><td rowspan="2">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td><td>▪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문3.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td></tr>
<tr><td>▪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정도
문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 rowspan="2">2-1-3.
사회
에서의
참여 정도</td><td rowspan="2">2-1-3-1.
아동·청소년정책·
사업 결정 과정
참여 정도</td><td>▪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3~2018)
▪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8)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p.104-106 재구성.

▪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107.</td></tr>
<tr><td>▪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7)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9).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5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 사이트</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http://www.kocconet.or.kr/에서 2019년 8월 20일에 인출, 재구성.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9). 내부자료: 아동총회 개최현황.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참여경험 여부 문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문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문7.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3">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td><td>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td><td>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td><td>▪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
문8.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2) 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r><td rowspan="2">2-2-2.
종교자유
보장정도</td><td rowspan="2">2-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가정, 학교)*</td><td>▪ 학교의 종교재단 학교 여부
문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② 아니오
▪ 종교행사 시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문9-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td></tr>
<tr><td>▪ 가정에서의 종교 자유 보장수준
문8.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5조)</td><td>2-3-1.
결사·
집회
경험률</td><td>2-3-1-1.
결사·집회 경험률
(경험여부,
피해경험)*</td><td>▪ 결사·집회 경험률
문10.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없다</th><th>거의
없다</th><th>가끔
있다</th><th>자주
있다</th></tr>
<tr><td>(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문10-1.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td></tr>
<tr><td></td><td>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td><td>2-4-1.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td><td>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td><td>▪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문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td><td>2-4-2-1.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정도
(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td><td>▪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문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문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문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5. 정보 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44
				▪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Ⅵ: 총괄보고서. pp.208-20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2-3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9).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6-37.
				▪ 인터넷 이용 목적 - 출처: 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2016).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5.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9).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9.
				▪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출처: 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b).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8.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9b).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8. 4)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141. 5) 최창욱 외(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p.200.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 통계. p.33. * 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구 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
				▪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3.
				▪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5.
				▪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61.
				▪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63.
		2-5-2. 미디어 역량/ 리터러시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 지표 자료원 발굴 필요

3) 폭력 및 학대 (협약 19, 24(3), 28(2), 34, 37(a), 39)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2">3.
폭력
및
학대</td><td rowspan="2">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
조 2항)</td><td rowspan="2">3-1-1.
청소년
폭력
경험률</td><td rowspan="2">3-1-1-1.
폭력피해 경험*</td><td>▪ 정서적 학대 경험 여부 및 정도
문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 colspan="2">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td>2) 모욕적인 말(욕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교선생님으로부터</td><td>4) 모욕적인 말(욕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
문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따돌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6) 강제적인 심부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3-1-2.
체벌
경험률</td><td>3-1-2-1.
체벌 경험률*</td><td>▪ 신체적 체벌 경험 여부 및 정도
문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 colspan="2">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td>1) 신체적 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교선생님으로부터</td><td>3) 신체적 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r><td></td><td></td><td></td><td>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td><td>▪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문1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협박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따돌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6"></td><td rowspan="6">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td><td rowspan="6">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td><td rowspan="3">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td><td>▪ 2017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57.</td></tr>
<tr><td>▪ 2017년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95.</td></tr>
<tr><td>▪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1-122.</td></tr>
<tr><td rowspan="2">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td><td>▪ 아동학대사례 유형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8-129.</td></tr>
<tr><td>▪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연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td></tr>
<tr><td>3-2-1-3.
방임정도*</td><td>▪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문15.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6년~2017년)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34.
				▪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265-268.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01.01.기준).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03.01.기준).
			3-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8). 2013~2017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8). 2011~2017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사례종결 중 분리보호 세부 조치사항별 결과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45.
				▪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49.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협약 5, 9-11, 18(1-2), 20, 21, 25 및 27(4))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세~19세) (2012년~2018년) - 출처: 통계청(2012, 2014, 2016, 2018). 사회조사
		4-1-2. 보호·보육 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04년~2018년)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4년~2018년)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2014년~2018년)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2010년~2018년) - 출처: 1)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04.18). 보도자료: 2017 청소년 통계. p.23. 2) 통계청(2018.03.15). 보도자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3) 통계청(2019.0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p.19. 4) 통계청 KOSIS (2010~2018)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2018년) - 출처: 교육부(각 연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 방과후학교 교급별 학생만족도 - 출처: 교육부(2018).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3.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 출처: 1) 보건복지부(2017).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6년 12월 기준). p.ⅲ, p.ⅷ. 2) 보건복지부(2019).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p.5, 7, 44-45.
				▪ 지역아동센터 중점 프로그램 - 출처: 보건복지부(2019).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 27.
				▪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 - 출처: 김희진, 황진구, 임희진, 정선욱, 정윤미(201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pp.272, 278-283.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5년~2018년)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Ⅵ: 총괄보고서. 2)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 - 출처: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2010), 양계민, 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 김영지, 김정주, 정은주(2015), 양계민(2016), 서정아, 연보라(2017), 양계민(2018)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출처: 보건복지부(2018.5.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출처: 1) 보건복지부(2018.5.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2) 통계청 KOSIS. 국내외 입양 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2019년 8월 12일 검색)
			4-2-1-2.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 국내·외 입양 사후서비스 체계, 프로그램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9). 2019 입양실무매뉴얼. p.34, p.52-53, pp.36.
				▪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9). 2019 입양실무매뉴얼. p.55.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 현황	▪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 발생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출처: 통계청(KOSIS).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 원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출처: 1) 보건복지부(2016).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314. 2) 보건복지부(2017). 2017년 가정위탁 현황(2017.12.31.기준).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3) 보건복지부(2018). 2018년 가정위탁 현황(2018.12.31.기준).
				▪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아동 수 - 출처: 1)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2017. p. 215. 2)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p.1.
		4-2-3. 가출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문16.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가출한 이유 문16-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189.
				▪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 및 서비스 문16-2.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기관 및 만족도*	주십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16-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 2016년 및 2019년 평가지표 비교 -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2017).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2010-2019) - 출처: 1)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p.17. 2)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2017).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p.15.
			4-3-1-2. 아동복지시설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	▪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2013, 2019) - 출처: 1)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2)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3) 보건복지부(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 (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 보호 (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출처: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 - 출처: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출처: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 연도별 영아사망률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
				▪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5-2-1-2. 사고 사망률	▪ 사고 사망률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2"></td><td rowspan="2">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td><td>5-2-2-1.
범죄 피해율</td><td>▪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 출처: 통계청(각 연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 원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td></tr>
<tr><td>5-2-2-2.
지역사회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td><td>문1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5-3.
보건
서비스
(제24조)</td><td>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td><td>5-3-1-1.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td><td>▪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7 국민건강통계. p.219.

▪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272.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7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272.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7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5-3-1-2. 보건교사 배치 현황	▪ 보건교사 배치현황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5-3-1-3. 어린이전문 의료기관 (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 어린이 병원 운영 현황 - 출처: 1)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40. 2)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보도자료(2010.7.1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38541(2019년 9월 26일 인출)
				▪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보도자료(2019.9.1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0865(2019년 9월 26일 인출)
				▪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및 지정 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019.9.26.). 내부자료: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및 지정 현황(2019년 9월 기준).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및 운영 현황(2019년 9월 기준) -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2019).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2019년 9월 26일 인출)
			5-3-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현황	▪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226.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통계.
				▪ 아동· 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통계.
				▪ 아동· 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통계.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 현재 흡연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흡연)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5-3-3-2. 음주율	▪ 현재 음주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음주)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 평생 약물 경험률(부탄가스, 본드같은 각성제 마약, 기침 및 신경안정제 오남용 등)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1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문19.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5-4-2-2.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 수면시간 문2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 시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 시 □□ 분
				▪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문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수면부족 이유 문21-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_____)
			5-4-2-3. 비만율	▪ 2014~2018년도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 - 출처: 1)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2)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3) 교육부(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5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 사망원인통계(10-19세) - 출처: 통계청(2019.9.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p.18.
				▪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와 이유 문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문22-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적어주세요:_____)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5-4-3-2.
우울증*</td><td>▪ 우울정도
문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 …</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td><td></td><td></td><td>5-4-3-3.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td><td>▪ 현재 행복 정도
문24.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행복하지 않은 이유
문24-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td></tr>
<tr><td></td><td></td><td></td><td>5-4-3-4.
삶의 만족도*</td><td>문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d colspan="3">삶의 만족도 낮음</td><td>〈-</td><td colspan="3">중간</td><td>-〉</td><td colspan="3">삶의 만족도 높음</td></tr>
<tr><td>⓪</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d>⑦</td><td>⑧</td><td>⑨</td><td>⑩</td></tr>
</table>
</td></tr>
<tr><td></td><td></td><td></td><td>5-4-3-5.
자아존중감*</td><td>▪ 자아존중감
문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 …</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td><td></td><td></td><td>5-4-3-6.
고민거리대화상대*</td><td>▪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문26.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td></tr>
<tr><td></td><td>5-5.</td><td>5-5-1.</td><td>5-5-1-1.</td><td>▪ GDP대비 family benefits 공적 지출 비율 국제 비교(2015년)</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 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amily Database.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2019년 9월 17일 인출)
				▪ GDP대비 family benefits 공적 지출: 현금 및 서비스 구분(2015년) -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amily Database.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2019년 9월 17일 인출)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빈곤율 포함)	▪ 아동빈곤율(0~18세 미만) - 출처: 1)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총괄보고서. p.317. 2) 이현주, 이주미(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87-88.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18~25세 빈곤율(중위 소득 50% 기준) - 출처: 이현주, 이주미(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3.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0세~17세 아동빈곤율(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국제 비교(2015년 기준)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Child outcomes: Child poverty.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2019년 08월 12일 인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한부모가구 비율 - 출처: 통계청(각 연도).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e-나라지표 웹 사이트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장래가구추계 2015-2045.
				▪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5. -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년-2019년) - 출처: 1) 보건복지부(2012~2019).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보건복지부(2016, 2017, 2018).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3)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4~2015). 복권기금운용계획. 4)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각 연도). 기금사업활동. 5)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6)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2019.10.4)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 출처: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협약 28, 29, 30, 31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진학률	▪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2011~2017)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간추린 교육통계.
			6-1-1-2.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간추린 교육통계.
			6-1-1-3.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 - 출처: 1) 교육부(2017.8.31.).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보도자료. p.18.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간추린 교육통계. p.16. 3)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336.
				▪ 학급당 학생 수 (2011~2018) - 출처: 1) 교육부(2017.8.31). 보도자료: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7.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간추린 교육통계. p.15. 3)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337,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 - 출처: 교육부(2019.8.29). 2019 교육기본통계. p.14.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 자퇴 충동여부 문29.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td><td></td><td></td><td>▪ 자퇴 충동의 이유
문29-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td></tr>
<tr><td rowspan="2">6-2.
교육의
목표
(제29조)</td><td rowspan="2">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td><td>6-2-1-1.
학교 문화*
(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학교즐거움)</td><td>문30.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6-2-1-2.
학교생활만족도*</td><td>▪ 학교생활 만족도
문31. 최근 1년 동안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td></tr>
<tr><td></td><td>6-2-2.
학교 교육
목표</td><td>6-2-2-1.
진로교육 참여 기회</td><td>▪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2016~2020)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 추진과제별 연간 소요예산, 제2차 진로계획 5개년계획의 기대효과
- 출처: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 (2016~2020). pp.4,35,39.</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td><td>6-2-2-2. 직업교육 참여 기회</td><td>▪ 직업계고 학교, 학급, 학생, 교원 현황('18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모습, 융합 교육과정 운영 예시
- 출처: 교육부(2019.8.21). 보도자료: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pp.9, 3.</td></tr>
<tr><td></td><td>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td><td>6-3-1. 여가·문화·예술 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td><td>6-3-1-1.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시설 수*</td><td>▪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출처: 1)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2) 여성가족부(2018).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8.12.31기준)

▪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
문32.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공공도서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6-3-1-2.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시설 이용만족도*	▪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 이용 만족도 문32-1.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6-3-2. 여가· 문화· 예술 활동 참여 정도	6-3-2-1. 여가·문화· 예술활동 참여도	▪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69-71, 104.
				▪ 여가활동 동반자: 1순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57.
			6-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 평일 여가시간 문33.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6-3-2-3. 하루 평균 학습 시간*	▪ 정규 수업시간 제외한 하루 평균 공부 시간 문34.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7)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2, 33, 3 5, 36, 37(b-d), 38-40)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 특별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 출처: 1) 김경준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총괄보고서 2)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3) 법무부(각 연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7-1-1-2. 탈북 난민 아동 수	▪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출처: 통일부(2019).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2019년 6월말 기준
				▪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출처: 통일부(2019).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2019년 6월말 기준
			7-1-1-3.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경험,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차별정도 -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1, 584.
		7-1-2.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7-1-2-1.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0.
				▪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출처: 1) 교육부(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2)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3)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참가율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에서의 재학여부 -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34-535.
				▪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8). 2018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18. 6월 기준)
				▪ 탈북학생 학교 연도별 재학 현황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8). 2018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18. 6월 기준)
			7-1-2-2.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중도탈락률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학급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비율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
				▪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8). 2018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18. 6월 기준)
		7-1-3.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청소년보호 프로그램 참가건수	▪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 출처: 1)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2) 무지개청소년센터(각 연도). 사업활동보고서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 출처: 1)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2) 무지개청소년센터(각 연도). 사업활동보고서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2. 소년 사법 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 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 출처: 1)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2) 법무연수원(각 연도). 범죄백서.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7-2-2. 인권친화 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 출처: 법무연수원(2018). 2018 범죄백서. p.213.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 출처: 법무연수원(2018). 2018 범죄백서. p.634.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 출처: 법무연수원(2018). 2018 범죄백서. p.391.
		7-2-3. 자유박탈 이외의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510. - 원자료: 법무부(2009-2018). 법무연감.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p.514, 515. - 원자료: 법무부(2017).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471 - 원자료: 대검찰청(2009-2018), 검찰연감.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474. - 원자료: 대검찰청(2008-2018). 검찰연감.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420.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XIV.
				▪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출처: 1)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4.25.). 2017년 6월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7-3-2. 근로 시 청소년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 원자료: OECD(2018). Labour Force Statistics.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부당처우 경험률</td><td>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td><td>▪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문2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율
문27-1.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없다</th><th>1-2번</th><th>3번 이상</th></tr>
<tr><td>(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9) 최저임금(2018년 기준 시간 당 7,530원, 2019년 기준 시간 당 8,35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td></tr>
<tr><td></td><td></td><td>7-3-3. 청소년 근로 시</td><td>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td><td>▪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 출처: 1)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폭력예방 노력정도	대상업소 수	2)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2.20). '근로청소년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3)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8.30).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4)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8.3.08).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5) 여성가족부(2019.1). 내부자료: 2018년도 자체평가 주요정책분야 추진실적. p.281. 6) 여성가족부(2019). 내부자료: 2018년도 겨울 청소년아르바이트 합동점검 결과.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 청소년 고용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건수 - 출처: 1)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 2)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2.20). '근로청소년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3)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8.30).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4)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8.3.08).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5) 여성가족부(2019.1). 내부자료: 2018년도 자체평가 주요정책분야 추진실적. p.281. 6) 여성가족부(2019). 내부자료: 2018년도 겨울 청소년아르바이트 합동점검 결과.
	7-4. 성적 착취	7-4-1.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7-4-1-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3.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피해 경험률	7-4-1-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문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4-1-3.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	▪ 성적인 피해 시 도움요청 문28-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_____)
		7-4-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2-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 출처: 대검찰청(2018). 검찰연감. p.410.
			7-4-2-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 출처: 법제처(20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7-4-3.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서비스 지원 정도	7-4-3-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6.
				▪ 지역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8).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90. 2) 여성가족부(2019).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83.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7.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4-3-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19.2.26).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p.3.
				▪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329.
			7-4-3-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8.
			7-4-3-4.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	▪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9.30). 내부자료: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 연간 성교육 경험률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부록 2. 2019년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1) 승인통계 활용지표[75]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120005)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국내 가구의 인터넷 이용환경, 국민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국제기구 ICT 관련 국제지수 산출 등의 기초자료 제공	전국 25,000 가구 및 가구내 상주하는 만3세이상 가구원 (약 63,000명)	1년 (2003)	면접조사 (조사원→ 전담조사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조사기준년 익년 초 (시도)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인터넷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2-5-1-1. 매체 접근율
청소년매체이용 및유해환경 실태조사 (167001) (여성가족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청소년의 매체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주변의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개인,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등 청소년 16,500명) (초등4~6학년 4,300명,	2년 (2006)	면접조사 조사대상(학생)→ 위탁기관 (조사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여성가족부	조사기준년도 익년 1월 (시도) 〈언론(보도자료)+ 간행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75) 통계별 설명자료 출처: 통계청-승인통계 현황. http://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mStatsList.do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중등1~3학년 5,100명, 고등1~3학년 7,100명)				
사회조사 (101018) (통계청)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개인 (전국 1,548개 조사구의 약 27,336가구)	1년 (1977)	면접조사 (조사대상→ 지방통계청→ 통계청)	조사기준년도 11월 (시도)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사회조사보고서〉	4-1-1-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117034)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요보호아동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인 (전국)	1년 (1994)	보고 (시·군·구→시·도 →보건복지부)	작성기준년도 익년 5월 (시도)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보건복지통계연보〉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사망원인통계 (101054)	지정통계 (가공통계)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개인	1년 (1999)	인터넷조사 (가공분석:가족관	작성기준년도 익년 9월	5-2-1-1. 영아·아동·청소년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통계청)	(전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과 통계법에 따라 전국 시구 및 읍면동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아·모성·태아사망 건에 대한 조사자료로 작성)	(시도)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사망원인통계연보, 영아모성출생전후 기분석보고서〉	사망률 5-2-1-2. 사고 사망률
범죄분석통계 (135001) (검찰청)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제공	개인	1년 (1976)	보고 (전국 각 지방 경찰청→경찰청 →검찰청)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전국) 〈간행물 범죄분석〉	5-2-2-1. 범죄 피해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국민건강 영양조사 (117002) (보건복지부)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 통계 산출 -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가구 (제8기,2019~2021) ○ 전국 14,400여 가구 내 만1세 이상 가구원	1년 (1973)	면접조사 (조사원(설문, 검진 및 계측)→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조사기준년도 익년 12월 (전국)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5-3-1-1.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5-3-2-1. 저소득층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시계열 추이 파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근거자료 제공	- 3년 간 576개 조사구, 조사구당 목표 25가구 - 매년 전국 192개 조사구,4,800개 가구			간행물 국민건강통계〉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17058)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우리나라 청소년(중. 고등학생)의 건강행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보건지표 제공 및 관련분야의 기초 연구자료 제공	개인 (17개 시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400개교, 학교당 학년별 1개 학급 ※전체 유효목표 인원수=67,200명 (800개교*3학급*약28명)	1년 (2005)	인터넷조사 (표본학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학교컴퓨터실에서 일괄조사 -조사수행협조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조사기준년도 12월 (시도)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7-4-3-4.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
교육기본통계 (334001) (한국교육 개발원)	지정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등의 교육현황을 조사하여 양질의 통계 데이터	기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공	반기 (1963)	보고 (○유초중등교육기관 - 유·초·중등학교 →교육지원청	작성기준년도 8월 (시도) 〈언론(보도자료)+	6-1-1-1. 학생 진학률 6-1-1-3.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생산 - 교육현황에 대한 대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수요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와 연계 - 국가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자의 교육 기초 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21,300여개교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190여기관, 직속기관 380여기관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부설대학원, 대학원대학), 전공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1,900여개교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 고등학교, 기타학교→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한국교육개발원)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교육통계연보〉	학급당 학생수 6-1-2-1. 학업중단율
전국다문화가족	일반통계	다문화가족의 실태, 사회통합도	가구	3년	면접조사	조사기준년도	7-1-1-3.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실태조사 (117079) (여성가족부)	(조사통계) (확률표본)	등을 조사·분석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협의통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27,120가구(유효 16,000가구) ※표본추출틀: 등록자료(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자료, 외국인등록자료))	(2009)	(조사대상→ 통계청 통계대행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익년 1월 (시도)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부록 3. 2019년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1) 초등학생용

승인(협의)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1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044-415-2106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황인창 부장,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1번 문항으로

10-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15-1 평소 잠이 부족한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	2순위	5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Ⅰ.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시청,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4 우리 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5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아동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II. 가정 및 학교 환경

6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7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몸을 만짐)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9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1번 문항으로

10-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Ⅲ. 복지 및 보호

1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2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1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1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1시 30분, 22시 0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09시 00분, 22시 00분)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15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 **15-1**

② 아니오 → 16번 문항으로

15-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7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17-1**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18번 문항으로

17-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8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삶의 만족도 낮음	← 중간 →								삶의 만족도 높음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9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0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20-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② 없다 → 21번 문항으로

Ⅳ. 교육 및 여가·문화

21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22번 문항으로

21-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2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3 최근 1년 동안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24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24-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26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V. 인권 일반

27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28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29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전교 어린이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0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31번 문항으로

30-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0-2 인권교육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31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2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19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중 · 고등학생용

승인(협의)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1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044-415-2106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황인창 부장,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1번 문항으로

10-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15-1 평소 잠이 부족한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 2순위 5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Ⅰ.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	①	②	③

3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7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8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② 아니오 → 10번 문항으로

9-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0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10-1 (위 문항에서 ③번 또는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가정 및 학교 환경

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5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7번 문항으로

16-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2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17번 문항으로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Ⅲ. 복지 및 보호

1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19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2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2시 30분, 23시 0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09시 00분, 22시 00분)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22번 문항으로

21-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3번 문항으로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2-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4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25번 문항으로

24-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삶의 만족도 낮음	← 중간 →								삶의 만족도 높음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6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8번 문항으로

27-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18년 기준 시간 당 7,530원, 2019년 기준 시간 당 8,35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9번 문항으로

28-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Ⅳ. 교육 및 여가·문화

29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30번 문항으로

29-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0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1 최근 1년 동안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32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32-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33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34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V. 인권 일반

35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36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37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8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39번 문항으로

38-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8-2 인권교육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39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0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19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4.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보건복지부 공식 번역본)

유엔(United Nations) CRC/C/KOR/CO/5-6

아동권리협약

배포 : 일반
2019년 10월 24일
영어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76)]

I. 개요

1. 위원회는 2019년 9월 18일과 9월 19일 열린 제2416차 및 2417차 회의(CRC/C/SR. 2416 및 2417 참조)에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CRC/C/KOR/5-6)를 심의하였고, 2019년 9월 27일 열린 제2430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II.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성과

3. 위원회는 다음을 환영한다.

(a) 2015년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76) 제82차 회기(2019년 9월 9일~9월 27일)에서 채택됨.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

(b) 2012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

4. 위원회는 다음의 조치를 감사히 여긴다.

(a)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b)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c) 아동영향평가제도

(d)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e)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제도 도입

Ⅲ.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5. 위원회는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상기하며,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비차별(para. 17),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para. 20), 체벌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para. 27), 성적 착취 및 학대(para. 29), 교육 및 교육의 목표(para. 42), 그리고 소년사법 운영(para. 47) 등의 분야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권고에 당사국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A. 일반이행조치 (협약 제4, 42, 44(6)조)

유보

6.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하며, 제40조 (2)항(b)(v)조의 유보철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법 제정

7. 낙태 금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2020년까지 낙태 관련 법률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 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8.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채택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조정

9.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권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CRC/C/KOR/CO/3-4, para. 13)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자원의 할당

10. 교육, 영유아기 및 아동복지 사업 영역의 예산 증가와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수립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9호(201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정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 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자료 수집

11.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200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독립 모니터링

12.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년)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13.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제협력

14. 위원회와 당사국간 대화에서 제공된 정보로서, 당사국이 향후 10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할 계획이라는 점을 환영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7.2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동권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당 개발 협력 상대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절히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권리와 기업부문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6호(201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이전의 권고(CRC/C/KOR/CO/3-4, para. 2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B. 일반원칙 (협약 제2, 3, 6, 12조)

비차별

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한다.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b)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것

(c)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 (CRC/C/KOR/5-6, para. 36).

17.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0.3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아동의 최선의 이익

18.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제도 수립을 환영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201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 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들을 당사국에 상기시킨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9. 위원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주목하는 한편, 대한민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높은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현상 및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한 건강상 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b) 학교 및 보육환경(childcare settings)의 미세먼지 및 석면에 대한 불충분한 모니터링

(c)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수많은 건강 피해 및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구제와 배상.

20. 위원회는 앞서 권고했듯,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다음을 권고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할 것

(b) 모든 보육환경(childcare settins)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c)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아동의 견해 존중

21. 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가사소송법안(2017)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도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b) 이전에 권고했듯이(CRC/C/KOR/3-4, para. 35(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제7, 8, 13-17조)

출생등록

22.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9를 감안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정체성에 대한 권리

23.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4.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당사국에 재차 권고한다. 또한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

25. 위원회는 학교가 학업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19, 24(3), 28(2), 34, 37(a), 39조)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d) 아동학대의 과소보고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h)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28.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 그리고 재범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과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였다는 점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유해한 관행

30. 위원회는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결혼이 부모 동의만으로 승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주 여아 및 외국인 여아의 결혼사례가 보고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협약 제5, 9-11, 18(1) 및 18(2), 20-21, 25, 27(4)조)

가정환경

31. 위원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무상보육,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부(父)의 육아휴직 및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c)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 및 기타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을 포함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것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 개정할 것

가정환경 상실 아동

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

입양

33. 법원허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입양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당사국에 반복한다.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34. 위원회는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권고한다.

수용자 자녀

35.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및 이들 아동의 접견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제6, 18(3), 23, 24, 26, 27(1)-(3), 33조)

장애아동

36.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교육, 훈련영역에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증가하였음에 주목한다.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2006)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c)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과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건강 및 보건 서비스

37. 위원회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를 환영한다.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5호(2013)

및 재정위험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험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8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보건예산을 늘리고 지역 병원을 강화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다음의 사항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c) 당뇨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것

정신 건강

38. 당사국이 아동 자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신 건강과 웰빙(well-being) 증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4를 감안하여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반복하여 권고한다.

청소년 보건

39.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2003) 및 청소년기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0호(2016),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 근절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2.2, 마약류와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5, 성과 생식보건,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킨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역량을 구축하여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생활수준

40.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알리고 채택하며 시행할 것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제28, 29, 30, 31조)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a)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

(b)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낮은 수준의 학교통합(school integration), 높은 학교 중퇴율

(c) 한국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난민아동, 이주아동 및 미등록아동의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아동의 제한적인 교육 서비스 접근성

(d)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배적인 점을 비롯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 및 편의제공 부족과 장애아동이 직면한 사회적 낙인

(e)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f)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교육 격차

(g) 청소년 임신과 HIV 발생률 증가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부족

(h)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으로 중퇴에 대한 취약성 증대

(i)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

(j) 학업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함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안전한 무료시설 충분하지 않아 여가 시간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기여한다는 것

42.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4.5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f)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43. 위원회는 2012년 「난민법」 제정을 환영한다.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공동의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와 제4호(2017) /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및 제23호(201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난민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d)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매매, 거래, 약취유인

4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매우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로 여전히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상기시키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 요건을 삭제할 것

(b) 경찰, 출입국관리, 노동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피해자 식별 지침 이행 등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과 위탁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할 것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소년사법 운영

46. 위원회는 소년원 송치기간을 최종 결정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소년법」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다음을 우려한다.

(a) 법에 저촉된 아동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와 처우의 두 가지 병렬 시스템의 존재

(b)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과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는 것

(c)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d) 조사단계부터 보조인 개입을 보장받지 못 하거나,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증거 및 항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거나,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법률구조(法律救助)를 조건부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들

(e) 성인에 비해 높은 아동 구금율

(f) 과밀 수용, 불충분한 의료 지원, 교육, 훈련, 여가, 식사 제공, 특히 여아에게 적게 제공되는 식사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구금 환경, 접견, 진정 및 야외활동 제한, 소수자 아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부재, 구금된 성소수자 아동(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children)에 대한 차별,

(g)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

(h) 구금된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DNA 및 HIV 의무검사, HIV 아동 구금자의 격리, 구금된 아동에게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

(i) 독방 감금, 가족방문 제한 및 원거리 징계이송과 같은 재량에 따른 징계조치 남용,

(j) 수갑, 포승, 기타 보호장치의 사용 및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

(k)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형 조치의 부족.

4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계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8. 위원회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S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9. 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A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 이전 권고를 상기시키며 특히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군대나 비국가 무력단체에 징집하는 것 및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b) 분쟁지역 출신 난민신청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영할 것

I.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50.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비준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J. 국제인권규범 비준

51.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고려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K. 지역 기구와의 협력

52. 위원회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Ⅳ. 이행 및 보고

A. 후속조치 및 보급

53.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제5·6차 국가보고서 및 본 최종견해가 당사국의 언어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B. 차기 보고서

54. 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본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14년 1월 31일 채택된 위원회의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3)을 준수해야 하며, 21,200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유엔총회 결의안 68/268, para. 16 참조). 보고서가 단어 수 제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당사국은 앞서 언급한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 분량 축소를 요청받게 될 것이다. 당사국이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조약기구 심의를 위한 번역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55. 위원회는 또한 최신의 핵심문서 제출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공통핵심문서 및 특정 조약 문서에 관한 지침(HRI/GEN/2/Rev.6, chap. I 참조), 유엔총회 결의안 68/268의 제16항을 포함하여, 각종 국제 인권 조약이 규정하는 보고지침에 포함된 공통핵심문서의 요건에 따라 단어 수는 42,400개를 초과할 수 없다.

ABSTRACT

This is a third-year study for the third phase of the Research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which aims to identify necessary tasks for improv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by conducting review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nalyse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continu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the research, we have accumulated time series data to study the status and progress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youth and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relevant policies and submitting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September 2019, the UN CRC deliberated on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submitted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We examined the issues in the report filed by civil societ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s well the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UN to address the tasks to be implemented going forwar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ystem of child and youth rights indicators, we conducted the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 Youth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No. 402001) for children and youth in grades 4 to 12 and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status of human rights using major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upplementary

statistics from other areas. Lastly, we proposed 18 policy tasks related to child and youth rights after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tatus of human rights, expert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UN.

The UN recommendations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policy direction and task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UN CRC. It is thus imperative to make active efforts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by the time of the deliberation of the seventh periodic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24.

Keywords: children's rights, youth rights, human rights indicators, status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monitoring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김정숙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Ⅹ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헌·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헌·유민상(자체번호 19-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 탁 과 제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 ·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헌·김형주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헌·하형석·이용해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 (11.12)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및 전문가 협의회◈

강 지 영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교수)
김 미 숙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상 원 (국제아동인권센터·연구원)
김 형 욱 (서울특별시청·시민인권보호관)
김 희 진 (국제아동인권센터·연구원)
이 승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전 경 숙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교수)
정 병 수 (국제아동인권센터·사무국장)

◈ 자문·협력진 ◈

강 가 현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강 정 은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강 현 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교수)
고 주 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본부·본부장)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교수)
김 경 욱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김 범 석 (아동총회 의장단)
김 은 정 (세이브더칠드런·부장)
김 은 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소장)
김 인 숙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권리교육훈련소·소장)

김 지 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옹호팀·과장)
김 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변호사)
김 진 호 (부천실업고등학교·교감)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류 정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류 조 은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류 현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주무관)
박 진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KCOC아동권리실무그룹)
박 찬 미 (아동총회 의장단)
방 은 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교수)
백 경 하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손 귀 남 (한양초등학교·교장)
송 지 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변호사)
염 유 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교수)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이 수 종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이 영 찬 (아동총회 의장단)
이 혜 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사무총장)
이 희 길 (통계청 통계개발원·서기관)
장 준 서 (아동총회 의장단)
장 화 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 병 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선임연구원)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한 유 정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팀장)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교수)
황 혜 신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교수)
Joan Yoo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연구보고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39-1 94330
979-11-5654-238-4 (세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391 94330
ISBN 979-11-5654-239-1 94330
ISBN 979-11-5654-238-4 (세트)